

한-중 FTA 분야별 법제이슈 분석·연구

이기평 · 임목삼 · 이주윤 · 고준성 · 박언경 ·
정찬모 · 이상모 · 김대원 · 오선영 · 권혁재 · 류예리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15-20-③

한-중 FTA 분야별 법제이슈 분석 · 연구

이기평 · 임목삼 · 이주윤 · 고준성 · 박언경 · 정찬모 ·
이상모 · 김대원 · 오선영 · 권혁재 · 류예리

한-중 FTA 분야별 법제이슈 분석 · 연구

Analysis on sectoral legal issues of the
Korea-China FTA

연구자:	이기평(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Lee, Ki-Pyeong
	임목삼(국제원산지정보원 부연구위원)	Lim, Mok-Sam
	이주윤(연세대학교 강사)	Lee, Joo Yun
	고준성(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oh, Joon-Sung
	박언경(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객원교수)	Park, Eon-Kyung
	정찬모(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Chung, Chan-Mo
	이상모(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Lee, Sang-Mo
	김대원(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im, Dae-Won
	오선영(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OH, Sun-Young
	권혁재(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Kwon, Hyuk-Jae
	류예리(경상대학교 법학과 계약교수)	Ryu, Ye-Ri

2015. 10. 31.

요약문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14년 11월 협상을 타결한 후 현재 한중 양국의 국내 비준 절차를 진행 중인 한-중 FTA는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모든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그러하듯 한-중 FTA의 체결 역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둘 다가 예상되고 있음
- 긍정적인 효과로서는 한-중 FTA는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선점에 유리한 제도적, 정책적 환경을 제공하는 등 경제적 효과, 그리고 한-중 FTA가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여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 및 한반도 평화 안보에 기여
- 반면 부정적인 효과로서는 대표적으로 저가의 중국산 농수축산물, 공산품의 수입 확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등이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우리는 한-중 FTA의 체결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발효될 한-중 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 분석을 통해 한-중 FTA의 한-중 양국 내에서의 이

행, 특히 한-중 FTA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 및 법제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제시

- 이와 함께 중국의 서비스/투자 관련 분야별 국내법제를 분석하여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에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법제적 시사점 및 대응방안 제시

II. 주요 내용

- 한-중 FTA 주요 챕터에 대한 분석과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중국의 관련 국내법제와 정책에 대한 연구, 그리고 향후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음

1. 한-중 FTA 주요 챕터 분석 및 시사점

- 원산지 및 통관원활화 제도
 - 우리나라와 교역량 기준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EU 및 ASEAN을 중심으로 상품분야의 협정을 비교·분석한 결과, 원산지 규정과 원산지 이행절차, 양허세율과 원산지 기준은 특정적인 부분이 다소 있으나 통관 및 무역원활화 규정은 국내 통관 제도와 이미 상당히 일치하고 있음
 - 다음으로 미국과 EU의 FTA와 같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재료에 대하여 해당 제품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중간재에 대한 원산지 재료 활용이 가능

하게 하는 등 다른 기체결 FTA에 비하여 원산지 규정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 SPS

- 한-중 FTA는 다른 FTA와 마찬가지로 WTO SPS협정과의 관련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FTA에 비해 논쟁의 여지가 적고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율함
- 한-중 FTA는 SPS협정의 다양한 조문을 언급하여 SPS협정상 권리와 의무가 실효적으로 준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 FTA와 비교됨
- 기술협력 조항을 통해 한국과 중국 간의 위생검역조치에 관한 경험과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한-중 FTA 위생검역조치의 법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위생검역조치에 관한 분쟁은 한-중 FTA의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신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해결이 기대됨

□ TBT

- 금번 한-중 FTA TBT분야는 양국의 기술규제가 갖는 무역장벽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적합성평가기관 간 평가결과 수용 촉진 협력, IECEE-CB 시험인정서 수용 촉진, 적합성평가 협력 후속 이행약정 체결 등에 대해 규정하고, 기술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신속 공표, 규정 제개정시 최소 60일의 의견제시 기간 부여 등을 규정하며, 이밖에 적합성평가절차 처리기간 및 비용 제한, 시험용 샘플의 통관, 표시 및 라벨링

요건의 최소화 등을 규정하는 등 포괄적인 기술장벽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규정 및 조치 등을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다만, TBT분야의 성과 중 상당수가 연성법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이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양국 기술규제 당국 및 적합성평가기관 간에 협력과 TBT 위원회의 활용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며, 특히 적합성평가 관련 이행약정에 관한 후속 협상과제가 매우 중요함

□ 무역구제

- 한-중 FTA는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무역구제 위원회 등의 3개의 절에서 공정무역규범의 실현을 위한 내용과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경우 일부 차이가 있지만 적용요건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및 타 FTA 협정과 유사함. 그러나 한-중 FTA가 주요 농산물이 양허품목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해 농산물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 조치가 도입되지 않았음
- 반덤핑 및 상계관세는 일반규정에서 각 당사국은 한-중 FTA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WTO 협정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함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구체적이고 투명한 기준의 도입을 통해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위장된 무역제한조치로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다만 타 FTA에서 규정되어 있는 낮은 관세적용(lesser duty rule) 원칙의 부재, 공공이익조항의 부재 등은 중국이 실질적으로 반

덤핑 조치와 상계관세 조치를 빈번하게 발동하는 국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응수단의 미흡이라는 우려도 있음

□ 서비스무역

- 서비스무역에 관한 한중FTA 제8장은 16개 조항의 협정 본문과 양국 양허표 그리고 두 개의 부속서(영화 공동제작; 방송용 TV 드라마,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 공동제작)로 구성됨
- 한-중 FTA 서비스무역에 관한 장의 규정형식은 기본적으로 WTO/GATS의 틀을 따르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특색이 있음
 - GATS 제2조에 상당하는 최혜국대우규정이 없음
 - 정부조달관련 규정이 없음
 - 긴급구제조치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음
- 서비스 양허표의 작성도 WTO/GATS와 같이 개방분야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열거하고 그 내에서 제한사항을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본 협정 발효 후 2년 내 개시되는 후속협상에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함

□ 금융서비스

- 한-중 FTA는 개방범위는 한-EU FTA와 유사하고, 구체적인 조문은 한-미 FTA와 한-EU FTA의 내용을 필요에 따라 원용하고 있음
- 한-중 FTA의 금융서비스 관련 규정은 대체적으로 한-미 FTA, 한-캐나다 FTA, 한-EU FTA의 금융서비스 관련 규정과 유사하고, 의도한 개방 수준도 한-미 FTA 수준임

- 한-중 FTA는 최혜국대우를 제외하고 있고,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조항이 없으며, 투명성 규정에서 규제 투명성을 증진하지만 다른 FTA보다 상대적으로 긴 처리 기한을 설정하고 있음

□ 통 신

- 한-중 FTA는 전체적인 개방 수준은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는 양국의 현실을 감안하여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음
- 한-중 FTA의 통신 챕터는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한-미 FTA와 유사한 내용의 규정을 담고 있지만, 재판매, 망요소 세분화, 규제적용 면제 등의 규정은 한-중 FTA에는 제외되어 있음

□ 자연인의 이동

- 한-중 FTA는 한-중 간의 인적 교류 확대와 함께 불법 체류자를 방지하고자 하는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음
- 경제 활동 및 투자 진흥에 도움이 되는 자연인의 일시 입국을 허용하지만, 노동 허가 부여 또는 기타 이민 관련 내용은 한-중 FTA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한-중 FTA에서 허용하는 자연인의 일시 입국 대상범위는 한-캐나다 FTA보다 협소함

□ 투 자

- 한중투자챕터는 중국이 시기별로 체결한 양자간투자협정 (BIT) 과 그에 상응하는 특혜무역내의 투자협정(PTIA)과의 관계에서 보면 기존 체결된 협정들과 같이 BIT 범위내에서 타결되었음

- 또한 국제공급선 (global value chain)의 반영이라는 특혜무역협정내의 투자챕터의 체계적 의의 맥락에서는 현재 한중간의 변화된 투자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 향후 한중FTA 추가협상에서 다루기로 한 설립전 투자에 관한 내국민대우 인정은 단기간에는 어렵고 현재는 설립후 투자만을 보호하는 한중일 3국 투자협정 수준에서 타결되었음

□ 전자상거래

- 한-중 FTA 전자상거래 챕터는 엄격한 의무부과보다는 전자상거래 촉진에 관한 양국의 관심을 반영한 상징적, 선언적 성격이 강함
- 양국 간 상호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 발전의 틀을 확보하였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경 쟁

- 한-중 FTA 경쟁챕터는 경쟁법 집행의 일반원칙, 공기업에 대한 경쟁법 적용, 경쟁당국간 협력 등을 개괄적으로 규정하면서 분쟁해결규정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는 연성법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음
- 중국과 한국의 기체결 FTA에 비해 역대 체결된 FTA중 체계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 가장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음

□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TRIPS 플러스 조항들을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도입하였음

- 특히 기체결된 타 FTA에서보다 유명 상표 제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중국 내에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우리나라 상표까지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음
- 다만 상표의 등록 및 출원과 관련한 의견제출 기회의 보장과 출원 중인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추후 협상 등을 통해 필요해 보임
-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양국의 역량차이를 인정하여 협력을 강조하고 이를 위하여 지식재산권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합의하였음

□ 환 경

- 한-중 FTA는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다자환경협약의 준수,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을 강조하며, 환경 협력의 강화와 환경위원회 설립에 대해 규율함
- 환경 챕터의 실효적 이행을 논의하거나 국내 환경법의 효과적 이행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참여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
- 한-중 FTA의 환경 관련 법적 의무의 이행에 관한 적절한 메커니즘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환경 관련 문제에 관한 분쟁은 한-중 FTA의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다른 FTA에 규정된 협의나 환경협의회 절차 등이 존재하지 않아 환경보호 준수에 대한 아쉬움이 남음

□ 경제협력

- 먼저 금번 한중FTA 경제협력챕터의 협력과제와 관련하여 금번 한-중 FTA 경제협력 챕터는 모두 16건의 협력과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간 한국 및 중국의 기타결 FTA의 경제협력과제와 비교할 때 최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다만, 정부 조달이나 한국 관광회사의 중국에서의 해외 관광사업과 관련한 중국의 협조 약속에 대해서는 후속 협상을 통해 조문화하는 작업이 남아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한-중 FTA 경제협력챕터에서의 협력과제의 이행을 위한 메카니즘과 관련하여 한중FTA에서는 다양한 접촉선 내지 채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협력사업의 자원 조달 및 협력 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음

□ 투명성

- 한-중 FTA는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조치의 공표, 협정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의 통보 및 정보 제공, 행정절차 당사자의 권리 보호, 재심과 불복 기회의 보장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공표의 대상에 관한 법률용어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음
-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비밀정보의 유출을 막는 예외조항을 두어 투명성 제고와 공익의 보호 간에 적절한 균형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듯함

- 중국의 불투명한 법제 실무로 인해 우리나라에 무역상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을 선진국으로 대우하고 높은 수준의 투명성조치를 요구할 필요가 있음

□ 분쟁해결

- 한-중 FTA는 WTO 협정 및 기타 FTA와 유사한 형태의 분쟁해결제도를 규정에 두고 있음.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와 위생검역(SPS), 기술무역장벽(TBT), 경쟁, 경제협력, 환경 관련 분쟁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분쟁해결 챕터가 적용됨
- 한-중 FTA는 화해지향적 분쟁해결제도의 도입, 분쟁해결 포럼의 중복 선택 금지, 시간구속적 분쟁해결제도, 비관세조치 중개절차, 패널의 설치·구성·기능, 패널보고서의 채택 및 이행, 양허의 정지, 사적권리의 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 반면, 협정비위반제소 규정의 미비, 분쟁해결절차의 적용 기준에서 협정의 무효화 또는 침해 요건의 미비, 정보 및 기술적 조언 요청권리의 적용 범위,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와 관련한 기한 등의 규정은 명확한 기준정립을 위한 후속 논의가 필요함

2.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대응방안

□ 개 요

- 한-중 FTA 발효 후 2년 내 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한 후속협상을 개시하고 2년 내 협상을 완료할 것으로 합의함

-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서비스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은 한-중 FTA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중국의 서비스/투자 관련 국내법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 투자일반

- 2012년 말 시진핑 정부가 출범한 이후 중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
- 중국정부는 기존 외국인투자법규를 대체할 외국투자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외국인투자자와 국내 투자자를 구별하는 이원적 시스템을 대신 내외국인을 동일하게 대우하며, 외국기업의 시장진입시 문제되던 각종 행정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등 진일보한 개혁을 추진 중임
- 또한 상하이 등 자유무역지대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방식의 투자자유화를 추진함에 따라 향후 중국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사업 환경이 크게 변화 및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법률 서비스 분야

- 한-중 FTA 법률시장 개방 수준은 중국의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률시장 개방 수준과 거의 동일하며, 중-홍콩, 마카오 간 CEPA와 관련 국내법에 따른 광동성의 홍콩, 마카오에 대한 법률시장 개방 수준이 가장 높음

-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과 법제는 매우 빈번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후속 협상 개시 이전까지 중국의 관련 국내법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 한-중 FTA 후속 협상에서는 중국의 국내법에 따른 시장개방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법률시장 개방이 될 수 있도록 한미, 한-EU FTA에 따른 법률시장 3단계 개방 수준을 한-중 FTA에서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금융 서비스 분야

- 최근 중국정부는 금융개혁을 가속화고 있으며, 특히 주식시장에서 대외개방을 확대하여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 기존의 주식시장 개방조치인 QFII는 투자가능금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여기에 최근에는 외국의 개인투자자까지 참여가 가능한 후강통까지 실시하고 있음
- 주식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투기과열 및 각종 불법행위가 확산됨에 따라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증권법을 15년 만에 개정예 착수함
- 향후 중국 주식시장의 개혁과 개방은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환경 서비스 분야

- 중-홍콩 CEPA와 중-대만 ECFA, 중-뉴질랜드 FTA보다 후에 체결된 중-스위스 FTA, 한-중 FTA와 중-호주 FTA에서는 합작투자기업 형태로만 서비스공급을 허용하여 오히려 제한사항이 강화되었음

- 한국기업도 CPC 9409(기타 환경서비스)에 대해서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도록 논의할 수 있다고 보임
- 환경서비스 분야의 중국 국내법령과 관련해서 통일되고 명확한 표준이 부재하며 지방마다 달라 혼란이 있다. 일부 분야에 대한 행정기관 또한 통일되지 않아 관련된 법령과 제도 수립에 대한 요구가 필요함

□ 관광·여행, 문화 서비스 분야

- 중국은 WTO GATS 양허한 바와 같이 그동안 FTA에서도 외상투자여행사의 업무 범위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하여 왔음. 그러나 현재 상해와 북경 등 일부지역에서는 외상투자여행사의 업무 확대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음
- 중국은 대만과의 ECFA와 홍콩과의 CEPA를 통하여 대만과 홍콩여행사에 대해서는 아웃바운드 업무를 인정해주고 있음. 《여행사조례》 8조에 따르면 개별 FTA에서 아웃바운드 업무를 인정해 주는 것이 허용되는바, 한-중 FTA 서비스 분야 후속협상에서 우리나라 여행사의 아웃바운드 업무확대에 대하여 개방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분야는 중국이 우리나라에게만 FTA에서 처음으로 개방하였음. 그러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중에서도 기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만을 개방하여 그 개방의 진정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중국이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시장을 개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성공연관리조례》에서는 외자기업의 영업에 대한 엄격한 절차가 존재하는바 이에 대한 제거 요구가 필요함

Ⅲ. 기대효과

- 한-중 FTA 각 챕터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발굴을 통해 한-중 FTA의 효과적인 국내이행과 우리 기업의 활용도 제고에 기여
 - 서비스/투자 분야 관련 중국의 국내법제 및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 전략 수립에 기여
 - 본 연구는 한-중 FTA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초연구로서 향후 한-중 FTA에 대한 심화연구에 참고 자료로 활용 기대
- ▶ 주제어 : 한-중 FTA, 원산지, 통관원활화, 위생검역, 기술무역장벽, 무역구제, 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 통신서비스, 자연인의 이동, 투자, 전자상거래, 경쟁, 지식재산권, 환경, 경제협력, 투명성, 분쟁해결제도,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

- The Korea-China FTA, which was signed in November 2014 and is currently awaiting ratification in each country, is expected to have a great impact on the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sectors in Korea.
- Like all FTAs, the Korea-China FTA will have both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 As for its positive effects, the Korea-China FTA will have certain beneficial economic effect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n institutional and policy-based environment conducive to Korean business forays into the Chinese market, as well as contributing to the establishment of a wider 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through the reinforcement of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o the securing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On the other hand, it will have a number of negative effects including the shrinkage of domestic business due to an increase in the importation of low-priced agricultural, marine, and dairy products and manufactured goods from China.

- Under such circumstances, it is above all else vital that we strive to maximize the positive effects while minimizing the negative effects.
-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come up with focal points and countermeasures that can be used as reference points for the execution of a bilateral FTA, the formulation of relevant policies, and the enactment of relevant laws to enhance the usability of the FTA based on legal analysis of the contents of the Korea-China FTA, which will take effect in due course.
- This study will also explore the policy/legal focal points and countermeasures that can be used as reference points in subsequent negotiations concerning the service and investment sectors by analyzing the relevant domestic laws of China.

II. Main Contents

-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include an analysis of the major chapters of the Korea-China FTA, research on China's relevant domestic laws and policies, and countermeasures to be taken in the future in preparation for subsequent negotiations concerning the service and investment sectors. The relevant details are as follows:

1. Analysis on the major chapter in the Korea-China FTA and its implications

- Rules of origin and trade facilitation
 - Commodity sectors in the Korea-China FTA and the KORUS, Korea-EU, Korea-ASEAN FTA(the majority in the country and trade criteria analysis result) compared and analyzed the results, rules of origin and the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of origin, preferential tariff rate of origin and the origin preferential specific rules are somewhat difference, but customs and trade facilitation regulations are already quite consistent with the Korea customs system.
 - Meanwhile, the materials acquired originating status in the Korea-China FTA not to consider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its products as the KORUS FTA and Korea-EU FTA, that can be utilized originating materials for intermediate goods. It is expected that higher utilization of rules of origin.
- SPS
 - Korea-China FTA emphasizes the link to WTO SPS Agreement, but it just provides basic matters which is hardly like to cause controversy.
 - Korea-China FTA is compared to other Korea FTAs and China FTAs which directly regulate various obligations under SPS Agreement and supply the legal base for complying with fundamental rights and duties of that Agreement.

- As Korea-China FTA has the clause concerning technical cooperation that offers the opportunity to exchange experience and information in relation to SPS measures, it will contribute to legal advancement.
- As the disputes relating to SPS measures shall not be subject 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under Korea-China FTA, it will be expected to settle under the WTO system which is by far more objective and impartial.

TBT

- Korea-China FTA introduces a variety of provisions such as closer work between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with a view to facilitating the acceptance of conformity assessment results between both Parties, encouraging both national certification bodies to accept each other's IECEE-CB test certificate, etc, in order to ease the trade barrier effects of the technical regulation. Besides, it includes various provisions regarding transparency, consumer safety, marking and labelling, measures at the border in order to ensure that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do not create unnecessary obstacles to trade.
- Not a few above-mentioned provisions have a soft law character. In order to effectively implement them, therefore, the cooperation between both technical regulatory authorities and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respectively is important and the Committee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lso has to play a role.

Trade remedy

- ‘Korea-China FTA’ addresses contents and institutions for the manifestation of fair trade rules in three sections upon safeguard measures,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nd the committee on trade remedies.
- Though the FTA is found slight differences in the application of a safeguard measure with the one of the WTO Agreement and of other FTAs, the formal is basically similar to the later. But The FTA does not provide ‘Special safeguard’ in connection with the importation of an agricultural product because the staple agricultural products are not included in the Schedules.
- The ‘general provisions’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section manifests that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e agreement, each Party retains its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WTO Agreement. The FTA provides an institutional mechanism with the adoption of clear and transparent criteria so as to prevent disguised trade restrictions from protecting domestic market.
- The absence of the lesser duty rule and the public interest clause, which are provided in other FTAs, causes worry that the FTA is short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frequent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measures by china.

Trade in Services

- Chapter 8 of the Korea-China FTA consists of sixteen main articles,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of the parties and two annexes

on co-production of film and co-production of TV drama, documentary and animation for broadcasting purposes.

- The service chapter follows the framework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of the WTO.
- Aberration from the GATS includes the absence of a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clause, the absence of a provision on government procurement, the absence of a provision on emergency safeguard measures, and vagueness on the recognition of non-violation complaints.
- Although Korea and China followed the approach of WTO/GATS in their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they agreed that a negative list approach would be taken in subsequent negotiations.

Financial Services

- The Korea-China FTA is similar to the Korea-EU FTA in its scope of openness, and it incorporates provisions from the Korea-US FTA and the Korea-EU FTA when necessary.
- Provisions related to financial services in the Korea-China FTA is generally similar to financial provisions in the Korea-US FTA, the Korea-Canada FTA, and the Korea-EU FTA. And, intended degree of openness of the Korea-China FTA is similar to that in the Korea-US FTA.
- The Korea-China FTA does not contain “most-favored-nation treatment,” and provisions related to new financial services. And, the Korea-China FTA enhances regulatory transparency in provisions related

to transparency, but it sets up relatively longer processing period than other FTAs.

Telecommunications

- General degree of openness in the Korea-China FTA aims to be similar to that in the Korea-US FTA. However, taking surrounding circumstances of both countries into account, some provisions are removed for flexibility.
- The Chapter that regulates telecommunication in the Korea-China FTA is generally similar to the Korea-US FTA, but some provisions such as Resale, Unbundling of Network Elements, and Forbearance are excluded from the Korea-China FTA.

Movement of Natural Persons

- The Korea-China FTA adjusts the interests of both parties in increasing personal exchanges between them and reducing a number of illegal aliens.
- While the Korea-China FTA permits a temporary entry of a natural person to their territory that promotes economic activities and investments, it excludes some provisions related to a grant of labor permit and other immigration issues.
- Scope of a natural person for a temporary entry in the Korea-China FTA is relatively narrower than that in the Korea-Canada FTA.

Investment

- Advancing the following three questions on the investment rules incorporated in Korea-China FTA (KCFTA), this chapter empirically analyses the investment rules using China's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BIT) practice and preferential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s (PTIA) practice:
 - First, how we can evaluate investment rules in the KCFTA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s PTIA and BIT?;
 - Second, what is the rationale and significance of including investment rules in the KCFTA instead of pursuing a standalone BIT?;
 - Third, considering so far China's practice of just recognizing pre-establishment MFN clause, what is the prospect for introducing pre-establishment national treatment clause to the KCFTA in the follow-up negotiations?

Electronic Commerce

- The chapter on electronic commerce is rather of a symbolic nature than a substance.
- A policy of separating economy from politics would help to improve the chapter in the future negotiation and fulfil the ideal of digital silk-road.

Competition

- The competition chapter stipulates principles in competition law enforcement such as transparency, non-discrimination, and procedural fairness, along with principles concerning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s to public enterprises and enterprises entrusted with special or exclusive rights, and cooperation in law enforcement.
- This is among the best competition chapter signed by China as well as by Korea in terms of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the rul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This Chapter adopts TRIPS plus provisions for the wider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it also imposes concrete procedural provisions in order to carry out its obligations.
- This Chapter protects well-known trademarks in a concrete manner, and thus, it becomes to secure the Korean well-known trademarks which are lesser-known in China.
- Both Parties recognize the discrepancy in ability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oth agrees to enhance cooperation, and thus, they establish the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the purposes of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is Chapter.

Environment

- Korea-China FTA provides high level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compliance with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enforcement

of environmental measures, promotion of bilateral cooper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Committee on Environment and Trade.

- Korea-China FTA has no clause on civil society participation which c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effective implementation under Environment chapter and effective improvement to enforcement of domestic environmental laws.
- It is required to have an appropriate implementation mechanism in relation to environmental matters under Korea-China FTA.
- It is a pity that Korea-China FTA has lack of provisions regarding consultations and environmental consultations procedures, even though environmental disputes shall be subject 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under the WTO system.

Economic Cooperation

- With a respect to the scope and numbers of agenda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the Chapter Economic Cooperation of Korea-China FTA has the most comprehensive and longest list, compared with other FTAs which two countries have concluded respectively.
- Next, it establishes a variety of contact points and channels for the implementation of cooperation agenda. However, it lacks in the provisions concerning the funding of financial resources and share of the expenses for cooperation programmes.

Transparency

- Korea-China FTA deals with publication, notification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administrative proceedings, review and appeal in order to enhance transparency.
- It is needed that Korea-China FTA will regulate the publication requirements in a more precise and concrete way.
- Having regard to provision of information, it will be better to keep a balance between promotion of transparency and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s, by laying down the prevention of disclosur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 It is necessary to require high levels of transparency measures to China for the purpose of having positive effects on our trade, in spite of ambiguous practice of law in China.

Dispute Settlement

- 'Korea-China FTA' provides a dispute settlement which is similar to the one of WTO Agreement and other FTAs. The dispute settlement chapter is applied to disputes except the ones relating to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SPS, TBT, competition, economic cooperation, and environment.
- 'Korea-China FTA' introduces diplomacy-oriented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the exclusion of other fora,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a mediation procedure for a certain non-tariff measure, the establishment · composition · function of the panel, the adoption and imple-

mentation of the panel report, the suspension of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limitation on private rights, and etc.

- Further development, on the other hand, is required to adopt non-violation complaints and the requirements of nullification or impairment in the dispute settlement, and to establish plain criteria of the scope of the right to information and technical advice, and the period relating to the suspension of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2. Coping with subsequent negotiations concerning the service and investment sectors

Overview

- The two countries agreed to start negotiations concerning the service and investment sectors within two years of the effectuation of the FTA and to end the negotiations within two years of their commencement.
- To help Korean businesses make more positive forays into the fast-growing Chinese service market, it can be said that subsequent negotiations concerning the service and investment sectors will form the core of the bilateral FTA.
- Thus, it is necessary to continue conducting research on the trend of China's service and investment-related domestic laws in order to develop an effective strategy.

Investment in general

-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Xi Jinping government in China toward the end of 2012, the country's foreign investment-related systems have undergone fundamental changes.
- The Chinese government enacted the new Foreign Investment Act for the equal treatment of domestic and foreign investors, and undertook a noticeable mitigation of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that used to act as stumbling block to foreign businesses making forays into the Chinese market as part of its forward-looking reforms.
-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business environment in China will be improved dramatically with the adoption of an investment liberalization system, particularly in free trade zones like Shanghai.

Legal service sector

- The level of legal market opening under the Korea-China FTA is similar to the level of legal market opening currently in place in the China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Under the domestic law associated with the Mainland and Hong Kong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CEPA), the level of legal market opening in Guangdong Province of China to Hong Kong and Macao is among the highest.
- The Chinese government's policies and laws concerning the opening of the legal market have changed very frequently, making it necessary to continue to monitor the country's relevant legal system until the commencement of the subsequent negotiations.

-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cluding a three-stage opening of the legal market in the FTA with China similar to that of the FTAs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in connection with the need for the level of legal market opening to be higher than that currently provided for under China's domestic laws in subsequent negotiations.

Financial service sector

- Recently,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accelerating its financial reforms, including the opening of the stock market, which has caught the world's attention.
- Under the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QFII) program, which represents a step toward the opening of China's stock market, the investment amount ceiling is being raised continuously. Recently, the Chinese government even adopted the new "Hu-Gang Tong" scheme to connect the domestic securities market with overseas markets.
- The Chinese government has started taking steps to amend the Bond Act for the first time in fifteen years in order to favor a more sound development of the stock market amid overheated speculation and the spread of illegal acts.
- We need to monitor the Chinese stock market more closely, as it is expected that steps for the relevant reforms and opening will be strengthened.

Environmental Services

- Although China-Switzerland FTA, China-Korea FTA and China-Australia FTA were concluded after them, they permitted investment

only in the form of joint venture. It means that the degree of liberalization of environmental services pulled back compared to before. Therefore, we need to negotiate by giving specific examples of FTAs with which China concluded.

- And China's domestic legislation in the sector of environmental services is not uniformed and has absence of clear standards. Hence, it is needed to ask to establish unified legislation and institutions.

□ Tourism and Travel, Cultural Services

- China has strictly restricted scope of business of foreign travel agencies in FTAs like WTO GATS. However, recently scope of business of foreign travel agency is liberalizing in Shanghai and Beijing.
- China permitted outbound business of travel agencies of Taiwan and Hongkong through China-Taiwan ECFA and China-Hongkong CEPA.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draw agreement regarding outbound business of Korean travel agencies when China and Korea resume negotiations on the services sector. It is because that outbound business depends on individual FTA according to article 8 of 《Rules on travel agency》 .
- China's Entertainment service market is opened to Korea for the first time through China-Korea FTA. However, we can not expect true effect of the liberalization of entertainment service because the Chinese government open only "other entertainment services". Therefore, it is needed to liberalize more comprehensive and extensive scope.

- Although China opened entertainment service, 《Rules on Commercial Performance management》 still has for foreign enterprises to perform strict rules and procedures, hence it is needed to remove them for the negotiations.

III. Expected Effect

-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a more effective execution of the Korea-China FTA and Korean businesses' more positive use of it through an analysis of its major chapters and an exploration of the focal points.
- The study will analyze China's service/investment-related domestic laws and policies to help the government establish a strategy for subsequent negotiations.
- The study, as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basic research paper, is also expected to be used as a reference material for in-depth study of the bilateral FTA.

▶▶ Key Words : Korea-China FTA, Rules of Origin, Trade Facilitation, SPS, TBT, Trade Remedy, Trade in Services, Financial Services, Telecommunications, Movement of Natural Persons, Investment, Electronic Commerce, Competi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nvironment, Economic Cooperation, Transparency, Dispute Settlement, Subsequent Negotiation in the Services and Investment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17
▣ 제 1 부 총 론	49
제 1 장 연구개요	5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3
1. 연구범위	53
2. 연구의 방법	54
참 고 문 헌	56
제 2 장 한-중 FTA 개관	57
제 1 절 한-중 FTA 타결의 의의	57
제 2 절 한-중 FTA 체계와 주요 내용	59
1. 한-중 FTA의 체계	59
2. 각 챕터의 주요 내용과 연구 내용 개관	63
제 3 절 한-중 FTA의 양국 국내비준 절차 및 발효 전망	83
제 4 절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관	86
1. 후속협상에 관한 합의내용	86
2. 서비스/투자 분야 중국 국내 정책 및 법제 연구 개관	89
참 고 문 헌	91

▣ 제 2 부 한-중 FTA 주요 챕터 분석	93
제 1 장 원산지 제도와 통관 절차 · 무역원활화	95
제 1 절 원산지 제도	95
1. 한-중 FTA 원산지분야 체계	95
2. 한 · 중 FTA 원산지 규정	96
3. 한 · 중 FTA 원산지 이행절차	108
4. 한 · 중 FTA 양허세율 및 품목별 원산지 기준	116
제 2 절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122
1. 한 · 중 FTA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체계	122
2. 한 · 중 FTA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규정	124
제 3 절 평가 및 시사점	129
참 고 문 헌	133
제 2 장 위생검역제도	135
제 1 절 국제경제법상 SPS조치의 규율 현황	135
1. WTO SPS협정의 의의	135
2. 주요 규정의 특징과 내용	136
제 2 절 한-중 FTA의 SPS조치 관련 규정 분석	140
1. 의 의	140
2. 개별 규정 분석	141
3. 소 결	147
제 3 절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 FTA의 관련 규정 비교	148

1. 한국의 기체결 FTA	149
2. 중국의 기체결 FTA	156
3. 소 결	164
제 4 절 한-중 FTA의 평가 및 시사점	168
1. 한-중 FTA 규정의 문제점	168
2. 한-중 FTA의 시사점 및 향후 과제	169
참 고 문 헌	169
제 3 장 TBT	171
제 1 절 무역기술장벽(TBT)의 의의	171
1. 기술규제와 무역 간의 관계	171
2. 무역기술장벽의 유형 및 대응방안	174
3. 중국에서의 무역기술장벽 현황	180
제 2 절 한-중 FTA의 TBT챕터의 주요 규정 분석	186
1. 의 의	186
2. 규정 전반 소개 및 핵심 조항 분석	187
제 3 절 한-중 FTA 포함 중국의 기타결 FTA에서의 TBT규정들 간의 비교 및 그 무역자유화 효과의 비교 평가	204
1. FTA TBT규정 및 그 무역자유화 효과의 비교 평가를 위한 기준 및 방법	204
2. 한-중 FTA 포함 중국의 기타결 FTA TBT 관련 규정의 비교 분석 및 그 무역자유화 효과의 비교 평가	209
제 4 절 한-중 FTA TBT챕터의 특징, 평가 및 향후 과제	226
1. 한-중 FTA TBT챕터의 특징 및 평가	226

2. 한-중 FTA TBT챕터의 성과 도출을 위한 과제	234
참 고 문 헌	235
제 4 장 무역구제	237
제 1 절 개 관	237
1. 무역구제제도의 의의	237
2. 한-중 FTA 무역구제제도의 체계	238
제 2 절 주요내용	239
1. 긴급수입제한조치	239
2. 반덤핑 및 상계관세	248
3. 무역구제위원회	255
제 3 절 평가 및 제언	256
1. 긴급수입제한조치	256
2. 반덤핑 및 상계관세	260
3. 무역구제위원회	265
참 고 문 헌	265
제 5 장 서비스 무역	267
제 1 절 개 관	267
제 2 절 챕터의 분석	269
1. 협정 본문에 대한 분석	269
2. 구체적 약속에 대한 분석	281
3. 평가 및 과제	320

제 3 절 결론: 시사점 및 대응방향	325
참 고 문 헌	327
제 6 장 금융서비스	329
제 1 절 개 관	329
제 2 절 조문내용 분석	334
1. 적용범위	334
2. 용어 정의	335
3. 내국민 대우	339
4. 시장 접근	340
5. 특정 정보의 취급	341
6. 건전성 예외	342
7. 투명성	343
8. 지급 및 청산제도	345
9. 건전성 조치 인정	346
10. 구체적 약속	348
11. 금융서비스 위원회	348
12. 협 의	349
13. 분쟁해결	350
14.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에 관한 사전협의	350
제 3 절 소 결	352
참 고 문 헌	352
제 7 장 통 신	353
제 1 절 개 요	353

제 2 절 조문내용 분석	355
1. 적용 범위와 다른 장과의 관계	355
2.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357
3. 상호접속 (제 10.4조)	360
4. 해저 케이블 시스템 (제 10.5조)	364
5.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 지배적 사업자의 경쟁보장 의무 (제 10.6조)	365
6. 규제기관 독립성 (제 10.7조)	367
7. 보편적 서비스 (제 10.8조)	368
8. 허가 절차 (제 10.9조)	369
9. 회소 통신 자원의 분배 및 이용 (제 10.10조)	370
10. 집행 (제 10.11조)	372
11. 통신 분쟁 해결 (제 10.12조)	373
12. 투명성 (제 10.13조)	375
13. 기술 및 표준 관련 조치 (제 10.14조)	377
14. 업계협약 (제 10.15조)	378
15. 국제로밍요금 (제 10.16조)	378
16. 국제기구와의 관계 (제 10.17조)	379
17. 정의(제10.18조)	379
 제 3 절 소 결	 381
참 고 문 헌	382
 제 8 장 자연인의 이동	 383
제 1 절 조문내용 분석	383
1. 정의(제1.1조)	383
2. 일반 원칙 (제 11.2조)	383

3. 일반적 의무 (제 11.3조)	384
4. 비자 원활화 (제 11.4조, 부속서 11-나)	386
5. 투자 원활화를 위한 특혜 약정 (부속서 11-다)	387
6. 일시 입국 허용 (제 11.5조, 부속서 11-가)	388
7. 투명성 (제 11.6조)	390
8.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위원회 (제 11.7조)	391
9. 분쟁해결 (제 11.8조)	392
10. 다른 장과의 관계 (제 11.9조)	393
제 2 절 소 결	394
제 9 장 투 자	395
제 1 절 한-중 투자챕터의 의의 및 비교법적 고찰	395
1. 개 요	395
2. 국제투자협정의 변화와 의의	396
3. 한-중 투자보장협정 및 3국투자협정	397
4. 중국의 기체결 투자협정	399
제 2 절 한-중 투자챕터의 비교법적 逐條 분석	401
1. 한-중 투자챕터 개관	401
2. 주요 협정과 조항별 비교	401
제 3 절 소 결	436
참 고 문 헌	437
제10장 전자상거래	467
제 1 절 개 관	467

제 2 절 주요 조문 분석	468
1. 일반원칙 (제13.1조)	468
2. 다른 장과의 관계	469
3. 무관세(제13.3조)	469
4.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제13.4조)	470
5. 전자상거래상의 개인정보보호	470
6. 종이 없는 무역 (제13.6조)	471
7. 협력 (제13.7조)	471
8. 분쟁해결의 비적용 (제13.9조)	471
제 3 절 평가 및 과제	472
제11장 경 쟁	475
제 1 절 개 관	475
제 2 절 주요 조문 분석	476
1. 목적 및 기본원칙	476
2. 반경쟁적 영업행위의 정의(제14.13조)	479
3. 투명성 (제14.4조)	480
4. 협력 및 분쟁해결	481
제 3 절 주요 특징 및 평가	485
1. 주요 특징	485
2. 평가와 과제	486
참 고 문 헌	488
제12장 지식재산권	489
제 1 절 개 관	489

제 2 절 주요 쟁점 및 분석	490
1. 일반 규정 (General Provisions)	490
2.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494
3. 상표 (Trademarks)	501
4. 특허 및 실용신안(Patent and Utility Model)	506
5.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508
6. 식물품종 보호 (Plant Variety Protection)	509
7. 디자인(Industrial Designs)	510
8. 지식재산권의 집행(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511
9. 그 밖의 규정(Other Provisions)	516
제 3 절 평가 및 과제	517
1. 저작권 보호기간	518
2. 방송신호 보호기간	518
3. 방송과 공중전달	519
4. 기술조치의 보호	519
5. 상 표	519
6. 특 허	522
7. 실용신안	524
8.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	524
9. 식물품종보호	526
10. 디자인	526
11. 지식재산권의 집행	527
참 고 문 헌	528

제13장 환 경	529
제 1 절 국제경제법상 환경에 대한 규율 현황	529
1. 의 의	529
2. 주요 규정의 특징과 내용	530
제 2 절 한-중 FTA의 환경 관련 규정 분석	534
1. 의 의	534
2. 개별 규정 분석	534
3. 소 결	542
제 3 절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 FTA의 관련 규정 비교	543
1. 한국의 기체결 FTA	544
2. 중국의 기체결 FTA	557
3. 소 결	559
제 4 절 한-중 FTA의 평가 및 시사점	562
1. 한-중 FTA 규정의 문제점	562
2. 한-중 FTA의 시사점 및 향후 과제	563
참 고 문 헌	563
제14장 경제협력	565
제 1 절 FTA에서의 “경제협력” 규율의 의의	565
1. FTA에서의 “경제협력”의제의 위치 및 도입 현황	565
2. FTA 경제협력 의제의 개념	569
제 2 절 한중FTA와 중·한·일 3국의 기타결 FTA들 간에 있어 경제협력 의제 규율체제 현황 비교 및 유형 모색 ...	572
1. FTA 경제협력 의제 규율체제의 의의	572

2. 한중FTA와 중·한·일 3국의 기타결 FTA들 간에 있어 협력이행메카니즘 규정 현황 비교	573
3. 한중FTA와 중·한·일 3국의 기타결 FTA들 간에 있어 경제협력의제 규정 방식 유형 현황 비교	580
제 3 절 한중FTA와 중국 및 한국의 기타결 FTA들 간에 경제협력 규정상 협력분야별 협력과제 범위 등 비교	587
1. 한중FTA 경제협력의제 상 협력분야별 협력과제 및 특징 ...	587
2. 한중FTA와 중국 및 한국의 기타결 FTA들 간의 경제협력규정상 협력분야별 협력과제 현황 비교	596
제 4 절 한중FTA 경제협력챕터의 평가 및 향후 과제	600
1. 특징 및 평가	600
2. 향후 과제 및 정책적 시사점	605
참 고 문 헌	606
제15장 투명성	607
제 1 절 국제경제법상 투명성의 규율 현황	607
1. 의 의	607
2. 주요 규정의 특징과 내용	608
제 2 절 한-중 FTA의 투명성 관련 규정 분석	611
1. 의 의	611
2. 개별 규정 분석	611
3. 소 결	616
제 3 절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 FTA의 관련 규정 비교	617
1. 한국의 기체결 FTA	617

2. 중국의 기체결 FTA	624
3. 소 결	629
제 4 절 한-중 FTA의 평가 및 시사점	633
1. 한-중 FTA 규정의 문제점	633
2. 한-중 FTA의 시사점 및 향후 과제	634
참 고 문 헌	634
제16장 분쟁해결제도	637
제 1 절 개 관	637
1. 분쟁해결제도의 의의	637
2. 한-중 FTA 분쟁해결제도의 체계	637
제 2 절 주요내용	638
1. 협 력	638
2. 적용범위	639
3. 분쟁해결 포럼의 선택	640
4. 협 의	640
5. 주선, 조정 또는 중개	642
6. 패널의 설치	643
7. 패널의 구성	644
8. 패널의 기능	647
9. 절차 규칙	647
10. 패널 절차의 정지 또는 종료	649
11. 패널 보고서	650
12. 패널의 최종 보고서의 이행	654
13. 합리적인 기간	655

14. 이행 검토	656
15.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657
16. 정지 이후의 절차	660
17. 사적 권리	661
제 3 절 평가 및 제언	661
1. 협정비위반 제소의 도입 여부	662
2. 무효화 또는 침해 표현의 미사용	663
3. 분쟁대상이 되는 조치의 범위	665
4. 분쟁해결 포럼의 선택	666
5. 비관세조치 중개절차의 도입	667
6. 정보 및 기술적 조언 요청권리	668
7.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670
참 고 문 헌	671
▣ 제 3 부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 대비 중국 법제 연구	675
제 1 장 중국 투자 규제	677
제 1 절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개관	677
제 2 절 최근 투자규제 현황 및 주요 내용	681
1. 외국투자법(外國投資法)	681
2. 특별관리조치목록	697
제 3 절 한-중 FTA 후속협상 대응방안	712
참 고 문 헌	713
제 2 장 법률 서비스 분야	719

제 1 절 중국의 법률시장 개관	719
1. 중국 국내로펌 현황	719
2. 외국로펌 진출 현황	721
제 2 절 중국의 법률시장 개방 관련 규제현황	724
1. 전국 단위	724
2. 자유무역시험구(自由贸易试验区)	732
3. 광둥-홍콩, 광둥-마카오 간 파트너십연합경영로펌 시범사업	746
제 3 절 한-중 FTA 후속협상 대응방안	754
1. 한-중 양국의 국내법상 법률시장 규제 비교	755
2. 한-중 FTA상 법률시장 개방 비교	758
3. 한-중 FTA 법률서비스 후속협상에 대한 시사점	761
참 고 문 헌	768
제 3 장 금융 서비스 분야	787
제 1 절 중국의 주식시장 개혁정책 개관	787
제 2 절 최근 주식제도의 현황 및 주요 내용	790
1. QFII의 확대	790
2. 후강통	799
3. 증권법(证券法)	809
제 3 절 한-중 FTA 후속협상 대응방안	817
참 고 문 헌	819
제 4 장 환경 서비스 분야	823

1. 환경서비스 시장의 현황과 시사점	823
2. WTO · FTA에 나타난 중국의 양허 수준	830
3. 한-중 FTA에서의 합의사항	833
4. 주요 환경서비스 분야 정책 및 법령	835
5. 후속협상 대응방안	845
참 고 문 헌	848
제 5 장 관광 · 여행 · 문화 서비스 분야	849
제 1 절 관광 및 여행서비스	849
1. 관광 및 여행서비스 시장의 현황과 시사점	849
2. WTO · FTA에 나타난 중국의 양허 수준	854
3. 한-중 FTA에서 중국 측 합의사항	859
4. 관련 정책 및 법규	861
5. 후속협상 대응방안	866
제 2 절 문화서비스	870
1. 문화서비스 산업 현황 및 시사점	870
2. WTO · FTA에 나타난 중국의 양허 수준	876
3. 한-중 FTA에서 문화서비스 분야 중국 측 합의사항	882
4.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의 외자 진입 규제 동향	894
5. 후속 협상 대응방안	906
참 고 문 헌	913
▣ 제 4 부 요약 및 결어	917
제 1 장 한-중 FTA 주요 챕터 분석 및 시사점 요약	919

제 1 절 상 품	919
제 2 절 서비스/투자	921
제 3 절 규범 및 경제협력	924
제 2 장 서비스/투자분야 중국의 법제 및 시사점 요약	927
제 1 절 투자일반	927
제 2 절 법률과 금융서비스	928
제 3 절 환경, 관광·여행 및 문화 서비스	931
제 3 장 결 어	933

제 1 부 총 론

제 1 장 연구개요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협상이 시작되어 작년 11월 실질적인 타결을 이룩한 한-중 FTA는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그러하듯 한-중 FTA의 체결 역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둘 다가 예상되고 있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한-중 FTA는 중국 내수시장 선점을 통한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동력 마련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한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를 확대시키고 한-중 FTA를 활용하기 위한 외국인의 국내 투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¹⁾ 또한 한-중 FTA는 미래 한-중 경제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제도적 틀로서 양국 경제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최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²⁾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한-중 FTA는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FTA 허브국가로서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발판으로서 작용하고, 한반도 역외가공지역(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산 지위 인정 등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 및 한반도 평화 안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³⁾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 이외에 저가의 중국산 농수축산물, 공산품의 수입 확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1)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 관계부처합동, 2015.3., 238면.

2) 앞의 자료, 238면.

3) 앞의 자료, 238면.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우리는 한-중 FTA의 체결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산·관·학·연 등 유관 기관과 전문가들 모두가 협력하여 기 타결된 한-중 FTA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한-중 FTA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의 분석과 연구가 요구된다. 우선 협정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활용 시 주의할 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관련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협정문상 개별 조문의 의미에 대한 분석, 그리고 중국의 한-중 FTA 이행상황을 체크하기 위한 중국 국내법제와 한-중 FTA에 대한 비교검토 등을 통해 중국측의 법제개선을 촉구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한-중 FTA 발효 후 예정된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기 타결된 한-중 FTA에서 Negative list 방식에 기초한 서비스/투자 통합유보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빈번하게 바뀌고 있으며, 자유무역시험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중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서비스/투자 분야에 관한 국내 법제와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중국측에 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한 개방요구안을 마련하고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한 중국의 규제와 관련 법제는 그 범위와 수량에서 매우 많고, 제정 및 시행 주체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개별 지방정부 차원의 규제와 법제도 많은 관계로 서비스/투자와 관련된 분야별 중국의 규제와 법제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상과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발효될 한-중 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 분석을 통해 한-중 FTA의 한-중 양국 내에서의 이행, 특히 한-중 FTA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 및 법제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중국의 서비스/투자 관련 분야별 국내법제를 분석하여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에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법제적 시사점 및 대응방안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해 타결된 한-중 FTA의 전체 협정문에 대한 조문 분석을 통해 한-중 FTA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이와 동시에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의 후속협상에 대비해 중국의 관련 국내법제와 정책을 연구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제1부 총론, 제2부 한-중 FTA 주요 챕터 분석, 제3부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 대비 중국의 국내법제 연구, 그리고 제4부 요약 및 결어, 총 4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제1부에서는 연구의 개요, 한-중 FTA의 형식과 주요 내용을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제2부에서는 한-중 FTA 전체 22개 챕터 중 법제적 분석의 필요성이 비교적 큰 챕터 중 17개 챕터, 즉 제3장 원산지 제도, 제4장 통관 및 무역원활화, 제5장 SPS, 제6장 TBT, 제7장 무역구제, 제8장 국경간 서비스, 제9장 금융, 제10장 통신, 제11장 자연인의 이동, 제12장 투자, 제13장 전자상거래, 제14장 경쟁, 제15장 지재권, 제16장 환경, 제17장 경제협력, 제18장 투명성, 제20장 분쟁해결제도에 관해 분석하였다. 이들 챕터 외에 서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19장 제도규정, 제21장 예외, 제22장 최종규정의 경우 법적 쟁점이 그다지 많지 않고, 또한 다른 챕터에서도 다루어질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본 보고서의 제2부에서 상세히 다루지 않고 제1부 제2장 한-중 FTA 개관 부분에서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수준에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제3부에서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에서 쟁점이 될 수 있거나 우리나라 기업의 대 중국 진출 유망산업으로 평가되는 등 중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여, 제1장 투자 일반, 제2장 법률서비스 분야, 제3장 금융서비스 분야, 제4장 환경서비스 분야, 제5장 관광·여행·문화 서비스 분야 등 총 5개 분야에 관한 중국의 국내 법제 및 정책을 분석하고 후속 협상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부에서는 제2부와 제3부에서 분석한 한-중 FTA 주요 챕터의 분석결과,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요약하고, 한-중 FTA 발효 이후의 과제를 제시하면서 연구를 마무리 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한-중 FTA 협정문과 각종 관련 자료에 대한 문헌조사분석 방법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중심내용은 제2부 한-중 FTA 주요 챕터 분석과 제3부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에 대비한 중국 국내법제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제2부 FTA 주요 챕터 분석에서는 한-중 양국의 기체결 FTA, 특히 한국의 경우 한미, 한-EU FTA와 중국의 경우 중-스위스, 중-호주 FTA 등 주로 선진국과 체결한 FTA를 비교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분석을 진행하여 한-중 FTA의 법제도적 특징과 시장개방 수준 등을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제3부에서는 중국의 투자법제일반, 법률서비스, 금융서비스, 환경, 문화관광 등 우리나라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투자 분야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법제뿐만 아니라 최근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험적 차원의 제도개혁 동향까지 흠어져 있는 중국의 관련 국내법제를 조사하여 비교분석함으

로써 해당 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한 최신 규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그 연구범위가 매우 넓은 관계로 총 11명의 연구진이 분업과 협업을 적절히 안배하여 높은 수준의 공동연구형식으로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책임자는 개별 파트에 대한 집필책임과 연구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통합정리를 수행하였으며 각 파트별 연구자는 자기가 맡은 챕터를 책임집필하고 상호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전체적인 연구의 구성과 집필방법 등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각 장별 집필책임 및 집필 분량은 아래의 [표 1-1-1]과 같다.

<표 1-1-1> 보고서의 목차 및 연구진 구성

목 차	집필책임
제1부 총론	
제1장 연구개요	이기평
제2장 한-중 FTA 개관	
제2부 한-중 FTA 주요 챕터 분석	
제1장 원산지 제도와 통관·무역원활화	임목삼
제2장 SPS	이주윤
제3장 TBT	고준성
제4장 무역구제	박언경
제5장 서비스무역	정찬모
제6장 금융서비스	이상모
제7장 통신	
제8장 자연인의 이동	
제9장 투자	김대원
제10장 전자상거래	정찬모
제11장 경쟁	
제12장 지식재산권	오선영

제1부 총론

목 차	집필책임
제13장 환경	이주윤
제14장 경제협력	고준성
제15장 투명성	이주윤
제16장 분쟁해결제도	박언경
제3부 한-중 FTA 서비스/투자분야 후속협상 대비 중국 법제 연구	
제1장 투자일반	권혁재
제2장 법률 서비스 분야	이기평
제3장 금융 서비스 분야	권혁재
제4장 환경 서비스 분야	류예리
제5장 관광·여행·문화 서비스 분야	
제4부 요약 및 결어	
제1장 한-중 FTA 주요 챕터 분석 및 시사점 요약	이기평
제2장 서비스/투자분야 중국의 법제 및 시사점 요약	
제3장 결어	

참고문헌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 관계부처합동, 2015.3.

제 2 장 한-중 FTA 개관

제 1 절 한-중 FTA 타결의 의의

2015년 6월 1일 한-중 FTA의 정식서명 이후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밝힌 한-중 FTA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¹⁾ 첫째, 한-중 자유무역지대의 성립은 양국 간 상업활동과 경제무역거래의 자유화, 편리화 및 규범화를 가속화하고 한-중 양국의 경제무역관계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도록 추동할 것이다. 둘째, 한-중 자유무역지대의 성립으로 인한 양국 간 무역장벽의 취소 또는 완화는 한-중 양국의 경제산업체인의 전면적 융합을 촉진할 것이다. 셋째, 지역경제통합의 추진을 통해 새로운 발전을 실현할 것이다. 즉 한-중 자유무역지대는 전체 동북아지역의 첫 번째 자유무역지대로서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RECP 내지 미래의 아태자유무역지대의 추진을 위한 중요한 일보를 내디딘 것으로 동아시아와 아태지역경제통합의 가속화에 긍정적인 시범효과를 가질 것이며, 특히 한-중 자유무역지대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와 한국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구상의 중요한 연계점으로서 양국이 공동으로 ‘일대일로’건설과 유라시아대륙경제융합을 추동하는데 있어 중요한 추동작용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중 FTA의 의의에 대한 한-중 양국의 공통 인식 이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중 FTA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질 것이다.²⁾ 우선 국내 경제적 측면에서는, 첫째, FTA 체결 상대국을 기준으로 한-미 FTA와 한-EU FTA에 이어 이번에 한-중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였다는 점, 둘째, 10.4조 달러 규

1) 중국상무부의 “중국자유무역지대서비스망(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韩民国政府自由贸易协定50问 http://fta.mofcom.gov.cn/korea/korea_changjianwenti.shtml (최종검색일: 2015.09.01.)

2) 한-중 FTA 가서명 참고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5.2., 4면.

모의 거대시장인 중국시장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가능하다는 점, 셋째, 통관·시험인증·지재권 분야 등에서의 중국의 높은 비관세장벽 해소, 넷째, 건설·환경·엔터테인먼트·유통·법률 등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의 개방 확대를 통한 우리기업의 진출 기회 마련 등이 기대되고,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한-중 FTA는 아태지역 경제 통합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핵심축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한반도 역외가공지역(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산 지위 인정 등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 및 한반도 평화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된다.

물론 이와 같은 긍정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협상 결과에 대한 아쉬움 또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이번 한-중 FTA에서는 자동차를 비롯해 양국이 민감한 산업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관세 철폐 품목이 축소되는 바람에 양국의 관세 철폐 범위가 높지 않고, 또한 관세 철폐 속도도 빠르지 않아 한-중 FTA 효과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있다.³⁾ 또한 농수축산부문의 경우 한-중 FTA 타결로 전체 농수축산물 수입액 가운데 FTA 체결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4%에서 80%로 높아지게 되면서 우리 농수축산 분야가 더욱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와 함께, 특히 중국의 경우 지리적으로 가까운데다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마음만 먹으면 집중 공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⁴⁾

이처럼 한-중 FTA의 타결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는 그 나름의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책을 강구하여 대비하고, 반대

3) 허재환, 한-중 FTA 타결의 의미와 기회, KDB DAILY 경제분석, 2014.11., 1면.

4) 한-중 FTA 타결...농업분야 협상결과 분석, 농민단체 “FTA전에도 큰 피해...몇 년 내 농업 존립 위기 올 것”, 농업인신문, 2014년 11월 14일 (금) 13:37:20, <http://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888> (최종검색일: 2015.09.02.)

로 기대는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기 타결된 한-중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한-중 FTA의 가장 큰 수혜영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운송/항공, 문화/관광, 콘텐츠산업 등 서비스업⁵⁾ 관련 후속 협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제 2 절 한-중 FTA 체계와 주요 내용

1. 한-중 FTA의 체계

한-중 FTA는 총 22개 장과 6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서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와 시장접근(부속서 2-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제3장 원산지 제도(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4장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제7장 무역구제, 제8장 서비스무역(부속서 8-가 구체적 약속, 부속서 8-나 영화 공동제작, 부속서 8-다 방송용 TV 드라마,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제9장 금융서비스, 제10장 통신, 제11장 자연인의 이동, 제12장 투자, 제13장 전자상거래, 제14장 경쟁, 제15장 지식재산권, 제16장 환경과 무역, 제17장 경제협력, 제18장 투명성, 제19장 제도규정, 제20장 분쟁해결, 제21장 예외, 제22장 최종규정(부속서 22-가 후속 협상을 위한 지침)이다. 이와 같은 한-중 FTA의 챕터구성을 우리의 한-미 FTA 등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먼저 한-중 FTA는 챕터의 구성면에서 중국의 기체결 FTA 중 가장 많은 수의 챕터를 배치한 포괄적인 FTA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챕터의 수와 체계 측면에서 22장으로 구성된 한-중 FTA를 24장으로 구성된 한-미 FTA와 단순비교하면 한-중 FTA는 한-미 FTA에 2개 챕터가 적는데 이에 따라 한-중 FTA는 한-미 FTA에는 약간

5) 허재환, 한-중 FTA 타결의 의미와 기회, KDB DAILY 경제분석, 2014.11, 5면.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⁶⁾ 또한, 중국이 가장 최근에 선진국과 체결한 FTA인 중-스위스, 중-호주 FTA와 비교하면, 중-스위스 FTA가 16개 챕터, 중-호주 FTA가 17개 챕터로 양자가 비슷하지만 이를 한-중 FTA 22개 챕터와 비교하면 한-중 FTA의 규율범위가 대폭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한-중 FTA에서는 중국의 기존 FTA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분야를 포함시켰다. 예컨대 금융서비스와 통신 분야는 비교적 최근이면서 선진국인 스위스와의 FTA뿐만 아니라 한-중 FTA와 유사한 시기에 체결된 중-호주 FTA에서도 독립챕터 형식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자연인의 이동, 전자상거래, 투명성, 예외 등의 챕터는 중-호주 FTA에서는 포함되었지만 중-스위스 FTA에서는 포함되지 않았고, 반대로 환경과 무역, 경제협력는 중-스위스 FTA에는 포함되었지만 중-호주 FTA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한-중 FTA에서는 이들 모두를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한-중 FTA 부속서에는 한-중 양국 간 교류협력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한 부속서들이 포함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중 FTA에는 총 5개의 부속서가 포함되었는데, 이중 부속서 8-나 영화 공동제작, 부속서 8-다 방송용 TV 드라마,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2 부속서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규정들은 한-중 양국의 다른 기체결 FTA에서는 보기 드문 것으로서⁷⁾, 한류의 중심국가라고 하는 중국에서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특별히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⁸⁾

6) 이렇게 2개 챕터가 적은 것은, 한-미 FTA에서 독립적인 장으로 포함된 농업, 섬유, 의약품, 정부조달, 노동 챕터 등 5개 챕터가 한-중 FTA에서는 없으며, 반대로 한-중 FTA에서는 독립된 장으로 다루고 있는 자연인의 이동과 경제협력 챕터 등 2개 챕터가 한-미 FTA에는 없어 한-중 FTA가 3개 챕터가 적으나, 제도규정과 분쟁 해결을 한-중 FTA에서는 각각 독립된 장으로 구성하여 2개 챕터가 된 반면 한-미 FTA에서는 이들을 1개의 챕터로 규정함으로써 생긴 결과이다.

7) 다만, 한-EU FTA에서는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한-중 FTA상 상기 부속서의 내용과 유사하다.

8)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 관계부처합동, 2015.3., 261면.

셋째, FTA에서 통상 협정 이행에 관한 접촉선 및 각종 위원회 등 협의메커니즘을 규정한 ‘제도 규정’을 한-중 FTA에서는 하나의 독립된 챕터로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 정부의 한-중 FTA 목표 중 하나인 한-중 간 교역에 있어서의 제도적 기반 구축이라는 협상 목표를 중시한 결과로 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별도로 언급하도록 한다. 참고로 한-미, 한-EU FTA에서는 제도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한-미의 경우 제22장 분쟁해결 조항과 함께, 한-EU의 경우 제15장 최종조항과 함께 각각 규정하고 있다.

끝으로 시장개방 수준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분야인 중국의 서비스/투자 시장에 대해 한-중 FTA는 포지티브 목록(Positive List) 방식의 양허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기대했던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협정 발효 후 2년 내에 “양 당사국은 후속 협상에서 서비스 무역 및 투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각각의 부속서와 다른 장의 규범에 관한 관련 규정들을 포함하여, 특히 제8장(서비스 무역), 제9장(금융서비스) 및 제12장(투자)”에 관해 “투자의 설립 전 단계 및 공급형태 3의 서비스 무역을 포함하는 네거티브 목록 방식에 기초하여” 서비스/투자 통합유보안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⁹⁾ 이는 중국의 FTA 체결 역사상 최초로 서비스 분야 Negative 목록 방식에 의한 시장개방 합의로서 평가되며¹⁰⁾, 따라서 이후 추가협상에 따라 현행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투자 분야의 시장개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9) 한-중 FTA 제22장 최종규정, 부속서 22-가 후속 협상을 위한 지침, 가. 일반원칙, 1, 2, 3.

10)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 69면.

제1부 총론

<표 1-2-1> 한-중 FTA와 한중 양국의 주요 기체결 FTA 챕터 비교

FTA 챕터	한-EU	한-미	한-중	중-스위스	중-호주
본문 챕터	15장	24장	22장	16장	17장
최초규정 및 정의	O	O	O	O	O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와 시장접근	O	O	O	O	O
농업	△	O	X	X	X
섬유	X	O	X	X	X
의약품	△	O	X	X	X
원산지 제도	△	O	O	O	O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O	O	O	O	O
SPS	O	O	O	O	O
TBT	O	O	O	O	O
무역구제	O	O	O	O	O
서비스무역	△	O	O	O	O
금융서비스	△	O	O	X	X
지급 및 자본의 이동	O	△	△	△	△
통신	△	O	O	X	X
자연인의 이동	△	X	O	X	O
투자	△	O	O	O	O
전자상거래	△	O	O	X	O
경쟁	O	O	O	O	O
정부조달	O	O	X	X	X
지식재산권	O	O	O	O	O
노동	△	O	X	X	X
환경과 무역	O	O	O	O	X
경제협력	X	X	O	O	X
투명성	O	O	O	X	O
제도규정	△	△	O	O	O
분쟁해결	O	△	O	O	O

FTA 챕터	한-EU	한-미	한-중	중-스위스	중-호주
예외	△	O	O	X	O
최종규정	△	O	O	O	O
부속서					
2-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O	O	O	O	O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O	O	O	O	O
8-가 구체적 약속(서비스 양허)	O	O	O	O	O
8-나 영화 공동제작 - 부록-나-1: 이행약정	△	X	O	X	X
8-다 방송용 TV 드라마,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	X	O	X	X
22-가 후속 협상을 위한 지침	X	X	O	X	X

자료: 필자 작성

주) O: 포함; X: 불포함; △: 다른 챕터에 통합 또는 부속서에서 규정

2. 각 챕터의 주요 내용과 연구 내용 개관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중 FTA는 서문 외에 총 22개 챕터 5개 부속서로 이루어져있다. 여기서는 각 챕터를 개관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의 제2부에서 별도로 분석하지 않은 서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19장 제도규정, 제21장 예외, 제22장 최종규정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히 기술하였다.

(1) 서 문

서문은 통상 협정의 기본정신 및 원칙을 규정하며, 이러한 서문의 내용은 협정문의 개별 조문을 해석할 때 고려되고 해당 FTA의 전반

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한-중 FTA서문은 명확한 어조로 무역·투자 자유화를 강조하기 보다는 대체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양국 간의 협력, 상호이익, 고용, 복지, 생활수준 향상, 지속가능 발전 등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조화로운 발전의 추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중 FTA의 전반적인 목적이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실현하는데 있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중 FTA 서문에서는 ① 양국의 오랜 우정과 강한 경제무역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강화; ② 한-중 자유무역지대가 상품·서비스를 위한 안정적이고 확장된 시장 창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 창출, 세계시장에서의 양국 기업의 경쟁력 증진에 기여; ③ FTA가 당사국의 상호이익 창출 및 국제무역에 기여; ④ 상호유익하고 명확한 무역규칙의 제정; ⑤ 양국 간 무역투자확대를 통해 양국의 생활수준제고, 경제성장과 안정 증진, 고용기회 창출, 보편 복지 향상; ⑥ 경제·사회발전 및 환경 보호가 지속가능발전의 상호의존·상호보완적 구성요소이며 긴밀한 경제동반자 관계가 지속가능 발전의 증진에 기여; ⑦ 지역경제협력·통합의 촉진 및 증진 추구를 서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중 FTA 서문은 무역·투자 자유화를 분명한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는 한-미 FTA 서문과 명확히 대비 된다. 예컨대 한-중 FTA 서문의 ①, ②, ③, ⑤의 내용은 한-미 FTA에서도 거의 동일하지만, ④의 경우 한-미 FTA에서는 상호유익하고 명확한 무역규칙 제정 이외에 “양국 영역간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의 축소 또는 철폐를 추구”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으며, 또한 한-중 FTA 서문에는 없는 내용으로서,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하여 무역에 대한 장벽을 제거....., 이 협정의 혜택을 축소할 수 있는 양국 영역간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의 설치를 회피하기로 결의”, “노동 및 환경 법과 정책의 개발과 집행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와 지속가

능한 발전을 증진하며, 이 협정을 환경보호 및 보전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행”,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 축소를 추구” 등의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¹¹⁾

(2) 제1장 최초규정 및 정의

제1장(최초규정 및 정의)은 협정문 전체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상황으로서 WTO 협정과의 관계, 협정의 목적, 협정의 영역적 적용범위 등이 규정된다. 한-중 FTA에서 제1장은 2개 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절 최초규정에서는 1994년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 및 GATS(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5조에 합치되는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제1.1조), 목적(제1.2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제1.3조), 의무의 범위(제1.4조), 영역적 적용범위(제1.5조) 등 5개 조와 제2절 정의(제1.6조)에서는 협정 전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두고 있다. 이들 중 협정 이행 과정에서 비교적 의미가 있는 조항은 의무의 범위와 영역적 적용 정도이다. 먼저 의무의 범위(제1.4조)에서는 “양 당사국은 각국의 지방 정부에 의한 이 협정상 모든 의무와 약속의 준수를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 협정의 규정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보장한다.”고 하여 중국 지방정부도 한-중 FTA의 의무당사자로 명시하였다. 두 번째로 영역적 적용범위(제1.5조)에서는 한-중 양국의 영역적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에 대해 “이 협정은 육지, 내수, 영해 및 상공

11) 한-미 FTA 서문. 한편, 한-미 FTA 서문에는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의 보호가 미합중국에 있어서와 같이 이 협정에 규정된 것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 외국 투자자는 국내법에 따른 국내투자자보다 이로써 투자보호에 대한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한-미 FTA상 외국인투자 보호 수준은 국내법상 내국인 투자 보호 수준을 초과하는 것, 즉 내국인 투자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동 규정이 적용된다(한미 FTA 상세설명자료, 외교통상부, 2011.7., 1면.).

을 포함한 중국의 전체 관세영역, 그리고 중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영해 밖의 지역에 적용된다.”고 하여, 중국 본토(mainland)와 별도의 관세영역인 홍콩, 마카오 등에는 한-중 FTA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¹²⁾

(3)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2장은 상품 무역 전반에 관한 제도와 관세양허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한-중 FTA에서는 시장접근에 관한 각종 의무사항을 규정한 본문인 6개절 16개 조문과 양국의 품목별 관세철폐 기간 및 양허유형을 규정한 「부속서 2-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구성되어 있다. 제1절(공통규정)에서는 적용범위(제2.1조), 정의(제2.2조)를, 제2절(내국민 대우)에서는 내국민 대우(제2.3조)를, 제3절(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서는 관세 인하 또는 철폐(제2.4조), 동결(제2.5조)을, 제4절(특별 제도)에서는 상품의 일시 반입(제2.6조), 광고 목적이거나 견본으로 사용되는 상업적 가치가 없는 물품의 무관세 반입(제2.7조)를, 제5절(비관세 조치)에서는 수입 및 수출 제한(제2.8조), 수입허가(제2.9조), 행정 수수료 및 형식(제2.10조), 국영무역기업(제2.11조), 무역 관련 비관세 조치(제2.12조), 작업반 설치(제2.13조), 관세율 할당의 운영(제2.14조), 시험소 지정(제2.15조)을, 제6절(제도 규정)에서는 상품무역위원회(제2.16조)에 관해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FTA 협상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인 상품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으로 중국측은 90.7%, 우리측은 92.1%이며, 수입액 기준으로 중국측은 85%, 우리측은 91.2%”¹³⁾로서 대체로 우리측의 자유화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한-중 FTA 상품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협상 이슈였던 “농수산품의 자유

12)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 관계부처합동, 2015.3, 5면.

13)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 관계부처합동, 2015.3, 239면.

화율(즉시 철폐~20년 내 철폐)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서 우리나라 기체결 FTA중 가장 낮은 수준(10개국 평균 품목수 78.1%, 수입액 89%)¹⁴⁾으로 합의되었다.

다음으로,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각급 행정기관에 의해 취해지는 각종 무역 관련 비관세조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협의메커니즘으로서 비관세조치작업반을 상품무역위원회 산하에 설치할 것을 합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자국의 비관세조치의 투명성 보장,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비관세조치의 공표와 발효일 사이에 합리적인 유예기간을 허용하여(제2.12조) 수입국의 비관세조치의 채택과정에서 수출국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을 제고하였다.¹⁵⁾ 이 때 비관세작업반은 양 당사국 간의 무역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하고, 가능하면 12개월 내에 권고를 포함하여 그 검토 결과를 당사국에게 제출하고, 작업반의 검토결과와 권고사항은 검토와 조치를 위해 상품무역위원회에 제출된다(제2.13조).

마지막으로, 한-중 FTA 상품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는 식품·화장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상호 인정에 관한 협의 조항을 포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법률 체제의 규정과 요건을 고려하여, 관련 당국은 식품과 화장품 분야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시험소 지정을 통한 시험 결과의 상호 인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장려한다.”(제 2.15조)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협상 결과가 시험검사기관의 상호인정에 관한 논의의 장려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러한 합의에 따라 향후 우리의 식품·화장품의 대중 수출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까다로운 중국의 검사인증기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4)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 관계부처합동, 2015.3, 239면.

15)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 관계부처합동, 2015.3, 9면.

(4)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 절차

일반적으로 FTA에서 상품의 원산지 분야는 원산지 규정과 원산지 절차로 구분한다. 원산지 규정은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며, 원산지 절차는 원산지증명, 특혜관세 적용, 원산지 검증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한-중 FTA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 절차에서는 원산지 규정(제1절)과 원산지이행절차(제2절)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고, 부속서 3-A에서는 HS 6단위별로 제1류에서 제97류까지 원산지결정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부속서 3-B에서는 역외가공 허용 물품(310개), 부속서 3-C에서는 원산지 증명서 서식과 작성요령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원산지 규정과 원산지 이행 절차, 양허 세율 및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중심으로 협정의 구성체계를 대표하는 미국, EU, ASEAN과의 FTA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5)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4장(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은 전체 1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보면 정의(제4.1조), 적용범위 및 목적(제4.2조), 원활화(제4.3조), 일관성(제4.4조), 투명성(제4.5조), 관세평가(제4.6조), 품목 분류(제4.7조), 관세협력(제4.8조), 재심 및 불복청구(제4.9조), 사전심사(제4.10조), 벌칙(제4.11조), 자동화시스템의 사용(제4.12조), 위험관리(제4.13조), 상품의 반출(제4.14조), 특송화물(제4.15조), 통관사후 심사(제4.16조), 비밀유지(제4.17조), 협의(제4.18조), 관세위원회(제4.19조)에 관한 조문이다. 이들 조문은 크게 4가지, 즉 국제표준, 통관원활화, 납세자의 권리, 행정절차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한-중 FTA에서는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 절차와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는 2개의 독립된 챕터로 배치되어 있지만 양자의 깊은 관련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챕터로 구성하여 기술하였다.

(6)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이하 SPS 챕터)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한-중 FTA 제5장은 총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목적(제5.1조), 적용범위와 정의(제5.2조), SPS협정의 재확인(제5.3조), 기술협력(제5.4조), SPS위원회(제5.5조), 분쟁해결의 비적용(제5.6조)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WTO SPS협정의 적용 재확인, 위생검역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추구, 이행을 위한 위원회 설립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WTO SPS협정을 개관하면서 무역규범에서 SPS협정의 의의를 살펴본 후 한-중 FTA SPS협정을 한중 양국의 기체결 FTA SPS 챕터와 비교분석하였다.

(7)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이하 TBT 챕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챕터는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규범이다. 한-중 FTA TBT 챕터는 총 15개의 조문으로 구성하고, 구체적으로 목적(제 6.1조), 적용범위 및 정의(제6.2조), WTO TBT 협정의 확인(제6.3조), 표준(제6.4조), 기술규정(제6.5조), 적합성 평가절차(제6.6조), 투명성(제 6.7조), 협력(제6.8조), 소비자 제품 안전(제6.9조), 이행약정(제6.10조), 표시 및 라벨링(제6.11조), 국경조치(제6.12조), TBT 위원회(제6.13조), 정보교환(제6.14조), 분쟁해결의 비적용(제6.15조)에 관한 조문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무역장벽에 관한 기본 이론에서부터 한-중 FTA TBT 조문별 분석, 한중 양국의 기체결 FTA TBT 챕터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한-중 FTA TBT 챕터를 상세히 분석하였다.

(8) 제7장 무역구제

무역구제제도는 WTO 체제의 이념 중의 하나인 공정무역의 실현을 위한 제도로서 공정무역규범으로도 불린다. 한-중 FTA 제7장 무역구제에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무역구제위원회 등의 3개의 절에서 공정무역규범의 실현을 위한 내용과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1절 긴급수입제한조치에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제7.1조), 조건 및 제한(제7.2조), 잠정 조치(제7.3조), 보상(제7.4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제7.5조), 정의(제7.6조)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절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서는 일반규정(제7.7조), 통보 및 협의(제7.8조), 약속(제7.9조), 실사(제7.10조), 공청회(제7.11조), 재심에 의한 종료 후 조사(제7.12조), 누적적 평가(제7.13조), 신규 공급자 재심에 적용 가능한 미소기준(제7.14조)이 규정되어 있으며, 마지막 절인 제3절 무역구제위원회에서는 무역구제위원회(제7.15조)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상 무역구제제도를 WTO 협정,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상 무역구제제도와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9) 제8장 서비스 무역

한-중 FTA 제8장에서 규정하는 서비스 무역 챕터는 일부 FTA에서는 ‘국경간 서비스 무역’이라는 챕터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나¹⁶⁾ 모두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중 FTA 제8장 서비스 무역 챕터는 본문 16개조와 3개의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다. 본문은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을 규정한 WTO 서비

16) 예컨대 한-미 FTA, 한-호주 FTA 등 주로 연방국가와 맺은 FTA에서 ‘국경 간 서비스 무역’이라는 챕터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FTA상 서비스가 국경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명확히 하여 연방 내 주간 이루어지는 서비스 무역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과 유사한 내용으로 양국 간 서비스 무역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문은 정의(제8.1조), 적용범위(제8.2조), 시장접근(제8.3조), 내국민대우(제8.4조), 추가적 약속(제8.5조), 구체적 약속 양허표(제8.6조), 국내적 규제(제8.7조), 투명성(제8.8조), 인정(제8.9조), 지불 및 송금(제8.10조), 혜택의 부인(제8.11조), 보조금(제8.13조), 서비스무역위원회(제8.14조), 영업 관행(제8.15조), 접촉선(제8.16조)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부속서는 양국의 서비스 분야별 시장개방에 관한 구체적인 약속을 WTO GATS의 양허안과 같은 Positive list 방식으로 규정한 “부속서 8-가 구체적 약속”과 영화공동제작에 관한 협력을 규정한 “부속서 8-나 영화공동제작”, 방송드라마 등 영상물 공동제작 협력에 관한 “부속서 8-다 방송용 TV 드라마,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등 3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서비스 무역 관련 규정들 모두를 한국의 기체결 FTA상 관련 규정뿐만 아니라 중국이 한-호주 FTA와 비슷한 시기에 타결시킨 중-호주 FTA의 서비스 무역 챕터와도 비교분석하여 보다 입체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10) 제9장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 문제는 대체로 민감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으로서, 특히 중국과 같이 서비스 산업이 낙후된 국가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기체결 FTA에서 금융서비스 챕터를 독립된 챕터로 배치한 사례는 없었는데¹⁷⁾, 이번 한-중 FTA에서 중국은 처음으로 금융서비스 챕터를 독립적으로 구성하는데 합의한 것이다.¹⁸⁾ 구체적으로 한-중 FTA 제9장(금융서비스)는 총14개 조항과

17) 특히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슷한 시기에 타결된 중국-호주 FTA에서도 한-중 FTA와 달리 금융서비스에 관한 독립 챕터를 두고 있지 않고 기존대로 부속서에서 금융서비스를 규율하고 있는 점은 상당히 흥미롭다.

18) FTA에서 어떤 분야에 대해 독립적인 챕터를 배치한다고 해서 반드시 높은 수준

부속서(구체적 약속)로 구성되며,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 의무와 관련이 있는 금융 양허는 서비스 양허인 부속서 9-가에 규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 양국의 기체결 FTA상 금융서비스 규정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중 FTA 금융서비스 챕터의 주요특징 등을 분석하였다.

(11) 제10장 통신서비스

통신 서비스는 그 자체가 서비스 교역활동이면서 동시에 다른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수단이기 때문에, 통신 서비스 자유화 관련 사항은 서비스 챕터에서 다루고, 통신 챕터는 경제활동의 토대로서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속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중 FTA 제10장 통신서비스 총1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서 언급한 금융서비스 챕터와 마찬가지로 한-중 FTA에서 중국이 체결한 FTA 중 처음으로 통신 분야에서 독립된 챕터로 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상 통신서비스 챕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2) 제11장 자연인의 이동

자연인의 이동 챕터는 양 당사국 간의 특혜 무역 관계,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자연인의 일시 입국을 촉진하고 일시 입국에 대한 투명한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며, 국경 안전을 보장하고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국내 노동력과 영구적 고용을 보호할 필요성 등에 관해 규정한다. 한-중 FTA 제11장 자연인의 이동 챕터는 본문 9개 조문과 3개의 부속서 및 1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본문은 정의, 일반 원칙, 일반적 의무, 비자원활화, 일시 입국의 허용, 투명성, 자연인의

으로 개방을 약속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협정문을 보면 통상 독립적인 챕터를 구성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특히 보다 많은 조문을 구성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제도적 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챕터 구성의 의의가 있다할 것이다.

이동에 관한 위원회, 분쟁해결 및 다른 장과의 관계에 관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속서는 양국의 ‘구체적 약속’(부속서 11-가) 및 동 부속서에 따른 부록으로서 ‘계약서비스 공급자 목록’(부속서 11-가-1), 비자원활화(부속서 11-나), 그리고 투자원활화를 위한 특혜약정(부속서 11-다)이다.

(13) 제12장 투자

제12장(투자)는 총 19개 조문과 3개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다. 본문 19개 조문은 정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대우의 최소기준, 법원에의 접근, 이행요건 금지, 투명성, 수용 및 보상, 송금, 대위변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 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안보예외, 혜택의 부인, 환경조치, 투자위원회, 서비스-투자 연계,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접촉선에 관한 조항이다. 부속서는 국제관습법, 수용, 그리고 송금에 관한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 이후 중국이 체결한 양자간 투자협정(BIT)의 변화 추이와 FTA내의 투자협정과 관계를 다루었고 한국과 관련해서는 2007년 개정된 한-중 투자협정과 2011년 한-중-일 3국 투자협정을 다루었다. 또한 위의 비교대상을 통해 한-중 투자챕터의 내용을 주요 요소별로 축조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14) 제13장 전자상거래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한-중 FTA 전자상거래 챕터는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일반원칙, 다른 장과의 관계, 무관세,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전자상거래의 개인정보보호, 종이 없는 무역, 협력, 정의 및 분쟁해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대체로 선언적 수준에서 규정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와 비교를 중심으로 간략히 분석하였다.

(15) 제14장 경쟁

당사국의 경쟁정책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는 경쟁 챕터는 총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목적, 경쟁법과 경쟁당국, 법 집행 원칙, 투명성, 경쟁법의 적용, 법 집행 협력, 통보, 협의, 정보의 교환, 기술협력, 경쟁법 집행을 독립성, 분쟁해결, 반경쟁적 영업행위의 정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 양국의 주요 기체결 FTA상 경쟁 챕터와 비교분석하여 한-중 FTA 경쟁 챕터의 주요 특징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16) 제15장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분야는 한-중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관심가지고 있는 중점 협상 분야 중 하나였다. 한-중 FTA 지식재산권 챕터는 총 11개절과 3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절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구성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1절(일반규정)에서는 목적(제15.1조), 일반원칙(제15.2조), 국제협정(제15.3조), 더 광범위한 보호(제15.4조), 지식재산권과 공중보건(제15.5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2절(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서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제15.6조), 방송과 공중전달(제15.7조), 기술조치의 보호(제15.8조), 권리관리정보의 보호(제15.9조), 제한 및 예외(제15.10조)를, 제3절(상표)에서는 상표 보호(제15.11조), 상표권의 예외(제15.12조), 유명상표(제15.13조), 상표의 등록 및 출원(제15.14조)을, 제4절(특허 및 실용신안)에서는 특허 보호(제15.15조), 실용신안(제15.16조)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제5절에서는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제15.17조)을, 제6절에서는 식물품종 보호(제

15.18조)를, 제7절에서는 미공개 정보(제15.19조), 제8절에서는 의장(제15.20조), 제9절에서는 지식재산권 취득 및 유지(제15.21조)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다. 제10절에서는 주로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일반 의무(제15.22조), 저작자 또는 권리자의 추정(제15.23조), 민사 및 행정 절차와 구제(제15.24조), 잠정조치(제15.25조), 국경조치와 관련된 특별 요건(제15.26조), 형사절차와 구제(제15.27조), 인터넷상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치(제15.28조), 침해협약자에 대한 정보 요청(제15.29조)을, 마지막 제11절에서는 협력(제15.30조)과 지식재산권 위원회(제15.31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중국의 정책을 간략히 살펴보고 각각의 조문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였다.

(17) 16장 환경과 무역

최근의 FTA에서 점차 중시되고 있는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한-중 FTA는 제16장에서 ‘환경과 무역이라는 이름으로 총 9개의 조문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배경 및 목적(제16.1조), 적용범위(제16.2조), 보호 수준(제16.3조), 다자간환경협정(제16.4조), 법과 규정을 포함한 환경조치의 집행(제16.5조), 환경영향(제16.6조), 양자 협력(제16.7조), 제도적 및 재정적 약정(제16.8조), 분쟁해결의 비적용(제16.9조)에 관해 규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WTO 협정 상 환경 관련 규정을 개관 후 한-중 FTA 환경 챕터의 주요 조문을 한중 양국의 기체결 FTA상 환경 관련 조항과 상세히 비교검토 하였다.

(18) 제17장 경제협력

소위 비무역의제 중의 하나로 불리는 경제협력에 관해 FTA에서 독립적인 챕터로 규율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는 아니지만 한중일 3국

이 저개발 국가와 체결한 다수의 FTA에서 경제협력 챕터가 포함되어 왔다. 한-중 FTA에서도 한중 양국의 이러한 입장이 반영되어 제17장에서 경제협력 챕터가 포함되었으며, 비교적 조문 수가 많은 총 5개 절, 2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 경제협력 챕터 규정을 협력의제 규율체제 및 협력분야별 협력과제의 순서로 금번 경제협력챕터의 특징 및 성과를 평가하고, 끝으로 한-중 FTA 협력 챕터의 이행과 관련하여 향후 과제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9) 제18장 투명성

한중 교역 관계에서 중국 정부의 낮은 투명성 문제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어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낮은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한중 제18장에서 독립적인 투명성 챕터를 포함하였다. 다만 제18장 투명성 챕터는 공표(제18.1조), 통보와 정보의 제공(제18.2조), 행정절차(제18.3조), 재심 및 불복청구(제18.4조) 등 4개 조항만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경제법상 투명성 조항의 의의를 포함하여 한중 양국의 FTA상 투명성 챕터와 한-중 FTA 투명성 챕터를 상세히 비교분석하였다.

(20) 제19장 제도규정

FTA상 제도규정 챕터는 한-중 FTA 이행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메커니즘을 규율하며, 한-중 FTA 제도규정 챕터에서는 총 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한-중 자유무역지대공동위원회(제19.1조), 공동위원회의 기능(제19.2조), 공동위원회의 절차규칙(제19.3조), 공동위원회 산하 위원회 및 그 밖의 기구(제19.4조), 접촉선(제19.5조)에 관한 규정이다. 이러한 제도규정은 크게 2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양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장관급 한-중 자유무역지대공동

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함)와 그 산하에 한-중 FTA 각 챕터에서 다루고 있는 13개 분야별 위원회 및 2개의 소위원회의 설립과 이들 위원회의 기능 및 절차규칙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협정 관련 사안에 대한 의사소통을 위한 접촉선으로서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중국측은 상무부로 각각 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한-중 FTA 공동위원회의 대표를 ‘장관급’으로 명시한 점인데, 이는 한-중 양국이 한-중 FTA 공동위원회의 역할을 중시하고 향후 한-중 FTA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과 집행력을 확보하자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이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와 한-EU FTA 무역위원회의 경우 장관급 인사가 대표로 참여한다는 명시적 언급은 없다.¹⁹⁾

다음으로 공동위원회와 관련하여, 먼저 그 의무는 ① 협정의 이행 및 추가적인 구체화를 감독; ② 협정의 개정 또는 기존 약속의 수정에 관한 제안 검토; ③ 협정상 위원회 및 그 밖의 기구의 업무 감독; ④ 당사국 간 무역·투자 증진 방안 검토; ⑤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불일치 해소 노력; ⑥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사안의 검토 등 6가지이다. 다음으로 공동위원회의 권한은 ① 임시 및 상설위원회 또는 그 밖의 기구의 설치 및 이들 기구에 책임 위임; ② 절차규칙 채택; ③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그 밖의 조치의 채택 등 3가지이다. 상기 공동위원회

19) 한-미 FTA의 공동위원회의 경우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대한민국의 통상교섭본부장과 미합중국 무역대표 또는 그들이 각각 지명하는 자가 공동의장이 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제22.2조)고 규정하고, 한-EU FTA의 경우 “양 당사자는 대한민국의 대표와 유럽연합 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되는 무역위원회를 설치”하며, 한-미 FTA와 유사하게 “대한민국 통상교섭본부장과 무역을 담당하는 유럽집행위원회 위원, 또는 그들을 각각의 지명자들이 공동의장이 된다.”(제15.1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통상교섭본부장의 지위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는 장관급이나 대내적으로는 장관과 차관의 중간정도의 지위를 가진다는 견해가 있다.

의 의무와 권한은 한-미 FTA 공동위원회와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와 유사하다.²⁰⁾ 끝으로 공동위원회의 절차규칙은, ① 공동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상호 합의에 의할 것; ② 공동위원회의 회기는 매년 1회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교대로 개최되는 정기회기와 양측의 합의에 따른 특별회기로 구성; ③ 공동위원회 등 관련 기구나 공동위원회의 회의와 관련된 비밀정보의 보호; ④ 공동위원회와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의 컨센서스로 정할 것 등이다.

마지막으로 공동위원회의 산하의 13개 위원회는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 자연인의 이동, 투자, 관세, 역외가공지역, 무역구제, SPS, TBT, 지식재산권, 무역과 환경 및 경제협력위원회이며, 2개의 소위원회는 관세위원회 산하의 원산지소위원회와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소위원회이다. 이들 위원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소위원회 또는 그 밖의 기구의 설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 및 그 밖의 기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공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 제20장 분쟁해결

한-중 FTA 제20장 분쟁해결은 전체 협정문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당사국 간 일반적인 분쟁해결절차로서, 본문 17개 조문과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은 협력(제20.1조), 적용범위(제20.2조), 분쟁해결절차의 선택(제20.3조), 협의(제20.4조), 주선, 조정 또는 중개(제20.5조), 패널절차(제20.6조~제20.12조), 합리적인 기간(제20.13조), 이행검토(제20.14조),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20) 일부 차이점이 있는데, 예컨대 한-미 FTA 공동위원회의 권한에서 “비정부 인 또는 단체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는 규정과 한-EU FTA 무역위원회의 권한에서 “민간 부문과 시민 사회조직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와 의사교환을 할 수 있다”와 같은 공중참여조항이 한-중 FTA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지(제20.15조), 정지 이후의 절차(제20.16조), 사적권리(제20.17조)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속서에서는 절차규칙(20-가)과 패널위원과 중개인에 대한 행동규범(20-나)을 규정하고 있다. FTA상 당사국간 분쟁해결절차는 WTO 협정상 분쟁해결절차와 매우 유사하고 모든 FTA에서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챕터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WTO DSU, 한-중 양국의 기체결 FTA 분쟁해결 챕터와 비교분석하였다.

(22) 제21장 예외

전체 FTA상 의무 이행에 있어 대표적인 예외규정을 모아 하나의 독립된 챕터로 구성한 것이 FTA 예외 챕터이다. 한-중 FTA에서는 제 21장에서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총 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일반적 예외(제21.1조), 필수적 안보(제21.2조), 과세(제21.3조), 정보의 공개(제21.4조), 국제수지 보호조치(제21.5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일반적 예외의 경우 상품무역과 관련한 제2장(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3장(원산지 제도), 제4장(통관 및 무역원활화), 제5장(SPS), 제6장(TBT), 제7장 무역구제에 대해 GATT 제20조²¹⁾와 관련 주해가 적용되며, 제8장(서비스 무역), 제9장(금융서비스), 제10장(통신), 제13장(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적 예외를 규정한 GATS 제14조²²⁾가 적용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로, 필수적 안보에 관해서는 국가 안보상 예외를 규정한 GATT 제21조 및 GATS 제14조의 2를 준용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GATT

21) GATT 제20조상 일반적 예외 조치로는 공중도덕 보호, 인간·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금·은의 수출입 관련 조치,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 역사·예술 유물의 보호, 공급부족 상품의 취득·유통에 필수적인 조치 등이다.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 2015.3, 138면.

22) GATS 제14조상 일반적인 예외조치는 공중도덕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 인간·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보호, 안전, 사기 행위의 방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이다.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 2015.3, 139면.

제21조상 필수적 안보 예외로서, ① 체약국에 대하여, 발표하면, 안전보장상 중대한 이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으며; ② 체약국이 자국의 안전보장상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핵분열 물질, 무기 또는 군수물자의 거래에 관한 조치 또는 전시 또는 기타 국제관계에서 긴급시에 취하는 조치가 허용되며; ③ UN의 평화유지의무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된다. GATS 제14조의 2의 내용은 GATT 제21조상 필수적 안보 예외 규정과 거의 동일하다. 이러한 필수적 안보예외 조항은 한-EU FTA 제15.9조 안보예외조항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며, 다만 한-EU FTA에서는 GATT 제21조 필수적 안보 예외 규정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 날 뿐이다. 한-미 FTA에서는 ①과 함께 “당사국이 국제평화 또는 안보의 유지 또는 회복에 대한 자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국이 필수적 안보 이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조치의 채택은 당사국의 재량에 속함을 명시함으로써 필수 안보 예외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세 번째로 과세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협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한-중 FTA와 조세협약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조세협약이 우선 적용됨을 명시하였다. 또한 과세 조치와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인 과세 조치가 수용에 해당 되는 경우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상 국제중재의 이용문제와 관련하여 투자 챕터의 수용 및 보상 규정(제12.8조)은 과세조치에 대해 적용되지만, 과세조치가 수용임을 이유로 ISDS절차상 국제중재에 분쟁을 회부하기 전에 해당 과세조치가 수용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권한 있는 당국(한국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중국측은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에 우선 회부

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결과 해당 조치가 수용이 아니라는 데에 동의하지 않으면 투자자는 해당 분쟁을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세조치에 대한 예외는 한미, 한-EU FTA에서 공통으로 채택되는 규정이다.

네 번째로, 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공개되면 법 집행 저해, 공익에 반하거나 특정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비밀정보는 당사국의 공개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FTA 상 예외 챕터에서 통상적으로 규정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수지 보호조치와 관련, “당사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 곤란에 처해 있거나 그 위협을 받고 있을 경우, 그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그리고 국제통화기금협정의 규정들에 합치되도록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는 GATS 제12조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 조항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규정에 불과하다.

(23) 제22장 최종규정

최종규정 챕터는 협정의 개정, 발효 및 종료, 가입 등 협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행정적 사항을 규정하는데, 한-중 FTA 제22장 최종규정은 총 6개의 조문과 서비스 무역 및 투자에 관한 후속협상 지침을 담은 1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본문의 부속서, 부록 및 각주(제22.1조)에서는 “이 협정의 부속서, 부록 및 각주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선언하고 있다. 개정(제22.2조)에서는 양 당사국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서비스 무역 및 투자 관련 장들의 개정을 위한 후속협상을 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이 장의 부속서가 바로 관련 지침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개정 조항은 한-중 FTA에서만 보이는 독특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 조의 제2항에서는 후속 협상의 결과는 한-중

FTA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고 한-중 FTA의 해당 장들을 대체하고, 특히 개정된 장들의 발효는 제22.4조에 포함된 발효 및 종료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결과를 발효시키기 위해서는 양국의 국내비준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동조 제3항에서는 협정에 대한 일반적인 개정상황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후속 협상 결과와 마찬가지로 발효 및 종료절차를 따를 것을 확인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개정(제22.3조)에서는 한-미 FTA 등에서의와 마찬가지로 “이 협정에 통합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그에 따라 개정할 것인지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여 한-중 FTA에서 준용하고 있는 WTO 협정 규정이 개정된 경우 그 개정 내용이 바로 한-중 FTA에 준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국이 준용 여부를 다시 협의할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발효 및 종료(제22.4조)에서는 당사국의 국내비준 절차 등 통상적인 발효 및 종료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한-중 FTA 발효 절차와 전망 부분에서 상술한다. 가입(제22.5조)조항은 향후 한국과 중국 이외에 다른 국가 또는 관세영역이 한-중 FTA에 가입하는 경우의 조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본(제22.5조)에 관하여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본은 모두 동등하게 유효한 정본이며, 불일치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서비스 무역 및 투자에 관한 후속협상 지침에서는 협상의 일반원칙, 기간 등에 관해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이 장 제4절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관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이상으로 서문과 총 22개 챕터로 구성된 한-중 FTA의 챕터별로 간략히 살펴보았다.

제 3 절 한-중 FTA의 양국 국내비준 절차 및 발효 전망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1일 한-중 FTA 정식서명을 마치고 3일 뒤인 6월 4일에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15년 9월 초 현재 아직 국회비준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우리 정부는 FTA 효과가 빠른 시일 안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연내 발효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²³⁾ 중국측의 국내비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한-중 FTA가 공식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절에서는 중국의 조약의 체결과 비준절차²⁴⁾를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한-중 FTA의 중국 국내비준절차를 이해하고 전망하고자 한다.

중국에서 조약의 체결과 국내비준 절차를 다룬 규범은 <헌법>과 <조약체결절차법(締結條約程序法)>(이하 조약법이라 함), 이중 <조약법>이 조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규정한 법률이다. 우선, <조약법>제3조²⁵⁾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즉 중앙인민정부는 외국과 조약과 협정을 체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는 외국과 체결한 조약과 중요협정의 비준과 폐지를 결정한 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외국과 체결한 조약과 중요협정을 비준하고 폐지한다.”라고 규정하

23) 정부, 한-중 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정부합동 보도참고자료, 2015년 6월 5일, 1면.

24) 우리나라의 조약체결절차에 있어 대내적 절차는 ① 조약체결 계획의 수립→② 조약문안의 교섭→③ 조약문안의 확정→④ 법제처 심사→⑤ 국무회의 심의→⑥ 대통령 재가→⑦ 조약문에 대한 서명→⑧ 필요시 국회동의→⑨ 조약의 발효→⑩ 조약의 공포 순으로 이루어진다. 배종인, 헌법과 조약체결: 한국의 조약체결 권한과 절차, 삼우사, 2009, 161-162면.

25) <조약법> 제3조 :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即中央人民政府, 同外国缔结条约和协定。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决定同外国缔结的条约和重要协定的批准和废除。中华人民共和国主席根据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的决定, 批准和废除同外国缔结的条约和重要协定。)

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조약체결권²⁶⁾은 국무원,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이하 전인대상무위) 및 국가주석 등 3기관에 중첩·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²⁷⁾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이중 국무원과 전인대상무위가 조약체결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하며 국가주석은 조약의 체결과정에서 단순한 절차상의 수속을 이행할 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무원은 조약의 체결과정에서 조약의 협상과 서명(谈判与签署)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를 책임지며, 국무원이 협상하고 서명한 조약이 일반적인 협정이면 국무원의 승인으로 국내 비준절차가 마무리 되고, 만약 조약과 중요한 협정이라면 전인대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또한 전인대상무위가 조약과 중요협정의 비준권뿐만 아니라 폐기권을 가진다는 점이며 이는 전인대상무위가 조약체결권의 일부를 행사하고 있음의 근거가 될 수 있다.²⁸⁾ 마지막으로 조약체결 과정에서 국가주석의 역할인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가주석은 전인대상무위의 결정 내용에 따라 형식적, 절차적으로 전인대상무위의 결정을 확인하는 역할을 할 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특히 <조약법>상 국가주석은 조약의 서명권이 없다.²⁹⁾

26) 여기서 조약의 체결에서 “체결”의 의미는 전권대표의 지명 및 파견, 조약내용에 대한 기본방침 등의 지시뿐만 아니라 ‘비준’을 포함하는 광의의 체결을 의미한다.

이기평, 중국 국내법상 국제법의 지위와 효력, 중국법연구 제16집, 2011, 285면.

27) 이기평, 중국 국내법상 국제법의 지위와 효력, 중국법연구 제16집, 2011, 287면.

28) 바로 이점이 우리나라 헌법상 조약체결권과 조약폐기권이 모두 대통령에 귀속되는 점과 다른 것이다. 배중인, 헌법과 조약체결: 한국의 조약체결 권한과 절차, 삼우사, 2009, 230면.

29) 그러나 실무적으로 중국의 국가주석은 몇 가지 조약에 대해 직접 서명한 바 있다. 예컨대 2007년 1월 15일 당시의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타지크스탄 간 <선린우호조약(睦邻友好合作条约)>, 2007년 8월 15일 <상하이협력기구회원국장기선린우호협력조약>을 각각 서명하였다. 谢新胜, 中国的条约缔结程序与缔约权——以《缔结条约程序法》立法规范为中心的考察, <http://www.iolaw.org.cn/showArticle.asp?id=3208> (최종검색일: 2015.09.01.)

전인대상무위의 기준이 필요한 조약은 ‘조약과 중요협정’인데, 이에 따라 한-중 FTA가 ‘조약과 중요협정’에 속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조약법> 제7조에서는 “조약과 중요조약의 기준은 전인대상무위에 의해 결정된다.”고 규정하면서 여기서의 ‘조약과 중요조약’은 “① 우호협력조약·평화조약 등 정치성 조약; ② 영토와 국경 획정에 관한 조약·협정; ③ 사법공조·인도 관련 조약·협정; ④ 중화인민공화국법률과 다른 규정을 가진 조약·협정; ⑤ 체약당사자 각측이 반드시 기준을 거쳐야 한다고 약정한 조약·협정; ⑥ 기타 반드시 기준을 거쳐야 하는 조약·협정” 등 6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중 한-중 FTA는 ④와 ⑥에 포함될 수 있는 협정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전인대상무위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처럼 중국 조약법상 전인대상무위의 기준이 필요한 한-중 FTA의 체결과 국내비준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조약법> 제4조에 따라 중국은 조약과 협정을 3가지 명의, 즉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및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부문의 명의로 체결할 수 있으며, 한-중 FTA는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 간 자유무역협정이므로 <조약법>제4조상 중화인민공화국정부 명의의 협정이다. 중국정부 명의의 조약은 중국 외교부 또는 국무원 유관부문이 조약 또는 협정을 제안하고 중국측 초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와 협의 후 국무원의 심의를 받은 후 결정된다(제5조 2항). FTA의 경우 국무원 주관부문이 상무부이기 때문에 상무부가 중국측 초안을 작성하고 외교부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협상을 진행하였다. 한-중 양국 대표 간 한-중 FTA 협상이 완료된 후 양측의 협상대표, 중국측은 상무부부장이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명한 후 중국측 상무부장은 외교부와 협의한 후 국무원에 심사를 의뢰하고 국무원은 심사 후 전인대상무위에 기준을 요청하고 전인대상무위가 비준하면 국가주석은 전인대의 비준결정대로 비준한다(제7조 3항). 전인대상무위와 국가주석의 기준을 얻은 조약 또는 중요협정은 외교부가 체약상대국과 비준

서를 상호교환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외교부는 중국 국가주석이 서명하고 외교부장관이 부서한 비준서를 조약 또는 협정의 기탁처에 기탁하도록 하고 있다. 한-중 FTA 역시 기본적으로 이러한 중국 국내절차를 통해 발효할 것이며, 다만 비준서 기탁의 경우 한-중 FTA에서 양 당사국이 필요한 국내 법적 절차를 완료되었다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기간 후에 발효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³⁰⁾ 별도의 비준서 기탁절차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조약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정식서명을 완료한 한-중 FTA의 중국 국내 비준절차는 국무원 심의→ 전인대상무위의 비준 → 중국 국가주석 비준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³¹⁾ 현재 중국 전인대상무위가 한-중 FTA의 비준여부를 심사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가 없어 분명하지 않지만 중국무역촉진회상사법률서비스센터 관계자에 의하면 한-중 FTA는 중-호주 FTA와 함께 빠르면 2015년 말, 늦어도 2016년 초에 정식으로 발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³²⁾ 이와 같은 중국측 동향과 우리 국회의 비준절차가 순조롭다면 한-중 FTA의 연내 발효 가능성은 높다할 것이다.

제 4 절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관

1. 후속협상에 관한 합의내용

2015년 9월 2일 현재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을 보면 11건이 발효되었고 4건이 타결 후 발효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들 기 발효 또는

30) 한-중 FTA 제22장 제22.4조 1, 2항.

31) 한편, 조약법상 관련 규정만 봐서는 우리의 조약체결절차에서와 같은 가서명 후 정식서명 전까지의 국내절차, 즉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에 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내부적 절차를 거쳐 정식서명에 이르는지 알기 어렵다.

32) 贸促会：中韩、中澳自贸协定正式生效实施“为期不远”，
<http://business.sohu.com/20150828/n420001155.shtml> (2015.09.01.)

타결된 FTA 중 이번 한-중 FTA에서와 같이 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후속협상을 합의한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후속협상 합의는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인 후속협상의 범위, 일정 등에 대해서는 한-중 FTA 제22장 부속서에서 규정하고 있다. 부속서 22-가 후속협상을 위한 지침은 크게 i) 일반원칙; ii) 기간; iii)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상을 위한 지침; iv) 투자 협상을 위한 지침; v) 규범에 관한 관련 규정을 위한 협상 지침; vi) 부속서와 관련 규정의 종료 및 변경 등 6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 일반원칙에서는 서비스 무역 및 투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Mode 3의 투자의 설립 단계 및 서비스 무역을 포함하는 네거티브 목록 방식에 기초하여 한-미 FTA 서비스/투자 유보안과 같은 형식, 즉 현재유보(부속서 I), 미래유보(부속서 II) 및 금융서비스 유보안(부속서 III)으로 구성되는 서비스/투자 통합 유보안을 작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1~4문). 또한 후속협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관련된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다시 논의할 수 있으며, 새로운 문안을 제안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6~7문).
- ii) 기간에서는 후속협상은 협정 발효 후 2년 협상을 시작하여 협상 개시 후 2년 내 협상을 종료할 것을 합의하였다.
- iii)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상을 위한 지침에서는 첫째, 현행 제8장 서비스무역의 장 제목을 ‘국경 간 서비스 무역’으로 변경하고 서비스 공급형태 중 Mode 1과 Mode 2에 적용할 것, 둘째, 국경 간 서비스 무역에 관한 장에 대한 후속 협상 결과에 미래 최혜국대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할 것, 셋째,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대

한 후속 협상 결과에 미래 최혜국대우, 정보 전달 및 신금융서비스에 관한 규정을 포함할 것 등을 규정하여 한-미 FTA 서비스 분야 협정형식과 시장개방 수준의 후속협상 지침을 합의하고 있다.

iv) 투자 협상을 위한 지침에서는 첫째, 모든 종류의 투자를 포괄하는 설립 전 단계의 투자를 포함하기 위해 제12장(투자)의 모든 규정을 재논의 할 것, 둘째, 정의, 적용범위, 내국민 대우 등 기존 투자챕터상 조문과 그 밖의 규정을 다루는 규정들을 협상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특히 간접수용에 대한 관련된 고려와 예외 등의 쟁점들을 협상하고, 설립 전 및 설립 후 단계의 투자 모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약속을 통합하기 위해 이행요건 규정을 포함할 것으로 합의하였다.

v) 규범에 관한 관련 규정을 위한 협상 지침에서는 다른 장의 규범에 관한 관련 규정들에 관하여 협상할 것으로 규정하여 앞서 일반원칙에서 규정한 것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8장, 제9장, 제12장뿐만 아니라 협정상 다른 장의 규범도 재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vi) 부속서와 관련 규정의 종료 및 변경에서는 후속협상이 종료됨에 따라 필요가 없어지는 이 부속서(22-가)와 후속협상에 관한 규정인 제22.2조(개정)의 1항 및 2항은 종료되고 동조 제3항은 통상적인 개정조항으로 변경됨을 확인하고 있다.

이상의 후속협상 지침에 따르면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의 범위는 제8장(서비스 무역) 및 양허안, 제9장(금융서비스), 제10장(통신서비스) 및 제12장(투자)과 이와 관련된 다른 장의 규범으로 하며, 구체적인 양허안의 경우 한-미 FTA에서와 같이 네가티브 리스트 방식의 서비스/투자 통합 유보안을 작성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후속협상을 협정발효 후 2년 내에 개시해서 협상 2년 내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제13장 전자상거래는 서비스/투자의 분야에 속하지

만 후속협상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양국 간 쟁점이 크지 않아 완전 타결에 도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서비스/투자 분야 중국 국내 정책 및 법제 연구 개관

이상과 같은 배경 하에 진행될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은 사실상 제로 베이스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후속협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련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것으로 필요하지만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서비스/투자 분야의 중국 국내 정책 및 법제에 대한 최신 현황과 심층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방대한 서비스/투자 분야 관련 중국의 국내 정책 및 법제를 모두를 다룰 수는 없고 중국의 서비스/투자 분야 진출에 있어 기초가 되는 투자일반에 관한 규제와 우리나라에게 있어 비교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분야 중에 하나인 법률 서비스 분야, 금융 서비스 분야, 환경 서비스 분야 및 관광·여행·문화 서비스 분야 등 5개 분야를 다루었다. 각 분야별 연구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 제1장 투자일반

본 장에서는 중국의 시기별 외국인투자정책을 개관한 후 최근 투자 규제 현황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특히 투자규제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가 올해 초에 발표한 외국투자법초안과 네거티브 방식의 산업 분야별 자유화 조치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외국투자법과 네거티브 리스트의 법적 성격과 특징, 의미를 명확히 한 후, 한-중 FTA 후속협상에서 이에 대한 한국정부와 기업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2) 제2장 법률 서비스 분야

본 장에서는 먼저 중국의 법률시장 전반을 개관하기 위해 중국 국내로펌 현황과 한국 로펌 등 중국에 진출한 외국로펌의 현황을 살펴 보았다. 다음으로 중국의 법률시장 개방 관련 주요 규제 현황과 정책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의 기초하에 법률시장 개방에 관한 후속협상에서 참고할만한 시사점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3) 제3장 금융 서비스 분야

본 장에서는 세계 2위 경제대국에 걸맞는 금융시스템 및 금융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최근 금융 서비스 관련 정책 및 법제에 대한 분석은 향후 한-중 FTA 금융서비스 협상에서 의미있는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QFII와 후강통 제도 그리고 10년 만에 개정되는 증권법 관련 이슈를 통하여 중국 주식시장 개혁의 현황 및 주요 이슈를 연구하고, 이를 통해 향후 예정된 한-중 FTA 후속협상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4) 제4장 환경 서비스 분야

본 장에서는 환경서비스 중에서도 중국이 WTO와 FTA 양허표에서 개방한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 한-중 FTA 환경서비스에서 중국 측이 개방한 7개 분야 가운데 폐수처리서비스, 고형폐기물처리서비스와 소음저감서비스 등 일부 중요한 분야의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WTO 협정 및 기체결 FTA에 나타난 중국의 환경 서비스 양허 수준과 한-중 FTA에서의 양허 수준을 차례로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중국의 주요 환경서비스 분야의 정책 및 법령을 분석하였다. 끝으로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중 FTA 환경 서비스 분야

후속협상 대응방안으로서 우리기업의 중국 진출 시 고려사항과 서비스 공급유형별 후속 논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5) 제5장 관광·여행·문화 서비스 분야

본 장에서는 우선 관광호텔업 및 여행알선대행업을 중심으로 한 관광 및 여행 서비스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WTO·FTA상 중국의 양허 수준을 각각 분석비교한 후 한-중 FTA상 중국의 양허 수준을 검토한 후 관광호텔업 및 여행알선업에 관한 중국의 관련 국내정책 및 법규를 상세히 분석하였다. 이상과 같은 분석의 기초하에 이 분야에 대한 후속협상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중국 진출 시 고려사항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관광·여행·문화 서비스 분야의 공급형태별 협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 관계부처합동, 2015.3.
- 한-중 FTA 가서명 참고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5.2.
- 허재환, 한-중 FTA 타결의 의미와 기회, KDB DAILY 경제분석, 2014.11.
- 한미 FTA 상세설명자료, 외교통상부, 2011.7.
- 정부, 한-중 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정부합동 보도참고자료, 2015년 6월 5일
- 배종인, 헌법과 조약체결: 한국의 조약체결 권한과 절차, 삼우사, 2009.
- 이기평, 중국 국내법상 국제법의 지위와 효력, 중국법연구 제16집, 2011.
- 중국상무부의 “중국자유무역지대서비스망(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韩民国政府自由贸易协定50问

제 1 부 총 론

http://fta.mofcom.gov.cn/korea/korea_changjianwenti.shtml (최종검색
일: 2015.09.01.)

한-중 FTA 타결…농업분야 협상결과 분석, 이 법 “FTA전에도 큰 피
해…몇 년내 농업 존립 위기 올 것”, 농업인신문, 2014년 11월
14일 (금) 13:37:20, [http://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
idxno=37888](http://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888) (최종검색일: 2015.09.02.)

谢新胜, 中国的条约缔结程序与缔约权——以《缔结条约程序法》立法规
范为中心的考察, <http://www.iolaw.org.cn/showArticle.asp?id=3208> (최
종검색일: 2015.09.01.)

贸促会: 中韩、中澳自贸协定正式生效实施“为期不远”, [http://business.sohu.
com/20150828/n420001155.shtml](http://business.sohu.com/20150828/n420001155.shtml) (2015.09.01.)

**제 2 부 한-중 FTA 주요
챕터 분석**

제 1 장 원산지 제도와 통관 절차 · 무역원활화

제 1 절 원산지 제도

1. 한-중 FTA 원산지분야 체계

일반적으로 FTA에서 상품의 원산지 분야는 원산지 규정과 원산지 절차로 구분한다. 원산지 규정은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며, 원산지 절차는 원산지증명, 특혜관세 적용, 원산지 검증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한·중 FTA는 원산지 규정과 원산지 절차를 부속서 또는 장에서 별도의 절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협정문 제3장에 원산지 규정(제 1절)과 원산지이행절차(제2절)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고, 부속서 3-A에서는 HS 6단위별로 제1류에서 제97류까지 원산지결정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부속서 3-B에서는 역외가공 허용물품(310개), 부속서 3-C에서는 원산지 증명서 서식과 작성요령을 규정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한·중 FTA를 계기로 완성 단계에 있는 FTA-Hub 즉, EU·미국 등 거대 소비시장과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고 있는 제조업 중심 국가인 ASEAN과 중국을 연결하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FTA 구조를 감안하고, 우리나라와 교역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협정의 구성체계를 대표¹⁾하는 미국과 EU 및 ASEAN과의 FTA 협정을 중심으로 한·중 FTA를 비교하였다.

1) 세계 각국의 원산지협정을 보면 크게 2가지의 유형인 Pan-Euro 모델과 북미지역의 NAFTA 모델로 나눌 수 있고, 동아시아는 고유의 특혜원산지 모델이 없으나 Pan-Euro 모델과 NAFTA 모델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 연구 및 실증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5. 11, p. 37) FTA 협정은 협정의 구성과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형식 등에 따라 NAFTA, Pan-Euro, Pan-Asian 모델로 구분될 수 있다.

2. 한·중 FTA 원산지 규정

한·중 FTA 원산지 규정은 우리가 현재까지 체결한 FTA 원산지 규정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여타의 협정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규정을 최소화하고 중립적인 원산지 규정을 사용하여 신규 협정의 개입에 따른 기존 FTA와의 스파게티볼 효과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중립적인 원산지 규정의 대표적인 예로 원산지 상품(제3.2조)의 정의를 살펴보면 한·중 FTA에서도 다른 협정과 마찬가지로 그 종류를 ①완전 생산품, ②원산지 재료 생산품, ③불완전 생산품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고, 부가가치기준(RVC, Regional Value Contents)의 계산방식은 제3.5조에서 공제법(BD, Build-Down Method)²⁾을 적용하였다.

아울러 기 체결 협정들과 마찬가지로 원산지 규정의 충족을 위해 누적기준(Accumulation),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대체가능물품(Fungible Materials), 중립재(Neutral Elements), 세트물품(Sets), 포장재 및 운송용기(Packing Materials and Containers), 부속품·예비부품·공구(Accessories, Spare Parts and Tools) 등 다양한 특례기준을 도입하여 FTA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제 1 절 원산지 규정

제 3. 1조 정의	제 3. 8조 최소허용수준
제 3. 2조 원산지 상품	제 3. 9조 대체가능재료
제 3. 3조 특정 상품의 취급	제 3.10조 중립재
제 3. 4조 완전획득 혹은 생산물품	제 3.11조 세트
제 3. 5조 역내가치포함비율	제 3.12조 포장재료 및 용기
제 3. 6조 누적	제 3.13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제 3. 7조 최소가공 혹은 공정	제 3.14조 직접운송

2) 역내가치포함비율(RVC)=(FOB-VNM)/FOB×100에 따라 계산된 비율을 기준으로 원산지 상품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여기서 VNM(Value of Non-Originated Materials)은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의미하고, FOB(Free on Board)는 Incoterms®2010에서 본선적재가격을 말한다.

한·중 FTA와 주요 협정의 원산지규정의 주요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원산지 상품(제3.2조)

한·중 FTA에서 특혜관세의 대상이 되는 원산지 상품은 ① 제3.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당사국에서 전적으로 획득 혹은 생산된 상품, ② 원산지 재료로만 당사국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상품, ③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되면서 품목별 원산지 기준(부속서 3-A)을 충족하는 당사국에서 전적으로 생산한 상품이다.³⁾

한·중 FTA는 EU, ASEAN FTA와 같이 원산지 상품의 원산지를 원칙적으로 일방 당사국(a party)으로 하고 있어 상대국에서 생산된 재료의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따라 일부 상대국의 원산지 재료를 인정하고 있다.⁴⁾

(2) 특정 상품(역외가공지역 생산품) 취급(제3.3조)

특정 상품의 취급 조항에서는 한반도에 위치하고 운영되는 공업지구(이른바, 개성공단)를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하고 부속서 3-나의 품목(HS 6단위 310개 품목)에 대해 동 역외가공지역에서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원산지 재료가 생산 공정 및 작업이 이루어져 다시 재수입되더라도 ①비원산지 재료의 총 가격이 원산지 자격이 부여되는 최종 상품 FOB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고, ②관련 당사국으로 부터 수

3) 한·중 FTA 협정문 제3.2조

4) 완전생산기준은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가공하지 않은 농수산물이나 광산물 등이며, 자국산 원재료만 사용하여 가공한 물품도 이에 해당된다. 반면, 실질적 변형기준은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 당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한국경제연구원, 전게서, p. 26)

출된 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그 최종 상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된 재료의 총 가격의 60% 이상이 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⁵⁾

양국은 공동위원회의 지원 하에 역외가공지역 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기준 이행점검, 공동위원회의 권고사항 제공, 추가적인 역외가공지역의 지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역외가공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한·중 FTA의 특정 상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의 취지는 ASEAN FTA와 유사하나 세부적으로 ‘비원산지 재료의 총 가격이 수출가격(FOB)의 40% 이하’이거나 ‘원산지 재료의 총 가격이 특정 상품 제조에 사용된 재료의 60% 이상’일 경우를 명시하여 ASEAN FTA의 ‘당사국에서 수출된 재료에 대하여 생산 공정 및 작업이 이루어질 것’을 규정한 것⁶⁾에 비하여 비원산지 재료에 대한 원산지 인정이 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역외가공지역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⁷⁾

또한 ASEAN FTA 등에서 역외가공을 인정받은 품목이 품목분류 6단위 기준 100여개에 불과하였으나, 한·중 FTA는 현재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품목인 310개를 확보하였다.⁸⁾

한·중 FTA에서 특정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은 310개 품목 중 24개는 협정발효 후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34개는 5년 이내에 철폐되며, 그 이외의 품목은 10년에서 2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5) 한·중 FTA 협정문 제3.3조

6) 한·ASEAN FTA 협정문 부속서 3. 제6조

7) 한·미 FTA와 한·EU FTA에서는 역외가공을 다루지 않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한·중 FTA 협정에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받으려면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수출가격의 40%이하여야 하나, 개성공단의 경우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개성공단의 임금을 제외하고 산정할 수 있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다.

8) 한-EFTA FTA의 경우 267개 품목, 한-인도 CEPA의 경우 108개 품목, 한-ASEAN·한-페루·한-콜롬비아 FTA 등은 100개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되나, 한-중 FTA에서는 310개 품목에 대한 특혜가 적용되어 허용범위가 가장 넓다.

(3) 완전하게 획득 또는 생산된 상품(제3.4조)

제3.2조의 완전 획득 또는 생산된 상품은 ① 당사국에서 태어나고 사육된 산동물, ② ①의 산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③ 당사국 내에서 재배 및 수확, 채집 또는 수집된 식물 및 식물성 상품, ④ 당사국의 영토, 내수 혹은 영해 내에서 수행된 수렵, 덧사냥, 어로, 양식, 채집 혹은 포획으로 획득된 상품, ⑤ 당사국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하부토양에서 추출 또는 취득된 ①~④를 포함하지 아니한 광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 ⑥ 당사국의 영해 밖 수역, 해저 또는 하부토양으로부터 획득된 상품, 다만 당사국은 그러한 수역, 해저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⑦ 당사국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당사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해 당사국의 영해 밖 수역, 해저 또는 하부토양에서 획득한 어획물 및 그 밖의 수산물, ⑧ 당사국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당사국 국기를 게양한 가공선박에서 ⑦에서 언급된 상품으로만 생산되거나 가공된 상품, ⑨ 당사자 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공정으로부터 얻어진 원재료의 회수용으로만 적합하거나 다른 상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로 사용되는 부스러기 및 폐기물 또는 당사국 내에서 소비되고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상품은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⑩ ①~⑨까지에 언급된 상품으로만 당사국에서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이다.⁹⁾

선박의 국적과 관련하여 미국과 ASEAN, EU와의 협정은 한·중 FTA와 같이 기국주의(旗國主義; maritime flag state)¹⁰⁾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한·EU FTA는 선박의 소유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국 국민이나 회사의 지분이 50% 이상일 경우만 인정하고 있다.

9) 한·중 FTA 협정문 제3.4조

10) 자국의 영해 밖일지라도 탐사권한이 있거나 선박의 국적에 따라 원산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4) 역내가치포함비율(제3.5조)

한·중 FTA에서 역내가치포함비율(RVC; regional value contents) 이 른바, 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되지 않거나 생산되지 않은 상품 원산지 계산은 공제법¹¹⁾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¹²⁾

이에 반해 한·미 FTA는 공제법 뿐만 아니라 집적법, 순원가법¹³⁾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한·ASEAN FTA는 공제법과 집적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제법은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기준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산정하는 것이고, 집적법은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기준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산정하는 것이어서 공제법이 직접법 보다 상대적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한편, 한·중 FTA는 미국과 EU의 FTA와 같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재료에 대하여 해당 제품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즉, 최종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중간재¹⁴⁾에 대하여는 그 중간재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한·ASEAN FTA는 해당 규정이 없다.

11) $RVC = (FOB - VNM) / FOB \times 100$, 여기서 부가가치비율(RVC)은 %로 표시된 역내가치 포함비율이고, FOB는 운송수단과 관계없이 최종 수출 항구 또는 최종 수출 지점까지의 수송비용을 포함하는 관세평가협정에 따른 상품 본선적재가격이다. VNM은 생산자가 그 제품 생산을 위하여 사용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으로 수입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은 수입 시 재료의 CIF 가격으로 하고, 당사국 내에서 획득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은 최초 확인이 가능한 실재 지불가격(공급자 창고에서 생산자 소재지까지의 운임이나 보험료, 포장비 등 다른 비용을 제외)이다.

12) 한·중 FTA 협정문 제3.5조

13) 한·미 FTA에서는 자동차 제품에 대하여 순원가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품의 원가에 비원산지 재료의 비중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생산과정 중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고려치 않아도 되어 비원산지 재료의 비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4) 중간재(intermediate materials)는 제품 생산에 투입하기 위하여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제품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원산지재료를 의미한다.

<표 2-1-1> 주요 FTA 협정별 중간제 규정의 비교

구 분	중 국	미 국	EU	ASEAN
중간제 인정여부	○	○	○	×
대상물품	자가생산품	자가생산품	역내생산품	×
근거규정	제3.5조 제3항	제6.22조 제6.3조	제5조 제1항	×

(5) 누적(제3.6조)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가 다른 당사국의 상품에 결합한 경우, 그 결합한 상품 또는 재료는 다른 당사국을 원산지로 본다.¹⁵⁾

한·중 FTA는 미국과 EU 및 ASEAN FTA 협정과 달리 충분한 가공이 이루어져야 하는 생산 공정의 누적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재료 누적(협정 상 ‘결합’)만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누적기준이 다른 협정에 비해 경직되어 있다.¹⁶⁾

그러나 한·중 FTA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보면, 완전생산기준과 품목번호 변경기준 및 부가가치 발생기준으로 간편하게 원산지 기준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공정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15) 원산지 기준을 판정할 때, FTA 체약 상대국에서 발생한 생산과정 투입요소(생산 공정이나 재료)를 자국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누적이라고 하는데, 양국에서 발생한 재료의 누적을 합산하도록 하면 품목번호의 변경 또는 부가가치의 발생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원산지 기준의 충족이 용이해지고 생산공정 또한 양국에서 발생한 공정을 모두 인정해주면 가공공정기준에 의한 원산지 변경 기준 충족이 상대적으로 쉽게 된다.(한·중 FTA 협정문 제3.6조, 원산지결정기준, 국제원산지정보원, 2015.2, pp.152~154)

16) 재료 누적이 한·EU와 한·미, 한·ASEAN FTA에서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EU와 미국에서는 양국 누적을 인정하고 ASEAN에서는 다국 누적을 인정하고 있으며, 공정 누적이 미국에서만 인정되고 EU와 ASEAN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한·ASEAN FTA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정 누적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제61류의 류의 생산 시에는 재단·봉제 공정 수행국을 1국으로 한정하지 않고, ASEAN 회원국 역내에서 수행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누적 기준 종류의 적용만 고려하면 생산 공정의 누적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 않아 선택의 여지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나, 원산지 기준의 활용 측면으로 볼 때는 복잡한 원산지 기준을 배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한·중 FTA에서는 역외가공지역의 특정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원산지 재료의 누적 정도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한·ASEAN FTA와 같이 생산 공정 및 작업의 수행을 요건으로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중 FTA는 원산지 기준에 생산 공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6) 최소 공정 또는 가공(제3.7조)

한·중 FTA의 최소 가공 규정은 한·EU FTA의 불충분한 가공 규정이나 한·ASEAN FTA의 불인정 공정에 해당된다.

본 규정에 따라 한·중 FTA는 아래의 가공 또는 공정을 수행하여 품목별 원산지기준에 충족되더라도 원산지지위를 획득할 수 없다.

①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공정, ②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③ 포장의 변경, 포장물의 해체 및 조립, ④ 세척·세탁,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⑤ 방직용 섬유와 다림질 또는 압착, ⑥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⑦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⑧ 당류 착색이나 착향 또는 각설탕 공정, 결정당의 부분 또는 전체 제분, ⑨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 제거 및 탈각, ⑩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⑪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물품 세트의 구성을 포함한다), 쪄내기, 구부리기, 감기 또는 풀기, ⑫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공정, ⑬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⑭ 다른 종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 모든 재료와 당류의 혼합, ⑮ 시험 또는 측정, ⑯ 상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다른 물질이나 물로 단순 희석, ⑰ 건조, 염장(또는 염수장), 냉장 또는 냉동, ⑱ 동물의 도살, ⑲ ①~⑱까지 규정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¹⁷⁾

한·중 FTA의 최소 가공 규정은 한·ASEAN과 한·EU와는 달리 ‘쪼개기(slitting), 구부리기(bending), 감기(coiling) 또는 풀기(uncoiling)’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고, ‘상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다른 물질이나 물로 단순 희석(mere dilution)’과 ‘건조, 염장(또는 염수장), 냉장 또는 냉동’ 규정을 명문화 하였다.

‘쪼개기 등’은 철강코일과 관련된 가공규정으로 철강산업에 대한 중국 내 산업의 보호가 최소가공 규정을 신설한 목적으로 보이고, “단순 희석”은 우리나라의 희석식 소주에 대한 중국 백주(白酒) 시장의 경계로 판단된다.¹⁸⁾

‘건조나 냉장 등’의 규정은 한·EU에서 운송 중 보존공정으로 구분하고 있고, 한·ASEAN에서는 도축 공정 이후에 이어지는 훈제공정까지 포함¹⁹⁾하고 있으나 한·중 FTA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복잡한 식문화를 고려하여 별도로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7) 최소허용수준(제3.8조)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품목번호 변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라도 ① 제15류~제24류 및 제50류~제63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에 대해 상품 생산에 사용된 품목번호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비원산지 재료의

17) 한·중 FTA 협정문 제3.7조

18) 한·중 FTA 원산지 규정 등에 관한 고찰, 관세와 무역, 2015. 4, p. 43.

19) 한·ASEAN 협정문 제8조

가치가 상품 FOB 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② 제15류~제24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품목번호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비원산지 재료와 상품의 품목번호가 소호(품목번호 6자리)가 다른 경우에는 ①을 적용할 수 있으며, ③ 제50류~제63류의 경우에는 품목번호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원산지 재료의 중량 또는 가치가 전체 상품의 중량 또는 상품 FOB 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다.²⁰⁾

한·미 FTA와 한·EU FTA에 있어 최소허용수준은 가격기준으로 일정 부분에 대한 비원산지 재료를 원산지로 인정해 주고 있고, 한·중 FTA와 한·ASEAN FTA는 섬유(HS 50류~63류)에 한해서 중량기준으로 일정 부분에 대한 비원산지 재료를 원산지로 인정해주고 있다.

한·ASEAN FTA는 섬유에 대한 비원산지 재료 최소허용수준을 중량기준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한·중 FTA는 중량기준 또는 가격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8) 대체가능 재료(제3.9조)

생산에 사용된 재료가 원산지 재료인지를 결정할 때 대체가능 재료에 대한 원산지 기준은 ① 각각의 대체가능 재료가 물리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 ② 생산이 수행된 당사국의 회계원칙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재고관리기법²¹⁾을 사용하여 대체가능 재료를 원산지 재료와 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대체가능 비원산지 재료를 원산지 재료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²²⁾

20) 한·중 FTA 협정문 제3.8조

21)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의 재고를 구분하여 보관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거나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생산자는 재고의 관리를 위하여 “구분회계”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한·EU FTA 제11조)

22) 한·중 FTA 협정문 제3.9조

②에 따라 재고관리기법을 적용하게 되면, 재고관리기법을 선택한 회계연도에 해당 대체가능 재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적용을 하여야 한다.

한·중 FTA를 포함하여 미국과 EU, ASEAN과 체결한 FTA 협정 모두 재고관리 기법을 사용하여 대체가능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9) 중립재(제3.9조) 및 세트(제3.11조)

기 체결된 미국·EU·ASEAN FTA와 같이 한·중 FTA도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지만 그 제품에 물리적으로 결합하지 않은 중립재(간접 재료)는 제품이 원산지 제품인지 결정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²³⁾

한·미 FTA와 한·EU FTA는 중립재에 세부적인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나, 한·중 FTA와 한·ASEAN FTA는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특히, 한·중 FTA는 한·ASEAN FTA에서 명시하지 않은 “촉매제 및 용제”를 포함하여 중립재로 명시하고 있다.

HS 통칙 제3호에 따라 세트의 모든 구성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세트에 원산지 상품과 비원산지 상품이 같이 구성된 경우 비원산지 상품의 가격이 세트 FOB 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않을 때 세트 전체를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세트 규정은 미국, EU와의 FTA 협정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ASEAN FTA 협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10) 포장재료 및 용기(제3.12조),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제3.13조)

기 체결한 미국과 EU 및 ASEAN FTA와 같이 한·중 FTA도 상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는 상품의 원산지 상품인지를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되지 않는다.²⁴⁾

23) 한·중 FTA 협정문 제3.11조

24) 한·중 FTA 협정문 제3.12조

상품의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상품의 원산지 기준이 역내가치포함 비율의 산정이 필요한 경우에 원산지 판정 시 고려되지만, 품목분류 변경기준일 경우에는 원산지 판정에 고려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미 FTA와 한·중 FTA 상 수입 시 상품과 함께 가격에 포함되거나 송품장이 별도로 발부되지 않은 채 운송된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는 해당 상품과 일체로 간주하여 상품의 원산지를 따르도록 하고 있고,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이 적용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도 원산지에 따라 원산지 재료 혹은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한편, 한·EU FTA와 한·ASEAN FTA는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의 원산지는 상품에 따르도록 하고 있을 뿐,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이 적용되는 상품의 경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²⁵⁾

(11) 직접운송(제3.14조)

한·중 FTA의 직접운송 규정은 다른 FTA와 유사하게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은 당사국 간에 직접 운송되도록 하고 있다.²⁶⁾

예외적으로 상품이 비당사국을 경유(환적이나 임시 보관)하여 운송되더라도 ① 전적으로 지리적 이유 또는 운송 상의 이유로 반입은 가능하지만, ② 경유국인 비당사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아야 하며, ③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하역을 하거나 운송상 이유로 화물에서 분리 또는 재선적인 경우만 직접운송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유사하다.

그러나 비당사국에 일시 보관되는 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간은 비당사국에 상품이 반입된 날로부터 3개월까지로 하고 있

25) 한·중 FTA 협정문 제3.13조

26) 한·중 FTA 협정문 제3.14조

다. 만일 불가항력의 상황이 발생하면 3개월을 초과할 수 있으나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미 FTA와 같이 비당사국에서 임시 보관된 상품은 비당사국에서 보관되는 동안 비당사국 세관당국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하며, 한·EU FTA와 같이 비당사국을 경유한 상품이 직접 운송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상품 수입신고 시 수입국 관세당국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한·EU FTA에서는 세부적으로 보충서류에 대하여 규정²⁷⁾하고 있으나, 한·중 FTA에서는 간편하게 통과나 환적의 경우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선하증권(B/L) 또는 수출국부터 수입국까지 모든 운송구간을 커버하는 복합운송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컨테이너 보관 또는 하역의 경우는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수출국부터 수입국까지 모든 운송구간을 커버하는 복합운송서류와 비당사국 세관당국에 의해 제공되는 보충서류가 제출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한·중 FTA는 특징적으로 수입국 세관당국은 이러한 보충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비당사국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정 시 수출국 세관당국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²⁸⁾

<표 2-1-2> 주요 FTA 협정의 원산지 규정 비교

구분	중국	미국	EU	ASEAN
C/O 발급방식	기관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기관발급

27) 한·EU FTA에서는 보충서류의 내용을 ‘제품의 정확한 설명서’,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또는 선박 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의 기재’,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8) 그 예로 중국·대만 ECFA에서는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해 홍콩세관이 비조작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를 발급하고 있다.(한·중 FTA 원산지 규정 등에 관한 고찰, 전개서, p. 45.)

구 분	중 국	미 국	EU	ASEAN
부가가치 기준	공제법	직접,공제, 순원가	역외산 재료비중	직접법, 공제법
직접운송	비당사국보관 3개월 이내	기간제한에 관하 규정 없음		
사후 검증	간접 (동의직접)	직접	간접(참관)	간접(방문)
서류 보관	3년	5년	5년	3년
원산지증명 면제	미화 700불	미화 1,000불	미화 1,000불	미화 200불

3. 한 · 중 FTA 원산지 이행절차

한 · 중 FTA 원산지 이행 절차도 기 체결된 FTA와 유사하게 원산지 상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특혜관세 신청, 기록보관, 원산지검증 등에 대한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 · 중 FTA에서 특징적인 것은 ‘전자원산지 자료 교환 시스템(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을 협정발효 전에 개발하는데 노력하기로 규정(제3.27조)한 것이다.

이는 개정교토협약에서 채택된 ‘전자방식에 의한 물품신고서 제출’ 등 무역원활화를 위한 통관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정보기술의 최대 활용의 취지와 연관된 규정인데,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전자원산지 자료 교환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협정이 발효 되면 대중 수출물품에 대해 중국의 수입자가 특혜적용 시 중국해관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절차상의 단계가 축소되어 보다 원활한 통관이 예상된다. 한 · 중 FTA 원산지 이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 2 절 원산지 이행절차

제 3.15조 원산지 증명서	제 3.22조 비당사국 송장
제 3.16조 권한있는 기관	제 3.23조 원산지 검증
제 3.17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제 3.24조 비밀유지
제 3.18조 수입이후특혜 관세대우	제 3.25조 특혜관세대우의 거부
제 3.19조 원산지 증명서 제출의무 면제	제 3.26조 통과 혹은 보관 중인 상품에 대 한 경과규정
제 3.20조 기록유지요건	제 3.27조 전자적 원산지 자료 교환 시스템
제 3.21조 사소한 불일치 및 오류	제 3.28조 원산지규정에 관한 소위원회

(1) 원산지 증명(제3.15조 및 제3.16조)

한·중 FTA의 원산지 증명 방식은 한·ASEAN과 같이 기관증명 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권한있는 수출국 기관이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대리인에 신청을 받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다.²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시기와 유효기간³⁰⁾, 소급발급 규정³¹⁾, 재발급 규정³²⁾ 등이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어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시기를 제외하고는 현행의 기관증명 발급 체계를 준용하여도 무리가 없다.

단,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기는 현행 법에서 선적 전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한·중 FTA에서는 선적 전을 포함하여 선적 시 또는

29) 한·중 FTA 협정문 제3.15조

30) 발급한 날로부터 1년간

31) 불가항력,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기타 유효한 사유로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되지 못한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하여 발급될 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 증명서에 소급 발급 문구 “ISSUED RETROACTIVELY”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32) 증명서의 도난, 분실 또는 사고로 인한 멸실의 경우 수출자나 생산자는 이전에 발급된 원본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음이 입증되면 수출 당사국 발급기관에 진정등본을 발급해 달라는 서면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산지 증명서에 “CERTIFIED TRUE COPY of the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number dated”문구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선적 후 7근무일 내에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한·ASEAN³³⁾과 함께 원산지 증명서 발급일자에 대한 세관당국의 원산지증명서 절차요건 준수여부의 확인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여타의 FTA 협정과 같이 양국은 발급기관의 명칭과 인장 등을 상대국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의 변경 시에도 즉시 알려야 하는데, 한·중 FTA에서 변경된 사항은 통지일로부터 7근무일 후 또는 통보에 적시된 날짜보다 늦은 날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특징적인 규정이 있다.³⁴⁾

(2) 특혜관세의 신청(제3.17조 및 제3.18조)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수입자는 ①해당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적시하는 서면진술을 세관신고 시 작성하고, ②수입신고 시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③각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상품의 수입에 관련한 원본 원산지 증명서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³⁵⁾

다만 전자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으로 모든 정보가 교환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중국과 ASEAN의 경우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통관 시 원산지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미국 및 EU는 세관에서 원산지 증명서 등의 제출을 별도로(검증 등의 필요 목적 시) 요청하지 않으면 관련 서류는 세관에 제출하지 않고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33) 한·ASEAN FTA의 경우에는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신고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로 규정하고 있다.(한·ASEAN FTA 협정 부속서3의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개정안)

34) 한·중 FTA 협정문 제3.16조

35) 한·중 FTA 협정문 제3.17조, 제3.18조.

한·중 FTA는 다른 기체결 FTA와 FTA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후 FTA 특혜신청을 규정하고 있어, 수입자는 수입일(수입신고수리일) 후 1년 이내에도 특혜관세를 신청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때 수입자는 ① 상품수입시에 원산지 상품이었던 것을 입증하는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 ② 수입국이 요구할 수 있는 수입과 관련된 그 밖의 서류를 세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한편, 한·중 FTA는 특징적으로 수입자에게 특혜관세적용신청을 위한 사전조건으로 수입 시 세관에 특혜관세적용 의사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수입통관 시 특혜관세 사후신청 의사표시를 미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특혜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이나 EU, ASEAN은 사후 특혜관세 신청과 관련하여 FTA 특례법과 같이 내국법에 규정하고 있다.

(3) 원산지 증명서 제출의무 면제(제3.19조)

한·중 FTA는 기 체결 FTA와 달리 과세가격 미화 700불 이하의 원산지 상품에 대해서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³⁶⁾

미국이나 EU와의 FTA 협정에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면제 기준은 미화 1천불 이하이고³⁷⁾, 한·ASEAN의 경우는 FOB 200불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 증명서 제출면제 기준은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서 C/O 제출을 면제하고 있는 한·인도 CEPA와 금액을 미화 200불로 제한하고 있는 한·ASEAN FTA를 제외하고 여타의 협정 대부분이 미화 1,000불 이하의 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면제해주는 것에 비해

36) 한·중 FTA 협정문 제3.19조

37) 한·EU FTA는 EU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 500€ 또는 여행자의개인 수화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의 경우 1,200€이하는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은 기 체결한 FTA에서 미화 600불을 원산지 증명서 제출면제 기준으로 설정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협상의 결과이다.

모든 협정에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회피할 목적 또는 다른 수입 건의 일부일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면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4) 기록유지요건(제3.20조)

한·중 FTA와 한·ASEAN FTA는 한·미FTA와 한·EU FTA와 달리 생산자 또는 수출자, 서류발급기관은 원산지 증명서 등의 발급일로부터 3년간 원산지 관련 서류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협정은 5년을 보관기간으로 하고 있다.

한·중 FTA에서 서류보관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 당사국의 생산자, 수출자, 발급기관의 서류보관 기간은 3년이다.³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FTA 특례법에서 서류보관기간을 수입자, 생산자와 수출자, 발급기관 등에 공통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중 FTA의 경우에는 수입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3년이 적용된다.³⁹⁾

보관해야 할 서류에는 상품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수출되었던 형태의 상품의 생산 등의 기록 등을 포함한다.

수입자의 경우에는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과 관련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보관방식은 자국법에 따라 디지털, 전자, 광학, 자기 또는 서면형태를 포함하여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발급기관 등이 선택할 수 있다.

38) 한·중 FTA 협정문 제3.20조

39) 법의 적용순위에 있어 협정과 국내법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른 기준이 적용될 경우, 협정의 기준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5) 사소한 불일치 및 오류(제3.21조)

EU와 ASEAN 등 기 체결 FTA 협정과 한·중 FTA 협정 모두 원산지 증명서와 세관 서면신고 간 경미한 불일치가 있어도, 원산지 증명의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한·중 FTA는 서류가 불일치 되더라도 물품이 실재 물품과 일치하면 수입자는 정정된 원산지 증명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5 근무일 이상 30일 근무일 이하의 수정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6) 원산지 검증(제3.23조)

한·중 FTA는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방식이 기관발급이므로 원산지 검증에 있어서도 EU나 ASEAN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국 세관당국에 상품의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는 간접검증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출지 세관당국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에 대한 현지 세관당국의 동행 방문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직접검증도 가능하도록 하였다.⁴⁰⁾

한·ASEAN FTA에서 직접검증은 현지 세관당국의 동행없이 수입국 세관이 검증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중 FTA의 직접검증은 현지 세관당국의 동의를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동행은 물론이고 조사의 주도권도 수출국 세관당국에 있어 한·EU FTA와 같이 수출국 세관당국의 원산지 검증 시 수입국 세관당국이 참석요청이 가능한 수준⁴¹⁾과 유사하여 유명무실한 직접검증 규정이다.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검증 프로세스는 수입국 세관이 ① 수입자에게 수입된 상품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요청 ② 수출국 세관

40) 한·중 FTA 협정문 제3.23조

41) 한·EU FTA 협정, 세관 분야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 제7조(요청의 수행)

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는 것이고, 직접검증 프로세스는 ③ 수출국 세관당국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 방문 검증을 요청하는 것이다.

<표 2-1-3> 주요 FTA 협정별 원산지 검증 방식

FTA	한·미	한·EU	한·ASEAN	한·중
검증방식	직접	간접 (조사참석 가능)	간접 후 직접	간접 후 직접(동행*)
검증주체	수입국	수출국	간접은 수출국 직접은 수입국	수출국
검증회신	-	10개월	각 6개월	각 6개월

* 수출국 세관에 방문검증 요청 후 현지 세관직원과 함께 검증 수행(수출국 세관 주도)

** 미, EU, ASEAN, 중국과의 FTA 협정문 원산지 검증 규정을 기준으로 필자가 작성

수출국 세관당국은 수입국 세관당국의 검증요청에 대해 6개월 이내에 검증결과와 증빙서류를 제공하여야 하고, 수입국 세관당국은 검증결과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특혜적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수입국 세관은 수출국 세관의 검증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수출자 및 생산자에 대한 현지방문을 수출국 세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국은 최소방문 30일 이전에 수출국 세관에 서면 요청서를 전달하고, 수출국 세관은 서면 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60일까지 연장요청이 가능)에 수용여부를 수입국에 통보한다.

수출국 세관에서 방문검증에 동의하면 수입국 세관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수출국 세관직원의 동행 하에 실시하고, 방문검증결과(원산지 상품 여부)를 서면으로 수출국 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수출국 세관을 통해 제출(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수입국 세관은 이의제기에 대해 30일 이내에 최종결정사항을 수출국 세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현지방문 검증은 실제적인 방문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에 최종결정을 완료해야 한다.

수입국 세관은 ① 수입자가 1개월 이내에 수입국 세관당국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출국 세관이 6개월 이내에 검증결과를 수입국 세관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③ 간접검증 결과 또는 방문검증 결과에 원산지 상품의 진위판별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④ 수출국 세관이 수입국 세관의 방문검증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⑤ 수출국 세관이 수입국 검증요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⑥ 상품이 협정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⑦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가 협정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⑧ 원산지 증명서가 협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

<표 2-1-4> 주요 FTA 협정의 원산지 이행 절차 비교

구 분	중 국	미 국	EU	ASEAN
원산지증명서 발급 주체	수출자, 생산자, 권한 받은 대리인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자율발급	수출자 자율발급	각국의 지정기관에서 발급
C/O 증명서 서식	통일증명서식 부속서 3-C	제한 없음	원산지신고 서문안 기재	통일증명서식 AK-Form
유효기간	1년	4년	1년	1년

구 분	중 국	미 국	EU	ASEAN
발급기한	선적 전 또는 선적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적 전		
소급발급	선적일로부터 1년			

(7) 전자적 원산지 자료 교환 시스템(제3.27조) 등

「대한민국 관세청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간 전략적 협력에 관한 약정」에 따라 양국은 협정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협정의 이행 전에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협정에 명문화하였다.⁴²⁾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 양국간 원산지 증명서 정보가 교환되면 원산지 증명서의 세관제출이 생략될 수 있다.

중국은 국내법 상 특혜신청 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의무화 되어 있어, 본 시스템의 구축으로 통관절차가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4. 한·중 FTA 양허세율 및 품목별 원산지 기준

(1) 한·중 FTA 양허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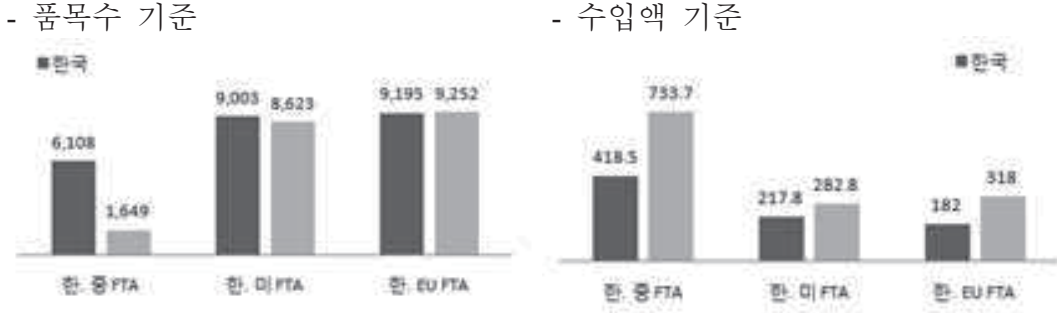
한·중 FTA 협정에 따라 20년 이내에 우리나라는 대중국 교역상품의 91%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고, 중국 또한 대한민국 교역상품의 92%에 대한 관세를 동 기간 내에 철폐하기로 하였다.⁴³⁾

42) 한·중 FTA 협정문 제3.27조

43) 한·중 FTA 상세 설명자료, 산업자원부, 2014. 11.

<도표 2-1-1> 주요 FTA 협정별 양허세율 즉시철폐 현황⁴⁴⁾

단위 : 개, 억불



중국은 전체 교역 품목의 90.7%인 7천428개, 수입액 기준으로는 85.0%인 1천417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고, 우리나라는 교역 품목의 92.2%인 1만1천272개, 수입액의 91.2%인 736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20년 내에 철폐하게 된다.

한·EU FTA나 한·미 FTA의 경우는 품목 수와 수입액 기준으로 모두 3년 안에 90% 이상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것이 비하면 한·중 FTA의 개방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

양허세율 중 즉시철폐의 비중을 보더라도 한·미나 한·EU FTA의 즉시철폐 비율은 70%를 상회하고 있으나 한·중 FTA는 50% 수준을 밑돌고 있다.

특히 농축수산물에서 중국은 농산물 품목의 91%, 수산물 품목의 99%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쌀을 포함하여 국내 농축산물 품목의 30%(548개 품목)를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대두, 참깨, 팥 등 일부 품목은 할당관세(TRQ) 대상으로, 김치 등은 부분관세 감축 대상으로 구분하여 높은 수준의 국내시장보호 결과를 가져왔다.

44) 산업자원부의 상계서에서 협정 별 즉시철폐품목의 양허세율과 수입액 기준을 기초로 필자가 작성

수산물의 경우 우리나라는 품목의 86.2%, 수입액 기준으로 35.7%만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고, 낙지(산 것 신선 냉동), 아귀(신선냉장 냉동), 대구(신선냉장), 바지락(산 것 신선냉장), 조미오징어, 오징어(기타 조제), 바지락(냉동 염장), 소라(조제), 해파리(조제) 등 14개(2.2%) 품목 등은 초민감품목군⁴⁵⁾으로 구분하였다.⁴⁶⁾

한·중 FTA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분야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대신 농수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수의 품목을 협상에서 제외하였다.

우리나라는 농축수산업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쌀을 비롯한 주요 농축수산 품목을 협상에서 제외하였고, 중국은 자동차 등의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게 되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한·중 모두 자국 산업의 보호 측면에서 대부분의 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중장기 관세철폐 대상으로 구분하였다.

중국은 승용차와 기어박스과 클러치, 조향장치 등과 관련된 주요 부품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고, 충격흡수기 등은 10년 내, 버스와 화물차는 10년~15년 장기 철폐 대상으로 정하였다, 우리나라는 완성차에 대하여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주요 자동차 부품은 대부분 장기 철폐 대상으로 구분하였다.

전기전자산업은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우위이므로 중국은 대형가전 제품, 2차 전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등 경쟁력이 열위인 품목을 장기 철폐 또는 양허 제외 대상으로 정한 반면, 우리나라는 중전기(전동기, 변압기 등)를 장기 철폐 대상으로 구분하였다.

45) 초민감품목(high sensitive track)이란 자유무역협정에서 관세 철폐 제외, 계절관세, 관세 부분 감축 등의 각종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품목으로 한-중 FTA에서는 품목 수 기준 10%(수입액 기준 15%)에 해당된다.

46) 한·중 FTA 협상결과 및 향후 대응 방향, 해양수산부, 2015. 3. 3.

철강의 경우는 냉연강판,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후판 등에 대하여 중국 측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나, 중국의 아연도금강판, 전기강판 등 고부가가치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주철관에 대하여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페로망간 등 합금철을 생산하는 중견기업을 위하여 장기 철폐 대상으로 구분하였다,

석유화학산업은 중국에 공급이 부족한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 원료와 고부가가치제품인 이온교환수지, 고흡수성수지, 폴리우레탄 등에 대하여 관세가 철폐 되었고, 우리나라는 대기업에서 주로 생산하고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합성수지와 합성고무 시장은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나 중소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초산에틸 등과 대중 무역수지 적자폭이 큰 초산 등의 제품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섬유산업의 경우 중국은 경쟁우위에 있어 화섬직물, 편직물, 유아복 등 화섬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였으나,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대량생산이 어려운 재킷, 코트, 스웨터 등 의류 위주로 관세를 철폐하였고, 면사, 모사, 면직물, 편직제 의류 등의 품목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

한·중 FTA는 상품의 생산과정·교역패턴·글로벌 아웃소싱 등 양국 무역의 특징을 고려하여 HS 6단위기준 5,205개 품목에 대해 품목번호 변경기준을 중심으로 원산지 기준을 설정하였다. 기초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EU나 ASEAN과 유사하게 완전생산기준(WO, Wholly Obtained)을 규정하였고, 그 밖의 품목에 대해서는 4단위 품목번호 변

경(CTH, Change of Tariff Heading)을 중심으로 규정하여, EU나 ASEAN에서 규정한 부가가치기준과의 선택기준(CC, CTH, CTSH or RVC)⁴⁷⁾ 혹은 결합기준(CTH and RVC) 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간편하게 원산지 기준을 규정하였다.

특히, 부가가치기준은 한·미 FTA 보다 적은 161개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품목군별 원산지 기준을 살펴보면 한·중 FTA에서는 기초농수축산물(HS 제1류~제14류)에 대하여 HS 6단위 기준 640개의 품목 모두에 대해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EU나 ASEAN과 같이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한·중 FTA에서 품목 번호 변경 기준은 3,107개(60%)로 원산지 기준이 비교적 용이할 뿐만 아니라, 기 체결 FTA와 같이 CTH 기준 적용이 가장 많아 상대적으로 비원산지 재료에 대한 원산지 기준의 충족 가능성이 높으며⁴⁸⁾, 부가가치 기준 적용도 161개에 불과하고, 이를 선택하거나 결합한 조건은 1,134개로 ASEAN 48백여 개, EU 28백여 개, 미국 14백여 개 보다 적다.

특히, 부가가치 기준은 공제법(BD) 기준으로 역내에서 40~50% 범위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제품 3.1%에 대하여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어 원산지 기준의 충족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⁴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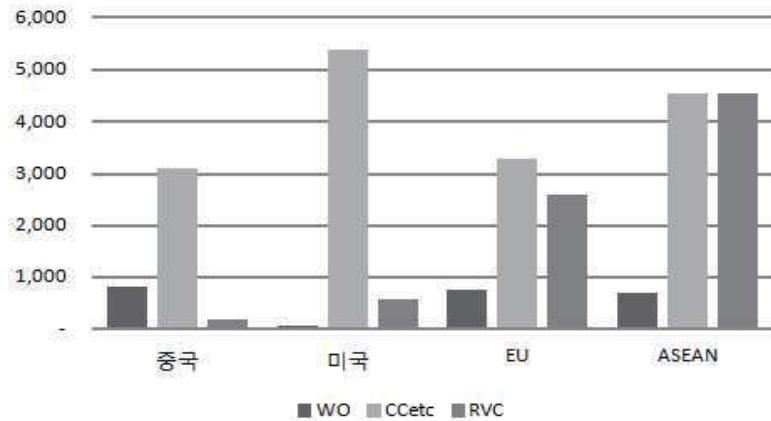
47) RVC(Regional Value Contents, 역내가치포함비율 이른바, 부가가치기준), CTSH(Change of Tariff Sub-Heading, 6단위 품목번호 변경기준)

48) 투입원재료의 일부가 원산지 재료로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도 127개 품목 4.1%에 지나지 않고, 해당 품목도 화학공업 생산품(HS 제28류~제40류)과 비금속제품(HS 제72류~제83류)에 집중되어 있어, 비교적 자유로운 비원산지 재료의 투입이 가능하다.

49) 수산물 조제품(HS 1604~1605) 29개 품목 RVC 45%, 기계류(HS 84) 74개 품목 RVC 40% 50개 RVC 45% 24개 품목, 자동차류(HS 87류) RVC 40% 24개 RVC 50% 32개 품목, 정밀기기(HS 90) RVC 45% 2개 품목

<도표 2-1-2> 중 · 미 · EU · ASEAN FTA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 비중

(단위; 개)



구분	WO	CC etc.	RVC
한 · 중 FTA	803	3,107	161
한 · 미 FTA	55	5,368	555
한 · EU FTA	723	3,282	2,589
한 · ASEAN FTA	671	4,516	4,522

* 협정 별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종합하여 필자가 작성

한 · 중 FTA에서 섬유 · 의류 상품의 원산지 기준은 원사(yarn)가 역 내에서 방적되었거나, 직물은 방적과 제직이 수행되었거나, 의류는 재 단 · 봉제 혹은 부가가치 40%가 발생한 경우에 원산지가 인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섬유분야는 선택기준이 한 · 중 FTA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적용되기는 했으나 미국이나 EU, ASEAN에 특수공정이 추가된 선택기준이나 결합기준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원산지 기준의 적용이나 준수가 비교적 쉬어 관련 업계의 FTA 활용이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 경쟁우위에 있는 화학공업제품이나 일반 기계류, 철강제품의 경우도 주로 CTH가 주로 적용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완화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역외산 재료 비중이 높아도 FTA 활용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밀기계는 매우 엄격한 조합기준(CTH and RVC 50%)을 채택하고 있어 원산지기준 충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⁵⁰⁾

한편, 석유·화학 등의 품목에 특수공정기준(화학반응, 정제, 혼합, 입자 크기의 변화 등)이 반영되지 않아 중국보다 경쟁우위에 있는 산업에 대한 이점이 희석되었다.

제 2 절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1. 한·중 FTA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체계

일반적인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 및 무역원활화 규정은 무역을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합의로 통관을 원활하게하기 위한 원산지 통관 절차와 WTO 관세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원산지 관련 무역원활화로 구분된다.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FTA 협정에서 다루고 있는 통관 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원활화 규정은 WTO의 무역원활화 논의에서 시작되었으며, 이와 관계된 최근의 논의를 개정교토협약이라고 한다.⁵¹⁾

50) 원산지 기준 중 가장 충족이 어려운 결합기준(품목번호 변경과 부가가치기준 동시적용)은 HS 84류(원자로, 보일러, 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36개 품목과 HS 87류(자동차와 이들의 부분품) 9개 품목에 적용된다.

51) 관세협력이사회(CCC; Customs Cooperation Council 현, WCO)는 세관절차의 단순화와 조화를 위한 무역확대를 1973년 교토 협약에서 채택하고, 1999년 6월 교토에서 재차 현대화된 세관절차의 모델을 전면적으로 개정·발표한 바 있다. 개정 교토 협약에서 채택된 내용은 무역원활화를 위하여 통관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물품신고서·부속서류의 표준화 및 간소화, 정보기술의 최대 활용, 위험관리 및 최소세관 통제, 심사통제 및 합동 검사, 무역업계와 협력을 기존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전자방식에 의한 물품신고서 제출, 소액 물품에 대한 면세, 업무시간 외 통관 허용

미국과 EU 및 중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교토협약을 채택하여 국내 통관 절차 및 체결하는 FTA 협정에 반영하고 있다.

한·중 FTA에서 통관 절차와 무역원활화 규정은 통관 원활화를 위한 국제표준과 교환될 정보의 대상 및 정보교환의 방법, 행정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나 사전심사, 행정 협력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2-1-5> 한·중 FTA와 한·EU 및 한·미 FTA 무역원활화 규정 비교

한·중	한·EU	한·미
제4.1조 정의	O 제 6.1조	X -
제4.2조 적용범위 및 목적	O 제 6.1조	X -
제4.3조 원활화	X -	X -
제4.4조 일관성	X -	X -
제4.5조 투명성	O 제 6.5조	X -
제4.6조 관세평가	O 제 6.12조	X -
제4.7조 품목분류	X -	X -
제4.8조 관세협력	O 제 6.13조	O 제 7.5조
제4.9조 재심 및 불복청구	O 제 6.7조	O 제 7.7조
제4.10조 사전심사	O 제 6.6조	O 제 7.9조

등을 도입하도록 하였으며, 위험관리 및 심사통제와 같은 현대적 기법의 채택과 정보 기술의 사용 극대화이다. 중국은 2000년 6월에 가입하였고, 우리나라는 2003년 2월에 14번째로 가입하였고, 최근에는 '14년 11월 무역원활화협정의 WTO 협정 편입을 위한 개정의정서 채택하고 지난 7월 30일 WTO 161개 회원국 중 9번째로 무역원활화협정의 WTO 협정 편입을 위한 개정의정서 수락서를 WTO에 기탁한 바 있다.(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중 9번째로 무역원활화협정 수락서 기탁,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2015. 7. 31, 무역원활화를 위한 중국의 FTA 통관 규정 연구, 조세연구원, 2012. 8, pp. 69~72.)

한·중	한·EU		한·미	
제4.11조 벌칙	X	-	O	제 7.9조
제4.12조 자동화시스템의 사용	X	-	O	제 7.3조
제4.13조 위험관리	O	제 6.4조	O	제 7.4조
제4.14조 상품의 반출	O	제 6.2조	O	제 7.2조
제4.15조 특송화물	X	-	O	제 7.7조
제4.16조 통관사후심사	O	제 6.11조	X	-
제4.17조 비밀유지	O	제 6.8조	O	제 7.6조
제4.18조 협의	X	-	X	-
제4.19조 관세위원회	O	제 6.16조	X	-

한·중 FTA는 협정문 제4장에서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기 발효된 미국과 EU와의 FTA 상품규정과 비교하여보면 상대적으로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미와 한·EU FTA의 경우는 개정 교토협약에서 협의된 무역원활화 규정을 별도로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한·중 FTA에서는 협정에 명시함으로써 협정의 이행 편이성을 제고하였고, 기존 협정에서는 협정문 전반에 종합적으로 다루어졌던 규정을 무역원활화 규정에 반영함으로써 발전된 FTA 협정의 모습을 볼 수 있다.

2. 한·중 FTA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규정

한·중 FTA의 통관 및 무역원활화 규정은 크게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국제표준에서는 원활화·일관성·투명성·관세평가·품목분류 규정을, 둘째, 통관 원활화에서는 자동화시스템의 이용·위험관리·상품의 반출·특송화물·통관사후심사 규정을 셋째, 납세자의 권리에서는 재심 및 불복청구·사전심사·비밀유지 규정을, 넷째, 행정절차에서는 관세협력·벌칙·협의·관세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다.

(1) 국제표준(제4.3조 ~ 제4.7조)

한·중 FTA에서 원활화(Facilitation) 규정에서는 통관 절차와 관행이 무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하고 일관성(Consistency)이 있으며 투명(Transparency)할 것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⁵²⁾

원활한 통관 절차를 위하여 양 당사국은 개정된 교토협약(이른바,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관을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창구의 단일화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통관의 원활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과 규정의 일관된 이행을 보장하도록 하였고, 수수료 및 비용을 포함하여 통관 등 무역에 필요한 제반의 정보를 웹사이트를 포함한 공식적인 지정매체를 통하여 적절한 기간에 공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제공하는데 동의하였다.

상품의 가격(Customs Valuation)을 결정하는 기준은 '94년 GATT 제7조 및 관세평가협정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였고, 상품의 분류(Tariff Classification)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을 따르기로 하였다.⁵³⁾

한·중 FTA의 통관 및 무역원활화 규정은 내용 면에서는 한·미나 한·EU FTA와 유사하나 체계에 있어서는 세부적이고 상징적인 기준을 나열하고 있는 특징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다른 협정에서는 적용범위나 목적 또는 협정의 일반적 정의에서 국제표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중국에서 체결한 협정관행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52) 한·중 FTA 협정문 제4.3조, 제4.4조, 제4.5조

53) 한·중 FTA 협정문 제4.6조, 제4.7조

(2) 통관 원활화(제4.12조~제4.16조)

한·중 FTA에서 통관사후심사(Post Clearance Audit)를 하도록 하고, 자동화시스템(Automated Systems)은 WCO의 진전상황을 고려하여 종이 없는 효율적인 통관운영을 위한 정보기술이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위험관리(Risk Management)는 원활한 통관을 조장하고자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한 고위험 상품을 중심으로 통관 절차를 운영하여 저위험 상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원활히 하기로 하였다.(한·미 FTA)

한·EU FTA에서 위험관리는 개정교토협약 및 WCO 위험관리지침(Risk Management Guidelines)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편, 상품의 반출(Release of Goods) 절차도 간소화하여 상품 도착 후 48시간 내에 반출하도록 하거나, 상품이 도착 후 즉시반출이 가능하도록 통관의 도착 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보증금을 제공하면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을 허용하거나, 세관 감시구역 내에서 자유로운 상품의 이동을 허용하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하기로 하였다.

상품의 반출 절차는 한·미와 한·EU FTA와 유사하나, 한·EU FTA에서는 특정한 반출기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차이점이 있고,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에 대한 보증금 규정은 한·미와 한·EU FTA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관세당국의 수수료 제도를 따른다는 입장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에서 특송화물(Express Shipments)은 신속한 통관 절차를 위하여 중량 또는 과세가격에 관계없이 전자적인 수단을 사용한 단일 적하목록의 제출을 허용하고, 최소한의 서류로 통관되도록 하고 있다. 특송화물에 대한 규정은 한·미 FTA에서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데, 한·중 FTA에서 규정한 내용에 더하여 화물이 도착하고 통관서류가 제출되면 4시간 내에 통관되도록 하거나, 미화 200불 이하의 특송화

물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반입서류도 제출하지 않도록 규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납세자의 권리(제4.9조, 제4.10조, 제4.17조)

한·중 FTA는 한·미와 한·EU FTA와 동일하게 재심 및 불복청구(Review and Appeal) 절차에서 그 대상을 당사국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모두로 하고 있고, 재심은 세관당국의 결정에 관한 행정적 재심 또는 그 행정적 결정에 대한 사법적 재심으로 하며, 행정적 재심 수행 과정 중의 정보제공은 재심 수행 행정 당사국에 직접 제출하거나 비밀 취급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⁵⁴⁾

사전심사(Advance Rulings)는 기 발효된 한·미 FTA와 동일하게 수입자나 수출자 또는 당사국 영역 내의 모든 관계자가 상품이 수입되기 전에 세관당국에게 품목분류·원산지 등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요청하여 심사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로 한·EU FTA는 사전심사의 신청대상을 무역업자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⁵⁵⁾

사전심사의 결정은 한·미 FTA와 한·EU FTA와 동일하게 공표되도록 하고 있고, 잘못되거나 부정확한 경우 또는 행정 정황에 근거한 결정에 의해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일방 당사국이 제공한 정보의 비밀(Confidentiality)은 유지되어야 하고 정보제공자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하는 정보의 공개를 해서는 아니 되며, 정보의 공개는 정보 제공 당사자 또는 정부의 명시적인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⁵⁶⁾

54) 한·중 FTA 협정문 제4.9조

55) 한·중 FTA 협정문 제4.10조

56) 한·중 FTA 협정문 제4.17조

(4) 행정절차(제4.8조, 제4.18조, 제4.19조)

한·중 FTA에 있어 양 당사국은 통관을 원활히 하기 위한 약속과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전산 시스템에 기초한 기술적이거나 절차상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였다.⁵⁷⁾

관세협력과 관련하여 한·EU FTA에서는 이에 더하여 세부적인 협력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문서 및 자료의 국제기준 조화, 관세분석소 간 협력, 세관직원의 교환, 훈련프로그램의 공동 조직, 무역업계 소통을 위한 메커니즘 개발, 지식재산권 관리 강화, 환적 및 통과물품에 대한 물류망 관리 등이다.

한편, 한·중 FTA와 한·EU FTA 모두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된 접촉선을 통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협이가 결렬될 경우 관세위원회에 회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⁵⁸⁾

관세위원회⁵⁹⁾의 구성과 기능은 협정별로 일부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원산지 규정과 원산지 이행 절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성된다. 한·중 FTA는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소위원회(CPTF) 및 원산지 규정 소위원회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는데, CPTF는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를 위해 필요한 개선분야의 확인 및 개정안 검토와 관련 사안의 해결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한·EU의 관세위원회 구성원은 관세 및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나, 한·중 FTA의 CPTF의 구성원은 세관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다.

57) 한·중 FTA 협정문 제4.8조

58) 한·중 FTA 협정문 제4.18조, 제4.19조

59) 관세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관세 및 무역원활화 사안, 원산지 상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그리고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관세 및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된다.(한·EU FTA 협정문 제6.16조 제2항)

제 3 절 평가 및 시사점

세계경제에 있어 한국 주도의 FTA가 가지는 의의는 최초로 거대 경제권을 모두 연결한 세계 3위의 경제권역(73.45%)을 완성한다는 데 있다.

한·중 FTA를 계기로 완성 단계에 있는 FTA-Hub는 EU·미국 등 거대 소비시장과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고 있는 제조업 중심 국가인 ASEAN 10개국·중국 등을 연결하는 구조로 우리나라를 도약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중 FTA와 미국·EU 및 ASEAN FTA를 비교하여 보는 것은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해 낸 한·중 FTA와 주요 기 체결 FTA와의 특징은 원산지 규정과 원산지 이행절차, 양허세율 등이 효율적인 FTA 활용에 중점을 두어 비교적 세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징적인 부분이 다소 없지 않으나 통관 및 무역원활화 규정은 1999년 개정 도쿄 협약에 따라 개정된 국내 통관 제도와 이미 상당히 일치하고 있어 한·중 FTA의 이행에 어려움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의 원산지 규정과 통관 및 무역원활화 규정에서 특징적인 부분을 몇가지 찾을 수 있었고, 이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계당국의 제도설명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원산지 규정부터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산지 규정에서

- 1) 한·중 FTA는 미국과 EU 및 ASEAN FTA 협정과 달리 충분한 가공이 이루어져야 하는 생산 공정의 누적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재료 누적(협정 상 ‘결합’)만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누적 기준이 다른 협정에 비해 경직되어 있다. 그러나 한·중 FTA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보면, 완전생산기준과 품목번호 변경기준 및 부가가치 발생기준으로 간편하게 원산지 기준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공정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이 적절할 것이다.

- 2) 한·중 FTA에서 역내가치포함비율의 계산은 공제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고, 미국과 EU의 FTA와 같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재료에 대하여 해당 제품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중간재에 대한 원산지 재료 활용이 가능하다.
- 3) 한·중 FTA의 최소가공 규정은 한·ASEAN과 한·EU와는 달리 ‘쪼개기(slitting), 구부리기(bending), 감기(coiling) 또는 풀기(uncoiling)’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고, ‘상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다른 물질이나 물로 단순 희석(mere dilution)’과 ‘건조, 염장(또는 염수장), 냉장 또는 냉동’ 규정을 명문화하여 생산 공정에 대한 예외적인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산업을 견제하기 위하여 품목분류를 활용한 원산지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공정이 국내에서 수행되더라도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4) 한·미 FTA와 한·EU FTA에 있어 최소허용수준은 가격기준으로 일정 부분에 대한 비원산지 재료를 원산지로 인정해 주고 있고, 한·중 FTA와 한·ASEAN FTA는 섬유(HS 50류~63류)에 한해서 비원산지 재료에 대한 최소허용기준을 중량기준으로 원산지를 인정해주고 있다. 아울러 한·ASEAN FTA는 섬유에 대한 비원산지 재료 최소허용수준을 중량기준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한·중 FTA는 중량기준 또는 가격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5) 한·중 FTA는 미국이나 때와 같이 직접운송의 원칙의 예외로 비당사국을 경유하더라도 비당사국의 세관통제 하에 있는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는데, 비당사국에 일시 보관되는 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간은 비당사국에 상품이 반입된 날로부터 3개월까지로 하고 있다. 만일 불가항력의 상황이 발생하면 3개월을 초과할 수 있으나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6) 선박의 국적 기준은 기국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더하여 한·EU FTA와 같이 조세회피를 위한 편의치적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의 소유 기준(당사국 국민이나 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원산지 이행절차에서는

- 1)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기는 현행 법에서 선적 전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한·중 FTA에서는 선적 전을 포함하여 선적 시 또는 선적 후 7근무일 내에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과 선적일자의 비교에서 유의해야 한다.
- 2) 한·중 FTA는 특징적으로 수입자에게 특혜관세적용신청을 위한 사전조건으로 수입 시 세관에 특혜관세적용 의사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수입통관 시 특혜관세 사후신청 의사표시를 미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특혜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 3) 한·중 FTA에서 서류보관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 당사국의 수입자·생산자·수출자·발급기관 등의 서류보관 기간은 3년이다.
- 4) 한·중 FTA는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국 세관당국에 상품의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는 간접검증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출지 세관당국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에 대한 현지 세관당국의 동

행 방문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직접검증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한·중 FTA의 직접검증은 현지 세관당국의 동의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동행은 물론이고 조사의 주도권도 수출국 세관당국에 있어 유명무실한 직접검증 규정이다.

- 5) 한·중 FTA는 서류가 불일치되더라도 물품이 실제 물품과 일치하면 수입자는 정정된 원산지 증명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5근무일 이상 30일 근무일 이하의 수정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한·중 FTA 양허세율 및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서 특징적인 것은, 한·EU FTA나 한·미 FTA의 경우는 품목 수와 수입액 기준으로 모두 3년 안에 90% 이상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것이 비하면 한·중 FTA의 개방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

양허세율 중 즉시철폐의 비중을 보더라도 한·미나 한·EU FTA의 즉시철폐 비율은 70%를 상회하고 있으나 한·중 FTA는 50% 수준을 밀돌고 있다.

아울러 한·중 FTA에서 품목 번호 변경 기준은 3,107개(60%)로 원산지 기준이 비교적 용이할 뿐만 아니라, 기 체결 FTA와 같이 CTH 기준 적용이 가장 많아 상대적으로 비원산지 재료에 대한 원산지 기준의 충족 가능성이 높으며, 부가가치 기준 적용도 161개에 불과하고, 이를 선택하거나 결합한 조건은 1,134개로 ASEAN 48백여 개, EU 28백여 개, 미국 14백여 개 보다 적다. 부가가치기준도 공제법(BD) 기준으로 역내에서 40~50% 범위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제품 3.1%에 대하여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어 원산지 기준의 충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규정은 대부분이 미국·EU 및 ASEAN FTA와 유사하나, 한·중 FTA는 한·중 FTA의 관세위원

회 구성을 세관당국의 대표로 특별히 지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관세 위원회의 성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무역원활화를 위한 중국의 FTA 통관 규정 연구, 조세연구원, 2012. 8.
-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중 9번째로 무역원활화협정 수락서 기탁,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2015. 7. 31.
-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ROO) 연구 및 실증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5. 11.
- 원산지결정기준, 국제원산지정보원, 2015. 2.
- 한·중 FTA 상세 설명자료, 산업자원부, 2014. 11.
- 한·중 FTA 원산지 규정에 관한 고찰, 관세와 무역, 2015. 4.
- 한·중 FTA 협상결과 및 향후 대응 방향, 해양수산부, 2015. 3.
- 한·중 FTA 협정문(<http://okfta.kita.net>, 2015. 7월 방문)
- 한·미 FTA 협정문(<http://okfta.kita.net>, 2015. 7월 방문)
- 한·EU FTA 협정문(<http://okfta.kita.net>, 2015. 7월 방문)
- 한·ASEAN FTA 협정문(<http://okfta.kita.net>, 2015. 7월 방문)

제 2 장 위생검역제도

제 1 절 국제경제법상 SPS조치의 규율 현황

1. WTO SPS협정의 의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이하 ‘SPS조치’)¹⁾는 WTO설립협정의 부속서 1가 중의 하나인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이하 ‘SPS협정’)²⁾에서 WTO 회원국³⁾의 권리로서 보장되고 있다.³⁾

한편, 상품무역의 일반예외를 규율하고 있는 GATT 제XX조와 SPS협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GATT 제XX조 (b)호에 의해 차별적인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는 정당화되지 않는 한 금지되는 반면, SPS협정 제2조 제3항에 의해 SPS조치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⁴⁾ 또한, GATT와 SPS협정의 일반적인 관계를 설명하면, WTO설립협정 부속서 1가 일반주해(general interpretative note)에서 GATT 1994와 부속서 1가의 협정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후자의 협정이 우선함을 규정하고 있다. 즉, GATT와 SPS협정이 충돌하는 경우 SPS협정이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SPS협정 제2조

1) ‘SPS조치’는 식품에서 기인하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상 위험과 질병 또는 병충해로 인한 인간, 동물 및 식물에 대한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정의되는데, 이의 구체적 내용은 SPS협정 부속서 가, 제1항 참조.

2) 영어 원문 ‘Member’를 번역한 것으로, 보다 정확히 말하면 ‘회원’이 맞는 표현이다. 왜냐하면, WTO는 홍콩, 마카오와 같이 사실상 국가가 아닌 독자적 관세영역(separate customs territory)과 EU를 회원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미 전달의 편의상 본 보고서에서는 ‘회원’이 아니라, ‘회원국’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WTO설립협정 제11조 및 제12조 참조.

3)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신국제경제법』, 박영사, 2012, 214쪽, 220쪽.

4)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위의 책, 220쪽.

제4항에서 SPS조치는 동 조치의 이용과 관련된 GATT, 특히 제XX조 (b)호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에 합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주요 규정의 특징과 내용

(1) 특 징

SPS협정은 총 14개의 조문과 3개의 부속서⁵⁾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원칙,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조화, 동등성, 적절한 보호 수준, 투명성, 분쟁해결, SPS위원회, 이행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SPS협정상 SPS조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품과 질병 등으로부터의 안전에 관한 법률, 법령, 규정, 요건 및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관련 조치가 SPS조치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WTO 분쟁해결기구⁶⁾는 다양한 환경규제조치를 포함하는 등 SPS조치를 넓게 해석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왔는데, 이는 매우 중요하다.⁶⁾

또한 주목해야 할 사실은 SPS조치가 영토적 한계에 종속된다는 점인데, 즉 WTO 회원국의 영토 외부의 이익은 보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련 규제국의 영토 내에서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면 다른 국가의 활동을 지시하는 조치가 배제되지는 않는다.⁷⁾

5) 부속서 가는 정의규정, 부속서 나는 위생 및 식물위생규정의 투명성, 그리고 부속서 다는 통제, 검사 및 승인 절차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6) Joanne Scott, *The WTO Agreemen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A Commenta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p. 16-17.

7) *Ibid.*, p. 11.

(2) 주요 내용

1) 적용범위

SPS협정은 제1조 제1항에서 “국제무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SPS조치에 적용된다”고 규정함으로써, 해당 관할권의 범위를 확정하고 있다.⁸⁾ 사실, SPS협정은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조치의 적용을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WTO협정들 중 가장 논쟁적 성격을 가진다.⁹⁾

2) 기본 원칙

WTO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일반규정인 제2조는 SPS협정의 기본 원칙을 규율하고 있는데, GATT 제XX조 두문을 반영하고 있는 동 조항의 목적은 SPS조치로부터 야기되는 국제무역에 대한 불필요하고 위장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¹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PS협정은 WTO 회원국으로 하여금 별도의 식품 안전 및 동식물 위생표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¹¹⁾ 다만 이러한 규정은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¹²⁾ 다시 말하면, 회원국이 무역 제한적인 SPS조치를 채택할 재량의 여지(*margin of appreciation*)는 법률 및 과학적 요건에 기반을 두고 고려됨을 알 수 있다.¹³⁾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

8) *Ibid.*, p. 10.

9) Rüdiger Wolfrum · Peter-Tobias Stoll and Anja Seibert-Fohr (eds.), *WTO - Technical Barriers and SPS Measures (Max Planck Commentaries on World Trade Law)*,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7, p. 391.

10) *Ibid.*, pp. 393-394.

11) SPS협정 제2조 제1항 참조.

12) SPS협정 제2조 제2항 참조.

13) Wolfrum · Stoll and Seibert-Fohr (eds.), *op. cit.*, pp. 410-411.

이, 일단 SPS협정의 위 요건을 준수하게 되면, 관련 SPS조치는 GATT 1994에 합치되는 것으로 간주된다.¹⁴⁾

3) 조화와 동등성

SPS협정 제3조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SPS조치를 가능한 광범위하게 조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SPS조치를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에 기초하도록(based on) 규정하고 있다. 즉, 동조의 목적은 SPS조치의 국제 조화(international harmonization)를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에 대해 일정한 정도의 간접적이거나 사실상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논쟁적인 원칙 중의 하나이다.¹⁵⁾ 한편, ‘기초하도록’의 용어는 SPS조치가 국제표준을 준수할(conform to) 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¹⁶⁾

또한, 동등성(Equivalence)¹⁷⁾을 규율하고 있는 SPS협정 제4조는 SPS 조치의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을 증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수입국 및 수출국은 흔히 다른 기술요건을 포함한 다른 규제조치를 사용하며, WTO법상 동등성을 수락할 일반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 조항은 EU법상 수락되고 있는 상호인정을 통해 수출국은 수입국이 선택한 SPS조치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한, 건강 보호를 근거로 수입국이 해당 상품의 금지를 허용할 이유는 없다는 논리를 담고 있다.¹⁸⁾

14) SPS협정 제2조 제4항 참조.

15) Wolfrum · Stoll and Seibert-Fohr (eds.), *op. cit.*, p. 414.

16) *Ibid.*, p. 419.

17) ‘동등성’이란 수출국의 SPS조치가 수입국의 조치와 상이하더라도 적정 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의 동 조치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18) Wolfrum · Stoll and Seibert-Fohr (eds.), *op. cit.*, pp. 429-430.

4) SPS조치의 적정 수준

SPS협정 제5조는 합법적인 SPS조치와 보호주의 목적으로 이행된 SPS조치를 구별하기 위해 중요한 요건을 규율하고 있는데, 즉 다음 4개의 핵심적 원리를 확립하고 있다: 위험평가(제1항~제3항); 규제의 일관성(제5항); 필요한 정도 이상의 덜 무역 제한적인 조치(제6항); 잠정적 SPS조치 채택의 가능성(제7항).¹⁹⁾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WTO 회원국은 위험평가 기술을 고려하여, 자국의 SPS조치가 적절하게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평가에 기반을 두도록 보장해야 한다.

위에서 살펴 본 SPS협정 제3조 조화의 다자적 접근법, 제4조 동등성의 양자적 접근법과 달리, 제5조에서 위험을 다루는 일방적 접근법은 명확하고도 좁은 의미의 선결조건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제5조의 ‘적정 보호 수준’은 문제의 SPS조치가 WTO법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필수적 부분이 된다.²⁰⁾

5) 분쟁해결

SPS협정 제11조는 협의 및 분쟁해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SPS협정은 WTO의 다른 협정들과 마찬가지로 분쟁해결양해의 분쟁해결 절차에 종속된다.

6) 기타 조항

위에서 살펴 본 규정 이외에도, SPS협정은 투명성, 특별 및 차등대우, 이행 등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먼저, 제7조의 경우 WTO 회원국으로 하여금 SPS조치의 통보 및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통해 투명성 강화를 규정하고 있다.²¹⁾ 특히, SPS조치의 투명성에 관해서는

19) *Ibid.*, p. 437.

20) *Ibid.*, p. 466.

21) SPS협정에 ‘투명성’에 관한 정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SPS위원회는 투명성의

동 조항과 함께 부속서 나 의 규정을 함께 읽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부속서 나 는 SPS규정의 채택 즉시 공포(제1항~제2항), 문의처 확립(제3항~제4항) 및 통보절차(제5항~제10항)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²²⁾

한편, 제10조에서는 SPS조치의 준비와 적용에 있어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개도국’의 개념은 SPS협정은 물론이고, WTO 회원국 자체에서 채택한 어느 문서에서도 정의규정을 찾아볼 수 없지만, GATT 제XVIII:1조에 의하면 그 경제가 “낮은 생활수준만을 지탱할 수 있고 개발의 초기 단계에 있는” 국가를 개도국으로 언급하고 있다.²³⁾

또한 제13조에서는 회원국의 SPS협정상 의무를 준수할 책임 등 이행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동 협정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포함된 규정이다. SPS협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회원국은 국제법상 책임을 지게 되며 분쟁해결양해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²⁴⁾

제 2 절 한-중 FTA의 SPS조치 관련 규정 분석

1. 의 의

한-중 FTA는 제5장에서 SPS조치를 규율하고 있는데, SPS협정의 적용을 재확인하고, 위생검역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협력을 모색하며, SPS협정의 이행을 위해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는 등 6개의 조항에서

목적은 ‘회원국의 무역정책, 규칙 및 규정에 관한 높은 정도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하였다. Wolfrum · Stoll and Seibert-Fohr (eds.), *op. cit.*, p. 478.

22) 투명성 요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해당 부분을 참조.

23) Wolfrum · Stoll and Seibert-Fohr (eds.), *op. cit.*, p. 505.

24) *Ibid.*, p. 539.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농축산업 분야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던 지역화 조항²⁵⁾ 등이 배제됨으로써 SPS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의무를 준수할 필요 없이 타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²⁶⁾

2. 개별 규정 분석

(1) 목 적

제5.1조 목적

이 장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가. 양 당사국의 영역 내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면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
- 나. 각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대한 투명성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것
- 다. 이 장이 적용되는 사안을 담당하는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것
- 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증진하는 것

한-중 FTA 제5.1조는 SPS조치에 관한 챕터가 추구하는 4가지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첫째, 한국과 중국의 영역 내에서 인간, 동물,

25) 한-중 FTA 협상에서 중국은 위생검역조건을 현행 국가단위에서 지역단위로 바꾸는 소위 ‘지역화’를 요구하였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중국이 구제역 상시 발생국이라는 이유로 중국산 쇠고기·돼지고기의 수입을 막고, 과일류 역시 과실파리와 같은 병해충이 창궐한다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였다. 이처럼 지리적 인접성 및 품목 간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축산물과 과일류가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보호 장치는 위생검역조건이었다. 만약 위생검역조건을 중국의 요구대로 지역단위로 변경한다면, 초민감품목의 양허제외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산 축산물 및 과일류의 수입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축산업계의 반발이 컸었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너름, 『한-중 FTA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 2014, 2쪽;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leehm8&folder=16&list_id=13523501 참조(2015.9.20. 검색).

26) 관계부처합동,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 2015. 3, 57쪽.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는 가운데, 무역을 제한하는 SPS 조치의 부정적 영향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둘째, WTO SPS협정이 별도의 규정 및 관련 부속서를 통해 투명성 개선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데 반해, 한-중 FTA는 개별적으로 SPS조치의 투명성을 규정하지 않고 그 목적 중의 하나로 투명성 및 상호 이해 증진을 들고 있다. 셋째, SPS조치를 책임지는 한국과 중국의 당국 간 협력 증대를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넷째, WTO SPS협정과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조문으로, 한국과 중국이 회원으로 있는 동 협정의 이행 촉진을 한-중 FTA의 목적 중 하나로 삼고 있다.

(2) 적용범위와 정의

제5.2조 적용범위와 정의

1.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사국의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장의 목적상,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속서 가의 정의가 적용된다.

한-중 FTA 제5.2조 역시 SPS협정과의 긴밀한 관련성을 엿볼 수 있는데, 먼저 적용범위의 경우 ‘국제무역’ 대신 ‘양 당사국간 무역’으로 수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SPS협정 제1조 제1항 제1문의 내용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일단 ‘영향을 미치는(affect)’의 의미가 매우 모호하여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즉 실질적일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무역 효과를 가진 조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²⁷⁾

또한, 동 챕터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법적 의미와 관련하여서도 SPS협정 부속서 가의 정의규정을 적용함을 밝히고 있다. 예컨대, 부속서 가는 ‘SPS조치’, ‘조화’,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 ‘위험평가’, ‘위

27) Scott, *op. cit.*, p. 26.

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 수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한-중 FTA는 이러한 법적 정의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3) SPS협정과의 관계

제5.3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재확인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양 당사국 간에 적용하고, 동 협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한-중 FTA 제5.3조는 한·EU FTA 이후 줄곧 규정되어 온 SPS협정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즉, SPS협정을 한국과 중국 모두에 적용하며, 동 협정이 한-중 FTA에 수용되어 그 일부를 구성함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의 SPS조치 관련 챕터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지만, SPS협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 예컨대 기본적 권리와 의무, 조화, 동등성, 위험평가 및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 수준, 투명성 등에 대해서도 양국의 준수 의무가 존재한다.

(4) 기술협력

제5.4조 기술협력

1. 양 당사국은 양자 간의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양 당사국의 규제 체계에 대한 상호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위생 및 식물위생 분야의 기술협력 기회를 모색하기로 합의한다.
2.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협력을 적절히 고려한다. 그러한 협력은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르며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가. 국제 표준 및 국내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과 적용에 대한 협력 및 경험 교환 강화

- 나. 특히 위험분석 방법론, 질병/병해충 관리 방법, 실험실 시험 기술 및 국내 규정에 대한 정보교환 등에 대한 협력 강화
- 다. 양 당사국의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 문의처 간의 경험 교환 및 협력 강화
- 라. 동물 질병과 식물 병해충 관리에 대한 양 당사국의 역량과 신뢰 구축을 목적으로, 권한 있는 당국의 관련 공무원 교환 프로그램 개발
- 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수행 및 그 연구 결과의 공유
 - 1) 동물 및 식물 질병/병해충 조사
 - 2) 동물 및 식물 질병/병해충 예방 및 관리
 - 3) 식품 내 병원성 미생물 검출 방법, 그리고
 - 4) 유해 물질과 농화학 및 수의약품 잔여물의 조사 및 관리와 그 밖의 식품안전 문제

한-중 FTA는 제5.4조에서 SPS협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양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분야에서의 기술적 차원의 협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SPS협정은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에 관해 규율하고 있지만, 한-중 FTA는 양국이 동등한 수준에서 SPS조치의 무역 제한적인 효력을 최소화하고 서로의 규제조치에 대한 이해를 증대하기 위해 기술협력에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 내용으로 SPS조치의 개발 및 적용 관련 경험 교환, 위험분석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정보 교환, SPS 관련 문의처의 경험 교환, 해당 공무원 교환 프로그램 운영 및 SPS 관련 분야의 공동연구 수행 등에 있어서 상호 합의 하에 협력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열거가 아닌 예시적 사항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형태의 기술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5) SPS위원회

- 제5.5조 위생및식물위생조치에관한위원회
- 1.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대해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

표들로 구성된 위생및식물위생조치에관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기로 합의한다.

2.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증진하고,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며,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협력과 협의를 증진하고,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의 해결은 과학 및 위험에 근거한 평가에 의존하여야 하고, 양자 간의 기술적 협력 및 협의를 통하여 최적으로 달성되어짐을 인정하면서, 위원회는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대한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현재 또는 장래의 관계를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위원회는
 - 가. 과학적 위험분석이 각 당사국의 관련 규제기관에 의하여 수행되고 평가됨을 인정한다.
 - 나. 각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 그러한 조치에 관련된 규제절차에 대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
 - 다.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또는 적용에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협의한다.
 - 라. 위생 및 식물위생 요건에 대한 중대하거나 지속적이거나 또는 반복되는 불합치에 대하여 양 당사국의 접촉선을 통하여 시의 적절하게 소통한다.
 - 마.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위장된 제한 수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었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할 때,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의해 필요한 경우, 양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에 대한 상호 관심 사안을 적절하게 다룰 목적으로 위원회에서 합의된 조건을 기초로 기술 협의회 설치를 고려한다. 기술 협의회는 그 요청일로부터 적절한 시일 내에 개최된다.
 - 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세계무역기구 위생및식물위생조치위원회,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세계동물보건기구, 국제식물보호협약 체제하에 운영되는 관련 국제 및 지역 기구, 그리고 식품안전과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에 관한 그 밖의 국제 및 지역 포럼의 회의를 위하여 문제, 입장 및 의제에 관하여 조율한다.
 - 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이행 및 적용에 관련된 기술협력활동의 조정을 원활히 한다. 그리고

- 아. 각 당사국의 규제의 틀과 규범제정 절차에 관한 명확화를 포함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대한 특정 이행 사안에 관련된 양자 간의 이해를 증진한다.
4.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90일 내에 위원회의 각 당사국 수석대표를 확인하고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서한의 교환을 통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5. 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최소 매년 1회 회합한다. 회의 장소 또한 상호 합의되며, 의장은 양 당사국 간 교대로 한다.
 6. 각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이행 및 집행을 담당하는 자국의 관련 무역 및 규제 기관 또는 부처의 적절한 대표들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도록 보장한다.
 7. 특히 위원회 회의 등 이 장의 이행을 조율하고, 적절한 시일 내에 정보교환의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접촉선을 지정한다.
 - 가. 한국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 나. 중국의 경우,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또는 그 승계기관

한-중 FTA는 SPS협정에서 정기적인 협의의 장을 제공하며 동 협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SPS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5.5조 제2항의 목적 조항을 통해 양국으로 하여금 SPS협정의 이행을 개선하고,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며, 관련 협력 및 협의를 증진하고, 무역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국의 권한 있는 대표로 구성된 SPS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중 FTA상 설립된 SPS위원회는 SPS협정상 설립된 위원회와 거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SPS협정의 여러 관련 규정에서 나열하고 있는 사항을 제5.5조 제3항에서 보다 명확하고 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동 위원회는 SPS협정상 위원회를 포함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세계동물보건기구 및 국제식물보호협약상 관련 기구와의 회의에서 서로의 입장 등을 조율하도록 규율하고 있으며, 제5.4조에 규정된 기술

협력의 조정 관련 업무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보교환 및 SPS 관련 이행을 증진시키기 위해 양국의 접촉선을 지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보이용과 협력 증대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6) 분쟁해결

제5.6조 분쟁해결의 비적용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제20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²⁸⁾

한-중 FTA의 경우, SPS 관련 사안의 분쟁해결에 대해 제20장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조동사 ‘may’가 아닌 ‘shall’을 사용함으로써 좀 더 강력한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SPS조치에 대한 분쟁은 한국이 체결한 대부분의 FTA와 마찬가지로(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는 제외)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해결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

3. 소 결

한-중 FTA의 SPS조치에 관한 챕터는 한편으로 아래에서 검토할 다른 FTA와 마찬가지로 WTO SPS협정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다른 FTA에 비해 비교적 기본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적은 사항만을 규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위생검역조치를 다루는 동 챕터의 일반목적은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SPS협정의 이행 개선과 양국의 협력 및 투명성 증대를 통해 SPS조치가 무역

28)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영어본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Neither Party shall have recourse to Chapter 20 (Dispute Settlement) for any matter arising under this Chapter.”; 한-중 FTA 제22.6조에 의하면,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작성된 협정문 모두 유효하며 정본으로 인정되지만,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고 되어 있다.

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한-중 FTA의 위생검역챕터는 양국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SPS조치에 적용됨을 밝히고, SPS협정이 양국에 모두 적용되며 동 챕터의 일부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외에 양국의 SPS협정상 이행을 증진하기 위해 SPS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는 등 SPS협정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한-중 FTA는 SPS협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술협력을 규율하고 있는데, 양국이 평등한 입장에서 서로 다양한 방법으로 위생 검역조치의 경험과 정보를 교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거의 모든 FTA에서 규율하고 있는 바와 같이, SPS조치와 관련하여서는 한-중 FTA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가 아닌 양국이 회원국으로 있는 WTO의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제 3 절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 FTA의 관련 규정 비교

<표 2-2-1> 한중 양국의 기체결 FTA SPS 챕터 비교

한-중 FTA	한국의 기체결 FTA	중국의 기체결 FTA
제5장 SPS (제5.1조 목적, 제5.2조 적용범위와 정의, 제5.3조 SPS협정의 재확인, 제5.4조 기술협력, 제5.5조 SPS위원회, 제5.6조 분쟁해결의	한·칠레: 제8장	중·ASEAN: 없음
	한·싱가포르: 제7장	중·파키스탄: 제6장
	한·EFTA: 없음	중·칠레: 제7장
	한·ASEAN: 없음	중·뉴질랜드: 제7장
	한·인도: 없음	중·싱가포르: 제7장
	한·EU: 제5장	
	한·페루: 제6장	중·페루: 제6장

한·중 FTA	한국의 기체결 FTA	중국의 기체결 FTA
비적용)	한·미: 제8장	중·홍콩: 제6장(중국어본)
	한·터키: 없음	중·마카오: 제6장(중국어본)
	한·호주: 제5장	중·코스타리카: 제12장
	한·캐나다: 제5장	중·아이슬란드: 없음
	한·콜롬비아: 제5장	중·스위스: 제7장
	한·뉴질랜드: 제5장	중·호주: 제5장
	한·베트남: 제5장	

1. 한국의 기체결 FTA

2015년 8월 현재, 우리나라는 11개의 FTA가 발효되었으며, 한-중 FTA를 포함한 4개의 FTA가 타결되었다.²⁹⁾ 아래에서는 이 15개의 FTA 중 앞에서 검토한 한-중 FTA 이외에 SPS 관련 별도의 챕터를 포함하고 있는 FTA를 중심으로 주요 조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한·칠레 FTA

한·칠레 FTA의 SPS조치는 제8장에서 규율되고 있는데, 제8.3조에서 양 당사국은 SPS협정에 따라 자국 영역 내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상 필요한 경우 어떠한 SPS조치도 채택, 유지 또는 적용할 수 있으며, 적정보호수준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국의 SPS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 협정 제8.4조는 당사국의 의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SPS협정 제2조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바와 마찬가지로, SPS조치는

29) 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 FTA 현황: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ov/> 참조(2015.8.20. 검색).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거나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고,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한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제8.5조는 국제 표준 및 조화에 관한 규정으로 양 당사국의 SPS조치가 국제 표준, 지침 또는 권고에 기초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8.6조는 동등성 원칙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SPS조치는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위험평가방법을 고려하여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평가에 기초하여야 한다.³⁰⁾ 그리고 제8.10조에 따라 각 당사국은 SPS조치의 변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위원회(Committee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를 설치하여 동 챕터를 이행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³¹⁾

(2) 한·싱가포르 FTA

한·싱가포르 FTA의 제7장은 SPS조치를 다루고 있는데, 제7.1조에 의하면 양 당사국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SPS조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 조치는 과학적 원리에 근거해야 하는데, 이러한 원칙들은 동 협정에 통합되어 일부가 된 SPS협정에 따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SPS조치에 관한 협의 및 정보교환 등을 위해 양국으로 하여금 접촉선(contact point)을 유지하도록 하였다.³²⁾

30) 한·칠레 FTA 제8.7조 제1항.

31) 한·칠레 FTA 제8.11조.

32) 한·싱가포르 FTA 제7.1조 제4항에 의하면 한국은 농림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가, 싱가포르는 농산식품수의청(Agri-Food and Veterinary Authority)이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을 통해 기존의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로 개편하였으므로, 한-중 FTA와 마찬가지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림부’의 승계기관으로서 접촉선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3) 한·EU FTA

한·EU FTA는 제5장에서 SPS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 5.1조 제1항에 의하면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 하면서 SPS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5.4조에서는 각 당사국이 SPS협정상의 기존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5조에서는 투명성을 추구하며, 제5.6조에서는 국제기준을 개발하고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5.10조에 의해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위원회를 설치하여 동 챕터의 이행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제5.11조에 의해 동 챕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없도록(Neither Party may have recourse to) 규정하고 있다.

(4) 한·페루 FTA

한·페루 FTA의 SPS조치는 제6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제 6.1조 제1항을 통해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 하는 가운데, SPS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며, SPS조치가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6.3조에서는 양 당사국이 SPS협정상의 기존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4조에서는 동등성을, 제6.5조에서는 위험평가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또한 제6.7 조에 의해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 위원회(Committee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atters)’를 설치하여 동 사안에 대해 협력과 협의 및 무역 증진과 동 챕터의 이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제6.8조에 의해 동 챕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해서는 안 되도록(Neither Party shall have recourse to) 규정하고 있다.

(5) 한·미 FTA

한·미 FTA는 제8장에서 SPS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 8.2조에 의하면 양 당사국이 SPS협정상의 기존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3조에 의해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atters)’를 설치하여, 동 사안에 관한 협력과 협의 및 무역을 촉진하고 SPS협정의 이행을 증진하도록 하였으며, 제8.4조에 의해 동 챕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없도록(Neither Party may have recourse to) 규정하고 있다.

(6) 한·호주 FTA

한·호주 FTA는 제5장에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과 SPS조치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5.13조에서 제5.18조까지가 후자에 관한 사항이다. 먼저 제5.13조에서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SPS협정상 양국의 기존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하고 있다.³³⁾ 또한 제5.15조에서는 SPS조치와 관련된 정보교환 및 제5.16조의 기술 협의회(Technical Meetings) 업무 조율 등을 위해 양국에서 접촉선을 지정하고 있다. 제5.17조에서는 SPS협정의 이행을 증진하기 위한 양국의 협력을 강조하며, 제5.18조는 SPS조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해서는 안 되도록(Neither Party shall have recourse to) 규정하고 있다.

(7) 한·캐나다 FTA

한·캐나다 FTA는 제5장에 총 5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SPS조치를 규율하고 있는데, 제5.1조에는 목적과 제5.2조에는 적용범위에 대해 언급

33) 한·호주 FTA 제5.14조.

하고 있다. SPS에 관한 챕터의 목적은 양국의 영역에서 인간, 동물 및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는 가운데 SPS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SPS협정의 이행을 촉진하는 것이다. 또한 제 5.3조에서 SPS협정상 양국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며, 제5.5조는 SPS협정 이행 증대 및 SPS 사안에 관한 협력 개선을 위해 양국간 SPS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5.4조에서 SPS조치 관련 챕터는 일반 분쟁해결절차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This Chapter is not subject to Chapter Twenty-One (Dispute Settlement))을 분명히 하고 있다.

(8) 한·콜롬비아 FTA

한·콜롬비아 FTA는 제5.1조에서 제5.5조까지에 이르는 제5장에서 SPS조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한·캐나다 FTA와 일면 유사하게 목적과 적용범위를 설명하고 있다. 다만, 목적의 경우 한·캐나다 FTA 제5.1조에 규정된 SPS협정의 이행 촉진 사항은 빠져 있다. 제5.3조에서는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고 있는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국제식물보호협약 및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지침 등을 고려하여 SPS협정상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제5.4조는 위협평가에 관한 사항을 다루며, 제5.5조는 SPS협정 이행 점검과 양국의 SPS조치 관련 이행 개선 및 협력 강화 등을 위해 SPS위원회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한·콜롬비아 FTA는 다른 FTA와 달리, SPS조치 관련 사안의 분쟁 해결에 대해 별도의 조문을 두는 대신, 제20장 분쟁해결 챕터 중 제 20.2조 제1항³⁴⁾에서 그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34)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제13장(경쟁 및 소비자 정책), 제16장(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 제17장(협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 또는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되거나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대하여, 또는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적용된다. . . ” (필자 강조)

(9) 한·뉴질랜드 FTA

한·뉴질랜드 FTA는 6개의 조항으로 규정된 제5장에 SPS조치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데, 제5.1조에 목적과 제5.2조에 적용범위를 다루고 있다. 특히, 제5.1조의 경우, 한·캐나다 FTA에 규정된 내용 이외에 SPS 관련 사항에 대한 상호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제5.3조는 다른 FTA와 마찬가지로, SPS협정상 양국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하는 내용을 규율하고 있으며, 제5.4조는 SPS 관련 사안 및 동 챕터의 이행 점검 및 해석상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SPS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5.5조에서 양국간의 사소통을 위해 접촉선을 지정하며, 제5.6조는 SPS조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해서는 안 되도록 (Neither Party shall have recourse to) 규정하고 있다.

(10) 한·베트남 FTA

한·베트남 FTA는 제5장에 SPS조치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데, 제5.1조에 목적과 제5.2조에 적용범위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목적 조항의 경우, 한·뉴질랜드 FTA에 규정된 사항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5.2조 제2항을 통해 SPS협정의 부속서 가에 포함된 정의규정이 그대로 적용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제5.3조에서는 일반 규정이라고 제목을 달고 있긴 하지만, 그 구체적 내용에 의하면 SPS협정상 양국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며, 자국의 SPS조치가 양국의 무역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위장된 제한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5.4조와 제5.5조에서 각각 양국의 SPS 관련 분야의 기술협력 및 이행 점검을 위한 SPS위원회 설립에 관해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6조에 의해 SPS조치에 관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해서는 안 되도록

(The provisions of Chapter 15 (Dispute Settlement) shall not apply to any matter arising under this Chapter) 규율하고 있다.

(11) 기타 FTA

한국이 체결한 FTA 중 한·EFTA FTA, 한·ASEAN FTA, 한·인도 CEPA와 한·터키 FTA는 위에서 언급한 FTA와 달리, 별도의 장이 아니라 개별 조문에서 SPS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한·EFTA FTA는 제2장 상품무역 중 제2.7조에 SPS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SPS조치에 관한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SPS협정에 의해 규율되도록 하고 있다.

둘째, 한·ASEAN FTA는 기본협정 제14조(Standards and Conformity Assessment and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제2항에서 농업, 수산업, 동물 및 식품 제품과 작물의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있어서의 SPS조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상품무역협정 제7조에 의해, 당사국들은 SPS협정 등에 따른 WTO 원칙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기로 한 약속에 관하여 동의하고 재확인하며, 제8조 제3항에서 각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와 관련된 질의에 응답하기 위하여 연락처(contact point)를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제4항에서 이행위원회(Implementing Committee) 산하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과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작업반(working group on TBT and SPS)’을 설치하여 동 조항의 이행 및 무역 증진과 상호 협력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셋째, 한·인도 CEPA는 제2장 상품무역 중 제2.28조(Technical Regulations and SPS Measures)에 SPS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1항에서 각 당사국은 SPS협정상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당사국은 양자간 교역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보교환·양자협

의 및 상호협력을 위하여 인간, 동물 그리고 식물의 생명 혹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합법적인 권리를 존중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상품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SPS조치의 도입이나 변경에 관해 정보를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공동작업반(Joint Working Group)을 설치하여 관련 문제를 다루도록 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대한 어떠한 분쟁도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동 협정의 일반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되어서는 안 된다(shall not be brought to dispute settlement)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한·터키 FTA는 상품무역협정(Agreement on Trade in Good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Turkey) 제2.10조에 SPS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1항에서 SPS협정상 자국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양국의 의무로서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무역에 위장된 제한을 하는 SPS조치의 적용을 하지 말도록 규정하며, 제3항에서는 SPS조치에 관한 사안에 대해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해서는 안 되도록(Neither Party shall have recourse to) 규정하고 있다.

2. 중국의 기체결 FTA

2015년 8월 현재, 중국은 13개의 FTA가 발효되었거나 타결되었다.³⁵⁾ 아래에서는 이 13개의 FTA 중 앞에서 검토한 한-중 FTA 이외에 SPS 관련 별도의 챕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영어본이 나와 있는 FTA를 중심으로 주요 조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35) <http://fta.mofcom.gov.cn/english/index.shtml> 참조(2015.8.20. 검색).

(1) 중·파키스탄 FTA

중·파키스탄 FTA³⁶⁾는 제6장의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SPS조치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데, SPS협정의 부속서 가에 규정된 정의규정이 동 챕터의 이행을 위해 적용됨을 언급하고 있다.³⁷⁾ 제29조에서는 동 챕터의 목적을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보호 및 동물, 식물과 이들로 만든 상품의 무역 증진, SPS협정상 양국의 권리와 의무 재확인, SPS조치의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금지 및 양국의 SPS조치 관련 논의의 장 마련 등 4개의 사항으로 정리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제30조에 그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다. 제31조는 이행을 담당하는 권한 있는 당국에 대해, 제32조는 SPS협정에 규정된 투명성 증대를 위해 문의처 설치, 정보교환 등에 관한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3조는 조화, 동등성 및 인증서 승인에 관한 협력에 대해, 제34조는 동 챕터의 목적 달성을 위해 SPS위원회를 설립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한편, 동 챕터는 분쟁해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³⁸⁾ 분쟁해결 챕터에서도 SPS조치에 관한 분쟁의 비적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10장의 일반 분쟁해결절차가 적용됨을 알 수 있다.

(2) 중·칠레 FTA

중·칠레 FTA³⁹⁾는 제7장의 제53조에서 제59조까지 SPS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먼저 제53조와 제54조는 목적과 적용범위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목적조항의 경우, 공중보건, 동물과 식물의 건강 보

36) 영어본은 http://fta.mofcom.gov.cn/pakistan/xieyi/fta_xieyi_en.pdf 참조(2015.8.20. 검색).

37) 중·파키스탄 FTA 제28조 제1항.

38) 반면, 중·파키스탄 FTA 제25조 제2항과 제26조 제2항은 ‘반덤핑과 상계조치’, ‘글로벌 세이프가드조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해서는 안 되도록(shall not be subject to Chapter X (Dispute Settlement) of this Agreement) 규정하고 있다.

39) 영어본은 <http://fta.mofcom.gov.cn/chile/xieyi/freetradexieding2.pdf> 참조(2015.8.20. 검색).

호와 함께 동물, 식물과 이들로 만든 상품의 무역 증진, SPS협정상 이행 개선, 양국의 SPS조치 관련 논의의 장 마련 및 SPS 관련 문제를 즉각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사소통 및 협력 메커니즘 제공 등을 언급함으로써, 중·파키스탄 FTA와 일면 유사하게 언급된 측면과 새롭게 규정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55조는 SPS조치의 적용을 책임지는 권한 있는 당국에 대해, 제56조는 일반규정이라는 제목으로 양국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제56조 제1항은 중·칠레 FTA의 필수적 부분으로 간주되는 SPS협정상 양국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며, 제2항은 양국이 관련 국내법령으로 SPS조치를 확립하거나 유지할 권리가 있으며, 제3항은 무역 원활화를 위해 수입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역, 확인 및 관련 절차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57조는 SPS협정 제7조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별도의 투명성 규정을 두어 정보교환, 문의처 설치 등을 의무로 삼고, 제58조는 SPS 관련 사안을 다루는 SPS위원회 설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9조는 SPS협정 부속서 가의 정의규정을 그대로 적용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중·파키스탄 FTA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분쟁해결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며,⁴⁰⁾ 분쟁해결 챕터에서도 SPS조치에 관한 분쟁의 비적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10장의 일반 분쟁해결절차가 적용된다.

(3) 중·뉴질랜드 FTA

중·뉴질랜드 FTA⁴¹⁾는 제7장에 16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SPS조치에 관한 챕터를 두고 있다. 이전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진국인 뉴질랜드와의 FTA에서 SPS조치와 관련하여 다양한 규정을 둔 것을 염두

40) 그러나 중·칠레 FTA는 제115조에서 ‘협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해서는 안 되도록(No Party shall have recourse to) 규정하고 있다.

41) 영어본은 <http://images.mofcom.gov.cn/gjs/accessory/200804/1208158780064.pdf> 참조 (2015.8.20. 검색).

에 들 때,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대해 상대국의 요구가 강하고 민감했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제73조는 정의규정을 두어, SPS협정 부속서 가는 물론이고,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정의 역시 적용됨을 확인하고 있다. 제74조는 중·칠레 FTA 제53조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목적을 규율하고 있으며, 제76조는 동 챕터 또는 이행합의문(Implementing Arrangements)이 SPS협정상 양국의 권리나 의무를 결코 제한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동 챕터는 SPS협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다시 별도의 조문으로 재구성하고 있는데, 예컨대 제79조는 위험분석(risk analysis), 제80조는 지역적 조건에의 적용, 제81조는 동등성, 제82조는 확인절차, 제83조는 승인절차, 제84조는 수입 검사(import checks)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80조는 소위 ‘지역화’ 조항으로 질병이나 병해충 발생지역을 양국의 영역 전체가 아닌 지역별로 구분하여 검역 조건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85조는 양국의 협력과 기술적 지원에 대해, 제86조와 제87조는 각각 통고와 정보교환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투명성 증대 요건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88조는 공동관리위원회(Joint Management Committee)를 설치하여 SPS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상품 무역을 원활히 하고 SPS조치의 이행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한편, 중·뉴질랜드 FTA 역시 별도의 분쟁해결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분쟁해결 챕터에서도 SPS조치에 관한 분쟁의 비적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16장의 일반 분쟁해결절차가 적용된다.

(4) 중·싱가포르 FTA

중·싱가포르 FTA⁴²⁾는 제7장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과 함께, SPS 조치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데, 제44조에서 제58조에 이르기까지 양자

42) 영어본은 http://www.fta.gov.sg/csfta/chapter7_tbtandsps.pdf 참조(2015.8.30. 검색).

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다루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FTA에서 다루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제48조에 의해 양국은 (TBT협정과) SPS협정상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고 있다. 또한, 제49조에 지역화(Regionalisation) 조항을 두어 양국이 검역 문제를 영역 전체가 아닌 지역별로 접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0조는 정보교환과 협력 강화를 규율하고, 제53조를 통해 동등성을 수락하며, 제54조에서 통고, 문의처, 공표 등을 통해 투명성을 증대하도록 하고 있다. 제55조에서는 동 챕터의 이행 감독과 관련 분쟁의 처리를 위해 공동작업반(Joint Working Group on TBT and SPS)을 설치하도록 하고, 제56조에서 필수적 안보 이익이나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비밀 정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분쟁해결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조항이 없으며, 제12장에 규정된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면 된다.

(5) 중·페루 FTA

중·페루 FTA⁴³⁾는 제6장에 SPS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제79조에서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보호, 양자간 무역 원활화 및 SPS 관련 사항 처리를 위한 골격 마련, SPS조치가 무역에 정당화될 수 없는 장벽이 되지 않게 적용하도록 보장, SPS협정의 이행 역량 강화 및 양국간 메커니즘, 의사소통 및 협력 증대를 내용으로 하는 동 챕터의 목적을 언급하고 있다. 제81조에서 SPS협정상 양국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고 수용하고 있으며, WTO의 SPS위원회가 채택한 결정을 승인하고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3조는 무역을 원활화하기 위한 일반규정으로, 관련 국내당국으로 하여금 이를 위해 협력하고, 투명하고 간소화될 절차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메커니즘을 심화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제84조에서 제88조까지는 SPS

43) 영어본은 http://fta.mofcom.gov.cn/bilu/annex/bilu_xdwb_06_en.pdf 참조(2015.8.30. 검색).

협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을 다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⁴⁴⁾ 특히, 제87조는 소위 ‘지역화 조항’으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국의 영역이 아닌 지역적 차원의 검역조건 적용에 대해 승인하고 있다. 또한, 한-중 FTA와 마찬가지로 제89조에는 기술협력을, 제90조에는 SPS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기존의 다른 FTA와 달리, 제91조에 별도의 ‘기술 협의 및 분쟁해결(Technical Consultations and Dispute Settlement)’ 조항을 마련하고 있는데, 제1항에 의해 일단 양국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SPS조치가 기술 협의를 정당화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SPS위원회에서 기술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3항에 의해 어느 당사국이나 제15장에 규정된 일반 분쟁해결절차에 직접적으로 호소할 수 있도록(any Party may directly resort to) 규정하고 있다.

(6) 중·코스타리카 FTA

중·코스타리카 FTA⁴⁵⁾는 제6장에서 SPS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FTA와 마찬가지로 목적, 적용범위, 정의규정 등을 두고 있다. 제60조에서는 SPS협정상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고, 관련 SPS조치를 개발함에 있어 SPS협정의 과학적 정당화, 조화, 동등성, 지역화 관련 원칙을 준수하며,⁴⁶⁾ WTO의 SPS위원회가 채택한 결정을 승인하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⁴⁷⁾ 특히, 제61조에 지역화(Regionalization) 규정을 두어, SPS협정 제6조에 규정된 원칙을 확인하며, 제61조부터 제67조까

44) 제84조는 조화, 제85조는 동등성, 제86조는 위험평가 및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 수준 결정, 제87조는 병해충 안전지역 및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의 승인, 제88조는 투명성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45) 영어본은 [http://www.sice.oas.org/Trade/CRI_CHN_FTA/Texts_Apr2010_e/CRI_CHN_Core_text_en.pdf](http://www.sice.oas.org/Trade/CRI_CHN_FTA/Texts_Apr2010_e/CRI_CHN_Core_text_en.pdf?bsci_scan_7823DFCE46415F3E=0&bsci_scan_filename=CRI_CHN_Core_text_en.pdf) 또는 http://www.sice.oas.org/Trade/CRI_CHN_FTA/Texts_Apr2010_e/Text_e.asp#6 참조(2015.8.30. 검색).

46) 중·코스타리카 FTA 제60조 제1항 참조.

47) 중·코스타리카 FTA 제60조 제2항 참조.

지 각각 동등성, 위험분석, 방제, 검사 및 승인절차, 투명성, 기술협력 및 SPS위원회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한편, 분쟁해결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⁴⁸⁾ 제14장에 규정된 일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

(7) 중·스위스 FTA

중·스위스 FTA⁴⁹⁾는 제7장에 SPS조치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7.2조에서 SPS협정이 양국간 적용되며 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mutatis mutandis*)’⁵⁰⁾ 중·스위스 FTA에 수용되어 일부를 구성함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제7.4조에서 제7.7조까지는 각각 조화, 지역적 조건에의 적응(즉, 지역화), 검사 및 승인제도, 기술협력에 대해 규율하고 있으며, 제7.8조는 국경에서 SPS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수출품에 대해 유치하는 경우, 해당 이유에 대한 즉각적인 통보 의무를 정하고 있다. 제7.9조는 SPS조치 이행 감독과 기술협력 활동의 조정 업무 등을 수행하는 SPS소위원회(Sub-Committee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7.10조에서 동 소위원회 관찰 하에 상대국이 불필요한 무역에 대한 장벽을 창설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기술 협의(Technical Consultations)⁵¹⁾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

48) 그러나 중·코스타리카 FTA는 제87조, 제107조 제1항 및 제118조 제3항에서 ‘세이프가드, 반덤핑 및 보조금’, ‘기업인의 일시적 입국’ 및 ‘무역관계의 협력, 증진 및 증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해서는 안 되도록(*shall not be subject to Chapter 14 (Dispute Settlement) of this Agreement*) 규정하고 있다.

49) 영어본은 <http://www.seco.admin.ch/themen/00513/00515/01330/05115/index.html?lang=en> 참조(2015.8.30. 검색).

50) 법률용어로 많이 사용되는 ‘*mutatis mutandis*’는 “준용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본래 규정이 대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의 ‘적용한다’와 달리, ‘준용한다’는 어떤 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는 규정을 그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유사한 다른 사항에 대해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황치연, “군사법원법규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2002』, 134쪽 참조.

51) 중·스위스 FTA 각주 7에 의하면, 동 조항의 ‘기술 협의’는 제15장의 분쟁해결

다. 또한, 제7.11조에서 중·스위스 FTA에 따르며 이와 협력 하에 SPS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양국이 부속협정(side agreement)을 체결하였으며, 향후에도 추가적인 부속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한편, 분쟁해결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⁵²⁾ 제15장의 일반 분쟁해결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

(8) 중·호주 FTA

중·호주 FTA⁵³⁾는 제5장에 11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진 SPS조치를 규율하고 있는데, 먼저 제5.1조에서는 동 챕터가 추구하는 4가지 목적, 즉 각 영역에서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보호와 함께 동물, 식물과 이들로 만든 상품의 무역 증진, SPS조치와 관련된 양국의 규정과 절차에 대한 상호이해 증대, SPS조치를 책임지는 양국의 기관간 협력 강화 및 SPS협정의 이행 개선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제5.4조에서 SPS협정상 양국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며, 제5.5조는 양국의 SPS조치 관련 정보교환, 문의처에 대한 새로 채택되거나 갱신된 SPS조치의 통고 등을 통해 투명성 증대를 규율하며, 제5.6조는 인간, 동물이나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에서의 협력활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5.7조는 SPS협정상 지역화(regionalisation) 및 동등성 수락을, 제5.8조는 방제, 검사 및 승인절차를, 제5.9조는 기술지원과 역량구축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제 5.11조를 통해 양국은 제5.1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며 SPS조치의 이행을 검토하고 감독하며, 협력 분야를 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SPS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합의하였다.

및 WTO의 분쟁해결양해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52) 그러나 중·스위스 FTA는 제10조 제6항, 제12.7조 제3항 및 제13.8조 제4항에 의해 ‘경쟁’, ‘환경 문제’ 및 ‘경제 및 기술 협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 분쟁해결절차가 적용되어서는 안 되도록(Chapter 15 (Dispute Settlement) shall not apply to this Chapter) 규정하고 있다.

53) 영어본은 http://fta.mofcom.gov.cn/Australia/annex/xdzw_en.pdf 참조(2015.8.30. 검색).

한편, 제5.10조에 별도의 ‘협약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먼저 제1항에서 양국으로 하여금 동 챕터의 협력메커니즘을 통해 SPS조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어떠한 당사국도 SPS챕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 제15장의 일반 분쟁해결 규정을 이용해서는 안 되도록(Neither Party shall have recourse to the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in Chapter 15 (Dispute Settlement)) 규율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이, 중국이 체결한 FTA 중-일 반 분쟁해결 절차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한-중 FTA와 중·호주 FTA가 유일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소 결

이상으로 한국과 중국이 체결한 FTA에서 상품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대한 협정문의 주요 규정을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이 체결한 FTA에서 SPS조치에 관한 챕터는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내용이 상당히 비슷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동 챕터는 SPS협정상 FTA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며, 이에 관한 보다 구체적 사안은 SPS위원회나 작업반 등을 설치하여 다루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서는 한·EU FTA부터 (한-중 FTA를 포함하여) FTA에 규정된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분쟁은 WTO 분쟁해결절차의 관련 규정을 통해 다루어야 할 것이다. 즉, SPS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WTO의 SPS협정이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2-2> 한국의 기체결 FTA별 SPS조치 비교

FTA	SPS협정과의 관계	의무와 이행	분쟁해결
한·칠레	SPS협정에 따른 SPS조치 적용, 조건부 자국의 SPS 조치 적용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금지, 과학적 원리에 근거,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한 차별 없이 적용, 최혜국 및 내국민 대우, 국제표준 및 조화, 동등성, SPS위원회	협의→일반 분쟁해결절차
한·싱가포르	동 협정에 수용되어 일부가 된 SPS 협정 적용, 조건부 자국의 SPS조치 적용	접촉선 유지	일반 분쟁해결절차 적용
한·EU	SPS협정상 권리와 의무 재확인	정보교환, 국제기준, SPS위원회	일반 분쟁해결절차 비적용(may)
한·페루	SPS협정상 권리와 의무 확인	동등성, 위험평가, SPS 위원회	일반 분쟁해결절차 비적용(shall)
한·미국	SPS협정상 권리와 의무 확인	과학 및 위험평가, SPS 위원회	일반 분쟁해결절차 비적용(may)
한·호주	SPS협정상 권리와 의무 확인	정보교환, 기술 협의회, 협력	일반 분쟁해결절차 비적용(shall)
한·캐나다	SPS협정상 권리와 의무 확인	SPS위원회	일반 분쟁해결절차 비적용(is not subject)
한·콜롬비아	(관련 구제기구 등의 지침 고려하여) SPS협정상 권리와 의무 확인	위험평가, SPS위원회	제20장(제20.2조): 일반 분쟁해결절차 비적용(shall)

FTA	SPS협정과의 관계	의무와 이행	분쟁해결
한·뉴질랜드	SPS협정상 권리와 의무 확인	SPS위원회, 접촉선	일반 분쟁해결절차 비적용(shall)
한·베트남	SPS협정상 권리와 의무 재확인	무역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위장된 제한 금지, 기술협력, SPS위원회	일반 분쟁해결절차 비적용(shall)

또한, 중국이 체결한 FTA에서 SPS조치에 관한 챕터는 아래 <표 2>에서 살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 WTO SPS협정에 규정된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는 조문을 통해 SPS협정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각 FTA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한-중 FTA, 중·칠레 FTA, 중·페루 FTA 및 중·스위스 FTA는 SPS협정을 각 FTA에 수용함으로써 FTA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WTO의 SPS협정이 적용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체결한 FTA의 위생검역조치 챕터는 여러 의무와 이행장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공통적으로 투명성 제고를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으며, 한-중 FTA에는 언급되어 있지만 거의 모든 FTA에서 지역화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기존의 FTA는 자신의 분쟁해결챕터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반면, 한-중 FTA와 가장 최근의 중·호주 FTA에서만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특이하다.

<표 2-2-3> 중국의 기체결 FTA별 SPS조치 비교

FTA	SPS협정과의 관계	의무와 이행	분쟁해결
중·파키스탄	SPS협정상 권리와 의무 재확인	투명성, 조화, 동등성, 인증서 승인에 대한 협력, SPS위원회	일반 분쟁해결 절차 적용
중·칠레	동 협정의 필수적 부분으로 간주되는 SPS협정상 권리와 의무 재확인	투명성, SPS위원회	일반 분쟁해결 절차 적용
중·뉴질랜드	동 챕터 또는 이행합의문이 SPS협정상 권리와 의무 제한 불가	위험분석, 지역화, 동등성, 확인절차, 승인절차, 수입 검사, 협력, 통고, 정보교환, 공동관리 위원회	일반 분쟁해결 절차 적용
중·싱가포르	SPS협정상 권리와 의무 재확인	지역화, 정보교환과 협력 강화, 동등성, 투명성, 공동작업반, 비밀정보 지정 가능	일반 분쟁해결 절차 적용
중·페루	SPS협정상 권리와 의무 재확인 및 수용, WTO/SPS위원회 결정 승인 및 적용	지역화, 기술협력, SPS위원회	기술 협의, 일반 분쟁해결절차 적용
중·코스타리카	SPS협정상 권리와 의무 재확인, SPS협정상 기본원칙 준수, WTO/SPS위원회 결정 승인 및 적용	지역화, 동등성, 위험분석, 방제, 검사 및 승인절차, 투명성, 기술협력, SPS위원회	일반 분쟁해결 절차 적용
중·스위스	동 협정에 수용되어 일부가 된 SPS협정의 준용	조화, 지역화, 검사 및 승인제도, 기술협력, SPS소위원회, 부속협정	기술 협의, 일반 분쟁해결절차 적용

FTA	SPS협정과의 관계	의무와 이행	분쟁해결
중·호주	SPS협정상 권리와 의무 확인	투명성, 협력, 지역화, 동등성, 방제, 검사 및 승인절차, 기술지원 및 역량구축, SPS위원회	협력메커니즘, 일반 분쟁해결 절차 비적용 (shall)

제 4 절 한-중 FTA의 평가 및 시사점

1. 한-중 FTA 규정의 문제점

한-중 FTA의 위생검역조치는 한국이나 중국이 채택한 대부분의 FTA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챕터를 통해 규율하고 있으며, WTO의 SPS 협정과의 밀접한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위 제2절과 제3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한-중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기존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소한의 내용만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한-중 FTA 제5.3조에서 WTO의 SPS협정이 양국에 적용되며, 한-중 FTA 위생검역조치 챕터의 일부를 구성함을 확인하고 있긴 하지만, 한국이나 중국이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다른 FTA의 경우 SPS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동등성, 위험평가, 투명성, 정보교환, 국제기준,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개별조문으로 규율함으로써 SPS협정상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가 좀 더 실효성 있게 준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기체결 FTA의 경우 SPS조치가 FTA 가입국 간의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명성’ 관련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중 FTA에는 다만 ‘목적’ 조항에서만 언급하고 있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2. 한-중 FTA의 시사점 및 향후 과제

한-중 FTA는 중국이 체결한 대부분의 FTA와 달리, ‘지역화’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우리 농축산업계의 피해를 다소간 줄일 수 있게 되어 다행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중 FTA 제5.6조에 의해 향후 위생검역조치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의 기체결 FTA에서 거의 받아들여지고 있는) FTA 자체의 분쟁해결 제도가 아닌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에서 거의 받아들여지고 있는)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좀 더 객관적이고 공평한 방식의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중 FTA는 제5.4조와 제5.5조의 기술협력 및 SPS위원회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통해 우리나라와 중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SPS조치와 관련하여 긴밀한 협력체제를 확립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SPS문제에 대한 양국의 접근법을 체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도 한-중 FTA는 SPS조치의 여러 법적 이슈에 대해 정보 공유와 협력을 유지함으로써 WTO의 SPS협정 자체뿐만 아니라 FTA의 SPS조치에 관한 법적 개선에 발전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I. 국내문헌

1. 단행본 및 연구보고서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신국제경제법』, 박영사, 2012.

관계부처합동,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 2015.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너름, 『한-중 FTA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 제 179호 이슈보고서, 2014.

황치연, “군사법원법규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2002』, 125-156쪽.

II. 외국문헌

Scott, Joanne, *The WTO Agreemen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A Commenta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Wolfrum, Rüdiger · Stoll, Peter-Tobias and Seibert-Fohr, Anja (eds.), *WTO - Technical Barriers and SPS Measures (Max Planck Commentaries on World Trade Law)*,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7.

III. FTA 협정문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U FTA, 한-페루 FTA, 한-미 FTA,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한-콜롬비아 FTA, 한-뉴질랜드 FTA, 한-베트남 FTA.

China-Pakistan FTA, China-Chile FTA, China-New Zealand FTA, China-Singapore FTA, China-Peru FTA, China-Costa Rica FTA, China-Switzerland FTA, China-Australia FTA.

제 3 장 TBT

제 1 절 무역기술장벽(TBT)의 의의

1. 기술규제와 무역 간의 관계

먼저 기술규제라 함은 개별 국가가 갖고 있는 표준¹⁾, 기술규정²⁾ 및 적합성평가절차³⁾ 일체를 의미하고, 표준이나 기술규정은 주로 정부 당국이나 민간표준화기구 또는 단체가 특정 제품에 대해 설정하는 기술규격(technical specification)이나 기술요건을 가리킨다. 이러한 기술규제는 현대사회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그 이유는 표준이나 기술규정은 인간과 동물의 생활과 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품질이나 순도(純度), 기술적 효율성 및 적합성을 충족하는지를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나아가 안전이나 국가안보상의 이유 또는 기만적(欺瞞的) 행위를 방지할 목적에서 채택된 것이기 때문이다.⁴⁾ 또한 적합성평가절차는 그러한

1) “표준”(standards)이라 함은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제품에 관한 규칙·지침이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제조방법을 규정한, 그 준수가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문서를 의미한다. WTO 무역기술장벽협정 부속서 1 제2항. 표준은 제품표준(product standards)과 공정표준(production standards)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2)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은 적용가능한 행정규정을 포함하여 제품의 특성 또는 그 관련 공정 및 제조방법을 규정한, 그 준수가 강제적인 문서를 가리킨다. WTO 무역기술장벽협정 부속서 1 제1항. 표준과 기술규정 제도 간에 있어 핵심적인 차이는 기술규정이 강제적인 성격을 가짐에 비하여 표준은 강제성이 없다는 점인 바, 이는 기술규정의 權原(authority)이 통상 정부에서 비롯되는 것인 반면에 표준의 權原은 “공인된 기관”(a recognized body)의 승인(approval)에서 비롯된 것에서 주로 기인한다. E. McGovern, International Trade Regulation(이하 ‘McGovern’), Globefield Press, 1995, p.7.21-1.

3) “적합성평가절차”(procedures for assessment of conformity)라 함은 어느 제품이 해당 표준이나 기술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지 또는 이를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시험절차를 가리킨다.

4) 최현경·고준성, 표준과 경쟁우위: 성장과 국제무역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 p.65.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표준이나 기술규정에서 정한 특정 기술규격이나 기술요건에 적합한지 또는 이를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절차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국가의 기술규제 자체는 그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따라서 기술규제 자체가 무역장벽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국가는 기술규제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어 각기 독자적인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 제도를 수립,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들이 국제기술표준을 따르지 아니하는 한 국가들의 기술표준제도는 서로 다를 수 있고 실제로 많이 다르다. 적합성평가절차 역시 국가에 따라 적합성평가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국가 표준이 개별 국가의 입장에서 합목적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수입품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국가 표준들이 서로 상이하다는 자체가 기업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⁵⁾ 그 이유는 기업이 어느 제품을 상이한 국가 표준을 갖고 있는 복수의 국가들에 수출하는 경우에 당해 제품이 특정 수입국 국내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수입국별로 상이한 표준 및 기술규정에 맞추어 제품을 생산해야 하고, 이와 같이 생산된 제품은 다시 수입국별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만 하는 관계로 그만큼 수출에 따른 고정비용의 증대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들 간에 상이한 기술표준은 기업 생산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감소시키는 경우 한계생산비용의 증대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⁶⁾

나아가 어느 국가의 기술표준제도가 과도하게 까다롭거나 기술표준제도상 구체적인 요건에 대한 정보를 적절히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관한 정보접근이 어려운 경우, 다른 수출국의 생산자들이 수입국

5) McGovern, pp.7.21-3~7.21-4. 최현경·고준성, p.66에서 재인용.

6) R. Piermartini & M. Budetta, A mapping of regional rules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in: A. Estevadeordal, K. Suominen & R. Teh(ed.), *Regional Rules in the Global Trading System*(이하 'Piermartini & Budetta'), 2009, p.257. 최현경·고준성, p.66에서 재인용.

의 새로운 기술표준제도에 따라 제조공정 등을 조정하는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기술표준제도를 자주 변경하는 경우 또는 국가의 지방에 따라 상이한 표준·기술 규정·적합성평가 제도를 갖고 있거나 상이하게 운영하는 경우 국가의 기술규제가 기업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경우에 따라 수출을 중단시키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⁷⁾ 특히, 적합성평가와 관련하여 수입국에서 국제적으로 조화된 제품 표준에 의존하거나 다른 국가의 표준과의 동등성을 수용한다고 해도 여전히 별도의 적합성평가 요구 사항을 가질 수 있고,⁸⁾ 수입국이 기술규정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지정된 기관에서만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⁹⁾ 이는 수출자에게 추가적인 노력과 비용의 증가를 초래함으로써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이 될 수 있다. 이밖에 시험·검사·인증과 같은 적합성절차 수행에 대한 과도한 비용 부과나 적합성평가절차의 지체 또는 장기화 모두 수출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술규제가 수입품에 대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가리켜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하 ‘TBT’)라 부른다. TBT는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s)의 하나인데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장벽들¹⁰⁾ 가운데 TBT가 수출기업에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¹¹⁾

7) J.H. Jackson, W.J. Davey, & A.O. Sykes, *Legal Problems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4th ed., pp.538-539. 최현경·고준성, p.66에서 재인용.

8) 류경임, 기술규제와 무역: 무역기술장벽(TBT)을 넘어 세계시장으로, 한국표준협회 미디어, 2015, p.178. 이런 경우 특히 수출자가 선적한 뒤에 수입국에서 상품이 거부되는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 가령, 낙농제품의 경우 개별 탁송품에 대해 수출 전이나 입국항만에서 또는 두 번 모두 시험을 받아야 한다. Id. pp.178-180.

9) Id., p.180. 가령, 수입국 기술규제 당국이 수입국 내의 기관으로부터 적합성을 보장받고자 하는 경우에 외국 적합성평가기관이 보다 비용효과적인 방식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적합성을 보증해 줄 적격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Id.

10) 관세 형태가 아닌 비관세장벽들은 기술규제 이외에도 위생검역조치, 통관절차, 수량제한 등의 수출입제한, 원산지규정, 선적전 검사, 환경규제 등 다양한 법·제도 및 그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다.

11) 실제로 2014년 11월 기준 KOTRA가 해외무역관을 통해 조사, 수집한 우리 수출

2. 무역기술장벽의 유형 및 대응방안

(1) 무역기술장벽의 유형

앞에서 언급한 비관세장벽으로서 작용하는 무역기술장벽(TBT)의 유형을 기술규제의 형태별로 나누어 그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준 및 기술규정과 관련된 대표적인 TBT 유형으로는 과도한 기술 요건,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이상의 과도한 기술요건, 수입제품과 국산품간의 차별, 지방정부간 상이한 기술규제의 존재 및 집행에 있어 통일성 결여,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기술규제 입법 관련 투명성의 결여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적합성평가절차와 관련된 TBT로서 심사기간 비준수 및 지체, 중복 또는 추가 검사, 과도한 검사 비용, 자의적인 심사, 심사 과정에서의 기밀 유출, 적합성평가기관의 인정 제한 등이 있다. 이밖에 과도한 표시 및 라벨링 요건 역시 TBT로서 작용할 수 있다.

<표 2-3-1> 기술규제 형태별 무역기술장벽의 유형 및 사례 개관

기술규제 형태	무역기술장벽의 유형	유형별 대표적 사례
표준 · 기술규정	과도한 기술요건	-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이상의 과도하게 높은 기술요건 설정

기업의 해외에서 직면하고 있는 193건의 비관세조치를 그 형태별로 건수와 비중 및 순위를 분석한 결과 (i) 무역기술장벽(TBT)이 47건(25%), (ii) 통관절차 관련이 32건(17%), (iii) 수입규제조치가 27건(15%), (iv) 국내규제 관련이 26건(14%), (v) 무역과 연계된 투자조치(TRIMs)가 15건(8%), (vi) 동식물검역조치(SPS) 관련이 11건(6%), (vii) 반덤핑조치가 10건(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TBT가 47건(25%)으로 비관세장벽의 형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더욱이 26건(14%)을 차지한 국내규제 중 상다수가 기술규제와 관련 있는 환경규제임을 고려하면 기술규제와 관련된 비관세조치의 비중이 비관세장벽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KOTRA, 국별 비관세장벽 현황(비공개 자료), 2014.11.

기술규제 형태	무역기술장벽의 유형	유형별 대표적 사례
관련 TBT		- 지나치게 엄격한 기술규격 및 인증마크 취득 요건절차
	수입품과 국산품간의 차별	- 기술규정 및 표준 관련 기준 및 그 적용에 있어 수입제품과 국산품 간에 차별
	지방정부간 상이한 기술규제법규 및 집행	- 지방정부간의 상이한 기술규제 법규의 존재 및 집행에 있어 통일성 결여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당해 제품에 대한 국제표준의 비채택
	기술규제입법 관련 투명성 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번한 기술규제 관련 입법의 개정 - 새로운 기술표준의 도입 관련 외국의 생산자들이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전 공지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시행 - 신규 또는 개정 기술규제 법령에 대한 신속한 접근이나 구체적인 정보 비 제공
적합성 평가절차 관련 TBT	심사기간 비준수 및 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획득을 위한 절차 단계별 심사기간 비준수 - 담당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검사 지체
	중복·추가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을 획득하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아 중복 검사 발생 또는 별도의 적합성평가 요구 사항 존재로 인한 추가 검사 발생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중 승인절차 존재
	과도한 검사비용	- 필요한 이상의 과도한 검사 비용 부과
	자의적인 심사	- 검사기관의 자의적인 심사
	기밀 유출	- 심사과정에서 신청 업체의 기밀 유출

기술규제 형태	무역기술장벽의 유형	유형별 대표적 사례
	적합성평가기관의 인정 제한	- 적합성평가기관을 수입국 내 기관으로 제한하여 인정함으로써 인한 불편 발생
기타 TBT	과도한 표시 및 라벨링 요건	- 국내조달비율 표시 요구나 자국어 표기 의무 등 과도한 라벨링 요구

출처: 필자 작성

(2) 무역기술장벽에의 대응방안¹²⁾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유형의 기술장벽으로 인한 무역장벽적 효과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으로서 (i) 상호인정, (ii) 조화 또는 국제기준의 도입, (iii) 기술규제 제도 도입 및 운영에 있어 투명성 제고 그리고 (iv) 기술규제 관련 협의 및 분쟁해결 메카니즘 도입, (v) 기술규제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이 있다.

① 상호인정

첫째,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¹³⁾이라 함은 복수의 국가들이 FTA TBT협상이나 별도의 협상을 통해 호혜주의에 기초하여 당사국들 상호간에 다른 당사국의 상이한 표준이나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인정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일정 제품에 대한 기

12) 이 항의 내용은 필자가 최현경·고준성 공저 연구보고서 가운데 필자가 집필한 “표준제도의 무역장벽적 효과를 제거·완화하기 위한 수단 및 그 효과” 부분을 기초로 가필된 것임을 밝혀둔다.

13) 인정 방법으로는 상호인정 이외에 어느 국가가 일방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이 있는 바, 일방적 인정(unilateral recognition or equivalence)이라 함은 어느 국가(A국)가 수출국(B국)의 제품 표준이 자국과 다른 기술사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호 등과 같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유효하다고 일방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경우 B국의 제품은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A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이의 사례로서 중-뉴질랜드 FTA에서의 뉴질랜드의 일방적 인정이 그러하다.

술표준이나 적합성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을 통해 이뤄지는데 그 형식은 대상 및 범위에 따라 정부간, 정부기관 간 또는 비정부기관 간 협정이나 약정 등 다양한 형식으로 체결된다. 다만, 이러한 상호인정 방식은 타방 당사국의 기술표준 및 시험·검사·인증기관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기술규제 수준이 동등하면서 관련 제도가 유사한 국가들 간에 주로 이용된다.

이러한 상호인정은 수입품에 대한 중복 시험이나 인증 절차를 불필요하게 함으로써 수출자로 하여금 기술규제 준수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 주고 따라서 무역을 원활화하고 촉진시켜 준다. 이 점에서 WTO TBT협정에서도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자의 적합성판정절차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한 협정체결을 위하여 협상을 개시할 것을 장려한다.¹⁴⁾

② 조화 또는 국제기준의 도입

조화(harmonization)라 함은 복수의 국가들이 기술규정이나 표준을 통일[조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공통의 표준을 제정하거나 국제표준을 채택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조화는 국가표준들 간에 차이가 커서 상호인정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에 적합한 방법이다. 다른 국가들의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표준의 조화는 모든 요건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핵심 요건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여기서 모든 요건을 대상으로 하는 조화를 가리켜 완전조화(full harmonization)라 하는데 이는 제품의 상세한 사양별 디자인을 포함하여 완전한 공통 표준의 확립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핵심 요건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화를 가리켜 최소표준조화(harmonization of minimal standards)라 하는데, 이는 무역을 자유화

14) WTO TBT협정 제6.3조.

하고자 하는 국가들 간에 공통의 핵심 요건만을 정하고, 제품의 특정 사양에 관한 디자인 등은 그러한 조화에 참여한 개별 국가나 (기업)이 각기 선택하는 방식에 맡기는 방법을 가리킨다.¹⁵⁾ 이와 관련 수입제품에 대한 수요가 다양성의 선호로 인해 유발된 것인 경우 표준의 완전조화는 다양성을 제한하고 따라서 제품 간 차별화의 정도를 감소시킴으로써 수입품에 대한 수요 즉,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¹⁶⁾

이러한 조화는 보편적 차원에서 국제표준화기구 등을 중심으로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s)의 제정 및 보급을 통해서 각국의 상이한 표준 및 규격을 일치 내지 통일시켜 나감으로써 기술장벽을 제거할 목적으로 추진되거나 EU 등과 같은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통일표준을 제정함으로써 시행되기도 한다. 이러한 국제표준은 공통의 표준을 통해 서로 다른 시장에서의 준수를 위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시켜 줌으로써 국제무역의 원활화에 기여한다. 그런데, 국제표준의 도입에 있어서는 모든 국가들 특히 개도국에게도 적합하고 준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의 문제가 어려운 과제이다. 그 이유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존재하는 상당한 기술능력에 있어 격차 등의 존재로 인해 국제표준의 보편적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국제표준은 품목 기초로 이뤄지는 관계로 그 성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¹⁷⁾

표준과 관련하여 WTO TBT협정 부속서 표준의 준비·채택 및 적용에 관한 모범관행규약을 두고 표준기관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국제표준 제정 작업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아니어서 실제 그 역할은 제한적이다.¹⁸⁾ 이에 비해 표준의 조화에 있어 핵심이 되는 국제표준의 준비에 있어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이 점에서 향후 표준의

15) Piermartini & Budetta, p.258. 최현경·고준성, pp.75-76에서 재인용.

16) Id., pp.259-260. 최현경·고준성, p.76에서 재인용.

17) 최현경·고준성, p.76.

18) McGovern, pp.7-21-4, 7.23-1-7.23-2. 최현경·고준성, p.76에서 재인용.

국제적 조화의 성과는 이들 국제표준화기구에 의해 특정 부문 및 품목별로 진행되는 조화작업에 달려 있다.¹⁹⁾

③ 투명성의 제고

앞에서 제시한 기술규제의 상호인정이나 조화는 무역기술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원천적 방안이지만 실제로 이를 도입하는 데에는 제약이 많고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²⁰⁾ 이 점에서 국가가 서로 다른 자국의 기술표준 제도를 유지하면서 이로 인한 무역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이 바로 국가의 기술표준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서 기술규제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다른 국가에게 통보하는 것, 국가의 기술규제 제·개정 절차에 다른 국가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 국가의 기술규제 관련 제반 정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의처를 설치하는 것 등이 있다.²¹⁾ 이와 관련 WTO TBT협정에서도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판정절차에 관한 정보 조항 등을 통해 회원국의 기술규제 투명성에 관해 규정한다.²²⁾

④ 기술규제 관련 협의 및 분쟁해결 메카니즘 도입

기술규제가 갖는 무역장벽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서 FTA 등을 통해 참가국들 간에 TBT 관련 제반 사안을 논의하는 TBT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상설 협의 채널을 구축하는 것 또는 TBT를 둘러싼 체약국들 간의 분쟁에 대해 법적 구속력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거나 권고 권한을 가진 TBT 분쟁해결기관을 설치하는 것 등이

19) 최현경·고준성, p.76.

20) 가령, 국가들 간에 최적표준(optimal standards)이 상당히 다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Piermartini & Budetta., p.260.

21) 최현경·고준성, p.76.

22) WTO TBT협정 제10조.

있다. 이와 관련 WTO TBT협정에서도 무역기술장벽위원회 및 협의와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을 두고²³⁾, 동 부속서 2에서 기술전문가단에 대해 규정한다.

⑤ 기술지원

최근 들어 개도국에서의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기술규제 운영으로 인한 무역기술장벽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들 개도국 가운데에는 기술규제에 관한 물적 및 인적 인프라를 구비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에 의한 TBT 효과를 제거 내지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술규정의 준비나 적합성평가기관의 설립이 선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술규정의 수립, 운영기관의 설치 및 관련 인력의 훈련 지원 등의 국제협력이 추진될 수 있다. WTO TBT협정에서도 다른 회원국 특히 개도국 회원국에 대한 기술지원에 대해 규정한다.²⁴⁾

3. 중국에서의 무역기술장벽 현황

한-중 FTA TBT협상에 대비하여 산업연구원이 2011년 수행한 연구용역²⁵⁾에서는 중국의 기술규제와 관련하여 우리 수출기업 및 중국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이 무역과 관련하여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즉, 중국에서의 TBT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동 연구에서는 (i) KOTRA 중국 주재 무역관과 주중 한국대사관 등이 조사하여 공표한 자료집²⁶⁾, (ii) 일본의 무역·투자원활화비즈니스협의회가 일본의 업종 및 품목별 협회, 수출입유관 단체, 일본 상공회의소 등 관련 단체를

23) WTO TBT협정 제13조-제14조.

24) WTO TBT협정 제11조-제12조.

25) 고준성(연구책임자) 등, 한-중 FTA 협상시 기술장벽 분야 대응방안 연구 용역보고서(이하 '고준성 등 중국 TBT 보고서'), 산업연구원, 2011년(비공개).

26) 외교통상부, 2010 외국의 통상환경: 아시아 대양주, 2011년.

통해 조사, 수집하여 주기별로 공표하는 자료²⁷⁾, (iii) 산업연구원이 수행한 중국 진출 한국기업 실무책임자들과의 면담 조사²⁸⁾, (iv) 중국 내 지역별 한인상공회를 통한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기술 규제로 인한 무역장벽에 대한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상기 조사 및 연구 결과는 비록 최신의 결과는 아니지만 그간 중국에서의 무역기술 장벽이 크게 개선된 바가 없어 중국에서의 TBT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참조할 가치가 있기에 그 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²⁹⁾

상기 조사 결과를 기초로 중국에서의 무역기술장벽의 유형별로 대중 수출기업이 직면하는 애로 수준에 대한 종합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에서의 TBT 가운데 대중 수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된 애로 사항으로는 (i) 중국의 기술규제 내용의 불명확과 관련 법규의 제·개정 상황에 대한 공표 부실 등 투명성에 대한 불만 그리고 (ii) 중국내 성별간의 상이한 인증절차 및 집행 등 2건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중국에서의 TBT 가운데 대중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된 애로 사항으로는 (i) 중국단일강제인증제도(China Compulsory Product Certification System: 이하 ‘CCC’) 절차단계별 심사기간 비 준수, (ii) 기술규제의 빈번한 개정, (iii) CCC등 기술규제 대상품목의 과도한 확대, (iv) CCC 인증심사중 기업비밀 유출 우려, (v) 인증절차시 중복 서류 요구 및 수정비용 부과 그리고 (vi) 중국의 「출입경검험검역표지관리방법(出入境检验检疫标志管理办法)」에 기초한 조

27) 본 무역·투자원활화비즈니스협회의, 各国·地域の貿易・投資上の問題点と要望「2010年版」.

28) 산업연구원이 2011년 7월 기간 중 중국 청도(산둥성 소재) 및 광저우(광둥성 소재) 현지 투자 한국기업을 방문하여, 실무책임자와의 면담을 통해 대중국 교역 관련 중국의 기술규제로 인한 무역 애로 현황을 조사

29) 참고로 고준성 등의 용역보고서(2011년)는 한-중 FTA 협상 대비 작성된 것이어서 그간 공개되지 못하였는데, 이제 한-중 FTA가 타결되어 연구 결과의 일부를 소개할 수 있게 되었음을 밝혀둔다.

사·검역(China Inspection and Quarantine: CIQ)제도에 기해 시행되는 상품검역(이하 ‘상검’)비용의 과다 등 6건으로 조사되었다.

셋째로 중국에서의 TBT 가운데 대중 수출에 영향이 보통인 것으로 조사된 애로 사항으로는(i) CCC 검사비용, (ii) 필요 이상의 시험 또는 검사 요구, (iii) 검사기간의 장기화, (iv) 중국 적합성평가기관에만 인증 권한 부여로 인한 애로, (v) 기계전자제품에 대한 품질안전허가증제도 보다 까다롭게 운영, (vi) 수입품에 대한 라벨링 요건 강화(중국어 표기 요구 등), (vii) 품질보증서의 짧은 유효기간, (viii) 기술규제 운영시 내자 및 외자기업 간 차별, (ix) 상용 암호기능 탑재기기 경우 당국 허가 요구, (x) 화학물질 규제리스트 불투명 등 10건으로 조사되었다.

끝으로 환경규제와 관련된 중국판 RoHS 지침-이는 중국의 「전자 정보 제품 오염 제어 관리변법」(电子信息产品污染控制管理办法)(2007년 3월 1일 실시)을 가리킴³⁰⁾-에 대해서는 중국의 수준 자체가 낮아 우리 기업들이 대응하는데 달리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0) 참고로 중국의 RoHS 지침은 이는 EU의 “RoHS 지침”(전기 및 전자 제품 내 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지침: Directive on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2002/95/EC)에 상응하는 것임.

<표 2-3-2> 중국에서의 무역기술장벽 유형별 애로 수준 종합 평가

TBT에 따른 존재 여부: ○ 애로 존재 호소, × 애로 존재 호소 없음
 TBT 유형별 영향 정도: ■ 매우 심각, ▲ 심각, ▲보통, - 영향 없음

TBT 애로 조사 출처 TBT 유형별 애로사항	주중 소재 한국기관 조사 결과	일본의 무역·투자 원활화 비즈니스협의회 조사 결과	중국 진출 한국기업 면담 결과	중국 진출 한국기업 설문조사 결과 (불만율)	애로 수준 종합 평가
기술규제 내용 불명확 및 투명성 결여	○ (화장품인허가 세부지침)	○ (CCC기재사항) ○ (공장검사규정) ○ (중국GB구입애로)	○ (표준요구사항) ○ (상검관련)	×	■
중국내 성별 상이한 인증절차 및 집행	×	○(RoHS지침 지방감독시) ○(중국내 검사기관간 상호인정 부재)	×	○ (24%)	■
CCC 절차단계 별 심사기간 비준수	○	×	○	×	▲
기술규제의 빈번한 개정	×	○(CCC제도); ○(화장품성분규제)	×	○ (26%)	▲
CCC등 기술규제 대상 품목 과도 확대	×	○ (IT보안제품추가)	×	○ (40%)	▲

제 2 부 한-중 FTA 주요 챕터 분석

TBT 애로 조사 출처 TBT 유형별 애로사항	주중 소재 한국기관 조사 결과	일본의 무역·투자 원활화 비즈니스협의회 조사 결과	중국 진출 한국기업 면담 결과	중국 진출 한국기업 설문조사 결과 (불만율)	애로 수준 종합 평가
CCC 인증심사중 기업비밀 유출 우려	○	×	○	×	▲
인증절차시 중복 서류 요구 및 수정비용 부과	×	×	×	○ (34%)	▲
검사 비용 과다	○ (화장품위생 안정성검사)	×	○(상검비용 과다)/ ×(CCC비용 적정)	○ (26%)	▲/ ▲
필요 이상의 시험 또는 검사 요구	○ (중복검사)	×	×	○ (23%)	▲
검사 시간 장기화	○(의약품 중국약전 적용)	×	×	○ (26%)	▲
중국 적합성평 가기관에만 인증권한 부여로 인한 애로	×	×	×	○ (26%)	▲
기계전자 제품에 대한 품질안전 허가증제 도 보다 까다롭게 운영	×	×	×	○ (30%)	▲

TBT 애로 조사 출처 TBT 유형별 애로사항	주중 소재 한국기관 조사 결과	일본의 무역·투자 원활화 비즈니스협의회 조사 결과	중국 진출 한국기업 면담 결과	중국 진출 한국기업 설문조사 결과 (불만율)	애로 수준 종합 평가
수입품에 대한 라벨링 요건 강화(중국 어 표기 요구 등)	×	○ (라벨의 중국어 표기 요구)	×	○ (23%)	▲
품질보증 서의 짧은 유효기간	×	×	×	○ (21%)	▲
기술규제 운영시 내자 및 외자기업 간 차별	×	×	○ (상검관련)	×	▲
상용 암호기능 탑재기기 경우 당국 허가 요구	×	○ (중국기업은 인식 없음)	×	×	▲
화학물질 규제리스 트 불투명	×	○	×	×	▲
중국판 RoHS지침 대응	×	×	×(중국 수준이 낮아 대응에 애로 없음)	×	—

출처: 고준성 등, 중국 TBT 보고서

제 2 절 한-중 FTA의 TBT챕터의 주요 규정 분석

1. 의 의

한-중 FTA에서의 무역기술장벽에 관해서는 제6장 무역기술장벽(이하 ‘TBT챕터’ 또는 ‘챕터’)에서 규정하며, TBT챕터는 총 1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과 중국 양국은 WTO 회원으로서 무역기술장벽에 관해 다자간무역협정인 WTO 무역기술장벽협정(이하 ‘TBT협정’)의 적용을 받음은 물론이며, TBT챕터에서도 WTO TBT협정의 이행을 장려하는 것에 대한 일방 당사국의 협력 제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³¹⁾ 그런데 금번 타결된 한-중 FTA TBT챕터에서는 WTO TBT협정에서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새로운 사안들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음이 주목되는데, (i) IECEE CB Scheme (국제전기기기 인증제도)에 따라 발행된 시험성적서의 상호 수용 촉진, (ii) 시험용 샘플의 역류시 수입자에게의 신속한 통고, (iii) 소비자 제품 안전 보호 강화 등이 그러하다. 또한 WTO TBT협정에서 규정한 사안에 대해 보다 진일보된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i) 기술규정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기간을 60일로 명시한 것, (ii) 시험인증기관의 설립에 대한 협력 등이 그러하다. 따라서 한-중 FTA TBT챕터는 TBT협정에서의 TBT 애로 완화 방안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이면서 보다 포괄적인 TBT 애로완화 규정이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한-중 FTA의 TBT챕터는 넓은 의미에서 기술규제의 일부로서 볼 수 있는 위생 및 검역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조치)에 관한 제5장이 불과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한 것과는 크게 대조된다.³²⁾

31) 한-중 FTA 제6.8조 2항 사.

32) 본 항의 한-중 FTA 핵심조항 분석에 있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상세

2. 규정 전반 소개 및 핵심 조항 분석

아래에서는 한-중 FTA TBT챕터의 규정 전반을 소개하면서 TBT 애로 완화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핵심 조항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1) 목 적

TBT챕터는 이 장의 목적으로 (i) 각 당사국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것, (ii)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에서의 정보교환을 포함하여 협력을 강화하고, 무역 비용을 감소시키며 양 당사국 간 양자 무역을 증진하고 촉진하는 것 그리고 (iii)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³³⁾ 이는 TBT의 무역장벽적 효과를 완화시킴으로써 무역비용을 감소시켜 상호간 수출을 증진한다는 TBT챕터의 기본 취지를 반영한다.

(2) 적용범위 및 WTO TBT협정 확인

① 적용범위 일반

TBT 챕터는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앙정부기관의 모든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적용된다. 다만, (i) 정부기관이 그러한 기관의 생산 또는 소비요건을 위하여 마련한 구매 규격, 또는 (ii)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속서 가에서 정의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³⁴⁾

설명자료(이하 산업부 상세설명자료 2015'), 2015"와 "국가기술표준원, 한-중 FTA TBT챕터 검토자료(비공개), 2015" 및 "고준성 등, 중국 TBT 보고서"를 참조하였음을 밝혀둔다.

33) 한-중 FTA 6.1조.

34) 한-중 FTA 6.2조 1-2항.

② 지방 정부의 TBT챕터 준수 보장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 실시

각 당사국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 채택 및 적용을 담당하는 자국 영역 내의 지방 정부(local government)에 의한 이 장의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이 이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³⁵⁾ 이와 관련 이와 관련하여 WTO TBT협정에서는 통보 의무를 제외하고는 지방정부기관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³⁶⁾ 또한 중-페루, 중-호주 FTA에서도 각 당사국이 지방정부에 의한 TBT규정 준수 확보를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한다. 이는 지방의 경제산업 규모가 크고, 지방정부가 기술규제 분야에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 경우에는 매우 의미가 있다. 실제로 중국의 경우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지방마다 인증절차가 다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중 승인절차가 존재하여 이들 품목의 대중 수출기업이 애로에 직면하여 왔다. 이와 관련 상기 조항을 통해 중국 지방 정부 기술규제 당국의 TBT챕터 준수 보장을 재확인함으로써 향후 지방 정부에 의한 기술규제 입법 및 적용에 있어 투명성의 제고와 무역장벽적 운영 관행의 억제 및 개선이 기대된다.

한편, 비정부간기구(non-governmental bodies)에 대한 TBT 규정 준수 확보와 관련하여 WTO TBT협정 제3조(지방정부기관 및 비정부간기관에 의한 기술규정의 준비, 채택 및 적용) 및 제8.1조(비정부기관에 의한 적합판정절차)에서 이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기술규제 관련 권한이 비정부간기구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를 상정하여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호주 FTA에서도 비정부간기구에 대해서도 TBT 규정 준수 확보를 위한 조치에 대해 규정한다.

35) 한-중 FTA 6.2조 3항.

36) WTO TBT협정 3.1조(기술규정의 준비 및 채택), 7.1조(적합성평가절차).

반면에 한-중 FTA TBT챕터에는 비정부간기구에 대한 문구가 없다. 하지만, 중국이 가입하여 적용 의무가 있는 상술한 WTO TBT협정 관련 규정 등을 원용하여 비정부간기구의 준수를 요구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정부는 기술규제분야 비정부간기구에 대한 감독권한을 유지하고 있는 관계로 양자간 협의를 통해 비정부간기관에 의한 무역장벽적 운영에 대응할 수도 있어 금번 한-중 FTA TBT 챕터상 비정부간기구에 대한 문구의 흠결이 심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WTO TBT협정 확인 및 적용

양 당사국은 WTO TBT협정에 따른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TBT협정은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³⁷⁾ 또한 이 장의 목적상 TBT협정 부속서 1의 정의가 적용된다.³⁸⁾ 이는 한-중 FTA TBT챕터가 WTO TBT협정을 기초로 플러스 규정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표준

① 표준 일반

챕터에 따르면 (i) 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표준기관이 TBT협정의 부속서 3[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관한 모범관행규약]을 수용하고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한다. 또한 (ii)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의 표준 기관 또는 기관들이 다른 쪽 당사국의 표준 기관 또는 기관들과 협력하도록 장려하고, 그러한 협력은 표준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³⁹⁾

37) 한-중 FTA 6.3조.

38) 한-중 FTA 6.2조 4항.

39) 한-중 FTA 6.4조 1-2항.

② 국제표준을 양국 기술규제의 기초로서 사용

챕터에서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가 요구되고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거나 그 완성이 임박한 경우, 각 당사국은 그러한 국제표준 또는 국제표준의 관련부분이 추구되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국제표준 또는 관련부분을 자국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기초로써 사용한다고 규정한다.⁴⁰⁾ 이에 따르면 양국은 국제표준을 자국의 기술규정과 적합성평가절차의 기반으로 활용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향후 양국 기술규정의 국제표준과의 조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TBT협정 제2.4조에서 의미하는 국제표준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각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의 TBT 위원회의 결정을 고려하며, 그러한 국제표준은 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국제통신연합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의하여 개발된 것들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⁴¹⁾

(4) 기술규정

챕터에서는 (i) 다른 쪽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이 자국의 기술규정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들 규정이 자국의 규정의 목적을 적절히 충족하는 것으로 납득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을 자국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ii)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을 자국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한다고 규정한다.⁴²⁾

40) 한-중 FTA 6.4조 3항.

41) 한-중 FTA 6.4조 4항.

42) 한-중 FTA 6.5조.

(5) 적합성 평가절차

① 적합성평가 결과의 인정 수용방식 및 수용 촉진 협력

챕터에서는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함을 인정하면서 그 예로서 (i) 한쪽 당사국은 특정 기술규정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기로 다른 쪽 당사국과 합의할 수 있고, (ii)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에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 절차를 채택할 수 있으며, (iii)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iv)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인정할 수 있으며, (v) 각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은 상대방의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는 자발적 약정을 체결할 수 있고, (vi) 수입 당사국은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을 신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⁴³⁾

한편, 양 당사국은 제1항의 접근방식과 그 밖의 적절한 접근방식의 개발 및 적용에 있어서 자국의 경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그리하여 양 당사국 간에 적합성 평가결과 수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양국의 적합성 평가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장려한다.⁴⁴⁾ 또한 양 당사국은 각국의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상호 인정을 위한 협정 교섭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⁴⁵⁾ 이 규정은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법규정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적합성평가 결과의 MRA에 대한 양국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43) 한-중 FTA 6.6조 1항.

44) 한-중 FTA 6.6조 2항.

45) 한-중 FTA 6.6조 4항.

② 적합성평가절차에서의 내국민대우 적용

챕터에서 각 당사국은 적합성 평가절차가 자국을 원산지로 하는 동종 상품의 공급자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동종 상품의 접근을 허용하기 위해서 준비, 채택 및 적용되도록 보장한다.⁴⁶⁾ 이와 관련 WTO TBT협정의 적합성평가절차 규정에서도 동 절차가 다른 회원국의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 국내산 동종 상품 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순서로 실시되고 완료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⁴⁷⁾ 이는 그 적용이 처리 순서에 국한하고 있어 상기 TBT규정보다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한-중 FTA TBT챕터에서는 적합성평가절차 전반에 대해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NT)를 부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향후 중국으로 수출되는 우리 기업의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절차에 있어 중국산 제품과 비교해 차별적 대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⁴⁸⁾

③ 적합성평가절차 처리기간 및 비용 제한

양 당사국은 적합성 평가절차에 필요한 범위로 처리기간과 비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협력한다고 규정한다.⁴⁹⁾ 이와 관련 WTO TBT협정에서는 적합성평가 절차 수수료가 국내산 동종 상품에 부과되는 수수료와 형평을 이뤄야 한다고만 규정한다.⁵⁰⁾ 중국의 경우 우리와 비교하여 적합성평가 비용이 적지 않게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금번 한-중 FTA TBT챕터에서 명시한 필요한 범위로 비용을 제한하기

46) 한-중 FTA 6.6조 3항.

47) WTO TBT 협정 5.2.1조. 이에 비해 동 협정의 기술규정과 관련하여서는 NT 적용 범위에 제한이 없이 포괄적이다. 동 협정 제2.1조.

48) 산업부 상세설명자료 2015.

49) 한-중 FTA 6.6조 5항.

50) WTO TBT협정 제5.2.5조.

위한 협력 규정을 근거로 중국의 과도하게 높은 적합성평가절차 비용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④ 적합성평가기관 간 협력

챕터에서는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은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협력 제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그러한 협력은 상호 결정한 조건에 따르며 다음을 협력과제로서 예시하는데, (i)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및 적용과 관련하여 조언 또는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것, (ii) 계량, 표준화, 시험, 인증 및 인정을 담당하고 있는 각국의 공공 또는 민간 기관 간 협력을 장려하는 것, (iii) 적합성 평가기관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인정을 이용하는 것, (iv) 관련 국제표준, 권고 및 지침에 부합하기 위하여 교정, 시험, 검사, 인증 및 인정의 기술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 (v)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및 적용과 관련하여 관련 지역 및 국제기구 업무에서의 상호 관심분야에 대하여 협력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⁵¹⁾ 이와 같이 양국의 적합성평가기관 간의 다양한 의제에서의 협력을 통해 적합성평가기관 간에 있어 중복 시험 등을 비롯한 적합성평가절차 운용에 따른 비효율적 요소들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⑤ 양국 시험인증기관의 상대국 영역에서의 설립 촉진

챕터에 따르면 양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의 다른 쪽 당사국의 적합성 평가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한다.⁵²⁾ 이와 관련 WTO TBT협정에서는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영토내에 위치한 적합판정기관이 자기나라 또는 그 밖의 회원국 영토내에 위치한 기관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자국의 적합판정절차에 참여하는

51) 한-중 FTA 6.6조 2항 가-마호.

52) 한-중 FTA 6.8조 3항.

것을 허용하도록 장려된다고만 규정한다.⁵³⁾ 생각건대 현실적으로 적합성평가 결과의 상호인정이 쉽지 않고, 특정 품목에 대한 상호인정 약정이 체결된다 할지라도 그 적용범위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체약당사국들 간 적합성평가기관의 상호 진출은 그 대안으로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 점에서 비록 연성법 규정이기는 하지만 향후 우리 시험인증기관의 중국 진출이 보다 용이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문제는 TBT 규율 대상이라기 보다는 시험인증서비스업의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설립(모드 3)에 대한 시장접근 약속을 다루는 서비스시장 개방 협상의 논의 과제에 속함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⑥ 시험성적서의 상호 인정 촉진

양 당사국은 중복적인 시험 및 인증 요건을 줄이기 위하여 자국의 국가 인증기관이 'IECEE-CB scheme'의 회원이 되도록 장려하고 그 국가 인증기관이 전기안전 요건에 대한 국가 인증의 기초로 서로의 'IECEE-CB' 시험 인증서를 수용하도록 장려한다.⁵⁴⁾ 여기서 IECEE CB Scheme(국제전기기기 인증제도)이라 하면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국제 공인인증제도로서 통일된 규정(IEC 국제표준)에 따라 발행된 시험성적서를 회원국 간 상호 수용하게 된다. 금번 TBT챗터에서는 사실상 중국에 대해 IEC 국제표준에의 참여를 촉구한 점이 주목된다. 이 규정은 비록 연성법 형태이기는 하지만 IECEE CB Scheme이라는 구체적인 국제인증제도를 명기하여 이의 참여 및 이에 기초한 인증서의 수용을 촉구한 점에서 향후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준다.

⑦ 적합성평가 협력 관련 후속 이행약정 체결

양 당사국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적합성 평가 협력과 관련하여 가능한 이행 약정을 교섭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한

53) WTO TBT협정 6.4조.

54) 한-중 FTA 6.8조 5항.

다. 양 당사국은 상호 관심 분야에 있어서 추가 이행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⁵⁵⁾ 이와 관련 WTO TBT 협정에서는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자의 적합판정절차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한 협정체결을 위하여 협상을 개시할 용의를 갖도록 장려된다고만 규정한다.⁵⁶⁾ 이에 비해 금번 TBT챕터에서는 양국간에 상호인정 등 적합성평가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한 후속 이행약정의 조기 체결 노력을 규정함으로써 전기용품 이외에 자동차, 화장품 등에 대한 시험인증 상호인정에 대한 논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상술한 한-중 TBT챕터 규정이 역시 연성법 규정이기도 하지만 이를 기초로 양국의 기술규제 당국이 협정이 발효되기도 전에 이미 한-중 간 전기용품 안전분야에 대한 적합성평가협력약정과 상호인정추진을 위한 문건 작성을 위한 작업반회의를 개최하여 추진 중에 있어 상기 조항에 기초한 적합성평가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여 준다.

⑧ 시험용 샘플 통관 원활화

챕터에 따르면 한쪽 당사국이,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음을 알게 되어 적합성 평가 시험 샘플을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상품을 입국항에서 억류하는 경우, 억류 사유를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⁵⁷⁾ 이 조항 역시 그간 우리의 대중 수출업체가 호소한 애로 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 바, 이와 같이 통관 과정 중에 시험용 샘플 억류 시 수입업체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험용 샘플 억류 사례의 개선이 기대된다.

55) 한-중 FTA 6.10조.

56) WTO TBT 협정 6.4조.

57) 한-중 FTA 6.12조.

(6) 투명성

① 투명성 일반

챕터에 따르면 투명성과 관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하였거나 채택하겠다고 제안하는 기술 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⁵⁸⁾ 또한 각 당사국은 기술규정안 통보 후 의견제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접수된 다른 쪽 당사국의 의견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요청이 있는 경우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회신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⁵⁹⁾ 이와 관련하여 상기 투명성 조항이 표준에의 적용이 제외되어 있는데 WTO TBT 협정을 비롯하여 다수의 FTA 규정에서도 표준에 대해서는 투명성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⁶⁰⁾

② 최소 60일의 의견 제시 기간 부여

챕터에 따르면 안전, 건강, 환경보호 또는 국가안보상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자국이 제안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세계무역기구 중앙통지문등록처 통보 후 최소 60일의 기간을 부여한다.⁶¹⁾ 이와 관련 WTO TBT협정에서는 차별없이 다른 회원국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이러한 의견에 대해 논의하고, 이러한 서면 의견과 이러한 논의 결과를 고려한다고 규정한다.⁶²⁾ 이와 같이 TBT협

58) 한-중 FTA 6.7조 2항.

59) 한-중 FTA 6.7조 3항.

60) 이 점에서 “각 당사국은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의 개발에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참여하도록 허용한다. ---”고 규정한 한-미 FTA 9.6조(투명성) 1항은 예외적이다. 이는 한-미 FTA 9.6조 3항-6항까지의 투명성조항의 경우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에 국한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61) 한-중 FTA 6.7조 1항.

62) WTO TBT협정 2.9.4조.

정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제시 기간을 합리적인 시간이라고만 규정하여 불특정되어 있는 관계로 경우에 따라서는 제시 기간이 매우 짧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한-중 FTA TBT챕터에서는 의견 제시 기간을 최소 60일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중국의 기술규정 제·개정 시 국내 산업계가 그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의견 반영이 그만큼 용이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의 신속한 공표

챕터에 따르면 양 당사국은 채택된 모든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다른 쪽 당사국의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달리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⁶³⁾ 이와 관련 WTO TBT협정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기술규정의 경우 “신속하게” 라는 문구 대신에 “적절한 초기 단계에”(at an early appropriate stage) 공표한다고 다소 느슨하게 규정되어 있다.⁶⁴⁾ 이에 비해 새로 채택된 적합성판정절차는 “신속하게”(promptly)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한-중 FTA TBT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한다.⁶⁵⁾ 요컨대, 기술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적어도 금번 한-중 FTA 규정을 통해 보다 빠른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향후 중국 측의 신규 기술규정에 대한 국내업체들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7) 소비자 제품 안전

TBT 챕터에서 소비자 제품 안전과 관련하여 (i)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교역되는 소비자 제품의 안전 보장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고, (ii) 양 당사국은 관련 규제 체계, 사고 분석, 유해 경고, 제품 금지, 제품 리콜 그리고 시장 감시 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iii)

63) 한-중 FTA 6.7조.

64) WTO TBT협정 2.9.1조.

65) WTO TBT협정 5.8조.

양 당사국은 모범규제관행, 제품안전감시를 포함한 위험 관리 원칙의 개발 및 이행 그리고 규제집행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한다고 규정한다.⁶⁶⁾ 이와 관련 WTO TBT협정에서는 상응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 비해 금번 한-중 FTA TBT 챗터에서는 제품 리콜, 사후관리 등 소비자 제품 안전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제품 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한 한-중 양국 간의 제품안전 협력을 강화하는 규정을 새로이 도입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는 한-중 FTA 발효에 따른 중국산 제품의 수입 증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8) 표시 및 라벨링

① 일 반

챗터에서는 표시 및 라벨링과 관련하여 기술규정은 표시 또는 라벨링 요건을 포함하거나 이를 전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명시한다.⁶⁷⁾

② 표시 및 라벨링 요구사항이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제한적이지 아니할 것

챗터에 따르면 각 당사국은 TBT협정 제2.2조에 따라 제품에 대한 의무적인 표시 또는 라벨링을 포함한 기술규정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초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도록 준비, 채택 또는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이 목적상, 그러한 기술규정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역제한적이지 아니하여야 한다.⁶⁸⁾ 이와 관련 WTO TBT협정에서는 그 전문에서 (포장), 표시 및 라벨링 요건을 포함한 기술규정 ---등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를 희망한다고만 명시한다.

66) 한-중 FTA 6.9조.

67) 한-중 FTA 6.11조 1항

68) 한-중 FTA 6.11조 2항.

③ 표시 및 라벨링 요구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당사국이 제품의 의무적인 표시 또는 라벨링을 요구하는 경우, (i) 그 당사국은 그 제품의 소비자 또는 사용자와 관련된 표시 또는 라벨링 외의 표시 또는 라벨링에 대해서는 요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ii) 그 당사국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라벨 또는 표시의 형식을 명시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전 승인, 등록 또는 인증도 요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관련 국내 규정에 비추어 라벨 또는 표시에 제공될 특정 정보의 사전 승인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iii) 그 당사국은, 경제 운영자에 대하여 고유한 확인번호의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경제 운영자에게 과도한 지체 없이 그리고 비차별적으로 그러한 번호를 발급한다. (iv) 그 당사국은 표시 또는 라벨 상의 정보가 특정 언어로 되어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 국제상품분류체계가 양 당사국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그러한 상품분류체계가 사용될 수 있다. 추가적 언어의 동시 사용은 다음의 경우 금지되지 아니하는 바 다른 언어로 제공된 정보가 특정 언어로 제공된 정보와 동일한 경우이거나 또는 추가적 언어로 제공된 정보가 그 제품에 관하여 기만적 진술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그리고 (v) 그 당사국은 TBT협정에 따른 정당한 목적이 이에 의하여 손상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영구적 또는 탈착 가능한 라벨을 수용하도록 노력한다.⁶⁹⁾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WTO TBT협정에서는 표시 및 라벨링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를 희망한다고만 명시할 뿐⁷⁰⁾ 상술한 것과 같은 표시 및 라벨링 요건의 최소화에 관한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규정을 갖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

69) 한-중 FTA 6.11조 3항 가-마호.

70) WTO TBT협정 전문.

이 한-중 FTA에서 표시 및 라벨링의 최소화에 관한 상세 규정을 도입한 것은 그간 중국 측이 일정 수입품에 대해 필요 이상의 강화된 라벨링 요건을 요구함으로써 무역에 지장을 초래하여 왔다는 우리 업계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9) 기술규제 협력

챗터에서는 기술규제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과 관련하여 첫째, 양 당사국은 각국의 규제 체계에 대한 상호 이해 제고, 기술능력 개선 및 역량 강화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분야에서의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도록 한다.⁷¹⁾ 둘째,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에 대한 협력 제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며, 그러한 협력은 상호 결정한 조건에 따르되 (i)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및 적용과 관련하여 조언 또는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것, (ii) 세계무역기구 TBT 위원회와 그 밖의 관련 국제 또는 지역 포럼에서의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iii) TBT협정의 이행을 장려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⁷²⁾ 셋째, 양 당사국은 신기술이나 새로운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관련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기로 합의한다.⁷³⁾

71) 한-중 FTA 6.8조 1항.

72) 한-중 FTA 6.8조 2항 가, 바 및 사호.

73) 한-중 FTA 6.8조.

(10) TBT 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운영

① TBT 위원회의 설치 및 그 기능

챕터에 따르면 양 당사국은 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 무역에대한기술장벽위원회(이하 ‘TBT 위원회’)를 설치한다.⁷⁴⁾ TBT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하는 바, (i) 이 장의 이행 및 이 장에 관한 모든 사안에서 양 당사국 간의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 (ii) 이 장의 이행, 집행 및 운영의 점검 및 장려, (iii)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채택, 적용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의 신속한 처리, (iv) 제6.8조[협력]에서 규정한 분야에서 양 당사국간 협력의 제고, (v)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정보의 교환, (vi)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련된 활동에 관여하는 비정부, 지역 및 다자 포럼에서의 진전사항에 대한 정보의 교환, (vii)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결과의 상호인정에 대한 논의의 장려. (viii) 세계무역기구 TBT 위원회 하의 모든 진전사항에 비추어 이 장을 검토,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이 장의 개정을 위한 권고의 개발, (ix)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장의 이행에 대하여 공동위원회에 보고, (x) 이 장을 이행하는 데 양 당사국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양 당사국이 판단하는 그 밖의 조치를 하는 것, 그리고 (xi)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 등이 그것이다.⁷⁵⁾

② TBT 위원회의 운영

챕터에 따르면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i)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는 매년 최소 1회 회합한다. 회의는 직접

74) 한-중 FTA 6.13조 1항.

75) 한-중 FTA 6.13조 2항 가-카호.

대면, 또는 원격 회의, 화상 회의 또는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⁷⁶⁾ (ii) 이 조의 목적상, 위원회는 다음 기관에 의하여 조정되는 바, 중국의 경우,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또는 그 승계기관이 그리고 한국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이 그러하다. 사안에 따라, 담당 부처 또는 규제 기관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⁷⁷⁾ (iii) 앞의 (ii)에 규정된 당국은 각국의 영역에 있는 관련 기관 및 인과 조율하고 그러한 기관 및 인의 관여를 보장하는 것을 담당하고, 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합의한 연락채널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이 연락채널은 전자 우편, 원격 회의, 화상 회의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⁷⁸⁾

(11) 정보교환

챕터에서는 정보교환과 관련하여 (i) 이 장에 따라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되는 모든 정보 또는 설명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인쇄하여 또는 전자적으로 제공된다. 당사국은 그러한 각 요청에 대하여 60일 내에 응답하도록 노력한다. (ii)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판단하는 정보를 그 당사국이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⁷⁹⁾

(12) 분쟁해결의 비적용

챕터에서는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한-중 FTA 제20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⁸⁰⁾ 이와 관련 WTO TBT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76) 한-중 FTA 6.13조 3항.

77) 한-중 FTA 6.13조 4항.

78) 한-중 FTA 6.13조 5항.

79) 한-중 FTA 6.14조.

80) 한-중 FTA 6.15조.

서는 분쟁해결기구(DSB)의 주관 하에 1994년 GATT 제22조(협의) 및 제23조(무효화 및 침해)가 준용된다고 규정하여⁸¹⁾ 분쟁해결제도의 이용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어 양자 간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중 FTA를 비롯한 FTA의 TBT 규정을 보면 WTO TBT 플러스 규정의 존재가 중요하다. 그 이유는 FTA 체결국의 거의 모두는 WTO 회원이어서 WTO TBT 협정의 준수 의무를 갖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TBT 협정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한 법적 대응의 길이 열려 있다. 따라서 FTA TBT 규정 위반 관련 법적 대응 문제는 WTO TBT협정 플러스 규정에 관한 것이 된다. 그런데 한-중 FTA TBT챕터상 TBT 협정 플러스 규정 대다수는 권장 내지 협력을 요구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거나 집행 가능성이 결여되어 그 위반 여부를 다투기가 어려운 연성법(soft law)⁸²⁾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그 위반 여부를 다투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연성법 형태의 조항들을 둘러싼 분쟁의 해결을 위해 법적 구속력이 수반되는 한-중 FTA 제20장(분쟁해결)상의 패널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한-중 FTA TBT챕터에서는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을 배제하는 대신에 TBT 위원회의 협의 메카니즘만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⁸³⁾ 그간 중국의 기체결 FTA TBT규정에서는 TBT 관련 사안에 대해 분쟁해결제도의 이용을 규정한 사례가 없는데, 이는 중국의 기타결 FTA TBT규정상 WTO TBT협정 플러스 규정 대다수가 연성법형태의 규정인 점과 무관하지 아니하다고 보여진다.

81) WTO TBT협정 14조(협의와 분쟁해결).

82) soft law라 함은 집행력이 결여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규칙을 가리킨다. B. A. Garner(ed.), Black's Law Dictionary (7th ed.), West Group, 1999, p.1397. 가령, 한-중 FTA TBT 챕터 6.8조 2항의 “--- 각 당사국은 협력 제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는 규정이나 동 6.8조 5항상 “ 양 당사국은 --- 서로의 IBCEE-CB 시험인정서를 수용하도록 장려한다”는 등의 규정이 soft law 조항이다. 이들 규정상 “긍정적으로 고려한다”와 “수용하도록 장려한다”는 규정은 그 준수 여부 환언하면 그 위반 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따라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83) 한-중 FTA 6.13조 2항 카호.

제 3 절 한-중 FTA 포함 중국의 기타결 FTA에서의 TBT규정들 간의 비교 및 그 무역자유화 효과의 비교 평가

1. FTA TBT규정 및 그 무역자유화 효과의 비교 평가를 위한 기준 및 방법

(1) 의 의

WTO TBT협정의 주된 목적이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체결되는 FTA에서 TBT 관련 규정을 도입하는 취지 역시 국가의 기술규제가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다만, FTA 체결국의 절대 다수가 WTO 회원으로서 WTO TBT협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FTA TBT 규정에서는 WTO 플러스 규정의 도입을 모색하게 된다. 그러나 국가들 간에 기술시험능력에 있어 상당한 격차가 있듯이 그간 체결된 FTA TBT 규정들의 내용 역시 협정에 따라 차이가 적지 않다. 본 절에서는 중국의 기타결 FTA TBT규정의 무역자유화에 대한 평가와 한국의 주요 FTA TBT 규정과의 비교 평가를 위한 측정지표 및 평가요소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FTA TBT 규정이 무역기술장벽의 자유화에 직접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측정 지표로서 (i) 표준의 상호인정 또는 조화, (ii) 기술규정의 상호인정 또는 조화 그리고 (iii) 적합성평가 결과에 대한 상호인정 또는 조화 등 3개를 사용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TBT 규정이 간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측정 지표로서 (i) 기술규제의 도입 및 운영에 있어 투명성 정도, (ii) 기술규제 운영 조직과 분쟁해결메카니즘 및 기술협력 등 제도와 협력 그리고 (iii) TBT의 무역장벽적 효과를 완화하는 기타 조치들을 사용하기로 한다.

아래에서는 이들 측정지표별로 당해 지표가 분석 대상 FTA TBT규정에 도입되었는지의 여부, 도입되었다면 그 효과가 어느 수준인지를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요소(또는 기준)를 지표별로 살펴보기로 한다.⁸⁴⁾

(2) 직접적인 효과 측정지표 및 평가요소

국가의 기술규제가 갖는 무역장벽적 효과를 제거 내지 완화하는 직접적인 효과를 갖는 수단은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에 대해 FTA 체결국들이 (i) 타방 체결국의 기술규제를 상호간에 또는 일방적으로 인정하거나 (ii) 서로 다른 기술규제를 조화시켜 통일표준을 적용하거나 국제표준을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상술한 3가지 기술규제의 측정지표에 대한 인정이나 조화(국제표준 포함)의 경우 이들 3가지 기술규제 형태별로 평가요소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인정 또는 조화의 경우에 있어 평가요소가 달라지게 된다.

먼저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 측정지표에 대한 인정-실제에 있어 상호인정⁸⁵⁾-의 경우 당해 FTA TBT규정에서 (i) 당사국들로 하여금 상호인정을 법적으로 약속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지 아니면 상호인정을 단지 촉구하거나 권고하고 있는지, (ii) 상호인정 협상을 일정한 기간 안에 개시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지, (iii) 타방 당사국 표준의 동등성을 부정하는 경우 그 사유를 수입 당사국이 제시하도록 하는지 환언하면 상대방 표준의 불인정 이유에 대한 설명이나 입증을 수입 당사국에 부과하는지 또는 (iv) 당사국들이 국제 또는 지역인증 기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기준으로 이용하기로 한다.⁸⁶⁾

다음으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 측정지표에 대한 조

84) 참고로 본 절에서 소개하는 측정지표 및 평가요소[기준]는 Pietmartini & Budetta가 사용하였던 것을 기초로 필자가 최현경·고준성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하였던 것을 다시 수정한 것임을 밝혀 둔다. 동 측정지표 및 평가요소는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향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85) 일방적 인정 사례는 극히 예외적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다.

86) 최현경·고준성, pp.120-121.

화의 경우 FTA TBT규정에서 (i) 당사국들로 하여금 특정 표준이나 기술규정에 대해 조화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그러한 조화를 촉구하거나 장려하는지, (ii) 협정에서 지역표준⁸⁷⁾의 이용이나 제정을 의무로서 부과하는지 아니면 단지 이를 촉구하는지, (iii) 협정에서 국제표준의 이용을 의무로서 부과하는지 아니면 단지 촉구하는지 등을 평가요소로서 사용하기로 한다.⁸⁸⁾

(3) 간접적인 효과 측정지표 및 평가요소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간접적인 측정지표로서 첫째, 기술규제의 도입 및 운영에 있어 투명성 보장 수준이 있다. 이러한 투명성 보장 수준 지표의 평가요소로서 당해 FTA TBT 규정에서 (i) 어느 당사국이 새로운 기술규제를 제안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들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보하는지, (ii) 다른 당사국의 이해 당사자에게 그러한 의견 개진을 위해 최소 60일 이상의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는지, (iii) 새로운 기술규제의 입안 과정에 있어 타방 당사국의 전문가에게 자국민과 동등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지, 또는 (iv) 기술규제에 관한 정보 및 운영에 대한 질의 등에 대해 답변해 줄 문의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주요 평가요소로서 고려한다.⁸⁹⁾

둘째, 기술규제 운영 조직과 분쟁해결메카니즘 및 기술협력 등 제도와 협력 측정지표가 있는데 이의 평가요소로서는 FTA TBT규정 안에 (i) TBT규정의 운영을 위한 당사국들 간의 위원회와 같은 운영기관을 두고 있는지, (ii) TBT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별도의 수단으로서 구속력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쟁해결기관이나 분쟁당사자간의 협

87) 가령 EU 표준의 사용 등이 그러한데, EU가 개도국들과 체결한 다수의 FTA 기술 규제규정에서는 이들 개도국 당사자들로 하여금 EU 표준을 사용할 것을 장려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88) 최현경 · 고준성, p.121.

89) Id., pp.121-122.

의 제공 또는 당해 분쟁에 대한 권고 제시 권한 등이 규정되어 있는지, (iii) 기술규제와 관련한 당사국 간의 다양한 형태의 협력 과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개도국과의 FTA TBT 규정에서 관련이 있는 (iv) 기술규정의 수립 또는 관련 조직이나 기관의 설립에 대한 지원이나 관련 인력의 훈련이나 설비 제공 등 표준제도 관련 제반 기술지원을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요소로서 사용하기로 한다.⁹⁰⁾

(4) 기타 TBT 완화 효과가 기대되는 조치들

한편, TBT의 무역장벽적 효과를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기타 조치들로서 TBT의 무역장벽적 효과를 경감시킬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조치들을 얼마나 도입하여 규정하고 있는지를 평가요소에 추가하였다. 이의 사례로서 TBT규정이 지방정부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보장한다는 취지의 규정, 적합성평가절차의 처리기간 및 비용을 제한하는 규정 등이 그러하며 그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

(5) 무역자유화 효과 평가 방법

상술한 측정지표의 평가요소별로 당해 평가요소가 FTA TBT 규정에 반영될 경우 당사국의 국가 기술규제로 인한 무역장벽적 효과를 완화하는데 미칠 효과의 정도[수준]를 기본적으로 2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하나는 당해 평가요소 도입과 TBT 무역자유화의 효과 간에 직접적이면서 실질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 환언하면 당해 평가요소의 도입이 직접적인 효과를 갖는 경우 (○)로 표시하고자 한다. 다른 하나는 당해 평가요소 도입과 TBT 무역자유화 효과가 간접적인 경우 또는 그 효과가 부분적이거나 제한적인 경우 (△)로 표시하였다. 다만, 평가요소별 무역자유화 효과의 수준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이를 보다 세분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90) Id., p.122.

<표 2-3-3> FTA TBT규정의 무역기술장벽 자유화 측정지표 및 지표별 평가요소와 무역기술장벽 자유화 효과

측정지표		측정지표별 평가요소		측정지표별 평가요소 및 무역기술장벽 자유화 효과
		표준	기술 규정	
직접적 효과	표준	상호 인정	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인정에 대한 공통 평가요소[기준] · 상호인정의 법적 약속이나 시행(○)* · 상호인정의 촉구 내지 권고(△) 또는 · 상호인정 달성 시기 일정표 약속(○) 또는 · 타방 당사국 표준의 동등성 부정(non-equivalence)에 대한 설명 의무나 입증 책임을 수입 당사국에 부과(○) 또는 · 적합성평가와 관련 당사국들이 국제 또는 지역인증 기구에의 참여를 의무로서 부과(○) ■ 조화에 대한 공통 평가요소[기준]
		상호 인정		
	기술 규정	상호 인정	조화	
		상호 인정	조화	
측정 지표	적합성 평가 절차/ 결과	상호 인정	조화	
		상호 인정	조화	
간접적 효과	투명성 보장 수준	통보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기술규제 도입시 타방 당사국에 의견 개선 요청 통보(△) 또는 · 타방 당사국에 의견 개진을 위한 충분한 기간(60일 이상) 허용(△) 또는 · 타방 당사국 국민에게 자국민과 동등한 조건으로 기술규제 입안 과정에의 참여 보장(△)
				문의처

측정지표별 평가요소			측정지표별 평가요소 및 무역기술장벽 자유화 효과
측정지표			
정 지 표	제도 및 협력	제도	· TBT 위원회 등 협의 · 운영기관의 설치(△) · 구속력있는 결정 내릴 분쟁해결기관의 설치(○) 또는 · 분쟁에 대한 권고 제시 권한 규정이나 협의 제공(△)
		기술 협력	· 기술규제 관련 당사국간의 다양한 형태의 협력 규정
	기술지원		· 타방 당사국의 기술규제 도입 및 운영관리 지원 또는 · 표준제도 관련 인력의 훈련 및 설비 지원
기타 TBT 완화 효과 기대 조치들			· 도입 시 TBT 완화 효과가 기대되는 일체의 조치 (가령, 지방정부의 협정상 TBT 관련 규정 준수 보장 등)

출처: 필자 작성. 최현경 · 고준성, p.123, <표 5-1>을 기초로 수정

- *) ○표시: 당해 측정지표관련 평가요소의 도입 시 무역기술장벽의 자유화 효과가 직접적으로 발생함을 의미
- △표시: 당해 측정지표관련 평가요소의 도입 시 무역기술장벽의 자유화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유동적임을 의미

2. 한-중 FTA 포함 중국의 기타결 FTA TBT 관련 규정의 비교 분석 및 그 무역자유화 효과의 비교 평가

(1) 중국의 기타결 FTA에서의 TBT 규율 현황

2015년 9월 기준 중국은 11건의 FTA를 체결하였는데, 이들 기타결 FTA에는 무역기술장벽(TBT)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대다수 협정에서는 별도의 TBT챕터를 두어 규율하지만, 중-아이슬란드 FTA는 1개 조문을 통해 규정한다. 또한 중-ASEAN 상품무역 FTA에서는 WTO TBT협정을 준용한다고만 규정할⁹¹⁾ 뿐 TBT에 관해 달리 규

91) 중국-ASEAN 상품무역 FTA 제7조.

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중국의 기타결 FTA에서의 TBT 규율 현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⁹²⁾

<표 2-3-4> 중국의 기타결 FTA에서의 TBT 규율 유형 현황

TBT 규율 유형	해당 FTA
별도의 TBT 챕터를 두어 규율하는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파키스탄 FTA 제7장 TBT (2006) - 중국-칠레 FTA 제8장 TBT (2005) - 중국-코스타리카 FTA 제7장 TBT (2007) - 중국-뉴질랜드 FTA 제8장 TBT (2008) - 중국-싱가포르 FTA 제7장 TBT · SPS (2008): TBT규정을 SPS규정과 함께 규정 - 중국-페루 FTA 제7장 TBT (2008) - 중국-스위스 FTA (2014) - 중국-한국 FTA 제6장 TBT (2015.6 서명) - 중국-호주 FTA 제7장 TBT (2015.6 서명)
특정 조문을 통해 규율하는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아이슬란드 FTA 제20조 (2014)
별도의 TBT 규정 없는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ASEAN 상품무역 FTA (2009): WTO TBT협정 준용만을 규정함

(2) 한-중 FTA 포함 중국의 기타결 FTA TBT 규정들 간 차이점, 특징 및 비교평가

본 항에서는 중국의 기타결 FTA TBT 규정들 간의 차이점과 특징과 무역장벽자유화 효과 측면에서의 비교 평가를 앞에서 제시한 3가지 측정지표별로 나누어 시도하고자 한다.

92) 여기에서는 중국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홍콩, 마카오 등과 중국이 체결한 긴밀한 경제적 파트너십협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은 제외하였음을 밝혀 둔다.

① 직접적 효과 측정 지표 관련

중국의 기타결 FTA TBT 무역기술장벽(TBT)규정의 직접적 효과 측정지표의 평가요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기술규제의 조화와 관련하여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 절차의 조화에 대해 규정한 협정 사례가 전혀 없고, 표준의 경우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기술규정 및 관련 적합성평가 절차의 기초로서 그러한 국제표준을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원칙적으로 국가들이 각기 기술주권을 갖고 있는 현실에서 기술규제의 조화는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⁹³⁾

둘째, 기술규정의 상호인정은 대다수의 협정에서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이들 기술규정의 상호인정 조문들을 비교해 보면 (i) 타방 당사국의 기술규정에 대한 상호인정에 있어 각기 긍정적 또는 호의적 고려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8건의 TBT 규정에서 발견되고,⁹⁴⁾ (ii) 한국, 호주, 뉴질랜드, 페루, 칠레와의 TBT 규정에서는 기술규정에 대해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의 기술규정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그러한 거부 사유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여 상호인정을 압박함으로써 상호인정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iii) 중-뉴질랜드 FTA TBT규정에서는 각 당사국이 자국의 기술규정을 해석하고, 시행할 자국법에 따른 모든 권한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2항에서는 동 챕터의 어느 규정도 비록 자국의 국제 권리 및 의무에 따른다는 단서를 두기는 하였지만 자국의 특수한 국내 상황에 적합한 기술규정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는 (기술)규제권한 보존(preservation of regulatory author-

93) 이와 관련 EU의 경우는 역내에서 기술규제의 조화를 달성하였는 바, 이는 단일 시장의 기초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94) 중국의 한국, 호주, 뉴질랜드, 페루, 칠레, 코스타리카, 싱가포르, 아이슬랜드와의 FTA TBT 규정이 이에 해당된다.

ity)에 관한 규정⁹⁵⁾을 유일하게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체약국이 갖는 기술규제에 대한 잔여적 주권⁹⁶⁾을 재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셋째, 적합성평가 절차 및 결과의 상호인정 역시 대다수의 협정에서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이들 적합성평가 관련 상호인정 조문들을 비교해 보면 (i) 중-뉴질랜드 FTA, 중국-페루 FTA, 중-칠레 FTA TBT규정에서는 적합성평가 결과와 관련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의 적합성평가 결과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거부 사유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여 상호인정을 압박함으로써 상호인정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ii) 중-호주, 중-뉴질랜드, 중-페루 FTA에서는 각 당사국은 자국이 자국 영토내의 적합성평가기관에 부여하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타방 당사국 영토내의 적합성평가기관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국민대우를 규정한다. 이와 관련 중-뉴질랜드 FTA에서는 어느 당사국이 특정 기술 규정이나 표준과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관을 인정하면서(credit or recognise) 당해 기술규정이나 표준과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타방 당사국의 기관을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요청이 있으면 그러한 인정 거부의 사유를 설명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⁹⁷⁾ 중-스위스 FTA에서는 적합성평가기관의 인정을 촉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중-뉴질랜드 FTA 규정은 적합성평가기관의 인정과 관련하여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이에 대해 (iii) 한-중 FTA에서는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적합성평가절차에 있어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상술한 중-뉴질랜드 FTA에서의 적합성평가기관의 인정 관련 규정은 갖고 있지 아니하다. 대신에 (iv) 한-중 FTA에서만 유일하게 양 당사국은 각국의 적합성평가 절차 결과에 대한

95) 중-뉴질랜드 FTA TBT규정 제57조 1-2항.

96) 여기서 잔여적 주권이라 함은 당해 국가가 체결한 FTA 등의 국제협정을 통해 약속한 것을 제외한 그 밖의 사안에 대한 국가주권을 의미한다.

97) 중-뉴질랜드 FTA 97조 6항.

상호인정협정 교섭을 받은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이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시켰고, 아울러 양 당사국 간 적합성평가 결과의 수용 촉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장려한다. 이 규정들은 연성법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적합성평가 결과의 MRA에 대한 양국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v) 한-중 FTA에서는 유일하게 양 당사국은 중복적인 시험 및 인증 요건을 줄이기 위하여 전기전자제품에 관한 국제표준인 IEC 국제표준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양국의 국가인증기관이 상대방의 IECEE-CB 시험인증서를 수용하도록 장려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 규정 역시 비록 연성법 형태이기는 하지만 IECEE CB Scheme이라는 구체적인 국제인증제도를 명기하여 이의 참여 및 이에 기초한 인증서의 수용을 촉구한 점에서 향후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준다. 나아가 (vi) 한-중 FTA에서는 유일하게 양 당사국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적합성평가 협력과 관련하여 가능한 이행 약정을 교섭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규정한다. 이 역시 연성법 규정이기는 하지만 이를 기초로 양국의 기술규제 당국이 협정이 발효되기도 전에 작업반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하게 2015년 9월 21일 양국 강제인증제도의 상호인정 촉진 및 소비자제품 안전 협력에 관한 3건의 약정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향후 양국의 강제인증 관련 상호인정이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⁹⁸⁾ 이와 관련 중-뉴질랜드FTA에서는 “부속서14: 전기전자설비·부품 관련 적합성평가분야에서의 협력 협정”⁹⁹⁾이 첨부되어 있다. 이밖에 (iv) 중-호

98) 산업통상자원부, 한중간 무역기술장벽 완화를 위한 협력 본격화: 소비자제품 안전협력 및 한중간 시험인증 상호인정 관련 3개 약정 체결, 보도자료, 2015.9.22. 이번 에 체결된 3개 약정은 (i) 「적합성평가 상호인정 협력프로그램 작업절차 약정」, (ii) 「전기전자제품 적합성평가 협력 약정」 및 (iii) 「소비자제품안전 협력 약정」을 가리킨다. 이들 약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각주 117)을 참조하기 바란다.

99) 중-뉴질랜드 FTA Annex 14: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on Cooperation in

주, 중-뉴질랜드, 중-칠레 FTA 등에서는 무역원활화를 촉진하도록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 절차 분야에 있어 협력 강화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실행과제를 열거하고 있음도 주목된다.

② 간접적 효과 측정지표 관련

중국의 기타결 FTA TBT 무역기술장벽(TBT)규정의 간접적 효과 측정지표의 평가요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투명성 보장 평가요소와 관련하여 (i) 한-중, 중-호주, 중-뉴질랜드, 중-페루, 중-칠레, 중-코스타리카, 중-싱가포르, 중-파키스탄 등 대다수 FTA에서 당사국이 제·개정하는 기술규제에 대해 통보하고, 최소 60일 이상의 의견 개진 기간을 부여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기타결 FTA TBT규정에 따르면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를 당사국에게만 허용하는 유형(한-중¹⁰⁰), 중-호주¹⁰¹) FTA)과 당사국 이외에 당사국의 인(persons)에게도 허용하는 유형(중-파키스탄¹⁰², 중-칠레¹⁰³, 중-뉴질랜드 FTA¹⁰⁴) 그리고 투명성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는 유형(중-스위스, 중-아이슬란드 FTA) 등 다양하다. TBT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수출기업 또는 무역업자라는 점에서 투명성 절차에 있어 이들 수출기업이나 무역업자와 같은 인물로부터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다. 다만, 이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정부가 이들 이해관계자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관계로 이러한 경우 실제에 있어 그 차이는 크지 않다고 보여진다. (ii) 한-중 FTA에서는 당사국은

the Field of Conformity Assessment in Relation to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Components.

100) 한-중 FTA 6.7조(투명성)

101) 중-호주 FTA 6.8조(투명성).

102) 중-파키스탄 40.1조.

103) 중-칠레 FTA 67.1조.

104) 중-뉴질랜드 FTA 98.1조.

기술규제 법령을 신속하게 공포할 것과 타방 당사국이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련 정보에의 접근 보장을 규정한다. (iii) 중-페루 FTA에서는 강행 적합성평가절차가 요구되는 경우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산 제품에 대해 개별 강행 적합성평가절차의 표준 처리 기간을 공포하거나 요청이 있는 경우 예상 처리 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¹⁰⁵⁾ 이는 적합성평가절차의 처리 지연을 예방하여 줄 수 있는 점에의 의의가 있다. (iv) 중-코스타리카 FTA에서는 강행 적합성평가절차가 요구되는 경우 일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타방 당사국은 동 절차의 적용 대상 제품의 리스트를 영문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당사국에 있어 수출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v) 중-뉴질랜드 FTA에서는 투명성과 관련 향후 양국간 이행약정을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vi) 문의처 제공과 관련하여 중-한, 중-스위스, 중-아이슬란드 FTA를 제외한 다른 모든 FTA TBT규정에서 문의처 설치를 규정한다. 한-중 FTA의 경우 TBT위원회에게 사실상 문의처 역할도 부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FTA 체결국들 간의 TBT분야에서의 애로를 해소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i) 중국의 기체결 FTA에서는 예외없이 TBT위원회나 공동작업반 등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한-중 , 중-뉴질랜드 및 중-칠레 FTA TBT위원회 규정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매우 상세하고도 실제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다. (ii) 한-중 , 중-호주, 중-스위스, 중-뉴질랜드 FTA 등 최근 타결된 FTA에서는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한 협의 이용에 대해 규정한다. 또한 (iii) 대다수 TBT규정에서 정보교류에 관한 조문을 포함하고 있는데 중-싱가폴 FTA TBT규정에서는 당사국 일방이 타방 당사국에게 협정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기밀로서 지정한 경우 타방 당사국은 당해

105) 중-페루 FTA 98.6조(적합성평가).

정보의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¹⁰⁶⁾ 이는 기술규제 운영 과정에서 기업의 비밀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유용하다. (iv) 한-중, 중-호주, 중-뉴질랜드, 중-페루, 중-칠레, 중-코스타리카 FTA에서는 기술규제 분야에서의 다양한 협력에 대해 규정한다. 중-칠레 FTA 기술협력조항은 기술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과제들을 규정하고,¹⁰⁷⁾ 중-뉴질랜드 FTA에서는 규제협력(regulatory cooperation) 조항을 두어 기술규제 분야에서의 협력 추진의 원칙을 천명한다.¹⁰⁸⁾ 끝으로 (v) 중국의 기체결 FTA TBT규정에서는 TBT 관련 사안에 대해 분쟁해결제도의 이용을 규정한 사례가 없다. 이는 TBT 사안은 그 성격상 당사국 간 협력과 협의의 대상인 점과 FTA TBT 규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WTO TBT협정 플러스 규정들이 연성법형태의 규정인 점과 무관하지 아니하다고 보여진다.

끝으로 기술지원과 관련하여 중-뉴질랜드, 중-호주 FTA에서는 WTO TBT협정에 있어 기술지원 관련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특별히 개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당사국들 간의 기술협력과는 구별된다.

③ 기타 TBT 완화조치 관련

중국의 최근 타결된 FTA에서는 상술한 조치 이외의 추가로 TBT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고 있고, 특히 한-중 FTA에서 관련 규정이 많이 발견된다. 첫째, FTA TBT 규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한-중, 중-페루, 중-호주 FTA에서는 각 당사국이 지방정부(local government)에 의한 TBT규정 준수 확보를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한다. 이와 관련 중-호주 FTA에서는 나아가 비정부간기구(non-governmental bodies)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106) 중-싱가폴 FTA TBT규정 56조(비밀유지: confidentiality).

107) 중-칠레 FTA 제68조 기술협력조항.

108) 중-뉴질랜드 FTA 제96조 규제협력(regulatory cooperation).

둘째, 적합성평가절차의 비용 및 처리기간과 관련하여 중-뉴질랜드 FTA에서는 기술규제 및 적합성평가 준수 비용을 인하할 목적으로 제품 인정 발급 절차를 조정함에 있어 협조하도록 하며¹⁰⁹⁾, 타방 당사국 산 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수수료가 자국 또는 다른 제3국산 동종 제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에 부과되는 수수료와 비교하여 형평할 것^즉, 수수료에 있어 MFN 대우를 보장할 것¹¹⁰⁾에 대해 규정한다. 한-중 FTA에서는 양 당사국은 적합성 평가절차에 필요한 범위로 비용과 처리기간을 제한하기 위하여 협력한다고 규정한다.

셋째, 한-중 FTA에서는 유일하게 양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의 다른 쪽 당사국의 적합성 평가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한다고 규정한다. 현실적으로 적합성평가 결과의 상호인정이 쉽지 않고, 특정 품목에 대한 상호인정약정이 체결된다 할지라도 그 적용범위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체약당사국들 간 적합성평가기관의 상호 진출은 그 대안으로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 점에서 비록 연성법 규정이기는 하지만 향후 우리 시험인증기관의 중국 진출이 보다 용이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한-중과 중-뉴질랜드 FTA에서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음을 알게 되어 적합성 평가 시험 샘플을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상품을 입국항에서 억류하는 경우, 억류 사유를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국경조치에 대해 규정한다.

넷째, 한-중 FTA에서는 표시 및 라벨링과 관련하여 표시 및 라벨링 요구사항이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제한적이지 아니할 것과 표시 및 라벨링 요구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등에 관해 상세한 이행사항에 대해 규정한다. 이와 관련 중-뉴질랜드

109) 중-뉴질랜드 FTA 97.7조.

110) 중-뉴질랜드 FTA 97.9조.

FTA 부속서V: 섬유제품라벨링에서는 라벨링요건을 제한하고, 섬유 보호 라벨링 지시사항에 대해 관련 ISO표준을 수락하도록 하며, 추가 요건에 대한 통지에 관해 규정한다.¹¹¹⁾

다섯째, 한-중 FTA에서는 TBT챕터에서 유일하게 소비자 제품 안전과 관련하여 관련 규제체계 및 제품리콜 등에 관한 정보 교환과 규제 집행 등에서의 협력에 대해 규정한다.

111) 중-뉴질랜드 FTA Annex V: REFERRED TO IN ARTICLE 6.9 LABELLING OF TEXTILES.

<표 2-3-5> 중국의 기타결 주요 FTA TBT규정들 간의 비교 및 평가요소별 무역자유화수준 평가

추정지표	대상협정		중-호주	중-스위스	중-뉴질랜드	중-페루	중-칠레	중-코스타리카	중-싱가폴	중-아이슬란드	중-파키스탄
	한국-중국	중-호주									
직접적 영향 측정 지표	상호 인정	-	-	-	-	-	-	-	-	-	-
	표준 조화	△6.4조3 국제표준 이용	△6.5조 국제표준 이용	△6.4국제 표준 이용	△94조 국제표준이 용	△96조	△63.1조	△73조	△51조	△20조7항 국제표준이용	△39.2조
	기술 규정	△6.5조1 수용 긍정 고려 △+6.5조2 수용 긍정 이유 설명	△6.6조1항 긍정고려 △+6.6조2항 설명 의무	△+97.2조 설명의무 △97.1조 긍정고려	△+95.2조 설명의무 △95.1조 긍정고려 ▼57조 기술규제 권한 유지	△+65.2조 설명의무 △65.1조 긍정 고려	△72.2조 긍정 고려	△53.1 호의 고려	△20조8 긍정고려	-	-
적합성 평가 절차/결과	조화	-	-	-	-	-	-	-	-	-	-
적합성 평가 절차/결과	상호 인정	△+6.6조3 적합성평가절차 NT부여 △6.6조4 평가결과 상호인정 협정 교섭 요청	-6.7조3항 정보교류 △6.7조4항 적합성 절차 결과 촉진	△6.5(e) 적합성 평가관의 인정 촉진	△+97.4조 평가결과 불인정시 의무 △+97.5조 타방평가관에 NT부여 △+97.6조 타방기	△+98.3조 설명의무 △+98.4조 타방평가	△+66.4조 설명의무 △64.2조 무역원활화	-74조 관련 정보 교류 협력	△52.3 조 호의 고려	△20조9 (a)상호 인정 가능성 모색;(b)정보교류;(c)적합성 평가절차 인	-

제 2 부 한-중 FTA 주요 첩보 분석

대상합정 측정지표	한국-중국	중호주	중-스위스	중-뉴질랜드	중국-페루	중국-칠레	중국-코스타리카	중-싱가폴	중-아이슬란드	중-파키스탄
	긍정 고려 △6.6조2 적합성 평가기간간 평가 결과 수용 촉진 협 력 △ + 6 . 8 조 5 IECEE-CB 시험인 정서 상호인정 추진 △ + 6.10 적합성 평가 협력 후속 이 행약정 체결	△+6.7조5항 타국 적합성 기관인정시 NT대우 △ 6.9조 무 역원활화	-	관 불인정시 설명 의무 △97.2조 무역원활 화 △ + 97.1(b)일방 인 정 이행	기관에 NT 부여	-	-	-	정 호의 고려	-
조화	-	-	-	-	-	-	-	-	-	-

○+: 기술장벽의 무역자유화 효과 실질적이고 진반적; ○: 기술장벽의 무역자유화 효과 실질적이나 적용품목 제한적 또
는 부분적

△+: 기술장벽의 무역자유화 실질적 효과 향후 기대; △: 기술장벽의 무역자유화 효과 상징적

-: 기술장벽의 무역자유화 효과 없음; ▼: 기술장벽의 무역자유화 효과에 부정적

제 3 장 TBT

대상협정 추정지표	한국-중국		중-호주	중-스위스	중-뉴질랜드	중국-페루	중국-칠레	중국-코스 타리카	중-싱가폴	중-아이슬랜드	중-파키스탄
	통보 (60일 이상 의견개진) / 답변 의무/ 문의처 등	△ + 6.7조1 취소 60일 의견제시 기간 부여	△ + 6.8조1항 의 건 개진	△ + 6.8조1항 의 건 개진	△ + 98조 통 보/60일	△ + 99조 통 보/60일	△ + 75.1조 통보/60일	△ + 74.4조 대상 제품 영문 리스 트 제공	△ + 75.1조 통보/60일	△ + 54조 통보/ 60일	△ 20 조 6항 보교류 메 카 니 즘
투 명 성 보 장	△ + 6.7조 기술규제 법령 신속 공표	△ + 6.8조2항 답변 의무	△ + 6.8조2항 답변 의무	△ 102조: 추후 이행약정 결	△ + 98.6조: 강행적 합성 평가절차 표 준처리 기간/ 예상처리 기 간 통지	△ 74.4조 대상 제품 영문 리스 트 제공	△ 67.1조 통보	△ 74.4조 대상 제품 영문 리스 트 제공	△ + 54조 통보/ 60일	△ 6항 보교류 메 카 니 즘	△ + 40조 통 보/60일
간 점 적 영 향 측 정 지 표	△ 6.13조2다,마 교환	△ 6.8조4-6항 정보제공	△ 6.8조1항 문 의 처	△ 100.6조 문 의 처	△ 100.2조; 99.8조 문의처	△ 77.6조 문의처	△ 67.2조 문 의 처	△ 77.6조 문의처	△ + 56: 비밀유 지	-	-
TBT 위원회 (협의 등)/ 분쟁해결 적용	△ + 6.13조TBT위원 회	△ + 6.13조 TBT위원회	△ + 6.7조 TBT 소위 원회	△ + 100조 TBT위원회	△ + 101조 TBT위원회	△ + 77조 TBT 위원 회	△ + 69 조 위원회	△ + 77조 TBT 위원 회	△ + 55조	-	△ + 41조 위원회
제도 · 협력	△ 6.13조2가 협의	협력 메카니즘 협의	△ 20 조 11 진 문 가 협 의	△ 101조 기술 협의	평가절차비 용 MFN	△ 76조 기술협력	강행적합성 평가절차비 용 MFN	△ 76조 기술협력	-	-	-
기술 협력	△ 6.8조 협력	△ 6.11조2 협력	-	△ 96조 기술규제협력	△ 100조 기술협력	△ 68조 기술협력	△ 68조 기술협력	△ 76조 기술협력	-	-	-

제 2 부 한-중 FTA 주요 첩보 분석

기술지원	-	-6.11조1 기술지원	-	-99조 기술지원	-	-	-	-	-	-
기타 TBT 완화 조치	<p>△6.2조3 지방정부의 준수 보장 △ + 6.6조5 적합성평 가절차 처리기간 및 비용 제한 △ + 6.8조3항 시험인 증기관 상대국 영역 설립촉진 △ + 6.12조 시험용샘 플통관 △6.9조 소비자제품 안전 ○6.11조 표시 및 라 벨링</p>	<p>△6.2조 5항 지방정부 및 비정부간기구 의 준수 확보</p>	<p>○ 부속서 v: 섬유라 벨링 △ + 6.6조 국경 조치 시 당사자 즉시통고 -6.10 제3 국과의 기 술규 제약 정시 MFN 대우 고려</p>	<p>△ + 97.9 적합 성평가비용 국 산품 평가비용 과 형평 산정 △ + 부속서14: 진기진자설 비·부품 적합 성평가분야 협 력협정</p>	<p>△:95.1조 첩보의 지방 정부당국의 기술규제에 적용 명시</p>	-	-	-	-	-

(3) 한-중 FTA 포함 중국의 기타결 FTA TBT 관련 규정의 무역자유화 효과 수준의 평가

① 평가기준

본 항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각 측정지표의 평가요소별 조문 분석 결과를 기초로 이러한 개별 평가요소가 무역기술장벽(TBT)을 제거 또는 완화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정성적으로 다음과 같이 5단계로 평가하여 종합 비교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일반적으로 기술규제의 상호인정이나 조화를 법적 의무로서 부과하여 시행하는 구속력있는 약속(hard law)인 경우 ○로 분류한다. 이는 (i) 당해 평가요소 도입의 TBT 무역자유화 효과가 매우 크거나 적용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경우(가령, 전기전자제품 전바 대상 등)는 ○+로 표시하고 4점을 부여한다. 다만 자동차와 같이 특정 품목이라도 무역규모가 큰 경우는 이 등급으로 분류한다. (ii) 무역기술장벽의 자유화 효과가 실질적이나 적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경우(가령, 특정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로 표시하고, 3점을 부여한다.

다음으로 (iii) 무역기술장벽의 실질적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는 △+로 표시하되, 2점을 부여한다. 가령, 상호인정 협상을 일정한 시간 안에 개시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한 것이나 타방 당사국의 표준을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 표준의 불인정 사유에 대한 설명이나 입증을 수입 당사국에 부과하는 규정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iv) 무역기술장벽의 자유화 효과가 상징적인 경우 △로 표시하되, 1점을 부여한다. 이는 당해 평가요소 조치를 촉구하거나 권고하는 등의 구속력없는 규정(soft law)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 경우 당사국이 협정상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달리 국제법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관계로 당사국의 성실한 이행이나 준수가

담보되지 않아 TBT의 무역자유화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一) 표시의 경우 해당 FTA TBT규정에서 당해 평가요소에 관한 규정 자체가 도입되지 않은 경우를 가리키며 따라서 당사국의 기술규제로 인한 무역장벽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 표시는 무역기술장벽의 자유화 취지와 무관하거나 상반될 수 있는 규정이나 조치를 가리킨다. 따라서 TBT의 무역자유화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없다. 가령,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안에 있어 당사국의 기술규제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이에 해당된다.

② 평가결과

상술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중국의 기타결 FTA TBT 규정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먼저 한-중 FTA에서의 TBT 무역자유화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뉴질랜드 FTA TBT규정이 다음이며, 중-호주, 중-페루, 중-칠레와 중-스위스 FTA가 중간 수준이고, 중-코스타리카, 중-싱가포르, 중-파키스탄 및 중-아이슬란드 FTA의 TBT규정의 무역자유화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국의 기타결 FTA TBT 규정에서 기술규제의 무역장벽적 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 근원적 대안인 특정 분야나 품목에 대한 상호 인정협정이나 특정 국제표준의 수용 등과 같은 무역기술장벽 자유화의 실질적인 효과를 수반하는 성과는 없었다. 다만, 한-중 FTA에서 향후 그러한 상호인정협정이나 특정 국제표준 수용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후속 작업 목표를 규정한 것이 이에 근접한 성과로 볼 수 있다.

셋째, 한-중 FTA TBT챕터가 무역자유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그 이유는 기술규제의 무역장벽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규정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노력한 것과 그간 대중 교역에서 중

국의 기술규제 조치 및 운영으로 인해 직면하였던 우리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들을 완화하기 위하여 TBT 규정의 본질적인 실체적 사항이나 절차적 사항 이외에 기타 TBT 완화를 위한 조치들을 조문화하여 TBT챗터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애쓴 결과로 해석된다.

<표 2-3-6> 한-중 양국의 기타결 FTA TBT규정의 무역자유화 효과 수준 비교 평가

대상 협정 측정 지표	한-중	중-뉴질랜드	중-호주	중-페루	중-칠레	중-스위스	중-코스타리카	중-싱가폴	중-파키스탄	중-아이슬란드
직접적 무역자유화 효과 측정지표	△+: 4개 △: 4개	△+: 5개 △: 3개 ▼: 1개	△+: 1개 △: 4개	△+: 3개 △: 1개	△+: 2개 △: 3개	△: 2개	△: 2개	△: 3개	△: 1개	△: 3개
간접적 무역자유화 효과 측정지표	△+: 3개 △: 3개	△+: 2개 △: 4개	△+: 3개 △: 4개	△+: 3개 △: 2개	△+: 1개 △: 4개	△+: 1개 △: 3개	△+: 2개 △: 3개	△+: 2개 △: 1개	△+: 2개 △: 1개	△: 1개
기타 TBT 완화 효과 조치	○: 1개 △+: 3개 △: 2개	△+: 2개	△: 1개	△: 1개	-	○: 1개 △+: 1개	-	-	-	-
종합 평가	32	25	17	16	13	12	9	8	6	4

대상 협정 측정 지표	한-중	중-뉴질랜드	중-호주	중-페루	중-칠레	중-스위스	중-코스타리카	중-싱가폴	중-파키스탄	중-아이슬란드
당해 TBT규정 무역 자유화 수준	높음 <----- TBT 무역자유화 수준 -----> 낮음									

출처: 필자 작성

- +: 무역기술장벽의 자유화 효과 실질적이고 전반적 [4점]
- : 무역기술장벽의 자유화 효과 실질적이거나 적용품목 제한적 또는 부분적 [3점]
- △+: 무역기술장벽의 실질적 효과 향후 기대 [2점]
- △: 무역기술장벽의 자유화 효과 상징적 [1점]
- : 무역기술장벽의 자유화 효과 없음 [0점]
- ▼: 무역기술장벽의 자유화 효과에 부정적 [-1점]

제 4 절 한-중 FTA TBT챕터의 특징, 평가 및 향후 과제

1. 한-중 FTA TBT챕터의 특징 및 평가

결론으로서 본 항에서는 한-중 FTA TBT챕터의 특징 및 평가를 당해 규정의 도입으로 인해 TBT의 무역자유화 효과가 큰 순서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무역기술장벽의 자유화 효과가 실질적인 경우로서 당사국이 제품의 의무적인 표시 또는 라벨링을 요구하는 경우, (i) 그 당사국은 그 제품의 소비자 또는 사용자와 관련된 표시 또는 라벨링 외의 표시

또는 라벨링에 대해서는 요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ii) 이와 관련 어떠한 사전 승인, 등록 또는 인증도 요구하지 아니할 것, (iii) 그 당사국은 표시 또는 라벨 상의 정보가 특정 언어로 되어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질 것 등이 그러하다. 이와 관련 WTO TBT협정에서 표시 및 라벨링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를 희망한다고만 명시할 뿐 상술한 것과 같은 표시 및 라벨링 요건의 최소화에 관한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규정을 갖고 있지 아니하며, 중국의 다른 기타결 FTA TBT규정에서도 표시 및 라벨링에 관해 이와 같이 상세한 규정은 없다. 이 점에서 한-중 FTA상 표시 및 라벨링 상세 규정은 그간 중국 측이 일정 수입품에 대해 필요 이상의 강화된 라벨링 요건을 요구함으로써 무역에 지장을 초래하여 왔다는 우리 업계의 그러한 우려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무역기술장벽의 자유화에 대한 실질적 효과가 향후 기대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적합성평가절차 전반에 대해 내국민대우(NT)를 부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향후 중국으로 수출되는 우리 기업의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절차에 있어 중국산 제품과 비교해 차별적 대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¹¹²⁾ (ii) 양 당사국은 적합성 평가절차에 필요한 범위로 처리기간과 비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협력한다는 규정이다. 이와 관련 WTO TBT협정에서는 절차 수수료가 국내산 동종 상품에 부과되는 수수료와 형평을 이뤄야 한다고만 규정한다.¹¹³⁾ 중국의 경우 우리와 비교하여 적합성평가 비용이 적지 않게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필요한 범위로 비용을 제한

112) 다만, 이와 관련하여 중-호주, 중-뉴질랜드, 중-페루 FTA에 포함된 타방 당사국 영토내의 적합성평가기관을 인정함에 있어 NT대우를 부여할 것 그리고 중-뉴질랜드 FTA에만 포함된 어느 당사국이 특정 기술규정이나 표준과의 적합성평가 기관을 인정하면서(credit or recognise) 당해 기술규정이나 표준과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타방 당사국의 기관을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요청이 있으면 그러한 인정 거부 사유를 설명할 것과 같은 규정들은 한-중 FTA 챕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113) WTO TBT협정 제5.2.5조.

하기 위한 협력 규정을 근거로 중국의 과도하게 높은 절차 비용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iii) 양 당사국이 자국 영역 내에서의 다른 쪽 당사국의 적합성 평가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와 관련 WTO TBT협정에서는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영토내에 위치한 적합판정기관이 자기나라 또는 그 밖의 회원국 영토내에 위치한 기관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자국의 적합판정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장려된다고만 규정한다.¹¹⁴⁾ 생각건대 현실적으로 적합성평가 결과의 상호인정이 쉽지 않고, 특정 품목에 대한 상호인정약정이 체결된다 할지라도 그 적용범위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체약당사국들 간 적합성평가기관의 상호 진출은 그 대안으로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 점에서 비록 연성법 규정이기는 하지만 향후 우리 시험인증기관의 중국 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문제는 TBT 규율 대상이라기 보다는 시험인증서비스업의 상업적 주제에 의한 설립(모드 3)에 대한 시장접근 약속을 다루는 서비스시장 개방 협상의 논의 과제에 속함을 유념해야 한다. (iv) 자국의 국가 인증기관이 ‘IECEE-CB scheme’의 회원이 되도록 장려하고 그 국가 인증기관이 전기안전 요건에 대한 국가 인증의 기초로 서로의 ‘IECEE-CB’ 시험 인증서를 수용하도록 장려한 것이다.¹¹⁵⁾ 이 규정은 비록 연성법 형태이기는 하지만 IECEE CB Scheme이라는 구체적인 국제인증제도를 명기하여 이의 참여 및 이에 기초한 인증서의 수용을 촉구한 점에서 향후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준다. (v) 양 당사국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적합성평가 협력과 관련하여 가능한 이행 약정을 교섭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하고, 양 당사국은 상호 관심 분야에 있어서 추가 이행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합의한 것이다. 이와 관련 WTO

114) WTO TBT협정 6.4조.

115) 한-중 FTA 6.8조 5항.

TBT 협정에서는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자의 적합판정절차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한 협정체결을 위하여 협상을 개시할 용의를 갖도록 장려된다고만 규정한다.¹¹⁶⁾ 이에 비해 금번 TBT챕터에서는 양국간에 상호인정 등 적합성평가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한 후속 이행약정의 조기 체결 노력을 규정함으로써 전기용품 등 양국의 관심 품목에 대한 시험인증 상호인정에 대한 논의가 향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규정 역시 연성법 규정이기도 하지만 협정이 발효되기도 전에 실제 이를 기초로 양국의 기술규제 당국이 이미 작업반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하게 2015년 9월 21일 양국 강제인증제도의 상호인정 촉진 및 소비자제품 안전 협력에 관한 3건의 약정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향후 양국의 강제인증 관련 상호인정이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¹¹⁷⁾ (vi) 한쪽 당사국이, 기술

116) WTO TBT 협정 6.4조.

117) 산업통상자원부, 한중간 무역기술장벽 완화를 위한 협력 본격화: 소비자제품 안전협력 및 한중간 시험인증 상호인정 관련 3개 약정 체결, 보도자료, 2015.9.22. 참고로 이번에 체결된 3개 약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① 「적합성평가 상호인정 협력프로그램 작업절차 약정」의 경우, 한·중은 향후 양국의 강제인증제도(中 CCC, 韓 KC인증 등) 전반에 걸친 상호인정 협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5단계로 작업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이 작업은 양국의 (i) 표준관련 정보교환 (ii) 인증절차 및 제품목록 비교 (iii) 상호인정 과정 중의 문제 최소화를 위한 방법 등 협의 (iv) 약정 서명 (v) 이행의 절차로 시행되며, 양국은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일부 단계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전기전자제품 적합성평가 협력 약정」의 경우, 한·중 양국은 강제인증제도 관련 그 비중이 크고, 국제표준화가 비교적 잘 확립된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호인정 협력을 추진키로 하였다. 먼저, 양국 정부는 전기전자제품 적합성 평가 중복시험을 제거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모든 관련기관과 협력하기로 하였고, 양국은 그간 활용률이 저조한 전기전자제품 분야 국제공인성적서(IECEE CB) 상호인정을 확대하기 위해 2016.3월까지 양국의 전기전자제품 인증기관 간 세부협력협정을 체결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양국 인증기관간 인증용 샘플 송부 면제, 인증소요기간 및 비용의 합리화, 공장심사 대행 등에 관한 협력을 이행토록 하였다. ③ 「소비자제품안전 협력 약정」의 경우, 양국은 소비자제품 영역에서 양국의 규제 현안 및 관련 법률의 이행, 적합성평가기관 관리 및 제품안전 정보 교환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으며, 특히, 적합성평가 부적합제품 관련 정보를 상대국으로 통보하고 그 정보 등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한·중 제품 안전관리 협력은 한-중 FTA 협정을 계기로 교역규모가 최대인 중국과 제품안전 협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 동

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음을 알게 되어 적합성 평가 시험 샘플을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상품을 입국항에서 억류하는 경우, 억류 사유를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신속하게 통보하도록 한 것이다. 이 조항 역시 그간 우리의 대중 수출업체가 호소한 애로 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 바, 향후 시험용 샘플 억류 사례의 개선이 기대된다. 투명성과 관련하여 (vii)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자국이 제안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세계무역기구 중앙통지문등록처 통보 후 최소 60일의 기간을 부여하도록 한 것이다. WTO TBT협정에서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¹¹⁸⁾ 경우에 따라 의견 제시 기간이 매우 짧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한-중 FTA TBT챗터에서는 의견 제시 기간을 최소 60일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중국의 기술규정 제·개정 시 국내 산업계가 그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 역시 WTO TBT협정 플러스 조항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viii) 양 당사국은 채택된 모든 기술규정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공표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 WTO TBT협정에서는 기술규정을 “적절한 초기 단계에”(at an early appropriate stage) 공표한다고 다소 느슨하게 규정한다.¹¹⁹⁾ 따라서 기술규정과 관련하여 적어도 금번 한-중 FTA 규정을 통해 보다 빠른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중국 측의 신규 기술규정에 대한 국내업체들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로 무역기술장벽의 자유화 효과가 상징적인 경우란 당해 규정이 권고 성격의 연성법 형태이어서 당사국의 자발적인 준수나 협력

약정은 한·중 FTA TBT분야의 소비자제품안전 협력 조항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한·중 FTA 발효와 동시에 시행하기로 하였다.

118) WTO TBT협정 2.9.4조.

119) WTO TBT협정 2.9.1조. 이와 관련 적합성판정절차는 한-중 FTA TBT규정과 WTO TBT 협정 모두 “신속하게”(promptly) 공표해야 한다고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WTO TBT협정 5.8조.

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행되더라도 구체적인 성과가 모호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다. (i) 협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각 당사국으로 하여금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 채택 및 적용을 담당하는 자국 영역 내의 지방 정부(local government)에 의한 TBT챕터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이용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WTO TBT협정에서는 통보 의무를 제외하고는 지방정부기관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¹²⁰⁾ 실제로 중국의 경우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지방마다 인증절차가 다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중 승인 절차가 존재하여 이들 품목의 대중 수출기업이 애로에 직면하여 왔다. 이와 관련 상기 조항을 통해 중국 지방 정부 기술규제 당국의 TBT챕터 준수 보장을 재확인함으로써 향후 지방 정부에 의한 기술규제 입법 및 적용에 있어 투명성의 제고와 무역장벽적 운영 관행의 억제 및 개선이 기대된다. 다만, 비정부간기구(non-governmental bodies)에 대한 TBT 규정 준수 확보와 관련하여 한-중 FTA TBT챕터에는 비정부간기구에 대한 문구가 없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중국이 가입하여 적용 의무가 있는 WTO TBT협정 관련 규정¹²¹⁾을 원용하여 비정부간기구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정부는 기술규제분야 비정부간기구에 대한 감독권한을 유지하고 있는 관계로 양자간 협의를 통해 비정부간기관에 의한 무역장벽적 운영에 대응할 수도 있어 금번 한-중 FTA TBT챕터상 비정부간기구에 대한 문구의 흠결이 심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ii) 한-중 FTA에서 양 당사국은 각국의 적합성평가 절차 결과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RA) 교섭을 받은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이 요

120) WTO TBT협정 3.1조(기술규정의 준비 및 채택), 7.1조(적합성평가절차).

121) WTO TBT협정 제3조(지방정부기관 및 비정부간기관에 의한 기술규정의 준비, 채택 및 적용) 및 제8.1조(비정부기관에 의한 적합판정절차)에서는 비정부간기구의 협정 준수 확보를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다.

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시켰고, 아울러 양 당사국 간 적합성평가 결과의 수용 촉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장려한다는 규정이다. 이 규정들은 연성법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적합성평가 결과의 MRA에 대한 양국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관련하여 (iii) 적합성평가 결과의 수용 촉진 방식의 개발 및 적용에 있어서 정보 교환 등 적합성 평가 결과 수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국의 적합성평가기관이 긴밀히 협력하도록 장려한다는 규정이 그러하다. 이밖에 (iv) 소비자 제품 안전과 관련하여 양 당사국은 관련 규제 체계, 사고 분석, 유해 경고, 제품 금지, 제품 리콜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규제집행 등에 대하여 협력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와 관련 WTO TBT협정 및 중국의 다른 기타결 FTA에서는 상응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 비해 금번 한-중 FTA TBT 챕터에서 상기 규정을 도입한 것은 한-중 FTA 발효에 따른 중국산 제품의 수입 증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금번 한-중 FTA TBT챕터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추가적인 이슈들을 살펴보면 (i) 당사국이 제·개정하는 기술규제에 대해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와 관련하여 한-중 FTA에서는 이를 당사국에게만 허용한다. 이에 비해 중-파키스탄¹²²⁾, 중-칠레¹²³⁾, 중-뉴질랜드 FTA¹²⁴⁾에서는 당사국 이외에 당사국의 인(persons)에게도 허용한다. 이와 관련 TBT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수출기업 또는 무역업자라는 점에서 투명성 절차에 있어 이들 수출기업이나 무역업자와 같은 인들에게 의견 개진 자격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견을 수렴하는 내부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정부가 이들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

122) 중-파키스탄 40.1조.

123) 중-칠레 FTA 67.1조.

124) 중-뉴질랜드 FTA 98.1조.

을 수렴하여 정부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어 있는 관계로 실제에 있어 그 차이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ii) 챗터에서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한-중 FTA 제20장(분쟁해결)의 이용을 배제하는 대신에 TBT 위원회의 협의 메카니즘만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중국이 한-중 FTA TBT챗터를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중 FTA를 비롯한 FTA의 TBT 규정을 보면 WTO TBT 플러스 규정의 존재가 중요하다. 그 이유는 FTA 체결국의 거의 모두는 WTO 회원이어서 WTO TBT 협정의 준수 의무를 갖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TBT 협정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한 법적 대응의 길이 열려 있다. 따라서 FTA TBT 규정 위반 관련 법적 대응 문제는 WTO TBT협정 플러스 규정에 관한 것이 된다. 그런데 한-중 FTA TBT챗터상 TBT 협정 플러스 규정 대다수는 권장 내지 협력을 요구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거나 집행 가능성이 결여되어 그 위반 여부를 다루기가 어려운 연성법(soft law)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그 위반 여부를 다루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연성법 형태의 조항들을 둘러싼 분쟁의 해결을 위해 법적 구속력이 수반되는 한-중 FTA 제20장(분쟁해결)상의 패널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¹²⁵⁾ 따라서 한-중 FTA TBT챗터에서는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을 배제하는 대신에 TBT 위원회의 협의 메카니즘만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¹²⁶⁾ 그간 중국의 기체결 FTA TBT규정에서는 TBT 관련 사안에 대해 분쟁해결체도의 이용을 규정한 사례가 없는데, 이는 중국의 기타결 FTA TBT규정상 WTO TBT협정 플러스 규정 대다수가 연성법형태의 규정인 점과 무관하지 아니하다고 보여진다.

125) FTA TBT 규정상 WTO TBT협정 플러스에 해당하는 조문이 있는 경우 분쟁해결절차의 미적용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한-중 FTA를 비롯한 중국의 기타결 FTA TBT 규정 가운데 이에 해당하는 조항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라 할 수 있어 실제에 있어 법적 대응 기회 배제 우려는 매우 작다고 할 수 있다.

126) 한-중 FTA 6.13조 2항 카호.

끝으로 앞에서 FTA TBT규정의 무역자유화 효과 측면에서의 중국의 기타결 FTA TBT 규정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먼저 한-중 FTA TBT챕터가 TBT의 무역자유화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간 FTA TBT협상의제 있어 중국의 보수적인 태도에 비추어 적지 않은 성과라 평가할 수 있고, 그 배경에는 (i) 한-중 FTA TBT 협상에서 기술규제의 무역장벽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규정들을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시도한 것과 (ii) 그간 대중 교역에서 중국의 기술규제 조치 및 운영으로 인해 직면하였던 우리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들을 완화하기 위하여 TBT 규정의 본질적인 실체적 사항[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 또는 조화]이나 절차적 사항[투명성 보장, 제도 및 협력 등] 이외에 기타 TBT 완화를 위한 조치들을 조문화하여 TBT챕터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애쓴 결과로 보여진다.

2. 한-중 FTA TBT챕터의 성과 도출을 위한 과제

금번 한-중 FTA TBT 챕터는 다수의 WTO TBT협정 플러스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점에서 향후 한-중 FTA가 발효되면 중국에서의 무역기술장벽의 완화가 기대된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가 실제의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첫째, 연성법(soft law) 형태로 되어 있는 WTO TBT협정 플러스 규정들의 경우 그 이행이 보장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가령, 적합성평가 결과와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양국 적합성평가기관간의 협력, 적합성평가절차에 필요한 범위로 처리기간과 비용을 제한하기 위한 협력 등 TBT 챕터에서 약속한 다수의 협력과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그 후속작업 계획과 추진이 필요하다. 이 점에 있어 우리 기술규제 당국의 준비와 TBT위원회의 활용이 중요하다.

둘째, 챕터에서는 후속 협상 과제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가령, 양 당사국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적합성 평가 협력과 관련하여

여 가능한 이행 약정을 교섭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하고, 양 당사국은 상호 관심 분야에 있어서 추가 이행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이행약정 규정 등이 그러하다. 이들 규정은 향후 전기용품이나 자동차 또는 화장품 등과 같이 주요 교역품에 대한 시험인증 상호인정 등을 위한 이행약정 형태의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협상장예의 입장권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향후 양국의 강제인증 관련 상호인정 등에 관한 추가 이행약정 채택이 한-중 FTA TBT챕터의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준성(연구책임자) 등, 한-중 FTA 협상시 기술장벽 분야 대응방안 연구 용역보고서(이하 ‘고준성 등 중국 TBT 보고서’), 산업연구원, 2011년(비공개).
- 국가기술표준원, 한-중 FTA TBT챕터 검토자료(비공개), 2015
- 류경임, 기술규제와 무역: 무역기술장벽(TBT)을 넘어 세계시장으로, 한국표준협회미디어, 2015
-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이하 산업부 상세설명자료), 2015
- 산업통상자원부, 한중간 무역기술장벽 완화를 위한 협력 본격화: 소비자제품 안전협력 및 한중간 시험인증 상호인정 관련 3개 약정 체결, 보도자료, 2015.9.22.
- 외교통상부, 2010 외국의 통상환경: 아시아 대양주, 2011년.
- 최현경·고준성, 표준과 경쟁우위: 성장과 국제무역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

KOTRA, 국별 비관세장벽 현황(비공개 자료), 2014.11.

일본 무역·투자원활화비즈니스협회의, 各国·地域の貿易·投資上の
問題点と要望「2010年版」.

B. A. Garner(ed.), Black's Law Dictionary (7th ed.), West Group, 1999.

E. McGovern, International Trade Regulation(이하 'McGovern'), Globefield
Press, 1995.

R. Piermartini & M. Budetta, A mapping of regional rules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in: A. Estevadeordal, K. Suominen & R. Teh(ed.),
Regional Rules in the Global Trading System(이하 'Piermartini &
Budetta'), 2009.

China-ASEAN Free Trade Agreement

China-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China-Chile Free Trade Agreement

China-Costa Rica Free Trade Agreement

China-Iceland Free Trade Agreement

China-Korea Free Trade Agreement

China-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China-Pakistan Free Trade Agreement

China-Switzerland Free Trade Agreement

제 4 장 무역구제

제 1 절 개 관

1. 무역구제제도의 의의

무역구제제도는 WTO 체제의 이념 중의 하나인 공정무역의 실현을 위한 제도로서 공정무역규범으로도 불린다. WTO 체제의 또다른 이념인 자유무역을 관세와 수량제한 및 각종 기술무역장벽과 같은 모든 인위적인 무역장벽을 제거 또는 완화하여 자유무역의 확대에 따른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공정무역은 무역의 왜곡현상을 시정하고 공정한 경쟁조건을 마련함으로써 자유시장경쟁에 입각한 공정한 무역질서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

무역구제제도에는 크게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조치, 보조금 및 상계조치 등의 3가지 조치가 있다. 이들 중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타국의 공정 무역관행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상대적 수량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자국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 당사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이며, 반면 반덤핑 조치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는 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인 덤핑 및 불법보조금 지급 등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자국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 당사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반덤핑 조치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는 형식적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반면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실질적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기도 한다.²⁾

그러나 이러한 무역구제조치는 각국이 WTO 체제 내에서 비교적 자

1) 최승환, 『국제경제법』, 제4판, 법영사, 2014, p.319.

2) WTO 공정무역규범과 공정성 개념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상계서, pp.319-327 참조.

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FTA 체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FTA를 통하여 시장이 빠르게 개방되면 그와 동시에 덤핑, 보조금 지급 등 외국으로부터의 불공정한 무역환경에 자국산업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³⁾ 이 경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하는 국가는 즉각적으로 무역구제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무역구제조치가 원래의 목적이 아닌 자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하게 이용될 경우, 국가 간 통상분쟁의 발생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또한 FTA가 가지고 있는 배타성에 바탕을 둔 차별적인 무역구제조치로 인한 역외국의 피해, 그리고 각 FTA마다 다른 무역구제조치의 요건과 조치유형 등은 WTO 규범과의 조화라는 문제와도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⁴⁾ 일반적으로 FTA에서 다루고 있는 무역구제조치는 ① WTO 원칙을 배제하는 유형, ② WTO PLUS 방식의 유형, ③ WTO 원칙을 준용하는 유형, ④ WTO 원칙대신 당사국의 국내절차를 적용하는 유형, ⑤ 반덤핑조치를 경쟁조치로 대체적용하는 유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⁵⁾ 이중 우리나라는 WTO PLUS 유형을 지향하고 있으며, 한-중 FTA에서도 그러하다.

2. 한-중 FTA 무역구제제도의 체계

한-중 FTA 무역구제제도는 제7장 무역구제의 장에서 총 3개의 절에서 1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의 절은 각각 긴급수입제한조

3) 국제공정무역학회, 「한-중 FTA에 따른 무역구제제도와 조직의 효율적인 운용방안 연구」, 2014, p.2.

4) 김동훈, 김봉철, 박찬호, 「한-EU FTA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비교법제연구 07-02, 한국법제연구원, 2007, p.152.; 김동훈, 김봉철, 박찬호, 「FTA 세이프가드 규정에 관한 연구」, 비교법제연구 08-03, 한국법제연구원, 2008, p.46.

5) 유형별 FTA의 현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상모, 「중국이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분석-상품무역분야를 중심으로-」, 현안분석 2012-12, 한국법제연구원, 2012, pp.73-74 참조.

치(제1절),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2절), 무역구제위원회(제3절)로 구성되어 있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제7.1조), 조건 및 제한(제7.2조), 잠정 조치(제7.3조), 보상(제7.4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제7.5조), 정의(제7.6조)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서는 일반규정(제7.7조), 통보 및 협의(제7.8조), 약속(제7.9조), 실사(제7.10조), 공청회(제7.11조), 재심에 의한 종료 후 조사(제7.12조), 누적적 평가(제7.13조), 신규 공급자 재심에 적용 가능한 미소기준(제7.14조)이 규정되어 있으며, 마지막 절인 무역구제위원회에서는 무역구제위원회(제7.15조)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제 2 절 주요내용

1. 긴급수입제한조치

(1)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제7.1조)

제7.1조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절대적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으로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이 협정에 규정된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추가 인하를 정지하는 것, 또는
나.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 1)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는 일자에 발효 중인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그리고
- 2) 제2.4조(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따라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포함된 양허표에 명시된 기준 관세율

1) 적용요건

동 조는 양자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 한-중 FTA로 인한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② 상대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 수입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급증이 발생하여야 하며, ③ 동종 또는 직접 경쟁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을 대상으로 하며, ④ 국내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그러한 우려를 야기하여야 한다. 동 조의 요건인 심각한 피해 및 심각한 피해의 우려에 관한 정의는 제7.6조(정의)에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다.⁶⁾ 동 조항의 조건에 관한 내용은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제2조에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정의에 관한 내용은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제4조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한국이 체결한 다수의 FTA에서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정도”의 요건 대신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을 구성할 정도로”라는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⁷⁾

2)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유형

한-중 FTA에서는 일방 당사국이 취할 수 있는 긴급수입제한조치로 관세율의 추가 인하를 정지하거나, 상품의 관세율 일정수준까지 인상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한국이 체결한 모든 FTA에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즉 WTO 협정에서는 수량제한 조치도 가능하지만,⁸⁾ FTA에는 관세조치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6) 제1절의 목적상, “심각한 피해”란 국내 산업의 입지에 대한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말하며, “심각한 피해의 우려”란 단순히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명백히 심각한 피해를 말한다.

7)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인도 CEPA, 한-페루 FTA, 한-미 FTA,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등에서는 “실질적인 원인”을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8)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제5.1조.

(2) 조건 및 제한 (제7.2조)

제7.2조 조건 및 제한

1. 한쪽 당사국은 제2항에 기술된 조사를 개시할 때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조사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검토하고 그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 전에 실행 가능한 한 최대한 조기에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2.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4.2조 다호에 따라 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한 후에만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4.2조 다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3. 제2항에 기술된 조사에서,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2조 가호 및 제4.2조 나호의 요건을 준수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2조 가호 및 제4.2조 나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러한 모든 조사를 그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보장한다.
5. 어떠한 당사국도
 - 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및 기간 동안을 제외하고
 - 나.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의 총 기간이 최초 적용기간과 이에 대한 연장을 포함하여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그 산업이 구조조정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이 조에 명시된 절차에 합치되게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또는
 - 다. 다른 쪽 당사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도기간의 만료 후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6.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대상이었던 상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치가 전에 적용된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재적용하지 아니

한다. 다만, 비적용기간은 최소 2년이어야 한다.

7.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예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이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

8. 당사국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종료하는 때, 관세율은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포함된 그 당사국의 양허표에 따라 유효하였을 관세율이 된다.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을 위한 조건 및 제한들은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의 내용을 준용하고 있다. 다만 통보와 관련하여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에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에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⁹⁾ FTA는 협정의 특성상 조사를 개시하는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에 서면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협의시기에 있어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 전 ‘실행 가능한 한 최대한 조기’에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이 체결한 타 FTA에서도 구체적인 기한의 반영 없이 최대한 조속히, 신속히 등의 표현을 두고 있다.

조사기간에 있어서는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에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대부분의 FTA에서는 1년의 조사기간을 두고 있다.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기간은 2년이며, 2년 연장이 가능하다. 동 기간은 대부분의 FTA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다.¹⁰⁾ 한국이 체결한 FTA에서는 대부분 동일한 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나, 몇몇 FTA에서는 발동기간 3년과 1년의 연장으로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발동기간은 4년이며, 4년의 연장이 가능하다.¹¹⁾

9)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제12.1조.

10) 한-EFTA FTA는 발동기간 1년/연장기간 2년, 한-ASEAN FTA는 발동기간 3년/연장기간 1년, 한-미 FTA, 한-터키 FTA, 한-호주 FTA는 발동기간 2년/연장기간 1년을 규정하고 있다.

11)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제7.1조, 제7.3조.

기 조치 상품에 대한 재발동 금지에 관하여 한-중 FTA는 조치가 전에 적용된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재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적용기간으로 최소 2년을 규정하고 있다. 재발동 금지조항은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에서도 동일한 기간과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으며,¹²⁾ 한-EFTA FTA, 한-페루 FTA, 한-미 FTA에서는 각각 3년, 1년, 1년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한-터키 FTA, 한-호주 FTA에서는 재발동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에서는 존속기간이 180일 이내인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해당 조치가 도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고, 해당 조치가 도입되기 이전 과거 5년의 기간 내에 동일상품에 대하여 2번을 초과하여 동 조치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발동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³⁾

점진적 자유화에 관한 내용도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한-싱가포르 FTA, 한-페루 FTA, 한-터키 FTA, 한-호주 FTA에서는 동일하게 예상 존속기간을 1년이 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3) 잠정조치 (제7.3조)

제7.3조 잠정조치

1.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증가하였으며 그러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예비 판정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적용 당사국은 잠정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고 그 조치의 적용 후 협의를 개시한다.

12)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제7.4조, 제7.5조.

13)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제7.6조.

3. 모든 잠정 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그 기간 동안 적용 당사국은 제7.2조 제2항 및 제7.2조 제3항의 요건을 준수한다.
4. 적용 당사국은 후속 조사에서 수입의 증가가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었다는 판정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모든 관세 인상분을 신속하게 반환한다. 모든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제7.2조 제5항 나호에 기술된 조치의 존속기간의 일부로 계산된다.

한-중 FTA에 따라 관세 인하 또는 철폐가 이루어진 상품의 수입이 증가가 되어, 이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 우려가 야기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당 국가에게는 잠정조치 전 상대국에게 통지 및 조치 후 협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잠정조치 존속기간은 최대 200일이며, 동 기간은 전체 조치 기간에 포함된다. 장점조치의 기간은 한-페루 FTA에서 180일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200일을 정하고 있다.

(4) 보상 (제7.4조)

제7.4조 보상

1. 한쪽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 후 30일 내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거나 그 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의 형태로 된 적절한 무역자유화 보상에 관하여 자국과 협의할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적용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보상을 제공한다.
2. 협의 개시 후 30일 내에 양 당사국이 보상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수출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의 무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수출 당사국은 양허의 적용을 정지하기 최소 30일 전까지 적용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3.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적용 당사국의 의무와 제2항에 따라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수출 당사국의 권리는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종료하는 날에 소멸된다.

4. 제2항에 언급된 정지할 수 있는 권리는,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수입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행하여져 왔고 그러한 조치가 이 협정에 합치하는 한, 그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유효한 최초 2년간 행사되지 아니한다.

보상에 관한 규정은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 당사국은 상대국에게 보상 관련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¹⁴⁾ 협의 후 30일 내에 보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치 적용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해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는 양허적용 정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양허적용 정지 30일 전 상대국에 통지하여야 한다.¹⁵⁾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에서는 협의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있어서 명시적인 기간을 두고 있지 않지만, 한-중 FTA에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 후 30일 내에 협의기회를 타 당사국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중 FTA에서 발견되는 특이한 조항 중의 하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의 필요성이 “수입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 인해 도출되는 경우에는 조치 후 최초 2년간 양허적용 정지의 권리는 제한되도록 하고 있다.¹⁶⁾ 동 조항은 한-인도 CEPA, 한-터키 FTA, 한-캐나다 FTA에서도 발견된다. 이중 한-인도 CEPA의 경우는 최초의 긴급수입제한 조치일 때는 동일하게 2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연장 중인 경우에는 3년간 양허적용 정지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동 조항은 타국의 긴급수입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자국산업의 기반이 약한 국가들의 입장을 대변한 규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14)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제12.3조.

15)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제8.2조.

16)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에서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제8.3조.

(5) 다자긴급수입제한조치 (제7.5조)

제7.5조 다자긴급수입제한조치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이 협정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에 대하여 양 당사국에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나 의무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하려는 한쪽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조사의 개시, 그 조사의 예비 판정 및 최종 판정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에 대하여 임시 서면 통보를 즉시 제공할 수 있다.
3. 어떠한 당사국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시에 다음의 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가.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그리고
나.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조치

양 당사국은 양자긴급수입제한조치 외에도, WTO 협정상의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일방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물품이 관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두 개의 조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는 있으나, 동시에 발동을 할 수는 없도록 제한을 하여 규범의 충돌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분쟁해결절차의 선택에 있어서 한-중 FTA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 분쟁에 있어서 FTA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한-칠레 FTA, 한-EU FTA, 한-터키 FTA, 한-캐나다 FTA는 FTA 분쟁해결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6) 정의 (제7.6조)

제7.6조 정의

제1절의 목적상,

국내 산업이란, 수입 상품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생산자 전체, 또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총 산출량이 그 상품의 국내 총생산의 상당한 부분을 구성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란 제7.1조에 기술된 조치를 말한다.

심각한 피해란 국내 산업의 입지에 대한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말한다.

심각한 피해의 우려란 단순히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명백히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말한다. 그리고

과도기간이란 이 협정의 발효 후 10년간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의 부속서 2-(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양허표가 그 당사국이 그 상품에 대한 관세를 10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철폐하도록 규정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과도기간은 그 양허표에 규정된 그 상품의 관세 철폐 기간을 말한다.

국내 산업, 심각한 피해, 심각한 피해의 우려에 관한 정의는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과 거의 동일하다.¹⁷⁾ 한-중 FTA에서 제시하고 있는 심각한 피해의 우려의 요건인 “명백히 임박한 심각한 피해”의 구체적인 내용은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각한 피해의 우려를 판단하는 다양한 평가지표¹⁸⁾를 활용해 도출할 수 있다.

한-중 FTA에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과도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도기간이 가지는 의미는 한-중 FTA 제7.2조(5)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타방 당사국의 동의가 없으면 과도기간 이후에는 동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과도기간에 관

17)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제4.1조(a)~(c).

18) 관련 상품의 절대적 및 상대적인 수입증가율 및 증가량, 증가된 수입품이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판매, 생산, 생산성, 가동률, 이윤 및 손실, 고용수준에 있어서의 변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제4.2조.

한 규정은 한국이 체결한 대부분의 FTA에서 발견된다. 한-ASEAN FTA에서 7년의 과도기간을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FTA는 10년의 기간을 두고 있다.

2. 반덤핑 및 상계관세

(1) 일반규정 (제7.7조)

제7.7조 일반규정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반덤핑 및 상계 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2. 양 당사국은 반덤핑 및 상계 관세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관련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여 사용되어야 하고, 다른 쪽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에 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체계에 근거하여야 할 것이라는 데 합의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양 당사국은 잠정조치의 부과 후 즉시, 그리고 최종판정 전에, 반덤핑협정 제6.5조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2.4조를 저해함이 없이,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결정의 근거를 형성하는 모든 필수적인 사실 및 고려사항의 완전하고 의미 있는 공개를 보장한다. 공개는 서면으로 하고, 이해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용한다. 양 당사국은 최종 판정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하고 답변한다.
3. 양 당사국은 반덤핑협정에 따라 어떠한 조치도 자의적이거나 보호주의적인 방식으로 취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
4. 양 당사국은 반덤핑 절차에서 덤핑 마진을 결정할 때, 정상 가격과 수출가격 결정에 있어서의 대체 가격 또는 대체 비용의 사용을 포함하여, 제3국의 대체 값에 근거한 방식을 사용하는 관행이 양 당사국 간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5. 양 당사국은 덤핑 마진이 가중평균 가격비교 또는 개별거래 가격비교 또는 가중평균-개별거래 가격비교를 기초로 설정되는 경우, 양의 값이든 음의 값이든 모든 개별 마진을 평균 계산에 포함시키는 양국의 현재 관행을 확인하고, 이러한 관행이 지속될 것이라는 양국의 기대를 공유한다.¹⁹⁾

19) 이는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규범 협상에서 각 당사국이 취하는 입장을

일반규정 제1항은 반덤핑 및 상계 관세에 관한 한-중 FTA 규정은 동 협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WTO 협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용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전체적인 내용은 WTO 협정을 따르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도 반덤핑 및 상계 관세가 WTO 협정의 관련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여 사용되어야 함을 재확인하고 있다.

정보공개에 있어서는 WTO 반덤핑 협정과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WTO 협정에서는 ‘합리적으로 입수가능한 정보의 제출’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²⁰⁾ 한-중 FTA에서는 ‘모든 필수적인 사실 및 고려사항의 완전하고 의미 있는 공개’라는 표현을 삽입하고 있는데, 이는 조치를 발동하는 국가의 형식적인 정보공개 행위로 인한 절차완료 주장의 차단, 또는 검토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의 공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여 반덤핑 및 상계조치의 남용가능성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비밀정보에 대한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WTO 협정에서는 증거의 제출에 있어서 “성격상 비밀인 정보”²¹⁾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비밀로 취급하여야 하며, 타 당사국의 허가 없이는 공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²²⁾ 한-중 FTA에서는 관련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일반규정 제1항은 달리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WTO 관련 협정의 내용이 적

저해하지 아니한다.

20) WTO 반덤핑 협정에서는 제5.2조(조사개시 및 후속조사)와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제11.2조(조사개시 및 후속조사)에서는 조사개시 신청서에 ‘합리적으로 입수가능한 정보의 제출’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1) 예를 들어 공개될 경우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의 이익이 되거나, 정보를 제공한 자 또는 그 정보의 취득원이 되는 자에게 중대한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의미한다. WTO 반덤핑 협정 제6.5조 및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제12.4조.

22) WTO 반덤핑 협정 제6조,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제12조.

용되므로 비밀정보의 보호는 WTO 협정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반면 일반규정 제2항은 모든 필수적인 사실 및 고려사항의 완전하고 의미 있는 공개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비밀정보라는 이유로 정보의 공개가 회피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보아 모든 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제3항은 반덤핑협정에 따른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보호주의적인 방식으로 취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규정하여, 반덤핑협정의 목적 및 한계에 대해 분명하게 나타냄으로써, 분쟁발생시 쟁점이 되는 대상협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동 조항은 반덤핑조치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동 조치의 내용이 ‘자의적이거나 보호주의적인 목적’에 해당한다면, 반덤핑조치가 협정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제4항은 덤핑 마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WTO 협정과는 달리²³⁾ 대체가격 및 제3국의 대체 값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오직 양 당사국 간의 교역에 있어서만 덤핑마진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²⁴⁾ 덤핑마진의 계산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제로잉²⁵⁾ 관행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덤핑마진의 인위적인 확대를 제한하고 있다.

23) WTO 반덤핑협정에서는 국내에서 통상적인 거래에 의한 동종 상품의 판매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수출국 국내시장의 특별한 시장상황 또는 소규모의 판매 때문에 적절한 비교를 할 수 없는 경우, 덤핑마진은 동종 상품의 적절한 제3국 수출시 비교가능한 가격과의 비교를 통해 덤핑마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24) 한-싱가포르 FTA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25) 제로잉이란 조사대상 물품의 덤핑마진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음(-)의 덤핑마진은 제외하고 양(+)-의 덤핑마진만을 합산하는 것을 뜻한다. WTO패널과 상소기구는 제로잉 관행은 모든 비교가능한 수출거래가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반덤핑협정에 위반된다고 일관되게 판정을 내리고 있다. 제로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정영진, 이재민, 「글로벌시대를 위한 신통상법 및 통상정책」, 2012, pp. 171-172 참조.

(2) 통보 및 협의 (제7.8조)

제7.8조 통보 및 협의

1.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반덤핑 신청을 접수한 후,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전 7일 내에, 그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합치되게, 신청의 접수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 통보를 제공하고, 신청에 관하여 회의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부여할 수 있다.
2.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상계관세 신청을 접수한 후,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신청의 접수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가능한 한 조속히 서면통보를 제공하고, 조사 개시 전 양 당사국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협의한다.

WTO 반덤핑 협정에서는 협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에 반해, 한-중 FTA는 통보 및 협의에 있어서 반덤핑의 경우 조사신청을 접수한 경우 조사개시 7일 이전에 상대국에 서면통보를 제공하고 관련 협의 기회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반덤핑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통상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특별히 관련 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상계관세의 경우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제13.1조에 따라 조사개시 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반덤핑의 경우와 달리 상계관세의 경우 가능한 ‘조속히’ 신청 접수 사실을 서면통지 하고 조사개시 전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협의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한 기간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3) 약속 (제7.9조)

제7.9조 약속

1.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를 개시한 후,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가격에 대한 약속을 자국의 당국이 고려하도록 요청하기 위한 자국의 절차에 관한 서면 정보를, 그러한 약속을 제의하고 체결할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대사관 또는 권한 있는 당국에게 전달한다.
2. 반덤핑 조사에서, 한쪽 당사국의 당국이 덤핑과 그러한 덤핑으로 야기된 피해에 관한 긍정적인 예비 판정을 내린 경우, 그 당사국은 수락된다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중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격 약속 제안에 관하여, 자국의 법과 절차에 합치되게, 다른 쪽 당사국의 수출자에게 적절한 고려와 회의 기회를 부여한다.
3. 상계관세 조사에서, 한쪽 당사국의 당국이 보조금 지급과 그러한 보조금 지급으로 야기된 피해에 관한 긍정적인 예비 판정을 내린 경우, 그 당사국은 수락된다면 상계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중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격 약속 제안에 관하여, 자국의 법과 절차에 합치되게, 다른 쪽 당사국 및 다른 쪽 당사국의 수출자에게 적절한 고려와 회의 기회를 부여한다.

약속 조항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로부터 야기되는 통상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가격인상약속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수출자에게 적절한 고려와 회의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는 조치를 발동하는 국가의 자국법과 절차에 합치되게 부여되어야 한다.

(4) 실사 (제7.10조)

제7.10조 실사

1. 실사 대상 정보의 일반적인 성격 및 제공될 필요가 있는 정보는 현지 실사 전

관련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통보되어야 할 것이다.

2. 실사의 결과는 실사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실사의 대상이 되는 관련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공개된다.

한-중 FTA에서는 실사에 있어서 현지조사 전 조사대상 정보를 관련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통보할 것과 실사 후 합리적 기간 내에 실사의 대상이 되는 관련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실사결과를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절차에 관한 내용은 없다.

반면 WTO 반덤핑 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은 각각 부속서 1 및 부속서 6에서 별도의 상세한 현장조사절차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사전 통보 이외에 비밀정보의 보호, 질의서에 대한 응답을 접수한 후 조사절차 진행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5) 공청회 (제7.11조)

제7.11조 공청회

각 당사국은 이해당사자들의 서면 신청을 접수한 경우 또는 자체 발의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적절히 고려한다.

각 당사국은 자체 발의 또는 이해당사자들의 서면 신청을 접수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공청회를 통해서 동 조치에 이해관계가 있는 다양한 산업의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동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의 진행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다양한 의견개진 및 수렴을 통해 공익의 고려, 또는 자국산업보호 목적의 조치여부 등에 대한 사항들을 쟁점화 함으로써 반덤핑 상계조치의 남용을 차단하는 절차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동 조항의 해석상 공청회의 개최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므로 상호주의적 측면에서 공청회 제도의 도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가능한 한 양국 모두 국내법에서 관련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직 하다.

(6) 재심에 의한 종료 후 조사 (제7.12조)

제7.12조 재심에 의한 종료 후 조사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면서 재심의 결과로 이전 12개월 내에 반덤핑 조치가 종료된 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를 위한 신청에 대하여 주의를 가지고 검토하기로 합의한다.

재심의 결과로 이전 12개월 내에 반덤핑 조치가 종료된 상품에 대하여는 반덤핑 조사 개시를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특정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 및 생산자에게 통상에 있어서 부담을 부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동 조항은 주의를 가지고 검토한다는 주의적 규정으로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제한이나 관련 기준들이 규정되지 않아서 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 누적적 평가 (제7.13조)

제7.13조 누적적 평가

2개국 이상으로부터의 수입이 동시에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의 대상이 될 때,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 효과에 대한 누적적 평가가 수입 상품 간 경쟁 조건 및 수입 상품과 동종의 국내 상품 간 경쟁 조건에 비추어 적절한지를 주의를 가지고 검토한다.

2개국 이상으로부터 수입이 동시에 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상대국 수입 효과에 대한 누적적 평가에 대해 주의를 갖고 검토하도록 규정

함으로써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조치가 내려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8) 신규 공급자 재심에 적용 가능한 미소기준 (제7.14조)

제7.14조 신규 공급자 재심에 적용 가능한 미소기준

반덤핑협정 제9.5조에 따른 개별 마진을 결정할 때, 덤핑 마진이 반덤핑협정 제5.8조에 규정된 미소기준치 미만이라고 판정되면, 수출 당사국 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양국은 WTO 반덤핑 협정 제9.5조에 따른 개별 마진을 결정할 때, 덤핑마진이 WTO 반덤핑 협정 제5.8조에 규정된 미소기준치 미만일 경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3. 무역구제위원회

제7.15조 무역구제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을 감독하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무역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무역구제 조치를 담당하는 각 당사국의 관련 기관의 적절한 수준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2. 위원회는 통상 매년 1회 회합하며, 양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더 자주 회합할 수 있다.

양국은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 조치 및 상계 관세 조치 관련 협정문의 이행을 감독하고, 양국이 합의하는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하였다.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인원제한을 두지 않고 각 당사국의 관련 기관의 적절한 수준의 대표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동 무역구제 분야

에 관련되는 실무자들의 참여기회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관련 분쟁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호협의를 통해 해결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제 3 절 평가 및 제언

1. 긴급수입제한조치

(1) 발동조건에서의 실질적 원인 조항의 부재

한-중 FTA는 발동요건에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을 구성할 정도로”라는 요건이 아닌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정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의 요건을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이 체결한 다수의 FTA²⁶⁾에서는 “실질적인 원인”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 규정이 가지는 법적 의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실질적 원인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미 FTA의 정의조항을 보면 “실질적인 원인이라 함은 중요하고 다른 어떠한 원인보다 덜 중요하지 아니하는 원인을 말한다”²⁷⁾고 정의하고 있으며, “심각한 피해의 우려라 함은 단순히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명백히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전자에서 가장 핵심은 다른 어떤 원인보다 ‘덜 중요하지 아니하는 원인’의 의미일 것인데, 이것은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후자에서 핵심적인 문구인 ‘명백히 임박한’의 의미는 ‘핵심적이지는 않더라도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원인’로

26)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인도 CEPA, 한-페루 FTA, 한-미 FTA,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등.

27) 한-미 FTA 제10.6조.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 문구의 문리적 해석에 따르면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을 구성할 정도는 되지 않더라도 심각한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되는 사항은 존재할 수 있다. 이에 실질적인 원인이라는 요건이 없는 한-중 FTA 규정은, 동 요건이 기재되어 있는 한-미 FTA 보다 발동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 조항에서 실질적 원인 조항의 부재는 상대적으로 국내산업 및 시장의 기반이 약한 우리나라에게 미약하나마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2) 농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 조항의 미도입

일반적으로 농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 조항은 국내산업 중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 농산물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실제로 기 체결한 FTA 중 한-미 FTA, 한-EU FTA, 한-터키 FTA, 한-호주 FTA는 농산물 또는 계절상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나름의 성과를 기대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중 FTA에서는 우리의 취약산업인 농산물 분야 협상에서 주요 농산물의 대부분을 양허에서 제외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협상결과로 인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장에서도 농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 조항 도입의 필요성이 높지 않았다. 물론 농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 조항이 도입되지 않았더라도, 일반 긴급수입제한조치 조항을 통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발동이 가능하다. 또한 우리나라와 중국은 WTO 회원국이므로 WTO 협정상의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유지가 된다. 다만 한-중 FTA를 통해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44개 농산물에 한해서는 관세철폐 이행기간 이후에는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가 된 상태이다.²⁸⁾

28) 관계부처합동,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 2015.3, pp.248-249.

(3) 양허의 정지의 제한

WTO 협정 및 한-중 FTA를 포함한 일부 FTA 협정은 협의 개시 후 30일 내에 양 당사국이 보상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수출 당사국에게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을 대상으로 양허를 정지할 권한을 부여한다. 하지만 양허를 정지할 권한은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수입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이어야 하고, 또한 긴급수입제한조치가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그 긴급수입제한조치에서 별도로 지정한 유효한 기간 동안은 행사되지 아니한다.

동 규정의 존재는 한편으로는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심각한 피해 또는 우려가 발생할 경우에 발동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서는 타국의 양허의 정지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FTA에 참여한 국가들에게 자국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일견 큰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FTA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10년의 과도기간을 부여하고 있고 과도기간의 만료 후에는 타방 당사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FTA에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이라는 한시적 기간에 불과할 것이다.

(4)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와의 관계

양자협정인 FTA에서도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며,²⁹⁾ 또한 FTA는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 각 당사국에게 여하한 추가적인 권리나 의무도 부여하지 않는다. 또한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양자 긴급수

29) 한국이 체결한 FTA 중 한-EFTA FTA에서만 유일하게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다.

입제한조치와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동시에 적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일방국가가 FTA를 적용할 것인지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수의 FTA는 WTO PLUS로 이루어져있으므로, 어느 규범을 선택하느냐에 실제적 진실에 대한 판단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인도 CEPA, 한-페루 FTA, 한-미 FTA는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경우라도 상대국의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과의 충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에서는 ‘병행주의’ 원칙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조사대상인 수입품과 동 조치의 적용대상인 수입품은 동일해야 하기 때문이다.³⁰⁾ 물론 ‘피해가 크지 않은’이라는 요건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주관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통상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게다가 분쟁해결절차의 원용의 경우 한-중 FTA에서는 WTO 분쟁해결절차와 FTA 분쟁해결절차의 원용을 당사국이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나의 분쟁해결패널의 설치를 요구하였으면 다른 포럼은 배제하고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제소국이 어느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패널의 결정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및 연구가 필요하다.

30) 병행주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최승환, 「국제경제법」, 제4판, 법영사, 2014, p.370; 병행주의에 대한 비판적 의견은 서철원, “지역무역협정 당사국에 의한 긴급수입제한조치: WTO 판례의 비판적 분석”, 「국제법학회논총」, 제51권 1호, 2006.6, p.149 이하 참조.

2. 반덤핑 및 상계관세

(1) 자의적·보호주의적 목적의 발동가능성 억제

WTO 협정 체제에서는 건전한 시장질서를 왜곡시키는 덤핑 및 보조금의 지급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덤핑 및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대응조치로 허용하고 있는 타국의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가 오히려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위장된 보호무역의 형태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치는 경제주권에 기반한 국가의 정상적인 정책적·법적 권리에 해당하며, 주권평등·국내문제불간섭의무 등 국제규범의 일반원칙에 의해 보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국의 직접적인 대응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항에서 고려하여야 할 핵심요소는 타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의 차단을 통한 시장질서의 확립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위장된 무역제한조치로 활용될 가능성도 함께 차단하는 것이다. 이에 한-중 FTA에서도 구체적이고 투명한 기준의 도입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명시적으로 반덤핑협정에 따라 어떠한 조치도 자의적이거나 보호주의적인 방식으로 취하지 않을 것을 선언함으로써 반덤핑관련 조항의 해석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³¹⁾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요소로서 덤핑마진 산정시 제3국의 대체 값에 근거한 방식 미사용, 제로잉 관행의 미사용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의적 요건에 의한 반덤핑 조치 발동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동 조항들은 덤핑마진의 인위적인 확대를 제한함으로써 덤핑의 존재 및 피해의 결정 등의 발동요건이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의해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차단한다.

31) 중국은 2008년 채택한 중-뉴질랜드 FTA에서부터 동 내용이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2) 화해지향적 분쟁해결방식의 추구

중국의 경우 반덤핑조치 및 상계관세 조치를 빈번하게 발동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이는 타국의 중국시장 진출을 인위적으로 억제함으로써 국가 간의 통상분쟁을 실질적으로 야기하고 있다. 통상분쟁의 해결을 위한 최종적인 방법은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방식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비용이 소진되며, 무엇보다도 기간 동안 수출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에서 가능한한 빠른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중 FTA에서는 통보 및 협의조항을 통해 화해지향적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통보의무에 있어서는 반덤핑 조사개시 전 통지 시점을 7일 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상대국 반덤핑 조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WTO 반덤핑 협정이 구체적인 시점없이 조사개시 이전 통보의무를 규정하고, 한-EU FTA에서는 반덤핑 조사의 경우 조사개시 15일 전, 상계조치는 청원접수 후 통보 및 정부간 협의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한-미 FTA는 반덤핑조사 개시전 통보 및 타방 당사국과 협의를, 한-인도 CEPA는 조사개시 10일 이전 통보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신속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 있다 할 것이다.³²⁾

상기의 통보 및 협의조항에 더하여 한-중 FTA에서는 반덤핑 조사 및 상계관세조사에서 가격약속에 관한 조항을 둬으로써 양 국간의 관련 분쟁을 화해지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즉, 반덤핑 조사와 상계관세의 조사에서 긍정적 피해에 대한 긍정적 예비판정이 내려지는 경우, 타국의 가격약속이 있는 경우에 자국의 법과 절차에 합치되게 수출자에게 적절한 고려와 회의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동 조치가 실질적으로 정착되어 양국 간의 통상분쟁을 완화

32) 다만 상계관세의 경우에는 조속한 서면통보 규정만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반덤핑 조치절차와 차이점이 있다.

및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3) 낮은 관세적용 원칙의 부재

반덤핑 조치에 있어 한-중 FTA의 특징 중 하나는 “낮은 관세적용 원칙(lesser duty rule)”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낮은 관세적용 원칙이란 덤핑마진보다 낮은 관세로도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할 경우에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으로 한-싱가포르 FTA를 비롯한 다수의 FTA에 도입되어 있다.³³⁾ 물론 동 조항의 내용이 없더라도 덤핑협정에 따른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보호주의적인 방식으로 취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따라 자국산업보호를 위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협정위반으로 주장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증하여야 하는 내용과 대상이 명확하지만,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국산업의 보호라는 주관적인 영역의 내용을 객관적인 사실관계로 입증을 하여야 하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공공이익조항의 부재

한-중 FTA는 이해당사자들의 서면신청 또는 자체발의를 통해 공청회를 실시할 것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공청회가 가지는 의미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논의를 통해 자국의 관련산업의 보호만이 아닌 공익 등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상대 국가 및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적극적인 항변기회가 부여될 수 있고, 이는 국내규정의 불완전성, 불투명성에 기반한 발동조치의 남용

33) 한-EFTA FTA, 한-호주 FTA, 한-터키 FTA, 한-페루 FTA, 한-EU FTA, 한-인도 CEPA 등

을 차단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동 조항에 따르면 공청회의 개최는 고려사항, 즉 해당 국가의 판단에 따라 절차의 진행 여부가 결정되므로, 공청회 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도 함께 제기된다.

또한 이에 대한 보완 수단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이익조항의 부재도 아쉬움이 있다. WTO 반덤핑 협정에서도 ‘소비자 집단’에게도 덤핑 및 피해여부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한-EU FTA와 한-캐나다 FTA는 반덤핑조치나 상계관세 조치 부과전에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⁴⁾ 반면 한-중 FTA에서 공공의 이익고려의 취지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다. 물론 공공이익의 고려 조항을 도입하고 있는 상기 두 FTA도 ‘고려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에 동 조항이 구속력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하지만 공공이익의 고려에 관한 내용은 동 협정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각국의 국내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의미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중국이 실질적으로 반덤핑 조치와 상계관세 조치를 빈번하게 발동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볼 때, 중국이 동 조치들을 남용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수단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도출된다. 더욱이 반덤핑 및 보조금 분쟁에 대한 인식이 자국산업과 타국산업 간의 이익문제로 비화 또는 국한되는 경우에는 조치를 발동하는 국가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이 용이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동 분쟁의 성격이 자국산업과 자국산업 간의 이익문제로 전환되고 이것이 인식되는 경우에는 조치

34) 한국이 체결한 FTA 중 공공이익의 고려가 도입되는 FTA은 한-EU FTA(“양 당사자는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공공이익을 고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3.10조), 한-캐나다 FTA(“캐나다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가 공공 이익에 부합하지 아니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국 국내법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고려한다”, 제7.7조) 이다. 이중 한-EU FTA는 양국의 의무로 부여하고 있는 것에 반해, 한-캐나다 FTA는 캐나다에게만 공공이익을 부여하고 있고 한국은 자국의 관련 국내법과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국내절차 단계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공이익의 조항은 의미가 있다.

3. 무역구제위원회

한-중 FTA는 별도의 논의채널을 만들어 한-중 FTA 무역구제 제도 이행관련 사안 및 기타 의제 논의를 통해 관련 분쟁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호협의를 통해 해결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무역구제 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후속 논의를 통해 이에 대한 범위 및 내용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무역구제위원회의 구체적인 기능과 활동에 있어서는 한-미 FTA, 한-캐나다 FTA, 한-EU FTA 등에서 구체적인 골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활동과 기능에 대한 범위를 명확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 2015.3.

국제공정무역학회, 「한-중 FTA에 따른 무역구제제도와 조직의 효율적인 운용방안 연구」, 2014.

김동훈·김봉철·박찬호, 「한-EU FTA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비교법제연구 07-02, 한국법제연구원, 2007.

_____, 「FTA 세이프가드 규정에 관한 연구」, 비교법제연구 08-03, 한국법제연구원, 2008, p.46.

서철원, “지역무역협정 당사국에 의한 긴급수입제한조치: WTO 판례의 비판적 분석”, 「국제법학회논총」, 제51권 1호, 2006.6.

제 2 부 한-중 FTA 주요 챕터 분석

이상모, 「중국이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분석-상품무역분야를 중심으로-」, 현안분석 2012-12, 한국법제연구원, 2012.

정영진 · 이재민, 「글로벌시대를 위한 신통상법 및 통상정책」, 2012.

최승환, 「국제경제법」, 제4판, 법영사, 2014.

한-ASEAN FTA 협정문

한-EFTA FTA 협정문

한-EU FTA 협정문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

한-미국 FTA 협정문

한-베트남 FTA 협정문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

한-인도 CEPA 협정문

한-칠레 FTA 협정문

한-캐나다 FTA 협정문

한-콜롬비아 FTA 협정문

한-터키 FTA 협정문

한-페루 FTA 협정문

한-호주 FTA 협정문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WTO 반덤핑 협정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제 5 장 서비스 무역

제 1 절 개 관

글로벌 차원에서 한국은 지속적인 서비스수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여행, 사업서비스, 특허권등 3개 부문이 서비스수지 적자를 주도하고 있다. 국내 소득증가로 해외여행이 증가한 것,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현지공장에 대한 운영경비 지급 증가, 핵심원천기술 확보 없는 기술 집약 품목 수출에 따른 로열티 지급 증가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손꼽힌다.1) 중국의 서비스 무역 적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우리보다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2)

<도표 2-5-1> 한국 서비스 수출입 규모 추이



- 1) 국경복,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정부제출) 검토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12. 9.
- 2) 2014.10.16. 중국 상무부 발표에 의하면 동년 1-8월 중국 서비스 수출입 적자는 945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2.4% 증가했다. 인민망 한국어판, 2014. 10. 17.

지역별로 보면 2013년 기준 한국은 미국과 EU에 대해서 각각 10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음에 비해 중국에 대해서는 2012년 흑자로 전환된 후 2013년 흑자폭이 전년 대비 약 4배 이상 확대되었는데, 이는 중국 관광객 급증에 따른 여행수지 흑자가 주요 원인이다.³⁾

<표 2-5-1> 對중국 여행수지(백만 달러)⁴⁾

2009	2010	2011	2012	2013
-618.5	-409.6	-73.0	1,229.0	3,679.6

그러나 장기적 측면에서 보면 서비스 무역의 규모는 아직 성장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현재의 서비스수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서비스 수입을 줄이기보다는 서비스 수출 규모의 확대를 통한 수지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중 FTA를 포함한 FTA 서비스협상은 WTO/GATS로 기초를 놓은 서비스무역의 규범적 토대위에 서비스 무역의 안정적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를 마련할 사명을 진다고 할 것이다.

서비스무역에 관한 한-중 FTA 제8장은 16개 조항의 협정 본문과 100여 쪽의 양국 양허표 그리고 두 개의 부속서(영화 공동제작; 방송용 TV 드라마,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 공동제작)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한-중 FTA의 본문과 양허표의 각 부문별로 내용을 요약한 후한·미, 한·EU⁵⁾, 중국·호주 FTA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평가한다.

3)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4년 서비스수지 현황 및 시사점”, Trade Brief, No. 13, 2015. 2. 27.

4) Ibid. p. 3.

5) 한·미, 한·EU FTA관한 선행연구로는 김종덕·엄준현, 「한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분석: 한-미 FTA와 한-EU FTA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12; 문병철, 「한·미 FTA의 쟁점과 이해」, 오름, 2014, 참조.

제 2 절 챕터의 분석

1. 협정 본문에 대한 분석

(1) 주요 조문

1) 정의(제8.1조)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 ‘상업적 주재’,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 ‘법인’, ‘조치’, ‘서비스의 독점공급자’, ‘서비스 무역’ 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공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중국경제의 특성상 향후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규정만을 살펴보자면, ‘서비스의 독점공급자’란 당사국 영역의 관련 시장에서 그 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자로서 그 당사국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 승인을 받거나 설립된 모든 공적 또는 사적 인을 말하며⁶⁾,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란 상업적 근거에서 공급되지도 아니하고,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 하에 공급되지도 아니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⁷⁾ 정의된다.

2) 적용범위(제8.2조)

이 챕터의 규정은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조치에 적용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연안해상운송서비스, 항공운수권⁸⁾, 금융서비스⁹⁾, 취업·시민권·영주권의 부여에 관련한 조치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규칙이 적용

6) 동조 자. 호.

7) 동조 너. 호.

8) 다만,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 항공운송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컴퓨터예약 시스템 서비스는 포함된다(제8.2조.라항).

9)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은 유효하다.

되지 않는다. 관련 영역에 적용되는 특칙이 있는 경우 이에 구속됨은 물론이다. 또한 당사국은 구체적 약속의 양허혜택을 무효화 또는 침해하지 않는 한 자연인에 대한 출입국통제권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정부조달에는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시장접근(제8.3조)

GATS와 마찬가지로 구체적 약속에 의거하여 시장접근의 최저보장 한도를 합의하는 포지티브시스템을 채택하였다. 대표적인 유형의 서비스공급에 대한 규제조치를 열거하여¹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 약속 양허표에 기재하지 않으면 시장접근을 허용한 분야에서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4) 내국민대우(제8.4조)

GATS와 마찬가지로 구체적 약속에 의거하여 시장을 개방한 분야에서는 구체적 약속 양허표에 기재한 조건에 따라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여야 한다. 형식적 동일대우의 경우에도 경쟁의 조건이 다르면 덜 우호적인 대우가 됨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동등대우가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¹¹⁾

5) 추가적 약속(제8.5조)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조치, 예컨대 자격, 표준, 면허 등과 관련해서 당사국이 합의하는 추가적 약속도 구체적

10) 서비스제공자의 수에 대한 제한,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총액의 양적 제한,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산출량의 제한, 특정 서비스 분야 피고용인의 숫자 제한, 상업적 주재의 형태 제한, 지분비율, 개인별 또는 총액한도에 의한 외국자본 참여의 상한 제한.

11) 형식적으로 동일하거나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는 그것이 다른 쪽 당사국의 동종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비교하여 당사국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쟁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대우로 간주된다(동조 제3항).

약속 양허표에 기재된다. GATS에서는 추가적 약속이 희귀하였으나 후술하듯이 한-중 FTA 양허표에는 추가적 약속이 보다 빈번하게 나타난다.

6) 구체적 약속 양허표(제8.6조)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대한 조건 및 제한, 추가적 약속, 그리고 적절한 경우 이행 기간을 기재한 구체적 약속 양허표는 이 챕터에 부속되어 협정의 불가결한 일부가 된다. 당사국은 이에 약속한 대우보다 불리한 조치를 하지 못한다. 시장접근에 대한 조건과 제한은 내국민대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본조 제4항은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구체적 약속에 따라 부여된 대우와 비교하여 새로운 또는 더 차별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소위 자유화후퇴방지조항(ratchet mechanism)으로 이해된다. 부속서 8-가 구체적 약속의 내용은 아래 별도의 단락에서 설명된다.

7) 국내적 규제(제8.7조)

서비스제공에 대한 양적 규제(법인형태 포함)도 아니고, 내외 서비스(제공자)를 차별하는 조치도 아닌 국내규제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환경보호, 소상공인보호, 소비자보호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서비스규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수도 있다. 국가가 추구하는 정당한 규제목적의 설정은 주권적 권한이지만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WTO협정 및 FTA상의 의무를 비롯한 국제적 규범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이들 중-일 부는 위에서 언급한 추가적 약속에 의하여 양허할 수 있으나 이는 현재까지는 예외적인 몇몇 경우에 그칠 뿐이다. 서비스분야의 규제는 종종 규제자 포획에 빠질 수 있는데 이는 국내기업인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에 친숙한 규제가 외국으로부터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서비

스제공자에는 보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인식에서 일찍이 GATS 협상가들은 국내적 규제가 위장된 무역장벽이나 예기치 않은 무역에의 제약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하였으니 국내규제 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 필요성, 행정절차의 합리성, 행정적 결정에 대한 불편부당한 재심 등이 그것이다.¹²⁾

한-중 FTA는 GATS의 선례를 따라서 당사국은 국내적 규제가 합리적, 객관적,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서비스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결정에 대한 독립적 재심에 의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청의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승인심사는 합리적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양당사국은 국내적 규제에 대한 국제적 규범제정 노력을 주목하며 그러한 규범은 국내적 규제가 서비스제공자의 자격 등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근거하며, 서비스의 질과 관련하여 필요이상으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며, 면허절차 자체가 서비스제공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규범이 제정되는 경우 한-중 양국은 자국의 면허, 자격, 표준 제도가 이 협정상 약속을 무효화 내지 침해하지 않으며 이러한 국제협정상 기준과 합치하게 적용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그 의무준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국제기구의 국제표준을 고려하여야 한다.¹³⁾

8) 투명성 (제8.8조)

당사국은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주는 모든 정부의 조치를 신속히 공표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자국의 구체적 약속의 적용대상이 되는 서비스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 규정 또는 행정지침의

12) GATS 제VI조.

13) “관련 국제기구”라는 용어는 적어도 세계무역기구의 모든 회원에게 관련 기구의 회원자격이 개방되어 있는 국제기구를 말한다(원문 각주 8).

제·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협정의 서비스무역위원회에 즉시 그리고 최소한 연차로 통보하여야 한다.

공표의무는 투명행정의 일반적 원칙에 따라 당연히 하여야 할 것이지만 통보의무의 경우 통보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착오나 해태 등으로 예기치 않은 의무위반을 가져올 수 있다. 비록 GATS 제3조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기는 하나 과도한 행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그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9) 인정 (제8.9조)

서비스제공자의 승인, 면허, 증서 등의 기준 충족과 관련하여 일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서 취득한 교육, 경험, 요건, 면허, 증서를 인정할 수 있다(제1항). 하지만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또한 제3국에서 취득한 교육, 경험, 요건, 면허, 증서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타방당사국에서 취득한 교육, 경험, 요건, 면허, 증서를 인정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제2항). 다만 타방 당사국은 협의 요청권을 갖는다(제3항). 당사국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승인, 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자국의 표준이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국가 간의 차별 수단을 구성하거나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인정을 부여하지 아니한다(제4항). 당사국의 인정조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 서비스무역위원회에 통보를 위하여 노력한다(제5항)

제2항을 제외하고는 GATS규정과 동일하다. 추가한 제2항은 당연한 해석을 명문화한 것이기는 하지만 굳이 명시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한-중 FTA의 서비스무역 규정이 GATS를 답습했을 뿐만 아니라 GATS규정의 적극적 해석 여지까지도 없애버린 소극적 합의라는 인상을 강화하고 있다.

10) 지불 및 송금 (제8.10조)

국제수지악화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GATS 제12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약속과 관련된 경상거래를 위한 국제 자금이체와 지불에 제한을 가하지 못한다(제1항).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통화기금 협정과 합치하는 외환¹⁴⁾조치의 사용을 포함하여 동 협정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국은 GATS 제12조 또는 국제통화기금의 요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자본거래에 대해서도 그러한 거래에 관한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제2항).

11) 혜택의 부인 (제8.11조)

사전 통보와 협의를 전제로 하여 일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서비스제공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챕터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 가. 제3국인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되고 있으며 타방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아무런 실질적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 나. 혜택을 부인하는 당사국의 인에 의해서 소유 또는 통제되며 타방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아무런 실질적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 다. 제3국인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되고 있으며 혜택을 부인하는 당사국이 그 제3국 또는 제3국의 인에 대하여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나 이 챕터의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위반 또는 우회되는 조치를 채택 또는 유지하는 경우.

12)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공급자 (제8.12조)

각 당사국은 자국 내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공급자가 당사국의 의무와 구체적 약속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협정문 한글본이 “exchange”를 “교환”이라고 번역한 것은 어색한 표현이다.

독점의 권한을 부여받은 영역을 벗어나서 사업을 하면서 독점권을 남용하는 행위도 규제되어야 한다. 타방 당사국의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공급자가 그 당사국의 의무와 구체적 약속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타방 당사국에게 그 사업자의 운영에 관련된 구체적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많은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공급자가 활동하는 중국에 대하여 이 규정은 상당히 유용한 규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3) 보조금(제8.13조)

서비스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GATS 제15조 협상결과를 이 협정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14) 서비스무역위원회 (제8.14조)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의 검토 등을 위하여 서비스무역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15) 영업 관행 (제8.15조)

당사국은 독점 및 배타적 사업자 이외의 서비스 공급자의 영업 관행도 일정한 경우 경쟁을 저해하여 서비스 무역을 제약할 수 있음을 인정하여 일방 당사국이 그러한 영업 관행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면 그의 종식을 위하여 국내법과 영업기밀보호의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성실히 협력한다.

16) 접촉선 (제8.16조)

양 당사국은 사안에 관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접촉선을 지정한다.

(2) 특이점 검토

1) GATS와의 비교

(가) 최혜국대우규정의 부재

GATS 제2조에 상당하는 최혜국대우규정이 한-중 FTA에는 없다. 한-중 FTA에 최혜국대우규정이 들어간다면 한·미 FTA, 한·EU FTA 등 보다 시장자유화 수준이 높은 자유무역협정에서 약속한 혜택을 중국 측 기업이 자동적으로 누릴 수 있다. 중국이 체결한 FTA의 양허수준이 한국의 것보다 낮은 현실에서는 최혜국대우규정을 삽입하지 않은 것은 현명한 선택이다.

(나) 정부조달 규정의 부재

GATS의 정부조달 규정도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인정과 후속 협상의 의무지우는 것에 불과하므로 한-중 FTA에서 이 규정을 삭제한 것은 일견 이해가 되면서도 중국의 넓은 정부조달시장에 선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중국이 아직 WTO복수국간협정인 정부조달협정의 가입국이 아니라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단기간에 성취하기는 어려운 목표로 판단된다.

(다) 예외규정의 상이

GATS 제10조(긴급구제조치), 제14조(일반적 예외), 제14조의2(안보예외)에 해당하는 규정이 한-중 FTA 서비스에 관한 장에는 없다. 일반적 예외와 안보예외는 제21장으로 위치를 옮겨서 원용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긴급구제조치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시장의 상대적 크기로 보았을 때 한국의 서비스나 서비스제공자가 중국시장에 전반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미칠 가능성은 없지만 반대로 중국의 서비스나 서비스제공자가 한국 시장에 심각한 손해를 미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필요한 규정이 아니었나하는 아쉬움이 있다.

(라) 분쟁해결 규정의 상이

일견 제20장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양해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GATS제23조제3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비위반제소가 한-중 FTA 제20장에서도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¹⁵⁾

2) 다른 FTA와의 비교

한미FTA는 네거티브방식으로 구체적 약속을 작성한바, 제12.6조가 이를 위한 비합치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한-중, 한-EU FTA는 포지티브방식으로 구체적 약속을 작성한바 관련 규정이 없다. 한-중 FTA 후속 협상은 네거티브 목록 방식에 기초할 것이 부속서(22-가)에서 합의 되었다.¹⁶⁾

한미FTA의 관련 장 제목은 “국경 간 서비스무역”임에 비하여 한-중 FTA의 장 제목은 “서비스무역”이다. 유동성은 있으나¹⁷⁾ 한-중 양국은 부속서(22-가)에서 후속협상을 통해 “국경 간 서비스 무역”로 장을 변환하기로 합의하였다. 한-중 FTA의 후속협상으로 생성될 국경 간 서비스 무역에 관한 장은 서비스 공급유형 중 Mode 1(공급자와 수요자는 움직이지 않고 서비스만 국경 간 이동), Mode 2(해외소비)만 포함하고 Mode 3(법인의 현지설립)이나 Mode 4(서비스제공 노동자의 일시적 이동)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단지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에 더하여 좀 더 적극적인 자유화 약속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¹⁸⁾

한미FTA 제12.3조는 최혜국대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언급한 대로 한

15) 한-미 FTA는 한-중 FTA와 같은 문언을 사용하면서 이에 더하여 비위반제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대해석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많다.

16) 한-중 FTA 부속서(22-가)에서 후속협상을 협정 발효 2년 이내에 개시하여 개시 후 2년 이내에 종료하도록 규정하였다.

17) 부속서 각주 1은 후속 협상이 이 협정의 조가 아닌, 양 당사국의 각각의 문안 제안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것임을 밝히고 있다.

18) GATS에서는 Mode 1 서비스제공방식만을 의미하나, 한미FTA에서는 Mode 1, 2, 4를 포함하며, 한-EU FTA는 Mode 1, 2를 포함한다.

-중 FTA는 관련 규정이 없다. 금번 협상에 의한 양국의 개방수준 차이 이외에도 예정된 후속협상이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후속협상은 구체적 약속에 한정되지 않고 협정 본문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으므로 한국 입장에서는 재협상의 양허 수준을 평가한 후 최혜국대우에 관한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양국은 부속서에서 후속협상을 통해 국경간 서비스 무역에 관한 장을 추가하면서 미래 최혜국대우를 포함하도록 이미 합의하였다.¹⁹⁾ 향후 체결될 FTA가 주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다면 최혜국대우조항의 영향범위가 한정적일 것이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이 채택·발효하고 한국이 이에 가입한다면 최혜국대우 조항이 막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미FTA의 투명성 규정(제12.8조)은 앞서 언급한 관련 법, 규정, 지침 제·개정 시 통보제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한-중 FTA에서 통보의무 규정(제8.8조 제3항)을 둔 것은 중국 행정규제의 불투명성을 고려한다면 잘 된 협상 결과라고 할 것이나 한국도 지키기에 부담이 될 것을 중국에게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중국 측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EU FTA는 제7장에서 “서비스 무역, 설립 및 전자상거래”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서비스 무역은 서비스 공급유형 1-4를 모두 포함하며 그중 공급유형 3은 법인의 설립에 관한 것으로서 투자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전자상거래를 서비스와 함께 규율하고 있는 것도 전자상거래 규제에 대한 EU의 기본 입장을 시사한다. 이에 반해 한-중 FTA는 자연인의 이동(제11장), 투자(제12장) 및 전자상거래(제13장)에 관하여 각각 별도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경간 서비스 무역”에 관해서는 후속협상을 통해 별도의 장을 구성할 것을 약속한 것은 언급한 바와 같다. 따라서 제8장은 실상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19) 부속서 22-가 제11문.

론 내지 총론에 해당하는 장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한-중 FTA는 서비스 무역에 관하여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으나 아래 보는 바와 같이 규범의 질에 있어서 한-미 FTA, 한-EU FTA보다 낮다고 할 수 없으며 향후 후속협상을 통해서 내용을 채워 넣을 규범의 열개를 만들었다는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현지주재요건과 관련하여 한미FTA 제12.5조는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서 타방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에서 대표사무소 또는 어떠한 형태의 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한-EU FTA 제7.5조 각주6는 시장접근제한의 유형 중 양허표에 명시되지 않는 한 금지되는 조치로서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서 타방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설립 또는 주재를 요구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결국 비합치조치로서 유보하든지 구체적 약속에서 제한조치로 명시하든지 하지 않는 이상에는 금지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한-중 FTA의 서비스챕터 본문에는 GATS와 같이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를 요구하는 조치”를 억제하고는 있으나 (제8.3조제2항마) 아래 구체적 약속에서 고찰되는 바와 같이 중국의 양허표는 국경간 서비스에 현지주재 요건과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에 대한 요건이 무분별하게 나타나는 양상을 드러낸다. 나아가 양허표상 나타나지 않은 현지주재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가 한-중 FTA 제8.3조제2항에서 금하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범위반을 단언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비위반 제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나 한-중 FTA는 이 부분에 누락이 있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한-미 FTA와 한-EU FTA는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부과 금지규정을 갖고 있다.²⁰⁾ 반면에 한-중 FTA의 서비스챕터나 투자챕터

20) 한-미 FTA 제11.9조; 한-EU FTA 제7.12조의 각주 16 및 제7.18조의 각주 25.

의 본문에는 이와 같은 금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앞서 살펴본 현지주재요건과 관련한 미비점이 여기에도 나타난다.

<표 2-5-2> 협정별 서비스 챕터 체계비교

한-중 FTA	GATS	한-미 FTA	한-EU FTA
8.1 정의	I, XXVIII	12.13	7.2 7.9, 7.17
8.2 적용범위		12.1	7.1, 7.4, 7.10
	II 최혜국대우	12.3	7.8, 7.14
8.3 시장접근	XVI	12.4	7.5, 7.11
8.4 내국민 대우	XVII	12.2	7.6, 7.12
		12.5 현지주재요건	7.5 각주6
		11.9 국적요건	7.12 각주, 7.18 각주
8.5 추가적 약속	XVIII	12.6 비합치조치	부속서 7-가, 7-라
8.6 구체적 약속	XIX, XX, XXI	부속서 I, II, 12.12	7.7, 7.13
8.7 국내규제	VI	12.7	7.23
8.8 투명성	III, IIIbis	12.8	7.22
8.9 인정	VII	12.9	7.21
8.10 지불 및 송금	XI	12.10	7.41, 8
8.11 혜택의 부인	XXVII	12.11	7.2 바
8.12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공급자	VIII	16.2	11.4
8.13 보조금	XV		11.15
8.14 서비스무역위원회	XXIV		7.3
8.15 영업 관행	IX	16.1	
8.16 접촉선	IV.2, XXV.1	22.1	7.3, 15.6

한-중 FTA	GATS	한-미 FTA	한-EU FTA
(제21장)	XIV, XIVbis 예외	23	7.50
(제20장)	XXIII 분쟁해결	22.4	14

2015.6.17. 서명된 중국-호주 FTA는 구체적 약속과 관련하여 중국 측에서는 포지티브 리스팅 방법을 채택하고 호주 측에서는 네거티브 리스팅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최혜국대우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재 최혜국대우는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차별적 협정 예외에 의해서 제한되며 미래 최혜국대우는 기속적 의무가 아니라 협의의무를 가질 뿐이다²¹⁾.

2. 구체적 약속에 대한 분석

(1) 수평적 약속

1) 한국 측 양허

(가)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한국은 에너지, 항공분야 국내회사와 민영화된 공기업에의 중국인 주식소유와 투자를 제한할 수 있음과 자연인의 이동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챕터²²⁾에서 약속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허하지 않음을 기재하였다.

(나)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한국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이외에의 토지 소유, 보조금 수혜 등과 관련하여 양허에서 제외하였다. 토지취득에 관해 상론하자면 기업의 토지취득은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조건으

21) 중-호 FTA 제8.4조-8.12조.

22) 제11장(자연인의 이동).

로 하여 정상적인 사업활동 과정 중 서비스 공급에 사용되는 토지, 기업 고위임원의 주거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법령에 규정된 토지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에 한하여 허용하였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의 토지취득은 임차권만 허용하였다

(다) 추가적 약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으로 취급되는 거주자는 한국 주식에 포트폴리오 투자를 함에 있어 내국민대우를 부여받는다.

2) 중국 측 양허

(가)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지분합작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 비율은 그 합작투자 기업의 등록된 자본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기업의 지점 설립은 현재 외국인기업의 지점에 관한 법 및 규정이 제정 중에 있으므로 약속하지 않았으며, 대표사무소 설립은 허용되나 이윤추구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²³⁾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양허된 새로운 분야의 경우 이를 한국기업에게 일괄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중국의 토지는 국가소유이며 각 목적별로 기간이 제한된²⁴⁾ 사용권만이 인정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자연인의 이동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챕터에서 약속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허하지 않음을 기재하였다.

(나)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시청각, 항공 및 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보조금, WTO 가입이후 새로 양허된 분야의 보조금과 관련하여 양허에서 제외하였다.

23) 다만 법무, 회계, 세무, 경영자문사의 대표사무소는 이윤추구활동이 허용된다.

24) 거주목적 70년, 산업목적 50년, 교육·과학·문화·공중보건 및 체육목적 50년, 상업·관광·레크레이션 목적 40년, 포괄적 이용 또는 기타 목적 50년.

3) 수평적 약속의 협정 간 비교

한국은 특별히 민감한 분야에 대한 투자와 토지 소유, 보조금 수혜에 대해서 양허를 제한하였지만 중국은 이에 더하여 투자의 형태를 제한하는 것과 같이 한국보다 광범위하게 양허를 제한하고 있다.

한-중 이 공히 자연인의 이동(Mode 4)과 관련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날로 악화되는 양국의 고용시장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수긍되는 바가 있다. 반면에 그만큼 제11장(자연인의 이동) 및 분야별 협상에서는 적극적으로 서비스제공자의 상호이동의 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미 FTA는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에 따라 현재유보, 미래유보, 금융서비스 유보항목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 비교가 어렵다. 한-EU FTA의 한국 측 수평적 양허에서는 한-중 FTA 유보사항 이외에 추가적인 유보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크게 의미가 없거나²⁵⁾ 중국 측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는 규정이므로²⁶⁾ 한-중 FTA에서 이를 삭제한 것은 적절해 보인다. EU측도 부동산 소유, 설립의 요건 등에 대한 제한을 두었다. EU 각 회원국에 따라 유보수준이 다르나 대체로 중국의 유보수준은 새로 EU에 가입한 동부유럽국가의 유보와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중국-호주 FTA의 수평적 약속도 한-중 FTA와 유사하게 기재되어 있다. 자연인의 이동과 관련한 중국 측의 구체적 약속을 수평적 약속의 시장 접근 항목에 기재한 형식상의 특징을 갖고 있으나 실질적인 차이는 없어 보인다.

25)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우대, 국가전자정보시스템의 관리와 운영 유보.

26) 소수민족 우대.

(1) 분야별 약속

1) 법률서비스

(가) 한국 측 양허

중국서비스공급자가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관할지역에 관한 법 및 국제공법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사법절차 등에서 사건의 직접 대리는 하지 못한다.²⁷⁾ 상업적 주체는 대표사무소 형태로만 가능하며 한국 변호사의 고용, 제휴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 밖에 중국변호사와 중국법률회사의 한국 내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적지 않은 미래유보를 설정하고 있다.²⁸⁾

(나) 중국 측 양허

대표사무소의 형태로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관할지역에 관한 법 및 국제법에 관한 자문서비스 제공, 중국 법률 환경의 영향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한국 법무회사의 대표는 2년 이상, 수석대표는 3년 이상 중국 외 지역에서 변호사 경력을 가졌어야 한다. 모든 대표자들은 매년 6개월 이상 중국에 거주하여야 한다. 대표사무소에 중국

27) 중재 대리는 양허 분야에서 가능하다.

28) 한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a) 외국에서 변호사에 상응하는 법률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로 하여금 한국에서 어떠한 형태로라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한 자격 부여, 승인, 등록, 허용과 감독 및 그 밖의 요건에 대한 제한. (b) 외국에서 변호사에 상응하는 법률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로 하여금 한국 변호사, 법무회사(로펌),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관세사와 동업, 상사연합, 제휴 또는 법적 형태를 막론하고 그 밖의 어떠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제한. (c) 외국에서 변호사에 상응하는 법률 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로 하여금 한국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관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제한. 그리고 (d) 외국법률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실체의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 이상은 양허표 주식 v. 인용.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과 같으나 상해시범자유무역지구에서 중국 법무회사와 공동 운영 형태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공동운영의 형태로 상해 밖의 의뢰인에 대해서도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양 당사자의 법적 지위, 명칭 및 재정 상태는 독립적이며 각 당사자는 고유의 민사책임을 진다. 기타 지역에서도 업무위탁에 의한 중국 법무회사와의 협업이 가능하다.

(다) 협정 간 비교

한-EU FTA에서 EU 측은 법률서비스의 제공은 국제공법, 유럽연합법 및 서비스공급자 또는 그 소속직원이 변호사로 활동할 자격이 있는 관할 지역의 법과 관련하여서만 인가하였으며,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적용 가능한 면허 요건 및 절차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법 및 유럽연합회원국의 법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개인적으로 활동하며 유럽연합 회원국 내의 변호사협회에 가입된 완전한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 의해 또는 이를 통해 수행된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의 경우 변호사협회에 완전히 가입하지 아니한 외국 변호사가 자신이 활동하도록 자격을 부여받은 국가의 국민 또는 동 국가에 속하는 의뢰인을 민사절차에서 대리하는 것이 허용된다.²⁹⁾

한-EU FTA에서 한국 측은 다음과 같은 단계적 개방을 약속하였으며 이는 한-미 FTA에서도 동일하다: (i)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대한민국은 유럽연합 회원국 법무회사가 대한민국에 대표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유럽연합 회원국 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관할 지역에 관한 법 및 국제공법에 관하여 외국법자문사로서 대한민국에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 (ii) 이 협정 발효일 부터 2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하여금 대한민국 법무회사와 특정한 협력약정을 체결하여

29) 부속서 7-가-2 각주 27) 참조.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 iii) 이 협정 발효일 부터 5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유럽연합 회원국 법무회사가 대한민국 법무회사와 합작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EU FTA에도 한-중 FTA 한국 측 양허표 주석에 기재된 광범위한 미래 유보와 대동소이한 내용이 각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개방약속과 유보가 충돌하는 경우의 그 효력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로부터 한-중 FTA에서의 법률서비스 개방수준은 중국의 개방 폭이 한국보다 다소 넓으나 한·미, 한·EU FTA의 장기적 개방 폭 보다는 제한된 수준이라고 하겠다.

중국·호주 FTA에서도 중국 측은 한-중 FTA와 동일한 양허를 하고 있다. 다만 형식상 상해시범자유무역지구에서 중국 법무회사와 공동 운영을 허용하는 문구를 추가적 약속에 규정하고 있는데 가독성 측면에서 중국·호주 FTA의 형식이 우월해 보인다.

2) 회계, 감사 및 부기서비스

(가) 한국 측 양허

감사서비스는 Mode 1, 2 형태의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Mode 3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에 의한 개인 사무소, 감사반, 회계 법인(유한책임회사로 제한됨)만 설립이 허용되고 있다. 시장접근의 Mode 4에서는 약속을 하지 않았음에도 추가적 약속을 통하여 중국의 법에 따라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제회계법인에 고용된 경우 최장 1년까지(연장 가능) 입국하여 자문, 연수, 감사기법전수, 정보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나) 중국 측 양허

Mode 1과 2 형태의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Mode 3 형태로 파트너십 또는 회계법인 설립은 중국 당국에 의해 면허받은 공인 회계사에 한한다. 한국인도 중국 국가 공인 회계사 시험을 통과해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과 중국회계법인간의 계약에 의한 제휴는 허용된다.

(다) 협정 간 비교

한국은 감사서비스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반하여 중국은 이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양국 공히 계약에 의한 제휴를 허용하고 있다. 회계 및 부기서비스 개방 수준은 양측이 동등하다.

한-EU FTA에서 대부분의 EU회원국은 회계 및 부기서비스는 제한 없이 개방하는 반면 감사서비스를 엄격하게 다루어서 국경간 공급 방식은 양허에서 제외하고 설립과 관련해서도 감사회사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두고 있다. 한국 양허표는³⁰⁾ (i)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대한민국은 a)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 등록된 유럽연합 회원국 공인회계사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 대한민국에 설립한 사무소를 통하여 그들이 등록한 관할 지역의 회계법 또는 국제회계법 및 기준에 대한 회계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b)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등록된 유럽연합 회원국 공인회계사가 대한민국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나아가 ii) 이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 대한민국은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 등록된 유럽연합 회원국 공인회계사가 다음 요건아래 대한민국 회계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a) 대한민국 공인회계사가 대한민국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

30) 시장접근의 (a) 항목과 (b) 항목이 모순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질적으로 (a) 항목은 (b) 항목과 충돌하는 경우 의미를 상실하는 규정으로 보인다.

여야 함. 그리고 b) 유럽연합 회원국에 등록된 유럽연합 회원국 공인 회계사 1인은 대한민국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10퍼센트 미만까지 보유할 수 있음. 한-미 FTA에서도 동일한 양허를 하였다. 결국 한-중 FTA에서의 회계서비스 개방수준은 한·미, 한·EU FTA의 1단계 개방 수준이며 2단계 개방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하겠다.

중국-호주 FTA의 중국 측 양허는 한-중 FTA에서와 동일하다.

3) 세무서비스

(가) 한국 측 양허

세무조정서비스 및 세무대리서비스에 대하여 서비스 공급의 전 방식에 있어 시장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나) 중국 측 양허

Mode 1, 2 방식의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없으며, 한국 기업은 순 외국인 소유 자회사 설립이 허용된다.

(다) 협정 간 비교

이례적으로 한국이 폐쇄적 입장, 중국이 개방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서비스 협상에서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것이 잘된 협상인지, 세무서비스 개선의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지 다시금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추후 협상에서의 레버리지를 확보한다는 정도의 긍정적 의미는 있겠다.

한-EU FTA에서 한국은 위 회계서비스와 동일한 양허를 하여 2단계 시장개방을 약속하였으며, 대부분의 EU회원국은 제한 없이 세무서비스를 개방하고 있다. 중국-호주 FTA의 중국 측 양허는 한-중 FTA에서와 동일하다.

4) 건축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³¹⁾

(가) 한국 측 양허

건축서비스에는 Mode 1 서비스 공급방식을 허용하지 않고 상업적 주재를 요구하고 있다. 상업적 주재에는 제한이 없으며 개인적 차원에서 한국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건축사와 공동계약에 의한 외국건축사의 건축 서비스 제공은 허용된다.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 및 도시계획서비스의 제공에는 제한이 없다.

(나) 중국 측 양허

Mode 1 공급방식과 관련하여 계획디자인에는 제한이 없지만 그 이외에서는 중국 전문기관과의 협력이 요구된다. 외국인 단독 소유 혹은 다수지분의 합작투자가 허용된다. 한국 투자자는 한국에 등록된 건축가/엔지니어 또는 건축/엔지니어링/도시계획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한국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중국에 설립된 엔지니어링 디자인 기업의 중국내 지역과 중국 외 지역의 계약 이행은 중국내에서 그 기업의 자격 평가 시 산정된다.

(다) 협정 간 비교

한-EU FTA에서 적지 않은 EU회원국은 건축설계 및 도시계획서비스의 Mode 1 방식의 제공에 대한 양허에 소극적이었다. 상업적 주재와 자연인의 이동은 비교적 자유롭다. 동 FTA에서 한국 양허의 내용은 한-중 FTA와 동일하다. 한미FTA는 특별한 제약이 없지만 그럼에도 한미간 건축설계업체의 상호 시장 진입은 미미하다. 면허 및 자격의 상호인정 협정의 진척 미진, 사업 환경의 상이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대국 시장에 진출할만한 유인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호주 FTA의 중국 측 양허는 한-중 FTA와 대동소이하다.

31) CPC 8671-8674

5) 의료 서비스

(가) 한국 측 양허

한국은 Mode 2 방식에 의한 수의료 서비스만³²⁾ 개방하였다.

(나) 중국 측 양허

중국은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를³³⁾ 개방하였다. Mode 1과 Mode 2 방식의 제공에 제한이 없으며, 경제적 수요심사에 의한 양적 제한을 조건으로 상업적 주재도 가능하나 합작투자방식을 취하여야 하며 합작병원의 의사와 의료진 다수는 중국 국민이어야 한다. 한국의 의사는 중국 「국가건강가족계획위원회」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후 중국에서 1년 이내의 단기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 협정 간 비교

중국은 자국 의료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한 해외 의료기술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폈음에 비하여 한국은 마지못해 의미 없는 한 줄을 양허표에 기재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EU FTA에서 EU 회원국은 Mode 2는 허용하였으나 Mode 1은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Mode 3는 양허하더라도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한 경우가 많았다. Mode 4의 경우에도 거주요건, 경제적 수요심사에 의해서 제한하였다. 한국은 수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만 Mode 1-3방식의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였다. 한미FTA에서도 한국은 수의료 서비스만 개방하였다. 의약이익단체의 밥그릇 지키기가 성공한 것이 아닌가 한다. 중국-호주 FTA의 중국 측 양허는 한-중 FTA와 동일하다.

32) CPC 932.

33) CPC 9312.

6)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

컴퓨터설비 설치, 소프트웨어 시행, 데이터 프로세싱 부문에 대하여 한-중 양국은 공히 제한 없이 Mode 1-3 방식의 서비스제공을 양허하였다. 데이터베이스과 유지보수 기타서비스에 대해서는 한국만 양허한 것이 주목된다. 한-EU FTA와 한-미 FTA에서 EU는 Mode 1-4 전체, 한국과 미국은 Mode 1-3를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전체 분야에서 제한 없이 양허하였고, 중국-호주 FTA에서 중국 측 양허는 한-중 FTA와 동일한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협상가는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생색을 낼 수 있었던 분야라고 생각했을 것을 추측할 수는 있다. 하지만 어떤 반대급부를 얻었는지 몰라도 중국에게 이 분야 나머지 부분의 개방을 보다 집요하게 요구했어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빅 데이터 시대에 데이터베이스과 유지보수 등을 컴퓨터서비스 가능 영역에서 제외하는 것은 자칫 절름발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한국협상가가 충분히 인식했는지 의문이 든다.

7) 연구개발서비스

한국은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를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유보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서비스를 폭넓게 양허하였다. 학제간 연구개발서비스에 대한 Mode 3를 양허하지 않은 것은 그 이유를 짐작하기 어렵다. 반대로 중국은 연구개발서비스를 전혀 양허하지 않았다. 한-중 간에 서로 다수의 유학생과 학자가 오고가는 상황에서 왜 중국은 연구개발서비스를 전혀 양허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한국은 어떤 입장으로 임했는지 협상과정이 궁금하다. FTA를 단순히 수출입의 문제로 파악해서 연구개발서비스의 양허여부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면 다시 생각할 일이다. 동북아 성장의 한계는 상호 무지와 오해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공동연구와

인적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확대하는 것이 이 지역의 평화적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EU FTA에서 EU는 인문사회과학연구개발서비스는 제한 없이 양허하였으나 이공계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은 유럽연합법인에게 한정될 수 있다고 유보하였다. 한국은 한-중 FTA와 동일한 양허를 하였다. 중-호주 FTA에서 중국이 자연과학 및 엔지니어링 부문의 연구개발에 대한 Mode 3 양허를 제공한 것은 정치적 민감성은 없는 자연과학분야에서의 기술발전에 외국연구소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기반을 둔 것으로 생각된다. 가능하다면 한-중 FTA 후속협상에서는 동북아에서 중국이 단순히 경제적 블랙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사회, 문화적 창조와 융합의 중심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중-호주 FTA 이상의 양허를 이끌어 내기를 기대한다.

8) 부동산 서비스

한국은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부문에 한정하여 Mode 2, 3의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였다. 중국은 중개, 감정평가뿐만 아니라 자산 소유 또는 임대를 포함하는 부동산서비스를 Mode 1-3에 걸쳐서 허용하였다. 이는 중-호주 FTA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륙의 광활함에서 오는 자신감인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 민심을 얻으려는 것인가? 룬스타의 먹튀를 경험한 반 토막 반도국으로서는 쉽게 흉내 내기 어려운 행보이다.

한-EU FTA에서 EU는 이 서비스가 부동산 대리와 관련 되며 부동산 소유와 관련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동구권회원국의 Mode 1에 대한 유보 이외에는 제한 없이 양허하였다. 한-EU FTA에서 한국 측 양허는 한-중 FTA에서와 동일하다.

9) 중장비 임대/리스 서비스

(가) 한국 측 양허

항공기 임대/리스와 관련해서 한국인을 대표자로 한 외국인 지분참여 50% 미만의 합작투자에 한정하여 허용하였다. 선박, 기타 운송장비, 기계,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리스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제한 없이 Mode 1-3를 양허하였다.

(나) 중국 측 양허

중국은 임대/리스 서비스를 양허하지 않았다. 중국-호주 FTA에서도 양허하지 않고 있다.

(다) 협정 간 비교

한-EU FTA에서 EU 회원국은 대체로 선진국가는 임대/리스 서비스를 양허하였고 신흥국가들은 양허하지 않았다. Mode 1 방식을 양허하지 않은 국가가 몇몇 있는데 고가 상품에 대해 Mode 1 방식에만 의존해서 거래하는 것은 위험성이 높아서 현실적으로도 그리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반면 개인 및 가정용품의 Mode 1, 2 방식에 의한 임대서비스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양허하지 않았다. 소비자보호차원의 고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Mode 3 방식과 관련해서는 선박, 항공기 리스는 양허하지 않고 다른 분야리스는 제한 없이 양허하였다. 한-EU FTA에서 한국은 다른 부분은 한-중 FTA 양허와 동일하게 양허하였지만 선박리스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는 약속하지 않았다.

10) 기타 사업서비스

(가) 한국 측 양허

광고서비스,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경영컨설팅, 프로젝트 경영 서비스, 기술적 진단 서비스, 농업 및 축산업 관련 자문서비스, 임업 및 벌목 부수서비스, 광업부수서비스, 신제품 제조 기술 관련 자문 서비스, 과학 및 기술 관련 자문 서비스, 장비유지 및 보수, 사진·포장·인쇄·출판³⁴⁾서비스, 국제회의 대행, 속기, 번역 및 통역, 전문디자인 서비스에 대해 제한 없이 양허하였다.

성분과 순도 검사 및 분석서비스의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설립은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허용하였으며, 직업소개서비스는 선원에 대한 직업 소개는 제외하면서 상업적 주재를 상법상의 회사형태로만 설립하도록 하고 요금과 납입자본금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한편, 어업 관련 자문서비스와 사진서비스는 Mode 1-2는 약속을 하지 않고 Mode 3만 제한 없이 양허하였으며, 지표조사 및 지도제작 서비스³⁵⁾는 Mode 1은 약속하지 않고 Mode 2-3를 제한 없이 양허하였다.

(나) 중국 측 양허

중국은 경영컨설팅, 빌딩청소 서비스, 포장서비스, 번역 및 통역 서비스, 유지보수 서비스에 대하여 제한 없이 양허하였다. 기술적 검사 및 분석서비스, 석유시추서비스, 국제회의 서비스, 사진서비스는 Mode 1, 2 방식은 제한없이 허용하면서 Mode 3는 외국인 다수 지분 소유의 합작 투자기업형태만 허용하는 등의 일정한 제한 하에 허용하고 있다.

광고서비스의 Mode 1, 2 방식의 제공을 외국 광고서비스의 공급 권리를 가진 중국에 등록된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였으

34) 신문 및 정기 간행물 출판 서비스는 제외.

35) 지적측량, 지적도 관련 서비스는 제외.

며, 한국 서비스 공급자의 중국내 광고기업 설립을 허용하며 순 외국인 소유 자회사도 허용하였다. 시장조사, 프로젝트 경영서비스, 농업·임업·사냥·어업 부수서비스는 Mode 1, 2를 약속하지 않고 상업적 주재는 외국인 다수 지분 소유의 합작투자기업 형태로 경제적 수요 심사를 전제로 허용하였다.

(다) 협정 간 비교

한-EU FTA에서 EU 회원국은 대부분의 기타 사업서비스의 Mode 1, 2, 3에 의한 제공을 제한 없이 양허하였으나³⁶⁾ 직업소개와 파견서비스, 조사서비스, 경비서비스, 수금대리서비스, 신용조사서비스는 Mode 1, 2 모두 약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부 국가는 Mode 3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었다. 과학기술자문서비스, 선박·철도·항공기 유지보수, 빌딩청소 서비스, 복제서비스는 Mode 1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사업의 성격상 원격제공가능성이 없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EU FTA에서 한국 측 양허와 중국-호주 FTA의 중국 측 양허는 한-중 FTA의 각국 양허와 대동소이하다.

11)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쿠리어, 통신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는 우편서비스, 쿠리어서비스, 통신서비스, 시청각서비스가 있는데 우편서비스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가독점, 공기업 독점의 형태로 운영되므로 양허되지 않고 있다. 통신서비스의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에 관한 양허는 여기에서, 통신규제제도는 제10장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으며, 시청각서비스는 공동제작협정과 묶어서 아래 별도의 항목으로 다룬다.

36) 광고,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경영컨설팅 등 자문서비스, 자동차·기계·개인가정용품 유지보수,, 통신자문, 전화응답서비스 등.

(가) 한국 측 양허

쿠리어 부문의 Mode 1 서비스 제공은 항공 및 해로운송형태로 제한하여 양허하였다. 국내 쿠리어 공급을 위한 화물운송업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한다. 기존 기업을 인수하는 자는 피인수자가 보유한 면허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조건 하에 영업을 영위하는 한 신규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기간통신서비스³⁷⁾의 Mode 1 방식에 의한 제공은 허가받은 한국 서비스 공급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조건으로 한다. 기간통신사업 허가 또는 별정통신사업을 위한 등록은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한정하여 부여된다.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와 외국인은 무선국 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할 수 없다. 기간통신사업 허가는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³⁸⁾ 모두 합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의 49%를 초과하는 법인에 부여되지 않으며 허가받은 기업 주식의 49%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한다.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은 KT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추가적 약속으로 양허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참조문서(Reference Paper)상의 의무를 진다.³⁹⁾ 참조문서는 통신규제당국의 경쟁보장의무; 상호접속 제도의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원가에 입각한 요금부과와 기술·경제적으로 합리적 운용보장; 보편적 서비스 제도의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중립적인 운용보장; 면허조건의 공개; 독립규제자; 유한통신자원의 객관적이며 비차별적 할당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37) 음성전화서비스, 패킷교환데이터전송서비스, 회선교환데이터전송서비스, 텔렉스서비스, 전신서비스, 팩시밀리서비스, 전용회선서비스, 디지털셀룰러서비스, 무선호출서비스, PCS, TRS, 무선데이터서비스, 인터넷접속서비스, 공중교환전화망과 연결된 인터넷전화서비스.

38) “의제외국인”이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80% (그 최대주주가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인 경우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함.

39) 한국 양허표의 표현은 부정확하고 첨부도 누락되었다. 편철의 오류로 중국 양허표에 부속서¹로 첨부된 참조문서를 의도한 것으로 이해된다.

부가통신서비스는⁴⁰⁾ Mode 1-3에 걸쳐 제한 없이 양허하였으며 추가적 약속으로 부가서비스 공급자에게 데이터전송서비스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나) 중국 측 양허

쿠리어 서비스 분야를 제한 없이 양허하고 있다. 통신서비스부문에서는 한국과 달리 기본통신서비스와 부가통신서비스에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상업적 주재를 위해서는 공히 합작투자방식을 취해야 하는데 기본통신서비스에서 외국인 투자는 49%를 초과하지 못함에 비하여 부가통신서비스(페이징서비스 포함)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양허불균형의 수준이 중국 협상단의 무성의와 한국 협상단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도 할 것이다. Mode 1 방식의 시장접근제한과 관련하여 “Mode 3을 참조할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어서 그 의미가 불투명하나 아마도 한국의 기간통신서비스양허에서와 같이 당국에 의해 상업적 주재를 허가받은 사업자와 상업적 약정을 체결해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후속협상에서 확인을 통한 명확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추가적 약속을 통한 참조문서의 이행도 마치 페이징서비스에 한정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도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협정 간 비교

한-EU FTA에서 EU는 쿠리어와 통신서비스 전체에 대해서 제한 없이 양허하였다. 한국의 양허는 기본적으로 한-중 FTA의 양허내용과 같으나 기본통신서비스와 관련하여 몇 가지 추가적인 양허를 하였다. 첫째, 협정 발효일 부터 2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상업적 약정 없이 위

40) 전자메일, 음성메일,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전자적 데이터 교환, 고도부가가치 팩시밀리서비스,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처리, 원격 컴퓨팅.

성 설비를 통한 텔레비전 및 라디오 신호 전송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을 허용함. 둘째,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외국인 의제법인이 KT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는 KT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셋째, 협정 발효일 부터 2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a) 외국인의제법인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0까지 보유하는 것(단, KT와 SK텔레콤은 대상에서 제외함) 그리고 (b) 외국인의제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최대 100분의 100까지 보유한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간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허용한다.

중국-호주 FTA의 중국 측 양허내용은 기본적으로 한-중 FTA와 동일하다. 다만 부가통신서비스와 관련하여 추가적 약속을 하였다. 즉, 호주서비스제공자는 상해자유무역지구에 중외합작기업 또는 순수외자 회사를 설립하여 앱서비스, 저장과 전송, 콜센터, 다수당사자간 국내 통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자유무역지구에 중외합작기업을 설립하여 전자상거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회사의 지분을 55%까지 소유할 수 있다.

한-중 FTA 후속협상에서 통신분야의 추가적 개방을 예상케 한다.

12) 시청각 서비스

(가) 한국 측 양허

한국은 영화, 음반 및 비디오테이프 제작 및 배급 서비스 분야에 대한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의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및 상업적 주제에 제한이 없다.⁴¹⁾

41) 한국 양허표 2.D.

(나) 중국 측 양허

중국은 한국서비스 공급자가 영화를 제외한 시청각물 배급에 종사하기 위해 중국 파트너와 합작 투자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한국 서비스 공급자는 극장의 건립 및 개축이 허용되지만 투자지분은 49%를 초과하지 못한다. 중국은 수익분배에 기초한 극장 상영 영화의 수입을 허용하며, 그러한 수입 편수는 연간 20편이어야 한다고 추가적으로 약속하고 있다.⁴²⁾

그런데 여기에서 중국 측 협상단이 서비스 양허표 작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여실히 드러난다.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을 기재하여야 하는 열에 허용하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하고 있으며 추가적 약속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도 그 것이 과연 추가적 시장 자유화 약속인지 제한인지가 불분명하다. 이는 다른 분야에서의 양허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와 같은 중국 측의 양허표 작성 상 난맥은 향후 해석 및 적용상 분쟁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다) 영화, 드라마 공동제작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부속서(부속서 8-나)에서 영화공동제작물에 대해 국내제작물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였다. 공동제작영화는 양 당사국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⁴³⁾ 공동제작자의 창의적 기여도와 재정 기여도는 각각 20~80% 사이에서 제작자간 합의로 결정된다(제4조). 제3자를 공동제작에 참여시킬 수 있으나 이는 한-중 의 공동제작자의 개별 기여도 중 낮은 것보다 더 높지 않아야 한다(제5조). 공동제작을 위해 입국 원활화, 장비의 일시적 반입에 대한 무관세를 위해 노력한다. 한편 양국은 텔레비전 드라마, 애니메이션에 대한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검토하기로 하였다(부속서 8-다).

42) 중국 양허표 2.D.

43) 한국의 영화진흥위원회, 중국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전영국과 중국전영합작제편공사.

(라) 협정 간 비교

한-EU FTA는 시청각미디어를 경쟁논리에 입각한 무역자유화협상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할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서비스 양허표에 시청각서비스에 대한 양허는 없으며 그 대신 협정문에 문화협력 의정서(Protocol on Cultural Cooperation)가 붙어있다. 동 의정서는 한국과 EU간 문화교류의 증대, 시청각저작물 공동제작의 진흥 및 공동제작물에 대한 내국저작물대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청각물 이외에 공연예술, 출판물 등의 상호 교류증진도 규정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는 시청각서비스도 서비스일 뿐으로 개방과 보호를 놓고 줄다리기를 협상을 하였다. 한국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국내 프로그램 쿼터를 완화하고 협정 발효 3년 내에 종편, 보도, 홈쇼핑을 제외한 법인의 주식지분 비율을 100%까지 확대할 것 등을 양허하였다.⁴⁴⁾

중국-호주 FTA의 중국 측 양허는 한-중 FTA와 동일하다. 영화 등의 공동제작과 관련한 협정은 없다.

13)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⁴⁵⁾

(가) 한국 측 양허

건설서비스의 기술적 특성상 현지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은 Mode 1 방식에 대해서는 착공 전 조사부분만 양허하였다. 반면 Mode 2, 3와 관련해서는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양허했다.

44) 한-미 FTA 부속서 I 44.

45) CPC 511-518.

(나) 중국 측 양허

외국인 단독 소유 혹은 다수지분의 합작투자가 허용된다. 순 외국인 소유기업은 다음 5가지 형태의 건설프로젝트 수행만 가능하다. 첫째, 외국 투자 및/또는 전액 출자된 건설 프로젝트. 둘째, 국제금융기관의 용자로 출자되고 용자의 조건에 따라 국제적인 입찰을 통해 낙찰되는 건설 프로젝트. 셋째, 외국인 투자가 50% 이상인 내외국인 공동 프로젝트와 중국기업이 단독 수행하기에는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 투자가 50% 미만인 내외 공동 프로젝트. 넷째, 중국기업이 단독 수행하기 어려운 건설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아 내외 기업이 공동 수행할 수 있음. 다섯째, 한국 서비스공급자에 의해 상해시범자유무역지구내에 설립된 건설 기업으로 상해에서 내외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지분에 관한 요건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추가적 약속으로 한국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중국에 설립된 건설기업의 중국 내 지역과 중국 외 지역의 계약이행은 중국 외 지역의 계약이행은 중국 내 그 건설기업의 자격 평가 시에 산정됨을 확인하였다.

(다) 협정 간 비교

한-EU FTA에서 EU는 Mode 1-3 모두 제한 없이 양허하였으며 Mode 4에도 불가리아만 건설 분야에서 최소 2년의 경험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한-EU FTA에서 한국의 양허는 한-중 FTA와 동일하다. 중국-호주 FTA의 중국 양허 내용도 한-중 FTA에서 중국의 추가적 약속 항목에 기재한 내용이 빠진 것을 제외하고는 내용상 동일하다. 사실 자국 내에서의 사업실적을 시장진입 및 내국민대우의 제한사항으로 설정하지 않고 외국에서의 사업실적도 인정한다는 것은 형식상 수평적 약속 항목에 기재되어야지 서비스분야별 구체적 약속에서 매번 반복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양허방식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면 중국은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양허를 안 하고 있으며, 한국은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양허를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양허를 안 하고 있다. 반면 EU의 경우 기술적 실현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서비스제공자가 판단할 문제이며 규제기관이 이를 먼저 판단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동일한 상황에서도 EU는 제한 없이 양허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안전성, 소비자 보호 등 다른 규제목적 달성에 유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 그러한 규제목적이 다른 수단에 의해서 보장된다면 EU의 접근방식이 시장의 창의성을 진작시키는 데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의 착안점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14) 유통서비스

(가) 한국 측 양허

한국은 각주를 통하여 다음 서비스는 제외됨을 밝히고 있다.

- (a) 총포, 도검 및 화약류 거래
- (b) 예술품 및 골동품, 그리고
- (c) 다음의 개설 및 운영과 다음에서의 유통 서비스
 - (i) 지방 당국이 공영도매시장으로 공식 지정한 농축수산물 공영도매시장
 - (ii)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생산자 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개설 및 운영하는 농수산물공판장, 그리고
 - (iii)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 및 운영하는 가축시장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 세계무역기구 관세율할당의 운영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 또는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함.

이중 (a), (b)는 일반적 예외(제21.1조)에 의해서 포섭됨이 분명하고, (c) 또한 그렇게 해석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보다 명확히 하기 위

하여”로 시작되는 주의규정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무효가 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위탁중개인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한국은 의약품, 의료상품의 국경간 공급(Mode 1)을 양허 제외하였다. 도매유통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곡물, 홍삼, 비료를 모든 공급방식에서 제외하고 의약품, 의료상품, 기능성 상품과 Mode 3상 제한대상인 품목에 대해서 Mode 1 양허를 제외하였다. Mode 3에서는 중고자동차, 가스 연료 및 관련 제품, 주류, 한약재에 대하여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소매유통서비스와 관련해서는 LPG, 주유소, 쌀, 인삼, 홍삼은 모든 공급방식에서 제외하였고 의약품, 의료상품, 기능성 상품, 주류판매와 Mode 3상 제한대상인 품목에 대해서 Mode 1 양허를 제외하였다. Mode 3에서는 중고자동차와 가스 연료 소매에 대한 경제적 수요심사, 안경사(또는 검안사)의 면허를 받아서 1인당 1개의 영업소만 개설 허용, 의약품(한약재 포함) 유통서비스 공급자도 1개 약국만 설치 가능하며 허가받은 약사에 의해 일반 공중에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프랜차이징은 제한 없이 양허하였다.

(나) 중국 측 양허

중국은 위탁중개인서비스와 도매서비스와 관련하여 소금, 담배를 제외하고 양허하였다. 그러나 알리바바와 바이두를 키워낸 중국이건만 놀랍게도 국경간 공급을 양허하지 않았다⁴⁶⁾. 유통서비스를 위한 순외국인 소유 기업의 설립이 허용되었다.

소매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담배를 제외하며 국경간 공급은 우편주문만 인정하였다. 외국인이 30개가 넘는 소매업 체인의 다수 지분을 소

46) 도매서비스에 대한 각주에서 “모드 1에 대한 제한은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제 5장에 규정된 무역할 권리에 대한 WTO 회원국의 권리를 약화시키지 아니함”이라고 적고 있으나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유한 경우 상당히 광범위한 취급제품 제한이 적용된다.⁴⁷⁾ 중국 유통 시장 내지 체제의 폐쇄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도 할 것이다. 그런데 추가적 약속에서는 다시 “외국인 투자 기업은 시장접근이나 분야 또는 하위분야 란에 열거된 대로 제외된 상품을 포함하여 중국내에서 제조된 그 기업의 상품을 유통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수입품 유통은 안 되고 중국산 제품은 유통해도 된다는 것이라면 이는 WTO/GATT 내국민대우원칙에 대한 노골적 위반이 분명하다.⁴⁸⁾ 도대체 혼란스러운 양허표이다. 나아가 제외품목 리스트를 첨부하지 않고 자기네의 WTO 가입의정서 부속서를 참조하라거나 WTO 가입작업반 보고서를 참조하라거나⁴⁹⁾ 하는 것도 무성의한 태도이다.

중국도 프랜차이즈는 제한 없이 양허하였다.

(다) 협정 간 비교

한-EU FTA에서 EU는 무기, 총포탄 기타 전쟁물자의 유통을 포괄적으로 제외하고 에너지제품의 도소매를 제외하였으며 의약품 및 의료제품의 소매 유통을 양허에서 제외하였다. 개별회원국 중에는 국가독점인 담배, 주류 유통을 제외한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회원국이 Mode 1은 우편판매만 양허하였다. 프랑스, 이태리를 포함한 몇몇 회원국은 백화점 신설에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하였다. 한-EU FTA에서 한국의 양허와 중국-호주 FTA에서의 중국 양허는 한-중 FTA와 대동소이하다.

47) 신문, 잡지, 의약품, 살충제, 제초필름, 가공유지, 화학 비료제와 중국 WTO 가입 협정서 부속서 2(가)에 열거된 상품. 후자는 국영기업이 유통을 독점하는 곡물, 원유, 텅스텐, 은, 설탕, 면화 등 다수의 품목을 포함한다.

48) 유통규제로 상품양허를 무효화하는 것은 GATT위반이다. WTO DS 161(한국-쇠고기 유통)사건에서 패널과 상소기구 평결. 현지 E마트 매장에 탐문한 결과 실제로는 일부 품목에 대해 이와 같은 규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듯하나(이기평 박사 전언), 이와 같은 규제의 존재 자체가 WTO협정 위반이라고 할 것이다.

49) 양허표 ‘고정적 위치에서 떨어져 있는 도매 또는 소매 서비스’ 분야의 각주 7.

15) 교육서비스

(가) 한국 측 양허

교육서비스는 양국 모두 엄격한 규제 하에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양허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초중등교육의 양허대상에서 배제하고 고등교육과 성인교육만 양허하였다.

Mode 1 방식의 고등교육은 양허하지 않았으며, 교환학생 등으로 유학 가서 취득한 학점도 졸업을 위해 요구되는 총 학점의 반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한다. 외국인이 교육부장관의 인허가를 받아 대학을 설립하거나 교육과정의 공동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에게 내국민대우를 약속하지는 않았다. 인력수급, 수도권과밀억제 등을 위해 학생 수를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학원 등 사적인 성인교육은 상대적으로 넓은 양허를 하였다. 보건 및 의료교육을 제외하고는 Mode 1 방식을 허용하였다. 외국인에 의한 국내에서의 학원설립도 허용하였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를 신설 및 확장 제한, 교육감의 학원비 규율 등의 제한 여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내국민대우를 약속하지 않았다. 성인대상 학원의 외국인 강사는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한국에 거주하여야 한다.

(나) 중국 측 양허

중국은 군대, 경찰 등 특수교육과 의무교육을 제외하고는 초중등을 포함한 전체분야를 양허대상으로 하고 있다. Mode 1 방식의 원격교육을 양허하지 않았으며 외국인 다수 지분 소유의 합작 학교 설립을 허용하였으나 내국민대우를 약속하지는 않았다. 한국인 교원도 중국교육기관에 의해 초청되거나 고용된 경우 중국에 입국하여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양허보다 개방적인 느낌을 주지만 중국 측 협상가의 부주의로 기재하여야 하는 제한 사항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내국민대우를 약속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제로 중국에서 한국기업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장벽이 존재할 개연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양허에 차이가 있는 것은 한국의 경우 교육의 질에 대한 우려와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교육서비스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반영된 것이고 중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국내 교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한다.

(다) 협정 간 비교

한-EU FTA에서 EU는 공교육은 양허하지 않았으며 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서비스만 양허하였다. 프랑스는 초중등교육에는 Mode 1 방식을 양허하지 않았지만 고등교육에서는 이를 양허한 것이 주목된다. 다만 상업적 주재를 요건으로 한다. 경제적 수요조건, 이사회 과반 국적요건 등 국별 차이가 있지만 외국인의 대학설립은 비교적 자유로우며 성인교육기관 설립은 제한이 없다. 교사에 대해서도 국적요건을 두는 일부 회원국이 있다.

한-EU FTA에서 한국의 양허는 기본적으로는 한-중 FTA 양허와 유사하나 다음 세 가지 차이가 주목된다. 첫째, 사립고등교육기관 이사 정수의 50%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기본재산액의 반 이상을 외국인이 출연한 경우 이사 정수의 3분의 2 미만까지 외국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둘째, 외국인 설립 성인교육기관에 대하여 내국민대우를 제한 없이 양허하였다. 셋째, 학원비 규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

중국-호주 FTA의 중국 양허는 추가적 약속으로 교육부 국제교육홈페이지에 77개의 공인호주교육기관을 게시할 것을 기재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중 FTA의 중국 양허와 동일하다.

16) 환경서비스

(가) 양허내용

한국은 폐수처리, 폐기물처리, 배기가스 정화 및 소음저감서비스, 환경 평가시험 서비스와 관련하여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를 폭넓게 양허하였다. 예컨대 관련 중국 기업의 상업적 주재에 전혀 제한이 없다. 이 분야에서 중국은 상응하는 이상의 양허를 하고 있다. 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환경서비스에 대한 한-중 양허표를 비교하고 있다.⁵⁰⁾

<표 2-5-3> 환경서비스에 대한 한-중 양허표

분류	한국	중국
하수처리서비스	산업폐수만 부분개방	전체 개방
폐기물처리서비스	산업폐기물만 부분개방	전체 개방
위생서비스(도로청소, 제설 등)	미개방	개방
배기가스(대기) 정화서비스	개방	개방
소음저감서비스	개방	개방
자연 및 경관 보전서비스	미개방	합자조건으로 개방
기타 환경 서비스	환경영향평가만 개방	합자조건으로 기타 환경서비스 전체개방

중국이 모드 1에 대해서 환경자문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약속을 안했으나 이는 기술적 현실을 반영한 것일 뿐 특별히 제한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상업적 주재와 관련하여 순 외국인 소유기업⁵¹⁾ 혹은 외국인 다수 지분 소유 합작투자기업의 형태로⁵²⁾ 서비스 공급이 허용된다.

50) 환경부, “WTO/FTA 협상 동향”, 2014. 12.16.

51) CPC 9401~9405.

52) CPC 9406, 9409.

중국이 자국의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외국투자를 받아들일려는 의도가 엿보이며 한국 환경기업의 적극적 기회활용이 기대된다.⁵³⁾

(나) 협정 간 비교

한-EU FTA에서 EU는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을 전제로⁵⁴⁾ 하기는 하였지만 환경서비스의 Mode 1-3를 다른 제한 없이 양허하였다. Mode 4는 양허하지 않았다. 한-EU FTA에서 한국은 한-중 FTA에서보다 다소 양허 분야를 넓게 잡았으나⁵⁵⁾ EU의 수평적 제한에 상응하는 유보를 병기함으로써 그 추가 양허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17) 금융서비스

WTO가입조건에 따라 중국이 2006년 금융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개방한 이후 중국 금융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은행의 생산성이 증가하였다.⁵⁶⁾ 2013년 글로벌 은행 순위에서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53) 현재 중국에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공기업 또는 독점기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방효과가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한-중 FTA협정문은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나(제8.2조 제2항 나호)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협정문 본문상 의무 및 구체적 약속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제8.12조). 그런데 환경서비스를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라고 해석한다면 애초에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서 제외되었어야 할 것인데 이 분야를 적극적으로 양허한 이상에는 적용배제를 주장할 수 없을 것이며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54) 국가 또는 지방 수준에서 공익사업으로 간주되는 경제활동은 공공독점 또는 사적 운영자에 대해서 부여된 배타적 권리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고 수평적 제한을 기술하였다. 한-중 FTA에는 한-중은 이와 동일한 수평적 제한을 두지 않았다. 중국이 환경 품질 모니터링 및 오염원 조사를 제외한 것은 이들이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에 해당하고 나머지 구체적 양허부문은 그렇지 않다는 해석을 강화한다.

55) 비산업폐수, 토양 및 지하수 정화, 환경컨설팅, CPC 9403, 9406 일반.

56) 김상호(2015) p. 170.

중국은행, 중국농업은행의 4개 은행이 10위권 안에 들었다.⁵⁷⁾ 반면에 한국의 은행들은 50위권 밖에서 더 이상의 추락을 막기 위해 허덕이고 있다.⁵⁸⁾

(가) 한국 측 양허

수평적 제한으로 다음을 두고 있다. 1)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금융서비스 공급자를 설립하거나 이에 대한 지배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국에서 동일한 금융서비스의 하위 분야에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체를 소유하거나 지배하여야 함. 2)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최고경영자가 한국 내에 거주할 것을 요구할 권한을 유보함. 3) 금융건전성을 위해 모회사와 관련된 요건, 최소 자본금 요건, 최소영업자금 요건, 영업직원의 면허 및 승인 등의 조치를 할 권한을 유보함. 4) 관련법에 규정된 오직 한 종류의 사업을 하여야 함. 5) 국경간 공급 금융서비스를 허용한다는 것이 이에 관해 한국 내에서 적극적으로 영업 내지 구매권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며, 국경간 금융 서비스에 대해 등록 또는 인가제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함. 6) Mode 1, 2를 통한 금융거래는 원화로 결제할 수 없으며, Mode 3 거래는 원화로만 가능하고, 외화표시거래 또는 비거주자와의 거래는 승인이 필요함. 7) 지점소유 자산은 한국의 영역 내에 보유되어야 함. 8) 요구불예금 금리가 규제됨. 9) 금융기관의 자산관리 및 운용이 제한됨. 10) 금융기관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음. 12) 신 금융상품의 도입은 승인을 받아야 함.

보험서비스 중 Mode 1은 해상수출입 적하보험, 항공보험, 재보험 및 재재보험에 한정하여 양허하였다. Mode 2는 재보험 및 재재보험만 양허하였다. Mode 3는 외국의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재보험 및 재

57) ‘The Banker’ 은행 순위 발표...중국공상은행 자본 랭킹1위, 14:55, July 03, 2013, <http://kr.people.com.cn/203087/8309280.html>(검색일: 2015.8.20.)

58) “국내은행↔글로벌 초강자, 격차 또 커져”, 한국금융신문, 2015. 7. 13.

재보험사, 보험중개회사, 보험대리사, 손해사정 및 보험계리회사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와 내국민대우를 제한 없이 양허하였다.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일률적으로 Mode 1, 2는 약속을 하지 않고 Mode 3에 대해서만 다음과 같이 조건하에 양허하였다. 1) 인은 관련 당국의 특별한 인가 없이 은행지분의 10%까지 그리고 지방 은행 지분의 15%까지 취득할 수 있음. 2) 외국환 포지션은 규제되며 현물환매각 초과 포지션은 미화 500만달러 또는 자본금의 3% 중 큰 금액 임. 3) 카드론과 같은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제출은 제한됨. 4) 각종 요율 한도와 운용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 5) 자산신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본업인 은행업외의 업무에의 종사 및 신탁업에 종사한다는 두 종류의 승인이 요구됨. 6) 부동산 신탁사업은 제외됨. 7) 신용정보서비스의 경우 기존 회사에 대한 50% 미만의 지분참여만 허용됨 등.

(나) 중국 측 양허

보험서비스 분야에서 Mode 1은 1) 재보험 2) 국제해상, 항공 및 교통보험 3) 보험중개에 대해서만 양허하였다. Mode 2는 보험중개에 대해서만 약속을 하지 않고 그 이외에는 제한 없이 양허하였다. Mode 3와 관련하여 한국 손해보험업자의 중국내 설립형태에는 제한이 없으나 생명보험업자는 50% 합작투자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 큰 규모의 상업적 위험을 가진 보험 및 재보험 중개, 국제해상·항공·교통보험 및 재보험 중개 부문은 순 외국인 소유 자회사가 허용된다. 그 밖의 보험중개는 양허하지 않았다. 위 회사들은 지사를 둘 수 있다. 설립허가에 경제적 수요 심사나 수량제한은 없으나 30년 이상 운용경험이 있고, 중국에 2년 연속 대표사무소가 있어야 하며, 보험중개인은 미화 2억 달러 이상 다른 사업자는 50억 달러 이상의 총자산이 있어야 한다.

은행서비스 분야에서⁵⁹⁾ Mode 1은 1) 금융정보, 금융데이터처리와

59) 예금, 대출, 금융리스, 지급 및 송금, 보증 및 약적, 외국환서비스가 포함되며 이중 금융리스는 중국회사와 동시에 한국회사에게 허용될 것을 약속하였다.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과 이전. 2) 신용조회 및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수와 기업구조조정 및 전략에 대한 자문 등 은행서비스 전반에 대한 자문, 중개 및 부수서비스에 대해서만 양허하였다. Mode 2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Mode 3관련해서는 은행이 외환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에 제한이 없으며 중국화거래는 중국고객을 상대로 할 수 있다. 중국내 자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미화 100억달러,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200억 달러, 합작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미화 100억 달러 이상의 총자산이 있어야 한다. 중국화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 전에 중국에서 3년 동안 사업을 했으며 2년 연속 수익이 있어야 한다.

비은행 금융기관에 의한 자동차 파이낸싱 서비스부문; 금융정보, 금융데이터처리와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과 이전 서비스부문; 신용조회 및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수와 기업구조조정 및 전략에 대한 자문 등 은행서비스 전반에 대한 자문, 중개 및 부수서비스부문은 Mode 1-3의 대부분을 양허하였다.

증권서비스부문에서 Mode 1이 인정된 것은 B주식⁶⁰⁾ 사업과 중국적격기관투자자(QDII)에 대한 계좌거래·증권거래자문이나 포트폴리오 관리·해외자산관리에 한정된다. Mode 2에는 제한이 없다. Mode 3와 관련해서 중국에 대표사무실을 가진 한국 증권사는 중국 주식거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한국 증권사는 중국내 증권투자 펀드관리 사업을 위해 외국투자 49% 한도에서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또한 합작투자로 A주식인수와 B, H주식, 정부와 회사채의 인수와 거래, 펀드 출시를 수행할 수 있으며, 향후 허가과정을 거쳐서 증권 중개, 자기자본거래, 자산관리가 허용된다.

60) 중국에서 A주식은 인민화로 표시된 국내주식으로 원래는 내국인만 매매가 가능했으며 B주식은 외화로 표시된 국내주식으로 원래는 외국인만 매매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그 구분이 없어졌다. H주식은 홍콩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중국회사의 주식이다.

(다) 협정 간 비교

한-EU FTA에서 많은 EU회원국은 다음에 관련한 위험에 대한 보험을 제외하고 Mode 1, 2 방식의 직접 보험서비스와 그 중개에 대하여 약속을 하지 않았다. a)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 (위성 포함)⁶¹⁾, 그리고 b) 국제적으로 통과 중인 상품. 보험이외에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의 Mode 1 방식에 의한 제공도 금융정보 및 금융자료처리의 제공, 그리고 중개를 제외한 자문 및 기타 부수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약속하지 않았다. Mode 3 서비스를 위한 설립에는 유럽연합법과 각 회원국법이 요구하는 다양한 경영적, 인적, 물적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한-EU FTA에서 한국의 양허표는 한-중 FTA와 다소간 다른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비등하게 외국 금융사의 시장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예컨대 다음 종류의 업무는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서비스공급자의 지점에 의하여 수행될 수 없다: (a) 신용협동조합 (b) 상호저축은행 (c) 여신전문금융회사 (d) 종합금융 (e) 외화 및 원화자금중개 (f) 신용정보 (g) 일반사무관리회사 (h)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그리고 (i) 채권평가회사. 적어도 금융 분야에 있어서 한국의 시장개방정도는 중국이나 EU보다 낮다.

중국-호주 FTA에서 중국 양허는 기본적으로 한-중 FTA 양허와 유사하면서도 일부 세부사항에 있어서 보다 개방적으로 개선되었다. 예컨대 중국화거래를 하기 위한 요건이 신청 전 중국에서 1년 동안 사업을 했을 것으로 낮추어졌다.⁶²⁾

61) 그러한 보험은 운송 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중-일 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62) 또한, 립 서비스일지 몰라도 내국민대우와 추가적 약속 항목에 새로이 전향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

18)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가) 양허내용

한국은 호텔 및 레스토랑, 여행알선대행, 관광안내 분야에서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를 제한 없이 약속하였다. 한국 양허표에서 호텔 및 레스토랑 분야의 Mode 1 공급을 약속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중국은 관광안내 분야는 양허하지 않고 호텔 및 레스토랑 분야와 여행알선 분야만 개방하였다. 합작호텔과 계약을 체결한 요리사와 고위임원에 대해 Mode 4를 개방하면서 순 외국인 소유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직원은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의도적인 제외라면 Mode 3 양허의 가치를 크게 제약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 합작 투자 또는 순 외국인 소유 여행 대행 및 알선업체는 중국인의 해외여행 및 홍콩, 마카오, 대만으로의 여행에 종사하지 못한다.

(나) 협정 간 비교

한-EU FTA에서 양국은 호텔 및 레스토랑, 여행알선대행, 관광안내 분야를 거의 제한 없이 양허했다. 한국 양허에서 항공운송 관련 음식 제공서비스를 약속한 것은 물리적으로 국경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Mode 1도 양허하겠다는 묵시적 의사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중국-호주 FTA의 중국 양허는 한-중 FTA와 대동소이하다.

19)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가) 양허내용

뮤지컬, 연극, 라이브 밴드, 오페라 등 개인 아티스트나 그룹에 의하여 행해지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에 대하여 한국은 해외소비와 상업

적 주재를 제한 없이 개방하였다. 하지만 국경간 공급은 양허하지 않았으며 국내에 주재한 외국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도 약속하지 않았다.

중국은 국경간 공급 뿐만 아니라 해외소비를 개방하지 않았으며, 상업적 주재는 합작투자의 경우 48% 투자지분 이하로 참여가 제한되며, 계약합작투자의 경우 의사결정권을 중국당사자가 가져야 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화물에 중국인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중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이 개방하지 않은 스포츠 분야를 중국이 개방한 것은 이와 같은 민감성이 없으면서 양허 수준을 맞출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중 모두 후속협상에서 동아시아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공동노력이라는 차원에서 전향적인 추가 양허가 있기를 기대한다.

(나) 협정 간 비교

한-EU FTA에서 EU는 엔터테인먼트, 스포츠뿐만 아니라 뉴스제공,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서비스, 레크리에이션 파크 및 해변 서비스를 양허하였다. 한국은 엔터테인먼트, 뉴스제공, 레크리에이션 파크 서비스를 양허하였다. 분야와 공급형태에 따른 유보가 적지 않게 있다고 하더라도 협상의 첫 관문인 양허 분야를 넓게 잡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호주 FTA에서 중국은 스포츠만 남기고 문화엔터테인먼트분야 전체를 양허에서 빼버리는 우려스러운 후퇴를 하였다.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스포츠분야의 국경간 공급을 허용한 것이다.

문화국가, 정보화국가를 지향하여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이 분야에 대한 공격적 협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2-5-4> 레크레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분야의 양허 비교

분야 \ FTA	한-EU FTA (EU)	한-EU FTA (한)	한-중 FTA (한)	한-중 FTA (중)	중호FTA (중)
엔터테인먼트	○	○	○	○	
뉴스제공	○	○			
도서관, 박물관 등	○				
스포츠	○			○	○
레크레이션파크/해변	○	△			

20) 운송서비스

(가) 해상 운송 서비스

양국 공히 연안운송을 제외한 국제운송 분야를 양허하면서 국경간 서비스 공급(모드 1, 2)에 대해서는 제한을 붙이지 않았다. 또한 양국 공히 항구에서의 다음 서비스는 국제해상운송공급자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추가적 약속을 하였다.

1. 도선
2. 예선 지원
3. 식량·연료 공급 및 급수
4. 쓰레기 수거 및 밸러스트 폐기물 처리
5. 선석 배정
6. 항행원조
7. 통신, 급수 및 전기공급을 포함한 선박 운영에 필수적인 육상기
반 운영 서비스
8. 비상보수시설
9. 정박, 접안지 및 선박접안 서비스

(i) 한국 측 양허

상업적 주재와 관련하여 한국은 한국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국제여객해운과 관련해서는 양허하지 않고 국제화물해운에 대해서는 주식회사만 허용한 반면에 그 밖의 형태의 상업적 주재에는⁶³⁾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해운부수서비스인 해상화물 취급, 통관서비스, 항만 내 창고업, 컨테이너 스테이션 서비스, 예선 서비스, 검수·검정·검량 서비스에 대하여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이유로 Mode 1은 약속하지 않았지만 Mode 2, 3는 제한 없이 양허하였다. 해운대리 서비스와 선원 포함 선박 임대업은 Mode 1-3 모두 제한 없이 양허하였다. 해상화물운송주선서비스, 해운중개서비스, 선박 유지 및 보수 서비스제공자의 상업적 주재를 위해서는 상법상에 명시된 주식회사 형태를 갖추도록 하였다.

(ii) 중국 측 양허

상업적 주재와 관련하여 중국국기게양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한국인이 합작해운회사 설립이 허용되지만 외국투자가 49%를 넘지 못하고 이사회 의장 및 일반 관리자는 중국 측이 지정한다. 국제해상운송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그 밖의 형태의 상업적 주재는 양허하지 않았다. 기타 형태의 상업적 주재에 대한 태도가 한국과는 정반대임을 알 수 있다.

해상화물 취급, 통관서비스와 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창고 서비스와 관련하여 외국인 다수 지분 소유 합작투자를 허용하였다. 해상중개서비스는 Mode 1, 2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상업적 주재는 외국인 투자 지분 49% 미만의 합작투자만 허용하였다. 내륙수로화물운송은 외국

63) “국제해운서비스 공급을 위한 다른 형태의 상업적 주재”란 다른 쪽 당사국의 국제해운서비스 공급자가 그들의 고객에게 해운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고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해운서비스에 관한 첨부.

선박들에게 개방된 항만 내에서의 국제해운만 허용하고 상업적 주재는 약속하지 않았다.

(iii) 협정 간 비교

한-EU FTA에서 EU는 연안운송을 제외한 국제해상운송은 모드 1, 2)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양허하였다. 내수운송에 대해서는 국제협정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영, 프, 독, 이 등 주요 회원국은 양허하였으나 그 밖의 국가는 양허하지 않았다. 해운 및 내수운송 부수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국제협정 준수에 관한 유보 이외에는 대부분 양허하였으나 ‘선원 포함 선박대여서비스’는 영, 프, 이 등은 양허하고 기타 국가는⁶⁴⁾ 양허하지 않았다. 모드 3와 관련해서는 모든 회원국이 설립되는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는 약속하지 않았다.⁶⁵⁾

한-EU FTA에서의 한국 측 양허는 선원포함 선박대여와 예선서비스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약속하지 않은 점을 제외하고는 한-중 FTA의 양허와 동일하다.

중국-호주 FTA에서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중 FTA와 동일한 양허를 하면서도 상해자유무역지구와 관련한 추가적 약속을 하였다.

(나) 항공운송서비스

(i) 한국 측 양허

한국은 컴퓨터예약시스템(CRS),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항공기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성질상 국경간 공급이 어려운 경우와 자연인의 이동을 제외하고는 제한 없이 양허하였다.

64) 오, 불, 사, 체, 독, 에, 형, 리, 몰, 폴, 루, 스, 베, 슬

65) 그 밖에 일부회원국은 개별적인 유보를 두었다.

(ii) 중국 측 양허

한국 서비스 공급자는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국내에 합작투자 기업 설립이 허용되지만 중국 측이 그 합작 투자 기업의 지배주를 소유하거나 지배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며, 그 합작 투자 기업은 국제 시장에서의 사업 수행 의무를 진다.

외국 컴퓨터 예약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Mode 1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중국항공기업 및 중국컴퓨터예약시스템과 합의가 있는 경우 중국컴퓨터예약시스템과의 연결을 통해 중국항공기업 및 중국항공중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양자간 항공합의에 따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한국 항공 기업에 의해 중국의 목적지 도시에 설립된 대표 사무소 및 영업사무소에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3) 중개인에 의한 외국 컴퓨터 예약 시스템에 대한 직접 접근성 및 사용은 중국민용항공총국(CAAC)의 허가를 조건으로 한다. CRS 서비스를 Mode 3 방식으로 공급하기 위한 중국 CRS 공급자와 내외 합작이 허용되나 중국 측이 투자기업의 지배주를 소유하거나 지배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 또한 허가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한다.

(iii) 협정 간 비교

한-EU FTA에서 EU는 케이터링서비스, 창고업, 화물운송대리업은 Mode 1, 2에 대하여 제한 없이 양허하였다. 항공기 등록에는 국적, 자본 및 통제에 관한 조건 충족이 요구될 수 있다. 예외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 한국 항공사는 승무원 포함 항공기 임대 가능하다. 컴퓨터예약시스템서비스의 경우 상호주의에 따른 조치가 적용될 수 있음을 유보하였다.

한-EU FTA에서 한국은 한-중 FTA에서 양허한 3가지 분야 이외에 ‘승무원포함 항공기임대’를 양허하면서 EU 양허표와 마찬가지로의 조건을 기재하고 있다.⁶⁶⁾

66) 대한민국 항공사가 사용하는 항공기는 대한민국에 등록되어야 함. 등록되기 위하

중국-호주 FTA에서 중국의 양허는 한-중 FTA의 양허에다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부문과 공항지상업무(ground handling services)의 일부와 특수항공서비스⁶⁷⁾의 일부를 추가하여 양허하였다.

(다) 육상운송서비스

(i) 한국 측 양허

컨테이너 화물운송을 위한 국제해운회사의 상업적 주재를 양허하였으며, 석유제품의 파이프라인 운송과 모든 운송에 부수하는 창고업, 복합운송서비스, 철도화물주선을 위한 상업적 주재를 양허하였다.⁶⁸⁾

(ii) 중국 측 양허

철도와 도로를 통한 화물운송을 위해 순 외국인 소유 자회사의 설립이 허용된다. 여객운송은 외국인 투자가 49%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합작투자만 허용되며 경제적 수요심사가 요구된다. 모든 운송에 부수하는 창고업은 순 외국인 소유 자회사가 허용된다. 화물주선대행서비스는 Mode 1-2에 제한이 없고 최소3년 연속의 경험이 있는 한국 화물주선 대리업은 합작 또는 순 외국인 소유 자회사 설립이 허용된다. 합작투자기업의 운영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iii) 협정 간 비교

한-EU FTA에서 EU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붙이는 조건이외에 철도

여 항공기는 특정 국적요건을 충족하는 자연인 또는 자본 및 통제에 관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소유할 것이 요구될 수 있음.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내에 등록된 항공기의 리스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충족될 수 없는 대한민국 항공사의 예외적인 필요, 계절적 운영능력 수요, 또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특정한 상황에서 유럽연합의 항공사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대한민국 항공사에게 대한민국으로부터 제한된 기간 동안 승인받을 것을 조건으로 리스할 수 있다.

67) 항공측량, 사진, 산불방제, 항공농약살포, 항공관광, 항공스포츠, 항공훈련 등.

68) 철도운송은 형식적으로는 양허하였으나 요건 충족이 어려워 실질적으로는 외국기업의 진출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운송, 도로운송, 파이프라인운송, 항만서비스, 공용구역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그 밖의 부수서비스, 예선서비스에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도로여객운송과 관련하여 EU차원의 유보로서 비정기 임대서비스 이외의 버스서비스를 제외하였으며, 택시서비스에 대해서 경제적 수요 심사가 있다.

한-EU FTA에서 한국의 양허는 기본적으로 한-중 FTA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⁶⁹⁾ 중국-호주 FTA의 중국 양허는 한-중 FTA와 동일하다.

3. 평가 및 과제

(1) 종합적 평가

한-중 FTA 서비스무역에 관한 장의 규정형식은 WTO/GATS의 틀을 따르고 있다. 양허표의 작성도 WTO/GATS와 같이 개방분야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열거하고 그 내에서 제한사항을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본 협정 발효 후 2년 내 개시되는 후속협상에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한-중 FTA 서비스무역에 관한 장의 시장개방 정도는 한-중 모두 WTO/DDA 수정양허안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였으나 중국의 경우 실제 개방현실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할 것이다. 10년 이전의 과거와 비교하는 것은 껌연쩍은 일이다. 실질적으로 중국 서비스 시장의 추가적 개방을 촉진하는 것이 최선책일 것이나, 중국의 서비스양허가 현실적인 개방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조사하여 양허를 현행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개방정도의 후퇴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차선책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상하이자유무역지구에서 법률, 건설 등의 사업이 용이해졌다는 것 등 한-중 FTA 성과물중 상당수가

69) 기사 포함 비정기 버스 임대를 추가로 양허하였으나 한-EU관계에서 의미 있는 양허라고 보이지 않는다.

이미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고 나름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우리가 상대적 국력 열세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FTA 규정의 시장 따라잡기” 전략은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2) WTO 협정 합치성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은 WTO 회원국간에 체결되는 무역자유화 협정이 GATS에 합치하기 위한 조건으로 일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당사자간에 실질적으로 모든 차별조치를 그 협정의 발효시 또는 합리적인 시간계획에 기초하여 없애거나 폐지하도록 규정”할 것이란 조건이 있다. 그런데 앞에서 상세히 고찰한 대로 한-중 FTA의 서비스 챕터는 중국의 WTO 가입양허에서 추가적 자유화로의 큰 진전이 없다. 또한 실질적 서비스무역 자유화는 이끌어 내지 못하면서 WTO/GATT의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서비스 양허를 시혜를 베풀듯이 던지는 것은 심히 걱정스러운 행태라고 할 것이다.⁷⁰⁾ 비록 네거티브 목록 방식에 입각한 후속 협상에 합의하였다고 하나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모든 차별조치를 없애거나 폐지하도록 규정한 것이라 하기 어렵다. 약속한 조기 후속협상으로 자유화의 폭을 확대하지 않으면 한-중 FTA의 서비스 챕터는 국제무역규범 체계만 복잡하게 하였을 뿐 이를 상회하는 무역자유화를 달성하는데 실패하였으므로 GATS 제5조의 조건부 불합치가 우려된다고 할 것이다.

70) 본장 각주 48과 해당 본문 참조.

(3) 소극적 개방

한국과 중국은 상호 방어적인 입장에서 협상에 임하여 상대방의 시장개방을 극대화하는데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장개방을 국내산업 구조개혁의 모멘텀으로 삼는 데에도 실패하였다. 아래 WTO 보고서⁷¹⁾의 분야별 서비스시장 개방정도에 대한 평가에서 GATS는 2000년 전후를 나타내며 PTA는 2010년 전후의 시점을 나타내는바 예나 지금이나 전반적으로 한국의 시장개방도가 높다는 것에 더하여 분야별로도 재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우편-꾸리어서비스, 시청각서비스, 보험, 보조운송서비스 부문은 과거 한국이 더 폐쇄적 입장이었으나 현재는 더 개방적 입장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반해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 정도는 예나 지금이나 중국보다도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어느 분야가 경제 환경 변화에 더 진취적으로 대응하여 자기 혁신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표 2-5-5>의 수치가 명백히 보여 준다.

<표 2-5-5> 한중 양국의 분야별 서비스시장 개방 정도

	중국		한국	
	GATS	PTA	GATS	PTA
전문직서비스	51	67	60	81
컴퓨터서비스	60	70	100	100
우편-꾸리어	25	25	25	63
통신	43	44	80	90

71) WTO Staff Working Paper “Services Commitments in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An Expanded Data Set”, Nov. 2011의 데이터를 필자 편집. GATS는 Mode 1과 3를 포함한 것이며, PTA는 가장 개방적인 자유무역협정을 대상으로 한 것임. 숫자 100이 완전개방 0이 개방 무.

	중국		한국	
	GATS	PTA	GATS	PTA
시청각서비스	40	70	30	80
건설	42	62	79	100
유통	53	61	78	84
교육	25	25	15	39
환경	50	75	50	67
보험	50	63	40	78
은행 및 기타 금융	46	53	31	42
보건 및 사회서비스	0	17	0	0
관광	58	63	79	100
레크리에이션	6	34	6	53
해상운송	31	51	70	93
항공운송	19	56	55	84
보조운송서비스	29	29	7	54

한-중 FTA의 중국 측 시장접근 양허에 제한사항이 많은 것은 GATS 제XVI조 제2항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데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 동 규정에서 열거된 사항은 마치 상품무역에서의 수량제한이 금지되는 것과 같이 서비스교역에 있어서 무역제한 효과가 큰 대표적인 장벽으로서 철폐의 우선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 측 양허표는 마치 그 서비스 양적규제 유형을 제한조치 유지를 위한 기준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입법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오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중 FTA에서 Mode 4에 대한 개방수준이 낮은 것은 WTO/GATS 협상이나 다른 FTA에도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특별히 흠잡을 상황은

아니다. 다만 서비스제공자 수출국이 귀국보장 및 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보장하는 것과 같은 방안을 강구하여 수입국이 불법이민 등과 관련하여 가질 수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을 기우릴 필요가 있다.⁷²⁾

(4) 추가적 약속의 활용

중국 측 양허표가 전형적인 양허표 작성 방식에서 벗어난 측면이 있는 것은 지적인 바와 같으나 추가적 약속(additional commitments)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서비스무역부문은 각종 규제로 사업자의 활동에 제약이 많다는 특성이 있는바 이러한 규제의 운용에 있어서 부문별로 모범적인 국제규제원칙을 따를 것을 여기에서 약속한다면 아국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업 환경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다.

(5) 기술적 실현가능성 부족의 경우 양허방식

한 FTA 내에서도 분야에 따라 협상참가자가 달라서 인지 양허표 작성방식이 상이한 경우가 있다. 기술적 실현가능성 부족의 경우 양허방식이 대표적인데 “약속 안함”과 “제한 없음”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기술적 실현가능성 판단에 있어서의 오류여지와 기술적 장애의 극복을 독려하는 것이 산업진보의 동력임을 고려할 때 “제한 없음”으로 통일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6) 협상 추진의 구조적 측면

관세율을 비롯한 상품무역협정의 중심 이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관할에 속하므로 산업부의 정책결정이 그대로 집행될 수 있음에 비하

72) Hamid Mamdouh, “Services liberalization, negotiations and regulation: some lessons from the GATS experience”, in Aik Hoe Lim and Bart De Meester, 『WTO Domestic Regulation and Services Trade: Putting Principles into Practice』, WTO: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p. 328.

여, 서비스무역협상의 중심은 각 서비스 영역을 담당하는 부처의 규제권한과 관련이 있으므로 협상에 있어서도 산업부 보다는 각 소관부처가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사업자의 이해로부터 떨어져 있어야만 경쟁과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현 구조를 유지하면서 통상협상을 통한 대내적 구조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장관회의나 대외경제정책조정위원회에서 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협상총괄진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제 3 절 결론: 시사점 및 대응방향

한-중 FTA 협정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장은 미완의 협정이다. 앞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으므로 한국 측에서 아쉬운 점 몇 가지만 재차 강조하자면 정부조달 규정의 부재는 경제적 이익의 측면과 규범의 포섭범위라는 측면에서 미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분쟁해결 규정의 부재는 양허의 유효성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미비점이라 할 것이다. 최혜국대우규정의 부재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따지면 한국 측에 유리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할 것이나 순수하게 규범적 측면에서는 양국관계의 고도화를 위해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간 문제시되어온 중국규제의 불투명성에 대한 대응으로 한-중 FTA 제8.6조(투명성)를 적극 적용하여 중국 측에 투명성 제고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국내적 규제에 관한 한-중 FTA 제8.7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규제의 합리성, 불편부당성,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도 형식상 투명성 확보에서 나아가 내용상 공정성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양허요청서(Request)-양허제안서(Offer) 방식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무역 협상은 상품무역 협상에서와 달리 시장개방을 주고받아서 협상국간 양허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에 그리 민감하지 않다. 협상국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무역규제의 합리성에 대한 상호점검을 통하여

자체적인 규제완화의 동기를 부여하는 측면이 오히려 강하다고 할 것이다. 즉, 협상 참여국 내부의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한 적극성이 시장 개방의 폭을 결정짓는 주된 요인이 되는 것이다. 한-중 양국이 한-중 FTA를 통해서 서비스무역환경 합리화의 큰 진전을 이루기에는 양국의 내적 수용태세가 성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제한적 서비스 양허는 국경 간 서비스제공방식(Mode 1)에 대한 제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은 서비스 시장 개방정도에 대한 WTO 보고서⁷³⁾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는데 한-중 FTA도 이 일반적 평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 표 2-5-6 > 한중 양국의 Mode 1, 2의 개방 정도 (100=완전개방)

	중국		한국	
	GATS	PTA	GATS	PTA
Mode 1	40.1	44.4	41.0	64.7
Mode 3	38.5	55.4	56.1	76.2
종합평균	39.3	49.9	48.6	70.5

한-중 FTA는 위와 같은 미진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양국 간의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위한 대장정을 시작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적지 않다. 한-중 FTA로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된 양국시장에서 중국의 성장은 한국에게 위기이자 기회이다. 특히 한국이 전통적인 취약부문인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에서의 경쟁력을 신속하게 강화시키는 경우 중국은 한국에 확대된 수요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반대로 저부가가치 산업에 머무르는 경우 레드오션에서의 사투만이 기다릴 뿐이다.

73) WTO Staff Working Paper (2011)의 데이터를 필자 편집.

참 고 문 헌

- 국경복,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정부제출) 검토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12. 9.
- 김종덕·엄준현, 「한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분석: 한-미 FTA와 한-EU FTA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12.
- 김상호, 「한-중 서비스산업의 비교분석과 교역 확대 방안」, 집문당, 2015.
- 문병철, 「한·미 FTA의 쟁점과 이해」, 오름, 2014.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4년 서비스수지 현황 및 시사점”, Trade Brief, No. 13, 2015. 2. 27.
- 환경부, “WTO/FTA 협상 동향”, 2014. 12.16.
- Hamid Mamdouh, “Services liberalization, negotiations and regulation: some lessons from the GATS experience”, in Aik Hoe Lim and Bart De Meester, 「WTO Domestic Regulation and Services Trade: Putting Principles into Practice」, WTO: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 WTO Staff Working Paper “Services Commitments in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An Expanded Data Set”, Nov. 2011
- ‘The Banker’ 은행 순위 발표…중국공상은행 자본 랭킹1위, 14:55, July 03, 2013, <http://kr.people.com.cn/203087/8309280.html>(검색일: 2015.8.20.)

제 6 장 금융서비스

제 1 절 개 관

금융서비스를 규율하고 있는 WTO 협정으로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 GATS)와,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금융서비스에 관한 제2부속서, 금융서비스에 관한 각료결정, 금융서비스에 관한 양해, GATS 제2의정서와 금융서비스 제2차 결정 및 GATS 제5의정서가 있다. 이는 모두 1995년 WTO 출범 이후에 금융분야를 규율하는 다자규범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FTA에서 금융분야를 규율하는 방법,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 GATS) 조문을 준용하거나 GATS를 수정하는 등 GATS에서 규율하는 방법, 및 규율하지 않는 방법 등 4가지로 나누어진다. 특히 중국은 금융·통신 등의 서비스와 관련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먼저 기본협정을 추후에 서비스협정을 체결하거나(중·아세안FTA, 중·파키스탄 FTA, 중·칠레 FTA) 또는 기본협정과 함께 서비스협정을 체결하고 추후 서비스 개방폭을 확대(중·홍콩 CEPA, 중·ASEAN, 중·싱가포르 FTA)을 상용한다. 이는 점진적인 서비스의 개방확대 방식을 통하여 중국이 제도적인 미비, 지리적 방대성과 격차 등을 보완하기 위함이다.¹⁾

<표 2-6-1> 한국과 중국 FTA의 금융분야 규율방식

구분	한국의 FTA	중국의 FTA
독립된 장에서	한·중 FTA	

1) 정환우, “한·중 FTA 서비스분야 협상시 쟁점과 시사점”, 국제무역연구원, 2012.5 p.6.

제 2 부 한-중 FTA 주요 챕터 분석

구분	한국의 FTA	중국의 FTA
규율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EU FTA 한-페루 FTA 한-미 FTA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부속서에서 규율	한-ASEAN FTA 한-인도 CEPA 한-터키 FTA	중-호주 FTA
GATS에서 규율	한-칠레 FTA	중-아이슬란드 FTA(제79조) 중-스위스 FTA(제10조) 중-뉴질랜드 FTA 중-ASEAN FTA 중-홍콩 ECPA 중-뉴질랜드 FTA 중-싱가포르 FTA 중-대만 ECFA
관련규정없음		중-칠레 FTA 중-파키스탄 FTA 중-페루 FTA 중-코스타리카 FTA

한·중 FTA는 금융서비스 분야와 관련하여 제9장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총14개 조항과 부속서(구체적 약속)로 구성되며,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 의무와 관련이 있는 금융 양허는 서비스 양허인 부속서 9-가에 규율되어 있다.

<표 2-6-1> 에서와 같이 한·중 FTA는 중국이 금융서비스를 별도의 장으로 구성한 최초의 FTA이고, 한국이 체결한 FTA 중에서는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EU FTA, 한-미 FTA,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등이 독립된 장에서 금융서비스를 규율하고 있다.

본장에서는 한·중 FTA의 금융서비스 분야의 주요내용을 독립적인 장에서 금융서비스 분야를 한·미 FTA, 한-캐나다 FTA 및 한·EU FTA를 비교하고,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WTO 금융서비스 부속서/양해 및 기타 FTA와 비교하여 검토한다.

<표 2-6-2> 기체결 FTA간의 금융서비스 규율내용 비교

한중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EU FTA	한-페루/미/호주/캐나다 FTA	WTO금융서비스 부속서/양해
제9장	제12장	제4장	제5관	제12장/제13장/제8장/제10장	
적용범위	적용범위	적용범위	적용범위	적용범위	범위
내국민대우	내국민대우	내국민대우		내국민대우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최혜국대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시장접근	시장접근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시장접근
·	·	·		국경간무역	
·	·	·	신금융서비스	신금융서비스	
특정정보의 취급	특정정보의 취급	·		일정정보의 취급	
·	·	·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	·	·		비합치조치	
건전성 예외	예외	예외	건전성조치예외구체적 예외	예외	

투명성	투명성	투명성	투명성	투명성	투명성
·	·	·	·	·	·
지급 및 청산	·	·	·	·	·
건전성 조치의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구체적 약속	양허표의 수정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수정	구체적 약속	
금융서비스 위원회	금융서비스위원회	금융서비스 소위원회	금융서비스 소위원회	금융서비스 위원회	
협의	협의	협의	협의	협의	
분쟁해결	분쟁해결	분쟁해결	분쟁해결	분쟁해결	분쟁해결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에 관한 사전협의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	
정의	정의	정의	정의	정의	정의
	국내규제	국내규제	국내규제	국내규제	국내규제
		기타*			동결

* 기타 규정으로는 GATS 규정의 통합, 추가적 약속, 자연인의 이동, 특점 및 배타적 서비스공급자, 영업관행, 지불 및 송금, 국제수지보호를 위한 제한, 검토 등이 있다.

제 2 절 조문내용 분석

1. 적용범위

제9.1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금융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자국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당사국이 자국의 영역 내에서 다음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공공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의 일부를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 나. 자국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당사국의 계좌로, 또는 당사국의 보증 하에, 또는 당사국의 금융재원을 사용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또는
 - 다. 중앙은행, 통화당국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이 통화 또는 환율정책 추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3. 이 장은 상업적 재판매를 위한 경우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서비스 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 정부의 목적으로 구매되는, 정부 기관의 금융서비스 조달을 규율하는 법, 규정 또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 장의 기본적인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금융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모든 조치 (measures affecting the supply of financial services)”에 적용된다. 이는 한-미 FTA와 한-캐나다 FTA, 한-EU FTA와 유사하다. 다만, 한-미 FTA(제13.1조 제1항)와 한-캐나다 FTA(제10.1조 제1항)에서는 각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러한 투자자의 투자,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본 장의 기본적 적용 범위를 좀 더 넓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원칙에 대해 일정한 예외가 있다. 즉 공공기관을 포함한 당사국이 자국의 영역내에서 ① 공공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의 일부를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② 자국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당사국의 계좌로, 또는 당사국의 보증 하에, 또는 당사국의 금융재원을 사용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또는 ③ 중앙은행, 통화당국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²⁾이 통화 또는 환율정책 추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④ 정부의 목적으로 구매되는 정부 기관의 금융서비스 조달을 규율하는 법·규정 또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한편, 한-미 FTA(제13.1조 제3항 및 제4항), 한-캐나다 FTA(제10.1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과 유사하다. 특히 상기 ③항의 규정은 한-EU FTA 제7.44조 제2항 규정³⁾을 도입해서 통화/환율정책에 대한 예외를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용어 정의

제9.14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금융서비스란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융적 성격의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서비스는 모든 보험과 보험 관련 서비스, 그리고 모든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금융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가. 직접보험(공동보험을 포함한다)

1) 생명보험

2) 여기에서 공공연금제도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 해당하고, 법정사회보장제도는 국민건강보험제도에 해당하며,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을, 통화당국은 기획재정부를 말한다. 관계부처합동,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2015.3) p.81.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cn/doc/1_description.pdf(최종방문일자 : 2015.9.1)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 또는 그 밖의 공공 기관이 통화 또는 환율 정책을 수행하면서 행하는 활동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손해보험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다. 중개 및 대리와 같은 보험 중개, 그리고

라. 상담, 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마.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그 밖의 상환성 자금의 인수

바. 소비자대출, 주택담보대출, 팩토링 및 상업거래 용자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여신

사. 금융리스

아. 신용, 선불 및 직불 카드, 여행자수표 및 은행수표를 포함하는 모든 지급 및 송금 서비스

자. 보증 및 약정

차.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을 자기계좌 또는 고객계좌로 거래하는 것

1) 화폐시장 상품(수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를 포함한다)

2) 외환

3)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파생상품

4) 스왑, 선도금리계약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

5) 양도성 증권, 그리고

6) 금피를 포함한 그 밖의 유통증권 및 금융자산

카. 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모집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의 참여(공모 또는 사모)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타. 자금중개업

파.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 모든 유형의 집합투자운용, 연금기금운용, 보관, 예탁 및 신탁서비스와 같은 자산운용

하. 증권, 파생상품 그리고 그 밖의 유통증권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

거. 그 밖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너. 신용조사와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수 및 기

업의 구조조정과 전략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여, 마호부터 거호까지의 규정에 기재된 모든 활동에 대한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 공급자란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거나 공급하는 당사국의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나, “금융서비스 공급자”라는 용어는 공공기관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조치란 다음에 의하여 취하여진 법,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 행위의 형태이거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당사국에 의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 1) 중앙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 그리고
- 2) 중앙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 기관

금융서비스 공급이란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공급을 말한다.

- 1)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로의 금융서비스 공급
- 2)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대한 금융서비스 공급
- 3) 한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 4) 한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금융서비스 공급

공공기관이란 정부 목적을 위하여 정부 기능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데 주로 종사하는 기관으로서 당사국의 정부, 중앙은행 또는 통화당국이거나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관으로, 상업적인 조건하에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주로 종사하는 기관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쟁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대우로 간주된다.

본 조에서 “금융서비스”라 함은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융적 성격의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서비스는 모든 보험과 보험 관련 서비스, 그리고 모든 은행 및 (보험을 제외한) 그 밖의 금융서비스를 포함한다. 이는 한-미 FTA 13.20조, 한-캐나다 FTA 10.20조, 한-EU FTA 7.37조 2항의 내용과 동일하다. 한편, 금융서비스로 분류되는 활동의 구체적인 정의는 한-중 FTA 9.14조, 한-미 FTA 13.20조, 한-캐나다 FTA 10.20조가 동일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서비스 공급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란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거나 공급하는 당사국의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나, 금융서비스 공급자라는 용어는 공공기관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한-EU FTA 7.37조 2항의 규정을 원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치”란 “법,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 행위의 형태인지에 관계 없이 당사국에 의한 모든 조치이거나,” 중앙/지방정부와 당국, 또는 중앙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 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그밖의 모든 형태의 행위를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미, 한-캐나다, 한-EU FTA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규정이다.

“금융서비스 공급”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의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즉 ①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로의 금융서비스 공급, ②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대한 금융서비스 공급, ③ 한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④ 한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금융서비스 공급. 이중에서 ①, ②, ④는 한-캐나다 FTA와 한-미 FTA에서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으로 정의된 금융서비스 공급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③은 한-미, 한-캐나다, 한-EU FTA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규정으로서, 한-중 FTA 제12.1조의 “투자”의 정의에서 “기업과 기업의 지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금융서비스 공급을 포함하기 위해서 정의된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이란 “정부목적을 위하여 정부기능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데 주로 종사하는 기관으로서 당사국의 정부, 중앙은행 또는 통화당국이거나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한-EU FTA 제7.37조의 “공공기관”의 정의와 동일하다.

한-중 FTA의 용어 정의에서 눈에 띄는 점은 한-미, 한-캐나다, 한-EU FTA에 존재하지 않는 “조치” 및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한 용어 정의가 변경 또는 새롭게 도입된 부분이다. 한편, 한-중 FTA에는 금융투자 또는 신금융서비스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용어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3. 내국민 대우

제9.2조 내국민 대우

1. 금융서비스에 관하여 부속서 8-가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서, 그리고 그 양허표에 규정된 조건 및 제한에 따라,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와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금융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자국의 동종 금융서비스와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⁴⁾
2. 당사국은 자국의 동종 금융서비스와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과 형식적으로 동일한 대우 또는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와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3. 형식적으로 동일하거나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는, 그것이 다른 쪽 당사국의 동종 금융서비스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비교하여 그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쟁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대우로 간주된다.

내국민 대우란 상대국의 금융 서비스와 금융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의 동종 금융 서비스 및 금융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조항은 한-EU FTA 제7.6조의 내국민대우 조항과 동일한 것으로, 한-미 FTA와 한-캐나다 FTA의 경우 금융서비스에서의 내국민대우에 금융서비스 투자와 투자자 보호 관련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한-EU FTA의 내국민대우 조항을 원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중 FTA에는 최혜국대우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다른 FTA와 비교해도 특이하다.

4. 시장 접근

제9.3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1. 금융서비스 공급을 통한 시장접근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와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속서 8-가의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서 합의되고 명시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규정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시장접근 약속이 이행된 분야에서, 부속서 8-가의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이 지역적 소구분에 근거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근거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조치는 다음으로 정의된다.
 - 가.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의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수에 대한 제한나.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의 요건의 형태로, 금융서비스 거

4) 각주 2 : 이 조에서 상정되는 구체적 약속은 어떠한 당사국으로 하여금 관련 금융서비스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외국산이라는 성격으로부터 기인하는 내재적인 경쟁상의 불리함을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래 또는 자산의 총액에 대한 제한
- 다.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금융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금융서비스의 총 산출량에 대한 제한⁵⁾
- 라.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의 요건의 형태로, 특정 금융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에 대한 제한
- 마. 금융기관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조치, 그리고
- 바. 외국인 지분 소유의 최대 비율 한도 또는 외국인 투자의 개인별 또는 총액 한도에 의한 외국 자본 참여에 대한 제한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도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즉 ① 금융 서비스 공급자의 수 제한, ② 금융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제한, ③ 금융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금융 서비스 총 산출량의 제한, ④ 금융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자연인의 총 수 제한, ⑤ 금융 서비스 공급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의 제한, ⑥ 외국인 지분소유의 최대 비율 한도 또는 외국인 투자의 개인별 총액 한도에 의한 외국 자본 참여의 제한.

5. 특정 정보의 취급

제9.4조 특정 정보의 취급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개인 고객의 거래 및 계정과 관련된 정보 또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밀 정보 또는 재산권적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각주 2 : 이 호는 금융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투입 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 조는 당사국이 개인 고객의 거래 및 계정과 관련된 정보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EU FTA 제7.38조 제3항의 개인정보 및 비밀정보 보호 조항과 동일한 취지의 조항이다. 한편, 한-미 FTA 제13.7조와 한-캐나다 FTA 제10.7조는 금융기관 또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개인 고객의 금융 거래 및 계정과 관련된 정보, 또는 공개되면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또는 특정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할 비밀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함으로서, 보호 대상 정보의 초점이 조금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 FTA와 한-캐나다 FTA의 관련 조항과 비교해도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

6. 건전성 예외

제9.5조 건전성 예외

1. 이 장의 그 밖의 규정 또는 제12장(투자)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인의 보호, 또는 금융체도의 완전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건전성을 사유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2. 그러한 조치가 제1항에서 언급된 이 협정의 규정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는 그러한 규정상의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아니한다.

당사국은 예외적으로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①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 ② 금융제도의 안정성과 안전성 보장을 포함한 건전성 사유로 하여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다만, 당사국의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건전성 조치를 남용할 수 없다. 이는 한-미 FTA 제13.10조 제1항, 한-EU FTA 제7.38조 제1항, 한-캐나다 FTA 제10.10조 제1항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다.

“건전성 사유”에 대해서 한-중 FTA에는 정의가 나와 있지 않으나, 한-미 FTA 제13.10조 제1항 각주에서는 “건전성 사유”를 “개별 금융기관이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성 또는 금융 책임의 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한-EU FTA 제7.38조 제1항 각주 및 한-캐나다 FTA 제10.10조 제1항 각주에서도 동일하다.

7. 투명성

제9.6조 투명성⁶⁾

1. 양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활동을 규율하는 투명한 규정과 정책이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과 상대국 시장에서의 영업을 촉진함에 있어 중요함을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 있어 규제 투명성을 증진하기로 약속한다.
2. 각 당사국은 이 장이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3. 제18.1조(공표)의 제2항을 대신하여,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다음을 한다.
 - 가. 자국이 채택하고자 제안하는 이 장의 대상에 관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과 그 규정의 목적을 사전에 공표한다. 그리고,
 - 나. 그러한 제안된 규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4.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각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종 규정의

- 공표와 그 발효일 간에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5.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에 관하여 질의를 접수하기 위한 적절한 채널을 설치하거나 유지한다.
 6. 각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포함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신청을 완료하기 위한 요건을 공개한다.
 7.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관련 규정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그 신청의 처리상황을 신청자에게 알린다. 당국이 신청자에게 추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당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8. 한쪽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한 완료된 신청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행정적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한다. 신청은 모든 필요한 정보가 접수되기 전에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80일 내에 행정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실행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규제당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그 이후 관련 규정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한다.
 9. 신청이 거부된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거부한 규제당국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신청거부사유를 신청자에게 알린다.

양국은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활동을 규율하는 투명한 규정과 정책이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과 상대국 시장에서의 영업 촉진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금융서비스 규제의 투명성 증진에 합의하고, 모든 조치가 합리적·객관적·공정하게 운영할 것을 보장한다. 또한 투명성 증진을 위해 양국은 실행가능한 한도 내에서, ① 금융챕터의 대상에 관하여 채택하고자 제안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의 목적을 사전에 공표하고, ② 이해관계인의 합리적인 의견제시의 기회를 제공하며, ③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종 규정의 공표와 발효일간에 합리적 기간을 허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6) 각주 3 : 양 당사국은 상대국의 국내 법적 요건을 존중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의정서에서 약속된 투명성 조의 약속을 인정한다.

또한 ④ 금융 챗터의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에 관해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를 접수하기 위한 적절한 채널을 설치하거나 유지하고, ⑤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포함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신청을 완료하기 위한 요건을 공개하며, ⑥ 신청의 처리상황을 신청자에게 알리고 당국이 신청자에게 추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⑦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한 완료된 신청에 대해 각 규정에 명시된 기한내에 행정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하며 180일 이내에 행정결정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과도한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며, ⑧ 신청이 거부된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거부한 규제 당국은 실행가능한 한도내에서 신청거부사유를 신청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러한 투명성 조항과 관련하여 한-미 FTA 제13.11조 및 한-캐나다 FTA 제10.11조와 유사하다. 그러나 한-중 FTA에서는 한-미 FTA 제 13.11조 3항 다 및 한-캐나다 FTA 10.11조 3항 다의 “자국이 최종 규정을 채택하는 시점에 그 제안된 규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접수된 실질적 의견을 서면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고,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한 완료된 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이 180일⁷⁾로 규정되어 신청 처리 기간이 다소 길게 설정되어 있다.

8. 지급 및 청산제도

제9.7조 지급 및 청산제도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급 및 청산 제

7) 한-미 FTA 및 한-캐나다 FTA에서는 120일로 규정되어 있음.

도⁸⁾와 일상적인 업무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공적 자금조달 및 재금융 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조는 당사국의 최종 대부기관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다.

당사국은 내국민 대우에 따라 자국 영역에 설립된 타방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자국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급 및 청산 제도와 일상적인 업무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공적 자금조달 및 재금융 수단에 접근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한-중 FTA는 한-미 FTA,⁹⁾ 한-캐나다 FTA,¹⁰⁾ 한-EU FTA¹¹⁾와 마찬가지로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급 및 청산 제도와 일상적인 업무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이용가능한 공적 자금조달 및 재금융 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조는 당사국의 최종 대부기관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다.”고 지급 및 청산제도에 대한 접근권을 규정하고 있다.

9. 건전성 조치 인정

제9.8조 건전성 조치의 인정

1.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그 당사국의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비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를 인정할 수 있다. 조화를 통하여 또는 달리 달성될 수 있는 그러한 인정은 관련

8) 각주 4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경우, 고액지급 및 청산제도 서비스는 한국은행에 의하여 제공되고, 소액지급 및 청산제도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에 의하여 제공되며, 중국의 경우, 고액지급제도 및 일괄전자지급제도는 중국인민은행에 의하여 제공된다.

9) 제 13.13조

10) 제 10.13조

11) 제 7.41조

비당사국과의 협정이나 약정에 기초하거나 또는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2. 미래의 것인지 또는 기존의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1항에 언급된 협정이나 약정의 당사자인 한쪽 당사국은, 동등한 규제, 감독, 그러한 규제의 이행이 존재하고 그리고 적절한 경우 그 협정이나 약정의 당사자 간에 정보공유에 관한 절차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에의 가입을 협상하거나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협상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한쪽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한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그 당사국의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비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를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한-EU FTA 7.46조와 유사한 내용의 조항으로서, 그러한 인정은 조화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달성될 수 있으며, 관련 비당사국과의 협정이나 약정에 기초하거나 또는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제1항에 언급된 협정이나 약정의 당사자인 한쪽 당사국은, 동등한 규제, 감독, 그러한 규제의 이행이 존재하고 그리고 적절한 경우 그 협정이나 약정의 당사자 간에 정보공유에 관한 절차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협정과 약정에의 가입을 협상하거나 또는 자국과 이에 상당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협상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한쪽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한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게 함으로서, 건전성 조치의 인정 수준을 유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구체적 약속

제9.9조 구체적 약속¹²⁾

부속서 9-가는 각 당사국에 의한 특정한 구체적 약속을 규정한다.

한-중 FTA에서의 구체적 약속의 내용은 한-미 FTA, 한-EU FTA, 한-캐나다 FTA와 비교했을 때 그 내용이 현저히 적은 편이다. 한-중 FTA에서 규정된 구체적 약속은 감독 협력, 정부 정책 이행기관의 금융서비스 공급자 제외, 그리고 호혜적 대우의 3개 뿐이다.

감독 협력의 경우 양 당사국은 소비자 보호와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관행을 방지, 적발 및 고발하기 위한 규제당국의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규제당국에 지원을 제공하는 각 당사국의 금융규제당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각 당사국은 자국의 금융규제당국이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양 당사국은 양자 또는 다자적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서 각자의 진행 중인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고 하고 있다. 이 조항은 한-EU FTA에는 없고, 한-미 FTA 부속서 13-나 7절 및 한-캐나다 FTA 부속서 10-나 2절의 규정과 동일하다.

11. 금융서비스 위원회

제9.10조 금융서비스 위원회

1. 제19.4조(위원회 및 그 밖의 기구)에 따라 설치된 금융서비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속서 9-가의 제2항에 규정된 금융서비스

12) 각주 5 : 이 조에도 불구하고, 제9.2조 및 제9.3조와 관련된 당사국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은 부속서 8-가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포함된다.

를 담당하는 각 당사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2. 위원회는

가. 이 장의 이행 및 그 추가적인 구체화를 감독한다. 그리고

나. 양 당사국이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 당사국에 의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금융서비스에 관한 사안을 검토한다.

3. 위원회는 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이 협정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합의하는 대로 회합한다.

양국은 금융 챕터의 이행 및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관한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양국 금융서비스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금융서비스 위원회 설립에 합의했다. 금융서비스 위원회에 참여하는 당사국들의 당국은 한국의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또는 그들의 승계기관이며, 중국의 경우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 (CBRC),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CIRC),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CSRC) 및 중국인민은행 (PBOC) 또는 그들의 승계기관이 된다. 위원회는 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이 협정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양측이 합의하는 대로 회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 협 의

제9.11조 협의

1. 한쪽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한다.

2. 이 조에 따른 협의에는 부속서 9-가 제2항에 명시된 당국의 공무원이 포함된다.

일방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이 조에 따른 협의에는 부속서 9-가 2 항에 명시된 당국의 공무원이 포함된다.

그러나 한-미 FTA와 한-캐나다 FTA와 달리 협의 결과를 금융서비스 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어서 이 조항의 실질적 효용성이 의문시된다.

13. 분쟁해결

제9.12조 분쟁해결

건전성 사안과 그 밖의 금융사안에 대한 분쟁 패널은 분쟁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필요한 전문성을 구비한다.

14.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에 관한 사전협의

제9.13조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에 관한 사전협의

금융기관에 대한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가 제12.12조(한쪽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투자 분쟁해결)에 따라 청구를 제기하고 피청구국이 항변으로 제9.5조를 원용하는 경우, 피청구국의 요청에 따라, 양 당사국은 상호 협의하고 청구가 제기된 후 180일 내에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선의로 노력한다.

건전성 사안과 그 밖의 금융사안에 대한 분쟁 패널은 분쟁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필요한 전문성을 구비한다.

금융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한-중 FTA에는 분쟁해결 및 투자분쟁과 관련된 특별 조항이 삽입되었다. FTA 규정상 분쟁해결과 관련

해서 한-중 FTA는 건전성 사안과 그 밖의 금융사안에 대한 분쟁 패널은 분쟁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필요한 전문성을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한-미 FTA, 한-EU FTA, 한-캐나다 FTA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구체성이 떨어지는 조항으로서, 금융서비스 관련 패널 설치, 패널 위원의 자격 요건과 분쟁해결 패널의 판정의 이행과 관련해서 다른 FTA들을 참조해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삽입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자분쟁과 관련해서는 우선 투자자가 당사국을 상대로 ISD를 청구하고, 제소 당사국이 제 9.5조 상의 건전성 조치를 원용하여 항변하는 경우, 피청구국의 요청에 의해 양자협약에 나선다. 이 경우 양 당사국은 ISD 청구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건전성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결정은 중재 판정부를 구속한다.

한-미 FTA와 한-캐나다 FTA의 경우 피청구국이 건전성 예외를 원용하는 경우 피청구국 요청에 따라 중재 청구가 제기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피청구국은 제13.10조가 청구에 대한 유효한 항변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어느 한도에서 인정되는지의 문제에 관한 공동 결정 요청서를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제출하며, 위원회는 상기한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선의로 노력한다. 위원회가 피청구국의 서면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위원회가 미해결로 남겨둔 문제를 결정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한-중 FTA의 ISD 양자협약의 조항도 현저히 구체성이 떨어진다.

한-중 FTA에는 우선 양자협약을 어떻게 하고, 양자협약과 금융서비스 위원회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양자협약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을 경우 중재판정부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한-중 FTA에는 관련 내용이 없는데, 이러한 부분을 향후 한-중 FTA 개정협상시 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 3 절 소 결

한-중 FTA의 금융서비스 관련 규정은 대체적으로 한-미 FTA, 한-캐나다 FTA, 한-EU FTA의 금융서비스 관련 규정과 유사하고, 의도한 개방 수준도 한-미 FTA 수준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중 FTA는 최혜국대우를 제외하고 있고,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조항이 없으며, 투명성 규정에서 규제 투명성을 증진하지만 신청 처리 기한을 180일로 설정해서 다른 FTA보다 상대적으로 긴 처리 기한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 약속과 관련해서 한-중 FTA는 국경간 서비스 개방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고, 정보 이전에 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며, 포트폴리오 운영 서비스에 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전체적인 규정 체계를 보건대, 한-중 FTA는 한-EU FTA와 유사한 개방 범위를 의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문안은 한-미 FTA와 한-EU FTA의 내용을 필요에 따라 원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중국의 금융시장 발전 정도가 상대적으로 뒤져 있고, 한국 입장에서 금융서비스의 민감도를 감안하건대 한-미 FTA 또는 한-캐나다 FTA 수준의 규정을 주장하기 쉽지 않다는 면을 감안한 타협적 내용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정환우, “한·중 FTA 서비스분야 협상시 쟁점과 시사점”, 국제무역연구원, 2012.5

관계부처합동,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2015.3)

제 7 장 통 신

제 1 절 개 요

통신 서비스는 그 자체가 서비스 교역활동이면서 동시에 다른 경제 활동의 토대가 되는 수단이기 때문에, 통신 서비스 자유화 관련 사항은 서비스 장(章)에서 다루고, 통신 장(章)은 경제활동의 토대로서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속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교역의 토대가 되는 통신 서비스 관련, 상대국의 사업자가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¹⁾ 통신서비스를 규율하고 있는 WTO 협정으로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 GATS)과, 통신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기본통신협상에 관한 부속서 및 기본통신협상에 관한 결정이 있다. 이는 모두 1995년 WTO 출범이후에 통신분야를 규율하는 다자규범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FTA에서 통신분야를 규율하는 방법으로는 독립된 장(챕터)을 통해서 규율하는 방법, 부속서에서 규율하는 방법,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 GATS) 조문을 준용하거나 GATS를 수정하는 등 GATS에서 규율하는 방법, 및 규율하지 않는 방법 등 4가지로 나누어진다. 특히 중국은 WTO 가입 이후 ASEAN, 칠레에 대해서는 통신서비스 부문을 아예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홍콩, 마카오에 대해서도 통신서비스 부문 가운데 기본통신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기본통신과 부가통신 모두에 대한 양허표를 포함하는 FTA는 뉴질랜드, 파키스탄, 페루, 싱가포르와의 FTA 등이 있다.²⁾

1) 관계부처합동,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2015.3) p.86.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cn/doc/1_description.pdf(최종방문일자 : 2015.9.1)

2) 이한영, “방송통신분야 중국 FTA의 특징 및 시사점”, 관세학회지 12(2), 2011.5 p.183.

<표 2-7-1> 한국과 중국 FTA의 통신분야 규율방식

구분	한국의 FTA	중국의 FTA
독립된 장에서 규율	한·중 FTA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인도 CEPA 한-페루 FTA 한-미 FTA 한-터키 FTA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부속서에서 규율	한-EFTA FTA	
GATS 준용		중-ASEAN FTA 중-파키스탄 FTA 중-싱가포르 FTA 중-페루 FTA
독자 규정	한-ASEAN FTA 한-EU FTA	중-호주 FTA
관련규정없음		중-칠레 FTA 중-뉴질랜드 FTA 중-코스타리카 FTA 중-아이슬랜드 FTA 중-스위스 FTA

한·중 FTA는 통신서비스 분야와 관련하여 제10장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총18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표 2-7-1> 에서와 같이 한·중 FTA는 중국이 통신서비스를 별도의 장으로 구성한 최초의 FTA이다.

본장에서는 한·중 FTA의 금융서비스 분야의 주요내용을 독립적인 장에서 금융서비스 분야를 한·미 FTA, 한-캐나다 FTA 및 한·EU FTA를 비교하고,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WTO 통신서비스 부속서/결정 및 기타 FTA와 비교하여 검토한다.

제 2 절 조문내용 분석

1. 적용 범위와 다른 장과의 관계

제10.1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통신 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2. 방송국 및 케이블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이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을 제외하고, 이 장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케이블로 배급하는 것에 관한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공중에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설치·구축·취득·임대·운영 또는 공급하도록 기업에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는 것, 또는
 - 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방송이나 케이블 배급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에 자사의 방송 또는 케이블 설비를 공중 통신 망으로서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
4.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8장(서비스 무역)의 부속서 8-가(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따른 약속 외의 추가적인 약속을 창설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0.2조 다른 장과의 관계

이 장과 다른 장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 내에서 이 장이 우선한다.

본 장은 “통신 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 한-중 FTA에는 규정이 없으나 한-미 FTA³⁾와 한-캐나다 FTA⁴⁾에서는 ① 공중 통신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조치, ②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의 의무에 관한 조치, ③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관한 그 밖의 조치, ④ 부가 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장은 방송국 및 케이블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이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을 제외하고,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케이블로 배급하는 것에 관한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방송서비스 배급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이 장은 상호접속 제공 의무에 관한 조치, 지배적 공중통신 사업자의 추가적인 의무에 관한 조치, 그 밖의 조치에 대해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8장(서비스무역)의 부속서 8-가(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따른 약속 외의 추가적인 약속을 창설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한-미 FTA나 한-캐나다 FTA에는 따로 수록되지 않은 조항이다.

또한 “이 장과 다른 장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이 장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한-미 FTA 제 14.23조, 한-캐나다 FTA 제11.13조와 동일한 규정으로서, 소위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3) 한-미 FTA 제 14.1조 1항

4) 한-캐나다 FTA 제 11.1조 1항

2.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제1절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

제10.3조 접근 및 이용

1.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전용회선을 포함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또는 자국 국경을 넘어 제공되는 모든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조건을 포함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다음이 허용되도록 보장한다.
 - 가. 공중 통신 망에 상호 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구입하거나 임대하고 부착하는 것
 - 나. 소유 또는 전용 회선을 통하여 개별 또는 복수의 최종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 다. 소유 또는 전용 회선을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또는 국경을 넘어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와 접속하거나,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전용 또는 소유 회선과 접속하는 것
 - 라. 교환·신호·처리 및 변환 기능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 마. 모든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선택한 운용규약을 사용하는 것
3.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사내통신을 포함하여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자국의 영역에서 또는 자국 국경을 넘어 정보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어느 한쪽 당사국이나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당사자인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데이터베이스 내에 포함되거나 달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가. 메시지의 보안 및 기밀성 보장, 그리고

- 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최종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다만, 그러한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5.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 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공공 서비스 책임, 특히 그들의 망 또는 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이용가능 하도록 할 수 있는 공급자의 능력을 보호하는 것, 또는
 - 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
- 6. 제5항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조건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인터페이스규약을 포함하여, 그러한 망 또는 서비스와의 상호접속을 위하여 특정의 기술적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요건
 - 나. 필요한 경우, 그러한 망 또는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요건, 그리고
 - 다. 망과 상호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에 대한 형식승인과 그 장비를 그러한 망에 부착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적 요건

각 당사국으로 하여금 상대국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모든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를 시의적절하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다만, ①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공공 서비스 책임성을 확보하고, ②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접근 및 이용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한-미 FTA 제14.2조 동일한 취지의 조항이며, 한-캐나다 FTA 제11.2조과도 유사한 취지의 조항이다. 이 조항도 한-미 FTA 제 14.2조 3항과 유사하지만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대상국을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당사

자인 비당사국의 영역”까지 확장해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당사국은 1) 메시지의 보안 및 기밀성을 보장하고; 2) 공중통신 망 또는 서비스 최종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⁵⁾ 이 조항 또한 한-미 FTA 제 14.2조 4항과 동일하지만, 한-캐나다 FTA와 같이 “일반적 예외⁶⁾에 더하여” 이러한 보장 및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 이는 한-중 FTA 제 21.1조 2항에 유사한 취지의 조항이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단순한 규정 미비인지, 무언가 다른 함의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조항이 아닌가 싶다.

또한 한-중 FTA의 양 당사국은 1)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공공 서비스 책임, 특히 그들의 망 또는 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이용가능 하도록 할 수 있는 공급자의 능력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또는 2)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⁷⁾ 이는 한-미 FTA 제 14.2조 5항의 내용과 동일하지만 한-캐나다 FTA에서는 같은 조항에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부속서 I 또는 II 에 따라 당사국의 유보에 의하여 제한되는 서비스를 공급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것”도 포함할 것을 규정한 것과 비교했을 때 이 규정은 한-미 FTA 규정을 단순 도입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대목이 아닌가 싶다.

5) 한-중 FTA 제 10.3조 4항

6) 한-캐나다 FTA 제 22.1조 (일반적 예외), 특히 제 22.1조 2항: 제9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11장(통신), 제12장(기업인의 일시 입국) 및 제 13장(전자상거래)의 목적상, GATS 제14조의 가호, 나호 및 다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양 당사국은 GATS 제14조나호에 언급된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7) 한-중 FTA 제 10.3조 5항

마지막으로, 한-중 FTA 제 10.3조 6항은 상술한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양 당사국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조건에 1) 인터페이스규약을 포함하여, 그러한 망 또는 서비스와의 상호접속을 위하여 특정의 기술적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요건; 2) 필요한 경우, 그러한 망 또는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요건, 그리고; 3) 망과 상호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에 대한 형식승인과 그 장비를 그러한 망에 부착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적 요건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미 FTA 제 14.2조 6항과 동일하지만 한-캐나다 FTA 제 11.2조 6항에서 위의 조건에 더해서 1) 서비스의 재판매 또는 공동이용에 대한 제한; 2) 사설 전용 또는 소유 회선을 그러한 망이나 서비스, 또는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전용 또는 소유 회선과 상호접속하는 것에 대한 제한 및 3) 통보, 등록 및 면허에 대한 조건 부과가 가능하도록 추가적으로 규정 한 내용과 비교했을 때 한-중 FTA에서 의도한 개방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3. 상호접속 (제 10.4조)

제10.4조 상호접속

1. 가.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허가를 획득한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상호접속의 요율과 조건은 일반적으로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관련된 서비스 공급자간의 상업적 협상을 통하여 결정될 것이다.
- 나. 가호를 이행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 및 최종 이용자의, 또는 이들에 관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하고 그러한 정보를 이러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다음의 허가를 획득한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설비 및 장비를 위한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 가. 그 지배적 사업자의 망 내의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 나. 비차별적인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 및 효율에 따라
 - 다. 자신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비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그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에 대하여 그 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품질로
 - 라.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그리고 상호접속을 하고자 하는 공급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구하지 아니하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해서는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히 세분화되어 있는,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과 원가지향적인 효율로, 그리고
 - 마.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요금을 조건으로, 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망 종단점에 추가한 지점에서
3.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자신들의 설비와 장비를 다음 선택권 중 최소한 하나에 따라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의 설비 및 장비와 상호접속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가. 지배적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의하는 효율 및 조건을 포함하는 표준상호접속제안 또는 다른 표준상호접속제안
 - 나. 기존 상호접속협정의 조건, 또는
 - 다. 새로운 상호접속협정의 협상
4.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 협상을 위한 적용 가능한 절차가 공개되도록 보장한다.
5.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그 당사국의 통신규제기관에 상호접속협정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6. 각 당사국은 제3항가호에 따라 상호접속이 제공되는 경우 효율 및 조건이 공개되도록 보장한다.

한-중 FTA의 상호접속 관련 규정은 한-미, 한-캐나다, 한-EU FTA와 비교했을 때 매우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상호접속(interconnection)은 “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간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통신망을 연결하는 것”으로서 다른 FTA에서는 주로 지배적 사업자들의 행동 원칙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중 FTA에서는 특이하게 상호접속 관련 규정을 별도 규정으로 만들어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EU FTA 7.31조 (상호접속)을 참조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내용은 한-미 FTA와 한-캐나다 FTA의 상호접속 관련 내용을 더 많이 원용한 점이 눈에 띈다.

우선, 한-중 FTA 제 10.4조 1항 가에서는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허가를 획득한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국 영역 내에서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상호접속의 요율과 조건은 일반적으로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관련된 서비스 공급자간의 상업적 협상을 통하여 결정된다. 이 조항은 한-미 FTA 제 14.3조 1항과 유사한 조문이지만, 상호접속의 요율과 조건의 결정 방법은 한-EU FTA 제 7.31조 1항 2문과 유사한 내용으로 파악된다.

또한 이를 이행함에 있어서,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 및 최종 이용자의, 또는 이들에 관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러한 정보를 이러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보장할 의무를 부담한다.⁸⁾

또한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1) 그 지배적 사업자의 망 내의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2) 비차별적인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 및 요

8) 한-중 FTA 제 10.3조 1항 나.

율에 따라; 3) 자신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비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에 대하여 그 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품질로; 4)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그리고 상호접속을 하고자 하는 공급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구되지 아니하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해서는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히 세분화되어 있는,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또한 5) 요청이 있는 경우, 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망 종단점에 추가한 지점에서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요금을 조건으로 허가를 획득한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설비 및 장비를 위한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9)

또한 당사국들은 타방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자신들의 설비와 장비를 1) 지배적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의하는 요율 및 조건을 포함하는 표준상호접속제안 또는 다른 표준상호접속제안; 2) 기존 상호접속협정의 조건; 또는 3) 새로운 상호접속협정의 협상 중 최소한 하나에 따라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의 설비 및 장비와 상호접속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10)

한-중 FTA 제 10.3조 4항부터 6항은 상호접속과 관련된 절차의 투명성과 관련된 조항들이다. 우선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 협상을 위한 적용가능한 절차가 공개되도록 보장함으로써, 상호접속 교섭을 위한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11) 또한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그 당사국의 통신규

9) 한-중 FTA 제 10.3조 2항

10) 한-중 FTA 제 10.3조 3항

11) 한-중 FTA 제 10.3조 4항

제기관에 상호접속협정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상호접속협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며,¹²⁾ 각 당사국은 상호접속이 제공되는 경우 요율 및 조건이 공개되도록 보장해야 한다.¹³⁾ 한-중 FTA 제 10.3조 4항과 5항은 한-캐나다 FTA 제 11.4조 4항과 5항과 유사하지만, 한-중 FTA 제 10.3조 6항의 경우 다른 FTA에는 나와있지 않은 특이한 조항이다.

4. 해저 케이블 시스템 (제 10.5조)

제10.5조 해저 케이블 시스템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저케이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자국 영역에 공급자가 소재한 한쪽 당사국은 그러한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의 그 해저케이블 시스템(육양 설비를 포함한다)에 대한 접근¹⁴⁾에 관하여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대우를 부여하도록 보장한다.

인터넷 등 주요 통신망 사용 및 연결에 있어서 해저케이블은 매우 중요한 인프라스트럭처로서, 해저케이블의 사용에 대해서 한-중 FTA에서는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저케이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자국 영역에 공급자가 소재한 당사국은 그러한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12) 한-중 FTA 제 10.3조 5항

13) 한-중 FTA 제 10.3조 6항

14) 각주 1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1) 해저 케이블 육양 설비에 대한 접근은 용량을 조건으로 하며, 2)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설비를 소유하지 아니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접근에 대하여, 한쪽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허가된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임차된 설비, 또는 그 공급자로부터 제공되는 공중 통신 서비스를 통한 해저케이블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다.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의 해저케이블 시스템 (육양 설비 (Terminal station)를 포함한다)¹⁵⁾에 대한 접근에 관하여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대우를 부여하도록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한-미 FTA 제 14.12조 1항과 유사한 규정인데, 한-미 FTA와 달리 “당사국 영역에서 국제 공중 통신 서비스의 지배적 사업자가 경제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한 대안이 없는 케이블 육양 설비 및 서비스를 통제하는 경우”를 상정한 규정¹⁶⁾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한-캐나다 FTA와 한-EU FTA에는 해저케이블 운영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고려해 볼 때, 한-중 FTA에서의 해저케이블 관련 조항 협상시 어떤 것을 고려해서 협상에 임했는지 정부에서 명확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 지배적 사업자의 경쟁 보장 의무 (제 10.6조)

제3절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추가 의무

제10.6조 경쟁보장장치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유지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반경쟁적 관행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가. 반경쟁적 교차보조에 관여하는 것

15) 한-중 FTA 제 10장 각주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1) 해저 케이블 육양 설비에 대한 접근은 용량을 조건으로 하며, 2)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설비를 소유하지 아니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접근에 대하여, 한쪽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허가된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임차된 설비, 또는 그 공급자로부터 제공되는 공중 통신 서비스를 통한 해저 케이블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다.

16) 한-미 FTA 제 14.12조 2항

- 나.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며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 다.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그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필수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와 상업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 라. 약탈적 가격 책정을 포함하여, 불합리하게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비스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

한-중 FTA 제 10.6조 1항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서 “지배적 사업자”라 함은 필수 설비에 대한 지배 또는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의 결과로 “공중 통신 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 참가조건(가격 및 공급에 관한 것)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를 말한다.”¹⁷⁾

여기서 언급된 “반경쟁적 관행”은 1) 반경쟁적 교차보조 (cross-subsidization)¹⁸⁾에 관여하는 것; 2)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며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3)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그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필수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와 상업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이용가능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것; 및 4) 약탈적 가격 책정을 포함하여, 불합리하게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비스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¹⁹⁾ 이 조항은 한-미 FTA 제 14.5조 1항과 2항, 한-캐나다

17) 한-중 FTA 제 10.18조.

18) 교차보조(cross-subsidization) :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독점력을 통해 획득한 초과이윤을 경쟁적인 다른 통신시장에 종사하는 자회사, 계열사 등에게 보조하는 행위.

19) 한-중 FTA 제 10.6조 2항

FTA 제 11.4조 1항 및 2항과 유사하지만 4)에 언급된 경쟁 제한적 가격 책정에 대한 조항은 한-미 FTA와 한-캐나다 FTA에 들어있지 않은 조항이란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한-중 FTA 설명 자료 등에서 한-중 FTA에 특수하게 삽입된 규정의 취지 등에 대해 좀더 명확히 설명해 줄 수 있다면 협정문의 이해에 좀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6. 규제기관 독립성 (제 10.7조)

제4절 그 밖의 조치

제10.7조 독립적인 규제기관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모든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기능적으로 독립적일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그러한 어떠한 공급자에 대하여도 지분을 소유²하거나 운영 또는 경영 역할을 유지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은 통신규제기관 외의 당사국 정부기관이 통신 서비스 공급자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장 참여자”라는 용어는 그 통신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의 결정 및 절차가 모든 시장 참여자 3에 대하여 공평하고,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이행되도록 보장한다.

한-중 FTA 제 10.7조는 당사국의 “통신규제기관이 모든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기능적으로 독립적일 것을 보장”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규제 대상이 되는 통신서비스 공급자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운영/경영 역할을 맡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²⁰⁾ 자국의 통신규

20) 한-중 FTA 제 10.7조 1항

제기관의 결정 및 절차가 모든 시장 참여자²¹⁾에 대하여 공평하고,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이행되도록 보장할 것²²⁾을 규정하고 있다.

한-중 FTA 제 10.7조 1항은 한-미 FTA 제 14.14조 1문의 내용과 유사하지만, 통신규제기관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통신규제기관이 모든 통신망 공급자들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not accountable to)는 취지와 조금 다르다. 또한 한-중 FTA 제 10.7조 2항의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의 결정 및 절차”에 대해서 한-미 FTA 제 14.14조 2문에서는 “허가,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와의 상호접속, 효율, 그리고 비정부 공중 통신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할당 또는 배분에 관한 결정 및 절차를 포함한 자국의 규제 결정 및 절차”는 예시적 규정을 삽입함으로써 해석의 명확성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 담당자들이 한-중 FTA 제 10.7조 2항과 한-미 FTA 제 14.14조 2문을 같은 의미로 해석할 것을 의도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7. 보편적 서비스 (제 10.8조)

제10.8조 보편적 서비스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지하는 모든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중립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자국의 보편적 서비스 의무가 자국이 정의한 종류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한-중 FTA에는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없으나 한-EU FTA 제 7.27조 아항에서는 “보편적 서비스”를 “당사자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지리적 위치와 관계없이 부담할 수 있는 가격으

21) 한-중 FTA 제 10장 각주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장 참여자”라는 용어는 그 통신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한다.

22) 한-중 FTA 제 10.7조 2항

로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야 하는 서비스의 집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에 대해서는 한-EU FTA를 원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제 10.8조에서 각 당사국들은 “자국이 유지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중립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자국의 보편적 서비스 의무가 자국이 정의한 종류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조항은 한-미 FTA 제 14.15조와 유사한 조항이다. 단, 한-캐나다 FTA 제 11.5조 2문에서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반경쟁적인 것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EU FTA 제 7.34조에서는 각 당사국들이 유지하고자 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의 종류를 정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²³⁾ 그러한 의무가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한 그 자체로 반경쟁적으로 간주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한 의무의 운영은 경쟁에 대하여 중립적이어야 하며, 각 당사자에 의해 정의된 보편적 서비스의 종류를 위해 필요한 것보다 더 부담을 주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²⁴⁾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건대, 보편적 서비스 의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한-중, 한-미, 한-캐나다, 한-EU FTA에 큰 차이는 없으나 문언의 구성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8. 허가 절차 (제 10.9조)

제10.9조 허가 절차

1. 당사국이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허가를 취득하도록 요구할 때, 그 당사국은 다음을 공개한다.

23) 한-EU FTA 제 7.34조 1항

24) 한-EU FTA 제 7.34조 2항

- 가. 자국이 적용하는 모든 허가 기준 및 절차
 - 나. 허가 신청에 관한 결정에 이르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 그리고
 - 다. 발효 중인 모든 허가의 조건
2. 각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허가의 거부, 취소, 갱신 거부 또는 조건 부과 사유를 신청인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일방 당사국이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허가를 취득하도록 요구할 때, 그 당사국은 1) 자국이 적용하는 모든 허가 기준 및 절차; 2) 허가 신청에 관한 결정에 이르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 및 3) 발효 중인 모든 허가의 조건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각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허가 거부·취소·갱신 거부 또는 조건 부과 사유를 신청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한-미 FTA 14.16조와 한-캐나다 FTA 11.3조도 같은 취지의 조항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통신사업 허가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조항을 두고 있다.

9. 희소 통신 자원의 분배 및 이용 (제 10.10조)

제10.10조 희소 통신 자원의 분배 및 이용

1. 각 당사국은 주파수, 번호 및 선로설치권을 포함한 희소 통신 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자국의 절차를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운영한다.
2. 각 당사국은 통신 서비스(특히 공중 통신 서비스를 말한다)와 관련하여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을 공개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특정한 정부 사용을 위하여 분배되거나 할당된 주파수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제공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파를 분배하고 할당하며 주파수를 관리

하는 당사국의 조치는, 그 자체로 제8장(서비스 무역)과 제12장(투자)에 불합치하는 조치는 아니다. 이에 따라, 각 당사국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전파 및 주파수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다만, 그 당사국은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그러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는 현재 및 미래의 수요를 고려하여 주파수 대역을 분배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4. 당사국이 행정적 유인 가격책정, 경매, 비면허 사용 또는 입찰초청 등에 의한 것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장려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전파의 사용과 통신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을 장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공익을 고려하는 투명한 방식으로 비정부 통신 서비스용 전파를 분배하고 할당하도록 노력한다.

주파수, 번호, 선로 설치권 등은 “희소 통신 자원”으로서 한-중 FTA 당사국들은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²⁵⁾ 통신 서비스(특히 공중 통신 서비스)와 관련되어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은 공개되어야 하지만, 특정한 정부 사용을 위하여 분배되거나 할당된 주파수에 대한 세부 내역은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²⁶⁾

또한 전파를 분배하고 할당하며 주파수를 관리하는 당사국의 조치는, 그 자체로 제8장(서비스무역)과 제12장(투자)에 불합치하는 조치는 아니기 때문에 각 당사국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전파 및 주파수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단, 당사국은 한-중 FTA의 그 밖의 규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전파 및 주파수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해야 한다.²⁷⁾

25) 한-중 FTA 제 10.10조 1항

26) 한-중 FTA 제 10.10조 2항

27) 한-중 FTA 제 10.10조 3항

또한, 비정부 통신 서비스용 전파 분배 및 할당 시에는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전파의 사용과 통신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을 장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공익을 고려하는 투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중 양국은 각 당사국이 행정적 유인 가격책정, 경매, 비면허 사용 또는 입찰초청 등에 의한 것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에 의하여 이러한 행위를 장려할 수 있음을 인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²⁸⁾

한-중 FTA 제 10.10조의 규정들은 한-미 FTA 14.17조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또한 한국의 주파수 분배 현황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인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²⁹⁾에 공개되어 있다.

10. 집행 (제 10.11조)

제10.11조 집행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에게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의 의무에 관한 당사국의 조치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2. 그러한 권한은 금전적 벌칙 또는 허가의 취소 등을 포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재를 부과하거나 행정 또는 사법기관을 통하여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한-중 FTA 당사국들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들에게 통신서비스 접근 및 이용, 상호접속, 해저 케이블 시스템 및 경쟁보장장치 관련 의무에 관한 당사국의 조치를 집행할 권한을 부여한다.³⁰⁾ 그러한 권한은 금전적 벌칙 또는 허가의 취소 등을 포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재를 부과하거나 행정 또는 사법기관을 통하여 부과하려는 능력을 포함한다.³¹⁾ 이 조항도 역시 한-미 FTA 제 14.18조, 한-캐나다 FTA 제 11.8

28) 한-중 FTA 제 10.10조 4항

29)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7호, 2015.3.25., 일부개정

30) 한-중 FTA 제 10.11조 1항

31) 한-중 FTA 제 10.11조 2항

조와 유사한 취지의 조항인데, 한-미 FTA와 한-캐나다 FTA의 경우 제재의 예시로 “금전적 벌칙, 구제명령(잠정적 또는 최종적), 시정 명령이나 허가의 수정·정지 또는 취소”³²⁾를 포함하는데 비해 한-중 FTA의 경우 “금전적 벌칙 또는 허가의 취소”로 단순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서 해석상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11. 통신 분쟁 해결 (제 10.12조)

제10.12조 통신 분쟁의 해결

제18.3조(행정절차) 및 제18.4조(재심 및 불복청구)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이의신청

가. 1)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는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의 사안에 관한 조치와 관련하여,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 간 분쟁을 시의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 내 통신규제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2)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허가를 획득한 공급자로서, 그 당사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요청한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는, 그 공급자가 상호접속을 요청한 후 공개적으로 명시된 합리적 기간 내에, 그러한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조건과 요율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신규제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사법적 재심

나.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신의 이익이 당사국의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에 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서비스 공급자는 그 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 당사국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

32) 한-미 FTA 제 14.18조

법당국에 의한 그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한 재심을 받을 수 있다. 어떠한 당사국도, 관련 사법기관이 달리 판정하지 아니하는 한, 사법적 재심의 신청이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근거를 구성하도록 허용하지 아니한다.

한-중 FTA는 제 18.3조 (행정절차) 및 제 18.4조 (재심 및 불복청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중 FTA 협정문상 규정된 사안에 대한 통신 규제기관의 조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통신에 특화된 구제 신청 및 사법적 재심이 규정되어 있다.

구제신청에 관해서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는 통신서비스 접근 및 이용, 상호접속, 해저 케이블 시스템 및 경쟁보장장치 관련 사안에 관한 조치와 관련하여,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 내 통신규제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시의적절하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³³⁾ 또한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허가를 획득한 당사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요청한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는, 그 공급자가 상호접속을 요청한 후 공개적으로 명시된 합리적 기간 내에, 그러한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조건과 요율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신규제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³⁴⁾

또한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신의 이익이 당사국의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에 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서비스 공급자는 그 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법당국에 의한 그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한 재심을 받을 수 있다. 어떠한 당사국도, 관련 사법기관이 달리 판정하지

33) 한-중 FTA 제 10.12조 가 1)

34) 한-중 FTA 제 10.12조 가 2)

아니하는 한, 사법적 재심의 신청이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근거를 구성하도록 허용하지 아니한다.

해당 조항은 한-미 FTA 제 14.19조 가 및 다 항과 유사한 취지의 조항인데, 한-미 FTA나 한-캐나다 FTA와 달리 통신 규제 기관의 결정에 의해 법익을 침해당한 기업이 통신 규제 기관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할 권리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12. 투명성 (제 10.13조)

제10.13조 투명성

제18.1조(공표)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 가. 자국 통신규제기관의 규제 결정이 그러한 결정의 근거를 포함하여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달리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공개되도록 할 것
- 나. 다음을 포함하여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자국의 조치가 공개되도록 할 것
 - 1) 서비스의 요율 및 그 밖의 조건
 - 2)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규격
 - 3)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공중 통신 망에 부착하기 위한 조건
 - 4) 면허요건, 그리고 그 밖의 관련 조치가 있으면, 그러한 조치
 - 5) 접근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또는 표준에 관한 조치의 개정 및 채택, 그리고
 - 6) 사법적 또는 행정적 재심에 관한 절차, 그리고
- 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이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10.4조에 명시된 종류의 접근을 거부하는 모든 결정의 이유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보장한다.

한-중 FTA 제 10.13조는 통신규제기관의 결정 및 규정 제정 관련 의견 수렴 등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이 조항은 한-중 FTA 제 18.1조 (공표) 상 의무에 더해서 통신서비스의 경우 자국 통신규제기관의 규제 결정이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달리 공개되도록 해야 하며,³⁵⁾ 또한 1) 통신 서비스의 효율 및 그 밖의 조건; 2)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규격; 3)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공중 통신 망에 부착하기 위한 조건; 4) 면허요건, 그 밖의 관련 조치가 있으면, 그러한 요건; 5) 접근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또는 표준에 관한 조치의 개정 및 채택; 및 6) 사법적 또는 행정적 재심에 관한 절차를 포함하여 통신망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자국의 조치가 공개되어야 한다.³⁶⁾ 그리고 당사국 당국은 타방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요청에 대하여, 상호접속을 거부하는 모든 결정의 이유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³⁷⁾

한-중 FTA의 투명성 관련 규정은 한-미 FTA 규정과 유사한 취지의 투명성 규정이지만 한-미 FTA에서 규정하는 1) 규범 제정에 관한 충분한 사전 공고와 합리적인 의견제출의 기회; 2)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규범제정에 있어 통신규제기관에 제출된 모든 의견의 공개; 3) 통신규제기관에 제출된 의견에서 제기된 모든 중대하고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자국 통신규제기관이 규범제정 과정에서 응답할 것 등의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다.

35) 한-중 FTA 제 10.13조 가.

36) 한-중 FTA 제 10.13조 나.

37) 한-중 FTA 제 10.13조 다.

13. 기술 및 표준 관련 조치 (제 10.14조)

제10.14조 기술 및 표준에 관한 조치³⁸⁾

1. 어떠한 당사국도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또는 부가서비스의 공급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기술을 선택할 유연성을 갖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또는 부가서비스의 공급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술 또는 표준을 제한하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치는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고안되어야 하며,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는 방식으로 입안, 채택 또는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³⁹⁾

한-중 FTA 제 10.14조는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또는 부가서비스의 공급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기술을 선택할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다.⁴⁰⁾ 단,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고안되는 기술 또는 표준 제한조치는 허락되며, 대신 이러한 조치가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입안, 채택 또는 적용되어서는 안된다.⁴¹⁾ 각주에서 당사국들은 1) 자국의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정의할 권리를 보유하며, 2) 그러한 조치가 관련 국제 표준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반박이 가능하다. 이 조항은

38) 각주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을 제외하고, 이 조는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채택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9) 각주 5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1) 당사국은 자국의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정의할 권리를 보유하며, 2) 그러한 조치가 관련 국제 표준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반박이 가능하다.

40) 한-중 FTA 제 10.14조 1항

41) 한-중 FTA 제 10.14조 2항

한-미 FTA 제 14.21조의 규정을 단순화시켜서 원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제 14.21조에서 무선분야의 공공정책목적은 주파수의 효과적·효율적 이용, 국제표준에 근거한 글로벌 로밍 보장, 법집행,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보호 등으로 명시하였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관련 사업자들에게 다양한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절차적 투명성 및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점 등은 한-중 FTA에서 빠져있다.

14. 업계협약 (제 10.15조)

제10.15조 업계와의 협의

각 당사국은 통신 정책, 규정 및 표준의 개발에 있어 자국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협의를 촉진한다.

한-중 FTA에서는 한-미 FTA나 기타 FTA와 달리 “각 당사국은 통신 정책, 규정 및 표준의 개발에 있어 자국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협의를 촉진”한다는 규정을 도입했다.

15. 국제로밍요금 (제 10.16조)

제10.16조 국제로밍요금

양 당사국은 국제모바일로밍요금 인하를 목적으로 각국의 통신서비스 공급자가 양 당사국 간 국제모바일로밍의 도매요율을 인하하도록 장려한다.

국제로밍요금 관련 조항은 한-중 FTA에만 존재하는 조항으로서, 양 당사국은 국제모바일로밍요금 인하를 목적으로 각국의 통신서비스 공

급자가 양 당사국 간 국제모바일로밍의 도매요율을 인하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참고로 EU의 경우 2007년 이후 Digital Europe Agenda의 일부로서 EU 회원국간 국제모바일 로밍 요금의 상한선을 책정하고 있다.⁴²⁾ 한-중 간에도 모바일로밍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FTA를 근거로 유사한 로밍요금 규제가 입법될지의 여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16. 국제기구와의 관계 (제 10.17조)

제10.17조 국제기구와의 관계

양 당사국은 통신 망 및 서비스의 국제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을 위한 국제 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 전기통신연합과 국제표준화기구를 포함하여, 관련 국제기구의 작업을 통하여 이러한 표준을 증진할 것을 약속한다.

한-중 FTA는 한-캐나다 FTA 11.14조와 마찬가지로 양 당사국이 “통신 망 및 서비스의 국제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을 위한 국제 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 전기통신연합과 국제표준화기구를 포함하여,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작업을 통하여 이러한 표준을 증진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17. 정의(제10.18조)

제5절 정의 제10.18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42)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중 “Access and connectivity”의 “Roaming” 내용,
<http://ec.europa.eu/digital-agenda/en/roaming>(최종방문일자 : 2015.9.1.)

상용 이동 서비스란 이동무선수단을 통하여 제공되는 공중 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원가지향이란 원가에 기초함을 말하며, 합리적인 이윤을 포함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설비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서로 다른 비용산출방법을 수반할 수 있다.

최종이용자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 외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한 공중 통신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 또는 가입자를 말한다.

필수 설비란 다음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 가. 단일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하여 배타적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되는 것, 그리고
- 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하게 대체할 수 없는 것

상호접속이란 하나의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가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와 통신을 하고 다른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전용회선이란 이용자 또는 이용자들의 전용 사용 또는 이용가능성을 위하여 따로 둔 둘 이상의 지정된 지점 간 통신 설비를 말한다.

지배적 사업자란 다음의 결과로 공중 통신 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 참가조건(가격 및 공급에 관한 것을 말한다)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를 말한다.

- 가. 필수 설비에 대한 지배, 또는
- 나.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

비차별적이란 동종의 상황에서 동종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그 밖의 모든 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개인정보란 전자기적 수단에 의하여 전송된 것으로서 자연인을 식별하거나 개인 사생활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

공중 통신 망이란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통신 기반을 말한다.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란 공중 통신 망, 또는 공중 통신 서비스, 또는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를 말한다.

공중 통신 서비스란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한 서비스는 특히, 고객의 정보를 형태나 내용 면에서 종단간의 변경 없이 둘 이상의 지점 간의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를 전형적으로 수반하는 전화 및 데이터 전송을 포함할 수 있으며, 부가 서비스는 제외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란 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을 말하며,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한다.

통신이란 모든 전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의 전송 및 수신을 말한다.

통신규제기관이란 통신의 규제를 담당하는 중앙정부의 모든 기관 또는 기관들을 말한다.

이용자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최종이용자 또는 공급자를 말한다. 그리고

부가 서비스란 제고된 기능을 통하여 통신 서비스에 가치를 추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한국의 경우,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정의된 서비스를 말한다. 중국의 경우,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전신조례」 제8조 및 「전산업분류목록」에 정의된 서비스를 말한다.

제 3 절 소 결

한-중 FTA의 규정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개방 수준은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 규정에서는 양국의 현실을

감안하여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유연성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의 통신 챕터는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한-미 FTA와 유사한 내용의 규정을 담고 있지만, 각 조항을 상세히 살펴보면 한-미 FTA보다 규정이 단순화되어 있고, 재판매, (한-미 FTA 제 14.6조), 망 요소 세분화 (한-미 FTA 제 14.7조), 규제적용 면제 (한-미 FTA 제 14.22조) 등의 규정은 한-중 FTA에는 빠져있다. 또한 업계와의 협의 (한-중 FTA 제 10.15조) 및 국제로밍 (한-중 FTA 제 10.16조) 관련 조항은 한-미, 한-캐나다, 한-EU FTA 어디에도 없는 한-중 FTA에 특유한 조항으로서, 이 조항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2015.3)

이한영, “방송통신분야 중국 FTA의 특징 및 시사점” 관세학회지 12(2), 2011.5

<http://ec.europa.eu/digital-agenda/en/roaming>

제 8 장 자연인의 이동

제 1 절 조문내용 분석

1. 정의(제1.1조)

제11장 자연인의 이동

제11.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출입국 조치란 외국 국민의 입국 및 출국, 체류 및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 규정, 절차, 요건 또는 관행을 말한다.

당사국의 자연인이란 제8장(서비스 무역)에 정의된 당사국의 자연인을 말한다. 그리고

일시 입국이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연인이 영구적 거주의 의도 없이 그리고 그들의 각 사업목적과 분명하게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을 말한다.

2. 일반 원칙 (제 11.2조)

제11.2조 일반 원칙

1. 이 장은 양 당사국 간의 특혜 무역 관계,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자연인의 일시 입국을 촉진하고 부속서 11-가에 따라 일시 입국에 대한 투명한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려는 양 당사국의 공동의 희망, 그리고 국경 안전을 보장하고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국내 노동력과 영구적 고용을 보호할 필요성을 반영한다.
2. 이 장은 다른 쪽 당사국의 고용 시장에 접근하려는 한쪽 당사국의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국적, 시민권, 거주 또는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고용에 대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지역무역협정 체결시 자연인의 일시 입국 원활화는 경제교류 및 인적 교류 원활화를 위해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조치 중의 하나이다. 자연인의 일시 이동과 관련된 규정을 별도의 장으로 규정한 FTA는 기업인¹⁾의 일시 입국을 규정한 한-캐나다 FTA 제 12장이 대표적이다. 또한 한-중 FTA에서도 제 11장에 기업인 뿐 아니라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내용을 비교적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자연인의 이동 관련 규정은 양 당사국 간의 특혜 무역 관계,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자연인의 일시 입국을 촉진하고 일시 입국에 대한 투명한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며, 국경 안전을 보장하고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국내 노동력과 영구적 고용을 보호할 필요성을 반영함을 원칙으로 한다.²⁾ 그러나 본 장의 규정은 비자 원활화 및 일시 입국에 적용될 뿐이고, 한쪽 당사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고용 시장에 접근하려는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국적, 시민권, 거주 또는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고용에 대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³⁾ 한-중 FTA 제 11.2조 2항의 규정은 한-캐나다 FTA 제 12.1조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규정으로서, 중국과의 인적 교류 증대의 필요성 및 고용시장 안정 사이에서의 한국의 고민이 어느 정도 반영된 규정으로 보인다.

3. 일반적 의무 (제 11.3조)

제11.3조 일반 의무

1. 한쪽 당사국은 제11.2조에 따라 이 장과 관련된 자국의 조치를 적용하고 특히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발생하는 혜택을 부당

1) 한-캐나다 FTA 제 12.8조: 기업인이란 상품 무역, 서비스 공급 또는 투자 활동의 수행에 종사하는 당사국의 국민을 의미한다.

2) 한-중 FTA 제 11.2조 1항

3) 한-중 FTA 제 11.2조 2항

하게 무효화 또는 침해하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 또는 투자활동의 수행을 지연하지 아니하도록 그러한 조치를 신속하게 적용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자국 국경의 일체성을 보호하고 자국의 국경을 통과하는 자연인의 질서 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당사국이 자국의 영역으로 자연인이 입국하거나 자국의 영역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것을 규제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발생하는 혜택을 부당하게 무효화 또는 침해하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 또는 투자활동의 수행을 지연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⁴⁾

양 당사국은 자연인의 이동 관련 조치가 상품 및 서비스 교역과 투자 활동의 수행을 지연하거나 다른 쪽 당사국에게 발생하는 이익을 무효화 하거나 손상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적용해야 한다.⁵⁾ 또한 본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의 영역으로 자연인이 입국하거나 자국의 영역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것을 규제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⁶⁾ 특히 당사국이 자연인에 대하여 비자를 요구한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쪽 당사국에게 발생하는 혜택을 부당하게 무효화 또는 침해하거나 이 협정에 따른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 또는 투자활동의 수행을 지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는 점⁷⁾을 명시함으로써, 외국인의 입국을 규제할 수 있는 당사국의 권리가 한-중 FTA를 통해 침해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의 규정은 한-캐나다 FTA 제 12.2조에서도 발견되는데, 한-캐나다 FTA 제 12.2조 3문은

4) 각주 1 : 자연인에 대하여 비자를 요구한다는 사실만으로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발생하는 혜택을 부당하게 무효화 또는 침해하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 또는 투자활동의 수행을 지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5) 한-중 FTA 제 11.3조 1항

6) 한-중 FTA 제 11.3조 2항

7) 한-중 FTA 제 11장 각주 1

“비자 또는 기업인이나 자연인의 입국 또는 노동을 허가하는 그 밖의 서류를 요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협정에 따른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 또는 활동의 수행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지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서 외국인의 입국 규제에 대한 당사국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4. 비자 원활화 (제 11.4조, 부속서 11-나)

제11.4조 비자원활화

1. 양 당사국은 비자의 발급 및 연장에 관한 절차를 원활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이 조에 관한 구체적 약속은 부속서 11-나에 규정된다.

한-중 FTA 양 당사국은 비자 원활화를 위하여 상호 노력할 것에 합의하였다.⁸⁾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한-중 양국은 기업내 전근자⁹⁾와 투자자의 안정성 및 편리성 보장 및 상용 방문자에 대한 복수입국비자 발급을 원활히 하는데 합의했다.

기업내 전근자와 투자자의 경우 한국은 한국에서 고용된 중국의 기업 내 전근자나 한국의 영역 내에 설립된 사업체가 있는 중국의 투자자로서 사업체의 운영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외국인카드시스템에 따른 최초 체류를 1 년에서 2 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약속했으며, 한국

8) 한-중 FTA 제 11.4조 1항

9) 기업내 전근자: 한국의 경우 중국에 상업적 주재를 하는 한국 서비스 공급자 또는 투자자의 피고용인에 해당하는 관리자, 임원 또는 전문가로서 한국 기업 또는 중국 영역의 외국 투자 기업의 고위 피고용인으로 정의되는 관리자, 임원 그리고 전문가로서 중국 영역에 있는 대표사무소, 지점 또는 자회사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자는 3 년까지의 기간 동안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됨. 중국의 경우 한국 영역에 설립된 자회사, 지점 또는 지정된 계열사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의 피고용인으로서, 일시 입국의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있었으며, 임원, 관리자, 또는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로서 3 년까지의 기간 동안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되는 자.

은 한국의 외국인카드시스템에 따른 체류 연장 절차를 원활하게 하는 것을 약속했다.¹⁰⁾ 중국의 경우 중국에서 고용된 한국의 기업 내 전근자나 중국의 영역 내에 설립된 사업체가 있는 한국의 투자자로서 사업체의 운영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증명서와 취업거주허가시스템에 따른 최초 체류를 1 년에서 2 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약속했으며, 중국은 자국의 근로증명서와 취업거주허가시스템에 따른 체류 연장 절차를 원활하게 하는 것을 약속했다.¹¹⁾

또한 한국과 중국은 양 당사국 국민들 중 자격있는 신청인에게 1 년 동안 유효하고 매회 30 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체류를 위한 복수 입국비자를 발급하기로 합의했다. 단, 이 경우 “자격있는 신청인”은 이전의 경우에 불법적인 기록 없이 한국 또는 중국을 방문하고 한국 또는 중국에 귀국한 인력을 의미하며, 그 인력의 두 번째 신청에 대하여 상기의 복수 입국비자가 발급되는 것임을 확인했다.¹²⁾

5. 투자 원활화를 위한 특혜 약정 (부속서 11-다)

한-중 양측은 각 당사국의 필요에 기초하여, 특혜 약정의 체결을 통하여 서로의 각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그리고 자국의 국내 노동시장을 저해함이 없이 상호 투자 및 인력 이동을 장려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특혜 약정의 대상이 되는 인력의 범위는 상용 방문자¹³⁾¹⁴⁾, 계약

10) 한-중 FTA 부속서 11-나 1항

11) 한-중 FTA 부속서 11-나 1항

12) 한-중 FTA 부속서 11-나 2항

13) 한국의 상용 방문자:

- 가. 한국 서비스 공급자의 판매 대리인으로서 그 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서비스 판매 협상의 목적으로 중국에 일시 입국하고자 하는 서비스 판매자로서 그러한 대리인이 일반 공중에 대한 직접 판매에 종사하거나, 서비스 공급에 직접적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한국의 투자자 또는 한국의 투자자의 대리인으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그 투자의 상업적 주체의 설립, 확장, 감독 또는 처분을 위해 중국에 일시 입국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서비스 공급자, 그리고 기업 내 전근자를 포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특혜 약정의 내용은 추후에 논의될 예정이다.

6. 일시 입국 허용 (제 11.5조, 부속서 11-가)

제11.5조 일시 입국의 허용

1. 양 당사국은 자연인의 일시 입국에 관하여 약속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약속과 그 약속을 규율하는 조건들은 부속서 11-가에 기술된다.
2. 한쪽 당사국이 제1항에 따른 약속을 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약속에 규정된 대로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의 일시 입국을 허용한다. 다만, 그러한 자연인은 모든 적용 가능한 출입국 조치에 따라 달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 한쪽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발생하는 혜택을 부당하게 무효화 또는 침해하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 또는 투자 활동의 수행을 지연하지 아니하고, 통상 적으로 제시되는 행정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자연인의 일시 입국 신청 처리를 위한 수수료 제한한다.
4. 이 장에 따라 허용되는 일시 입국은 그 일시 입국을 허가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시행 중인 구체적인 법과 규정에 따라 직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대체 하지 아니한다.

다. 상품의 판매를 협상하기 위하여 중국 영역에 일시 입국 하고자 하는 상품 판매자로서, 그러한 협상이 일반 공중에 대한 직접 판매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14) 중국의 상용 방문자:

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

- 1) 서비스 판매자로서 서비스 판매를 협상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판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한국 영역에 입국하는 자
- 2) 상품의 판매를 협상하기 위하여 일시 입국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그러한 협상이 일반 공중에 대한 직접 판매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 3)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피고용인으로서 제6항에 정의된 관리자, 임원 또는 전문가이고 투자를 설립하기 위하여 일시 입국을 하고자 하는 자, 그리고

나. 제안된 영업 활동을 위한 보수의 일차적 소득원, 주된 영업소 및 실제 이윤 발생 장소가 적어도 대부분 한국 밖에 있는 자

한-중 FTA 양 당사국은 부속서 11-가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서 자연인의 일시 입국에 대한 약속을 할 수 있다.¹⁵⁾ 한쪽 당사국이 부속서 11-가에 명시된 조건에 따른 약속을 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약속에 규정된 대로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의 일시 입국을 허용한다. 다만, 그러한 자연인은 모든 적용가능한 출입국 조치에 따라 달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¹⁶⁾ 자연인의 일시 입국 처리를 위한 수수료는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제한되며,¹⁷⁾ 본 장에 따라 허용되는 일시 입국은 그 일시 입국을 허가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직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대체하지 않는다.¹⁸⁾

부속서 11-가는 양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 입국하고자 하는 한국 또는 중국의 자연인에 대하여, 입국 전 적절한 출입국 절차를 취득할 것을 요구한다.¹⁹⁾ 단, 한국의 경우 진행 중인 노동 분쟁에 연관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노동 분쟁의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중국 자연인에 대하여 일시 입국의 허용을 거부할 수 있다.²⁰⁾ 한국은 중국의 상용 방문자, 기업내 전근자, 계약 서비스 공급자 등에 대해서 부속서 11-가 제 1절 구체적인 일시 입국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은 한국의 상용 방문자 및 서비스 판매자, 기업내 전근자, 계약서비스 공급자 등에 대한 구체적 일시 입국의 요건을 부속서 11-가 제 2절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떤 서비스 공급자가 계

15) 한-중 FTA 제 11.5조 1항

16) 한-중 FTA 제 11.5조 2항

17) 한-중 FTA 제 11.5조 3항

18) 한-중 FTA 제 11.5조 4항

19) 한-중 FTA 부속서 11-가 제 1절 1항, 제 2절 1항

20) 한-중 FTA 부속서 11-가 제 1절 2항; 한-캐나다 FTA 제 12.2조에서는 진행 중인 노동분쟁에 연관되고 그러한 노동분쟁의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이 공히 일시입국의 거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중 FTA에서는 한국에게만 인정하고 있다. 또한 한-캐나다 FTA에서는 위의 사유로 노동 허가 또는 승인 거부시에는 거절 사유를 해당 기업에 통지해야 한다.

약서비스 공급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한-중 FTA 부속서 11-가-1에서 규정하고 있다.

7. 투명성 (제 11.6조)

제11.6조 투명성

1. 제18.1조(공표)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 가. 이 장과 관련된 자국의 조치에 대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할 자료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 나. 이 협정 발효일 후 6개월 내에,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이 장에 따른 일시 입국 요건에 대한 통합 문서 형태의 설명자료를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준비, 공표하고 자국의 영역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 다. 자연인의 일시 입국에 영향을 주는 출입국 조치의 수정 또는 개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수정 또는 개정이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이 그것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즉시 공표되고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2. 제18.1조(공표)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자연인의 일시 입국과 관련된 신청 및 절차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설립하거나 유지한다.
3.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그 신청의 처리상황에 관한 정보나 신청에 대한 결정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한-중 FTA의 투명성 관련 규정은 한-중 FTA 제 18.1조 (공표)에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인의 이동과 관련해서 양 당사국은 추가적인 투명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각 당사국은 본 장과 관련된 자국의 조치에 대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그러한 자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해야 한다.²¹⁾ 또한 이 협정 발효일

21) 한-중 FTA 제 11.6조 1항 가

후 6 개월 내에, 적용되는 법과 규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이 장에 따른 일시 입국 요건에 대한 통합 문서 형태의 설명자료를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준비, 공표하고 자국의 영역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²²⁾ 또한 한쪽 당사국에서 자연인의 일시 입국에 영향을 주는 출입국 조치의 수정 또는 개정이 있을 경우 그러한 수정 또는 개정을 즉시 공표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이 그것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²³⁾

또한 각 당사국은 자연인의 일시 입국과 관련된 신청 및 절차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설립하거나 유지해야 한다.²⁴⁾ 그리고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그 신청의 처리상황에 관한 정보나 신청에 대한 결정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²⁵⁾

8.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위원회 (제 11.7조)

제11.7조 자연인의이동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출입국 공무원을 포함한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자연인의이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고 위원회는 어느 한쪽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고려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가. 관련 법 및 규정에 관한 정보교환
 - 나. 양 당사국 간 자연인의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의 확인 및 권고

22) 한-중 FTA 제 11.6조 1항 나

23) 한-중 FTA 제 11.6조 1항 다

24) 한-중 FTA 제 11.6조 2항

25) 한-중 FTA 제 11.6조 3항

다. 당사국이 관심이 있는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그 밖의 사안의 고려, 그리고
라.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에 대한 검토

양국은 관련 법 및 규정에 관한 정보교환, 양 당사국간 자연인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의 확인 및 권고, 당사국이 관심이 있는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그 밖의 사안의 고려 및 본 장의 이행 및 운영에 대한 검토를 위해 양국 이민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자연인의 이동 위원회 설립에 합의했다.²⁶⁾ 한편, 한-캐나다 FTA에서는 양국 이민 당국들을 “접촉선 (contact point)”로 지명하여 이들이 한국과 캐나다 간에 상기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최소 1년에 1번은 회합하도록 하고 있다.²⁷⁾

9. 분쟁해결 (제 11.8조)

제11.8조 분쟁해결

1. 양 당사국의 관련 당국은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호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양 당사국이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으로부터 발생된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합의에 이를 수 없는 경우, 제20장(분쟁해결)이 그 사안에 적용된다.
3.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일시 입국 허용의 거부에 대하여 제20장(분쟁해결)에 따른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 가. 그 사안이 반복된 관행과 관련되는 경우, 그리고
 - 나. 그 자연인이 그 특정 사안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행정적 구제를 완료하였을 경우

26) 한-중 FTA 제 11.7조 1항, 2항

27) 한-캐나다 FTA 제 12.5조

4. 권한 있는 당국이 행정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1년 이내에 그 사안에 대하여 최종 판정을 내리지 아니하였고, 판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 그 자연인이 야기한 지체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항나호에 언급된 구제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한, 중 양국은 본 장의 이행 및 운영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호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지만,²⁸⁾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으로부터 발생된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합의에 이를 수 없는 경우, 제 20 장(분쟁해결)의 절차를 그 사안에 적용하는데 합의했다.²⁹⁾ 다만, 본 장에 따른 일시입국 허용 거절에 관해, 1) 그 사항이 반복된 관행(pattern of practice)과 관련이 있고, 2) 해당당사국의 자연인이 가능한 모든 행정적 구제절차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만 이 협정의 분쟁해결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³⁰⁾ 또한, 권한 있는 당국이 행정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1년 내에 그 사안에 대하여 최종 판정을

내리지 아니하였고, 판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 그 자연인이 야기한 지체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기한 행정적 구제절차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³¹⁾

10. 다른 장과의 관계 (제 11.9조)

제11.9조 다른 장과의 관계

1. 이 장, 제1장(최초규정 및 정의), 제20장(분쟁해결), 제21장(예외) 및 제22장(최종규정)과 제18.1조(공표)부터 제18.3조(행정절차)까지의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의 출입국 조치에 대하여 당사국에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는

28) 한-중 FTA 제 11.8조 1항

29) 한-중 FTA 제 11.8조 2항

30) 한-중 FTA 제 11.8조 3항

31) 한-중 FTA 제 11.8조 4항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정의 다른 장 및 그 부속서에 대하여 의무나 약속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당사국의 출입국 조치와 관련해서 한-중 FTA는 본 장, 제 1 장(최초 규정 및 정의), 제 20 장(분쟁해결), 제 21 장(예외) 및 제 22 장(최종 규정)과 제 18.1 조(공표)부터 제 18.3 조(행정절차)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에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³²⁾ 또한 본 장의 어떠한 규정도 한-중 FTA 다른 장 및 그 부속서에 의무나 약속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³³⁾

제 2 절 소 결

한-중 FTA의 자연인의 일시 입국과 관련된 규정은 한-중 간의 인적 교류 확대와 함께 불법 체류자를 방지하고자 하는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노력이 혼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법상 외국인의 입국 규제는 국가의 온전한 전속 관할권으로 인정되지만 한-중 간의 경제 관계가 긴밀해지고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는 현실에서 한국과 중국 양측은 경제 활동 및 투자 진흥에 도움이 되는 자연인의 일시 입국을 진흥하되, 노동 허가 부여 또는 기타 이민 관련 내용은 한-중 FTA의 규율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부속서를 검토한 결과 한-중 FTA에서 허용하는 자연인의 일시 입국 대상 폭은 한-캐나다 FTA보다 좁은데, 이는 한국, 캐나다, 중국 각국의 이민 정책의 차이와 국경 규제 수요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32) 한-중 FTA 제 11.9조 1항

33) 한-중 FTA 제 11.9조 2항

제9장 투자

제1절 한-중 투자챕터의 의의 및 비교법적 고찰

1. 개요

2015년 6월 1일 한국과 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한-중 FTA')이 체결되었다. 그 동안 양국이 협상 과정에서 포괄적이고 개방 수준이 높은 FTA 체결을 언급한 점에 비추어보면 최종 결과는 한국측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한-중 FTA 투자챕터 ('한-중 투자챕터')의 경우 한국은 한국-미국 FTA (KORUS)나 한-중 -일 3국투자협정 플러스 수준의 높은 투자자유화를 목표로 했던 한국으로서는¹⁾, 2007년 한국-중국투자협정 ('한-중 투자협정') 수준의 제한적 투자자유화에 머문 한-중 투자챕터는 다소 실망스러운 것임에는 틀림 없을 것이다. 하지만 후술하듯이 지금까지의 중국의 국제투자조약 체결 관행이 양자간 투자협정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의 틀에서 관련 FTA내의 투자챕터를 타결시킨 점을 감안하면 예측 못할 결과는 아니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위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한-중 투자챕터의 비교법적 분석 및 평가와 주요 조문의 축조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한-중 투자챕터의 비교법적 분석을 위해 아래에서는 ① 2000년대 이후 나타나고 있는 무역과 투자의 혼합적 규범체계로서의 FTA내 투자규범의 의의와 ② 한국이 중국 등과 체결한 주요 국제투자협정, 특히 2007년 개정 한-중 투자협정과 2012년 한-중 -일 간의 3국투자협정과²⁾ ③ BIT와 FTA내의 투자규범을 포함하여 중국이 기체결한 국제투

1) 산업자원통상부, 한-중 FTA 설명자료 (2014.11), p. 1.

자협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주요 조문의 비교법적 축조 분석은 ‘비차별의무’, ‘투자자유화를 포함하는 시장접근’, ‘최소기준대우’, ‘이행요건’, ‘투명성’, ‘비교역적 요소’, ‘투자분쟁해결제도’ 등의 7 가지 요소를 중점 대상으로 진행할 것이다.

2. 국제투자협정의 변화와 의의

2000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FTA는 국가간 또는 관세지역간의 무역에 관한 포괄적 협정을 지칭하는데 국제통상규범상 비차별의무의 하나인 최혜국대우의무에 대한 예외로서 규율된다. FTA의 대상은 시간적으로 보면 전통적인 대상인 상품에서 시작되어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으로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통상과 긴밀한 관련성을 갖는 투자규범까지 규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중 투자챕터의 효과적 분석을 위해서 최근 FTA에서 투자에 관한 별도의 챕터를 두는 배경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FTA내의 투자규범의 규정은 통상과 투자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국제경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³⁾ 이것은 특히 다국적기업의 생산지가 해외직접투자 (FDI) 등을 통해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공급사슬의 확대와 궤를 같이한다. 둘째로, 투자만을 규율하는 BIT와 달리 지재권이나 경쟁 등과 같은 BIT 플러스적인 조항을 규정하는 FTA를 통해 FDI를 상대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경험적 분석이 유력하다.⁴⁾ 즉, 투자와 관련된 제반 제도도 같이 규율하는 포

2) 2007년 개정협정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개정)’이고 2007.12.1. 발효되었고 (한국), 2012년 3국투자협정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및 일본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원활화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다. 자세한 협정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참조.

3)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2, p. 86.

4) S. Miroudot, “Investment”, in J.-P. Chauffour & J.-C. Maur (eds.),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Policies for Development* (World Bank, 2011), p. 300

괄적 FTA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투자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3. 한-중 투자보장협정 및 3국투자협정

2015년 8월 현재 한국이 체결한 FTA는 15개로 그 중 11개가 발효 중이며 체결된 15개 중 12개의 FTA에 투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⁵⁾ 또한 BIT는 98개가 체결되어 그 중 83개가 현재 발효 중이다.⁶⁾ 이중 한-중 간의 투자협정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것은 2007년 개정된 한-중 투자보장협정과 2012년 체결된 한국·중국·일본간의 3국투자협정이므로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1992년 체결되어 2007년 개정된 한-중 투자협정은 총 1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용어 정의, 투자유치국의 의무(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수용시 보상의무, 송금보장의무), 투자분쟁의 국가간 분쟁절차, 투자분쟁의 ISD, 투명성, 기타 조항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먼저 ‘투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자산’으로 규정되어 있고 ‘투자자’로 인정되는 자연인의 ‘국적’을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법인의 정의에서 해당 국가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는 1992년 협정상 요건을 삭제하였다(1조). 이것은 2003년 발효된 한일투자협정이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투자도 포함하고 있고, 투자자로 인정되는 자연인의 국적 결정은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1조) 비교된다. ‘투자자에 대한 대우’와 관련하여서 개정 협정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도입하여 명시하였다(2조 2항). 또한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인 이행의무금지도 규정되었는데(2조 3항), ‘차별적’의 의미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차별도 포함될 것인가의 논란이 있다. 또한 이 의무에 부합

5) 관련 협정문 및 정보는 <http://fta.go.kr/main> 참조

6) UNCTAD, BITs, <http://investmentpolicyhub.unctad.org/IIA/CountryBits/111#iiaInnerMenu> (검색일: 2015.08.25.)

하지 않는 중국의 현행 조치는 내국민대우 위반 조치와 마찬가지로 점진적 철폐의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3조 2항). 수용 및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 기준” (Hull formula) 이 개정 협정에 반영되어 있고 (4조), 직접적인 국유화 또는 수용과 함께 ‘간접적인’ 수용 개념을 규정하여 사실상 국유화 또는 수용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정도의 투자가치 침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문화 하였다. 2007년 개정협정에서 추가된 사항 중 하나인 투명성 의무는, 투자유치국이 투자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 사법적 결정 등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11조). 또한 현재 중국의 행정체제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것으로 계약당사자인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이 협정상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10조 4항). 절차적으로 국가간 분쟁해결제도 뿐만 아니라 (8조) 투자자와 일방 당사국간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9조)도 규정되어 있는데 한국-미국 FTA와 달리 국제 중재에 회부하기 전 분쟁에 관련된 계약당사자는 투자자에게 그 계약당사자의 법률에 따른 국내행정검토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9.3조).

2012년 한국·중국·일본간에 체결된 3국투자협정은 전체적으로 ‘투자 설립권’제한 (2.2조)이나 비합치조치의 잔존(3조 2항), 이행요건 금지의 제한적 적용 (7조) 등을 통해 투자유치국의 규제권을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세금이나 핵심적 안보 이익에 관한 예외의 규정 및 건전성 조치나 자유송금에 대한 임시조치허용 등을 통해 투자유치국의 정책설정 및 실행권을 넓게 인정하였고, 지재권의 국내집행에 관한 상세 규정(9조)을 두고 있다. 또한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대우와 관련하여 기체결된 투자협정과 3국협정 중 보다 유리한 협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5조).

4. 중국의 기체결 투자협정

2015년 8월 현재 중국이 기체결한 국제투자협정을 보면 145개의 BIT와 11개의 PTA가 있다.⁷⁾ 먼저 BIT는 흔히 세대별로 구별하여 3세대까지 구분되고 정책적인 배경을 보면 개발도상국과의 외교적 유대강화를 배경으로 하는 경우와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증가 추세에 따라 투자보호를 강화하려는 유형이 그것이다.⁸⁾ 규범적인 측면에서 3세대로 구분해 보면 ①유럽형 BIT 모델로 제한적인 내국민대우 의무를 규정하였고 수용에 대한 배상 금액에 관해서만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ISD)를 인정한 1세대 BITs (1980-1998) ② 유럽형 BIT 모델로 내국민대우를 국내법 (개발도상국)에 따라 인정하든가 비합치조치와 함께 인정하고 있는 2세대 모델 (1998-현재), 그리고 ③ 2007년 이후 나타나고 있는 형태로 NAFTA를 모델로 하여 국제관습법에 따른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인정하고, “같은 상황에서”의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인정, ISD의 경우 MFN 불인정, 설립전 MFN 대우 인정, 그리고 재정위기시 송금자유 제한 인정 등의 NAFTA 스타일의 3세대 BITs 이다. (2007-현재).⁹⁾

또 하나의 국제투자협정 유형인 중국의 FTA내의 투자챕터(Free Trade Investment Agreement: FTIC)는 2001년 WTO 가입 이후 활성화되었고 그 성격상 BIT보다는 포괄적이고 투자자유화의 정도가 높아졌다. 먼저 중국이 체결한 통상과 투자를 포함하는 최초의 포괄적 양자협정인 2006년 중국-파키스탄 FTIC는 중국의 최초의 실질적 투자규정이라는 의의가 있는 협정으로 평가된다.¹⁰⁾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중

7) 중국 상무부 FTA 네트워크 (http://fta.mofcom.gov.cn/english/fta_qianshu.shtml) 참조

8) A. Berger, “Investment Rules in Chinese Preferential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 German Development Institute Discussion Paper (2013.07), p. 6.

9) Berger, *id.*, p.7.

10) G. Wang, “China’s FTAs: Legal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The American Journal*

국-파키스탄 BIT에서는 규정되지 않았던 내국민대우(48조)와 모든 투자분쟁에 대한 ISD 적용(52조)이 규정되었다. 또한 중국이 천연자원 확보를 위해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인 중국-페루간 FTIA는 나프타유형의 규정들을 많이 수용한 협정으로 평가된다.¹¹⁾

중국이 OECD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투자협정인 뉴질랜드와의 FTIA는 중국이 현재까지 체결한 투자협정 중 가장 구체적이고 투자보호 수준이 높은 협정으로 평가된다. 먼저 투자 대상을 포괄적 자산으로 규정하여(135조) 국내법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투자와 그 보호를 인정하고 있고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의 적용을 보다 예측가능하게 하기 위해 NAFTA 접근방식으로 볼 수 있는 “같은 상황에서” (in like circumstances) 라는 표현을 첨부하였다. 다음으로 ‘간접수용’ 등의 내용을 명확화하여 투자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면서 동시에 투자유치국의 규제권 또한 명확화 하였다. 마지막으로 동 투자협정은 중국이 기 체결한 FTA중에서는 가장 상세한 ISD를 규정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의 투자에 관한 국제규범은 BIT와 FTA내의 투자협정을 통해 구체화되었고 양자간의 관계를 보면 관련 시기의 BIT 범위에서 FTA내의 투자챕터가 규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중 투자챕터를 중국이 체결한 가장 높은 수준의 BIT인 2013년 중국-캐나다 BIT와 현대투자규범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인 ‘비차별의무’, ‘투자자유화를 포함하는 시장접근’, ‘최소기준대우’, ‘이행요건’, ‘투명성’, ‘비교역적 요소’, ‘투자분쟁해결제도’ 등의 7가지 요소에 따라 비교해보면 그 수준이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을 2장에서 한-중 투자챕터의 주요 조문에 관한 축조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of International Law, Vol. 105, No. 3 (2011), p. 498.

11) Berger, *id.*, p. 21.

제 2 절 한-중 투자챕터의 비교법적 逐條 분석

1. 한-중 투자챕터 개관

한-중 투자챕터는 총 19개 조문과 3개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다. 전형적인 투자보호규정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국이 지금까지 체결해 온 투자협정 및 FTA와 마찬가지로 설립후 단계의 투자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한-중 FTA는 1단계로서 투자보호조항으로 협정문을 구성한 것으로, 2단계로서 향후 서비스 챕터와 함께 후속 협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본 장에서는 한-중 투자챕터를 3국 투자협정과 KORUS 투자챕터의 주요 실체 조항(투자/투자자의 정의, 내국민대우, 비합치조치, 최혜국대우, 최소기준대우, 이행요건금지, 투명성, 환경) 및 투자자-국가분쟁 해결제도를 중심으로 비교·검토해본다.

2. 주요 협정과 조항별 비교

(1) 투자/투자자의 정의

일반적으로 투자협정이나 FTA 투자챕터에서 투자는 자산(asset)에 기반하여 광범위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중재사건을 통해 그 범위가 구체화되는 경향이 있다.¹²⁾ 대체로 투자의 정의는 그 대상을 한정적·폐쇄적으로 열거하는지, 예시적·개방적으로 열거하는지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는데, 한-중 투자챕터, 3국투자협정 및 KORUS 모두 투자의 유형으로서 ‘다음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예시적인 목록을 사용하면서 개방적으로 모든 자

12) UNCTAD Series on Issu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II, Scope and Definition, 2011. pp.5-6.

산을 포함하고 있다. 3개 협정이 모두 투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유형의 자산을 열거하고 있는데, 한-중 투자챕터와 3국투자협정의 투자의 유형은 거의 동일하고, KORUS 투자챕터의 투자유형도 크게 다르지는 않으며, 각주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표 2-9-1> 한-중 투자챕터와 주요 협정의 투자의 정의

한-중 투자챕터	3국투자협정	KORUS
<p>제12.1조</p> <p>투자란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종류의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은 투자의 특징을 가진 것을 말한다. 투자가 취할 수 있는 형태는 다음을 포함한다.</p> <p>1) 기업과 기업의 지점</p> <p>2) 주식, 증권 또는 그 밖의 형태의 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p> <p>3) 채권, 회사채, 대부 및 그 밖의 형태의 부채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p>	<p>제1조</p> <p>(1) “투자”란 자본 혹은 다른 재원의 투입, 수익 혹은 이윤의 기대 또는 위험의 부담과 같이 투자의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투자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한다. 투자의 유형은 다음을 포함한다.</p> <p>가. 기업과 기업의 지점</p> <p>나. 지분, 주식 또는 기업에 대한 그 밖의 형태의 자본 참여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p> <p>다. 채권, 회사채, 대부금 및 그 밖의 형태의 부채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p> <p>라. 완성품 인도, 건설, 경영, 생산 또는 수익공</p>	<p>제11.28조</p> <p>투자라 함은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 투자의 특징을 가진 것을 말한다. 투자가 취할 수 있는 형태는 다음을 포함한다.</p> <p>가. 기업</p> <p>나. 주식, 증권과 그 밖의 형태의 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p> <p>다. 채권, 회사채, 그 밖의 채무증서와 대부</p> <p>라. 선물, 옵션과 그 밖의 파생상품</p>

한-중 투자챗터	3국투자협정	KORUS
<p>4) 완성품 인도, 건설, 경영, 생산 또는 수익배분 계약을 포함한 계약에 따른 권리</p> <p>5) 투자와 관련하여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계약에 따른 금전청구권 및 이행청구권</p> <p>6)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특허권 및 실용신안, 상표, 산업디자인,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식물신품종, 상호, 원산지 표시 또는 지리적 표시 및 미공개정보 관련 권리를 포함한 지식재산권</p> <p>7) 양허, 면허, 인가 및 허가와 같이 법과 규정 또는 계약에 따라 부여된 권리, 그리고</p> <p>8) 그 밖의 모든 유형 및 무형 자산, 동산 및 부동산, 그리고 리스, 저당권, 유치권 및 질권과 같은 모든 관련 재산권</p> <p>투자는 특히 이윤, 이자,</p>	<p>유 계약을 포함한 계약에 따른 권리</p> <p>마. 투자와 관련하여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계약에 따른 지급청구권 및 이행청구권</p> <p>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상표, 산업디자인,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식물 신품종, 상호, 원산지 표시 또는 지리적 표시 및 미공개정보 관련 권리를 포함한 지식재산권</p> <p>사. 양허, 면허, 인가 및 허가와 같이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부여된 권리</p> <p>아. 그 밖의 모든 유·무형 자산, 동산·부동산 그리고 리스·저당권·유치권·질권 등의 모든 관련 재산권</p> <p>*투자는 특히 이윤, 이자, 자본이득, 배당, 로열티 및 수수료 등 투자에 의해 발생된 금액도 포함한다. 자산이 투</p>	<p>마. 완성품인도, 건설, 경영, 생산, 양허, 수익배분과 그 밖의 유사한 계약</p> <p>바. 지적재산권</p> <p>사. 면허, 인가, 허가와 국내법에 따라 부여되는 유사한 권리 그리고</p> <p>아. 그 밖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 동산 또는 부동산, 그리고 리스·저당권·유치권 및 질권 같은 관련 재산권이 협정의 목적상, 상품 및 서비스의 상업적 판매로부터만 발생하는 지급청구권은 그것이 투자의 특징을 가진 대부가 아닌 한 투자가 아니다.</p>

한-중 투자챕터	3국투자협정	KORUS
자본이득, 배당, 로열티 및 수수료와 같은 투자에 의하여 발생된 금액도 포함한다. 자산이 투자된 형태의 변화는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된 형태의 변화는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두문(chapeau)에 명시된 투자의 특징도 협정별로 차이가 거의 없는데, 직·간접적으로 투자자의 소유 또는 지배/통제하는 모든 자산 중에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은 투자의 특징을 지닌 것으로 비교적 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KORUS의 경우 설립전 단계의 투자/투자자에 대하여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보호범위가 확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한다. 반면, 한-중 투자챕터의 경우 적용대상투자를 ‘협정일 발효일에 존재하거나 그 이후 설립, 인수 또는 확장된 그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를 의미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설립후 단계의 투자로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투자자의 정의는 보다 구체적으로 설립전 투자의 포함 여부가 명시되어 있다. 한-중 투자챕터와 3국투자협정은 투자자를 ‘타방 당사국 영역에서 투자를 하는’ 일방 당사국의 자연인이나 기업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반면, KORUS 투자챕터는 타방 당사국 영역에서 ‘투자를 하려고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당사국의 공기업, 기업 또는 국민’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설립전 단계의 투자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다.

<표 2-9-2> 한-중 투자챕터와 주요 협정의 투자자의 정의

한-중 투자챕터	3국투자협정	KORUS
<p>한쪽 당사국의 투자자란 다른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 투자를 하는 한쪽 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p> <p>당사국의 자연인이란 그 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그 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말한다</p> <p>당사국의 기업*이란 기업, 회사, 신탁, 파트너십, 1인기업, 합작투자, 협회 또는 조직을 포 함하여, 영리 목적인지의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모든 법인이나 그 밖의 모든 실체를 말한다</p> <p>*보다 명확히 하기</p>	<p>체약당사자의 투자자란 다른 어떠한 체약 당사자 영역 내에서 투자를 하는 체약당사자의 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p> <p>체약당사자의 자연인이란 그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그 체약당사자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말한다.</p> <p>체약당사자의 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민간 또는 정부가 소유 혹은 통제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설립 혹은 조직된 모든 법인이나 그 밖의 모든 실체를 말하며, 회사, 주식회사, 신탁, 동업기업, 개인기업, 합작투자, 사단 또는 조직을 포함한다</p> <p>주석 : 보다 명확하게</p>	<p>당사국의 투자자라 함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려고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당사국 또는 그 공기업, 또는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 그러나, 이중국적자인 자연인은 그의 지배적이고 유효한 국적국의 국민으로만 본다.</p> <p>비당사국의 투자자라 함은, 어느 한 쪽 당사국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고자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투자자로서, 어느 쪽 당사국의 투자자도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p> <p>기업이라 함은 제1.4조(정의)에 정의된 기업과 기업의 지점을 말한다.</p> <p>제1.4조 기업이라 함은 회사·신탁·파트너십·단독소유기업·합작투자·협회 또는 유사한 조직을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의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거나</p>

한-중 투자챕터	3국투자협정	KORUS
위하여, 기업의 지점은 그 자체로, 그리고 단독으로, 기업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하기 위해, 기업의 지점은 그 자체로, 그리고 단독으로 기업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지배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KORUS는 기업의 범위에 지점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한-중 투자챕터와 3국투자협정은 투자자로서의 기업의 범위에 지점이 그 자체로 그리고 단독으로 기업으로 간주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의 주체에서 지점이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내국민대우

대부분의 특혜무역협정의 투자챕터나 투자협정은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비차별의무로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내국민대우는 기본적으로 체결국 국내에서 이루어진 투자와 당해 투자의 투자자에 대하여 자국 투자/투자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의무이다. 한-중 투자챕터는 자국내 상대국가의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국 투자협정의 내국민대우도 이와 거의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특히, 투자활동의 범위도 ‘투자의 경영, 영업, 운영, 유지, 사용, 향유 및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으로 정의하고 있어¹³⁾ 설립후 투자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두 협정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3) 한-중 투자챕터 제1조 및 3국투자협정 제1조.

<표 2-9-3> 한-중 투자챕터와 주요 협정의 내국민대우

한-중 투자챕터	3국투자협정	KORUS
<p>제12.3조</p> <p>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대상 투자에 대하여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p>	<p>제3조</p> <p>1. 각 계약당사자는 자국 영역 내에서 다른 어떠한 계약당사자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신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p>	<p>제11.3조</p> <p>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p> <p>2.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내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p> <p>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라 함은, 지역 정부에 대하여는, 동종의 상황에서 그 지역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국의 투자자와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p>

KORUS 투자챕터도 한-중 투자챕터나 3국투자협정과 마찬가지로 내국민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즉, 동종의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 및 투

자에게 내국인 투자자 및 투자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는 의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먼저 KORUS는 내국민대우의 대상을 투자와 투자자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내국민대우 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용 범위에 설립전 단계의 투자를 포함하고 있어 적용범위의 큰 차이가 있다. 또한, KORUS는 다른 협정들과는 달리 지역정부 또는 지방정부도 동종의 상황에서 그 지역의 투자자 및 타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는 내국민대우 의무도 규정하고 있어,¹⁴⁾ 다른 협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KORUS는 다른 협정과는 달리 설립전단계의 투자를 포함하고 있어, 한-중 투자챕터나 3국 투자협정과는 시장접근에 대한 규정 방식이 다르다. 즉, KORUS의 경우 설립전 단계에서 투자를 포함하므로 설립이나 인수와 같은 사전단계가 포함되어 사실상 투자자유화가 약속되어 있다.

투자자유화를 위한 시장접근은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통해 규정되었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체약국별 유보목록을 통해 투자자유화를 약속하는 것으로 언급된 유보 조치를 제외하고 투자자유화를 약속하는 것이다. 반면, 한-중 투자챕터나 3국 투자협정은 설립전 투자에 대하여는 자국법에 따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보리스트와 같은 방식이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합치조치에 대한 규정내용과 방식도 표5에서 보는바와 같이 한-중 투자챕터나 3국투자협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14) 미국의 경우 연방제 국가로서 각 주는 지역내 투자자에 대하여 내주민과 타주민을 차별대우 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 한국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소위 내주민대우를 규정한 것이다. 변필진, 한국의 투자협정해설서, 법무부, 139쪽.

(3) 비합치조치

한-중 투자챕터의 내국민대우 의무는 비합치조치 규정과 함께 적용된다. 즉,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유지되고 있는 투자관련 조치가 한-중 투자챕터 상의 내국민대우 의무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당사국의 협정준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다. 이러한 비합치조치는 개정이나 수정시 그 조치가 가진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할 조건으로 한다. 예컨대, 한-중 투자챕터의 내국민대우를 위반하는 조치를 유지할 수 있으며, 동 조치를 개정하거나 수정하더라도 기존에 비해 더 제한적이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일단 허용된 적용대상투자에게 부여되는 대우는 최초의 투자가 행하여졌을 당시 부여된 대우보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불리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각 계약국은 이러한 비합치조치들을 점진적으로 제거해나가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는 3국 투자협정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표 2-9-4> 한-중 투자챕터와 주요 협정의 비합치조치

한-중 투자챕터	3국투자협정	KORUS
제12.3조 2. 제1항은 이 장의 발효일에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유지되고 있는 현행의 비합치조치가 있다면 그러한 비합치조치, 또는 그 개정이나 수정이 개정이나 수정 직전	제3조 2. 제1항은 이 협정 발효일에 각 계약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유지되고 있는 현행의 비합치조치가 있다면, 이러한 비합치조치 또는 그 개정 혹은 수정이 개정 혹은	제11.12조 1. 제11.3조, 제11.4조, 제11.8조 및 제11.9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유지하는 기존의 모든 비합치조치 나. 다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다.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조치의 개정이 제11.3조, 제11.4

한-중 투자챕터	3국투자협정	KORUS
<p>에 그 조치가 가진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할 조건으로 그러한 조치에 대한 모든 개정이나 수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p> <p>일단 허용된 적용대상투자에 부여되는 대우는 최초의 투자가 행하여졌을 당시 부여된 대우보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불리하여서는 아니된다.</p> <p>3. 각 당사국은 제2항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조치를 점진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적용 가능한 경우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p>	<p>수정 직전에 가진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러한 조치에 대한 모든 개정이나 수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p> <p>일단 허용된 투자에 부여되는 대우는 최초의 투자가 행해졌을 당시 부여된 대우보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불리하여서는 아니된다.</p> <p>3. 각 계약당사자는 제2항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조치를 점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경우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p>	<p>조, 제11.8조 또는 제11.9조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p> <p>2. 제11.3조, 제11.4조, 제11.8조 및 제11.9조는 부속서 I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규정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p> <p>3. 어떠한 당사국도,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채택되고 부속서 II의 자국 유보목록의 대상이 되는 조치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그 국적을 이유로 그 조치가 발효되는 시점에 존재하는 투자를 매각하거나 달리 처분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p> <p>4. 제11.3조, 제11.4조, 제18.1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된대로 제 18.1조 제6항에 따른 의무의 예외 또는 이탈인 어떤 조치에 대하여도 적용되지 아니한다.</p> <p>5. 제11.3조, 제11.4조 및 제11.9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p> <p>가. 정부조달 또는</p> <p>나. 정부지원 융차,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에 의하여 제공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p>

KORUS의 비합치조치는 한-중 투자챕터나 3국투자협정에 비해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비합치조치는 설립전 투자를 포함하는 경우 투자자유화로 인해 시장개방이 이루어지므로 개방을 원치 않는 분야를 유보로서 기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내국민대우 뿐만아니라 시장개방과 밀접하게 관련된 최혜국대우, 이행요건 부과금지,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관련 의무가 면제되며, 비합치조치로 기재되어야 한다.

형식적으로 KORUS의 비합치조치는 두 개의 부속서로 협정에 첨부되어 있으며 협정과 불가분의 관계를 구성한다.¹⁵⁾ 각 부속서는 현행 유보조치와 미래 유보조치가 분야별로 기재되어 있으며, 면제대상 의무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현행 유보의 경우, 한-중 투자챕터와 3국투자협정과 마찬가지로 소위 ‘자유화 후퇴방지 매커니즘’이 규정되어 있어, 당해 조치를 현행 규제보다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는 있으나, 자유화 정도를 종전보다 제한하는 방향으로 후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래 유보는 당사국이 채택, 유지하는 현재 또는 미래의 조치로서 향후 규제가 강화될 수 있는 조치들을 기재하고 있다. 다만, 지식재산권, 보조금, 정부조달 분야는 부속서에 기재되지 아니하여도 비합치조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비합치조치는 내국민대우로 한정된 한-중 투자챕터나 3국투자협정과 달리 KORUS에서 광범위하고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자유화라는 요소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립 후 투자로 한정된 한-중 투자챕터와 비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한-중 FTA 발효후 2년이내 네거티브 방식의 투자 자유화협상이 개시될 예정이므로 동 후속협상이 타결된 시점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5) KORUS 제24.1조.

(4) 최혜국대우

최혜국대우는 내국민대우와 달리 외국 투자/투자자간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즉, 일방당사국이 다른 협정에서 당해 협정보다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 부여하는 경우 그 혜택이 자동적으로 당해 협정 상대국에게 부여된다. 일반적으로 투자협정과 FTA 투자챕터에 포함되는 기본 원칙으로서 한-중 투자챕터, 3국투자협정 및 KORUS 투자챕터에 포함되어 있다. 즉,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투자자에게 부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상대국 투자/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내국민대우와 마찬가지로 적용대상이 ‘투자의 경영, 영업, 운영, 유지, 사용, 향유 및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으로 정의되고 있어¹⁶⁾ 설립후 투자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중 투자챕터와 3국투자협정은 적용범위는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KORUS는 적용대상을 투자와 투자자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내국민대우 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용 범위에 설립전투자를 포함하고 있어 적용범위의 차이가 있다.

<표 2-9-5> 한-중 투자챕터와 주요 협정의 최혜국대우

한-중 투자챕터	3국 투자협정	KORUS
제12.4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투자 활동과 제 12.2조 제2항에 따른 투	제4조 1. 각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영역 내에서 투자활동과 제 2조 제2항에 따른 투자의	제11.4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 투자의 설립·인

16) 한-중 투자챕터 제1조 및 3국투자협정 제1조.

한-중 투자챕터	3국 투자협정	KORUS
<p>자의 허용과 관계된 사항과 관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대상투자자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p> <p>2. 제1항은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대상투자자에 대하여 다음의 회원자격에 기인한 모든 특혜적인 대우를 부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p> <p>가. 모든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통화동맹, 그러한 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에 이르는 유사한 국제협정 또는 다른 형태의 지역경제협력</p> <p>나. 국경지역에서 소규모 무역을 촉진하는 모든 국제 협정이나 약정, 또는</p> <p>다. 항공, 어업 및 구조를 포함한 해양문제와 관련한 모든 양자 및 다자 국제협정</p>	<p>허용과 관계된 사항과 관련하여 다른 어떠한 계약당사자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제3의 계약당사자 또는 비계약당사자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p> <p>2. 제1항은 계약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회원자격에 기인한 어떠한 특혜적인 대우를 다른 어떠한 계약당사자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p> <p>가. 모든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통화동맹, 그러한 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에 이르는 유사한 국제협정 또는 다른 형태의 지역경제협력</p> <p>나. 국경지역에서 소규모 무역을 촉진하는 모든 국제협정 혹은 약정, 또는</p> <p>다. 항공, 어업 및 구조를 포함한 해양문제와 관련한 모든 양자 및 다자 국제협정</p> <p>3. 제1항에 언급된 제3의 체</p>	<p>수 · 확장 · 경영 · 영업 · 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p> <p>2.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 · 인수 · 확장 · 경영 · 영업 · 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자에 부여한다.</p>

한-중 투자챕터	3국 투자협정	KORUS
<p>3. 제1항에 언급된 비당사국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부여된 대우는 다른 국제협정상 당사국과 비당사국의 투자자 간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비당사국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부여된 대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p>	<p>약당사자 또는 모든 비체약당사자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부여된 대우는 다른 국제협정상 체약당사자와 제3의 체약당사자의 투자자 간 또는 체약당사자와 모든 비체약당사자의 투자자 간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제3의 체약당사자 또는 모든 비체약당사자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부여된 대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p>	

내국민대우와 달리 한-중 투자챕터 및 3국투자협정의 최혜국대우는 ‘투자의 허용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설립전 단계의 투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시장 개방이 이루어져 있지 아니하므로 여전히 KORUS보다는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최혜국대우는 양국간의 특혜가 다른 당사국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상대방에게 특혜를 주기위에 제한이나 유보를 두고 있다. 한-중 투자챕터와 3국투자협정은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와 같은 지역경제협력협정이나 국경지역의 소규모 무역관련 국제협정이나 약정, 해양문제관련 양자 및 다자 국제협정을 최혜국대우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즉, 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이나 국경지역이나 해양관련 협정들은 상대국에게 특혜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 이들 협정에 따른 특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혜국대우의 예외로서 규정하는 것이다.

반면, KORUS는 투자와 투자자로 분리하여 최혜국대우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일견 최혜국대우 조항 내에 별도의 예외는 규정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KORUS 투자챕터에서 관련 예외 사항들은 비합치조치의 유보로서 부속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최혜국대우의 유보조치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모두 최혜국대우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미래 유보조치로 기재된 항공, 어업, 해상 분야의 양자 또는 다자간 국제협정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KORUS보다 먼저 발효되거나 서명된 국제협정도 미래 조치 유보로서 최혜국대우의 예외가 된다. 그러나, KORUS 발효된 이후 서명되거나 발효된 국제협정에는 최혜국대우가 적용되며, 이를 소위 미래 MFN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KORUS 발효 이후 체결된 한-중 FTA나 3국투자협정에 보다 유리한 혜택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미국에게도 확대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KORUS가 현재까지 대체로 가장 높은 시장개방수준이 포함된 협정이므로 사실상 후속협정에서 미래 MFN이 적용될 가능성은 높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¹⁷⁾

또한, KORUS는 한-중 투자챕터와 3국투자협정과 마찬가지로 항공, 어업, 해운 분야를 미래 최혜국대우 유보분야로 기재하고 있어 사실상 제외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위성방송, 철도, 시청각 공동제작협정 등 분야별로 최혜국대우 유보사항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즉, 설립전 투자가 포함되어 시장개방의 폭이 넓은 만큼 이에 대한 예외가 한-중 투자챕터와 3국투자협정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투자챕터와 3국투자협정은 최혜국대우의 범위에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가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다른 국제협정에서 동 협정의 당사국과 비당사국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규정에 부여된 대우는 한-중 FTA와 3국투자협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KORUS의 경우 이를 조항이나 각주를 통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17) 공수진, 한-미 FTA의 MFN 적용에 관한 연구, 39-40쪽, 대한국제법논총, 제59권 1호 (2014.3월)

협상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가 최혜국대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협상기록에 남겨놓았다고 알려져있다.¹⁸⁾

(5) 최소기준대우

내국민대우나 최혜국대우가 자국 또는 다른 외국 투자/투자자에 대한 대우를 고려하는 상대적인 원칙이라면 최소기준대우는 외국인 투자/투자자에게 부여해야하는 최소한의 대우로서 절대적인 원칙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협정이나 FTA의 투자챕터들은 각 당사국이 외국인 투자/투자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우가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최소한의 기준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어왔다. 한-중 투자챕터나 KORUS의 경우 최소대우기준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3국투자협정은 일반대우로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차이가 있으나, 3개 협정이 모두 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3국투자협정의 일반대우는 앞서 언급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이외에 투자자와 국가간 협정이나 계약도 이행하도록 의무화하는 소위 ‘우산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전쟁이나 무역충돌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손해나 손실에 대한 보상은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형식적인 측면에서 다른 점이 있다.

18) 정수봉, 한-미 FTA 투자분야연구, 62쪽, 법무부 2008.

<표 2-9-6> 한-중 투자챕터와 주요 협정의 최소기준대우

한-중 투자챕터	3국 투자협정	KORUS
<p>제12.5조</p> <p>1. 각 당사국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하여, 국제관습법에 따른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자에 부여한다.</p> <p>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은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을 적용대상투자자에 부여하여야 할 대우의 최소기준으로 규정한다.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이라는 개념은 그러한 기준이 요구하는 것에 추가적인 또는 이를 초과한 대우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추가적인 실질적 권리를 창설하지 아니한다.</p> <p>가. 제1항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제공할 의무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형사, 민사</p>	<p>제5조</p> <p>1. 각 계약당사자는 다른 어떠한 계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부여한다.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수용된 국제법상의 규칙에 따라 부여된 모든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우의 기준에 추가적인 또는 이를 넘는 대우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이 협정상 다른 규정 혹은 별도 국제협정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결정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 이항에 대한 위반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p> <p>2. 각 계약당사자는 다른 어떠한 계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하여 맺은 협정 또는</p>	<p>제11.5조</p> <p>1. 각 당사국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하여, 국제관습법에 따른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자에 부여한다.</p> <p>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은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을 적용대상투자자에 부여하여야 할 대우의 최소기준으로 규정한다.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이라는 개념은 그러한 기준이 요구하는 것에 추가적인 또는 이를 초과한 대우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추가적인 실질적 권리를 창설하지 아니한다.</p> <p>가. 제1항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제공할 의무는 세계의 주요 법률 체계에 구현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형</p>

한-중 투자챕터	3국 투자협정	KORUS
<p>또는 행정적 심판절차에 있어서의 정의를 부인하지 아니할 의무를 포함한다. 그리고</p> <p>나. 제1항의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제공할 의무는 각 당사국이 국제관습법에 따라 요구되는 수준의 경찰보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p> <p>3. 이 협정의 다른 규정 또는 별도의 국제협정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판정이 이 조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아니한다.</p> <p>4. 각 당사국은 전쟁 또는 그 밖의 무력충돌, 또는 반란, 폭동, 소요 또는 그 밖의 내란으로 인하여 자국 영역 내 투자자가 입은 손실에 관하여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하여 비차별적인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대상투자자에 부여한다.</p>	<p>계약 형태의 모든 서면 약속을 준수한다.</p> <hr/> <p>제12조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보상</p> <p>1. 각 계약당사자는 자신의 영역 내에서의 무력충돌 또는 혁명, 반란, 민간 소요와 같은 비상사태 또는 다른 모든 유사한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영역 내에서 투자와 관련하여 손실이나 손해를 입은 다른 어떠한 계약당사자의 투자자에 대해 원상회복, 배상, 보상 또는 그 밖의 모든 해결에 있어서 자신의 투자자, 제3의 계약당사자의 투자자, 또는 비계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 보다 불리하지 않고 어느 것이든 다른 어떠한 계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대우를 부여한다.</p> <p>2. 제1항에 언급된 해결수단으로서의 모든 지불은 유효하게 실현가</p>	<p>사·민사 또는 행정적 심판절차에 있어서의 정의를 부인하지 아니할 의무를 포함한다. 그리고</p> <p>나. 제1항의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제공할 의무는 각 당사국이 국제관습법에 따라 요구되는 수준의 경찰보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p> <p>3. 이 협정의 다른 규정 또는 별도의 국제협정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판정이 이 조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아니한다.</p> <p>4. 제11.12조제5항나호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전쟁 또는 그 밖의 무력충돌, 또는 반란·폭동·소요 또는 그 밖의 내란으로 인하여 자국 영역내 투자자가 입은 손실에 관하여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하여 비차별적인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대상투자자에 부여한다.</p>

한-중 투자챕터	3국 투자협정	KORUS
<p>5.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가 제4항에 언급된 상황에서 다음의 결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손실을 입는 경우,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적용대상투자 또는 그 일부의 징발, 또는 나. 상황의 필요상 요구되지 아니하였던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적용대상투자 또는 그 일부의 파괴 다른 쪽 당사국은 그 투자자에게 그러한 손실에 대하여, 적절하게, 원상회복, 보상 또는 양자 모두를 제공한다. 모든 보상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제12.9조를 따른다.</p> <p>6. 제4항은 제12.3조에 불합치하게 될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에 관한 기존의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p>	<p>능하고,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으며, 시장 환율에 따라 해당 투자자의 계약당사자의 통화 및 자유사용통화로 자유롭게 태환된다.</p>	<p>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쪽 당사국의 투자자가 제4항에 언급된 상황에서 다음의 결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손실을 입는 경우,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적용대상투자 또는 그 일부의 징발, 또는 나. 상황의 필요상 요구되지 아니하였던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적용대상투자 또는 그 일부의 파괴 다른 쪽 당사국은 그 투자자에게 그러한 손실에 대하여, 각 경우에 맞게, 원상회복, 보상 또는 양자 모두를 제공한다. 모든 보상은 제11.6조제2항 내지제4항을 준용하여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이어야 한다.</p> <p>6. 제4항은 제11.12조제5항나호가 아니었다면 제11.3조에 불합치하였을 보조금 또는 무상교</p>

한-중 투자챕터	3국 투자협정	KORUS
		부에 관한 기존의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중 투자챕터와 KORUS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거의 동일할 정도로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 다른 점은 한-중 투자챕터에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의 판단을 적절한 증명에 기초한다는 주석이 더 추가되어 있다는 정도이다.

3국 투자협정에 포함된 최소기준대우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완전하고 지속적인 보호 및 안전’을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대우로서 규정하면서, ‘일반적으로 수용된 국제법상 규칙’에 따라 부여된 모든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우의 기준’에 추가적이거나 이를 초과하는 대우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제한하고 있다. 이는 2001년 채택된 NAFTA 제 1105조 해석선언의 내용을 사실상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며, NAFTA의 해석선언에 비해 국제관습법 대신 일반적으로 수용된 국제법상 규칙에 따른 대우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

한-중 투자챕터와 KORUS도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완전하고 지속적인 보호 및 안전’을 최소기준대우로서 포함하고 있으며, 3국투자협정과 마찬가지로 NAFTA 해석선언이 반영되어 이러한 원칙이 국제관습법상 최소대우기준 이상의 추가적이거나 초과적인 대우를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였다. 또한, 동시에 당해 협정이나 다른 국제협정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결정이 최소대우기준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성립시키지 않는다는¹⁹⁾ NAFTA 해석선언의 내용도 거의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다.

19) NAFTA Free Trade Commission: Notes of interpretation of certain Chapter 11 provisions, 31 July 2001.

한-중 투자챕터와 KORUS는 최소기준대우 조항의 해석시 국제관습법에 관한 부속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속서의 내용은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내용은 사실상 동일하다. 주로 국제관습법의 의미에 대하여 ‘법적 의무감으로부터 따르는 일반적이고 일관된 국가관행으로부터 결과된 것’이라는 이해를 같이하고, 최소기준대우라는 것은 국제관습법상의 대우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동 내용은 NAFTA 자유무역위원회의 NAFTA 해석선언과 동일한 내용으로써 2004년 미국의 모델 BIT에 포함되어 미국이 체결한 투자협정이거나 FTA에 포함되어 왔다.

<표 2-9-7>: 한-중 투자챕터와 KORUS 국제관습법 부속서

한-중 투자챕터	KORUS
부속서 12-가 국제관습법 양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제 12.5조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대로의 “국제관습법”이 국가가 법적 의무감으로부터 따르는 일반적이고 일관된 국가관행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양 당사국의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제12.5조에 대하여,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은 외국인의 경제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모든 국제관습법상 원칙을 지칭한다.	부속서 11-가 국제관습법 양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제11.5조 및 부속서 11-나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대로의 “국제관습법”이 국가가 법적 의무감으로부터 따르는 일반적이고 일관된 국가관행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라는 양 당사국의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제11.5조에 대하여,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은 외국인의 경제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모든 국제관습법상 원칙을 지칭한다.

NAFTA의 최소기준대우는 ‘국제법에 따른’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중재판정부마다 이에 대한 의견이 다르고, 일부에서는 확장 해석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1년 국제관

습법상의 최소기준대우임을 명확화하는 해석선언이 채택된 것이다.

중국의 기존 투자협정이나 FTA에서 이러한 최소기준대우나 국제관습법 부속서가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수용된 국제법상의 규칙’에 따른 최소기준대우를 규정해오고 있었으며, 이는 3국 투자협정이나 중국-뉴질랜드간 FTA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중국이 한-중 FTA에서 국제관습법에 따른 최소기준대우를 수용하고 있는 바, 향후 체결될 투자협정이나 FTA에서도 지속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²⁰⁾

(6) 이행요건 부과금지

한-중 투자챕터와 3국투자협정에서 이행요건 부과금지 조항은 마찬가지로 사실상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즉, WTO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 상의 조항들이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mutatis mutandis*)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i) 일정비율 수출, (ii) 일정비율 국산부품 사용, (iii) 수입품사용제한, (iv) 수출과 수입간의 연계, (v) 수출·외화획득연계가 금지된다. 이에 덧붙여 이들 협정들은 수출과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KORUS 투자챕터에는 이행요건 부과금지 조치로서 WTO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 상의 내용과 기술이전과 특정지역으로의 독점공급의 2가지가 추가되었다. 제시된 요건들은 예시적인 성격이 아니라 제한적인 성격으로서, 열거된 요건 이외에는 이행요건의 부과금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일정수준의 수출, 기술이전, 특정지역으로의 독점 공급은 인센티브와 같은 이익 부여를 조건으로 부과될 수 있다.²¹⁾

20) 중국은 미국과 양자투자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바, 동 양자협정에도 한-중 투자챕터와 같은 최소기준대우 규정과 국제관습법 부속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1) 변필건,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 183쪽, 법무부, 2010.

다만, 당사국이 이익의 제공을 대가로 생산지, 서비스 공급, 근로자 훈련 또는 고용, 특정 시설의 건설·확장 또는 연구개발의 수행을 자국 영역에서 한다는 요건을 준수의 조건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아니한다.

<표 2-9-8> 한-중 투자챕터와 주요 협정의 이행요건금지

한-중 투자챕터	3국 투자협정	KORUS
<p>제12.7조</p> <p>1.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무역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의 규정들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되고 이 장의 모든 적용대상투자에 대하여 적용된다.</p> <p>2. 어떠한 당사국도 자국의 영역 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적</p>	<p>제7조</p> <p>1. WTO 협정 부속서 1가상 무역 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의 규정들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포함되며 이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고 이 협정의 모든 투자에 대하여 적용된다.</p> <p>2. 어떠한 체약 당사자도 자신의 영역 내에서 다른 어떠한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에 대해 수출 또는 기술이전에 관한 이행요</p>	<p>제11.8조</p> <p>1. 어떠한 당사국도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이나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부과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대한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강요할 수 없다.*</p> <p>가.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수출하는 것</p> <p>나.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 사용을 달성하는 것</p> <p>다.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또는 사용하거나 이에 대하여 선호를 부여하는 것, 또는 자국 영역에 있는 인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것</p> <p>라.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그러한 투자와 연계된 외화유입액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키는 것</p> <p>마. 그러한 투자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킴으로써 자국 영역에서 그러한 판매를 제한하는 것</p>

한-중 투자챕터	3국 투자협정	KORUS
<p>용 대상투자에 대하여 수출 또는 기술이전에 관한 이행요건과 관련하여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건과 관련하여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바. 자국 영역의 인에게 특정한 기술, 생산공정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지식을 이전하는 것, 또는</p> <p>사. 그러한 투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공급하는 서비스를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특정한 지역시장 또는 세계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p> <p>2. 어떠한 당사국도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이나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이익의 수령 또는 지속적 수령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에 부합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p> <p>가.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 사용을 달성하는 것</p> <p>나.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또는 사용하거나 이에 대하여 선호를 부여하는 것, 또는 자국 영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것</p> <p>다.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그러한 투자와 연계된 외화유입액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키는 것, 또는</p> <p>라. 그러한 투자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킴으로써 자국 영역에서 그러한 판매를 제한하는 것</p> <p>3. 가.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p>

한-중 투자챕터	3국 투자협정	KORUS
		<p>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내 투자와 관련하여, 이익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하여 생산의 입지, 서비스의 공급, 근로자의 훈련 또는 고용, 특정한 시설의 건설 또는 확장, 또는 연구개발의 수행을 자국 영역에서 한다는 요건의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p> <p>나. 제1항바호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p> <p>1) 당사국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1조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사용을 승인하는 때, 또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9조의 범위 내에 해당하고 이에 합치되는 재산권적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조치, 또는</p> <p>2) 당사국의 경쟁법에 따라 반경쟁적인 것으로 사법적 또는 행정적절차를 거친 후에 판정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재판소 또는 경쟁당국에 의하여 요건이 부과되거나 약속 또는 의무부담이 강제되는 때</p> <p>다. 그러한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그러한 조치가 국제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 제1항나호·다호 및 바호, 그리고 제2항가호 및 나호는 당사국이 환경조치를 포함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p>

한-중 투자챕터	3국 투자협정	KORUS
		<p>1) 이 협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과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p> <p>2)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p> <p>3) 고갈될 수 있는 생물 또는 무생물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p> <p>라. 제1항가호·나호 및 다호, 그리고 제2항가호 및 나호는 수출진흥 및 외국인 조프프로그램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자격요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p> <p>마. 제1항나호·다호·바호 및 사호, 그리고 제2항가호 및 나호는 정부조달에 적용되지 아니한다.</p> <p>바. 제2항가호 및 나호는 특혜관세 또는 특혜쿼터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상품의 구성품에 관하여 수입 당사국이 부과하는 요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p> <p>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은 그 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어떠한 약속·의무부담 또는 요건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p> <p>5. 이 조는, 당사국이 약속·의무부담 또는 요건을 부과하거나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민간 당사자간의 어떠한 약속·의무부담 또는 요건의 강제도 배제하지 아니한다. 이 조의 목적상, 지정 독점 또는 공기업이 위임된 정부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민간 당사자는 그러한 실체를 포함한다.</p>

또한, 한-중 투자챕터와 3국투자협정과 달리 KORUS는 GATT1994 제XX조 일반예외와 유사한 예외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즉, 열거된 조치 중에서 일정수준 국산품 사용, 국내상품사용, 기술이전의 경우, KORUS 협정에 불일치하지 아니한 법령의 준수 보장,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목적을 위해 부과된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방식으로 행해지거나 국제무역·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어서는 안된다는 조건이 있다. 또한, 정부조달이나 민간당사자에 의한 이행요건 부과 및 집행도 예외로 명시되어 있다.

이와같이 KORUS는 한-중 투자챕터 및 3국투자협정과 비교해볼 때, 매우 구체적으로 이행요건 부과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KORUS 투자챕터가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이나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설립전 투자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범위가 넓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외 사항들이 명시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행요건 부과금지의 대상과 관련하여 KORUS가 한-중 투자챕터와 3국투자협정과 달리 범위가 더 넓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한-중 투자챕터나 3국투자협정에서 수출 또는 기술이전관련 비합리적 이거나 차별적인 이행요건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상대 체약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KORUS는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내 투자” 활동과 관련하여 이행요건 부과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비당사국의 투자자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KORUS의 이행요건 부과금지 의무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도 적용이 된다. 다만, KORUS와 같이 비당사국까지 모두 포함하는 경우 비당사국 투자자가 당사국 투자자보다 큰 혜택을 받게되는 역차별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반면, 자국 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들을

차별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협정 당사국 정부의 재량이 축소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²²⁾

(7) 투명성

대부분의 투자협정들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공포, 동 법령에 대한 질의응답 등을 보장하는 투명성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FTA는 별도의 투명성 챕터를 두거나, 투자챕터 내에 규정하기도 한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3국 투자협정은 제10조에 투명성 조항을 두고 있으며, 한-중 FTA와 KORUS는 둘 다 투명성 챕터를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한-중 투자챕터에 투명성 조항을 두고 있는 반면, KORUS는 투자챕터에 투명성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다르다.

<표 2-9-9> 한-중 투자챕터와 주요 협정의 투명성

한-중 투자챕터	3국투자협정	KORUS
<p>제12.8조</p> <p>1.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당사자이며 투자활동과 관련되거나 투자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협정뿐만 아니라 자국의 법, 규정, 행정절차 그리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 및 사법결정을 즉시 공표하거나 달리 공중이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각 당사국의 정부는 그러한 법, 규정, 행정절차 및</p>	<p>제10조</p> <p>1. 각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당사자가 당사자이며 투자활동과 관련되거나 투자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협정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법률, 규정, 행정절차 및 행정결정 그리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법결정을 즉시 공표하거나 달리 공중이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각 계약당사자의 정부는 그러한 법률, 규정,</p>	<p>* 투자 챕터 투명성 조항 없음</p>

22) 변필건,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 281쪽, 법무부, 2010.

한-중 투자챕터	3국투자협정	KORUS
<p>행정관정을 담당하는 권한 있는 당국의 이름과 주소를 공중이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p> <p>2. 당사국이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자국의 법 또는 규정을 도입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법 또는 규정이 공표되거나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시점과 그것이 발효되는 시점 간에 합리적인 간격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국가안보, 환율 또는 통화정책과 관련된 법 또는 규정과 공표 시 법집행을 방해하게 될 그 밖의 법 또는 규정은 예외로 한다.</p> <p>3.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기존 양자 채널을 통하여, 이 장에 따라 후자의 당사국과 그 투자자의 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자의 당사국의 모든 실제 또는 제안된 조치와 관련하여 후자의 당사국의 특정 질문에 답하고 후자의 당사국에게 정보를 제공한다.</p> <p>4.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p>	<p>행정절차 및 행정결정을 담당하는 권한 있는 당국의 이름과 주소를 공중이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p> <p>2.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이행 및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도입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법령이 공표되거나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시점과 그것이 발효되는 시점 간에 합리적인 간격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국가안보, 환율 또는 통화정책과 관련한 법령과 공표 시 법의 집행을 방해하게 될 그 밖의 법령은 예외로 한다.</p> <p>3.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어떠한 체약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기존 양자 채널을 통해, 이 협정 하에서 후자의 체약당사자와 그 투자자의 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자의 체약당사자의 모든 실제 또는 제안된 조치와 관련하여 후자의 체약당사자의 특정 질문에 답하고 후자의 체약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p>	

한-중 투자챕터	3국투자협정	KORUS
<p>가. 이 장에서 다루는 모든 사안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사전에 공개하고</p> <p>나. 투자와 관련된 그러한 규정들에 대하여 공중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그러한 규정을 채택하기 전에 그러한 의견에 대하여 고려한다.</p> <p>5. 이 조의 규정은 어떠한 당사국에 대해서도 다음의 경우 비밀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p> <p>가. 그 정보의 공개가 법 집행을 저해할 경우,</p> <p>나. 그 정보의 공개가 공익에 반하는 경우, 또는</p> <p>다. 그 정보의 공개가 사생활 또는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p>	<p>4. 각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법령에 따라</p> <p>가. 이 협정에서 다루는 그 어떠한 문제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사전에 공개하고</p> <p>나. 투자와 관련된 그러한 규정들에 대해 대중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그러한 규정을 채택하기 전에 그러한 의견에 대해 고려한다.</p> <p>5. 이 조의 규정은 그 어떠한 체약당사자에 대해서도 그 공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밀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p> <p>가. 법집행을 방해하거나</p> <p>나. 공공 이익에 반하거나 또는</p> <p>다. 사생활 혹은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p>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한-중 투자챕터의 투명성 조항은 3국 투자협정과 사실상 동일하며, 미세한 문언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구체적으로, 두 협정은 모두 ① 협정을 이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도입하는 경우 즉시 공포하고, ② 법령 공포 및 발효 사이에 합리적 기간을 부여하며, ③ 요청시 질의에 대한 응답을 의무화하고, ④ 자국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관련 법령을 사전 공개하고

공중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⑤일정한 경우 비밀정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반면, KORUS는 투자챕터에서 투명성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21장 투명성 챕터에서 관련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로 제21.1조 및 제21.2조의 내용과 유사하다. 즉,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한 자국법령 등을 신속하게 공포하고, 가급적 사전에 공포하며, 이해관계인이나 상대국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한다. 또한 상대국의 요청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질의에 응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내용은 한-중 FTA의 투명성 챕터에서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점은 KORUS의 경우 중앙정부의 제안된 규정에 대하여 단일한 관보를 통해 공포하고, 40일간의 공중의견 제출기간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구체적인 경로와 기한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중 FTA의 투명성 챕터와 차이점이 있다.²³⁾ 또한, 투자관련 규정을 사전에 공포하여 공중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한-중 투자챕터 제12.8조 4항 및 3국투자협정 제10조 4항에도 포함되어

23) KORUS 제21.1조 3항 및 4항이 한-중 FTA와는 달리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3.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제2항 가호에 따라 공포되는 중앙정부의 제안된 규정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가.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단일의 관보에 제안된 규정을 공포하고 추가적인 경로를 통한 배포를 장려한다.

나. 대부분의 경우, 제안된 규정을 공중의견제출 마감일로부터 40일 이상 이전에 공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 그 공포에 제안된 규정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4.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채택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가.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단일의 관보에 그 규정을 공포하고 추가적인 경로를 통한 배포를 장려한다.

나. 그 공포에 그 규정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그리고

다. 관보 또는 정부의 공식적인 인터넷사이트의 뚜렷한 위치에 의견제시기간 동안 접수된 중요하고 실질적인 의견을 처리하고, 제안된 규정에 이루어진 실질적인 수정에 대하여 설명한다.

있으나, 단일한 관보를 이용하고 40일의 구체적인 공중의견 제출기한을 허용한다는 내용은 투자챕터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중 FTA에 비하여 KORUS의 투명성 챕터는 민간구매에 관한 정책과 부패방지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다르다. 그러나, 이외의 조항들은 유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KORUS 투자챕터에 투명성 조항이 없더라도 전반적으로 제21장 투명성 챕터의 조항들이 적용되므로 한-중 FTA나 3국투자협정과 비교할 때 크게 다르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3국 투자협정과 달리 한-중 FTA의 경우, 투명성챕터가 별도로 있는데다,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반복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²⁴⁾

(8) 환 경

한-중 FTA는 ‘제16장 환경과 무역’에서 이미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다자간 환경협약의 준수 등 포괄적인 무역관련 환경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투자챕터는 간략하게 투자 장려를 이유로 국내 환경조치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투

24) 한-중 FTA 제18장 투명성에서 투자챕터 투명성과 유사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18.1조 공표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한 자국의 조치를 신속하게 공표하거나, 다른 쪽 당사국의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달리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2.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각 당사국은
가. 자국이 채택을 제안하는 모든 그러한 조치를 사전에 공표한다. 그리고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제안된 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제18.2조 통보와 정보의 제공

1.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이 협정상 다른 쪽 당사국의 정당한 이익에 달리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제안된 또는 실제 조치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그 요청 당사국이 전에 그 조치를 통보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요청 당사국이 이 협정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실제 또는 제안된 조치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한다.

자의 진입과 관련하여서도 그러한 환경조치를 포기하거나 달리 침해하지 않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3국투자협정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KORUS 투자챕터도 국가의 환경 규제권한을 보호하기위해 투자관련 환경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KORUS는 투자유치국 투자챕터의 내용에 부합하는 환경조치를 채택, 유지, 집행할 수 있는 정부권한을 인정하는 것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일종의 해석방향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9-10> 한-중 투자챕터와 주요 협정의 투명성

한-중 투자챕터	3국투자협정	KORUS
<p>제12.16조</p> <p>각 당사국은 자국의 환경조치를 완화함으로써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러한 취지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 내에서의 투자의 설립, 인수 또는 확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러한 환경조치를 포기하거나 달리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p>	<p>제23조</p> <p>각 계약당사자는 자신의 환경조치를 완화함으로써 다른 어떠한 계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를 위하여 각 계약당사자는 자신의 영역 내에서의 투자의 설립, 인수 또는 확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러한 환경조치를 포기하거나 달리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1.10조</p> <p>이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 영역내 투자활동이 환경적 고려에 민감한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달리 이 장에 합치되는 조치를 채택·유지 또는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p>

흥미롭게도 KORUS 투자의 환경조항은 NAFTA 제1114조 1항과 거의 동일한 반면, 한-중 투자챕터와 3국투자협정에 포함된 조항은 NAFTA 제1114조 2항과 유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²⁵⁾ 다만, 한-중 투자챕터와 3국투자협정의 동 조항은 NAFTA 제1114조 2항의 앞부분만 포함하고 있으며, 당사국간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마지막 문장은 제외되어 있다는 점만 다르다.²⁶⁾ KORUS 투자챕터는 NAFTA 제 1114.2조와 유사한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데, KORUS 제20.1조(보호수준)과 제20.3조(환경법의 적용 및 집행)에서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기도 한다.²⁷⁾ 한-중 FTA도 ‘제 16장 무역과 환경’ 제16.3조(보호수준)과 제16.5조(법과 규정을 포함한 환경조치의 집행)에서 KORUS 환경챕터와 거의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어, 투자유치국의 환경규제권한을 인정하는 한-중 투자챕터의 환경조치 조항과 환경챕터의 일부 조항들이 반복적으로 규정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한-중 투자챕터 제12.16조는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환경조치의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16.5조 2항도 환경법 및 규정 등이 보호하는 환경보호를 약화 또는

25) 이는 한-칠레 FTA 제10.18조, 한-싱가포르 FTA 제10.18조에서도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다.

26) NAFTA 제1114조 원문은 아래와 같다:

1. Nothing in this Chapter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maintaining or enforcing any measure otherwise consistent with this Chapter that it considers appropriate to ensure that investment activity in its territory is undertaken in a manner sensitive to environmental concerns.

2. The Parties recognize that it is inappropriate to encourage investment by relaxing domestic health, safety or environmental measures. Accordingly, a Party should not waive or otherwise derogate from, or offer to waive or otherwise derogate from, such measures as an encouragement for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or retention in its territory of an investment of an investor. If a Party considers that another Party has offered such an encouragement, it may request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Party and the two Parties shall consult with a view to avoiding any such encouragement.(밑줄 추가)

27) 변필건,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 303쪽, 법무부, 2010.

감소시킴으로서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인정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일부분 규정 내용이 반복되는 측면이 있다.

(9)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한-중 투자챕터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는 3국투자협정과 거의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투자분쟁의 범위, 협의우선, 중재요청서 구성, 중재포럼 및 중재규칙, 사전동의, 중재판정의 최종성, 중재판정의 내용, 제척기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거의 동일하다. 단, 3국투자협정은 중재절차 선택조항과 사전동의 조항은 지적재산권 조항이나 건전성조치 조항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한-중 투자챕터와 다르다. 그러나, 이는 한-중 FTA에서 지적재산권과 금융분야가 별도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규범의 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 투자챕터와 3국투자협정과는 달리 KORUS는 매우 구체적으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²⁸⁾ 특히, 한-중 투자챕터나 3국투자협정과는 없는 규정들이 매우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중재지, 중재 언어, 소송 비용, 비당사자 서면제출권, 본안전 항변, 결정문의 사전 검토절차 등 중재의 수행과 관련한 절차적 규정들(제20조)과 중재관련 자료 및 심리의 공개 등 매우 구체인 투명성 절차(제21조)를 두고 있다. 또한, 준거법 규정(제22조)과, 전문가보고서(제24조), 병합(제25조)는 앞의 두 협정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조항들이다. 중재판정의 경우 한-중 투자챕터나 3국투자협정에도 판정의 최종성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매우 간략하게 규정되어 있는 반면, KORUS는 10여개 항에 걸쳐 판정의 종류, 비용, 구속력의 범위,

28) 한중 투자챕터, 3국투자협정 및 KORUS FTA상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에 관한 구체적인 조문은 뒤쪽 부록을 참고할 것.

판정의 준수 및 집행 등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제 3 절 소 결

본 절에서는 한-중 투자챕터의 주요 규정들을 중심으로 3국투자협정과 KORUS의 조항들과 비교하고 검토해보았다. 전반적으로 한-중 투자챕터와 3국투자협정은 최소기준대우를 제외하고 거의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였던 반면, KORUS와는 설립전 단계의 투자의 포함으로 인하여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투자/투자자의 정의의 경우 투자는 사실상의 차이는 없었으나, KORUS 투자챕터의 경우 투자자는 정의에서 설립전단계의 투자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었고, 지점도 기업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또한, 투자보호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는 핵심원칙은 동일하나, KORUS는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까지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범위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범위의 차이는 이행요건 부과금지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무엇보다 비당사국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범위가 넓어 GATT1994 제XX 조 일반예외와 유사한 제한이 포함되는 등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반면, 한-중 투자챕터의 최소기준대우는 KORUS와 매우 유사하였다. 먼저 명시적으로 최소기준대우 조항으로 규정되었고, NAFTA 해석선언이 반영되었으며, 무엇보다 국제관습법 부속서를 포함함으로써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되었다.

환경과 투명성은 한-중 투자챕터와 3국투자협정이 사실상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다만, 한-중 FTA에는 투명성챕터가 별도로 있는 상황에서 투명성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일부 내용이 반복되기도 했다.

반면, KORUS는 투자챕터에 투명성 조항을 두지 않고 있으나 투명성 챕터에 더 구체적인 조항들을 두고 있다.

환경과 투명성 챕터의 경우 KORUS의 일부 내용만 한-중 FTA의 환경과 투명성 챕터에 포함되어 있어, 한-중 FTA은 규정수준은 KORUS와 비교해볼 때 높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도 그러한 측면이 있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즉, 한-중 FTA에서 투자는 서비스 챕터와 함께 후속 협상이 약속되어 있으며, 현 상황은 1단계로서 전형적인 투자보호조항으로 협정문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 한-중 FTA가 발효되면 2년내 투자자유화를 포함한 후속협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동 협상시 KORUS처럼 서비스·투자 통합 유보목록이 작성될 예정이다. 또한, 동 협상은 협상개시후 2년내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현행의 한-중 투자챕터는 일종의 한시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중 FTA의 후속협상이 완료된 이후 후속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공수진, 한-미 FTA의 MFN 적용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59권 1호, 2014.3.
- 정수봉, 한-미 FTA 투자분야 연구, 법무부 2008.
- 변필건,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 법무부 2010.
- 산업자원통상부, 한-중 FTA 설명자료, 2014.11.
- NAFTA Free Trade Commission, Notes of interpretation of certain Chapter 11 provisions, 31 July 2001.
- A. Berger, “Investment Rules in Chinese Preferential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 German Development Institute Discussion Paper 2013.7.

G. Wang, “China’s FTAs: Legal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05, No. 3 (2011)

S. Miroudot, “Investment”, in J.-P. Chauffour & J.-C. Maur (eds.),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Policies for Development* (World Bank, 2011)

UNCTAD Series on Issu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II, Scope and Definition, 2011.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2.

UNCTAD, BITs, <http://investmentpolicyhub.unctad.org/IIA/CountryBits/111#iiaInnerMenu>(검색일: 2015.08.25.)

[부록] 한중 투자챕터 · 3국투자협정 · 한-미 FTA상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조항

한-중 투자챕터	3국투자협정	KORUS
<p>제12.12조</p> <p>1. 이 조의 목적상, 투자분쟁은 한쪽 당사국과 투자자 또는 그 당사국 영역 내에서 그의 적용 대상 투자와 관련하여 이 장에 따른 그 당사국의 어떠한 의무의 주장되는 위반으로 인하거나 이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분쟁이다.</p> <p>2. 모든 투자분쟁은 가능한 한 투자분쟁의 당사자인 투자자(이하 이 조에서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라 한다)와 투자</p>	<p>제15조</p> <p>1. 이 조의 목적상 투자분쟁은 계약당사자와 투자자 또는 그 계약당사자 영역 내에서 그의 투자와 관련하여 이 협정에 따른 그 계약당사자의 어떠한 의무의 주장되는 위반으로 인하거나 이로부터 발생한 손실 혹은 손해를 입은 다른 어떠한 계약당사자의 투자자 간의 분쟁이다.</p> <p>2. 모든 투자분쟁은 가능한 한 투자분쟁의 당사자인 투자자(이하 이 조에서는 “분쟁 투자자”라 한다)와 투자분쟁의 당사자인 계약당사자(이하 이 조에서는 “분쟁 계약당사자”라 한</p>	<p>제2절</p> <p>제 11.15 조 협의 및 협상</p> <p>투자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청구인 및 피청구국은 우선 협의 및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비구속적인 제3자 절차의 이용을 포함할 수 있다.</p> <p>제 11.16 조 중재 청구 제기</p> <p>1. 분쟁당사자가 투자분쟁이 협의 및 협상을 통하여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p> <p>가. 청구인은, 자기자신을 위하여, 다음의 청구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있다.</p> <p>1) 피청구국이 다음을 위반하였다는 것</p> <p>가) 제1절상의 의무</p> <p>나) 투자인가, 또는</p> <p>다) 투자계약, 그리고</p> <p>2) 청구인이 그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손</p>

한-중 투자챕터	3국투자협정	KORUS
<p>분쟁의 당사자인 당사국(이하 이 조에서 “분쟁 당사국” 이라 한다) 간의 협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한다. 협의를 위한 서면 요청서는 제3항에 명시된 중재에 투자분쟁을 회부하기 전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에 의하여 분쟁 당사국에 제출된다. 이러한 서면 요청서는 다음을 명시한다.*</p> <p>가.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의 이름과 주소</p> <p>나. 위반된 것으로 주장되는 이장에 따른 의무</p> <p>다. 투자분쟁의 사실에 관한 요약자료, 그리고</p> <p>라. 청구하는</p>	<p>다) 간의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한다. 협의를 위한 서면 요청서는 제 3 항에 명시된 중재에 투자분쟁을 회부하기 전 분쟁 투자자에 의해 분쟁 계약당사자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서면 요청서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다.</p> <p>가. 분쟁 투자자의 이름과 주소</p> <p>나. 위반된 것으로 주장되는 이 협정에 따른 의무</p> <p>다. 투자분쟁의 사실에 관한 요약자료, 그리고</p> <p>라. 구제조치와 대략적인 배상금액</p> <p>주석: 서면 협의 요청서는 다음의 분쟁 계약당사자의</p>	<p>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 그리고</p> <p>나.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피청구국의 기업을 대신하여, 다음의 청구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있다.</p> <p>1) 피청구국이 다음을 위반하였다는 것</p> <p>가) 제1절상의 의무</p> <p>나) 투자인가, 또는</p> <p>다) 투자계약</p> <p>그리고</p> <p>2) 그 기업이 그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p> <p>다만, 청구대상과 청구된 손실이 관련 투자계약에 의거하여 설립 또는 인수되었거나 설립 또는 인수가 추진되었던 적용대상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인은 가호1목다) 또는 나호1목다)에 따라 투자계약의 위반에 대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p> <p>2.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기 최소 90일 전에, 청구인은 청구를 중재에 제기하겠다는 의사에 관한 서면통보(의사통보)를 피청구국에게 전달한다. 그 통보는 다음을 명시</p>

한-중 투자챕터	3국투자협정	KORUS
<p>구제조치와 손해배상의 대략적 금액</p> <p>*서면 협의 요청서는 다음의 분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 전달된다.</p> <p>가. 중국의 경우, 상무부 조약법률사, 그리고</p> <p>나. 한국의 경우, 법무부 국제법무과</p> <p>3. 투자분쟁은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회부된다.**</p> <p>가. 분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법원</p> <p>**가호의 목적상, 이 항은 적용 가능한 경우 행정법원 또는 행정기관의 전심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p>	<p>권한 있는 당국으로 전달된다.</p> <p>가.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우, 상무부 조약법률사</p> <p>나. 일본국의 경우, 외무성 또는 이를 대신 하거나 대체하는 실체, 그리고</p> <p>다. 대한민국의 경우, 법무부 국제법무과</p> <p>3. 투자분쟁은 분쟁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회부된다.</p> <p>가. 분쟁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법원</p> <p>나. ICSID 협약이 적용 가능한 경우, ICSID 협약에 따른 중재</p> <p>다. ICSID 추가절차규칙이 적용</p>	<p>한다.</p> <p>가.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그리고 기업을 대신하여 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기업의 명칭·주소 및 설립지</p> <p>나. 각 청구마다, 위반되었다고 주장되는 이 협정, 투자인가, 또는 투자 계약의 규정과 그 밖의 관련 규정</p> <p>다. 각 청구의 법적 및 사실적 근거, 그리고</p> <p>라. 구하는 구제조치와 청구하는 손해의 대략적 금액</p> <p>3. 청구를 야기한 사건이 발생한 지 6월이 경과한 경우, 청구인은</p> <p>가. 피청구국 및 비분쟁당사국이 모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의 당사국인 경우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절차의 절차규칙에 따라</p> <p>나. 피청구국 또는 비분쟁당사국 중 하나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의 당사국인 경우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에 따라</p> <p>다.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또는</p> <p>라. 청구인 및 피청구국이 합의하는 경우, 그 밖의 중재기관에게 또는 그 밖의 중재규칙에 따라</p>

제 2 부 한-중 FTA 주요 챕터 분석

한-중 투자챕터	3국투자협정	KORUS
<p>나.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 협약이 이용 가능한 경우,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 협약에 따른 중재</p> <p>다.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이 이용 가능한 경우,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에 따른 중재</p> <p>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 또는</p> <p>마. 분쟁 당사국과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중재 규칙에 따른 모든 중재</p> <p>다만, 나호부터 마호까지 규정의 목적상 다음과 같아</p>	<p>가능한 경우, ICSID 추가절차규칙에 따른 중재</p> <p>라.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 또는</p> <p>마. 분쟁 계약당사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중재 규칙에 따른 모든 중재</p> <p>나호에서 마호까지의 목적상 아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p> <p>1) 분쟁 계약당사자에 협의를 위한 서면 요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4개월 내 제 2 항에 언급된 협의를 통해 투자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p> <p>2) 적용 가능한 경우, 제 7 항에 명시된 국내행</p>	<p>제1항에 언급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p> <p>4. 청구는 다음의 시점에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p> <p>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36조제1항에 언급된 청구인의 중재통보 또는 중재요청(중재통보)이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때</p> <p>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추가절차규칙 제3부제2조에 언급된 청구인의 중재통보가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때</p> <p>다.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제3조에 규정된 청구인의 중재통보가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제18조에 언급된 청구서면과 함께 피청구국에 의하여 접수된 때, 또는</p> <p>라. 제3항라호에 따라 선택된 그 밖의 중재기관 또는 중재규칙에 언급된 청구인의 중재통보가 피청구국에 의하여 접수된 때</p> <p>그러한 중재통보가 제출된 후 청구인이 최초로 주장하는 청구는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접수일에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p> <p>5. 제3항에 따라 적용가능하고 이 절에 따라 하나 또는 복수의 청구가 중재에 제기된 날에 유효한 중재규칙</p>

한-중 투자챕터	3국투자협정	KORUS
<p>야 한다.</p> <p>1) 분쟁 당사국에 협의를 위한 서면 요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제2항에 언급된 협의를 통하여 투자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p> <p>2) 적용 가능한 경우, 제7항에 명시된 국내행정 검토 절차와 관련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p> <p>4. 각 당사국은 이로써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가 투자분쟁을 제3항에 명시된 중재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한다.</p> <p>5. 일단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가 투자분쟁을 분쟁</p>	<p>정 검토 절차와 관련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p> <p>주석: 가호의 목적이 이 항은 적용 가능한 경우, 행정법원 또는 행정기관의 전심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p> <p>4. 각 계약당사자는 이로써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분쟁 투자자가 투자분쟁을 제3항에 명시된 중재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한다.</p> <p>5. 일단 분쟁 투자자가 투자분쟁을 분쟁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법원 또는 제3항에 명시된 중재 중 하나에 회부하면 분쟁 투자자의 선택은 최종적이며, 분쟁 투자자는 이후 동일한 분쟁을 제3항에 명시된 다른 중</p>	<p>은, 이 협정에 의하여 수정된 한도를 제외하고는 그 중재를 규율한다.</p> <p>6. 청구인은 중재통보와 함께 다음을 제출한다.</p> <p>가. 청구인이 임명하는 중재인의 성명, 또는</p> <p>나. 사무총장이 그 중재인을 임명하는 것에 대한 청구인의 서면 동의서</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1.17 조</p> <p style="text-align: center;">중재에 대한 각 당사국의 동의</p> <p>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이 절에 따른 중재 청구 제기하는 것에 동의한다.</p> <p>2. 제1항에 따른 동의와 이 절에 따른 중재 청구 제기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다.</p> <p>가. 분쟁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위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2장(센터의 관할권)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의 요건, 그리고</p> <p>나. “서면 합의”를 위한 뉴욕협약 제2조의 요건</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1.18 조 각 당사국의 동의에 대한 조건 및 제한</p> <p>1. 제11.16조제1항에 따라 주장되는 위반사실과 청구인(제11.16조제1항가</p>

한-중 투자챕터	3국투자협정	KORUS
<p>당사국의 권한 있는 법원 또는 제 3항에 명시된 중재 중 하나에 회부하면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의 선택은 최종적이며,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는 이후 동일한 분쟁을 제3항에 명시된 다른 중재에 회부할 수 없다.</p> <p>6.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언급된 위반을 구성한다고 주장되는 분쟁 당사국의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가 분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법원에서 절차를 개시할 모든 권리의 포기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분쟁 당사국에 제출하지 아니하</p>	<p>재에 회부하지 아니한다.</p> <p>6. 제 3 항 및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에 언급된 위반을 구성한다고 주장되는 분쟁 계약당사자의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분쟁 당사자의 어떠한 권한 있는 법원에 절차를 개시할 모든 권리의 포기를 서면으로 분쟁 계약당사자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청구도 제 3 항에 명시된 중재에 회부되지 아니한다.</p> <p>7. 분쟁 투자자가 제 2 항에 따라 분쟁 계약당사자에 협의를 위한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분쟁 계약당사자는 해당 투자자에게 제 3 항에</p>	<p>호에 따라 제기된 청구의 경우) 또는 기업(제11.16조제1항나호에 따라 제기된 청구의 경우)이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최초로 인지하였거나 최초로 인지하였어야 할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청구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없다.</p> <p>2.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청구도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될 수 없다.</p> <p>가. 청구인이 이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중재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그리고</p> <p>나. 중재통보에 다음이 수반되는 경우 어느 한 쪽 당사국 법에 따른 행정 재판소나 법원, 또는 그 밖의 분쟁 해결절차에서 제11.16조에 언급된 위반을 구성한다고 주장되는 조치에 대하여 절차를 개시하거나 계속하는 권리에 대한</p> <p>1) 제11.16조제1항가호에 따라 중재에 제기한 청구의 경우, 청구인의 서면 포기서, 그리고</p> <p>2) 제11.16조제1항나호에 따라 중재에 제기한 청구의 경우, 청구인 및 기업의 서면포기서</p> <p>3. 제2항나호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제11.16조제1항가호에 따라 제기된</p>

한-중 투자챕터	3국투자협정	KORUS
<p>는 한 어떠한 청구도 제3항에 명시된 중재에 회부될 수 없다.</p> <p>7.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가 제2항에 따라 분쟁 당사국에 협의를 위한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분쟁 당사국은 해당 투자자에게 제3항에 명시된 중재에 회부하기 전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국내행정검토절차를 거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할 수 있다.</p> <p>국내행정검토절차는 검토를 위한 신청이 제출된 날부터 4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절차가 그 4개월 후에도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p>	<p>명시된 중재에 회부하기 전 그 계약 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국내행정검토절차를 거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할 수 있다.</p> <p>국내행정검토절차는 검토를 위한 신청이 제출된 날부터 4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절차가 4개월 후에도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것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분쟁 투자자는 제3항에 명시된 중재에 투자분쟁을 회부할 수 있다. 투자자는 제3항에 규정된 4개월의 협의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검토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p> <p>주석: 국내행정검토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어떠한 결</p>	<p>청구의 경우)과 청구인 또는 기업(제 11.16조제1항나호에 따라 제기된 청구의 경우)은 피청구국의 사법 또는 행정재판소에서 임시 가처분을 구하고 금전적 손해배상의 지급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소송을 개시하거나 계속할 수 있다. 다만, 그 소송은 중재가 계속되는 동안 청구인 또는 기업의 권리 및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기되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1.19 조 중재인의 선정</p> <p>1.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며, 각 분쟁당사자는 각 1인의 중재인을 임명하고, 의장이 되는 세 번째 중재인은 분쟁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임명된다.</p> <p>2. 사무총장은 이 절에 따른 중재를 위하여 임명권자의 역할을 한다.</p> <p>3. 청구가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된 날로부터 75일 이내에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사무총장은 어느 한 쪽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재량으로 아직 임명되지 아니한 하나 또는 복수의 중재인을</p>

한-중 투자챕터	3국투자협정	KORUS
<p>것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는 제3항에 규정된 중재에 투자분쟁을 회부할 수 있다. 그 투자자는 제3 항에 규정된 4개월의 협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검토를 위한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p> <p>8.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은 이 조에서 수정된 범위 외에는 제3항에 명시된 중재를 규율한다.</p> <p>9. 제3항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이하 이 조에서 “판정부”라 한다)에 의하여 내려진 판정은 다음을 포함한다.</p> <p>가. 분쟁 당사자</p>	<p>정도 분쟁 투자자가 투자분쟁을 제3항에 명시된 중재에 회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p> <p>8.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은 이 조에서 수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3항에 명시된 중재를 규율한다.</p> <p>9. 제3항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이하 이 조에서는 “판정부”라 한다)에 의한 판정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p> <p>가. 분쟁 투자자와 그의 투자에 관하여 분쟁 계약 당사자가 이 협정상의 어떠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 그리고</p>	<p>임명한다. 분쟁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사무총장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국민을 의장 중재인으로 임명하지 아니한다.</p> <p>4.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39조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제3부제7조의 목적상, 그리고 국적 이외의 근거로 인한 중재인에 대한 이의제기를 저해함이 없이</p> <p>가. 피청구국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의 각 개별 구성원의 임명에 동의한다.</p> <p>나. 제11.16조제1항가호에 언급된 청구인은 중재판정부의 각 개별 구성원의 임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조건에서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에 따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거나 청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리고</p> <p>다. 제11.16조제1항나호에 언급된 청구인은 청구인 및 기업이 중재판정부의 각 개별 구성원의 임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조건에서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p>

한-중 투자챕터	3국투자협정	KORUS
<p>인 투자자와 그의 적용대상투자자에 관하여 분쟁 당사국이 이장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 그리고</p> <p>나.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의 손실 또는 손해가 그러한 위반으로부터 기인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의 구제 방법 중 하나 또는 모두</p> <p>1)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 가능한 이자, 그리고</p> <p>2) 재산의 원상회복. 이 경우 판정은 분쟁 당사국이 원상회복 대신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 가능한 이자</p>	<p>나. 분쟁 투자자의 손실 또는 손해가 그러한 위반으로부터 기인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의 구제 방법 중 하나 혹은 둘 모두</p> <p>1)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 가능한 이자, 그리고</p> <p>2) 재산의 원상회복. 이 경우 판정은 분쟁 계약당사자가 원상회복 대신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 가능한 모든 이자를 지불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p> <p>10. 판정부에 의한 판정은 투자분쟁의 양 당사자에게 최종적이며 구속력이 있다. 이 판정은 그러한 판정의 집</p>	<p>에 따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거나 청구를 계속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1.20 조 중재의 수행</p> <p>1. 분쟁당사자들은 제11.16조제3항에 따라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법적 중재지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지를 결정한다. 다만, 중재지는 뉴욕협약의 당사국인 국가의 영역이어야 한다.</p> <p>2.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와 중재인들의 편의성, 사건대상의 소재지, 그리고 증거에의 근접성을 포함하는 적절한 요소를 고려하여, 협의 및 심리를 포함하는 회의 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 앞 문장은 중재판정부가 제1항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어떠한 적절한 요소도 저해하지 아니한다.</p> <p>3.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영어와 한국어가 모든 심리·입장제출·결정 및 판정을 포함</p>

한-중 투자챕터	3국투자협정	KORUS
<p>를 지불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p> <p>10. 관정부에 의하여 내려진 판정은 최종적이며 투자분쟁의 양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다. 이 판정은 그러한 판정의 집행이 추구되는 국가의 영역 내에서 효력있는 판정의 집행과 관련된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p> <p>11.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가 자신이 제1항에 언급된 손실이나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였거나 최초로 인지하였어야 할 날 중 빠른 날</p>	<p>행이 추구되는 국가의 영역 내에서 효력 있는 판정의 집행과 관련된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집행된다.</p> <p>11.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분쟁 투자자가 자신이 제 1 항에 언급된 손실이나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 중 보다 빠른 날부터 3 년이 경과한 경우 어떠한 청구도 제 3 항에 명시된 중재에 회부될 수 없다.</p> <p>12. 제 3 항(가호 제외)과 제 4 항은 다음에 관한 어떠한 투자분쟁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아니한다.</p> <p>가. 제 9 조제 1 항 나호에 따른 계약당사자의 의무, 그리고</p>	<p>한 전체 중재절차에서 사용되는 공식 언어이다.</p> <p>4. 비분쟁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에 구두 및 서면으로 입장을 제출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분쟁당사국은 자국의 구두 입장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p> <p>5. 분쟁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가 아닌 당사자 또는 실체가 분쟁 범위 내의 사안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에 외부조언자 서면 입장을 제출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그러한 입장제출 허용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재판정부는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다음을 고려한다.</p> <p>가. 외부조언자 입장이 분쟁당사자들의 것과는 다른 관점, 특정한 지식 또는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와 관련된 사실적 또는 법적 쟁점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정도</p> <p>나. 외부조언자 입장이 분쟁 범위 내의 사안을 다루게 될 정도, 그리고</p> <p>다. 외부조언자가 절차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정도 중재판정부는 외부조언자 입장이 중재절차를 방해하거나 어느 한 쪽 분쟁 당사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부담을 주</p>

한-중 투자챕터	3국투자협정	KORUS
<p>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청구도 제 3항에 명시된 중재에 회부될 수 없다.</p>	<p>나. 제 20 조의 범위 내에 해당되는 계약당사자의 조치</p>	<p>거나 불공정하게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며, 분쟁당사자들이 외 부조언자 입장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도록 보장한다.</p> <p>6. 다른 이의제기를 본안전 문제로 다룰 수 있는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저해함이 없이, 중재판정부는 제기된 청구가, 법률상의 문제로서, 제11.26 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있는 청구가 아니라는 피청구국의 이의제기를, 본안전 문제로 다루고 결정한다.</p> <p>가. 그러한 이의제기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중재판정부가 피청구국이 자국의 반론서를 제출하도록 정한 날, 또는 중재통보에 대한 수정이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피청구국이 수정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도록 정한 날 이내에, 중재판정부에 제출되어야 한다.</p> <p>나. 이 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접수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본안에 관한 모든 절차를 중지하고, 그 밖의 본안전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수립한 일정에 합치하도록 그 이의제기를 검토할 일정을 수립하며,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 또는 판정을 내</p>

한-중 투자챕터	3국투자협정	KORUS
		<p>리고 그에 대한 근거를 밝힌다.</p> <p>다. 이 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결정함에 있어, 중재판정부는 중재통보(또는 중재통보의 수정)상의 청구 내용을 뒷받침하는 청구인의 사실 관계에 관한 주장과,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중재규칙에 따라 제기된 분쟁의 경우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중재규칙 제18조에 언급된 청구서면을 사실이라고 가정한다. 중재판정부는 분쟁중이 아닌 관련 사실도 검토할 수 있다.</p> <p>라. 피청구국이 이 항에 따른 이의제기 또는 제7항에 따른 신속절차 이용을 하였거나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국이 권능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나 본안에 관한 어떠한 주장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p> <p>7.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피청구국이 요청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제6항에 따른 이의제기와 분쟁이 중재판정부의 권능 내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의제기에 대하여 신속히 결정한다. 중재판정부는 본안에 관한 모든 절차를 중지하고, 요청일 후 150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면서 그에 대한 근거를 밝힌다. 그러나, 분쟁</p>

한-중 투자챕터	3국투자협정	KORUS
		<p>당사자가 심리를 요구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는데 30일을 추가로 소요할 수 있다. 심리가 요구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중재판정부는 특별한 이유가 제시되는 때에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는 추가적인 단기간 동안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는 것을 연기할 수 있다.</p> <p>8. 중재판정부는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피청구국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때, 정당한 경우, 이의제기를 제출하거나 반박하는 데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및 변호사 보수가 승소한 분쟁당사자에게 지불되도록 판정할 수 있다. 그러한 판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청구 또는 피청구국의 이의제기가 근거가 없었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분쟁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인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한다.</p> <p>9. 피청구국은, 제11.14조에 규정된 대위변제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보험 또는 보증 계약에 따라 주장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배상 또는 그 밖의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라고 항변·반소 또는 상계권이나 그 밖의 어떠한 사유로도 주장할 수 없다.</p> <p>10.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의 권리</p>

한-중 투자챕터	3국투자협정	KORUS
		<p>를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완전히 유효하게 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분쟁당사자의 보유 또는 통제하에 있는 증거를 보전하거나 중재판정부 관할권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포함하여, 잠정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압류를 명령하거나 제11.16조에 언급된 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조치의 적용을 금지할 수 없다. 이항의 목적상, 명령은 권고를 포함한다.</p> <p>11. 가. 이 절에 따라 수행된 모든 중재에서,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배상책임에 관한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기 전에 분쟁당사자들 및 비분쟁당사국에게 제안된 결정 또는 판정을 송부한다. 중재판정부가 제안된 결정 또는 판정을 송부한 날 후 60일 이내에, 분쟁당사자들은 제안된 결정 또는 판정의 어떠한 측면에 대하여도 중재판정부에서면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60일의 의견 제출기간이 만료된 날 후 45일 이내에 그러한 모든 의견을 검토하고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린다.</p> <p>나. 가호는 제12항 또는 부속서 11-라에 따라 불복청구가 가능하게 된 이 절에 따라 수행된 어떠한 중재에도</p>

한-중 투자챕터	3국투자협정	KORUS
		<p>적용되지 아니한다.</p> <p>12. 투자분쟁을 심리하기 위하여 국제 무역 또는 투자 협정에 따라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내린 판정을 재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소 기구를 설치하는 별도의 다자간 협정이 양 당사국간에 발효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그 다자협정이 양 당사국간에 발효된 후에 개시된 중재에서 제11.26조에 따라 내려진 판정을 그러한 상소기구가 재심하도록 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1.21 조 중재절차의 투명성</p> <p>1. 제2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피청구국은 다음의 문서를 수령한 후 신속하게 비분쟁당사국에게 송부하고 대중에게 이용가능하게 한다.</p> <p>가. 의사통보</p> <p>나. 중재통보</p> <p>다. 분쟁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변론서·이유서 및 준비서면과 제11.20조제4항·제11.20조제5항 및 제11.25조에 따라 제출된 모든 서면입장</p> <p>라. 이용가능한 경우, 중재판정부의 심리 의사록 또는 속기록, 그리고</p> <p>마. 중재판정부의 명령·판정 및 결정</p>

한-중 투자챕터	3국투자협정	KORUS
		<p>2. 중재판정부는 대중에게 공개하여 심리를 수행하며, 분쟁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적절한 절차적 준비사항을 결정한다. 그러나, 보호정보로 지정된 정보를 심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분쟁당사자는 중재판정부에 이를 알린다. 중재판정부는 그러한 정보를 공개로부터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p> <p>3. 이 절의 어떠한 규정도 피청구국이 보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23.2조(필수적 안보) 또는 제23.4조(정보공개)에 따라 자국이 보유할 수 있는 정보를제공하거나 접근을 허락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p> <p>4.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모든 보호정보는 다음 절차에 따라 공개로부터 보호된다.</p> <p>가. 라호를 조건으로, 분쟁당사자들이나 중재판정부는 정보를 제공한 분쟁당사자가 나호에 따라 명백하게 지정한 경우 보호정보를 비분쟁 당사국이나 대중에 공개하지 아니한다.</p> <p>나. 특정 정보가 보호정보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는 분쟁당사자는 그 정보가 중재판정부에 제출될 때 그 정보를 명백하게 지정한다.</p> <p>다. 분쟁당사자는 보호정보라고 주장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서류를 제</p>

한-중 투자챕터	3국투자협정	KORUS
		<p>출하는 때에 그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편집본을 제출한다. 편집본만이 제1항에 따라 비분쟁당사국에게 제공되고 공개된다.</p> <p>라. 중재판정부는 보호정보라고 주장되는 정보의 지정에 관하여 분쟁당사자가 제기하는 이의에 대하여 결정한다. 중재판정부가 그러한 정보가 적정하게 지정되지 아니하였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정보를 제출한 분쟁당사자는 1) 그러한 정보를 포함하는 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거나, 2) 중재판정부의 결정 및 다호에 따라 지정을 정정하여 완전본과 편집본을 다시 제출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 이 중 어떠한 경우든, 다른 쪽 분쟁당사자는, 필요한 때에는 언제나, 그 정보를 처음 제출한 분쟁당사자가 1)에 따라 철회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또는 그 정보를 처음 제출한 분쟁당사자의 2)에 따른 지정에 합치하게 정보를 재지정한 완전본과 편집본을 다시 제출한다. 그리고</p> <p>마. 분쟁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동위원회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되는 정보가 적정하게 지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서면결정을 내리는</p>

한-중 투자챕터	3국투자협정	KORUS
		<p>것을 검토한다. 그러한 요청 후 60일이내에 공동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는 경우, 이는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어떠한 결정 또는 판정도 그 결정에 합치하여야 한다. 공동위원회가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는 경우, 비분쟁당사국이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동의한다는 서면진술을 공동위원회에 그 기간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중재판정부의 결정이 계속 유효하게 된다.</p> <p>5. 이 절의 어떠한 규정도 피청구국이 자국법에 의하여 공개되도록 요구되는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1.22 조 준 거 법</p> <p>1. 제3항을 조건으로, 청구가 제11.16조제1항가호1목가) 또는 제11.16조제1항나호1목가)에 따라 제기되는 때에는, 중재판정부는 이 협정과 적용가능한 국제법규칙에 따라 분쟁 중인 쟁점을 결정한다.</p> <p>2. 제3항과 이 절의 그 밖의 규정을 조건으로, 청구가 제11.16조제1항가</p>

한-중 투자챕터	3국투자협정	KORUS
		<p>호1목나) 또는 다)나 제11.16조제1항나호1목나) 또는 다)에 따라 제기되는 때에는, 중재판정부는 다음을 적용한다.</p> <p>가. 해당 투자인가 또는 투자계약에 명시된 법규칙, 또는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할 수 있는 바에 따라, 또는</p> <p>나. 법규칙이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달리 합의되지 아니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의 충돌에 대한 규칙을 포함한 피청구국의 법9), 그리고 2) 적용가능한 국제법 규칙 <p>3. 제22.2조(공동위원회)제3항라호에 따라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표명하는 공동위원회의 결정은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모든 결정 또는 판정은 그 결정에 합치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1.23 조 부속서의 해석</p> <p>1. 위반이라고 주장되는 조치가 부속서 I 또는 부속서 II에 규정된 유보항목의 범위 내에 있다고 피청구국이 항변으로서 주장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문제에 대한 공동위원회의 해석을</p>

한-중 투자챕터	3국투자협정	KORUS
		<p>요청한다. 공동위원회는 그 요청의 전달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2.2조(공동위원회)제3항라호에 따라 이에 대한 해석을 표명하는 결정을 서면으로 중재판정부에 제출한다.</p> <p>2. 제1항에 따라 내려진 공동위원회의 결정은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결정 또는 판정은 그 결정에 합치하여야 한다. 공동위원회가 60일 이내에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그 문제를 결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1.24 조 전문가 보고서</p> <p>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의하여 승인되는 경우 그 밖의 종류의 전문가 임명을 저해함이 없이, 중재판정부는 어느 한 쪽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분쟁당사자들이 거부하지 아니하는 한 자체 발의로, 분쟁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절차에서 제기한 환경·보건·안전 또는 그 밖의 과학적 사안에 관한 사실문제에 대하여 중재판정부에 서면 보고하도록 1인 이상의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p>

한-중 투자챕터	3국투자협정	KORUS
		<p style="text-align: center;">제 11.25 조 병 합</p> <p>1. 제11.16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청구가 별도로 중재에 제기되어 있고 그 청구들이 법 또는 사실의 문제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며 같은 사건 또는 상황으로부터 발생한 경우,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병합명령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의 동의 또는 제2항 내지 제10항의 조건에 따라 병합 명령을 구할 수 있다.</p> <p>2. 이 조에 따라 병합명령을 구하는 분쟁당사자는 서면으로 사무총장과 그 명령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에게 요청을 송달하며, 그 요청에 다음을 명시한다.</p> <p>가. 명령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의 성명 및 주소</p> <p>나. 구하는 명령의 성격, 그리고</p> <p>다. 명령을 구하는 근거</p> <p>3. 사무총장이 제2항에 따라 요청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그 요청이 명백히 근거없다고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설치된다.</p> <p>4. 명령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p>

한-중 투자챕터	3국투자협정	KORUS
		<p>모든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p> <p>가. 청구인들의 합의로 임명되는 1인의 중재인</p> <p>나. 피청구국에 의하여 임명되는 1인의 중재인, 그리고</p> <p>다. 사무총장에 의하여 임명되는 의장중재인. 다만, 의장중재인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 된다.</p> <p>5. 사무총장이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요청을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피청구국</p> <p>또는 청구인들이 제4항에 따라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명령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아직 임명되지 아니한 하나 또는 복수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피청구국이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은 분쟁당사국의 국민을 임명하고, 청구인들이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은 비분쟁당사국의 국민을 임명한다.</p> <p>6.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제11.16조제1항에 따라 중재에 제기된 둘 이상의 청구들이 법 또는 사</p>

한-중 투자챕터	3국투자협정	KORUS
		<p>실의 문제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며 같은 사건 또는 상황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청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그리고 분쟁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명령에 의하여</p> <p>가.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함께 심리하여 판정할 수 있다.</p> <p>나. 중재판정부가 하나 이상의 청구에 대한 판정이 다른 청구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경우에, 그 하나 이상의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심리하여 판정할 수 있다. 또는</p> <p>다. 제11.19조에 따라 이전에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함께 심리하여 판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다만</p> <p>1) 이전에 그 중재판정부의 분쟁당사자가 아니었던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들을 위한 중재인이 제4항가호 및 제5항에 따라 임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 중재판정부는 원래의 구성원들로 재구성된다. 그리고</p> <p>2) 그 중재판정부는 이전의 심리가</p>

한-중 투자챕터	3국투자협정	KORUS
		<p>반복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p> <p>7. 이 조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설치된 경우, 제11.16조제1항에 따라 청구를 중재에 제기하였고 제2항에 따른 요청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인은 제6항에 따른 명령에 자신이 포함되도록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에 다음을 명시한다.</p> <p>가.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p> <p>나. 구하는 명령의 성격, 그리고</p> <p>다. 명령을 구하는 근거</p> <p>청구인은 자신의 요청 사본을 사무총장에게 전달한다.</p> <p>8.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이 절에 의하여 수정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절차를 수행한다.</p> <p>9. 제11.19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이 조에 따라 설치되거나 지시 받은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하게 된 청구 또는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결정할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p> <p>10. 어느 한 쪽 분쟁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제11.19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이미 그 절차를 중단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중재판정부의</p>

한-중 투자챕터	3국투자협정	KORUS
		<p>절차를 보류하도록 제6항에 따른 자신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명령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1.26 조 판 정</p> <p>1. 중재판정부가 피청구국에 최종적인 패소판정을 내리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다음만을 별도로 또는 조합하여 판정할 수 있다.</p> <p>가.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가능한 이자, 그리고</p> <p>나. 재산의 원상회복. 이 경우 판정은 피청구국이 원상회복 대신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가능한 이자를 지불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p> <p>2. 중재판정부는 또한 이 절과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비용 및 변호사 보수를 판정할 수 있다.</p> <p>3. 제1항을 조건으로, 제11.16조제1항나호에 따라 청구가 중재에 제기된 경우,</p> <p>가. 재산의 원상회복 판정은 원상회복이 기업에 대하여 이루어질 것을 규정한다.</p> <p>나.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가능한 이자 판정은 그 합계가 기업에 지불되어야 함을 규정한다. 그리고</p>

한-중 투자챕터	3국투자협정	KORUS
		<p>다. 판정은 그 판정이 적용가능한 국내법에 따른 구제에 있어 어떠한 인이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저해함이 없이 이루어짐을 규정한다.</p> <p>4. 중재판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정할 수 없다.</p> <p>5.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내려진 판정은 분쟁당사자들간 그리고 그 특정사안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p> <p>6. 제7항과 잠정 판정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재심 절차를 조건으로, 분쟁당사자는 지체없이 판정을 지키고 준수한다.</p> <p>7. 분쟁당사자는 다음 시점까지 최종 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없다.</p> <p>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에 따른 최종 판정의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판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20일이 경과하였고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 또는 취소를 요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2) 수정 또는 취소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그리고 <p>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 규칙,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 규칙 또는 제11.16조제3항라호에</p>

한-중 투자챕터	3국투자협정	KORUS
		<p>따라 선택된 규칙에 따른 최종판정의 경우</p> <p>1) 판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고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파기 또는 취소를 위한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 하였을 때, 또는</p> <p>2) 법원이 판정에 대한 수정·파기 또는 취소 신청을 기각하거나 인용하였고 더 이상의 불복청구가 없을 때</p> <p>8.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의 판정의 집행을 규정한다.</p> <p>9. 피청구국이 최종판정을 지키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비분쟁당사국의 요청의 전달이 있을 때, 제22.9조(패널의 설치)에 따른 패널이 설치된다. 요청 당사국은 그러한 절차에서 다음을 구할 수 있다.</p> <p>가. 최종판정을 지키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것이 이 협정의 의무에 불합치 한다는 결정, 그리고</p> <p>나. 제22.11조(패널 보고서)에 따라 피청구국이 최종판정을 지키거나 준수하도록 하는 권고</p> <p>10. 분쟁당사자는 절차가 제9항에 따라 취하여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뉴욕협약에 따른 중재 판정의 집행을 구할</p>

제 2 부 한-중 FTA 주요 챕터 분석

한-중 투자챕터	3국투자협정	KORUS
		<p>수 있다.</p> <p>11.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된 청구는 뉴욕협약 제1조의 목적상 상업적관계 또는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1.27 조 문서의 송달</p> <p>당사국에 대한 통보와 그 밖의 문서는 부속서 11-다에서 그 당사국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로 송부된다.</p>

제10장 전자상거래

제 1 절 개 관

중국은 한국보다 정보화 대장정의 출발은 뒤졌지만 2014년 말 기준으로 중국 인터넷 이용 인구는 6억4900만 명에 이르고,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는 5억5700만 명에 이른다.¹⁾ 이런 이유로 중국은 잠재적으로도 거대한 전자상거래 시장일 뿐만 아니라 이미 굴지의 전자상거래업체를 창출하였다. B2B거래의 최강자인 알리바바(Alibaba), 소셜네트워킹 및 게임분야의 텐센트(Tencent), 검색업체 바이두(Baidu) 등이 그들이다. 최근에는 인터넷 결제 분야에서도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 중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가 제공하는 경제적 성장 기회의 이용 및 개발촉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 하지만 인터넷 경제는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상의 문화, 사회, 정치와 긴밀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 논리가 문화, 사회, 정치 논리에 밀려서 제한을 받게 된다. 한-중 FTA 전자상거래 챕터에서도 이러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1) “중국 인터넷 이용자, 모바일로 빠르게 이동중” 글로벌이코노믹, 2015. 2. 4. http://www.g-enews.com/ko-kr/news/article/sh/201502040220360135709_1/%EC%A4%91%EA%B5%AD+%EC%9D%B8%ED%84%B0%EB%84%B7+%EC%9D%B4%EC%9A%A9%EC%9E%90%2C+%EB%AA%A8%EB%B0%94%EC%9D%BC%EB%A1%9C+%EB%B9%A0%EB%A5%B4%EA%B2%8C+%EC%9D%B4%EB%8F%99%EC%A4%91.html <2016.1.7. 접속>. 2015.11말 기준 중국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는 9억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중국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 9억명 돌파” 아주경제, 2016.1.7. <http://www.ajunews.com/view/20160107125756447> <2016.1.7. 접속>.

제 2 절 주요 조문 분석

1. 일반원칙 (제13.1조)

본 조항에서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의 적용 가능성을 인정한다. 적용여지가 특별히 많은 협정은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이 될 것이다. WTO/DDA에서는 디지털 전송물을 상품으로 보려는 미국의 입장과 서비스로 보려는 EU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다가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다.²⁾ 전자상거래는 통신서비스와 금융서비스 기반위에서 이루어지는 국경간 서비스 제공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으며, 저작물의 디지털화에 의해 온라인상에서 다수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 정부당국이 최근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도입하는 규제강화 조치는 이들 WTO협정에 구체화되어 있는 비차별 원칙과 위장된 무역제한 철폐 원칙의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서비스전송의 기술적 수단의 차이에 따른 규제의 차별은 회피되어야 한다는 기술중립성 원칙 또한 중국의 전자상거래부문에 대한 규제의 합리성을 검토하는 데에 있어서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상거래는 WTO협정 체결 이후에 활성화 되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 만약 이 부문에 WTO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세계무역규범에 큰 법적 흠결이 생기게 된다. 이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은 전망 속에서 WTO는 해석에 의한 대응에 의존하게 된다. WTO 회원국이 FTA를 통하여 본 조

2) 한-중 FTA 협정문 각주 1은 이 장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었다는 것이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전달이 서비스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또는 상품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양 당사국의 입장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첨언하고 있다.

항과 같이 유권적 해석을 하는 것은 WTO의 규범성을 강화하는 FTA의 새로운 기능을 발견하게 한다.

2. 다른 장과의 관계

이 장과 다른 장들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 내에서 다른 장들이 우선한다. 규범의 구체성에 있어서 이 장의 규정은 전반적으로 일반적 규정에 해당하므로 다른 장의 구체적 규정에 비하여 적용상 후순위에 해당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는 “불합치의 한도 내에서” 그렇다는 것이며 합치 해석의 원칙에 따라 병립 가능한 해석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기에 이 장의 규정이 무의미하거나 크게 손상 받을 것이라고 예단할 필요는 없다.

3. 무관세(제13.3조)

각 당사국은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현재 세계무역기구의 관세 미부과 관행을 유지할 것이다. 양국은 각주를 통하여 향후 이 사안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행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고 있다.

1998년 제네바 각료회의 이래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 미부과가 계속 연장되고 있다. 한편으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세의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러한 결정에 다다르는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국가 입장에서는 날로 규모가 커가는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무관세를 무한정 지속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한-미 FTA에서는 관세 미부과의 대상이 전자적 전송물에 한정되지 않고 전달매체에 고정된 디지털제품도 관세 미부과의 대상이 된다. 또한 형식적 의미의 관세뿐만 아니라 수출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그

밖의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를 명시하지 않은 한-중 FTA는 어떻게 해석될지는 분명치 않다.

4. 전자인증³⁾ 및 전자서명⁴⁾ (제13.4조)

어떤 당사국도 서명이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법규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당사자가 적절한 전자서명과 인증 방법을 상호 결정하고, 전자거래에 대한 자신의 전자인증이 전자인증에 대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전자인증기관이 사법 또는 행정당국에서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전자서명의 유효성 원칙, 전자서명방식의 자율적 선택, 전자인증기술의 요건인가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 밖에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각 당사국은 디지털 인증서 및 전자서명의 상호 인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디지털 인증서의 사용을 장려하기로 하였다.

5. 전자상거래상의 개인정보보호

전자상거래상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하는 조치를 채택 또는 유지하고 전자상거래상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3) ‘전자인증’이란 전자통신 또는 전자거래의 무결성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전자서명에 참여한 당사자들에 대하여 신빙성과 신뢰성 검증을 제공하는 절차 또는 행위를 말한다(제13.8조 1문).

4) ‘전자서명’이란 데이터 메시지에 있거나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로서 데이터 메시지에 관한 서명자를 확인하고 그 서명자가 그 데이터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를 승인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제13.8조 2문).

당사국의 의지에 따라서 단순히 선언적 규정이 될 수도 있고 중요한 성과를 거둘 수도 있는 규정이다. 중국에 소재하는 개인 또는 집단과 매개되어 빈번하게 개인정보침해를 당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공조 메커니즘을 확보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6. 종이 없는 무역 (제13.6조)

당사국은 무역행정문서⁵⁾가 대중에게 전자적 형태로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을 선언하였다. 특히, 법적으로 전자 무역행정문서를 종이형식의 문서와 동등한 것으로 수용할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한국은 1992년 제정한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유래한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을 운용하고 있다. 동 법은 전자무역 문서에 의한 신청, 승인, 보관 등에 종이문서로 처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주고 있다.⁶⁾

7. 협력 (제13.7조)

이미 앞에서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그리고 전자상거래상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당사국간 정보와 경험 공유를 약속하였지만 다시금 본 조항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포괄적인 협력을 선언하고 있다.

8. 분쟁해결의 비적용 (제13.9조)

이 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제20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5) '무역행정문서'란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양식을 말한다(제13.8조 3문).

6) 동법 제14조 내지 제16조.

제 3 절 평가 및 과제

한-중 FTA 전자상거래 챕터는 엄격한 의무부과보다는 전자상거래 촉진에 관한 양국의 관심을 반영한 상징적,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흠결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전자상거래 형태의 무역자유화를 확산하는 직접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양국 간 상호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 발전의 틀을 확보하였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표 2-10-1> 주요 FTA의 전자상거래 챕터 체계 비교

한-중 FTA	한-미 FTA	한캐나다FTA	중국-호주FTA
일반원칙	일반규정	적용범위	목적
2. 다른 장과의 관계	2.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	8. 다른 장과의 관계	2. 정의
3. 무관세원칙	3. 디지털제품	2. 일반규정	3. 무관세
4. 전자인증 및 서명	4. 전자인증 및 서명	3. 무관세	4. 투명성
5. 개인정보보호	5. 온라인소비자 보호	4. 개인정보보호	5. 국내규제
6. 종이없는 무역	6. 종이없는 무역	5. 종이없는 무역	6. 전자인증 및 서명
7. 협력	7. 인터넷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	6. 소비자보호	7. 온라인소비자 보호
8. 정의	8. 국경간 정보 흐름	7. 협력	8. 개인정보보호
9. 분쟁해결의 비적용	9. 정의	9. 정의	9. 종이없는 무역

한-중 FTA	한-미 FTA	한캐나다FTA	중국-호주FTA
			10. 협력
			11. 분쟁해결의 비적용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중국 측에 한미FTA 전자상거래 챕터를 협상 모델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기본적인 체계는 한미FTA 이후의 FTA간에 큰 차이가 없게 되었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한-중 FTA 전자상거래챕터는 한국이 미국이나 캐나다와 체결한 FTA에 크게 못 미친다.

첫째, 한-미 FTA는 전자상거래 무관세 원칙에 더하여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원칙을 규정하고 있다.⁷⁾ 한-캐나다 FTA는 국내규제의 명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 자율규제 장려의 중요성과 상호운용성 및 경쟁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⁸⁾ 한-중 FTA에는 이와 같이 무역규제에 핵심적인 비차별 원칙과 국내규제의 굿 거버넌스 원칙이 포함되지 않아서 협정의 질을 낮추고 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가 명시된 것은 긍정적이나 온라인소비자보호가 규정되지 않음으로서 실질적으로 규범의 적용범위가 축소되었다. 양국 간 인터넷직구 비중이 증대해 갈수록 온라인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증대할 것이다.

셋째, 한-미 FTA는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으로서 이용자의 접근권, 선택권, 연결권, 경쟁의 혜택 향유권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총체적으로 거부하였다. “전자상거래를 위한 ….”이라는 전제가 붙었음에도 중국이 정치적 파급효과를 우려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온라인 해외 동영상

7) 한-미 FTA 제15.3조 제2항, 제3항.

8) 한-캐나다 FTA 제13.2조 제2항.

에 대한 사전심의 실시로 한류 콘텐츠의 중국 진출에 심각한 차질을 빚으며,⁹⁾ 카카오톡·라인 등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가 중국에서 불통되는 사례를 빈번하게 당하는 현실에서¹⁰⁾ 한국이 좀 더 강하게 추진했어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넷째, 한-미 FTA에 있는 국경간 정보 흐름의 자유에 관한 규정이 한-중 FTA에는 없다. 넘기 어려운 정치적 장벽이 있었을 것으로 이해한다.

다섯째, 이미 각 조항의 문언이 기속적 규범이라기보다는 최선의 노력에 대한 상호양해 수준이기에 공식적인 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 얻을 것도 없어 보이지만 여기에 분쟁해결절차의 미적용을 명시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더라도 챕터의 외적 이미지를 버려놓는 마지막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호주 FTA의 전자상거래 챕터와 비교해보더라도 일부 사항은 넘지 못할 장벽이었지만 i) 투명성, ii) 국제기준에¹¹⁾ 부합하고 시장 친화적이며 최소한의 국내규제, iii) 온라인 소비자보호 등은 한국이 좀 더 노력하였으면 성취 가능하였던 규정이었음을 시사한다. 기회가 된다면 후속협상을 통해서 전자상거래에서의 정경분리와 디지털 실크로드의 이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획기적으로 개선된 협정문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9) 정두남, 노창희, 「국가간 FTA 협약이 방송광고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 한-미 FTA 및 한-중 FTA를 중심으로」, 한국방송진흥공사, 2015, pp. 115-17.

10) “중국IT엔 안방 열고...‘관리장성 벽’에 갇힌 한국IT”, 서울경제, 2015. 6. 21.

11)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범법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1996)이 언급됨.

제11장 경 쟁

제 1 절 개 관

중국은 2007년에 반독점법을 제정하였으므로 경쟁법 제정과 집행의 역사는 길지 않으나 최근 들어 경쟁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외국사업자는 중국의 경쟁법 집행이 자국 산업 보호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먼저 중국의 경쟁법집행 관할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상무부(MOFCOM), 공상행정관리총국(SAIC) 3개 기관에 나누어져 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이 3개 기관과 모두 경쟁법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거의 동일하며 서문, 협력의 목적과 정의, 협력의 범위와 내용, 갈등 방지와 예방, 협의(정기정책협의회), 작업계획, 비밀의무, 분쟁해결, 현행법 및 국제협정에 대한 구속력, 기타 조문으로 구성되어있다.¹⁾

중국, 퀄컴의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해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지재권 남용)”에 대해 승낙절차(동의의결제와 유사)를 거쳐 아래와 같이 조치(‘15.2.10)

- (시정명령) i) 중국에서 판매되는 휴대폰에 대해 부당하게 높은 특허사용료 부과 금지, ii) 표준필수특허와 비표준필수특허 끼워팔기 금지, iii) 통신칩셋(chipset) 판매과정에서 불합리한 거래조건 부과 금지를 명령
- (과징금부과) 퀄컴의 ‘13년도 중국시장 매출액의 8%에 해당하는 약 60.88억 원(약 1조 650억 원)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

1) 이기평, 「한-중 FTA 경쟁챕터 협상방안 연구」, 2013.6, p. 50.

□ 쉐컴에서는 자진시정방안을 제출하였으며, NDRC의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

○ 또한, 중국의 이동통신기술 및 반도체산업의 발전촉진을 위한 투자기금(약 1,640억 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힘

참조: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 해외경쟁정책동향 제99호 (2015. 2. 16.)

한-중 FTA의 경쟁챕터는 경쟁당국 간 협력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경쟁법 실체원칙, 투명성, 비차별 등 법집행원칙 등을 추가하여 규범력을 강화하고 있다.

제 2 절 주요 조문 분석

1. 목적 및 기본원칙

(1) 목적(제14.1조)

양국은 기업의 반경쟁적 영업행위의 금지, 경쟁 정책의 이행, 그리고 경쟁 관련 사안에 대한 협력이 무역 자유화의 혜택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제적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데 기여함에 공감함으로써 이 챕터의 목적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다.

한국의 일부 기체결 경쟁당국 간 협력협정에는 경쟁법 적용과 관련한 당사국간 분쟁회피 또는 경감을 목적으로 언급한 것이 있는데²⁾, 반면에 기체결 FTA의 경쟁챕터에는 이러한 문구가 없다. 가시화되지 않은 분쟁을 협정문 서두에서 언급하는 것은 마치 경쟁법 적용과 관련한 당사국간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바 FTA 경쟁챕터의 접근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한-유럽공동체, 한-멕시코, 한-캐나다 협력협정.

경쟁챗터는 경쟁 실체법과 집행절차의 조화와 객관성 제고를 통하여 기업의 반경쟁 행위나 경쟁당국의 자의적 법집행이 양국 간 경제 교역에의 제한 요소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2) 경쟁법과 경쟁당국(제14.2조)

양국은 자국 시장에서의 경쟁 과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경쟁법과 경쟁당국을 유지할 것을 약속하였다(제1항). 이미 양국은 경쟁당국을 설치하고 있으므로 확인규정에 불과하다. 또한 양국은 반경쟁적 영업 행위에 대하여 관련 자국 법과 규정에 따라 무역자유화의 혜택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확인하고 있다(제2항). 이 규정은 종래 WTO법제에서 불명료한 요건 하에 비위반제소로만 권리구제를 모색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를 갖는다.³⁾

(3) 법 집행원칙(제14.3조)

양국은 먼저 투명성, 비차별성 및 절차적 공정성을 경쟁법 집행의 원칙으로 선언하였다(제1항). 그 중에서 비차별성과 관련하여 다시 양국은 경쟁법 집행에 있어 자국의 인이 아닌 인을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인보다 더 불리하지 아니하게 대우한다고 규정하였다(제2항). 이는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한 것인데 이 의무의 수혜자가 양국의 인뿐만 아니라 제3국의 인도 포함되도록 규정한 것이 주목된다. 이는 한·미FTA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한·캐나다FTA에서 비차별대우를 내국민 대우 또는 최혜국 대우 중 더 나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것과는⁴⁾ 차이를 보인다. 한-중 , 한·미 FTA의 방식이 제3국인에

3) 다만 후술하듯이 경쟁챗터는 제20장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보 전진 일보 후퇴이라고 할 것이다.

4) 한·캐나다 FTA 제15.5조.

게 FTA의 효력을 부여한 반면에 제3국인에게 부여하는 최선의 대우를 타당 당사국의 인에게 부여할 것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⁵⁾ FTA가 양국 간의 특혜대우를 규정하는 문건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한·캐나다 FTA가 더 적합한 접근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절차적 공정성과 관련하여 경쟁사건에서 조사대상 개인이나 기업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며, 경쟁당국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 재심 및/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제3항). 당연한 규정이기도 하지만 중국사법시스템의 외국 기업에 대한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유의미한 규정이다.

(4) 공기업 등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제14.5조)

양국은 경쟁법이 공기업과 특별한 권리⁶⁾ 또는 배타적 권리를 위임 받은 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됨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원칙 및 경쟁법의 적용이 그 기업에 맡겨진 특정 업무의 수행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방해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한다.

FTA에 의해서 발생하는 무역자유화의 효과가 이들 공기업 등 특별한 기업의 반경쟁적 관행에 의해서 상쇄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약간의 표현을 달리하지만⁷⁾ 한·미 FTA와 한·EU FTA가 모두 유사규정을 가지고 있다. 한·싱가포르 FTA 제15.4조에서 규정하는 경쟁중립성(competitive neutrality)도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⁸⁾

5) 한미FTA의 경우 제16.9조에서 비차별 대우에 최혜국 대우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상 논란의 여지는 있다.

6) “특별한 권리는 당사국이 객관적, 비례적 그리고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을 받은 기업을 지정하거나 그 수를 둘 이상으로 한정할 때, 또는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밖의 기업의 능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적 또는 규제적 우위를 기업에 부여하는 때에, 당사국에 의하여 부여된다.” (각주 1 원문)

7) 한미FTA는 지정독점(designated monopol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8) 상세 내용은 이기평(2013), pp. 133-35.

(5) 경쟁법 집행의 독립성(제14.11조)

양국은 “이 장은 자국의 경쟁법 집행 시 각 당사국의 독립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중국의 기체결 FTA는 이와 유사한 문구를 포함시켜왔다⁹⁾.

한국의 기체결 FTA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으나 한-싱가포르 FTA 제15.7조 제1항이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적용 가능한 경쟁법 및 규정의 집행에 있어 타방 당사국의 경쟁당국이 행한 조사결과·판정 또는 결정을 이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 하에서 재조사 또는 재심하거나 이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것이 유사한 취지의 규정이 아닌가 한다.

한-중 FTA의 이 규정은 그 의미가 모호한 선언적인 규정으로서 실질적인 효력이 없거나, 있다하면 부정적인 효력을 가질 것이 우려된다. 한미FTA 체결시에 국내에서 사법주권, 정책주권이 운위되던 것을 기억한다. 거리의 열정적 구호가 사그러진 후에 냉철히 판단하자면 FTA 체결 자체가 주권적 결정이요 당사국의 독립성을 전제한 것이다. 모든 합의는 당사자의 자의적 행동을 제약하며, 자의적으로 아무런 책임없이 위반할 수 있는 합의라면 합의가 아니다.

2. 반경쟁적 영업행위의 정의(제14.13조)

한-중 FTA 경쟁챕터는 반경쟁적 영업행위의 종류를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공동행위, 지배적 지위남용, 기업간 결합으로 열거하고 있다.¹⁰⁾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 있는 특수한 제도인 불공정

9) “이 챕터의 조항들은 ...당사국 각자의 경쟁법에 따른 각 경쟁법집행당국의 집행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중국-아이슬랜드 FTA 제62조 제3항.

10) 반경쟁적 영업행위란 다음과 같이 당사국의 영역에서 경쟁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업행위나 거래를 말한다.

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전체 영역 혹은 상당한 일부 영역에서 경쟁의 방해, 제한 또

거래행위의 금지, 경제력집중의 억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의 기체결 FTA에서 일반적으로 취하고 있는 태도이다.¹¹⁾

구체적인 정의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동조적 관행’(concerted practices)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배적 지위남용과 관련하여 ‘하나 이상의 기업에 의한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공동의 시장지배’(collective dominance)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개념은 유럽법제에서 개발되었으며 그 결과 한·EU FTA에 포함되었고, 한국의 공정거래법 법문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¹²⁾ 다만 이들 개념에 대한 이해가 당사국간에 동일할지는 의문이며 실제로 이에 대한 우려에서 한·EU FTA는 “동조적 행위에 대한 이 조의 적용은 각 당사자의 경쟁법에 의해 결정된다.”고 각주에서 밝히고 있다. 유사한 양해가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이러니하게도 비판적으로 고찰한 제14.11조(경쟁법 집행의 독립성)이 양해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여지가 있다.

3. 투명성 (제14.4조)

중국의 경쟁법 집행 역사가 일천한 결과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고 기초가 되는 것은 제도와 그 이행에 대한 투명성의 확보이다. 투명하게 정보가 제공되어야 경쟁법 집행의 내외 기업 간 차별 등 무역제한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을 것이다.

는 왜곡을 목적이나 효과로서 가지는 기업 간 합의, 기업단체의 결정 및 동조적 관행
나. 어느 한쪽 당사국의 전체 영역 혹은 상당한 일부 영역에서 하나 이상의 기업
에 의한 지배적 지위 남용, 또는

다. 어느 한쪽 당사국의 전체 영역 혹은 상당한 일부 영역에서, 특히 독점적 지위
의 형성 또는 강화의 결과로 효과적인 경쟁을 중대하게 방해하는 기업 간 결합

11) 한-EU FTA 제11.1조.

12) 독점규제법 제2조 7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정의, 제19조 제5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

한-중 FTA에서 양국은 조사절차규칙을 포함하여 경쟁 정책과 관련된 법과 규정을 공개하며, 행정결정은 모든 관련 사실의 조사결과와 그 결정이 기초하고 있는 법적 근거를 기술할 것을 보장한다. 다만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한편, 한-미 FTA 제16.5조는 경쟁법 집행, 공기업, 지정독점, 경쟁법 적용면제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한-EU FTA와 한-미 FTA는 투명성에 관한 별도의 장을 두고 있다(한미 제21장, 한 EU 제12장).¹³⁾ 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한-중 FTA의 본 조항이 단출하지만 후술하는 제14.9조(정보의 교환)가 보충적 기능을 할 것이기에 경쟁챕터의 규정으로는 부족해 보이지 않는다.

4. 협력 및 분쟁해결

(1) 법 집행 협력(제14.6조)

양국은 경쟁분야에서의 협력 및 조정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통보, 협의,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통하여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보호 정보의 교환과 교류도 규정하고 있다. 실로 국제경쟁법 발달의 현 단계는 아직 공통된 실체법이나 절차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당국간 협력 및 조정을 확보하는 데에 주안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규정은 일반조항으로서 구체적인 협력 방법은 뒤따르는 4개 조항에서 상론된다.

13) 고도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규정을 시행하는 것이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에 게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현실적 고려에서인지 한-중 FTA는 투명성에 대한 별도 챕터는 두지 않았다. 한-중 양국이 FTA를 내부적 제도개혁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노력은 부족했던 것 같다.

(2) 통보(제14.7조)

양국은 자국의 경쟁법 집행활동이 타 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고려하는 경우, 그 집행활동을 자국의 하나 또는 복수의 경쟁당국을 통하여 타 당사국에 통보할 것에 합의하였다. 법률에 반하지 아니하며 진행 중인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 양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이익에 비추어 평가를 하기에 충분하도록 초기 단계에 상세히 통보하도록 노력한다.

통보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의 주체가 통보를 하는 국가이고 이 조항 전체가 법적 의무라기보다는 각자의 능력 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이므로 신사협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중요한 이익’, ‘실질적 영향’, ‘진행 중인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 등의 표현이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실행을 거친 후에만 안정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3) 협의(제14.8조)

양국 간의 이해를 증진하거나, 특정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타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제기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요청하는 당사국은, 상관이 있는 경우 그 사안이 양국 간의 무역 또는 투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적시한다.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이 제기한 우려 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

양국 간 경쟁법 집행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경쟁당국은 정기협의를 또는 수시협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정 사안을 다루기 위한 협의는 양국 간 분쟁해결의 일차적 수단이란 성격을 갖는다. 전통적으로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억지하기 위한 준칙으로 사용되어 역외적용의 대상이 되는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한 ‘소극적

예양’(negative comity) 뿐만 아니라 상대국 내에서의 적절한 경쟁법 집행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호의적 고려를 하는 ‘적극적 예양’(positive comity)까지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인 문언을 사용하고 있다.¹⁴⁾

(4) 정보의 교환(제14.9조)

양국은 타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행 중인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정보를 보유한 기관을 규율하는 법 및 규정과 합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양 당사국 각각의 경쟁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제1항).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경쟁 당국이 비밀로 제공한 모든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며, 정보를 제공한 그 당사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어떠한 실체에게도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제2항).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에 대한 적용 예외 및 면제와 관련된 공공 정보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그러한 요청은 특정 상품 혹은 서비스, 그리고 관련 시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예외나 면제가 양 당사국 간의 무역 자유화를 방해할 수 있다는 지표를 포함한다(제3항).

한국의 기체결 FTA는 대부분 간단하고 포괄적인 정보교환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칠레 FTA가 가장 상세하며 한-중 FTA와 유사한 규정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한-중 FTA 제3항 단서의 요건 특히 “그 예외나 면제가 양 당사국 간의 무역 자유화를 방해할 수 있다는 지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지표는 관련 정보의 충분한 수집과 분석 이후에만 도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 든다. 제3항 본문의 경쟁법 적용 예외 및 면제와 관련된 공공 정보는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의해서만 제공 여부가 검토되는 것이 아니라

14) 소극적 예양과 적극적 예양을 구분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기체결 FTA로는 한국-칠레 FTA(제14.5조)가 있다.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정보이다. 비록 한미FTA 제16.5조도 동일한 본문과 단서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은 이해되지만 한-중 FTA가 한미FTA를 넘어설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쉽다.

(5) 기술협력 (제14.10조)

양국은 경쟁정책 및 법 집행과 관련된 각 당사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험의 교환, 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 구축, 워크숍 및 연구협력을 포함한 기술적 협력 증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6) 분쟁해결(제14.12조)

어떤 행위가 이 장의 의미에서의 무역에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친다고 일방 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 사안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타방 당사국에게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¹⁵⁾

모호함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어떤 행위”는 국가의 관행이 아니라 후술하는 제14.13조에서 정의된 “반경쟁적 영업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장의 의미에서의 무역에의 영향”이란 반경쟁적 행위에 의해서 무역자유화의 효과가 제약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양국은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제20장의 분쟁해결절차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중국과 한국의 대부분의 기체결 FTA도 분쟁해결절차 적용배제 규정을 두고 있다.

15) (영문) If a Party considers that a given practice continues to affect trade in the sense of this Chapter, it may request consultation to the other Party in the Joint Commission with a view to facilitating a resolution of the matter. (한글본) “이 장의 의미에서 어떠한 행위가 무역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한쪽 당사국이 간주하는 경우, ...” “간주”는 오역이라 생각된다.

제 3 절 주요 특징 및 평가

1. 주요 특징

(1)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의 경쟁법 적용

중국에는 공기업이 많은데 과연 중국의 경쟁당국이 자국 공기업의 경쟁저해행위에 대하여 경쟁법을 충실히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왔다. 한-중 FTA는 제14.5조 제3항에 공기업 및 지정독점기업에 의한 경쟁제한 행위의 규제를 보장하고 있다. 이들 규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국의 경쟁법 적용을 관찰하고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국 반독점법 제50조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소를 허용하고 있지만, 행정기관과 법률·법규에 의해 공공사무관리의 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을 포함하는 공공기관이 행정권한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¹⁶⁾ 공공기관의 경쟁제한적 행위가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사실상 법 집행에 있어서도 매우 소극적이었다. 반독점법 제51조에서는 공공기관이 경쟁제한적 행위를 한 경우 그 상급기관이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하고, 반독점법 집행기구¹⁷⁾는 그 상급기관에 법에 의한 처벌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상급기관에서 조사하여 시정토록 명령하거나 반독점법 집행기구에서 처벌을 건의한 사례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최근 공공기관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소송 제기를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행정소송법을 개정하였으니¹⁷⁾ 개정된 법이 실효적으로 집행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16) 예를 들자면, 지방정부가 (i) 상품 또는 용역의 지역 간 자유로운 유통을 제한하거나, (ii) 타 지역의 사업자를 차별취급을 하거나, (iii) 특정 사업자로 하여금 특정 제품을 지정된 가격에 팔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음.

17) GCR, "China allows abuse cases against government"(14.11.5), 공정거래위원회 국

(2) 국경간소비자보호

FTA가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협상된다는 점에 대한 시민들의 강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으며 이는 DDA 지연의 중요 이유 중 하나이다. 경쟁 활성화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최선의 정책이라는 주장에 일리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손에 잡히는 정책 도출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중 FTA는 제14.6조 제2항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원칙 선언과 임의적 정보교환을 규정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국경간소비자보호에 관한 정책협약과 구제협력에 관한 조항을 포함했다라면 적지 않은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¹⁸⁾

2. 평가와 과제

한-중 FTA 경쟁챕터는 경쟁법 집행의 일반원칙, 공기업에 대한 경쟁법 적용, 경쟁당국간 협력 등을 개괄적으로 규정하면서 분쟁해결규정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는 연성법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명성, 비차별대우, 절차적 공정성을 경쟁법집행의 일반원칙으로 명시하였으며, 공기업에도 경쟁법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다. 중국의 기체결 FTA에 비하면 획기적인 발전이며¹⁹⁾ 한국의 기체결 FTA와 비교해서도 역대 체결된 FTA중 체계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 가장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협정의 협상가들이 쏟은 건설적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하며 다소간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것도 양국 경쟁당국 간의 협력 강화와 peer review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

제협력과, 해외경쟁정책동향 제95호 (2014. 12. 3.)

18) 중국 경쟁법제의 문제점으로 규정의 불명확성, 국유기업과 행정독점에 대한 미온적 법집행, 집행절차의 장기화로 인한 비용부담 증가, 소비자보호장치의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기평(2013), pp. 167-178.

19) 중국이 체결한 FTA에서는 근년에서야 경쟁챕터가 독립챕터가 되었으며(아이슬랜드, 스위스와 체결한 FTA) 그것도 1개 조문, 총 1쪽에 불과하였다. 최근 서명된 중국-호주 FTA에는 경쟁챕터가 없다.

<표 2-11-1> 한국과 중국의 FTA 경쟁챕터 구성 비교

한-중	한-미	한-EU	중-스위스
1. 목적	-	1. 원칙	-
2. 경쟁법과 경쟁 당국	1. 경쟁법과 반경쟁적 영업행위	2. 정의	1. 경쟁법과 경쟁 당국
3. 법 집행 원칙	2. 지정독점	3. 이행	2. 국가독점
4. 투명성	3. 공기업	4. 공기업과 특별한 기업	3. 경쟁법 집행의 독립성
5. 경쟁법의 적용	4. 가격차별	5. 국가독점	4. 협력
6. 법 집행 협력	5. 투명성	6. 협력	5. 협의
7. 통보	6. 국경간 소비자 보호	7. 협의	6. 분쟁해결
8. 협의	7. 협의	8. 분쟁해결	-
9. 정보의 교환	-	-	-
10. 기술협력	-	-	-
11. 경쟁법 집행의 독립성	-	-	-
12. 분쟁해결	8. 분쟁해결	-	-
13. 정의	9. 정의	-	-
-	-	보조금	-

자료: 필자 작성

주 1): '-'는 관련 규정 없음

주 2): 한-EU FTA 경쟁챕터에서는 '보조금'을 제2절에서 규정하는 관계로 조문번호가 없음

참고문헌

정두남, 노창희, 「국가간 FTA 협약이 방송광고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 한-미 FTA 및 한-중 FTA를 중심으로」, 한국방송진흥공사, 2015.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 「해외경쟁정책동향」, 각호.

이기평, 「한-중 FTA 경쟁챕터 협상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6

제12장 지식재산권

제 1 절 개 관

한국과 중국은 서로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및 법제도 등이 상이하어, 한-중 FTA 발효 후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분쟁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한-중 FTA 제4차 협상에서부터 지식재산권 관련 분야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지식재산 관련 주요 법제 및 정책은 다음과 같다¹⁾: 중국은 상표법, 전리법(지식재산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식물신품종권법 등을 제정하였다. 그 이후 WTO/TRIPs 가입을 위해 전리법을 수정(2009년)하고 상표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이외에도 중국은 국가지재권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2005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요강을 수립하여(2008년)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전리법 자체에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중국이 상표법을 개정하고 전리법의 개정안을 공개하는 등 지식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반면 한국의 지식재산 관련 주요 법제 및 정책은 다음과 같다²⁾: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 등 발명, 고안 및 디자인 등에 개별적인 보호법을 가지고 있으며 2011년에는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한국은 특히 한-미 FTA, 한-EU

1) 윤선희 및 이현희, “한-중 FTA를 대비한 양국의 지적재산권법제 비교연구,” FTA 법제지원연구(한국법제연구원), 24면 (2013년).

2) *Id.*, 25면.

FTA 등에서 TRIPS 플러스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본 챕터에서는 한-중 FTA협정문 제15장 지식재산권 파트의 협정문 분석을 통해 양국의 합의사항이 양국의 특허법, 저작권법 및 상표법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 이슈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과 중국이 다른 국가와 기체결한 타 FTA(한-미 FTA, 한-EU FTA 그리고 중-스위스 FTA)의 지식재산권 분야 핵심내용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한-중 FTA만의 차별적인 특징을 요약 정리하고자 한다.

제 2 절 주요 쟁점 및 분석

1. 일반 규정 (General Provisions)

(1) 목적(Objectives)

본 챕터의 목적은 세 가지이다: (1) 아이디어, 기술 및 창의적인 작업을 확산하여 국제 무역,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적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함, (2)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을 통해 지식재산의 권리자와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함, 그리고 (3) 특히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교역을 제거하고 연구를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식재산권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 그것이다.

한편, 양국은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그 집행이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적법한 이익과 일반 대중간의 균형을 달성해야 함을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어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만이 이 챕터의 주요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기체결 FTA를 살펴보면 한-미 FTA와 중-스위스 FTA는 목적을 따로 서술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한-EU FTA에서는 양국 내에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제품의 생산 및 상업화를 촉진하는 것, 그리고 충분하

고 효과적인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집행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보면 한-중 FTA에서 훨씬 구체적으로 목적을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일반 원칙(General Principles)

양 당사국은 적절하고, 유효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부여하고 보장하여야 하며, 이 챕터의 규정과 양 당사국이 가입한 국제 협정에 따라, 그러한 권리의 침해, 위조 및 불법복제에 대한 집행을 위한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제15.2조 1항).

한-EU FTA에서 일반원칙을 따로 서술하고 있지 않은 점과 비교하여 보면, 본 챕터의 일반규정이 더욱 발전된 모습이라고 평가되어진다. 다만 한-미 FTA와 비교하여 보면, 한-중 FTA에서는 투명성 원칙 규정이라든지, 본 협정이 적용되는 시간적 범위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

한-중 FTA에서 서술하고 있는 구체적인 원칙은 아래와 같다.

1) 내국민대우원칙

본 챕터에서 보호받는 지식재산(저작권, 저작인접권,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상표, 산업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식물신품종 및 미공개 정보)에 대하여,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자연인과 법인)에게 그 당사국이 보호와 관련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제15.2조 2항). 그리고 이 의무로부터의 면제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조와 제5조의 실제적 규정과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 제4조제2항에 따라야 한다(동조 3항).

2) 적절한 조치의 채택

양 당사국은 권리자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남용 또는 무역을 불합리하게 저지하거나 기술의 국제적 이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관행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이 협정의 규정과 자국의 국제적인 의무와 합치하여야 한다(제15.2조 3항)

(3) 국제 협정(International Agreements)

본 챕터의 규정과 연관되어 있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제 협정은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국인 협정에 한하며, 양 당사국은 그러한 국제 협정에서 창설된 의무를 확인하고 있다(제15.3조).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12개의 국제 협정은 다음과 같다: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 협약」(1967년) (파리협약),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1971년) (베른협약), 1979년에 개정되고 1984년과 2001년에 수정된 「특허협력 조약」(1970년), 1980년에 개정된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1977년), 1979년에 개정된 「표장의 등록 목적의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적 분류에 관한 니스 조약」(1957년), 「표장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1989년),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1996년),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1996년),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1971년), 「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1978년), 「세계지식재산기구 설립 협약」.

한-미 FTA(제18.1조 3항)에서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국제 협정의 기존 의무를 재확인하기 보다는 동 FTA의 발효일까지 양 당사국이 지식재산권 관련 분야의 특정 국제협정에 비준하거나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한-중 FTA보다는 상대적으로 국제 협정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한-EU FTA(제10.5조)에서는 베른협약,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 그리고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로마협약)인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중-스위스 FTA(제11.3조)에서는 한-중 FTA에서 언급한 위 협약들 중에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및 세계지식재산기구 설립협약을 제외하고는 모두 같다.

(4) 광범위한 보호(More Extensive Protection)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본 챕터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 및 집행을 자국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더 광범위한 보호는 본 챕터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제15.4조).

그러나 광범위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양 당사국이 부담하는 것은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도 ‘더 광범위한 보호 및 집행’이 가능함을 이야기 하고 있으나 한-중 FTA에서처럼 이것이 당사국의 의무가 아님을 명백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5) 지식재산권과 공중보건(Intellectual Property and Public Health)

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WT/MIN(01)/DEC/2)에서 수립된 원칙을 인정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양국은 본 챕터의 권리와 의무를 해석하고 이행함에 있어,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을 원용할 수 있다(제15.5조 1항). 나아가 양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개정 의정서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 제6항의 이행」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기로 한 자국의 약속을 재확인한다(동조 2항).

한-중 FTA에서는 특정 품목에 대한 공중보건조치를 언급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일반규정으로서 이를 언급하고 있다. 이는 중-스위스 FTA 제11.5조(지식재산권과 공중보건)와도 유사하며(단, 조항 해석과 이행에 있어 TRIPS와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 원용 가능 여부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한-EU FTA의 제10.34조(특허와 공중보건)도 비슷하다.

한편 한-미 FTA에서는 제18.11조(특정 공중보건조치에 관한 양해)에서 특히 극히 긴급한 상황 또는 국가 비상사태뿐만 아니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후천성면역결핍증, 결핵, 말라리아 그리고 그 밖의 전염병과 같은 경우에 관하여, 모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증진함으로써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라 하여 의약품에 대한 공중보건 조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2.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1)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Protection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자인 국제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저해함이 없이, 양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 및 본 챕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 실연, 음반 및 방송에 대하여 각각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적절하고 유효한 보호를 부여하고 보장하여야 한다(제15.6조 1항).

1) 저작권 보호기간

한-중 FTA에서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양 당사국의 자국법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결정될 것이다. TRIPS협정은 기본적으로 WTO 회원국들이 저작권자

의 저작권을 사후 50년 이상 보호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제12조). 한-미 FTA(제18.4조 4항)와 한-EU FTA(제10.6조)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이다. 특히 한-미 FTA에서는 자연인인 경우 저작자 사후 70년, 법인의 경우에는 저작물 등의 공표 후 70년 또는 창작 후 25년 내에 공표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 후 7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스위스 FTA에서는 저작자에게는 양 당사국의 자국법에 따라, 공연자, 비디오그램 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는 저작권 보호 기간을 5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1.6조 6,8,9항).

각 당사국에서의 보호범위 불일치와 관련하여 우리 저작권법 제3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³⁾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⁴⁾

내국민대우의 원칙은 상호주의(reciprocity)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바, 우리 저작권법도 이러한 취지에서 2011. 6. 30. 개정법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면서 50년의 보호기간만 인정하는 나라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제3조 제4항을 신설한 것이다.⁵⁾

3)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호는 하되 보호의 수준이나 정도가 우리나라 저작권법보다 낮은 경우도 포함한다. 송영식·이상정, 『저작권법개설(제8판)』, 세창출판사, 158면 주181, (2012).

4) 제4항은 2011. 6. 30. 개정법에서 신설되었다.

5) 이해완, 『저작권법 제3판(전면개정판)』, 박영사, 1210-1211면 (2015).

2) 배타적 복제권 부여

각 당사국은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자신의 저작물, 실연, 음반 및 방송의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하여 이들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제15.6조 2항). 그리고 그러한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이나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

3) 방송신호 보호기간

케이블 또는 위성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그리고 이 방송이 유선 또는 공중파에 의하여 송신되는지를 불문하고, 방송이 이루어진 후 50년 이상을 보호하는 규정을 제공하여야 한다. 즉 방송 시점으로부터 최소 50년을 보호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동조 3항).

TRIPS협정에서는 방송기관(Broadcasting organizations)⁶⁾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회원국의 의무가 아니고 각 회원국 사정에 따라 방송기관 대신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보유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으며(제14조 3항), 방송기관이나 저작권자가 보유하는 권리는 최소 20년간 보호된다(제14조 5항). 한-EU FTA에서도 방송기관의 경우에는 기존의 최초 방송 전송으로부터 50년 이상으로 보호되며(제 10.7조), 중-스위스 FTA에서도 50년으로 보호된다(제11.6조 10항). 한-미 FTA에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원래 중국은 외국 방송사업자의 방송은 TRIPS에 따라 20년만을 보호기간으로 산정하였으나, 한-중 FTA를 통해 우리나라 방송사업자는 50년 이상이라는 보호기간을 인정받게 되었다.

(2) 방송과 공중전달(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o the Public)

각 당사국이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에서 부담하고 있는 의무에 따라, 상업적인 목적으로 출간된 음반이 방송이나 공중전달에 직접적 또는

6) 우리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보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제15.7조 1항). 각 당사국은 방송사업자에게 자신의 방송의 재방송 및 고정(방송을 녹화하는 행위 및 녹화한 방송을 배포 송신하는 행위를 의미),⁷⁾ 그리고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자기 방송의 고정물의 복제에 대한 사전허락 또는 사후금지를 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제공하여야 한다(동조 2항).

이러한 규정은 한-EU FTA의 제10.9조(방송과 공중전달)를 통해 전격적으로 의무화된 것으로, 한-중 FTA의 내용은 이와 유사하다. 그러나 한-EU FTA와 달리 한-중 FTA 협정문 내에는 ‘방송’과 ‘공중전달’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다.

위 보상청구권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가 어떻게 보상을 공유할지에 대해서는 한-중 FTA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한-EU FTA에서는 이러한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위하여 그 조건을 국내법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제10.9조 4항).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인의 공연뿐만 아니라 음반이 직·간접적으로 공중에 전달되는 경우가 급속히 늘고 있는 실정을 살펴보면, 한-중 FTA에서의 본 규정은 아무래도 한국 측에 보다 유리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본 조항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이 직·간접적으로 방송이나 공중에 전달된 경우, 작곡가 및 작사가뿐만 아니라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보상의무를 광범위하게 규정해 두고 있기 때문이다.

7)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 관계부처합동, 2015. 3, 109면.

(3) 기술조치의 보호(Protection of Technological Measures)

기술조치(Technological Measures)라 함은 저작물이나, 공연 또는 음반에 관하여 각 당사국의 법률에 규정된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의 권리자가 허락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통제 조치로서 크게 이용통제와 접근통제로 구별된다(제15.8조 2항). 이용통제(use control)라 함은 저작물을 복제, 방송, 배포하는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CD 복제 방지장치(가령, 영화 복제 시 화질이 떨어지게 하거나 복제가 불가하도록 하는 장치)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접근통제(access control)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권리자가 허락한 경우에만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프로그램 암호 또는 DVD 지역코드 등이 이에 해당된다.⁸⁾

한-중 FTA에서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를 금지할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당사국에게 요구하고 있다 (제15.8조 1항). 그러나 이러한 기술조치의 우회 행위를 한 자가 이를 인지하거나 인지할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수행되어야 하므로 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이는 한-미 FTA의 제18.4조 7항과 유사하며 한-EU FTA 제10.12조 1항에서도 이를 언급하고 있으나 한-EU FTA는 효과적인 법적 구제 장치의 도입을 당사국에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각 당사국은 자국법과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정에 따라 기술조치의 보호에 대한 예외 및 제한 규정을 들 수 있다(제15.8조 3항). 한편 한-미 FTA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제18.4조 7항 (라)호에서 기술조치의 보호에

8) *Id.*

대한 예외 및 제한을 명시적으로 열거(가령, 부적절한 온라인 콘텐츠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등)하고 있으며, 이에 나아가 이러한 예외도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에 대한 법적 보호의 적정성 또는 법적 구제의 유효성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으로 다시 제한하고 있다(제18.4조 7항 (마)호). 이에 따라 예외 및 제한 규정 상황에 대한 열거가 없는 한-중 FTA에서는 향후 기술발전에 따라 추가 예외를 설정할 수 있는 협의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한-EU FTA(제10.12조 4항)의 규정과도 같다.

(4) 권리관리정보의 보호(Protection of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권리관리정보(Rights Management Information)라 함은 권리자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이다. 즉 하나의 저작물을 다른 저작물과 구별하고, 그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권리처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저작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 방송 또는 전송에 수반되는 숫자나 코드(가령, 워터마크)를 의미한다(제15.9조 2항).⁹⁾ 이러한 정보 중의 어느 하나가 본 챕터에서 언급되는 저작물이나 공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과 결합되거나 공중전달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경우에 적용된다.

각 당사국은 본 챕터 또는 베른협약,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 및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어떠한 권리의 침해를 유인, 가능,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게 할 것을 알거나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고의로 다음의 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충분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제15.8조 1항).

9) *Id.*

문제되는 행위란 다음을 의미 한다: (1) 권한 없이 전자적인 권리관리정보를 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전자적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되었거나 변경된 저작물, 저작물의 복제물, 공연, 고정된 공연의 복제물을 일반대중에게 전달하는 행위. 즉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제도가 적용되지 아니 한다.

이는 한-EU FTA(제10.13조)와 유사하며 한-중 FTA에서는 적용대상이 되는 국제조약을 나열하고 있다. 한편, 한-미 FTA에서는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제도가 권리관리정보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다(제18.4조 8항 (라)호). 중-스위스 FTA에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들이 없다.

(5) 제한 및 예외(Limitations and Exceptions)

각 당사국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그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특정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제15.10조).

한-미 FTA(제18.4조 10항)에서도 한-중 FTA와 비슷하다. 다만, 제한 및 예외적인 경우라도 어떠한 당사국도 텔레비전 신호(지상파, 케이블 또는 위성을 불문한다)를 그 권리자 또는 그 권리자들의 허락 없이, 인터넷상에서 재송신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음을 명시 하고 있다(18.4조 10항 (나)호). 한-EU FTA(제10.11조)에서도 제한 및 예외 규정을 자국법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스위스 FTA에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6) 인터넷상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치(Measures against Repetitive Copyright Infringements on the Internet)

각 당사국은 인터넷이나 그 밖의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저작권과 저작권접권의 반복적인 침해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15.28조). 효과적인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자국의 실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 이를 위한 양국의 정보교환 및 협력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3. 상표 (Trademarks)

(1) 상표 보호(Trademarks Protection)

양 당사국은 상품과 서비스의 상표권자에게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부여하여야 한다(제15.11조 1항). 상표 등록의 요건으로 그 표지가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것만을 요구할 수 없으며, 상표를 구성하는 표지가 소리만으로 되어 있더라도 상표의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조 2항).

상표권의 보호범위를 TRIPS협정을 넘어 확장된 대표적인 FTA로는 한-미 FTA가 있는데, 한-미 FTA에서는 냄새 혹은 소리만으로 구성된 상표도 상표로서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실제 기업이 이용하고 식별력이 있는 경우 비시각적인 상표, 즉 소리(가령, 인텔사의 효과음이나 MGM사의 사자 울음소리)와 냄새(가령, 레이저 프린터 토너의 레몬향)도 권리로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제18.2조 1항). 중-스위스 FTA에서도 소리 상표의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7조 1항). 한-중 FTA에서는 소리 상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냄새 상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한-중 FTA은 등록된 상표의 소유권자는 제3자가 (1) 상표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2) 등록상표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3)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4)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5) 혼동 가능성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지사용을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보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5.11조 3항). 이때의 혼동 가능성이란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지를 등록상표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미 FTA에서는 ‘지리적 표시’를 포함한 상표 등록권자의 배타적인 권리까지 인정하고 있다(제18.2조 4항). 한-EU FTA (제10.67조 1항: 국경조치)에서도 포장을 포함하여 같은 형태의 상품에 대하여 정당하게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허가 없이 지니고 있거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상표와 식별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을 위조상품으로 분류하고 이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이는 한-미 FTA 제18.10조 19조 ‘지식재산권의 집행’과 같다). 중-스위스 FTA도 이러한 상표 등록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제11.7조 3항).

나아가 양 당사국은 기만(deception)의 속성을 가진 표지는 상표로 사용되지 아니하며 상표로 등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제15.11조 4항). 각 당사국은 기만의 속성을 가진 표지의 상표 등록거부가 가능하나 ‘기만’의 속성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 한-미 FTA에서는 “각 당사국은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이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거나, 오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기만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와 유명 상표권자를 연관시킬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유명상표의 명성에 대한 불공정한 이용을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거절하거나 취소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규정한다(제18.2조 8항)”고 되어 있는

바, 한-중 FTA의 기만적 속성의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한-EU FTA나 중-스위스 FTA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2) 상표권의 예외(Exceptions to Trademarks Rights)

각 당사국은 상표권에 부여되는 권리에 제한적인 예외조항을 둘 수 있으나 그러한 예외는 상표권자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규정되어야 한다(제15.12조). 이는 의무 조항은 아니지만, 각 당사국이 만약 예외 규정을 둔다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3) 유명 상표(Well-Known Trademarks)

각 당사국은 유명 상표를 판단함에 있어 (1) 상표 등록(당사국의 영역 또는 다른 관할권에 등록), (2) 유명 상표 목록에 등재, 또는 (3) 유명 상표로 사전에 인식될 것을 조건으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제 15.13조 1항). 한-미, 한-EU, 중-스위스 FTA에는 없는 조항이다. 이는 중국에서 유명 상표에 대해 ‘중국내 관련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비교적 높은 명성을 향유하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어, 국외에서는 이미 알려졌지만 중국 내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우리나라 상표가 보호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위 규정을 둔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된다.¹⁰⁾

각 당사국에서 이미 유명한 등록상표를 복제, 모방 또는 번역한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상품 및 서비스와 그 등록 상표권자와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도 유명 상표의 보호가 적용된다(제15.13조 2항). 다만, 유명 상표의 보호는 등록 상표권자의 이익이 그러한 사용으로 인하여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0) 조미진 및 박현정,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 경제, 제7권 37호, 8면 (2007년).

한-미 FTA 제18.2조 7-8항과 중-스위스 FTA 제11.7조 4항에 위 규정과 비슷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중 FTA의 규정은 기존 파리조약 제6조의2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해 유명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¹¹⁾ 즉 한-중 FTA에서는 유명 상표의 보호가 매우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각 당사국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의 등록을 거절, 취소하거나 사용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유명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오인을 유발하는 상표를 (2) 해당 유명상표와 관련이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사용하여 (3) 상표권자의 이익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때 등록을 거절, 취소 또는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제15.13조 3항). 한-미 FTA(제18.2조 8항)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우 등록거절, 등록취소 또는 사용이 금지 된다: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이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거나, 오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기만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와 유명상표권자를 연관시킬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유명상표의 명성에 대한 불공정한 이용을 구성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4) 상표의 등록 및 출원(Registration and Application of Trademarks)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는 상표등록제도를 규정하여 상표 출원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상표 등록 거절 사유의 서면 통보, 통지는 전자적으로 제공 가능하며 상표 등록 거절에 대해 출원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답변의 기회, 이의제기 가능, 사법적 불복 청구가 가능하고 이해관계자에 의한 이의신청, 등록 취소 및 무효

11)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 관계부처합동, 2015. 3. 111면.

를 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어야 한다. 이때 이의신청 및 취소절차의 결정은 서면(전자적으로도 가능)으로 통보하며 사유를 제공하여야 한다(제15.14조 1항).

상표 출원 절차 개선 및 상표등록제도 규정은 한-미 FTA (제18.2조 9항), 한-EU FTA (제10.15조)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중-스위스 FTA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상표 등록과 관련하여 이의 신청 기간은 한국은 60일 이내¹²⁾, 중국은 90일 이내이나, 중국은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까지 가능하여, 이러한 경우 최대 6-7년이 소요될 수 있어서 이러한 경우 중국 내 상표권 등록이 지연되는 등 한국기업의 실질적인 권리행사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에 이를 유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상표 출원 기간이 연장될수록 상표의 불법 이용이 가능하여지고, 출원인은 타인의 모방행위에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에 개선된 상표 출원 절차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따라서 협정문에서 이의신청 기간에 대한 충분한 논의(중국의 현행 90일 적용이 바람직함)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¹³⁾ 협정문 본문에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 가능을 삽입한 것은 바람직하다.

나아가 각 당사국은 상표 출원의 투명성 개선을 위하여 다음을 규정하여야 한다(제15.14조 2항): (1) 상표출원, 심사, 등록 및 유지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및 (2) 일반 대중이 상표 출원과 등록을 열람할 수 있는 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다. 상표 출원의 투명성 개선을 위한 위 규정은 한-미 FTA(제18.2조 10항)와 동일하며 한

12)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 출원인은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상표법 제23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출원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상표법 제25조 제1항). 그리고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자는 이의신청 기간의 경과 후 30일 이내에 그 이유 및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상표법 제26조).

13) 조미진 및 박현정, 전계서 7-8면.

-EU FTA(제10.15조)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다. 즉 한-EU FTA는 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의무화하지만, 상표 출원, 심사, 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전자적 시스템 구축은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중-스위스 FTA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4. 특허 및 실용신안(Patent and Utility Model)

(1) 특허 보호(Patents Protection)

모든 기술 분야에서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어떠한 발명도 신규성, 진보성, 그리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갖추면 특허 신청이 가능하지만, 아래 사항은 특허 대상에서 제외된다(제15.15조 1항): (1)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거나 환경에의 심각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업적 이용의 금지가 필요한 발명인 경우, 다만 이러한 제외는 그 이용이 자국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동조 2항), (2)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방법, 치료 방법 및 외과적 방법(3항), (3) 미생물을 제외한 식물 및 동물, 이들의 생산에 이용되는 본질적으로 생물적인 절차 및 미생물적인 절차이다(3항).

특허 대상 제외인 경우와 관련하여 한-미 FTA (제18.8조 2항)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 세 번째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 한다(즉 위 열거 중 (1)과 (2) 규정 포함). 한-EU FTA에서는 ‘특허와 공중보전’을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한 특허 대상 제외인 경우를 열거하고 있지 않다. 중-스위스 FTA (제11.8조)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위 열거 중 (2)와 (3) 포함. 이는 TRIPS협정 제27조 2항과 같다).

특허 역시 다른 지식재산관련 권리와 마찬가지로 특허에 의하여 특허권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에 대하여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특허의 통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방해하여서도 아니 된다(제15.15조 4항). 이때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은 권리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정당한 이익간의 적절한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한-미 FTA (제18.8조 3항) 과도 같으며 한-EU FTA와 중-스위스 FTA에서는 이 규정이 없다.

나아가 각 당사국은 자국 법과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를 출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제15.15조 5항). 그리고 특허 우선 심사제도 도입을 위해 양 당사국은 서로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제도 도입을 통해 특허 등록 심사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출원인의 불편을 점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타 FTA에는 없다.

(2) 실용신안(Utility Model)

실용신안 권리자와 대중 간의 이익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양 당사국은 실용신안과 관련된 법과 규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교환하여 양 당사국의 실용신안의 법적 구조에 대한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하였다(제15.16조 1항). 이는 양 당사국의 권리자와 대중의 실용신안 제도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양국에서 실용신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심사주의를 그리고 중국은 무심사주의로 운영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실용신안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하지 않는 당사국에서는 법원이 실용신안 권리자인 원고에게 특허당국에 의해 작성된 실용신안 평가 보고서를 침해증거로 제출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제15.16조 2항). 이는 실용신안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중국은 실용신안 제도를 무심사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초보심사만 진행하고 실질심사를 진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한국은

실질심사를 거쳐 등록을 하는 ‘심사후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중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5.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이 과학, 문화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양 당사국이 인정한다(제15.17조 1항). 양 당사국은 『생물다양성협약』을 재확인하며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이하, 나고야의정서)』의 ‘사전통보승인(PIC)’의 요건과 ‘상호합의조건(MAT)’을 서로 존중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생물다양성협약』과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간의 상호 지지적인 관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장려하여야 한다(동조 2항).

생물다양성협약을 포함한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대상은 ‘유전자원’ 및 ‘토착지역공동체가(ILC)가 보유한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이다. 이에 본 협정의 챕터에서는 이보다는 넓은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을 포함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과 TRIPS의 관계 논의 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특허 출원 요건이다. 즉, TRIPS에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추면 특허를 부여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지만 유전자원 제공국가(중국 포함)들은 이에 추가적인 요건으로 ‘유전자원 출처 공개’를 의무화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양국은 자국이 부담하는 국제적 권리 및 의무 그리고 자국 법에 따라,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의 공평한 공유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동조 3항). 실제로 한국과 중국은 현재 나고야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안을 제정 중에 있다. 그리고 양국은 다자 협

정 또는 각 당사국의 자국 법률의 향후 발전에 따라, 유전자원에 관한 관련 사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동조 4항). 양국의 법 제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증진을 강화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양 당사국은 특허와 그 밖의 지식재산권이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며, 그러한 권리들이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을 지원하며 그에 역행하지 아니하도록 국내 법률과 국제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동조 5항).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은, (1) 생물다양성의 보전, (2) 생물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3) 그리고 그러한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이며, 세 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화 시킨 것이 나고야의정서이다. 중국을 포함하여 특허 신청 시 유전자원 출처의 공개를 의무화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유전자원 제공국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유전자원 제공국들은 꾸준히 주장하여 오고 있다.

한-미 FTA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EU FTA(제10.40조)에서 이를 다루고 있으며 동 협정문에서는 다자협의 과정에서 상호 협력을 지속해나가고, 그 결과를 무역위원회 결정을 통해 도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두었다. 중-스위스 FTA(제11.9조)에서도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을 다루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허 출원 시, 자국법에 따라 유전자원 출처 공개를 의무화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6. 식물품종 보호 (Plant Variety Protection)

양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식물신품종 보호에 관한 규정을 존중하고 식물신품종의 육종가에게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부여함과 동시에 식물신품종 검사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검사에 서로 협력을

제고하기로 약속하였다(제15.18조 1항과 2항). 나아가 보호되는 식물
신품종의 번식재료와 관련하여 상업적 목적의 생산 또는 재생산(증
식), 판매를 위한 청약, 판매, 마케팅, 수·출입 등에 대해서는 해당
육종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3항).

7. 디자인(Industrial Designs)

양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으로 최소 10년의 보호기간을 규정하는
등의 의장(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하
여야 한다(제15.20조 1항). 한국은 이미 디자인 등록 후 15년의 보호기
간을 부여하고 있었다가 2013. 5. 28. 법률 제11848호 개정법에서 디
자인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고, 「산업디자
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디자
인권의 존속기간을 설정등록일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개정하였는데(디자인보호법 제91조 제1항), 중국은 디자인
출원일로부터 10년을 부여하고 있어 양 국의 보호체계가 다르다.¹⁴⁾
이에 중국의 보호기간에 대한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참고로 한-EU
FTA에서의 보호기간은 15년이다(제10.30조). 한국이 자국법이나 기체
결 FTA에서 인정하고 있는 보호 기간보다는 훨씬 짧은 기간을 한-중
FTA 협정문에 삽입하게 된 것은 중국 측의 요구가 강했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되어 진다.

의장의 권리자는 배타적 권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제3자가 권
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채, 보호되는 디자인을 지니거나 형체
화한 물품을 제작, 판매를 위한 제공, 판매, 수입하는 행위를 상업적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 권리자는 제3자의 이러한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2항). 한-중 FTA에서는 이러한 제3자의 행위가 상

14) 조미진 및 박현정, 전계서 9면.

업적 목적인 경우에만 권리자의 배타적 권리 행사를 인정하고 있으나, 한-EU FTA에서는 디자인의 통상적인 사용을 부당하게 저해하거나 또는 공정한 거래관행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권리가 인정된다(제10.28조).

양국은 의장권 보호와 관련하여 일정한 예외를 둘 수 있다. 다만, 제한적인 예외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보호되는 디자인의 통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아니하되, 디자인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5.20조 3항). 한-EU FTA에서도 이와 같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제한되지 아니 하고, 더 나아가 본질적으로 기술적 또는 기능적 고려에 의해 요구되는 디자인, 그리고 공공정책 또는 인정된 도덕 원칙에 반하는 디자인에는 의장의 보호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명문화 하고 있다(제 10.31조).

8. 지식재산권의 집행(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 일반 의무(General Obligations)

지식재산권의 집행과 관련된 최종 사법결정 및 행정판정은 반드시 공표하여야 하며, 만약 공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부와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중에게 자국의 언어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영업비밀 또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자국법의 규정에 따라 위 의무가 적용되지 아니 한다(제15.22조 1항). 각 당사국은 자국의 민사, 행정 및 형사 제도에서의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집행을 제공하는 자국의 노력에 대한 정보를 홍보한다(동조 2항).

한-미 FTA(제18.10조)와 한-EU FTA(제10.41조)에서도 이와 비슷한 규정이 있다. 다만 한-EU FTA에서는 집행 절차와 구제에 대한 기본 성격을 덧붙이고 있다.

(2) 민사 및 행정 절차와 구제(Civil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Remedies)

각 당사국은 모든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절차를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제15.24조 1항)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을 허용할 수도 있다(동조 9항). 민사 절차에서 자국의 사법당국은 지식재산권 침해의 결과로 권리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손해배상(침해행위로 얻은 침해자의 이익이 손해배상액으로 추정될 수 있음)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 손해배상액은 시장가격, 권장소비자가격 또는 권리자가 제시한 그 밖의 정당한 가치측정에 의하여 산정된 침해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를 함께 고려할 수 있다(동조 2항).

한-중 FTA에서도 한-미 FTA에서와 같이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저작권, 저작인접권(음반, 실연) 그리고 상표위조 침해 관련 민사 소송에서 권리자는 실손해배상 대신에 자국 법령에 미리 규정되어 있는 법정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의 법정손해배상액은 지식재산권의 장래 침해를 방지하고 침해로부터 야기된 피해를 권리자에게 완전히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어야 한다(동조 3항). 참고로 한국의 경우, 저작권 침해인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영리를 위하여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로 늘어남), 상표권 침해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이다. 중국은 저작권 침해인 경우에는 1만위안에서 100만위안 사이에서 결정되며 상표권 침해인 경우에는 200만위안 이하이다.¹⁵⁾ 나아가 각 당사국은 저작권, 저작인접권, 상표

15)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 관계부처합동, 2015. 03, 114면.

위조 또는 특허 침해 관련 민사 절차에서의 패소자에게 재판비용, 수수료 및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승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동조 4항).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사실상 실손해액의 입증에 어렵고 민사 절차에 의한 배상액이 손해를 만회하기에 부족한 경우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에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저작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표 위조와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침해 혐의가 있는 상품, 침해 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나 도구, 또는 관련된 증거서류의 압류를 명령할 수 있다(동조 5항). 압류와 폐기·처분과 관련하여서 구체적으로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불법 복제되거나 위조된 상품은 적절한 상황에서 폐기되며, 각 당사국은 불법 복제품, 상표 위조품 등 이들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및 도구의 몰수 및 폐기를 할 수 있다(동조 6항, 이는 형사 절차에서도 적용된다. 제15.27조 3항 (c)호).

증거수집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 집행과 관련된 민사 절차에서 침해자에게 침해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사법당국에게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을 저해함이 없이 해당 정보를 권리자에게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제15.24조 7항). 그리고 각 당사국의 법원은 민사 절차 과정에서 당사자, 변호인, 전문가 등 소송관계자가 얻은 정보의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다(동조 8항).

(3)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의 정도를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각 당사국은 집행 당국이 일방적 잠정조치의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의무를 부여하였다(제15.25조 1항). 각 당사국은 권리자의 권리가 침해

되고 있거나, 그러한 침해가 임박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모든 증거를 신청인에게 제출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사법 기관에 부여한다. 또한 각 당사국은 침해혐의자를 보호하고 잠정조치의 권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 수준의 담보 또는 보증 제공을 신청인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사법 당국에 부여한다(동조 2항).

이는 한-미 FTA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한-EU FTA에서는 잠정조치를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를 열거하고 있다. 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간금지명령(interlocutory injunction)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이를 통해 사법당국은 상업적 규모로 행하여진 침해인 경우에는, 침해혐의자의 은행계정 또는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동산 및 부동산의 예방적 압류형태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 10.46조 3항).

(4) 국경조치와 관련된 특별 요건(Special Requirements Related to Border Measures)

지식재산권 침해우려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신청도 가능하다. 즉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수입, 수출, 환적되거나 자유무역지대 혹은 보세창고에 위치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권리자는 세관에 침해우려물품의 통관보류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제15.26조 1항). 개인이나 권리자의 공식적인 통관보류 신청이 없이도,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권한 있는 당국이 직권으로 해당 침해우려물품에 대한 반출을 정지할 수 있다(동조 4항). 세관 당국에 의하여 반출이 정지되고 지식재산권의 침해로 몰수된 상품은 각 당사국이 폐기할 수 있으며, 위조된 상표 상품에 대하여 단순히 부착된 불법 상표를 제거하는 것만으로 그 상품의 상거래로의 반출을 허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다(동조 5항).

나아가 권리자가 충분한 정보를 통관 당국에 제공할 경우, 각 당사국은 권리자가 이러한 통관보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마련해 두어야 하며, 세관이 침해우려물품을 발견한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이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어 권리자가 통관보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동조 2항). 그러나 이러한 권리자의 권리 행사 남용을 막기 위하여 통관보류 신청 시에 충분하고 합리적인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동조 3항).

이러한 제도는 한-미 FTA에서 이미 도입되었으며(제19조-25조) 한-EU FTA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제10.67조). 다만, 권리자가 통관보류를 요청하였을 경우 이러한 절차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세관당국이 먼저 파악하여 이러한 사실을 권리자에게 알려줄 경우에는, 통지기일(가령, 한-미 FTA에서는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을 협정문에 명시하여 권리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두는 것도 필요하다.

(5) 형사절차와 구제(Criminal Procedures and Remedies)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민사 절차 외에도 형사 절차를 통한 구제방안을 도입하였다. 각 당사국은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 위조나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하여야 한다(제15.27조 1항). 형사처벌은 충분한 벌금형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징역형을 포함할 수 있으며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로 얻은 모든 자산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자국의 사법당국에 부여할 수 있다(동조 3항). 또한 각 당사국은 영화관의 상영으로부터 그 영상저작물 또는 그 일부를, 고의로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상업적인 규모로 복제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적용할 형사 절차 및 처벌을 규정하여야 한다(동조 2항). 우리 저작권법은 2011. 12. 2. 개정법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

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면서(제104조의 6), 이에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137조 제1항 제3의3).

오늘날 영화관에서 영상물을 불법으로 도촬하여 이를 상업적 이윤을 위하여 복제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규정은 저작권 침해행위 방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9. 그 밖의 규정(Other Provisions)

(1) 협력(Cooperation)

본 챕터에서 수행되는 약속과 의무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국의 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협력은 양국의 역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 한-중 FTA에서는 타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본 챕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협력을 약속하였다. 특히, 양국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 및 법규에 대한 정보 교환, 기술지원 및 훈련과정 제공, 국경 간 지식재산 범죄를 다루기 위한 증거 수집 등 기업과 산업이 제기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안을 고려하여 협력을 증진한다(제15.30조).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은 한-EU FTA에서 도입되었다. 본 협정문에서는 정보 및 경험 교환, 역량배양, 소비자 및 권리자의 인식제고 등에 필요한 협력을 증진하고 효과적인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 등을 위하여 효과적인 대화체(지적재산 대화체)를 설치하고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제10.69조). 한-중 FTA에서는 이러한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위원회’를 따로 설치해 두었다.

(2) 지식재산권 위원회(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본 챕터의 이행을 돕고 양국의 의무를 검토하고 점검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본 위원회는 이외에도 양 당사국 간의 협력을 증진할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정보의 교환, 분쟁 해결방안 마련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한다(제15.31조 2항). 그리고 본 위원회는 한-중 FTA 발효 후 1년 이내에 구성되어 매년 회합하여 회의하며, 그 회의의 결과는 공동위원회에 보고한다(동조 3항). 특정 챕터마다, 당 챕터의 효과적인 운영과 이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하며, 당 위원회를 통해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한 대화의 창구로 활용되어지기도 한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인 만큼 관련 전문가와 행정가들로 적절히 구성하여 동 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양국의 지식재산권 권리를 보호하고 본 챕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제 3 절 평가 및 과제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및 법제도가 서로 상이한 중국과의 FTA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분야의 협상은 매우 중요하였다. 한국은 이미 한-미 FTA와 한-중 FTA를 통해 TRIPS 플러스 방식의 수준 높은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중국은 중국이 기체결한 FTA중 가장 발전된 지식재산권 챕터를 한-중 FTA를 통해 구비하게 되었다. 본 챕터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을 서술함과 동시에 TRIPS 플러스 조항 도입뿐만 아니라 이를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도입하여 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구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양국은 역량차이를 인정하여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고, 협력을 활성화하고 본 챕터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지식재산권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합의하였다.

1. 저작권 보호기간

기본적으로 TRIPS협정에 따라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사후 50년 이상 보호하여야 하며 한국과 중국(50년)은 자국법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결정한다. 한국은 미국과의 FTA를 시작으로 70년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분야의 FTA에서의 TRIPS+ 합의는 FTA 당사국에게만 적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국내제도 정비는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 2-12-1> 저작권 보호기간 비교

한-중 FTA	한-미 FTA	한-EU FTA	중-스위스 FTA
규정없음	70년	70년	50년

2. 방송신호 보호기간

중국은 외국 방송사업자의 방송은 20년만을 보호기간으로 산정하여 왔으나, 한-중 FTA를 통해 우리나라 방송사업자가 50년 이상이라는 보호기간을 인정받게 되었다. 한-중 FTA에서의 방송보호기간 50년은 TRIPS협정의 20년보다 보호기간이 연장되었다. 한국은 이미 한-EU FTA를 통해 방송신호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표 2-12-2> 방송신호 보호기간 비교

한-중 FTA	한-미 FTA	한-EU FTA	중-스위스 FTA
50년	규정없음	70년	50년

3. 방송과 공중전달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인의 공연뿐만 아니라 음반이 직·간접적으로 공중에 전달되는 경우가 급속히 늘고 있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이 직·간접적으로 방송이나 공중에 전달된 경우, 작곡가 및 작사가뿐만 아니라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보상의무를 광범위하게 규정해 둔 것은 바람직하다.

4. 기술조치의 보호

한국과 중국은 기술조치를 보호하고 이를 우회하는 행위를 금지할 충분한 법제도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술조치의 보호에 대한 예외 및 제한에 대한 규정을 둘 수 있는 예시가 열거되지 아니하여 향후 기술발전에 따라 추가 예외를 설정할 수 있는 협의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상표

중국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출원 및 등록 신청이 활발하며, 상표권은 특허와 달리 기술함량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여타의 지식재산 권리에 비해 우리 기업의 침해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¹⁶⁾

<표 2-12-3> 상표권 관련 주요 핵심사항 비교

규정	한-중 FTA	한-미 FTA	한-EU FTA	중-스위스 FTA
상표보호범위	O	O	X	O

16) *Id.*

규정	한-중 FTA	한-미 FTA	한-EU FTA	중-스위스 FTA
기만속성을 가진 표지	O	O	X	X
유명상표	O	O	X	O
상표등록 거절, 취소	O	O	O	X
상표등록제도	O	O	O	X
지리적 표시	X	O	O	X

(1) 상표 보호

상표 보호와 관련하여 한-중 FTA에서는 소리도 상표로서 보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냄새 상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우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것”을 상표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12. 3. 15. 발효된 한-미 FTA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해 2011. 12. 2. 법률 제 11113호로 개정된 상표법에서 신설된 것이다.

(2) 유명 상표 제도

중국은 유명상표를 ‘중국내’ 관련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비교적 높은 명성을 향유하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에는 이미 알려지고 유명하지만 중국 내에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우리나라 상표가 보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는데,¹⁷⁾ 한-중 FTA에서 특정 당사국의

17) *Id.*, 8면. 우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

영역 또는 다른 관할권에 등록되어 있는 조건 등으로 유명상표를 구분지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우리나라 상표가 보호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상표의 등록 및 출원

한-중 FTA에서 상표 출원 및 등록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필요해 보인다. 가령, 상표 등록과 관련된 이의신청기간이 한국(60일)보다 중국(90일)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중국 내 상표권 등록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실질적인 권리행사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¹⁸⁾ 상표 출원 기간이 연장될수록 상표의 불법이용이 가능하여지기 때문이다.

상표의 등록 및 출원과 관련하여 의견제출 기회의 보장이 명문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한국에서는 출원에 대한 거절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심사의견통지서를 미리 통보하고 기간 내에 보정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등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견제출 기회가 보장(예컨대, 상표법 제23조¹⁹⁾ 제2항)된 반면 중국은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상표 출원 결정 거절 사후뿐만 아니라 사전에도 출원인의 의견제출 기회 보장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를 부등록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18) *Id.*, 7면.

19) 제23조(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원인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4.5.>

(4) 출원 중인 상표의 보호

상표 등록은 상품출시와 사업을 개시하는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표 등록 이전에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 출원 중인 상표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아쉽게도 한-중 FTA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후 출원 중인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6. 특허

중국의 특허제도는 이미 보호원칙 및 보호수준이 높은 편이라 우리나라의 특허제도와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적은 편이다. 특히 한-중 FTA에서의 특허 우선 심사제도의 도입은 특허 등록 심사의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고 특허권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제고시켜 줄 수 있는 기능을 기대해볼 수 있다.

그러나 한-미 FTA와 한-EU FTA가 규정하고 있는 특허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규정이 한-중 FTA의 협정문에는 없다. TRIPS협정은 특허권을 출원일로부터 20년 이상을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등록지연 및 의약품 등의 허가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운영하지만 중국은 관련 제도가 없다.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는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 5년 기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는 시판허가 기간에 대한 보상제도는 물론, 특허 심사 기간 자체의 부당한 지연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8.8조 6항). 한-EU FTA에서는 특허된 제품의 시장출시를 위한 허가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

간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해줄 수 있도록 규정한다(제10.35조). 실제로는 특허심사제도가 많이 발전하여 심사기간의 표준인 3-4년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적은데다, 한-중 FTA에서 우선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존속기간의 연장 규정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기는 한다. 다만 추후협상이 가능하다면 부당한 지연에 대한 보상제도를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허의 조건(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뿐만 아니라 특허의 취소 사항에 대한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TRIPS협정에서는 특허의 내용, 조건, 예외, 강제사용,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TRIPS협정 제5부). 한-미 FTA에서는 특허 부여의 거절을 정당화하였을 근거에 의하여만 특허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사기, 허위진술 또는 불공정 행위가 특허 취소 사유가 됨을 밝히고 있다(제18.8조 4항). 특허 취소와 관련된 규정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과 같은 절차적인 요소도 함께 고려되어야 특허 관련 규정의 이행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12-4> 특허 관련 핵심 규정 사항 비교

규정	한-중 FTA	한-미 FTA	한-EU FTA	중-스위스 FTA
특허대상 제외	O	O	O (공중보건)	O
우선 심사제도	O	X	X	X
특허존속 기간 연장	X	O	O	X
특허 취소사유	X	O	X	X

7. 실용신안

한-미 FTA, 한-EU FTA와 중-스위스 FTA에서는 실용신안제도와 관련된 규정이 없기에 이 규정은 한-중 FTA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실용신안에 대해서 무심사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용신안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평가보고서 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보고서는 실용신안 침해에 대한 분쟁을 심리하거나 처리하는 증거로서 사용되어 진다. 실용신안에 대한 양 당사국의 관련 법체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양국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다.

8.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

<표 2-12-5>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 관련 규정 포함 여부

한-중 FTA	한-미 FTA	한-EU FTA	중-스위스 FTA
O	X	O	O * 민간전승물은 포함하지 않음

한국의 많은 기업들(바이오산업, 화장품 산업, 제약 산업 등)이 중국의 유전자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본 조항의 규정은 양국에 큰 영향이 있다. 특히 나고야의정서 발효와 함께 해외의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한국의 기업들이 이러한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유전자원 제공국가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고야의정서 관련 규정들이 ‘환경 챗터’가 아닌 ‘지식재산권’ 챗터에 수록된 배경은 특히 출원 요건과 관계가 깊다. 한-페루 FTA(2010년), 한-뉴질랜드 FTA(2014년)에는 이와 관련 규정들이 지식재산권 챗

터에 수록되었고. 한-콜롬비아 FTA(2012년)는 ‘무역과 지속발전 협력’ 챕터에 수록되었다. 중국은 다른 국가와 기체결한 FTA들 중 이와 관련된 규정들이 모두 지식재산권 챕터에 수록되어 있다: 중-뉴질랜드 FTA(2008년), 중-페루 FTA(2008년), 중-코스타리카 FTA(2010년)와 중-스위스 FTA(2014년). 그리고 중-뉴질랜드 FTA를 제외한 세 개의 FTA에서는 모두 유전자원 출처 공개를 언급하고 있다.

유전자원 출처 공개 의무화(disclosure requirement) 요건 문제는 한국과 중국 사이의 예민한 난제이다. 실제로 중국은 협상 과정에서 유전자원 출처 공개 관련 문구를 협정문에 수록하도록 요구하였다. 중국은 2008년에 전리법을 개정하여 유전자원 출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유전자원 관련 특허 신청 시 유전자원의 직접출처 및 원시출처를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만약,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를 밝혀야 하며(제26.5조) 이와 관련하여 유전자원 출처 공개 위반 시, 특허 부여가 취소된다(제5.2조). 반면 우리나라는 유전자원 출처가 영업비밀인 경우가 많고, 기업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게 되어 유전자원 출처 공개 의무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TRIPS의 개정을 통한 ‘유전자원 출처 공개 의무화(disclosure requirement)’ 논의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중국을 포함한 W/52 그룹에는 유전자원 주요 제공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협약 이행 확보 및 잘못된 특허부여 방지를 위해 유전자원 출처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TRIPS 협정을 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을 포함한 JP그룹은 TRIPS와 생물다양성협약은 서로 각각의 고유 목적이 있으며, 협약 목적 달성을 위한 TRIPS의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협정문 개정을 통해 유전자원 출처 공개 문구를 삽입하게 된다면, 의무 규정보다는 장려 규정으로 표현하고, 적용 시기에 대한 명확한 문구를 기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리고 유전자원

출처 공개 요건에 대한 예외 조항을 열거(가령, 기밀사항 등)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삽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유전자원뿐만 아니라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으로 본 규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고야의정서에서 보호되는 전통지식은 토착지역공동체(ILC)가 보유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인데,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통지식은 나고야의정서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한-중 FTA에서는 전통지식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통지식(가령, 된장발효 지식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통지식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반면 한-콜롬비아 FTA에서는 전통지식을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양 당사국이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공포하는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 등에 예의주시하여야 한다.

9. 식물품종보호

한-미 FTA(제18.1조 3항)와 한-EU FTA(제10.39조)에서는 식물신품종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의 내용을 양 당사국이 준수한다는 규정만 있지만 한-중 FTA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식물품종 보호를 위한 규정을 도입하였다. 한국과 중국은 모두 식물식품종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및 국제식물신품종보호 동맹에 가입되어 있다. 이로써 해외 종자에 로열티를 많이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토종 종자를 개발하고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10. 디자인

디자인 보호인 의장권은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한국기업에 대한 침해가 빈번한 분야로 꼽히며 지식재산권 챕터 분야에서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였다. 한-EU FTA를 통해 폭넓은 디자인 보호를 해주던 한국

입장에서는 한-중 FTA에서 그 내용이 후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TRIPS협정은 최소 10년을 보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제25조 1항). 그러나 한국은 이미 한-EU FTA를 통해 15년으로 보호기간을 늘렸다가 최근에는 다시 출원일 후 20년까지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법체계(10년)와 달라 중국에 등록된 우리 기업의 디자인은 상대적으로 충분한 보호기간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특히 협정문 본문에서 의장권의 최소 보호기간을 10년이라고 하고 있지만, 의장의 등록 후인지 출원 후인지 불분명하여 디자인 등록 후 10년이라는 문구를 두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한-EU FTA에서 미등록 의장까지 보호의 대상으로 범위를 넓혀 미등록 외관의 경우에는 3년의 보호기간을 설정하고 있는데 반해(제10.29조), 한-중 FTA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²⁰⁾ 더욱이 한국은 불공정 경쟁을 막고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새로 만들어진 디자인이 등록이 안 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미등록된 디자인의 외관을 복제하지 못하도록 3년의 보호기간을 두고 있으나, 중국은 이러한 규정 자체가 없다.²¹⁾ 이에 따라 한국기업들의 미등록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중국에 마련되지 아니한 점 또한 매우 아쉽다.

11. 지식재산권의 집행

TRIPS협정 자체가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나 구제수단’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FTA에서는 이러한 TRIPS협정의 의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집행 방법 및 수단을 확보하는 내용을 상호 간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²²⁾ 이에 한-중 FTA에서도 민사,

20) TRIPS협정에서는 보호의 범위에는 ‘산업용 디자인(industrial design)’에 한정하고 있다(제4부).

21) 조미진 및 박현정, 전거서 9면.

22) 최원목, “FTA 지식재산권 분야,” FTA의 이해(기획재정부), 242-243면 (2013년).

행정 그리고 형사적 구제수단을 구비해 두고 있다. 집행과 관련된 관정과 결정을 공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결과를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지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미집행 시에 따르는 자국의 일반적 의무를 서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 윤선희 및 이현희, “한-중 FTA를 대비한 양국의 지적재산권법제 비교연구,” FTA법제지원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13년)
- 조미진 및 박현정,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 경제, 제7권 37호, (2007년)
- 송영식·이상정, 「저작권법개설(제8판)」, 세창출판사, (2012)
- 이해완, 「저작권법 제3판(전면개정판)」, 박영사, (2015)
- 최원목, “FTA 지식재산권 분야,” FTA의 이해(기획재정부), (2013년).
-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 관계부처합동, (2015)

제13장 환 경

제 1 절 국제경제법상 환경에 대한 규율 현황

1. 의 의

우리나라를 포함한 WTO의 회원국들은 ‘무역자유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의 보호와 보존’을 WTO의 근본적 목표 중의 하나로 삼고 있는데,¹⁾ 이는 WTO설립협정의 전문²⁾과 GATT 제XX조의 일반예외 조항(주로 전문과 (b)호, (g)호)³⁾을 통해 확립하고 있다. 따라서 동 협정의 당사국들은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하여야 하지만, 자유무역을 제한하는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되지 않은 차별 또는 위장된 보호무역수단이 아니라면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제한은 WTO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한편, 도하개발아젠다에서 ‘무역과 환경’을 협상의 주요 분야로 선정하고 있기는 하지만,⁴⁾ WTO에서의 다자주의 협상이 고착상태에 빠져 있어, 1992년의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을 시작으로 양자주의 접근법으로 보다 발전된 무역규범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FTA에서 환경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관련 챕터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⁵⁾

1)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envir_e/envir_e.htm 참조(2015.8.20. 검색).

2) “상이한 경제발전 단계에서의 각각의 필요와 관심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적에 일치하는 세계자원의 최적 이용을 고려하는 한편, ...”

3) “다음의 조치가 동일한 여건이 지배적인 국가 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당사자가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b)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g)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로서 국내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결부되어 유효하게 되는 경우.”

4)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da_e/dda_e.htm 참조(2015.8.20. 검색).

특히, FTA에 규율된 환경보호 규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고, 국내 환경법의 효율적 집행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회원국 간의 평등한 경쟁조건을 보장하도록 만든다.⁶⁾

2. 주요 규정의 특징과 내용

(1) 특 징

WTO법상 ‘환경보호’에 관해 명시적으로 법적 의무를 규제한 조문은 찾아볼 수 없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WTO설립협정의 전문과 GATT 1994의 일반예외 조항을 통해 간접적으로 환경에 관한 고려를 발견할 수 있다. 사실 (이전의 GATT 체제를 포함하여) WTO 체제는 조문 자체를 통해서 보다는 분쟁해결기구의 관련 해석을 통해 ‘환경보호’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발전시키고 개발하여 왔다.⁷⁾ 특히, WTO 사법기구에 의한 확인된 바와 같이, WTO법상 회원국은 일정한 조건을 준수한다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무역 관련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WTO의 가장 근간이 되는 비차별원칙 및 수량제한 금지 의무에 대한 위반도 GATT 제XX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⁸⁾ 즉, 이것은 GATT 제XX조 (b)호 또는 (g)호와 관련한 국내정책이 무역자유화의 목적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⁹⁾ 또한, GATT 제XX조는 동 조항과 관련이 있는 경우

5) 이로리, “지역무역협정에서의 환경보호”, 『통상법률』 통권 제81호, 법무부, 2008. 6, 199-200쪽; 강준하, “한국-EU FTA 환경분야에 관한 연구”, 『국제법평론』 통권 제31호, 2010, 2쪽(줄고,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분석 및 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2년 9월, 154-155쪽에서 재인용).

6) 이로리, 위의 논문, 201쪽(줄고,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분석 및 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2년 9월, 155쪽에서 재인용).

7) 관련 사례 목록은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envir_e/edis00_e.htm 참조(2015. 8.20. 검색).

8)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신국제경제법』, 박영사, 2012, 149쪽.

9) Rüdiger Wolfrum · Peter-Tobias Stoll and Holger P. Hestermeyer (eds.), *WTO* -

GATT 자체 이외의 WTO법상 예외로서 작동하기도 한다. 이는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작성한 가입의정서(China's Accession Protocol) 제5.1항에서 중국은 무역에 대한 권리의 이용가능성과 범위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할 것을 약속하지만, WTO협정과 합치되는 방법으로 무역을 규제할 중국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이 있다. 즉, GATT 제XX조를 준수하는 중국의 국내규정은 WTO협정과 합치되는 방법으로 무역을 규제할 중국의 권리 행사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¹⁰⁾

또한, GATT 제XX조는 지역 및 양자간 무역협정에 있어 모델 조문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예컨대, NAFTA 제2101조(일반예외)¹¹⁾나 EU기능조약 제36조¹²⁾는 위 조항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¹³⁾

Trade in Goods (Max Planck Commentaries on World Trade Law),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1, p. 455.

10) *Ibid.*, p. 456.

11) “2. Provided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that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where the same conditions prevail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between the Parties**, nothing in:

- (a) Part Two (Trade in Goods), to the extent that a provision of that Part applies to services,
- (b) Part Thre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o the extent that a provision of that Part applies to services,
- (c) Chapter Twelve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 (d) Chapter Thirteen (Telecommunications),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the adoption or enforcement by any Party of measures necessary to secure compliance with laws or regulations that are not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cluding those relating to health and safety and consumer protection.”(필자 강조)

12) “The provisions of Articles 34 and 35 shall not preclude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imports, exports or goods in transit justified on grounds of public morality, public policy or public security; the protection of health and life of humans, animals or plants; the protection of national treasures possessing artistic, historic or archaeological value; 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property. Such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shall not, however,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between Member States.**”(필자 강조)

13) Wolfrum · Stoll and Hestermeyer (eds.), *op. cit.*, p. 456.

한편, 앞의 위생검역제도에 대한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TBT 협정과) SPS협정 역시 국내법상 관련 제품으로 하여금 환경 목적을 충족하도록 하는 요건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을 창설하지 않음을 보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협정들은 회원국에 자신이 선택한 수준에 따라 동물 또는 식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승인하고 있다.¹⁴⁾ 이외에 농업에 관한 협정, 보조금협정,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및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에서도 환경보호와 무역에 관한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조항을 발견할 수 있다.¹⁵⁾

아래에서는 WTO 판결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GATT 제XX조의 관련 조문을 중심으로 환경과 무역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2) 주요 내용

GATT 제XX조는 전문(chapeau) 및 특정한 정책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10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는데, 환경보호와 관련이 있는 항목은 (b) 호와 (g)호가 해당된다. 한편, 전문과 각 호와의 관계에 대해, US - Gasoline 사건에서 WTO의 항소기구는 문제의 국내조치가 각 호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에, 전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2단계 접근법을 제시하였다.¹⁶⁾

1) GATT 제XX조 전문

GATT 제XX조 전문은 회원국의 무역제한조치에 대한 일반예외를 규율하고 있는데, 특히 문제의 조치에 대한 적용이 동일한 조건이 우세한 국가 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

14) SPS협정 전문과 제2조 제1항 및 제4항 참조.

15)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앞의 책, 152-153쪽.

16) Wolfrum · Stoll and Hestermeyer (eds.), *op. cit.*, p. 457;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앞의 책, 155쪽.

하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전문은 GATT 제XX조 각 호에 따른 권리 남용으로부터 GATT의 원칙을 보호하며, 예외를 원용하는 국가와 원칙을 준수하는 다른 국가의 권리 간의 균형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¹⁷⁾

2) GATT 제XX조 (b)호

‘인간, 동물이나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 예외로서 인정하고 있는 GATT 제XX조 (b)호는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장 덜 무역제한적인 방안’이 있었는지를 검토하면서, 제시된 대안조치가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하지 않는 경우 ‘필요성’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최근에는 여러 요소를 비교衡量하여, 즉 비례성의 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에 의해 보완된 ‘덜 무역제한적인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¹⁸⁾

3) GATT 제XX조 (g)호

‘유한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를 예외로 인정하는 GATT 제XX조 (g)호는 먼저 ‘유한천연자원’의 경우 사안에 따라 목적론적 해석 및 역동적 해석 방식으로 넓게 해석되어 왔다. ‘관련성’ 요건에 대해서는 ‘주된 목적으로 하는(primarily aimed at)’에서 ‘관련된(relating to)’ 의미로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하고 있다. 또한, ‘국내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효과적일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 국내조치가 외국제품과 조치뿐만 아니라 국내생산이나 소비에도 공평하게(even-handed)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이 채택되고 있다.¹⁹⁾

17) Wolfrum · Stoll and Hestermeyer (eds.), *op. cit.*, p. 465;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앞의 책, 163쪽.

18) Wolfrum · Stoll and Hestermeyer (eds.), *op. cit.*, pp. 511, 514;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앞의 책, 158-161쪽.

19) Wolfrum · Stoll and Hestermeyer (eds.), *op. cit.*, pp. 549-550, 555;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앞의 책, 162-163쪽.

제 2 절 한-중 FTA의 환경 관련 규정 분석

1. 의 의

한-중 FTA는 ‘환경과 무역’이라는 챕터에서 환경보호에 관한 여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예컨대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다자환경협약의 준수,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등을 강조하며, 환경에 있어 협력을 강화하고 환경위원회 설립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는 중국의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로 하여금 환경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다자환경협약을 이행하게 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²⁰⁾

특히, 아래 중국의 기체결 FTA에서 검토하겠지만, 중국이 체결한 FTA 중 환경과 관련하여 별도의 챕터를 두고 있는 것은 그나마 최근 2014년 7월 1일자로 발효한 중·스위스 FTA²¹⁾를 제외하고는 한-중 FTA가 유일무이하다. 더 나아가, 구체적인 의무를 언급하고 환경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한 것은 한-중 FTA가 최초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²²⁾

2. 개별 규정 분석

(1) 배경 및 목적

제16.1조 배경 및 목적

1. 「1972년 인간환경에 관한 스톡홀름 선언」,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20) 관계부처합동,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 2015. 3, 113쪽.

21) China FTA Network, China-Switzerland FTA: <http://fta.mofcom.gov.cn/topic/enswiss.shtml>
참조(2015.8.20. 검색).

22)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Q&A: <http://www.fta.go.kr/cn/qna/1/> 참조(2015.8.20. 검색).

선언」, 「1992년 의제 21」, 「2002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 그리고 「2012년 리우+20의 결과문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상기하며, 양 당사국은 경제발전, 사회발전, 그리고 환경보호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보완적인 구성요소라는 것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세계적인 접근방법의 일부로서 환경문제에 관한 협력의 혜택을 강조한다.

2. 양 당사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적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경제발전을 증진할 것이며, 이 목적이 양 당사국의 무역관계에 통합되고 반영되는 것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3. 양 당사국은 환경기준이 보호무역주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임에 동의한다.

한-중 FTA 제16.1조는 ‘환경과 무역’ 챕터가 추구하는 목적과 그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국제적 합의문서, 즉 1972년의 스톡홀름 선언, 1992년의 리우 선언과 의제 21, 2002년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 및 2012년 리우+20 결과문서에 주목하며, 한국과 중국으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제와 사회발전 및 환경보호가 갖는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에서 언급한 문건들 모두 국제법상 ‘선언’ 또는 ‘이행계획’의 형식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국가들의 행동을 촉구하고 새로운 관련 패러다임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법적 강제가 아닌 정치적 의사를 보여준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물론, 제16.4조에서 법적 의미를 가진 다자간환경협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 목적조항에서 좀 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제16.1조 제2항과 제3항에서 보호무역주의의 탈을 쓰고 환경기준을 악용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양국의 무역관계에 통합시키고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굳건히 하였다.

어찌되었든 간에, 동 챕터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일반적인 환경챕터가 가지는 목적과 함께, 중국의 환경오염이 우리나라 환경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우려하여 중국의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주요기반으로 삼고 있다.²³⁾

(2) 적용범위

제16.2조 적용범위

이 장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양 당사국에 의하여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법과 규정을 포함한 조치에 적용된다.

한-중 FTA 제16.2조는 ‘환경과 무역’ 챕터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 즉 동 챕터는 환경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양국이 기존에 적용하고 있거나 채택한 법과 관련 규정을 아우르는 조치를 대상으로 한다. 조문의 언급으로부터 알 수 있다시피, 동 챕터는 ‘환경문제’ 그 자체가 아닌 ‘환경문제 해결’과 관련한 양국의 법이나 규정에 대해 적용된다. 또한, 양 당사국이 유지하고 있거나 채택한 ‘조치’를 그 적용범위로 규율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법률이나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규정은 물론이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각종 행정지도나 지침 등도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3) 보호 수준

제16.3조 보호 수준

1. 양 당사국은 자국의 환경보호 수준과 환경발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자국의 환경법과 정책을 채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각 당사국의 주권적 권리를 재확인한다.

23)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Q&A: <http://www.fta.go.kr/cn/qna/1/> 참조(2015.8.20. 검색).

2. 각 당사국은 그러한 법과 정책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제공하고 장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각국의 환경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한-중 FTA는 제16.3조에서 환경보호 수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일단 환경의 보호 및 발전과 관련하여 자국의 법과 정책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양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환경보호에 있어 보다 높은 수준을 채택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할 의무 (shall seek to/shall strive to)를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보호의 수준과 관련하여 양국은 강력한 법적 의무가 아닌 ‘노력할’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이는 한·EU FTA 제13.3조와 마찬가지로 환경보호수준을 저하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²⁴⁾

(4) 다자간환경협정과 관계

제16.4조 다자간환경협정

1. 양 당사국은 다자간환경협정(이하 “다자환경협정”이라 한다)이 환경보호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이 장이 그러한 협정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상호 관심 있는 무역 관련 환경 문제에 관한, 양 당사국 모두가 당사국인 다자환경협정의 협상에 대하여 적절한 경우 협의하고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3. 양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관행에서 양 당사국 모두가 당사국인 다자간환경협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24) 이로리, 앞의 논문, 206쪽 참조.

국제환경법상 회원국에 법적 의무²⁵⁾를 부여하는 다자간환경협정²⁶⁾과 관련하여, 한-중 FTA는 제16.4조에서 해당 협정의 국제적 및 국내적 차원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다.²⁷⁾ 또한, 양국은 무역과 연관이 있는 환경문제에 있어 둘 다 당사국인 다자간환경협정의 협상시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이 체결한 다른 FTA와 마찬가지로 양국은 국내법과 관행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양국이 모두 당사국으로 있는 다자간환경협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도 약속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한·미 FTA 제20.2조에서 명시적으로 주요한 (7개의) 국제환경협약 리스트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구분된다.

(5) 환경조치의 집행

제16.5조 법과 규정을 포함한 환경조치의 집행

1. 당사국은 양 당사국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과정을 통하여 자국의 법과 규정을 포함한 환경조치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해서는 아니 된다.

25) 국제환경조약의 법적 의무는 다른 국제조약에 비해 ‘연성법(soft law)’적 성격을 갖는 경향이 있다. 즉, ‘구체적 의무’보다는 의무이행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참고,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분석 및 평가, 한국 법제연구원, 2012년 9월, 167쪽.

26) 중국이 체결한 환경 관련 국제조약 및 관련 중국 정부의 활동에 대해서는 http://english.mep.gov.cn/international_cooperation/conventions/?COLLCC=2584933816& 참조 (2015.8.20. 검색). 예컨대, 중국은 CITES, 생물다양성협약,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 기후변화협약, 세계유산협약, 남극조약, 람사르 협약,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등에 서명하거나 가입하였다.

27) 한편, 양자적 차원에서 한국과 중국은 1993년 10월 28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고, 동 협정은 1993년 11월 27일(조약 제1199호)자로 발효되었다. 동 협정은 환경보호와 관련된 정보·기술 및 경험을 교환하고,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협력할 보다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동 협정은 황사, 산성비와 황해오염에 대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의 틀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962> 참조(2015.8.25. 검색).

2. 양 당사국은 자국의 환경법, 규정, 정책 그리고 관행에서 부여된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킴으로써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어떠한 당사국도 그러한 법, 규정, 정책 및 관행에서 부여된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그러한 법, 규정, 정책 및 관행을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당사국의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환경법 집행 활동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한-중 FTA 환경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인 제16.5조에 의하면, 양국은 무역이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조치’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무역 또는 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해 자신의 환경법, 규정, 정책 및 관행상 보장된 환경보호를 약화시켜서는 안 됨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타국의 영토관할권을 침해하여 환경법을 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환경조치의 집행과 관련한 동 조항 역시 다른 FTA와 마찬가지로 환경챕터의 다른 조항과 달리 엄격한 법적 의무를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환경영향

제16.6조 환경영향

1.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 후 적절한 시기에 각국의 참여적 절차 및 제도를 통하여 이 협정의 이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검토할 것을 약속한다.
2.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이 협정의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기법과 방법에 관한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과 공유한다.

한-중 FTA는 제16.6조를 통해 양 당사국이 동 협정의 이행을 위해 환경영향을 검토하며, 적절한 경우 환경영향의 검토 방식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국과 나누어 가질 것을 규율하고 있다.

(7) 양자 협력

제16.7조 양자 협력

1.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의 달성에 있어서 환경분야에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기존의 양자 협정 또는 약정을 강화하고 공동의 관심분야에 대한 협력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장의 목적 달성을 증진하고 그에 따른 당사국들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협력 분야에 관한 예시적 목록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 가. 환경친화제품을 포함한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의 보급 촉진
 - 나. 환경기술 개발에 관한 협력과 환경산업의 증진
 - 다.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 활동과 조치에 관한 정보교환
 - 라. 환경전문가 교류를 포함한 환경 두뇌집단 협력 메커니즘 구축
 - 마. 환경분야의 워크숍, 세미나, 박람회 및 전시회를 포함한 역량 구축
 - 바. 각국에서 시범지대로서 환경산업단지 조성, 그리고사. 양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환경 협력
3. 양 당사국은 2014년 7월 3일 서명된 「대한민국 환경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부 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같은 기존 양자협정에서 약속된 대기오염 예방 및 관리 분야를 포함한 환경분야에서 양 당사국 모두 협력을 강화할 것을 재확인한다.
4. 양 당사국은 양국 간 협력 활동의 적용과 혜택을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

한-중 FTA 제16.7조는 환경분야에 있어 양국의 협력 구축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차원의 약속을 규정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경에 대한 협력활동이 중요함을 인정하고, 환경재 및 환경서비스 보급 개선, 환경산업 증진, 정보교환, 협력 메커니즘 및 역량 구축 등과 같은 협력 내용의 상세한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존 양자협정상 약속한 양국의 협력 증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능한 폭넓게 협력을 적용하고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을 다할(shall exert)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양국의 환경협력은 강력한 법적 의무보다는 선언적 성격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 제도 규정

제16.8조 제도적 및 재정적 약정

1.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을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과의 접촉선 역할을 하는 사무소를 자국 행정부 내에 지정한다.
2. 당사국은 접촉선을 통하여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3. 양 당사국은 환경과무역에관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양 당사국 행정부 내의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4. 위원회는 이 장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합한다.
5.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을 위하여 충분하고 지속적인 재정적 자원이 필요하며 그러한 자원이 이용 가능하여야 함을 인정한다.

한-중 FTA는 제16.8조에서 환경챕터의 이행을 위해 접촉선을 지정하고, 동 접촉선을 통해 환경 관련 사안에 대해 협의(consultations)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양국간 ‘환경과무역에관한위원회’를 설립하여 환경챕터의 이행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적인 자원이 필요하고 이것이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의무(should be)를 확인하고 있다. 동 조항은 절차적 차원에서 한국과 중국이 환경챕터를 운영함에 있어 요구되는 사항을 다루고 있다.

(9) 분쟁해결

제16.9조 분쟁해결의 비적용

어느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제20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환경챕터와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 한-중 FTA 제16.9조에 의하면, 한국과 중국 모두 제20장에 규정된 일반 분쟁해결절차에 호소할 수

없도록(Neither Party shall have recourse to)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과 관련한 분쟁은 앞에서 살펴 본 위생검역제도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WTO체제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3. 소 결

한-중 FTA의 환경 챕터는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중국이 타결한 FTA 중, 바로 직전의 중·스위스 FTA를 포함하여 두 번째로 작성된 것인데, 한국이 EU와의 FTA를 시작으로 한·베트남 FTA를 제외한 모든 FTA에서 ‘환경’ 또는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무역과 환경과의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중 FTA는 다른 FTA와 마찬가지로 환경과 관련하여 각각 법적 구속력 있는 사항과 권고적 성격의 효력을 가지는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즉 제16.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양국은 무역이나 투자를 증대하기 위해 자신의 환경보호를 약화시키지 않고 환경 관련 조치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권리가 있으며, 제16.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양국은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제공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제16.1조를 통해 양국은 환경보호가 보호무역주의의 이름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환경 관련 기본 문서를 포함한 다자환경협정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제16.4조에서 국내법과 관행을 통해 양국 모두가 가입하고 있는 다자환경협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특히, 제16.7조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과 관련한 협력활동을 보다 개선하며, 이러한 협력 분야의 적용과 혜택을 보다 넓게 보장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도록 강조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중 FTA는 환경 관련 문제에 대한 적절한 이행을 돕기 위해 접촉 선을 지정하고 관련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는 등 절차적 운영방식을 확정하고, 환경 챕터에서 발생한 분쟁은 한-중 FTA의 분쟁해결방식이 아닌 WTO의 분쟁해결제도를 원용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제 3 절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 FTA의 관련 규정 비교

<표 2-13-1> 한중 양국의 기체결 FTA 환경챕터 비교

한-중 FTA	한국의 기체결 FTA	중국의 기체결 FTA
제16장 환경과 무역 (제16.1조 배경 및 목적, 제16.2조 적용범위, 제16.3조 보호 수준, 제16.4조 다자간환경협정, 제16.5조 법과 규정을 포함한 환경조치의 집행, 제16.6조 환경영향, 제16.7조 양자 협력, 제16.8조 제도적 및 재정적 약정, 제16.9조 분쟁해결의 비적용)	한 · 칠레: 없음	중 · ASEAN: 없음
	한 · 싱가포르: 없음	중 · 파키스탄: 없음
	한 · EFTA: 없음	중 · 칠레: 없음
	한 · ASEAN: 없음	중 · 뉴질랜드: 없음
	한 · 인도: 없음	중 · 싱가포르: 없음
	한 · EU: 제13장	중 · 페루: 없음
	한 · 페루: 제19장	중 · 홍콩: 없음
	한 · 미: 제20장	중 · 마카오: 없음
	한 · 터키: 제5장	중 · 코스타리카: 없음
	한 · 호주: 제18장	중 · 아이슬란드: 없음
	한 · 캐나다: 제17장	중 · 스위스: 제12장
	한 · 콜롬비아: 제16장	
	한 · 뉴질랜드: 제16장	중 · 호주: 없음
한 · 베트남: 없음		

1. 한국의 기체결 FTA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타결한 15개의 FTA 중 가장 최근에 서명된 한·베트남 FTA를 제외하고는 한·EU FTA를 기점으로²⁸⁾ 모두 별도의 환경 관련 챕터를 두고 있다. 다른 FTA의 경우 투자, 예외규정 등에서 간접적으로 ‘환경(또는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개별 챕터를 가진 FTA를 중심으로 주요 조항의 내용에 대해 검토하도록 할 것이다.

(1) 한·EU FTA

한·EU FTA의 경우, 환경 챕터 이전에 서문을 통해 환경 보호 및 보존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법과 정책의 개발과 집행 강화를 규율하고 있다. 또한 동 협정의 목적과 관련하여 제1.1조에서 “양 당사자의 환경 및 노동법의 적용과 집행에서 환경, 노동 또는 직업 건강과 안전 기준의 저하나 축소 없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증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한·EU FTA는 제13장에서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제목 하에 환경 및 국제노동기준의 준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통합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²⁹⁾ 먼저 제13.1조는 각 당사국의 환경(또는 노동) 기준을 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무역관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동 챕터의 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동 챕터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제13.2조에서 모든 환경(과 노동) 문제가 아니라 “환경 문제의 무역 관련 측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당사국에 의해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

28) FTA의 서명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상 한·미 FTA가 한·EU FTA보다 먼저 환경 챕터를 포함하고 있다.

29) 강준하, 앞의 논문, 4-5쪽.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the Parties affecting trade-related aspects of (labour and) environmental issues)”를 언급하고 있다. 제13.3조는 당사국에게 자신의 환경보호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 또는 협정에 합치되는 높은 환경보호수준을 규정하고 장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shall strive to)”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보호수준, 의무 이행의 판단기준과 위반시 강제수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언적 규정에 해당할 것이다.³⁰⁾

한·EU FTA 제13.5조에 의하면, 동 협정의 당사국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다자환경협정을 자국의 법과 관행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있다. 또한, 환경법의 적용과 집행과 관련하여 제13.7조는 다른 조항과 달리 엄격한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13.11조에 의하면, 당사국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부속서 13³¹⁾에 규정된 대로 협력 활동의 이행을 약속하였다. 또한 제13.12조에 제도적 장치와 제13.13조에 시민사회 대화 메커니즘을, 제13.14조에서 제13.16조까지 분쟁해결 조항을 통해 동 챕터의 이행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접촉선(contact point),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및 국내자문단(Domestic Advisory Group)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설치하며, 특히 국내자문단으로 하여금 1년에 한 차례 시민사회포럼을 개최하여 동 챕터의 이행을 검토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30) 이로리, 앞의 논문, 206쪽.

31) 부속서 13은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챕터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고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영향 평가, 국제포럼에서의 협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협력, 다자환경협정과 국제무역규범과의 관계에 대한 의견 교환 등 13개의 협력 활동 분야를 예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관련한 분쟁은 정부간 협의(Government Consultations)와 3인으로 이루어진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³²⁾ 특히, 동 챕터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위의 정부간 협의나 전문가 패널을 통해서만 해결하고, 일반 분쟁해결절차는 이용할 수 없다.³³⁾

(2) 한·페루 FTA

한·페루 FTA 역시, 서문에서 “환경 보호 및 보전과 기본적 인권 및 기본권 보호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동 협정을 이행”하도록 언급하고 있다. 특히 제24.1조 일반예외 규정에서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환경조치”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³⁴⁾ 이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페루 FTA는 제19장에 ‘환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9.1조 제2항에 의하면 무역 및 환경 정책이 상호 지지적인 관계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에 기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동조 제3항과 제4항에서 각 당사국이 자국의 환경정책 목표를 준수하기 위한 자원 배분의 결정권을 가지며, 환경법 집행 활동 역시 국내 관할권에 해당함을 언급하고 있다.

환경보호수준에 관한 제19.2조에 의하면, 한·EU FTA와 마찬가지로 각 당사국이 환경보호수준과 환경법 및 정책의 채택 및 수정에 있어 재량권을 가지며, 보다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9.3조에서 다자환경협정에 따른 의무 이행을 규율하고 있으며, 제19.5조의 환경법의 적용 및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역시 한·EU FTA와 마찬가지로 법률상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32) 한·EU FTA 제13.14조와 제13.15조 참조.

33) 한·EU FTA 제13.16조 참조.

34) 한·페루 FTA 제24.1조 제1항과 제2항 참조.

환경 챗터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로서 제19.10조에서 환경협의회(Environmental Affairs Council)의 설립 및 접촉선(contact point)의 지정을 규율하고 있으며, 제19.11조를 통해 환경 정책의 무역 관련 측면에 대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부속서 19A³⁵⁾에 규정된 협력 활동을 이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한·페루 FTA는 환경 문제와 관련한 분쟁에 대해 서면으로 협의 요청을 하고,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환경협의회의 회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 챗터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한·EU FTA의 경우와 똑같이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³⁶⁾

(3) 한·미 FTA

한·미 FTA는 먼저 서문에서 환경법 및 환경정책의 개발과 집행 강화를 규정하며, 환경 보호와 보존에 합치되도록 동 협정을 이행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위의 한·페루 FTA에 규정된 것과 유사하게 일반예외 조항에서 GATT 제XX조 및 GATS 제XIV조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동 협정의 관련 규정에 적용되며,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환경조치’가 포함됨을 강조하고 있다.³⁷⁾

한·미 FTA는 제20장과 부속서 20-A 및 대중 참여 및 환경법에서의 동등성에 관한 부속서한에서 환경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관련 용어의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정의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법’의 정의에 대해, “당사국이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

35) 동 협정의 부속서 19A는 한·EU FTA 부속서 13과 마찬가지로, 예시적 규정으로서 환경 챗터의 목적 달성과 의무 수행을 위해 11개의 환경 협력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36) 한·페루 FTA 제19.12조에서 제19.14조 참조.

37) 한·미 FTA 제23.1조 참조.

사하는 지역에서 환경보호 또는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당사국의 법 또는 규정이나 그 조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⁸⁾

환경보호수준에 대해 제20.1조는 각 당사국이 환경법 및 정책을 채택할 권리를 가지며, 보다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규정하고 장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속서 20-A에 규정된 7개의 국제환경협약³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자국의 법, 규정 및 그 밖의 모든 조치를 채택, 유지 및 이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⁴⁰⁾ 그러나 부속서 20-A 제2항에 의하면, 양국으로 하여금 관련 협약의 목록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목록을 추가할 수도 있다.⁴¹⁾

또한 제20.3조는 환경법의 적용 및 집행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0.4조는 절차적 차원의 환경 보호를 규율하고 있다. 또한, 제20.6조에서 환경협의회(Environmental Affairs Council)의 설치를 통해 환경 챕터의 이행을 검토하고 대중이 관심을 갖는 환경 문제에 관하여 대화하는 등의 대중 참여 증진을 규정하고 있다.

한·미 FTA 제20.8조에 의하면, 환경 사안에 대한 양국의 협력 관계를 확대하기로 약속하며, 환경협력협정(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⁴²⁾에 따라 환경협력 활동을 수행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38) 한·미 FTA 제20.11조.

39) 여기서 7개의 국제환경협약은 CITES,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협약에 관한 의정서,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국제포경규제협약, 전미열대 참치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40) 한·미 FTA 제20.2조.

41) 윤창인, 한·미 FTA 이행대상 다자환경협약(MEAs)의 무역규제조치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102쪽; 강준하, “한국-미국 FTA 환경챕터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11권 제1호, 2010, 436쪽(줄고,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 분석 및 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2년 9월, 162쪽에서 재인용).

42) 동 협정의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2012년 1월 23일에 서명되어 2012년 3월 15일자로 발효되었다. 협정의

동 챕터와 관련한 분쟁에 대해서는 환경 협의(Environmental Consultation)와 환경협의회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여기서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동 협정의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제22장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거나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에 분쟁을 부탁할 수 있으며, 이후 패널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⁴³⁾

(4) 한·터키 FTA

한·터키 FTA는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Establishing a Free Trade Area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Turkey) 서문에서 “(노동 및) 환경 법과 정책의 개발과 집행을 강화하고, . . .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있다. 기본협정 제5장에 드디어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노동 및 환경 보호에 관해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터키 FTA의 기본협정에서 먼저 환경 관련 챕터의 배경과 목적을 규율하고 있는 제5.1조에 의하면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적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국제무역의 발전을 증진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제5.3조는 환경보호수준을 국내적 차원에서 설정하고 관련 법과 정책의 채택 및 수정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제5.5조는 다자간 환경협정을 양국의 법과 관행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며, 특히 교토의정서와 발리행동계획을 명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양국의 관심사를 반영해 주고 있다.

제5.6조 제2항은 환경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을 증진하도록 노력할 의무(shall strive to)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7조를 통해 자국의 법, 규정 또는 기준을 적용하거나 집행하는 경우 환경보호의 수준을 낮추지

원문은 <http://www.law.go.kr/trtySc.do?menuId=0&p1=&subMenu=8&nwYn=1§ion=&tabNo=&query=%ED%99%98%EA%B2%BD%ED%98%91%EB%A0%A5&x=0&y=0#licTrty5115> 참조.

43) 한·미 FTA 제20.9조 참조.

않을 의무(shall not weaken or reduce)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제5.9조에 특별히 투명성 의무를 기술하고, 제5.10조에서는 양국의 협력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동 챕터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5.11조에 접촉선 지정을 언급하고 있으며, 제5.12조 제3항에 의해 어떠한 당사국도 환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없도록(Neither Party shall have recourse to) 규정하고 있다.

(5) 한·호주 FTA

한·호주 FTA는 서문에서 “경제적 관계의 확장이 ... 환경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제18장에 별도의 ‘환경’ 챕터를 두고 있다. 먼저 제18.1조는 한-중 FTA 제16.3조 및 제16.1조 제3항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환경보호 수준에 대한 양국의 권리를 확인하고, 자국의 환경 법, 규정 또는 정책을 보호무역주의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제18.2조는 한국과 호주 모두 당사국인 다자간 환경협정 및 국제무역협정의 상호 지지를 증대하는 수단을 계속 추구하도록 의무지우며(shall continue to seek), 제18.3조를 통해 한편으로 자국의 환경 법, 규정 및 정책을 양국의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집행하지 못하도록(shall fail to enforce)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며, 다른 한편으로 무역 또는 투자를 증대하기 위해 자국의 환경, 법, 규정 및 정책상 부여된 보호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8.4조를 통해 환경기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하는 환경상품 및 환경서비스에 대한 무역과 투자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shall endeavour to) 규율하고 있으며, 제도적 장치로서 접촉선과 임시위원회(Ad hoc Committee)를 지정 및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⁴⁴⁾

44) 한·호주 FTA 제18.6조 참조.

한·호주 FTA는 제18.8조에서 환경정책의 무역 관련 측면에 있어 협력의 중요성을 분명히 하고, 동 챕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상대국과 협의를 요청하여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shall make every attempt to) 의무로 하며,⁴⁵⁾ 제18.9조를 통해 어떠한 당사국도 일반 분쟁해결 수단을 이용하지 못하도록(Neither Party shall have recourse to) 강제하고 있다.

(6) 한·캐나다 FTA

한·캐나다 FTA의 서문에 의하면, 양국은 “환경에 관한 법과 규정의 집행을 향상시키고 환경 사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양국의 희망을 반영하여, 환경 보호와 보전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절차를 진행함”에 합의하였다. 제17장에 ‘환경’에 관한 별도의 챕터를 두고 있는 한·캐나다 FTA는 다른 FTA와 비교하여 배경과 목적, 보호 수준, 다자간 환경협정, 법의 적용과 집행에서의 보호 수준 유지, 협력 등과 같이 유사한 조문은 물론이고, 다른 FTA에서는 거의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과학적 정보, 구제 및 절차적 보장에 대한 접근, 정보 공개, 전문가 패널, 정보 보호, 캐나다 주에의 적용 등을 다룸으로써 상대적으로 매우 다양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제17.17조에 ‘환경법’에 관한 정의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제17.1조는 동 챕터의 배경과 목적을 규율하고 있는데, 한-중 FTA의 ‘보호무역주의 목적’이라는 술어 대신, ‘당사국간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해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 제17.5조는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에 대한 강한 의무를 규정하는 가운데, 제2항에서 환경 사안의 수사, 공조, 규제 또는 준수에 대한 양국의 기관 또는 공무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그 재량권을 합리적

45) 한·호주 FTA 제18.7조 참조.

으로 행사한 것이라면, 이것이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다. 어찌되었든 간에, 위에서 언급한 다른 FTA와 유사한 규정의 경우, 그 내용 역시 거의 동일하므로 한·캐나다 FTA에서 특별히 언급하는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캐나다 FTA는 제17.7조에서 양국으로 하여금 공정·공평·투명한 환경법 집행을 위한 사법·준사법 또는 행정절차가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이해관계인에게 이러한 절차 및 법 위반의 구제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의무(*shall ensure*)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구제 절차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며, 적절한 경우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재심 및 정정을 구할 권리를 제공할 의무(*shall provide*)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7.8조는 공표 의무를 통해 투명성을 증대하며, 제17.9조는 대중에 대한 정보 공개를 통해 환경법에 대한 인식 제고를 꾀하고 있다.⁴⁶⁾ 동 챕터의 이행과 관련하여 환경협의회(*Environmental Affairs Council*)를 설치하도록 하며,⁴⁷⁾ 동 챕터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양국은 대화, 협의 및 협력을 수행하고, 관련 사안의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⁴⁸⁾ 이러한 협의를 통해 만족스러운 해결을 하지 못한 경우, 한국과 캐나다는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에 회부할 수 있는데, 전문가 패널은 무역제재나 과징금이 아닌 해결을 위한 권고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⁴⁹⁾

한·캐나다 FTA는 환경챕터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동 챕터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챕터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46) 한편, 한·캐나다 FTA 제17.14조에 의하면, 양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공개가 금지되거나 면제될 정보의 공개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47) 한·캐나다 FTA 제17.11조 제2항과 제3항 참조.

48) 한·캐나다 FTA 제17.12조 참조.

49) 한·캐나다 FTA 제17.13조 및 동조 주 3 참조; 전문가 패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속서 17-가를 참조하면 된다.

대해서도 일반 분쟁해결을 이용해서는 안 되도록(A Party shall not have recourse to) 규정하고 있으며,⁵⁰⁾ 제17.16조에 캐나다 주에 대한 적용은 부속서 17-나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7) 한·콜롬비아 FTA

한·콜롬비아 FTA는 먼저 서문에서 “동 협정이 환경 보호 및 보전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행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16장에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환경과 노동에 대해 함께 규율하고 있다.

한·콜롬비아 FTA는 제16.1조에 동 챕터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며, 제16.3조를 통해 일반원칙으로서 양국으로 하여금 생물다양성 및 천연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환경과 무역정책이 상호 지지될 것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의무(shall endeavour to)를 규정하며, 환경법 및 정책의 채택 및 수정에 대한 주권적 권리 및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제16.4조에서 구체적 약속(Specific Commitments)이라는 제목 하에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보장 및 자국의 법, 규정 및 정책이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다자간 환경협정 및 국제적 노력과 합치되도록 노력할 의무(shall endeavour to)를 강조하며, 자국의 환경법령상 대중 참여 메커니즘 규정의 중요성과 환경 사업, 정책 등에 있어 대중 참여의 증진을 기술하고 있다. 제16.5조에서는 특별히 ‘생물다양성’에 관한 조항을 두어 양국으로 하여금 생물다양성, 전통지식 등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하고, WIPO와 WTO TRIPs 이사회 등과 정보 공유에 합의하며, 다자협정 또는 자국 법령의 발전에 따라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에 동의하였다.

제16.8조에서는 타국에서의 환경법령의 집행을 금지하며, 제16.9조는 환경법의 집행을 위한 절차적 차원에서의 재판소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

50) 한·캐나다 FTA 제17.15조.

또한 환경(및 노동) 사안을 다루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협의회(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의 설치 및 접촉선을 지정하고,⁵¹⁾ 동 챕터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도 양국간 대화, 협의 및 협력을 통해 우호적이고 신의성실하게 해결하도록 하며, 협의가 실패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⁵²⁾ 즉, 한·콜롬비아 FTA는 제20장에 규정된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동 챕터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⁵³⁾

한편, 제16.14조에서 환경 사안에 대한 준수 수준을 높이기 위해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다양한 협력 활동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⁵⁴⁾

(8) 한·뉴질랜드 FTA

한·뉴질랜드 FTA 서문의 경우, 환경과 관련하여 두 차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즉 “경제적 관계의 확장이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공통의 관심사항에 해당하는 노동 및 환경 사안에 대하여 협력을 증진하려는 희망”에 대해 인정하며, 제16장에 ‘환경’에 관한 별도의 챕터를 마련하고 있다.

한·뉴질랜드 FTA는 최근에 채택된 FTA 중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FTA에서 다루고 있던 사항들이 대체로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제16.2조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장려를 보장하며, 자국의 환경 법, 규정,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주권적 권리 존중 의무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제16.3조에서는 기후변화를 포함한 국제 환경 거버넌스와 협정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다자간 환경협정상 의무 준수가 무역 또는 투자에 직접적이고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

51) 한·콜롬비아 FTA 제16.11조와 제16.12조 참조.

52) 한·콜롬비아 FTA 제16.13조.

53) 한·콜롬비아 FTA 제20.2조 제1항 적용범위 참조.

54) 양국간 협력 분야 및 협력 활동의 예시 목록은 부속서 16-가를 참조하면 된다.

우 사안의 해결을 위해 대화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제 16.4조는 환경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무역 및 투자 촉진을 강조하고, 제16.5조와 제16.6조에서 각각 투명성 의무와 환경영향 검토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한·뉴질랜드 FTA는 동 챕터의 이행을 위해 접촉선 및 환경위원회 (Environmental Committee)를 지정하거나 설치하며, 동 위원회로 하여금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와 협의(consultation)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⁵⁵⁾ 또한, 제16.8조에서 한·뉴질랜드 FTA의 효과적 이행을 지원하고 환경챕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며,⁵⁶⁾ 제16.9조에서 환경챕터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협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만약 협의로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환경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동 위원회는 결론 및 권고를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양국으로 하여금 이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어떠한 당사국도 환경챕터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없도록(Neither Party shall have recourse to) 규정하고 있다.⁵⁷⁾

(9) 기타 FTA

우리나라가 최초로 체결한 한·칠레 FTA의 경우 별도의 장으로 환경보호를 규율하지는 않았지만, 서문에 WTO설립협정의 서문⁵⁸⁾과 유사하게 “환경보호 및 보존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동 협정이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⁵⁹⁾ 또

55) 한·뉴질랜드 FTA 제16.7조.

56) 한·뉴질랜드 FTA에서 환경과 관련한 구체적 협력 분야와 협력 활동 및 수단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속서 16-가를 참조하면 된다.

57) 한·뉴질랜드 FTA 제16.9조 제9항.

58) “seeking both to protect and preserve the environment”.

59) 심영규, “지역무역협정(RTAs)의 확산과 지속가능한 발전 - RTAs 내 환경규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51권 제1호, 2010. 2, 87쪽.

한 상품무역에 있어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중 위험평가에 관한 규정, 표준관련조치 중 합치성에 관한 조문에 일부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투자 챕터에 별도의 환경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제10.18조 (Environmental Measures, 환경조치) 제2항 제1문에 의하면, “당사국은 국내 보건, 안전 및 환경조치를 완화함으로써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규율하여 투자에 있어 환경을 고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 표준관련조치 중 제8.8조에서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허용하며, 한·칠레 FTA와 마찬가지로 투자 챕터에서 환경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한·EFTA FTA는 서문에서 WTO설립협정의 서문과 완전히 동일한 규정, 즉 환경의 보호 및 보존을 추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한·ASEAN FTA의 기본협정은 제11조에서 환경협력활동⁶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인도 CEPA는 서문에서 WTO설립협정 및 한·EFTA FTA의 서문과 완전히 동일한 규정, 즉 환경의 보호 및 보존을 추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투자 챕터 중 제10.16조(보건, 안전 및 환경조치)에 한·칠레 FTA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베트남 FTA는 특이하게도 개별 규정에서는 물론, 서문에서도 환경 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지 않다.

60) ‘환경협력’이란 환경 관리의 개선을 위한 당사국들의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현행 환경정책 협력, 환경 관련 전문지식 공유,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이 포함된다. 김정곤·김혜윤, 앞의 연구보고서, 64쪽.

2. 중국의 기체결 FTA

2015년 8월 현재, 중국이 체결한 13개의 FTA 중 한-중 FTA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별도의 환경 관련 챕터를 포함하고 있는 중·스위스 FTA를 중심으로 주요 조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중·스위스 FTA

중·스위스 FTA는 서문에서 환경보호가 경제 및 사회발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상호의존적이며 서로 강화하는 성격을 가지며, 환경보호 및 보존과 합치되는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하려는 목적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제12장에 8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환경이슈(Environmental Issues)’에 관해 별개의 규율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중·스위스 FTA 제12.1조는 한-중 FTA의 제16.1조와 매우 유사한 내용으로 배경과 목적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즉, 이전에 채택된 중요한 환경 관련 선언과 의제 및 이행계획 등을 언급하면서, 위 서문에서 강조한 환경보호와 경제 및 사회발전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인정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지구적 접근법의 일부로서 환경이슈에 대한 협력에 주목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적이 양국의 경제관계에 통합 및 반영되도록 보장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있다. 제12.2조는 양국이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다자간 환경협정 및 제12.1조에 규정된 국제문서에 반영된 환경원칙⁶¹⁾과 의무와 관련하여 국내법과 관행을 통한 효과적 이행 약속을 재확인하고, 환경보호 수준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의무로 삼고 있다. 또한, 환경 관련 조치를 기초하거나 이행할 때, 과학, 기술과 기타 정보 및 관련 있는 국제가이드라인을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또한, 제12.3조는

61) 여기에는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원칙, 환경보호를 위한 협력원칙, 사전주의의 원칙, 오염자 비용부담원칙,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공동이지만 차별적인 책임의 원칙 등이 해당된다.

환경 친화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보급 및 투자 개선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2.4조는 양국이 참여하는 양자, 지역 및 다자포럼에서 서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제12.5조는 양자적 차원의 협력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데, 동 챕터의 이행에 기여하고 환경보호 수준의 향상을 위해 협력하며, 양자간 이미 채택된 협정이나 약정에 기초하여 협력활동을 발전시키도록 하고 있다.

중·스위스 FTA는 제12.6조에서 제12.8조까지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제12.6조에서 관련 기관 및 사적 분야에 의해 환경 협력의 이행에 필요한 자원이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며, 제12.7조는 동 챕터의 이행 및 관련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접촉선을 지정하고 동 챕터에서 발생하는 여하한 사안에 관해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⁶²에 협의(consultation)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조 제3항에 의해 제15장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Chapter 15 (Dispute Settlement) shall not apply to this Chapter)고 적시함으로써, 동 챕터와 관련하여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대신, 상대국이 동 챕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공동위원회에서 배타적으로 양자협의 및 대화에 호소할 수 있도록(may have recourse exclusively to)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12.8조는 중국과 스위스로 하여금 관련 국제적 발전을 고려하는 가운데, 동 챕터의 목적 수행을 위해 공동위원회가 달성한 진척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어찌되었든 중·스위스 FTA는 한국이 체결한 FTA와 달리, 환경법의 집행에 관해 강력한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어 국내적 차원의 환경 관련 법과 규정 등이 효과적으로 집행될지 여부에 대해 다소 의문이 든다.

62) 중·스위스 FTA 제14.1조에 양국간 공동위원회의 설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위원회는 동 협정 전체의 이행에 있어 감독과 검토 역할을 수행한다.

3. 소 결

이상으로 한국과 중국이 체결한 FTA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협정문의 주요 규정을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타결한 15개의 FTA 협정문은 서명일을 기준으로 한·미 FTA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즉 한·미 FTA가 채택하기 이전에는 별도의 환경 챕터를 두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서문, 표준관련조치나 서비스 양허표, 예외나 투자 챕터에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방식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한·미 FTA를 기점으로 ‘환경’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제목의 챕터를 두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환경보호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환경 챕터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즉 환경보호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각 당사국의 재량(또는 주권적 권리)을 인정하며, 보다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각 당사국이 가입하였거나 특정한 국제 환경협약 또는 일반적인 다자환경협정상 효과적인 이행 의무를 확인하며, 무엇보다 자국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 외에 당사국간 협력과 투명성 의무 또는 대중 참여 메커니즘을 규율하거나 동 챕터의 적절한 이행을 위해 환경협의회 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의 설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환경 챕터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서는 한·미 FTA가 제20.9조에 의해 환경 협의와 환경협의회를 거친 후, 제22장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인 협의나 공동위원회 및 패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다른 모든 FTA는 일반 분쟁해결절차 대신 환경 챕터에 언급된 협의와 환경협의회 또는 전문가패널 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표 2-13-2> 한국의 기체결 FTA별 환경챕터 비교

FTA	환경보호수준 및 다자환경협정	집행 및 제도 규정	분쟁해결
한·EU	보호수준의 재량 및 높은 보호수준 위해 노력, 다자환경협정의 효과적 이행 약속	환경법의 효과적인 집행 의무, 협력,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내자문단	정부간 협의→전문가 패널(일반 분쟁해결절차 비적용)
한·페루	보호수준의 재량 및 높은 보호수준 위해 노력, 다자환경협정의 의무 준수	환경법의 효과적인 집행 의무, 협력, 환경협의회	협의→환경협의회(일반 분쟁해결절차 비적용)
한·미국	환경법 정의규정, 보호수준의 재량 및 높은 보호수준 위해 노력, 7개의 국제환경협약 의무 이행	환경법의 효과적인 집행 의무, 환경협력협정, 환경협의회, 시민사회	환경 협의→환경협의회→일반 분쟁해결절차 (협의→공동위원회→패널→이행)
한·터키	보호수준의 재량 및 높은 보호수준 위해 노력, 다자환경협정의 효과적 이행 약속, 기후변화	환경법의 효과적인 집행 의무, 협력, 투명성	일반 분쟁해결절차 비적용
한·호주	보호수준의 재량 및 높은 보호수준 위해 노력, 다자환경협정과 국제무역협정의 상호지지 증대	환경법의 효과적인 집행 의무,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의 무역 및 투자 개선, 임시위원회	협의(일반 분쟁해결절차 비적용)
한·캐나다	환경법 정의규정, 보호수준의 재량 및 높	환경법의 효과적인 집행 의무, 정보 공개	협의→전문가 패널(일반 분쟁

FTA	환경보호수준 및 다자환경협정	집행 및 제도 규정	분쟁해결
	은 보호수준 위해 노력, 다자환경협정의 효과적 이행 약속	와 보호, 구제 및 절차적 보장에 대한 접근, 캐나다 주에의 적용, 협력, 환경협의회	해결절차 비적용)
한· 콜롬비아	보호수준 설정의 주권적 권리 및 높은 보호수준 위해 노력, 다자환경협정과 합의 노력, 생물다양성	환경법의 타국 집행 금지, 환경법 집행을 위한 재판소 접근, 협력, 대중 참여 메커니즘,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협약→지속가능발전 협의회(일반 분쟁해결절차 비적용)
한· 뉴질랜드	환경법 채택의 주권적 권리 및 높은 보호수준 위해 노력, 다자환경협정과 국제무역규칙의 상호지지 증대, 기후변화	환경법의 효과적인 집행 의무, 협력,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의 무역 및 투자 개선, 환경영향, 환경위원회	협약→환경위원회(일반 분쟁해결절차 비적용)

중국의 경우, 한-중 FTA와 중·스위스 FTA에서만 환경에 관한 별개의 챕터를 두고 있는데, 두 FTA 모두 그 채택배경과 목적, 환경보호 수준 개선 노력 의무, 다자환경협정과 관계, 양자 협력,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일반 분쟁해결절차의 비적용 의무는 공통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 챕터의 가장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법과 규정을 포함한 환경조치의 집행과 관련하여 중·스위스 FTA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동 챕터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제 4 절 한-중 FTA의 평가 및 시사점

1. 한-중 FTA 규정의 문제점

한-중 FTA의 환경 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제16장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 관련 법과 규정의 집행 의무, 환경보호수준 및 다자 환경협정과의 관계, 관련 위원회의 설립 및 분쟁해결 규정 등 일반적인 환경 챕터가 포함하고 있는 기본사항에 대해 고루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EU FTA와 한·미 FTA 및 한·콜롬비아 FTA에 규율되어 있는 환경 챕터의 실효적 이행을 논의하거나 국내 환경법의 효과적 이행 촉진을 도울 수 있는 시민사회의 참여에 관한 조문을 한-중 FTA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비록 대중 참여의 확대가 행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민간과의 대화를 통해 환경보호 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한-중 FTA가 환경과 관련한 법적 의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준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이행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제도적 규정인 제16.8조는 단순히 접촉선의 지정과 접촉선을 통한 협의 요청, 환경 챕터 이행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환경과무역에 관한위원회의 회동 등을 언급하고 있어 제대로 된 운영이 가능할 것 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그리고 분쟁해결과 관련하여서도 한-중 FTA의 분쟁해결챕터를 이용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만 있고, 한·EU FTA와 한·미 FTA를 포함한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FTA에 일반적으로 규정된 협의나 환경협회의 절차 등에 관해 명시적인 언급이 없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결국 WTO체제의 분쟁해결제도가 동원되어야 할 것인데, 환경과 관련하여서는 WTO보다 FTA가 훨씬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한-중 FTA에서 의도하고 있는 환경보호가 제대로 지켜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2. 한-중 FTA의 시사점 및 향후 과제

한-중 FTA의 환경 챕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다른 기체결 FTA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환경 관련 규정을 담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기체결 FTA와 비교하여 중·스위스 FTA가 최초로 규정한 환경 문제를 좀 더 발전되고 진화된 형태로 규율함으로써 환경과 무역의 조화로운 집행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전히 한-중 FTA의 환경 챕터가 갖고 있는 미비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국이 시민참여, 투명성, 실효적인 이행 및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확립에 관한 논의를 계속해서 진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련 조항의 제정이나 정교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I. 국내문헌

1. 단행본 및 연구보고서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신국제경제법』, 박영사, 2012.

관계부처합동,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 2015.

윤창인, 한·미 FTA 이행대상 다자환경협약(MEAs)의 무역규제조치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이주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분석 및 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2년 9월.

2. 학술논문

강준하, “한국-미국 FTA 환경챕터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11권 제1호, 2010.

_____, “한국-EU FTA 환경분야에 관한 연구”, 『국제법평론』 통권 제 31호, 2010.

심영규, “지역무역협정(RTAs)의 확산과 지속가능한 발전 - RTAs 내 환경규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51권 제1호, 2010. 2.

이로리, “지역무역협정에서의 환경보호”, 『통상법률』 통권 제81호, 법무부, 2008. 6.

II. 외국문헌

Wolfrum, Rüdiger · Stoll, Peter-Tobias and Hestermeyer, Holger P. (eds.), *WTO - Trade in Goods (Max Planck Commentaries on World Trade Law)*,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1.

III. FTA 협정문

한-EU FTA, 한-페루 FTA, 한-미 FTA, 한-터키 FTA,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한-콜롬비아 FTA, 한-뉴질랜드 FTA.

China-Switzerland FTA.

제14장 경제협력

제 1 절 FTA에서의 “경제협력” 규율의 의의

1. FTA에서의 “경제협력”의제의 위치 및 도입 현황

(1) FTA 비무역의제의 하나로서 경제협력의 규율

먼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은 체약국들 간의 상품무역 또는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규율하는 무역협정이다.¹⁾ 따라서 이들 상품무역 및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에 관한 규범 및 시장개방 약속²⁾이 FTA의 본질적인 규율 대상이다. 그런데 그간 체결된 FTA에서는 이들 무역의제 이외에 다양한 비무역의제(non-trade agenda)에 관한 규정을 도입한다. FTA에서 흔히 포함하는 비무역의제로서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이 있고 드물게 환경, 노동, 전자상거래 등이 포함되기도 하며, “(경제)협력(economic cooperation)”도 이들 비무역의제 가운데 하나이다. 이와 같이 비무역의제는 FTA의 본질적인 규율 대상은 아니며 단지 FTA 협상을 통해 협상 참가국들이 합의하는 경우 도입되는 추가적인 규율 대상이어서 협정의 부수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FTA에 있어 비무역의제의 도입 범위는 협정에 따라 다르기 마련이다. 다만, 최근 체결되는 대다수 FTA에서는 비록 그 도입 범위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비무역의제 들을 포함하는 포괄적 FTA를 지향한다.³⁾

1) 서비스무역 자유화에는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공급(서비스투자)이 포함된다. 또한 미국이 체결하는 FTA 및 다른 국가들의 일부 FTA에서는 국경간 서비스무역 챕터 이외에 추가로 투자챕터를 도입하여 서비스투자는 물론 비서비스분야 투자까지 함께 규율하기도 한다.

2) 상품무역 관련 시장개방 약속은 체약국별 작성하는 관세양허표를 통해 이뤄지고, 서비스무역 관련 시장개방 약속은 체약국별 작성하는 구체적약속양허표를 통해 이뤄진다.

3) 고준성, FTA 모델안 도출을 위한 법적 쟁점 연구(I): 협력의제 모델규정 모색,

<표 2-14-1> 주요국 기타결 FTA에서의 비무역의제 규율 도입 범위 비교

협정명 규율 대상		한국-페루	한국-중국	중국-아이슬란드	중국-코스타리카	일본-멕시코	일본-싱가포르	EU-튀니지	EC-멕시코	미국-한국	미국-싱가포르	칠레-멕시코
		무역의제	상품무역	○	○	○	○	○	○	○	○	○
	서비스무역 (투자포함)	○	○	○	○	○	○	○	○	○	○	○
비무역의제	지적재산권	○	○	○	○	×	○	○	○	○	○	○
	정부조달	○	×	×	×	○	○	×	○	○	○	○
	경쟁(정책)	○	○	○	×	○	○	○	○	○	○	○
	환경	○	○	×	×	×	×	×	×	○	○	×
	노동	○	×	×	×	×	×	×	×	○	○	×
	전자상거래	○	○	×	×	×	×	×	×	○	○	×
	협력	○	○	○	○	○	○	○	×	×	×	×

출처: 필자 작성

○: 해당 의제 규정 도입, ×: 해당 의제 규정 비도입

(2) 경제협력 의제 도입 FTA 현황

다음으로 오늘날 협력의제를 도입한 기타결 FTA의 현황을 각 협정 계약당사국들의 구성 측면에서 개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력의제를 포함하고 있는 기타결 FTA의 대다수는 한편으로 제조업분야가 강한 산업구조를 가지며 제조업분야에서의 산업발전 경험을 가진 국가들과 다른 한편으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국가들 주로는 개발도상국들 간에 체결된 것이라는 점이다. 제조업 강국인 일본, 중국 및

FTA법제지원 연구 13-26-④-1(이하 ‘고준성 2013’), 한국법제연구원, 2013, p.23.

한국이 체결하는 FTA의 대다수에서는 협력의제를 포함하고, 이밖에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 체결한 일부 FTA에서도 협력의제를 포함한다. 이들이 체결한 협력의제가 포함된 FTA의 계약당사국들의 대다수는 아시아(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몽골 등), 중남미(페루, 콜롬비아, 칠레, 멕시코 등) 또는 북아프리카(튀니지아, 모로코⁴) 등에 소재한 산업 기반이 취약한 개도국들이다. 이들 FTA에서의 경제협력 규정은 일반적으로 그 협력 범위가 넓고, 협력 과제 및 사업도 다양하다.

둘째, 한중일이 체결한 협력의제 포함 FTA 중 일부에서 개도국이 아닌 선진경제권에 속한 국가들(스위스, 아이슬란드,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과의 협정이 포함되어 있음이 주목된다. 이들 FTA에서의 경제협력 챕터는 협력 범위가 농수산업이나 방송 또는 인력교류 등 특정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⁵⁾

셋째, 산업기반이 취약한 저개발국들 간에 체결되는 FTA나 산업기반이 강한 경제 선진권 국가들 간에 체결되는 FTA에서는 경제협력 챕터를 찾기가 어렵다. 특히, 산업 전반에 있어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 그간 체결한 양자 FTA에서 (경제)협력의제를 포함시킨 사례는 전혀 없다.

따라서 FTA에서 경제협력 챕터를 포함하여 규율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제조업 기반이 강한 일부 국가들 -특히 한중일 3국-이 산업기반이 취약한 (저)개발국들을 상대로 한 FTA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고, 이는 2008년 이후 한중일 3국이 비선진 경제권 국가와 체결한 FTA에서 예외없이 협력의제를 포함하여 온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4) 북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포함 FTA는 EU가 체결한 것들이다.

5) 이와 같이 제한된 특정 분야에 대한 협력만을 규정하고 있는 FTA의 사례로서 한-호주 FTA와 중-뉴질랜드 FTA를 들 수 있다.

<표 2-14-2> FTA 협력의제의 주된 이용자인 한중일 3국 체결
FTA에서의 도입 현황

	협력의제 포함 FTA (발효 연도)	협력의제 비포함 FTA (발효 연도)
한국의 기타결 FTA	한국-싱가포르(2006) 한국-아세안(2007) 한국-인도(2010) 한국-페루(2011) 한국-콜롬비아(2012*) 한국-호주(2014) 한국-베트남(2014*) 한국-뉴질랜드(2014*) 한국-중국(2015*)	한국-칠레(2004) 한국-EFTA(2006) 한국-EU(2011) 한국-미국(2012) 한국-터키(2013) 한국-캐나다(2015)
중국의 기타결 FTA	중국-칠레(2006) 중국-뉴질랜드(2008) 중국-싱가포르(2008*) 중국-페루(2010) 중국-코스타리카(2011) 중국-아이슬란드(2014) 중국-스위스(2014)	중국-아세안(2005) 중국-파키스탄(2007)
일본의 기타결 FTA	일본-멕시코(2004*) 일본-말레이시아(2005) 일본-필리핀(2006) 일본-싱가포르(2007) 일본-태국(2007) 일본-인도네시아(2007) 일본-브루나이(2007) 일본-아세안(2008) 일본-베트남(2009) 일본-인도(2011) 일본-페루(2011) 일본-호주(2014) 일본-몽골(2015*)	일본-칠레(2007) 일본-스위스(2009)

* 표시는 서명 연도를 가리킴.

2. FTA 경제협력 의제의 개념

(1) FTA 경제협력 의제의 정의 및 구성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FTA상 “경제협력”(Economic Cooperation) 의제라 함은 협정상 비무역의제의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체약국들 간에 경제산업 분야에서의 다양한 협력과제 및 협력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그리고 그러한 협력과제 및 프로그램의 이행에 관한 제도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등 2개 부분의 규정 일체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전자의 협력과제 및 프로그램에 관한 부분은 다시 (i) 협력의 기본원칙 및 목적, (ii) 당사국들 간 상호 협력분야 내용(각 분야별 추진 배경 및 목적 포함), (iii) 협력분야별 세부 협력과제, (iv) 협력과제의 이행 방안, (v) 협력과제별 구체적인 협력사업 등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기 타결 FTA를 통해 확인된 협정상 경제협력 의제에 포함된 주요 협력분야를 살펴보면, (i) 무역 및 투자 증진, 중소기업, 인적 자원 개발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분야의 제도협력, (ii) R&D를 포함하여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여러 산업분야⁶⁾에서의 산업협력 그리고 (iii) 경제개발 경험 전수 등과 같은 개발협력 등 다양하고 포괄적인 분야가 포함된다.

후자의 협력과제 및 프로그램의 이행에 관한 제도와 절차에 관한 규정(이하 ‘협력이행 메카니즘’)은 (i) 협력 이행 및 운영을 위한 기관의 설치·구성·기능·운영과 접촉처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ii) 협력사업의 기간 등 이행관련 사항, (iii) 협력 자원 조달 및 협력사업 이행에 따른 협력 비용의 분담 사항, (iv) 협력분야규정을 둘러싼 모든 분쟁 및 사안에 대한 협정상 분쟁해결절차의 비적용 규정 등으로 구

6) 구체적으로 섬유·의약품·조선 등과 같은 특정 제조업분야 또는 자원·에너지 분야, (iii) 연구·과학·기술 분야, (iv) 정보통신, 문화(방송·영화·게임 등), 환경, 관광·레저·스포츠 등과 같은 특정 서비스산업분야, (iv) 농·수산업분야 등이 있다. 고준성 2013, p.25.

성된다. 다만, 협정에 따라 상술한 구성 요소에 관한 규정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2) FTA 경제협력 의제와 구별해야 되는 개념들

① FTA 비협력챕터상 협력조항과의 구별

FTA 협정문 안에는 본 연구의 대상인 FTA 경제협력챕터상의 협력조항들과 동 협정상 비경제협력챕터에 포함되어 규정된 협력조항들이 있다. 이들 협력조항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어 양자 간에 구별이 필요하다. 먼저 양 협력조항들 간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i) 모두 계약당사국들 간에 있어 해당 챕터상 의제와 관련된 협력(co-operation)에 대해 규정한다는 점과 (ii) 이들 협력조항은 그 문구나 내용상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소위 연성법(soft law)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⁷⁾는 점이다. 후자의 특성은 “협력” 자체가 갖는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협력조항들 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FTA의 협력챕터에 포함된 제반 협력조항들의 경우 연성법 성격을 갖는 “협력” 그 자체를 대상으로 규정된 것⁸⁾임에 비해 비협력챕터상 협력조항들의 경우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경성법(hard law) 형태의 조항들로 구성되기 마련인 특정 무역의제나 특정 비무역의제를 대상으로 규정된다⁹⁾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7) 가령, 중국-아이슬랜드 FTA 협력챕터의 경제협력조항에 따르면 “당사국들은 양국 간 무역과 경제관계를 발전시키고 강화하기 위하여 --- 정책 대화와 정보교환을 격려하고 촉진한다”(---, the Parties will encourage and facilitate ---)고 규정한다. 중-아이슬랜드 FTA 제9장 협력 제94조(경제협력). 그리고 동 협정의 통관 및 무역원활화챕터에 포함된 협력조항에 따르면 “--- 당사국들은 --- 효과적인 무역절차의 이용에 대한 자신들의 약속을 확인한다”(---, the Parties affirm their commitments ---)고 규정한다. 중-아이슬랜드 FTA 제4장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47조(협력).

8) 가령, 중-아이슬랜드 FTA 제94조(경제협력)나 동 제97조(개발협력) 등은 협력챕터에 포함된 협력조항들이다.

9) 가령, 중-아이슬랜드 FTA 제47조(협력)는 무역의제인 통관절차에 관한 협력조항이고, 동 제65조(협력)는 비무역의제인 지적재산권 분야에 관한 협력조항이다.

요컨대 비협력챕터상의 협력조항은 그 대상이 되는 실체적 규정에 부수되는 보조적 조항이라 할 수 있음에 비해 협력챕터에 포함된 협력조항은 협력 자체에 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후자만이 본질적이고 '독자적인'(sui generis) 협력조항이라 볼 수 있다.¹⁰⁾

② 경제협력협정과의 구별

우리나라는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협력 사항에 관한 국가 간 권리·의무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조약 형태의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경제협력협정은 주로 항공, 해운, 원자력, 과학기술, 투자보장, 세관, 이중과제방지, 사회보장 등 광범위한 경제·통상 분야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양자간 조약 형식을 취한다. 가령, 우리나라는 2015년 7월 기준 48개국과 양자간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였고, 2015년 4월 기준 22개국과 양자간 해운협정을 체결하는 등¹¹⁾ 다양한 분야에서 구속력있는 법적 약속을 포함하는 많은 양자간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 기체결 경제협력협정 체결국과 동일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신규 FTA를 통해 협력챕터 협상을 추진하는 경우 양자 간에 보완적이고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협력프로그램의 수립에 있어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10) 고준성 2013, p.29.

11) 외교부, 경제협력협정, http://www.mofa.go.kr/trade/economy/agreement/overview/index.jsp?mofat=001&menu=m_30_160_10(검색일: 2015.8.30.)

제 2 절 한중FTA와 중·한·일 3국의 기타결 FTA들 간에 있어 경제협력 의제 규율체제 현황 비교 및 유형 모색

1. FTA 경제협력 의제 규율체제의 의의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FTA의 경제협력의제 규정은 크게 협력이행 메카니즘에 관한 규정과 협력분야별 협력 과제 및 협력 프로그램 규정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본 항에서는 중국의 기타결 FTA에서의 경제협력 의제 규율체제 현황을 다음의 2개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당해 FTA의 협력이행 메카니즘 규정과 관련하여 (i) 협력 이행 및 운영을 위한 기관(협력위원회 등)의 설치·구성·기능·운영과 접촉처의 설치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와 규정된 경우 규정이 충실한지, (ii) 협력활동의 이행을 위한 수단 및 방법과 합의된 기간에 협력사업의 추진 명시 등 이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iii) 협력사업의 수행을 위한 자원 조달 및 협력 사업 이행에 따른 협력 비용의 분담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iv) 협력분야규정을 둘러싼 분쟁 및 사안에 대한 협정상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는지의 여부를 주요 기준으로 협정 간의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FTA에서 협력의제에 대해 규정함에 있어 (i) 협정 본문의 협력챕터에서만 이를 규정하는지 아니면 (ii) 협력챕터 이외에 추가로 부속서를 첨부하여 협력의제 사항을 규정하는지, (iii) 별도의 부속서를 포함하는 경우 협력이행 메카니즘규정과 협력분야별 협력 과제 및 협력 프로그램 규정을 협력챕터와 부속서에서 구분하여 규정하는지 그리고 (iv) 협력분야의 범위와 관련하여 포괄적인지 아니면 특정 분야의 협력만을 규정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협력의제의 규정방식 유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FTA 경제협력의제 규정과 관련하여 협력이행 메카니즘이나 협력의제의 규정 방식은 규범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이를 경제협력 의제 규율체제로서 부르고자 한다. 이에 대해 FTA 협력의제 규정에 포함된 협력분야와 협력분야별 협력과제 및 협력프로그램은 일종의 협력사업[프로젝트]에 관한 사항이어서 규율체제와는 구별된다. 이 점에서 중국의 기타결 FTA 협력의제에서의 협력과제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음의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2. 한중FTA와 중·한·일 3국의 기타결 FTA들 간에 있어 협력이행메카니즘 규정 현황 비교¹²⁾

(1) 협력위원회 및 접촉처의 설치 관련

FTA상 협력과제의 이행을 위해서는 이를 운영, 관리할 기관(협력위원회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기타결 중한일 3국의 FTA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협력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상 협력위원회의 설립,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에 있어 구체성 및 실효성은 협정들 간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중 FTA에서는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경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회는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최소 매년 1회 회합하며,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더 자주 회합할 수 있고, 또한 위원회의 기능으로 (i) 이 장에서 양 당사국이 합의한 사업 이행의 진전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것, (ii) 이 장에 따른 협력 활동에 대하여 권고하는 것, 그리고 (iii) 양 당사국의 정기적인 보고를 통하여, 이 장의 운영과 그 목적의 적용 및 달성을 검토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그 산하에 다른 그룹을

12) 중·한·일 3국의 기타결 FTA들 간에 있어 협력이행메카니즘 규정 현황 비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용역의 일환으로 수행된 고준성, 한국형 FTA 모델 협력 규정안 모색(비공개), 2015.3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둔다.

설치할 수 있다고 경제협력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활동에 대해 골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¹³⁾

이에 대해 중국의 경우 중-코스타리카, 중-칠레 FTA에서 보다 충실히 규정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등에서 일본의 경우 일-몽골 FTA 등 다수의 기타결 FTA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생각건대, FTA 협력의제가 이행되기 위해서는 협력위원회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에서 한-베트남 FTA 협력챕터와 부속서인 협력이행약정의 관련 규정이 매우 모범적이다.¹⁴⁾

다음으로 협력위원회의 설치 이외에 일부 FTA 협력규정에서는 협력활동을 둘러싼 연락 업무를 담당할 접촉처를 설치하는 규정을 추가로 포함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기타결 FTA 협력규정의 다수에서 접촉처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한-페루, 한-콜롬비아 및 한-중 FTA의 협력규정에서 접촉처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의 기타결 FTA 협력규정의 경우 일-호주FTA에서만 유일하게 이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한중FTA에서는 접촉처의 설치와 관련하여 양 당사국은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 분야 관련 접촉선을 지정한다면서 중국의 경우 상무부, 한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를 지정한다.¹⁵⁾ 더불어 동 협정에

13) 한-중 FTA 17.4조.

14) 한-베트남 FTA 협력챕터 제20.4조 1항 및 부속문서인 협력이행약정상 “Sub-Committee’s role in the Implementation of Economic Cooperation”의 4항-7항의 규정이 참조할만한바, 동 규정에 따르면 협력위원회의 역할로서 (a) 상호합의된 협력사업들 간에 있어 이행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b)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에 민간기업 및 비정부간기구로 하여금 협력사업을 개발하고 이행함에 있어 지원하도록 조치하며, (c) 이행약정에 따라 설립된 분과위원회나 실무작업반과 함께 협력사업의 개발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d) 협력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적절한 이행메카니즘의 개발을 포함하여 사업의 진전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e) 협력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력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이행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15) 한-중 FTA 17.27조.

서는 아웃바운드 관광 협력에 대해서는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 및 중국의 국가여유국이 동 분야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별도의 채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¹⁶⁾ 있음이 주목되는데 양국의 주무부서가 접촉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규정이다.

<표 2-14-3> 한중일 3국의 기타결 FTA 협력의제 규정상 협력위원회 및 접촉처 설치에 관한 규정 현황 비교

○: 관련 규정 있음; △: 일부 규정 미비 또는 내용 빈약; ×: 관련 규정 없음

협정명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한·페루	한·콜롬비아	한·호주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한·중국	중·칠레	중·뉴질랜드	중·싱가포르	중·페루	중·코스타리카	중·아이슬란드	중·스위스	일·멕시코	일·말레이시아	일·필리핀	일·싱가포르	일·태국	일·인도네시아	일·브루나이	일·아세안	일·베트남	일·인도	일·페루	일·호주	일·몽골
협력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접촉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처: 필자 작성

*: 포괄적인 협력위원회가 아닌 특정 협력 분야에 대한 위원회 설치

** : FTA협력챕터에서는 설치 근거만 규정하고 구성 등 상세 내용은 이행 약정에서 규정

***: 협력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에 FTA 공동위원회가 협력챕터 이행을 담당하도록 규정

16) 한-중 FTA 17.22조 3항.

(2) 협력 이행에 관한 규정

FTA 협력의제 규정상 이행(implementation) 조항에 포함될 사항으로서 (i) 협력활동의 이행을 위한 수단 및 방법에 대한 언급, (ii) 협력사업의 합의된 기간에의 추진 명시가 중요하고, 이밖에 (iii) 협력챕터상 목적을 달성을 위해 협력과제 및 프로그램의 이행 관련 후속조치가 중요함을 표명, (iv) 협력챕터상 대상 협력 활동은 각 당사국의 법규에 따른다는 원칙의 재확인, (v) 협력사업 과정에서의 접촉처 이외에 외교경로의 이용 가능성 확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간 타결된 한중일 FTA 협력챕터에서 이행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도입한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가 비교적 적극적으로 이용하였고, 중국과 일본은 이에 관한 이용 사례가 각기 1건씩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중FTA 협력의제 규정에서는 (i)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을 위하여 효과적인 방법 및 수단을 파악하고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력하며, 이를 위하여 양 당사국은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실현 가능한 경우 양 당사국 간 기존 양자 협력의 그 밖의 형태와의 상승 효과를 발전시킨다고 규정하고, (ii) 양 당사국 간 협력은 협력 관계의 수행에 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하여 기존의 규칙과 절차에 따라, 양 당사국이 이용 가능한 도구, 자원 및 메커니즘을 통하여 이행될 것이며, (iii) 양 당사국은 사업의 선별, 개발 및 이행을 위하여 정보, 경험 및 우수 관행의 교환과 같은 수단 및 세부원칙을 이용할 수 있다¹⁷⁾는 방법 및 수단에 대해 규정한다.

17) 한-중 FTA 17.2조.

<표 2-14-4> 한중일 3국의 기타결 FTA 협력의제 규정상 협력 이행
규정 현황 비교

○: 관련 규정 있음; △: 일부 규정 미비 또는 내용 빈약; ×: 관련 규정 없음

협정명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한·페루	한·폴름비아	한·호주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한·중국	중·칠레	중·뉴질랜드	중·싱가포르	중·페루	중·코스타리카	중·아일랜드	중·스위스	일·멕시코	일·말레이시아	일·필리핀	일·싱가포르	일·태국	일·인도네시아	일·브루나이	일·아세안	일·베트남	일·인도	일·페루	일·호주	일·몽골
이행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처: 필자 작성

*: 합의된 기간에 협력사업의 수행에 관한 명시 조항 포함

(3) 협력사업 재원 조달 및 협력 비용의 부담

FTA 협력의제 상 협력과제 및 협력프로그램의 상당수는 그 이행을 위해 재원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협력규정의 실효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재원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FTA 협력의제 규정은 그 성격상 연성법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 한계를 고려할 때 협력의제 규정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재원 조달에 관한 근거조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협력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당사국들 간의 부담에 관해서도 사전에 원칙을 정해 두는 것이 원활한 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협력사업 비용의 조달 내지 부담을 둘러싼 당사국들 간의 갈등이나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유익하다.

그간 타결된 한중일 3국의 협력규정상 재원조달 규정 현황을 보면, 중국의 경우 중-스위스 FTA를 제외하고는 협력규정에서 재원 조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사례가 없다. 반면에 일본은 대다수의 기타결 FTA 협력규정 안에 어떠한 형태로든 재원조달 조항을 규정하고 있어 크게 대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창기에 타결된 협정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다가 최근 타결된 협정에서 이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¹⁸⁾ 그리고 이러한 재원 조달 규정과 관련하여 일본 및 중국의 기타결 FTA 협력규정 중 일부에서는 “당사국간 상호합의(mutual agreement)에 따라”라는 단서 규정을 포함하는데¹⁹⁾ 이는 협력사업 규모 등의 결정에 있어 타방 당사국의 경제주권에 대한 존중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한-호주 FTA 및 한-뉴질랜드 FTA 등 우리의 기타결 FTA 협력규정에서는 자국의 역량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자국의 경로를 통하여 재원을 제공한다²⁰⁾고 규정하거나 협력 비용은 원칙적으로 양 당사국이 동등하게 분담한다²¹⁾고 규정하는데, 이는 각 당사국의 재정적 현실을 보다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²²⁾ 이밖에 한-베트남 FTA 협력이행약정에서는 양 당사국은 협력사업의 이행을 위한 재원으로서 미화 5백만불을 조성하기로 합의한다²³⁾는 협력 재원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구체적인 협력 재원의 규모를 명기하는 것은 FTA 협력규정 이행을 위한 가장 실효적인 장치임은 분명하나 재원 규모 산정의 타당성이 빈약하고 협정의 규정 대상으로 적절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협력 재원 규모는 협력과제별 구체적인 협력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MOU) 등을 통해 프로젝트에 기초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18) 한-호주,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가 그러하다.

19) 일-페루 FTA 202조 및 중-스위스 FTA 13.6조 등이 그러하다.

20) 한-호주 FTA 16.20조 1항; 한-뉴질랜드 FTA 14.9조 1항.

21) 한-뉴질랜드 FTA 농수산협력약정 3항 2.

22) 다만, 한-베트남 FTA 협력이행약정 서문에서도 협력비용에 관해 베트남측이 추가 비용은 당사국의 상호합의에 의거 결정한다는 문구를 제안하여 놓은 상태이다.

23) 한-베트남 FTA 협력이행약정 3항 1문.

한편, 한중FTA에서는 협력활동을 위한 재원 조달이나 협력비용 부담에 관해 일체의 언급이 없다. 이는 이에 관한 중국의 기존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 표 2-14-5 > 한중일 3국의 기타결 FTA 협력의제 규정상 재원 조달(협력비용 부담 포함) 규정 현황 비교

○: 관련 규정 있음; △: 일부 규정 미비 또는 내용 빈약; ×: 관련 규정 없음

협정명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한·페루	한·콜롬비아	한·호주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한·중국	중·칠레	중·뉴질랜드	중·싱가포르	중·페루	중·코스타리카	중·아일랜드	중·스위스	일·멕시코	일·말레이시아	일·필리핀	일·싱가포르	일·태국	일·인도네시아	일·브루나이	일·아세안	일·베트남	일·인도	일·페루	일·호주	일·몽골
재원 조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용 부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처: 필자 작성

(4) 협력규정에 대한 협정상 분쟁해결절차의 비적용

협력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한중일 3국의 기타결 FTA 협력규정의 절대 다수에서는 협력챕터 및 협력이행 부속서로부터 발생한 여하한 분쟁이나 사안은 협정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FTA 협력의제가 자유무역협정의 본질적인 규율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협력규정이 기본적으로 연성법 규정으로 되어 있어 그 위반 여부를 다투기 어렵다는 협력챕터의 법적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한중일 3국의 기타결 FTA 협력규정 중 일부에서는 협력규정이나 협력이행약정의 해석이나 적용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이견이나 분쟁에 대해 협의(consultation)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도록 규정하기도 한다.²⁴⁾ 한편, 한-

24) 한-뉴질랜드, 중-뉴질랜드 및 일-태국 FTA가 그러하다, 특히, 뉴질랜드가 중국 및

중 FTA 협력규정에서도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제20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는 분쟁해결의 비적용 조항만을 두고 있다.²⁵⁾

<표 2-14-6> 한중일 3국의 기타결 FTA 협력의제 규정상 분쟁해결의 비적용(협의 해결 모색 포함) 규정 현황 비교

○: 관련 규정 있음; △: 일부 규정 미비 또는 내용 빈약; ×: 관련 규정 없음

협정명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한·페루	한·몰디비아	한·호주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한·중국	중·칠레	중·뉴질랜드	중·싱가포르	중·페루	중·코스타리카	중·아이스란드	중·스위스	일·멕시코	일·말레이시아	일·필리핀	일·싱가포르	일·태국	일·인도네시아	일·브루나이	일·아세안	일·베트남	일·인도	일·페루	일·호주	일·몽골
분쟁해결 비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협의해결 모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처: 필자 작성

3. 한중FTA와 중·한·일 3국의 기타결 FTA들 간에 있어 경제협력의제 규정 방식 유형 현황 비교²⁶⁾

FTA에서의 경제협력의제의 규정 방식은 협정에 따라 다양하다. 먼저 본 항에서 ‘경제협력챕터’(Chapter X: Economic Cooperation)라 할

한국과 체결한 FTA 협력규정에서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에 실패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그 사안을 위원회에 회부하며, 위원회는 이를 이 장 또는 이 장에 따라 체결된 협력이행약정의 해석이나 적용에서 발생한 이견 또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배타적 권한을 가진다는 규정을 포함한다. 한-뉴질랜드 FTA 14.10조 2항; 중-뉴질랜드 FTA 13.8조 4항.

25) 한중FTA 17.3조.

26) 본 항의 한중FTA와 중·한·일 3국의 기타결 FTA들 간에 있어 경제협력의제 규정 유형 현황 비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용역의 일환으로 수행된 고준성, 한국형 FTA 모델 협력규정안 모색(비공개), 2015.3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둔다.

때 이는 FTA 본문의 협력에 관한 단일의 특정 챕터를 가리키지만,²⁷⁾ 극소수 FTA에서는 경제협력챕터를 단일의 챕터에서 규정하지 않고, 협력분야별로 별도의 챕터에서 이를 규정함으로써 본문 안에 복수의 협력챕터들을 두기도 한다.²⁸⁾ 그런데, 양자 간의 법적 내지 실질적 차이가 전혀 없어 본 연구에서도 양자 간에는 구분을 하지 않기로 한다.

다음으로 협력의제를 포함한 FTA에서의 그 규정방식을 보면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들 유형별로 FTA 협력챕터를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한중일 3국의 기타결 FTA 사례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1) FTA에서 경제협력의제 규정방식 유형 및 사례

① 협정 본문 안에 협력챕터만 두고 있는 유형(A형) 및 사례

이는 FTA 협정 본문에 협력챕터만을 도입하여 협력과제 및 협력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과 그러한 협력과제 및 프로그램의 이행에 관한 제도와 절차에 관한 규정을 모두 규정하는 유형(A형)으로서 따라서 협력챕터의 이행에 관한 별도의 부속문서가 없다. A형의 규정 사례를 보면, 중국의 경우 절대 다수인 중-칠레, 중-싱가포르, 중-페루, 중-코스타리카, 중-아이슬란드 및 한-중국 FTA에서 이 유형을 따라 협력분야를 규정한다. 한국의 경우 한-인도, 한-페루, 한-콜롬비아 FTA와 한-중국 FTA 등 다수의 FTA에서 이 유형을 따라 협력의제를 규정한다.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 초기에 체결된 일-멕시코 FTA에서만 이 유형을 따라 협력분야를 규정한다.

27) 협정에 따라서는 “협력”(Cooperation)이라고만 명기하는 경우도 있다.

28) 가령, 일-싱가포르 EPA의 경우 협력분야별로 본문 13장에서 20장까지 8장에 걸쳐 협력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러하다.

이와 관련 FTA 안에 협력챕터만 가진 A형에 속하지만 일부 특정 분야에 대한 협력만을 규정하는 유형(A-1형)도 있다.²⁹⁾ 또한 협력챕터만 가진 A형에 속하지만 당해 FTA 협력챕터에서 협력이행 메카니즘에 관한 단편적인 조항만을 규정할 뿐 협력과제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변형된 협력규정(A-2형)도 존재한다.³⁰⁾

- ② 협정 본문의 협력챕터에서 협력이행 메카니즘에 관해 상세 규정하고, 부속서인 이행협정에서 협력과제 및 프로그램에 관해 상세 규정하는 유형(B형) 및 사례

이는 FTA 본문의 협력챕터에서 협력이행 메카니즘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고 협력 과제 및 프로그램은 열기만 한 채 그러한 협력과제별 협력프로그램의 상세한 내용은 별첨 부속서인 이행협정에서 규정하는 유형(B형)을 가리킨다. 중국의 기타결 FTA 중 이 유형의 사례는 없다. 이에 대해 한국의 경우 한-ASEAN, 한-베트남 FTA가 이 유형을 따라 협력분야를 규정하였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 협력분야를 포함한 기타결 FTA 중 일-말레이시아, 일-필리핀, 일-태국, 일-인도네시아, 일-브루나이, 일-아세안, 일-베트남, 일-인도, 일-페루 및 일-몽골 FTA 등 대다수에서 이 유형을 따라 규정하였다.

한편, B형에 해당되지만 특정 분야의 협력에 대해서만 규정하는 협력챕터 유형(B-1형)도 있다.³¹⁾

- ③ 협정 본문의 협력챕터와 이에 관한 부속서를 두면서 협력이행 메카니즘과 협력과제 및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을 양 문서에서 함께 규정하는 유형(C형)

이는 협정 본문의 협력챕터와 부속서를 두되, 협력이행 메카니즘이나 협력과제 및 프로그램에 대해 협력챕터와 부속서에 병행 규정하는

29) 그 사례로서 한-호주 FTA와 중-뉴질랜드 FTA가 있다.

30) 일-호주 FTA가 유일하게 이에 해당된다.

31) 한-뉴질랜드 FTA에서의 농림수산협력챕터가 이에 해당된다.

유형(C형)이다. 따라서 이 유형의 협력규정은 협정에 따라 협력챕터 또는 부속서의 어느 한 문서에서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둘 것인지가 다르다. 이의 사례로서 한-싱가포르 및 한-베트남 FTA와 중-스위스 FTA 그리고 일-싱가포르 EPA가 있다.

이와 관련 한-베트남 FTA의 경우 협력과제 및 프로그램 규정과 관련하여 본문의 협력챕터에서는 협력분야만을 열기하고, 상세한 협력과제별 프로그램은 부속서인 이행약정에서 규정하여 상술한 B형으로 볼 수 있으나 협력이행 메카니즘 규정과 관련하여 본문의 협력챕터에서 협력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보다 구체적인 협력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상세 규정은 부속서인 이행약정에서 규정하여 C형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일-싱가포르 EPA의 경우 본문 13장부터 20장까지 협력분야별로 협력의 목적과 협력분야별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에 관해 규정하고, 부속서에 해당하는 이행협정 6장에서 13장까지는 협력분야별로 협력챕터를 두어 협력과제를 열기하고, 특히 공동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한다.

(2)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 의제의 규정방식 유형별 장단점 비교 평가

먼저 상술한 FTA 경제협력 의제 규정방식의 3가지 유형별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협정 본문의 협력챕터만을 가지는 A형의 경우 협력의제에 대해 콤팩트하고 일체형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합한 장점이 있으나 체결하는 FTA마다 협력챕터의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어 협력이행 메카니즘 규정의 일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다음으로 협력챕터와 더불어 별도의 부속서를 가진 B형은 협정 본문의 협력챕터에서 협력이행 메카니즘에 관한 규정에 초점을 맞추어 조문안을 작성할 수 있어 협력분야별 과제의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협력이행 메카니즘에

관한 제반 조항들-협력위원회 설치, 이행, 협력재원 조달 및 협력비용 부담 등-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도입하고, 협력이행 부속서에서는 협력과제별로 세부 협력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규정하는데 보다 적합한 규정방식 유형이라고 보여진다. 끝으로 협력 이행메카니즘에 관한 규정과 협력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FTA 협력챕터와 부속서에서 병행 규정하는 C형이 있는데, 비교적 간단한 협력이행 메카니즘에 관한 규정을 각기 다른 문서에 규정함으로써 혼란스럽고, 특히 협력프로그램의 경우 중복 규정으로 인해 협력과제의 초점이 희석될 수 있는 등 입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그간 일본은 기타결 FTA 대다수의 협력의제 규정에서 이러한 B형을 따라 협력챕터와 부속서를 병행 도입하여 규정해 왔다. 이에 대해 중국은 그간 일관되게 별도의 부속서없이 협정 본문에 협력챕터만을 두는 A형을 따라 왔고 다만 최근의 중-스위스 FTA에서 부속서를 포함하는 C형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기타결 FTA 협력의제 규정에서는 A형(5건)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나 B형(3건)과 C형(2건)도 고루 활용하는 등 일관된 규정방식 대신에 협상 상대국에 따라 협력의제의 규정방식을 달리 도입해 왔다.

생각건대, 향후 FTA 협력규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B형에 기초한 한국형 FTA 모델 협력규정안을 마련한 후 이를 기초로 협력 규정 협상안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이고, 개도국과의 협력의제 규정에 보다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FTA 협력분야 규정방식의 유형과 관계없이 제한된 특정 분야에서의 협력만을 규정하는 유형이 있는 바,³²⁾ 이러한 유형의 협력규정은 FTA 협상 참가국 양자의 경제발전 수준이 높고, 당사국 중 하나가 특정 산업분야에의 의존도가 높고 해당 분야의 산업경쟁력이 높은 경우에 이용되었다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와의

32) 한-호주, 일-호주; 한-뉴질랜드, 중-뉴질랜드 FTA가 이에 해당된다.

FTA 협력의제 규정에서는 협력분야가 특정 산업분야로 국한되고, 협력 프로그램이 일방에 의한 지원 성격보다는 상호주의에 기초하게 된다. 따라서 당해 FTA 협력의제 규정방식의 유형과 관계없이 제한된 분야에서의 협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은 개도국과의 FTA 협력규정안 모델로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 이유는 이들 협력 대상 국가는 그 경제발전 수준이 낮고, 농업이나 광업 등 특정 산업에 의 의존도가 높다 할지라도 당해 분야의 경쟁력이 낮은 관계로 이러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FTA 협력의제에서는 당해 특정 산업 이외에 그 인프라가 취약한 다른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필요하고, 협력사업 역시 지원적 성격의 프로그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한중FTA 협력의제 규정방식은 별도의 부속서없이 본문의 협력챕터에서 모든 사항을 규정하는 A형에 해당된다.

<표 2-14-7>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 의제의 규정방식 유형 및 그 장단점 비교

규정 유형 (해당 FTA 사례)	장점	단점
A형: 별도의 부속서없이 본문의 협력챕터에서 모든 사항을 규정하는 유형 ³³⁾ (한-인도, 한-페루, 한-콜롬비아, 한-중국; 중-칠레, 중-싱가포르, 중-페루, 중-코스타리카, 중-아이슬란드; 일-멕시코 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의제에 대해 콤팩트하고 일체형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합 · 협력과제 및 프로그램의 개발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정 본문의 협력챕터 안에 협력의제 사항 전부를 규정해야 하는 관계로 협력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시키는데 어색 · 체결하는 FTA마다 협력챕터의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어 협력사업 이행메카니즘의 일관성 확보에 애로

제 2 부 한-중 FTA 주요 챕터 분석

규정 유형 (해당 FTA 사례)	장점	단점
<p>B형: 본문의 협력챕터에서 협력이행메카니즘에 대해 규정하고, 부속서에서 협력프로그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는 유형³⁴⁾ (한-아세안, 한-베트남*; 일-말레이시아, 일-필리핀, 일-태국, 일-인도네시아, 일-브루나이, 일-아세안, 일-베트남, 일-인도, 일-페루, 일-몽골 FT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형화된 협력의 기본틀(Framework)-특히 이행메카니즘-을 제공하여 FTA를 통한 경제협력모델 수립에 적합 · 협력과제 및 프로그램을 부속서에서 규정하여 세부 내용 작성에 보다 편리하고 협상시합의 모색에도 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속서에 협력과제 및 프로그램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관계로 협상가가 과제 및 협력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부담 압박
<p>C형: 이행메카니즘과 협력프로그램을 본문의 협력챕터와 부속서에서 병행 규정하는 유형 (한-싱가포르, 한-베트남*; 중-스위스; 일-싱가포르 FT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정 본문의 협력챕터와 부속서간의 역할이 국내법상 법률과 시행령간의 역할과 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사안이 본문의 협력챕터와 부속서에 병행 규정되어 혼란스럽고, 양 규정간 충돌 가능성 존재

작성: 필자

*) 한-베트남FTA 협력챕터의 경우 협력규정 분야에 따라 B형과 C형에 각기 속하여 양 유형 모두 포함하였음.

33) A형에 속하나 특정 분야의 협력에 대해서만 규정하는 A-1형(한-호주; 중-뉴질랜드)과 본문의 협력챕터에서 협력이행 메카니즘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 협력과제 및 프로그램에 대해 규정이 없는 A-2형(일-호주)도 있다.

34) B형에 속하나 특정 분야의 협력에 대해서만 규정하는 B-1형(한-뉴질랜드)도 있다.

제 3 절 한중FTA와 중국 및 한국의 기타결 FTA들 간에 경제협력 규정상 협력분야별 협력과제 범위 등 비교

1. 한중FTA 경제협력의제 상 협력분야별 협력과제 및 특징

먼저 기타결 FTA상 경제협력분야는 내용상 크게 (i) 기능 분야, (ii) 제조업 및 자원·에너지분야, (iii) 서비스산업분야, (iv) 농축수산업분야 및 (v) 기타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들 각 분야별 세부 협력과제 및 협력프로그램이 규정된다. 아래에서는 한중FTA 협력챕터 상 협력과제 및 협력프로그램을 상술한 5개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기능분야에서의 협력

① 경제협력의 목적

한중FTA 협력챕터에서 양 당사국은 자국의 국가 전략 및 정책 목표에 따라, 이 협정의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이 장의 협력의 목적은 (i) 양 당사국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는 것과 (ii)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및 발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 간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 및 혁신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무역 및 투자 기회를 창출하고 증진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³⁵⁾

35) 한-중 FTA 17.1조.

② 중소기업 협력

협력챕터에서 첫째, 양 당사국은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증진하도록 노력하고, 둘째, 기존의 양자 중소기업정책교류위원회 메커니즘의 활용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의 관련 민간 및 정부기관이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중소기업 분야에서 협력하며, 셋째, 중소기업 협력 분야로서 (i) 양 당사국의 중소기업 간 투자 흐름을 촉진하는 것, (ii) 무역 절차, 무역 진흥 네트워크, 공동 비즈니스 포럼, 사업 협력 수단 및 중소기업 무역업자를 위한 그 밖의 모든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는 것, (iii) 양 당사국의 중소기업 무역업자를 위한 훈련 및 교류 프로그램을 증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간 협력에 적합한 유망 분야를 모색하는 것, (iv) 중소기업에 특히 중점을 둔, 기업의 발전을 위한 이니셔티브 및 정책 수단에 대한 양 당사국의 공공기관 간 경험의 교환을 증진하는 것, 그리고 (v) 민간 및 정부기관의 협력 및 영세기업과 관련된 정보교환을 통하여 영세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 등을 규정한다.³⁶⁾

③ 지방 경제 협력

협력챕터에서 (i) 양 당사국은 지방 경제 협력을 촉진하고, 시범지구로서 웨이하이 및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확인함으로써 시범 협력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합의하고, (ii) 시범 협력 사업은 이 협정 체제 하에서 지방 경제 협력을 위한 모범적이고 선두적 역할을 하기 위하여, 무역, 투자, 서비스, 산업 협력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하고 수행하며, (iii) 시범 협력 사업의 결과를 검토한 후, 지방 경제 협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가능성을 모색한다고 규정한다.³⁷⁾ 이는 구체적인 협력프로젝트와 동 사업 주체를 명시할 뿐만 아니라 웨이하이

36) 한-중 FTA 17.9조

37) 한-중 FTA 17.25조.

및 인천의 시정부는 이 협정의 협상 타결 후 시범협력의 구체적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도록 사업 논의 시점에 대해서까지 규정하여 협력 사업의 성과가 기대된다.

④ 한국-중국 산업단지 개발 협력

양 당사국은 (i) 지식 공유, 정보교환 및 투자 증진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될 산업단지의 설립, 운영 및 개발에 있어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ii) 양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될 산업 단지에 대한 기업의 상호 투자를 증진하도록 노력한다.³⁸⁾ 산업단지의 위치 및 규모 등 구체적 사업 내용이 결여되기는 하였으나 협력과제의 내용이 명확하여 이 역시 추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 제조업 및 자원·에너지 분야의 협력

① 섬유 협력

양 당사국은 섬유 산업 사슬에 있어서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의 수단으로서 협력을 증진하며, 그 협력 분야로서 (i) 산업용 섬유, 기능성 섬유 직물, 세섬직물 및 편직물의 개발 및 적용 (ii) 의류 및 패션 디자인, 브랜드 마케팅 및 홍보의 협력 및 교환 (iii) 표준화된 품질 시스템 인증 및 선진 관리 경험 등의 분야에서 협력 및 교환, (iv) 기술, 정보, 연구원, 기술자 및 그 밖의 전문가의 교류, 그리고 (v)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분야를 열기한다. 또한 양 당사국은, 섬유 산업 사슬에 관여하는 관련 정부기관, 산업단체 및 기업을 통하여 섬유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 포럼, 세미나, 학회, 전시회 및 연구 사업의 개최를 촉진하며, 상기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협력 관련 접촉선을 지정한다.³⁹⁾

38) 한-중 FTA 17.26조.

39) 한-중 FTA 17.11조.

② 철강 협력

양 당사국은 철강 시장에서의 국내 규제 및 지원 정책에 관한 양 당사국의 정보교환, 수요와 공급을 포함한 국내 철강 시장에 관한 양 당사국의 정보교환, 그리고 철강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환경 증진을 위한 협력 등을 촉진한다.⁴⁰⁾

③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협력

양 당사국은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분야에서의 상호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하며, 그 협력 분야로서 (i) 입법 진전 및 집행을 포함한 정책, 그리고 관련 학회, 세미나, 워크숍, 전시회, 박람회 및 그 밖의 행사에 관한 정보교환 그리고 민간부문에서의 (ii) 연구원, 학생 및 관련 산업 관계자의 교류 (iii) 공동연구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와 이들의 상업화 (iv) 제품 품질 개선, 공급망 연계, 기술 교류 등, 그리고 (v) 상호 투자 기회의 증진 및 촉진 등을 규정한다.⁴¹⁾

④ 에너지 및 자원 협력

양 당사국은 에너지 및 자원 분야에서의 더 강력하고, 더 안정적이며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의 수단으로서 이 장에 따른 협력을 증진하며, 구체적으로 (i) 에너지 및 자원 분야 자국 정부기관,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및 기업을 통하여 양 당사국의 공공 및 민간 부문 간 협력을 증진하고, (ii) 에너지 및 자원 분야에서의 플랜트 건설과 관련된 투자를 포함한 사업 기회를 장려하고 지원하며, (iii) 협정 및 이미 조직된 협력체와 관련된 활동을 인정하고 촉진하고, (iv) 고위급 세미나 및 그 밖의 형태를 통한 에너지 절약 및 자원의 포괄적 이용에 관한 정책 대화를 증진하고, 프로젝트, 워크숍 등 적절한 형태를 통한

40) 한-중 FTA 17.8조.

41) 한-중 FTA 17.24조.

환경산업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 또한 양 당사국은 연구원, 기술자 및 그 밖의 전문가의 방문 및 교류를 촉진하고, 공동 포럼 및 연구 사업을 증진한다.⁴²⁾

(3) 서비스산업분야의 협력

① 과학 및 기술 협력

양 당사국은 (i) 필요한 경우 설비 공유를 포함한 공동 연구개발 (ii) 과학자, 연구원, 연구장비기사, 기술자 및 전문가의 교류 (iii) 해당 활동에 있어서의 전문가 참여를 포함하여, 세미나, 심포지엄, 학회 및 그 밖의 과학 및 기술 관련 회의의 공동 주최 (iv) 과학 및 기술과 관련된 관행, 정책, 법, 규정 및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의 교환 (v) 공동의 과학 및 기술 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제품 및 서비스의 상업화에 있어서의 협력, 그리고 (vi)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과학 및 기술 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한다.⁴³⁾

② 정보 및 통신기술 협력

양 당사국은 정보 및 통신기술(이하 ‘ICT’)의 급속한 발전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의 ICT 이용의 혜택을 최대한 획득하기 위하여 ICT 및 ICT 관련 서비스의 발전을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ICT 협력 분야는 (i) 양 당사국의 민간 및 공공 부문 간 협력 증진, (ii) ICT 관련 국제 전시 및 국제 포럼에서의 협력 제고, (iii) 국제기준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상호 협력 및 지원 (iv) 그 밖의 적절한 협력활동의 수행을 포함한다. 또한 양 당사국은 (i) 양 당사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관한 과학 및 기술 협력, (ii) 정보기술단지의 연구개발 및 관리, (iii) 방송통신 융합과 같은 정보기술 서비스의 연구개발 (iv) 양 당사국이 그 활동의

42) 한-중 FTA 17.18조.

43) 한-중 FTA 17.19조.

필요성에 합의하는 경우, 네트워크 및 통신의 연구개발 및 배치, 그리고 (v) 지능형 교통 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TS), 자동차 전자장치, 휴대 지능 단말기 그리고 평판 디스플레이의 주요 재료 및 장비와 같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장려할 것이다.⁴⁴⁾

③ 관광 협력

먼저 양 당사국은 관광이 양국의 상호 이해의 증진에 기여하고 양국 경제를 위한 중요한 산업임을 인정하면서, (i) 각 당사국으로의 입국 방문자 증가를 위하여 관광 개발 및 증진에 대한 공동 연구 수행 가능성 모색 (ii) 양 당사국의 관광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의 관련 당국 및 기관이 관광 훈련 및 교육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도록 장려 (iii) 양 당사국의 관련 당국 및 기관 간 워크숍 및 세미나를 통하여 양 당사국 영역에서의 관광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 캠페인에 있어서의 협력 (iv) 양 당사국 영역에서의 관광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 (v) 관광 및 관련 분야에서의 관련 통계, 홍보자료, 정책 및 법과 규정에 대한 정보교환, 그리고 (vi) 관광 및 교통 당국과 기관이 양 당사국 간 항공 연결을 개선하도록 장려를 위해 노력한다.⁴⁵⁾

다음으로 아웃바운드 관광 협력과 관련하여 중국은 (i) 한국 관광회사가, 중국의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현 시범 사업 계획⁴⁶⁾ 하에서 아웃바운드 관광 운영 사업에 지원하는 것을 장려하고, (ii) 한국 관광회사의 지원과 관련하여, 중국은 지원한 한국 회사가 중국 관련 법

44) 한-중 FTA 17.20조.

45) 한-중 FTA 17.21조.

46) 현 시범 사업 계획이란 중국 상무부 및 국가여유국에 의하여 공포된 법령 제33호에 따라 2010년부터 중국 국가여유국에 의하여 운영되는 계획을 말하며, 이 계획에 따라 외국인 투자 관광회사 네 곳이 아웃바운드 관광 사업 운영 허가를 받았다.

및 규정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충족한 경우, 한국 관광 회사의 아웃바운드 관광 사업 운영 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데 우선권을 부여하며, (iii)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 및 중국의 국가여유국은 이러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채널을 설립할 것 등을 규정한다.⁴⁷⁾

④ 문화 협력

양 당사국은 (i) 양 당사국 간 문화 교류를 증진하는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양 당사국은 문화 협력을 위하여 이미 발효 중인 기존의 협정이나 약정을 존중하고, (ii) 각국의 법규와 합치되게 그리고 이 협정의 그 밖의 장에서의 자국 약속에 포함된 유보를 저해함이 없이, 주변 환경과 문화 경관을 포함한 문화 유적지 및 역사적 기념물의 보호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우수 관행의 교환을 장려하며, (iii) 기존의 양자 협력 메커니즘 하에서 양국 문화유산에 대한 불법 거래를 확인하고, 원상태로 복원하며, 방지하기 위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iv) 양 당사국 간 상호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송 및 시청각 서비스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⁴⁸⁾

그간 중국은 방송 및 시청각 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에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점에 비추어 금번 이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합의는 향후 중국과의 동 분야에 대한 논의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동 분야의 시장개방 협상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⁴⁹⁾

⑤ 해상 운송 협력

양 당사국은 (i) 해상 운송 및 물류 서비스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접촉선의 설치 (ii) 항만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47) 한-중 FTA 17.22조.

48) 한-중 FTA 제17.23조.

49) 산업통상자원부, 한중FTA 상세설명자료, 2015.

훈련 프로그램 및 기술적 협력 마련, 그리고 (iii) 해상교통관리 서비스를 포함하여, 해상 운송과 관련된 기술 지원과 역량 강화 활동 등을 통하여 해상 운송에 있어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⁵⁰⁾ 이와 같은 해상운송협력을 통해 양국간 해운 교류가 활성화되고, 우리 해운물류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4) 농수산업분야의 협력

① 식량 안보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농업과 식품에 대한 생산적이며 호혜적인 무역 및 투자를 증진 및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G20, APEC, FAO 및 ASEAN 10+3와 같은 관련 지역 및 국제포럼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글로벌 식량안보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⁵¹⁾

② 수산 협력

양 당사국은 수산업 분야에서 협력하도록 노력하는 바, 수산 협력의 목적은 양 당사국 간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등 기존의 협력 관계 강화 및 증대, 그리고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어업 접근법에 따라 양 당사국 간 어류 및 수산물의 건전한 교역 촉진이다. 또한 양 당사국은 기존의 메커니즘을 통하여 (i)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 촉진 (ii) 더 많은 대화 및 정보교환 증진 (iii) 양 당사국의 수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기술 역량 강화, 그리고 (iv) 각 당사국 내 수산물 소비 촉진 등과 같은 방식으로 수산업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다.⁵²⁾

50) 한-중 FTA 17.20조.

51) 한-중 FTA 17.5조.

52) 한-중 FTA 17.6조.

③ 임업 협력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임산물 공급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 상호 협력을 (i) 임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공조 (ii) 합리적인 정당한 근거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한, 임산물에 대하여 수출제한적인 조치를 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 경주 (iii) 합법적인 출처로부터의 임산물의 무역 촉진, 그리고 (iv) 조림과 목재 가공산업을 포함하여 임업분야의 상호 투자의 증진과 촉진 등을 통하여 증진시킨다. 또한 양 당사국은 (i) 산림자원의 개발, 이용 및 지속 가능한 관리 (ii) 자연 생태계의 보존과 희귀종 또는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복원에 대한 협력 (iii) 불법 벌채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및 목재 합법성 검증에 관한 공통의 이해 촉진 (iv) 산림유전자원 저장 기술에 대한 교류와 협력 강화 (v) 관상용 식물, 나무 종자와 종자산업의 발전 증진, 그리고 (vi) 양 당사국에 의한 논의를 통하여 합의될 수 있는 그 밖의 임업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협력의 형태는 (i) 상호 관심 분야에서 경험공유와 정보교환 (ii) 공동 포럼, 세미나, 학회, 연구개발, 교육 및 훈련의 증진 (iii) 연구원, 기술자, 전문가 및 관리자의 교류, 그리고 (iv) 그 밖의 형태의 협력 등을 포함한다.

(5) 정부조달 분야에서의 협력

중국은 아직도 WTO GPA 가입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그간 FTA 차원에서의 정부조달 논의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다만, 중국의 기체결 FTA 중 중-스위스 FTA에서 유일하게 정부조달을 규정하였을 뿐이다. 이 점에서 우리 정부는 중-스위스 FTA 수준 이상으로 정부조달 문안 합의를 요구하였고, 정부조달 분야를 독립챕터가 아닌, 경제협력챕터의 일부 분야로서 포함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아내었다. 즉, 양 당사국은 (i) 정부조달 분야에서 양 당사국

간의 협력 활동을 증진하도록 노력하고,⁵³⁾ (ii) 법을 공포하거나, 법, 규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관정과 양 당사국의 조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국의 국제 협정을 달리 공개하도록 하며,⁵⁴⁾ (iii) 중앙 정부 차원에서, 각국의 법 및 규정에 따라, 정부 조달 관련 각국의 법 및 규정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⁵⁵⁾ (iv)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조달에 관한 접촉선을 지정한다.⁵⁶⁾ 또한 양 당사국은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양 당사국 간 정부조달 협정을 맺기 위하여, 중국의 WTO 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GPA) 가입 교섭이 완료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정부조달 관련 교섭을 개시하는 것에 합의하였는데,⁵⁷⁾ 이에 따르면 양국은 금번 한-중 FTA 조달협상에서 관련 규정이나 양허를 협상하지 않고 대신에 중국의 WTO GPA 가입 후 신속히 정부조달 협상을 개시하도록 하는 기설정조항(Built-in clause)을 규정하여 향후 한중FTA에 정부조달챕터를 포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점이 주목된다.⁵⁸⁾

2. 한중FTA와 중국 및 한국의 기타결 FTA들 간의 경제협력규정상 협력분야별 협력과제 현황 비교

먼저 한중FTA 경제협력의제 협상에서 양국은 각기 16개의 관심 분야-식량안보, 수산, 산림, 철강, 중소기업, 정보통신기술, 섬유, 정부조달, 에너지·자원, 과학기술, 해양운송, 관광, 문화,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지방협력, 산업단지 등-에 대해 다양한 협력활동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그간 중국의 기타결 FTA의 경제협력규정

53) 한-중 FTA 17.13조. 중-스위스 FTA 13.4조 1항.

54) 한-중 FTA 17.14조. 중-스위스 FTA 13.4조 2항.

55) 한-중 FTA 17.15조.

56) 한-중 FTA 17.16조. 중국의 경우, 재정부, 그리고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 및 조달청이 해당된다. 중-스위스 FTA 13.4조 3항.

57) 한-중 FTA 17.17조. 중-스위스 FTA 13.4조 4항.

58) 산업통상자원부, 한중FTA 상세설명자료, 2015.

상 협력분야별 협력과제 건수 현황과 비교해 보면, 금번 한중FTA의 경우 16건으로 최다이고, 중-페루FTA 12건, 중-코스타리카 FTA가 9건 순이다. 또한 금번 한중FTA 경제협력의제 협상에서 합의된 16건의 협력과제를 그간 한국의 기타결 FTA의 경제협력규정상 협력분야별 협력과제 건수 현황과 비교해 보면, 금번 한중FTA의 경우 16건이 마찬가지로 가장 많다. 다음이 한-아세안 FTA 12건, 한-페루 FTA 9건 순에서 알 수 있다. 요컨대, 금번 한중FTA 협력챕터는 중국의 기체결 FTA 중 가장 많은 분야에서, 가장 상세하게 경제협력 과제를 규정함으로써 가장 폭넓고 구체적인 경제협력챕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국이 투자 포함 서비스시장 개방 협상을 통해 직접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아직은 부담스러운 우리 측의 관심 분야인 관광 서비스 중 한국 관광회사의 중국에서의 해외(outbound) 관광사업에 대해 경제협력챕터를 통해 지원과 사업운영 승인시 우선권 부여라는 협조를 약속한 것은 적지 않은 성과로 보여 진다. 또한 중국이 시장개방에 소극적인 정부조달 분야 역시 시장개방 협상 대신에 협력챕터를 통한 투명성 제고와 정보교환 및 추가 교섭의 약속을 받아 낸 것도 협력의제의 적절한 활용으로 평가된다.⁵⁹⁾ 물론 이러한 약속은 향후 후속적인 한중간 서비스투자 협상시 법적 문서를 통해 명확히 해야 하는 작업이 남아 있다.

59) 참고로 정부조달 분야를 협력의제를 통해 접근한 그 밖의 사례로서 중-스위스 및 중-아이슬란드 FTA가 있다.

<표 2-14-8> 한중 양국의 기타결 FTA 협력의제에서의 협력분야별 협력과제 현황 비교 (1)

대상 FTA		한국 - ASEAN	한국 - 페루	한국 - 싱가포르	한국 - 인도	한국 - 호주	한국 - 중국	중국 - 스위스	중국 - 뉴질랜드	중국 - 싱가포르	중국 - 아이슬란드	중국 - 칠레	중국 - 코스카타리카	중국 - 페루
기능 분야	무역투자진흥	0	X	0	X	X	X	X	X	0	X	0	0	X
	중소기업	0	0	X	0	X	0	X	0	X	X	0	0	0
	인적 자원 개발 (직업교육·훈련 포함)	0	X	0	X	X	X	0	X	0	0	0	X	0
	개발 협력 (기술이전 포함)	X	0	X	X	X	X	X	X	X	0	X	X	X
	자국기업의 세계화 촉진	X	X	X	X	X	X	X	X	0	X	X	X	X
	지방개발	X	X	X	X	X	0	X	X	0	0	X	X	X
	한중산업단지 개발	X	X	X	X	X	0	X	X	X	X	X	X	X
	자연재해	X	X	X	X	X	X	X	X	X	X	X	0	X
제조업/자원·에너지	섬유(및 가죽)	X	X	X	0	X	0	X	X	X	X	X	X	X
	제약(복제약 포함)	X	X	X	0	X	X	X	X	X	X	X	X	X
	철강	X	X	X	X	X	0	X	X	X	X	X	X	X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X	X	X	X	X	0	X	X	X	X	X	X	X
	조선	0	X	X	X	X	X	X	X	X	X	X	X	X
	광물·천연자원 에너지	0	0	0	0	0	0	X	X	X	X	0	X	0
농축수산업	농업	0	0	X	X	0	0	X	X	X	X	X	0	0
	수산업	0	0	X	X	0	0	X	X	X	X	X	X	0
	임업, 축산업, 작물	0	0*	X	X	0	0*	X	X	X	X	X	X	X

*: 임업만 해당

<표 2-14-9> 한중 양국의 기타결 FTA 협력의제에서의 협력분야별
협력과제 현황 비교 (2)

대상 FTA		한국 - 아세안	한국 - 페루	한국 - 싱가 포르	한국 - 인도	한국 - 호주	한국 - 중국	중국 - 스위스	중국 - 뉴질 랜드	중국 - 싱가 포르	중국 - 아이 슬란드	중국 - 칠레	중국 - 코스 타리카	중국 - 페루
서비스 산업분야	연구·과학·기술	0	0	0	0	X	0	X	X	X	0	0	0	0
	문화·방송·영화·게임	0*	0	0	0	X	0***	X	X	X	X	0	0	0
	관광·스포츠·레저	0**	0**	X	0**	X	0**	X	X	0**	X	X	0	0**
	보건 및 건강	X	X	X	0	X	X	X	X	X	X	X	X	X
	전통의학	X	X	X	X	X	X	X	X	X	X	X	X	0
	환경산업	0	X	0	X	X	X	X	X	X	X	X	X	X
	금융서비스	0	X	0	X	X	X	X	X	X	X	X	X	X
	정보통신(기술)	0	0	0	0	X	0	X	X	X	X	X	X	0
	교육	X	X	X	X	X	X	X	0	0	0	0	0	0
	해상운송	X	X	X	X	X	0	X	0	0	0	0	0	0
건설(기술) (인프라포함)	0	X	X	X	X	X	X	X	X	X	X	X	X	
기타	정부조달	X	X	X	X	X	0	0	X	X	0	X	X	X
	노동·환경	X	X	X	X	X	X	X	X	X	0	X	X	X
해당 건수 총계		12	10	8	9	4	16	2	3	7	8	8	9	12

출처: 필자 작성

*: 방송 및 영화만 해당

** : 관광만 해당

***: 문화만 해당

제 4 절 한중FTA 경제협력챕터의 평가 및 향후 과제

본 절에서는 결론으로서 한-중 FTA 경제협력챕터 규정을 협력의제 규율체제 및 협력분야별 협력과제의 순서로 금번 경제협력챕터의 특징 및 성과를 평가하고, 끝으로 한-중 FTA 협력챕터의 이행과 관련하여 향후 과제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특징 및 평가

(1) 한중FTA 협력이행 메카니즘 규정 관련

먼저 중국을 비롯하여 한국 및 일본의 기타결 FTA상 협력의제 규정과 비교하여 금번 한중FTA 협력챕터의 긍정적 요소들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한중FTA에서는 접촉처의 설치와 관련하여 양국 통상 당국의 협력분야 관련 접촉선을 지정하는 것 이외에 동 협력챕터 상 아웃바운드 관광 협력, 섬유협력 분야, 정부조달 및 해상운송 협력을 위한 정보교환 등 주요한 특정 협력과제별로 별도의 접촉선 내지 채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양국의 주무부서로 하여금 접촉 역할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접촉처로서의 역할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미흡한 요소들을 살펴보면, 협력사업 자원 조달 및 협력 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한중FTA에서는 협력활동을 위한 자원 조달이나 협력비용 부담에 관해 일체의 언급이 없다. 이는 이에 관한 중국의 기존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되지만, FTA 협력의제 상 협력과제 및 협력프로그램의 상당수는 그 이행을 위해 자원이 필요하기 마련이며, 따라서 협력규정의 실효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자원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FTA 협력의제 규정은 그 성격상 연성법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 한계를 고려할 때 협력의제 규정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재원 조달에 관한 근거조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력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당사국들 간의 분담에 관해서도 사전에 원칙을 정해 두는 것이 원활한 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협력사업 비용의 조달 내지 분담을 둘러싼 당사국들 간의 갈등이나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유익하다는 점에서 아쉽다. 참고로 그간 타결된 한중일 3국의 협력규정상 재원조달 규정 현황을 보면, 중국의 경우 중-스위스 FTA를 제외하고는 협력규정에서 재원 조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사례가 없다. 반면에 일본은 대다수의 기타결 FTA 협력규정 안에 어떠한 형태로든 재원조달 조항을 규정하고 있어 크게 대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창기에 타결된 협정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다가 최근 타결된 협정에서 이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2) FTA 경제협력 의제 규정방식과 관련

FTA 경제협력 의제 규정방식은 3가지 유형이 있다. 이와 관련 한중 FTA 협력의제 규정방식은 별도의 부속서 없이 본문의 협력챕터에서 모든 사항을 규정하는 A형에 해당된다. 본 장 제2절의 < 표 2-14-7 >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 의제의 규정방식 유형 및 그 장단점 비교에서 상설하였듯이 협정 본문의 협력챕터만을 가지는 A형의 경우 협력의제에 대해 콤팩트하고 일체형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합한 장점이 있으나 체결하는 FTA마다 협력챕터의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어 협력이행 메카니즘 규정의 일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협정 본문의 협력챕터 이외에 별도 부속서를 가지는 B형 및 C형과 관련하여 협력이행메카니즘과 협력프로그램을 본문의 협력챕터와 부속

서에서 병행 규정하는 C형은 혼란스럽고 양 규정간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협력의제 규정 방식으로 부적합하다. 이에 비해 B형은 협정 본문의 협력챕터에서 협력이행 메카니즘에 관한 규정에 초점을 맞추어 조문안을 작성할 수 있어 협력분야별 과제의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협력이행 메카니즘에 관한 제반 조항들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도입하고, 협력이행 부속서에서는 협력과제별로 세부 협력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규정하는데 보다 적합한 규정방식인 점에서 3가지 유형 중 협력의제 이행을 위해 가장 적합한 유형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협력의제의 규정방식 관점에서 보면 금번 한-중 FTA가 B형이 아닌 A형을 따라 규정된 것은 다소 아쉽다.

(3) 협력분야별 협력과제 관련

먼저 한중FTA 경제협력분야별 협력과제 전반과 관련하여 양국은 각기 16개의 관심 분야-식량안보, 수산, 산림, 철강, 중소기업, 정보통신기술, 섬유, 정부조달, 에너지·자원, 과학기술, 해양운송, 관광, 문화,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지방협력, 산업단지 등-에 대해 다양한 협력활동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그간 중국의 기타결 FTA의 경제협력규정상 협력분야별 협력과제 건수 현황과 비교해 보면, 금번 한중FTA의 경우 16건으로 최다이고, 중-페루FTA 12건, 중-코스타리카 FTA가 9건 순이다. 또한 금번 한중FTA 경제협력의제 협상에서 합의된 16건의 협력과제를 그간 한국의 기타결 FTA의 경제협력규정상 협력분야별 협력과제 건수 현황과 비교해 보면, 금번 한중FTA의 경우 16건이 마찬가지로 가장 많고 다음이 한-아세안 FTA 12건, 한-페루 FTA 9건의 순에서 알 수 있다. 요컨대, 금번 한중FTA 협력챕터는 중국의 기타결 FTA 중 가장 많은 분야에서, 가장 상세하게 경제협력 과제를 규정함으로써 가장 폭넓고 구체적인 경제협력챕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개별 협력과제별 성과를 살펴보면, 첫째, 지방 경제 협력과 관련하여 양 당사국은 지방 경제 협력을 촉진하고, 시범지구로서 웨이하이 및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확인함으로써 시범 협력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합의하고, 시범 협력 사업의 결과를 검토한 후, 지방 경제 협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가능성을 모색한다고 규정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프로젝트와 동 사업 주체를 명시하면서 웨이하이 및 인천의 시정부로 하여금 이 협정의 협상 타결 후 시범협력의 구체적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도록 사업 논의 시점에 대해서까지 규정함으로써 협력 사업의 실질적 성과가 기대된다.

둘째, 아웃바운드 관광 협력과 관련하여 중국은 (i) 한국 관광회사가, 중국의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현 시범 사업 계획 하에서 아웃바운드 관광 운영 사업에 지원하는 것을 장려하고, (ii) 한국 관광회사의 지원과 관련하여, 중국은 지원한 한국 회사가 중국 관련 법 및 규정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충족한 경우, 한국 관광 회사의 아웃바운드 관광 사업 운영 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데 우선권을 부여하며, (iii)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 및 중국의 국가여유국은 이러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채널을 설립할 것 등을 규정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서비스 시장개방 협상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을 협력의제 협상을 통해 시장 진출을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 점에서 독특하면서도 효과적인 협력의제의 활용 사례로서 높게 평가된다.

셋째, 중국은 아직도 WTO GPA 가입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그간 FTA 차원에서의 정부조달 논의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다만, 중국의 기체결 FTA 중 중-스위스 FTA에서 유일하게 정부조달을 규정하였을 뿐이다. 이 점에서 우리 정부는 중-스위스 FTA 수준 이상으로 정부조달 문안 합의를 요구하여, 법을 공포하거나, 법, 규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관정과 양 당사국의 조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국의 국제 협정을 달리 공개하도록 할

것⁶⁰⁾ 등과 같이 중-스위스FTA 정부조달 문안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국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각국의 법 및 규정에 따라, 정부 조달 관련 각국의 법 및 규정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⁶¹⁾는 중-스위스 FTA 정부조달 문안 플러스를 받아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양 당사국은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양 당사국 간 정부조달 협정을 맺기 위하여, 중국의 WTO GPA 가입 교섭이 완료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정부조달 관련 교섭을 개시하는 것에 합의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양국은 금번 한-중 FTA 조달협상에서 관련 규정이나 양허를 협상하지 않고 대신에 중국의 WTO GPA 가입 후 신속히 정부조달 협상을 개시하도록 하는 기설정조항(Built-in clause)을 규정한 것도 향후 한중 FTA에 정부조달챕터를 포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성과로 평가된다.⁶²⁾

넷째, 한국-중국 산업단지 개발 협력과 관련하여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될 산업 단지에 대한 기업의 상호 투자를 증진하도록 노력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산업단지의 위치 및 규모 등 구체적 사업 내용이 결여되기는 하였으나 협력과제의 내용이 명확하여 이 역시 추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섯째, 문화협력과 관련하여 양 당사국 간 상호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송 및 시청각 서비스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등을 규정하였는 바, 그간 중국이 방송 및 시청각 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에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점에 비추어 금번 이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합의는 향후 중국과의 동 분야에 대한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따라서 향후 동 분야의 시장개방 협상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⁶³⁾

60) 한-중 FTA 17.14조. 중-스위스 FTA 13.4조 2항.

61) 한-중 FTA 17.15조.

62) 산업통상자원부, 한중FTA 상세설명자료, 2015.

63) 산업통상자원부, 한중FTA 상세설명자료, 2015.

2. 향후 과제 및 정책적 시사점

먼저 금번 한중FTA 협력챕터에서는 중국이 투자 포함 서비스시장 개방 협상을 통해 직접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아직은 부담스러운 반면에 우리 측은 시장 진출 관심 분야인 관광서비스 중 한국 관광회사의 중국에서의 해외(outbound)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한-중 FTA 경제협력챕터를 통해 우리 관광회사의 중국 진출 시 지원과 사업운영 승인 시 우선권 부여라는 협조를 중국 정부로부터 약속받은 것은 적지 않은 성과로 보여 진다. 또한 중국이 시장개방에 소극적인 정부조달 분야 역시 시장개방 협상 대신에 협력챕터를 통한 투명성 제고와 정보 교환 등에 관한 협력 약속 이외에 후속 정부조달 교섭의 약속을 받아 낸 것 역시 경제협력의제를 적절히 활용한 것으로 평가됨은 앞에서 지적하였다. 상술한 시장개방 약속과 관련된 협력챕터상의 약속에 대해서는 향후 후속적인 한중간 서비스투자 협상을 통해 그러한 약속을 법적 문서화하는 작업이 남아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 경쟁관계에 있는 한중일 3국은 2008년 이후 비선진경제권 국가와 타결한 FTA에서 협정 안에 예외없이 (경제)협력챕터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들 3국이 적어도 개도권 국가들과의 FTA협상에서는 단순히 무역자유화 및 시장개방에는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경제)협력의제 협상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함을 시사한다. 사실 주요 교역 국가들과의 FTA 협상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향후 남은 우리의 FTA 협상 상대국은 대개 제조업분야의 산업기반이 취약한 신흥 개발국이거나 저개발국들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우리와의 FTA 협상에 소극적이기 마련이다. 이들을 FTA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상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일종의 상생형 FTA의 추

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경제협력의제의 활용이 필요함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들 신흥개도국과의 상생형 FTA를 추구함에 있어 한국형 FTA 협력의제 모델 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고준성, FTA 모델안 도출을 위한 법적 쟁점 연구(I): 협력의제 모델 규정 모색, FTA법제지원 연구 13-26-④-1, 한국법제연구원, 2013.

고준성, 한국형 FTA 모델 협력규정안 모색(비공개), 2015.3.

산업통상자원부, 한중FTA 상세설명자료, 2015.

외교부, 경제협력협정, http://www.mofa.go.kr/trade/economy/agreement/verview/index.jsp?mofat=001&menu=m_30_160_10(검색일: 2015.8.30.)

China-ASEAN Free Trade Agreement

China-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China-Chile Free Trade Agreement

China-Costa Rica Free Trade Agreement

China-Iceland Free Trade Agreement

China-Korea Free Trade Agreement

China-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China-Pakistan Free Trade Agreement

China-Switzerland Free Trade Agreement

제15장 투명성

제 1 절 국제경제법상 투명성의 규율 현황

1. 의 의

WTO법상 투명성은 무역정책이나 관행 및 이의 확립 절차가 공개되어 있고 예측 가능한 정도를 의미하는데,¹⁾ WTO협정문에서 명확하게 그 정의를 발견할 수는 없다.

그 동안 WTO에서는 무역정책검토제도를 통해 각 회원국의 무역 관련 규범과 정책의 투명성을 보장하려 노력해 왔으며,²⁾ 2006년 12월 14일 일반이사회 결정을 통해 모든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새로운 투명성제도를 확립한 바 있다.³⁾

한편, WTO체제의 도하라운드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 농업 관련 일부 규정,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10개의 합의문으로 구성된 ‘발리패키지(Bali Package)’가 타결되었다. 특히 2014년 11월 27일, 투명성 증대와 관련이 있는 ‘무역원활화협정(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⁴⁾을 WTO설립협정 부속서 1가에 새로운 협정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의정서(Protocol of Amendment)가 채택되었

1) WTO법상 ‘투명성’의 정의에 대해서는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glossary_e/transparency_e.htm 참조(2015.8.25. 검색).

2) WTO의 무역정책검토제도에 대해서는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agrm11_e.htm 참조(2015.8.25. 검색).

3) 지역무역협정의 투명성제도에 대해서는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trans_mecha_e.htm 참조(2015.8.25. 검색).

4) 전문은 동 협정의 정당성과 범위 및 필요성 등을, 제1절은 GATT 제V조, 제VIII조, 제X조의 명확화를, 제2절은 개도국 및 최빈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 분쟁 해결 절차를, 제3절은 동 협정의 운영을 위한 ‘무역원활화위원회’ 설립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고,⁵⁾ 2015년 7월 30일 우리나라는 WTO 회원국 중 10번째로 동 의정서에 가입하였다.⁶⁾

2. 주요 규정의 특징과 내용

(1) 특 징

GATT 제X조는 ‘무역규정의 공포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EC - Selected Customs Matters* 사건에서 패널은 제X조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무역업자에게 적법절차를 부여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제X조는 보통 넓은 의미의 투명성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언급된다.⁷⁾

또한, 제X조의 적용범위는 법률, 규정, 사법결정과 일반적용성이 있는 행정관정의 실질적 내용 보다는 이들의 공포 및 시행과 주로 관련이 있는데, 무역규정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분쟁은 주로 WTO협정의 다른 규정에 의거해 해결되어 왔다.⁸⁾

한편, 투명성에 관한 규정은 GATT의 조항이 아닌 WTO협정 부속서 중 SPS협정, TBT협정, GATS, TRIPs 및 정부조달협정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⁹⁾ 예컨대, SPS협정은 통보와 정보 제공을, 관련 부속서는 공

5) 무역원활화협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일훈, “WTO 무역원활화협정 주요내용 및 영향”, Global Market Report 14-051, KOTRA, 2014년 12월;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tradfa_e/tradfa_e.htm 참조(2015.8.25. 검색).

6) 2015년 8월 4일 현재, 11개의 WTO 회원국(홍콩, 싱가포르, 미국, 모리셔스, 말레이시아, 일본, 호주, 보츠와나, 트리니다드 토바고, 한국, 니카라과)이 동 의정서에 가입하였다.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tradfa_e/tradfa_agreeacc_e.htm 참조(2015.8.25. 검색).; 동 의정서는 제3항에 따라, WTO설립협정 제X조 제3항, 즉 WTO 회원국의 2/3가 국내비준절차를 완료하는 즉시 발효될 예정이다.

7) Rüdiger Wolfrum · Peter-Tobias Stoll and Holger P. Hestermeyer (eds.), *WTO - Trade in Goods (Max Planck Commentaries on World Trade Law)*,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1, p. 263.

8) Wolfrum · Stoll and Hestermeyer (eds.), *op. cit.*, p. 263.

9)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줄고, FTA의 투명성 제고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년 6월, 25-37쪽 참조.

표, 문의처와 통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TBT협정은 공표, 통보와 정보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통고는 불필요한 무역장벽 제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TBT위원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통고를 제출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이는 TBT협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¹⁰⁾ GATS의 투명성 규정은 최근 FTA가 채택하고 있는 주요 투명성 유형의 하나를 구성하는데, 즉 공표, 통보, 문의처 설립 및 투명성 요건의 예외로서 비밀정보의 비공개를 언급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무역에 관한 국내규정의 투명성 조항을 통해 부패 방지와 규제당국의 독립성 획득 및 규제 선진화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¹¹⁾ TRIPs는 분쟁해결의 예방을 위해 투명성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지식재산권에 관한 공표 및 통고와 정보 제공을 규정하며, 비밀정보에 관한 내용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조달협정은 공표를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정부조달법제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정부조달규범의 예측가능성을 개선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¹²⁾

(2) 주요 내용

1) 무역규정의 신속한 공표

GATT 제X조 제1항은 본질적으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 규정, 사법결정과 일반적용성이 있는 행정관정을 공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¹³⁾ 또한 동 조항은 국제무역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협정의 공표 역시 요구하고 있으며, 모든 관련 무역규정이 각 정부 및 무역업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공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10)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신국제경제법』, 박영사, 2012, 243쪽.

11)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위의 책, 453-454쪽 참조.

12)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위의 책, 602쪽.

13) Wolfrum · Stoll and Hestermeyer (eds.), *op. cit.*, p. 263.

특히, 제X조 제1항의 공표 요건은 관련 무역규정의 각각 별개의 적용이 아닌 일반적용성과 관련이 있으며, 공표 시점의 경우 국내 및 외국 공급업자에게 동시에 알릴 필요는 없지만 제X조 제2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본다.¹⁴⁾ 한편, 제1항은 신속한 공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공표의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¹⁵⁾

2) 시행 이전의 공식적 공표

GATT 제X조 제2항은 모든 법률, 규정, 사법결정과 일반적용성이 있는 행정판정의 공식적 공표 이전에는 이러한 조치의 시행을 금지하고 있다.¹⁶⁾ 동 조항은 투명성에 관한 기본원칙을 구현하며 적법절차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특히 제2항은 회원국과 무역업자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행위의 완전한 공개를 증진하지만, 관련 규정의 공표와 발효 사이에 정확한 최소한의 시한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¹⁷⁾

3) 일관되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행정절차 및 재심절차

GATT 제X조 제3항은 제1항에 포함된 조치가 일관되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회원국은 관세와 관련된 행정조치의 신속한 검토 및 시정을 위해 재판소 또는 절차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⁸⁾ 특히 동 조항은 무역규정의 시행에 있어 투명성과 절차적 공평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확립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¹⁹⁾

14) Wolfrum · Stoll and Hestermeyer (eds.), *op. cit.*, pp. 266-267.

15) Peter Van den Bossche, *The Law and Policy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ext, Cases and Materials*,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 462.

16) Wolfrum · Stoll and Hestermeyer (eds.), *op. cit.*, p. 263.

17) Wolfrum · Stoll and Hestermeyer (eds.), *op. cit.*, p. 268.

18) Wolfrum · Stoll and Hestermeyer (eds.), *op. cit.*, p. 263.

19) Wolfrum · Stoll and Hestermeyer (eds.), *op. cit.*, p. 268.

제 2 절 한-중 FTA의 투명성 관련 규정 분석

1. 의 의

한-중 FTA는 제18장에 투명성에 관한 개별 챕터를 두고 있는데, 투명성 증대를 위해 동 협정과 관련이 있는 양국의 조치에 대한 공표, 협정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의 통보 및 정보 제공, 행정절차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재심과 불복 기회의 보장과 당사자의 적법절차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의무를 규율하고 있다.²⁰⁾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투명성 챕터를 갖고 있는 경우, 모두 공표, 행정절차, 재심과 불복청구, 정의규정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외에 정보제공 및 접촉선 등의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데,²¹⁾ 한-중 FTA는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한·터키 FTA에 규정되어 있는 예외조항도 보이지 않는다.

2. 개별 규정 분석

(1) 공 표

제18.1조 공 표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한 자국의 조치를 신속하게 공표하거나,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달리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2.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 가. 자국이 채택을 제안하는 모든 그러한 조치를 사전에 공표한다. 그리고
 - 나.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제안된 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20) 관계부처합동,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 2015. 3, 124쪽.

21) 줄고, FTA의 투명성 제고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년 6월, 54쪽.

한-중 FTA 제18.1조는 투명성 강화의 가장 기본적 요건이 되는 ‘공표’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데, 첫째 양국은 FTA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치를 신속하게 공표하거나 이해관계인과 다른 당사국이 알 수 있도록 공개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둘째, 양국은 자국이 채택하려고 제안한 조치를 미리 공표하고 이해관계인과 다른 당사국에 해당 조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합리적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동조 제1항에 규정된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한 자국의 조치”는 일반적으로 보다 구체적인 술어, 즉 “FTA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한 자국의 법률, 규정, 절차 및 일반적용성이 있는 행정판정”이라고 언급되는 편이다. 따라서 “조치”라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용어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상 다양한 주장이 제기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또한 제2항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할 조치의 사전 공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이 보다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치의 공표일과 발효일 간에 합리적 수준에서 용인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통보와 정보 제공

제18.2조 통보와 정보의 제공

1.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이 협정상 다른 쪽 당사국의 정당한 이익에 달리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제안된 또는 실제 조치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그 요청을 받은 일부부터 30일 내에 그 요청 당사국이 전에 그 조치를 통보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요청 당사국이 이 협정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실제 또는 제안된 조치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한다.
3. 이 조에서 언급된 정보는 그 정보가 세계무역기구로 적절한 통보가 이루어져 이용 가능하게 되었거나, 해당 당사국이 공식적으로 개설하고 대중에게 공개

되어 무료로 접근이 가능한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게 되었을 때, 제공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이 조의 어떠한 통보, 요청 또는 정보도 제19.5조(접촉선)에서 언급된 양 당사국의 접촉선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전달한다.

한-중 FTA 제18.2조는 투명성 제고의 요건 중 하나인 ‘통보와 정보 제공’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 가능한 한 FTA의 운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당사국의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제안되거나 현행의 조치를 통보할 의무가 있다. 둘째, 다른 당사국의 요청이 있다면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제의 조치를 통보받았는지는 상관없이 모든 제안되거나 실제의 조치에 관해 정보 제공 및 질의에 답할 의무가 있다. 셋째, 동 조항의 정보는 WTO로의 통보 또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개적인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 가능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제공된 것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통보나 정보 제공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지정된 접촉선을 운영하여야 한다.

한편, 동조 제1항에 언급된 ‘실질적’이나 ‘상당한’ 영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해석하는 주체에 따라 견해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판단을 각 당사국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3) 행정절차

제18.3조 행정절차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를 일관되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특정한 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제18.1조에 언급된 조치를 적용하는 자국의 행정절차에 있어서 다음을 보장한다.

- 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절차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그 절차의 성격에 대한 기술, 절차가 개시되는 법적 권한에 대한 진술 및 쟁점에 대한 일반적 기술을 포함한 합리적인 통보를 절차가 개시된 때에 그 당사국의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
- 나. 시간, 절차의 성격, 그리고 공익이 허용하는 때에는, 그러한 인에게 최종 행정처분 전에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실과 주장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 그리고
- 다. 자국의 절차는 자국 법에 따를 것

한-중 FTA는 제18.3조에 투명성 챕터의 기본 구성요소인 행정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일반적으로 FTA에서 규율되어 있는 사항과 거의 완전히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중 FTA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해 일반적용성이 있는 조치를 일관되며 공평하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당사국의 특정한 사람,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조치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세 가지의 행정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 첫째, 절차의 영향을 받는 개인에게 절차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 합리적 통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둘째, 해당 개인에게 최종 행정처분 이전에 자신의 입장을 제시할 합리적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셋째, 이러한 절차는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서 진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동 조문이 다른 FTA의 규정과 차이 없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합리적 통보’나 ‘합리적 기회’라는 여전히 모호한 술어를 사용하고 있어 해석상 분쟁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4) 재심 및 불복청구

제18.4조 재심 및 불복청구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하여 최종 행정처분의 신속한 재심을 목적으로, 그리고 정당한 경우 그 정정을 목적으로, 사법, 준사법 또는 행정재판소나 절차를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그러한 재판소는 공평하고, 행정집행을 맡은 부서 또는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사안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실질적 이해관계도 가지지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그러한 재판소나 절차에서 그 절차의 당사자에게 다음의 권리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 가. 각자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 그리고
 - 나. 증거와 기록된 제출자료, 또는 그 당사국의 법에서 요구되는 경우 행정당국에 의하여 취합된 기록에 기초한 결정
3. 각 당사국은 자국 법에 규정된 불복청구 또는 추가재심을 조건으로, 문제가 된 행정처분에 관련된 부서 또는 당국에 의하여 그러한 결정이 이행되고 그러한 결정이 이들의 관행을 규율하도록 보장한다.

한-중 FTA는 제18.4조에 투명성 개선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요건인 ‘재심 및 불복청구’에 대해 규율함으로써, FTA에 관한 행정조치에 대해 행정 및 사법적 검토와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동 조문 역시 위의 ‘행정절차’ 규정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FTA 규정과 거의 완전히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양국은 독립적 성격의 사법, 준사법 또는 행정 법원이나 절차를 통해 한-중 FTA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해 신속한 재심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둘째, 각 당사국은 재심 절차에서 당사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제출할 합리적인 기회에 관한 권리 및 증거나 제출 자료에 기반을 둔 결정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셋째, 당사국은 불복청구나 추가재심을 조건으로, 그러한 결정이 문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부서나 당국에 의해 이행될 것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3. 소 결

한-중 FTA의 투명성 챕터는 모든 FTA에서 규율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공표, 통보와 정보 제공, 행정절차, 재심 및 불복청구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으며, 별도의 정의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투명성의 모든 기본요건에 대해 언급은 하고 있지만, 좀 더 발전적이고 모범적인 조문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씩 부족해 보이는데, 예컨대 제18.1조의 공표와 관련하여 ‘조치’라는 술어보다는 ‘법률, 규정, 절차 및 일반적용성이 있는 행정판정’과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관련 조치의 사전 공표와 관련하여서도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도록 하거나, 이해관계인과 다른 당사국의 의견에 대해 고려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제18.2조의 통보와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도에서’를 ‘가능한 최대로’ 변경하여 통보할 의무를 강조하거나, 제18.3조의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 역시 ‘법률, 규정, 절차 및 일반적용성이 있는 행정판정’으로 개정하여 공표 의무와 행정절차 운영의 의무 대상을 동일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외에 정의규정이나 비밀정보의 유출 방지 및 접촉선 등에 관한 사항을 보충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제 3 절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 FTA의 관련 규정 비교

<표 2-15-1> 한중 양국의 기체결 FTA 투명성 챕터 비교

한중 FTA	한국의 기체결 FTA	중국의 기체결 FTA
제18장 투명성 (제18.1조 공표, 제18.2조 통보와 정보의 제공, 제18.3조 행정절차, 제18.4조 재심 및 불복청구)	한·칠레: 제17장	중·ASEAN: 없음
	한·싱가포르: 제19장	중·파키스탄: 제8장
	한·EFTA: 없음	중·칠레: 제9장
	한·ASEAN: 없음	중·뉴질랜드: 제13장
	한·인도: 없음	중·싱가포르: 없음
	한·EU: 제12장	중·페루: 제13장
	한·페루: 제21장	중·홍콩: 제12장(중국어본)
	한·미: 제21장	중·마카오: 제12장(중국어본)
	한·터키: 제4장	중·코스타리카: 제12장
	한·호주: 제19장	중·아이슬란드: 없음
	한·캐나다: 제19장	중·스위스: 없음
	한·콜롬비아: 제18장	중·호주: 제13장
	한·뉴질랜드: 제17장	
한·베트남: 제14장		

1. 한국의 기체결 FTA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타결한 15개의 FTA 중, 비교적 초창기에 만들어진 한·EFTA FTA, 한·ASEAN FTA 및 한·인도 CEPA를 제외하고, 모든 FTA에 별도의 투명성 관련 챕터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는

앞에서 검토한 한-중 FTA 이외에 투명성 챕터를 갖고 있는 FTA를 중심으로 주요 조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한·칠레 FTA

한·칠레 FTA는 제17장에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투명성’에 관한 최초의 챕터를 마련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FTA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투명성 제고의 기본 요소인 공표, 통보와 정보 제공, 행정절차 및 재심과 불복청구를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제17.1조에 정의규정을 두어 공표 및 행정절차의 대상이 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정의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FTA에서도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통보와 정보제공’ 조항에 포함시키고 있는 ‘접촉선’과 관련하여 제17.2조에 별도의 조문을 두고 있는데, 접촉선을 통해 양국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17.5조에서 양국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원조의 사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한·싱가포르 FTA

한·싱가포르 FTA는 제19장에 ‘투명성’에 관한 챕터를 마련하고 있는데, 앞에서 살펴 본 한-중 FTA와 비교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둔 것 외에는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다. 즉, 공표, 통보와 정보 제공, 행정절차, 재심 및 불복청구에 관한 조문을 두고 있는데, 다만 제19.3조 제3항에 의하면 제공된 정보나 통보가 관련 조치와 한·싱가포르 FTA와의 합치성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됨을 강조하고 있다.²²⁾ 그러나 한-중 FTA 제18.2조 제3항을 비롯한 여러 FTA

22) 이러한 내용은 한·칠레 FTA 제17.3조 제3항, 한·페루 FTA 제21.2조 제3항, 한·콜롬비아 FTA 제18.2조 제3항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 제공의 시점과 관련한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FTA별로 ‘통보와 정보 제공’에 관한 조문에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모델화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3) 한·EU FTA

한·EU FTA의 제12장은 총 8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투명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FTA와 비교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먼저 제12.1조의 정의 규정에서도 보통 FTA에 언급되어 있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 이외에, ‘이해관계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제12.2조는 투명성 챕터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데, 즉 한국과 EU의 영역에서 사업하는 소규모 경제운영자를 위한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동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의 투명성과 협의 및 명확화 등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 또한, 제12.3조에서 제12.6조까지는 기존 FTA가 다루고 있는 공표, 문의처와 접촉선, 행정절차, 재심 및 불복청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12.4조는 ‘통보 및 정보 제공’이 아닌 ‘질의처와 접촉선’이라는 제목 하에 통보와 정보 제공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제12.7조는 ‘규제의 질 및 성과와 모범행정행위’라는 제목으로 이에 관한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2.8조에서 투명성 기준의 적용과 관련한 비차별의무를 특별히 규율하고 있다.

(4) 한·페루 FTA

한·페루 FTA는 제21장에서 ‘투명성’ 의무를 다루고 있는데, 기존의 FTA가 규율하고 있는 사항을 거의 유사하게 기술하고 있다. 즉, 공표, 통보 및 정보 제공, 행정절차, 재심 및 불복청구, 정의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제21.1조의 ‘공표’와 관련하여 한·페루 FTA의 대

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법률, 규정, 일반적용성이 있는 행정판정의 공표와 공개 의무만을 규정하고, 관련 조치의 사전 공표 의무와 이해관계인에 의한 의견 개진 기회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문제가 있어 보인다.

(5) 한·미 FTA

한·미 FTA는 제21장에 별도의 ‘투명성’ 챕터를 두고 있는데, 일반적인 기체결 FTA와 달리 민간구매와 부패방지에 관한 개별 조문을 두고 있다. 또한, 제21.1조의 공표 및 제21.7조의 정의규정과 관련하여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데 반해, 제21.2조는 정보 제공에 관해 비교적 간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공표’와 관련하여 한국의 기체결 FTA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의무를 규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미국이 체결한 NAFTA의 해당 규정보다 엄격하다. 특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한·미 FTA는 제21.1조 제3항 (나)호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법률 제외)에 대해 공중의견제출 마감일로부터 40일 이전에 공표하도록(should)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관련 조문이 개정된 바 있다.²³⁾

한편,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통보 의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이, 신속한 정보 제공 및 관련 질의응답 의무만을 규율하고 있다. 또한, 정의규정에서는 다른 FTA에는 없는 ‘외국 공무원’, ‘공적 기능’, ‘공무원’ 등에 관한 사항도 별도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한·미 FTA의 다른 챕터에서도 그대로 보이고 있는 현상으로 해석상 문제의 소지를 가능한 없애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1.3조의 행정절차와 제21.4조의 재심 및 불복청구 조문은 한-중 FTA를 포함한 한국의 기체결 FTA의 해당 규정과 거의 차이가 없이

23) 줄고, FTA의 투명성 제고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년 6월, 64쪽 참조.

그대로 규정되고 있다. 또한, 제21.5조는 양국이 다른 당사국의 상품과 서비스의 민간구매를 방해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제21.6조는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부패방지를 위해 관련 사안을 국내법상 형사범죄로 규정하기 위한 적절한 국내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의무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특히, 동 규정은 한국의 부패인식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실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부패근절을 하려는 의도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²⁴⁾

(6) 한·터키 FTA

한·터키 FTA는 기본협정 제4장에 3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투명성’에 관한 별도의 챕터를 두고 있다. 여기서는 정보교환, 공표 및 행정절차, 재심 및 불복청구에 대해 규율함으로써 사실상 한-중 FTA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과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제4.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표 의무와 관련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라고 언급함으로써 다른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투명성 의무를 규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투명성 챕터는 비록 3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제4.2조에서 ‘이해관계인’에 관한 정의규정, 공표 의무 및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의 기체결 FTA에서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을 거의 빠짐없이 규율하고 있다. 무엇보다 제4.1조 제4항에 의하면, 투명성 챕터와 한·터키 FTA의 다른 챕터의 투명성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후자가 우선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종의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음에 주목할 만하다.

24) 줄고, FTA의 투명성 제고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년 6월, 86-87쪽.

(7) 한·호주 FTA

한·호주 FTA는 제19장에서 ‘투명성’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FTA의 투명성 챕터가 규율하고 있는 사항, 즉 공표, 정보 제공, 행정절차, 재심 및 불복청구, 정의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 역시 일반적인 FTA의 투명성 챕터와 거의 유사하다.

다만, 제19.1조 제1항에서 공표 의무와 관련하여 실행가능한 경우 인터넷상의 공표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특이하다. 또한, 제19.2조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통보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신속한 정보 제공 및 질의응답 의무만을 규율하고 있다.

(8) 한·캐나다 FTA

한·캐나다 FTA의 제19장은 투명성 증대를 위해 7개의 조문으로 형성된 챕터인데, 기존 FTA에서 다루고 있는 공표, 통보 및 정보 제공, 행정절차, 재심 및 불복청구와 정의규정을 각각 제19.1조에서 제19.4조까지 및 제19.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19.2조 제1항은 한·칠레 FTA 제17.4조 제1항, 한·싱가포르 FTA 제19.3조 제1항, 한·콜롬비아 FTA 제18.2조 제1항의 조문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가능한 한도에서” 통보 의무를 규율함으로써 관련 의무의 대상에 예외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때 예외의 범위가 확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제19.5조는 국제무역과 투자의 투명성 촉진과 관련하여 한국과 캐나다의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9.6조는 한·미 FTA 제21.5조의 규정과 유사하게 민간구매와 관련하여 다른 당사국의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 및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다.

(9) 한·콜롬비아 FTA

한·콜롬비아 FTA 제18장에 규정된 ‘투명성’ 챕터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즉 공표, 통보 및 정보 제공, 행정절차, 재심 및 불복청구, 정의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제18.2조 제1항의 통보 의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대한 가능한 한도에서” 준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엄격한 의무 대신, 당사국의 재량의 여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0) 한·뉴질랜드 FTA

한·뉴질랜드 FTA는 제17장에 ‘투명성’과 관련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살펴 본 한·콜롬비아 FTA와 마찬가지로 투명성 챕터가 갖고 있는 일반적 유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의규정, 공표, 재심 및 불복청구, 행정절차, 통보 및 정보제공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데, 한·콜롬비아 FTA와는 조문의 순서에 차이가 있을 뿐,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을 좀 더 자세히 검토하면 보다 발전적 형태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예컨대 제17.2조 제1항에서 이해관계인과 다른 당사국의 이용 가능성 보장과 관련하여 인터넷이나 인쇄된 형식 모두를 포함하도록 각주에서 강조하고 있다.

한편, 통보와 정보 제공에 관한 제17.5조의 경우, 제1항은 “가능한 한”²⁵⁾ 한 당사국이 문제의 조치가 다른 당사국의 이해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통보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해당 조문은 상대적으로 다른 FTA에 비해 덜 엄격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17.5조 제3항은 접촉선을 통한 통보, 요청 정보 전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문제의 조치가 WTO

25) 한·페루 FTA 제21.2조 제1항 역시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에 적절히 통보된 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제5항은 동 조문상 통보, 정보나 답변은 관련 조치와 FTA와의 합치성과는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11) 한·베트남 FTA

한·베트남 FTA는 제14장에 5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투명성’ 챕터를 두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공표, 정보 제공, 행정절차, 재심 및 불복청구, 정의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공표 의무에 관한 제14.1조의 경우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데, 즉 동조 제3항과 제4항에서 각각 상세한 공표 방법 및 40일의 입법예고기간을 언급하고 있다.²⁶⁾

제14.2조는 통보 의무는 규정하지 않고, 한·미 FTA 제21.2조와 거의 동일한 정보의 신속한 제공 및 질의응답 의무를 규율하고 있다. 또한 제14.3조에서 제14.5조까지 규정된 행정절차, 재심 및 불복청구, 정의규정은 거의 유형화된 내용들인데, 다만 제14.4조 제1항에서 재심 절차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라는 조건을 붙이고 있는 점이 눈에 띄긴 하지만, 해석상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중국의 기체결 FTA

중국이 체결한 13개의 FTA 중, 한-중 FTA를 제외하고 별개의 투명성 챕터를 두고 있으며 영어본이 나와 있는 다음 6개의 FTA를 중심으로 주요 조항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

26) 한·미 FTA 제21.1조 제3항 (가)호 및 (나)호와 매우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한·미 FTA가 “일반적용성이 있는 중앙정부의 제안된 규정(proposed regulations of general application)”의 공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 한·베트남 FTA는 “일반적용성이 있는 중앙정부의 제안된 법 및 규정(proposed draft laws and regulations of general application)”의 공표 의무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1) 중·파키스탄 FTA

2007년 7월 1일자로 발효한 중·파키스탄 FTA는 제8장 제42조에서 제45조까지 투명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접촉선, 공표, 통보와 정보 제공, 비밀정보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제43조의 공표는 중국과 파키스탄으로 하여금 동 협정의 대상이 되는 조치의 신속한 공표(나 공개) 의무만을 규정하고, 공표의 시기를 제시하거나 이해관계인과 다른 당사국에 의한 의견개진 기회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또한, 제45조는 한·터키 FTA 제4.1조 제3항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공익에 반하거나 경제운영자의 합법적인 상업상 이익을 훼손할 수 있는 비밀정보의 공개를 요구하지 말도록 규정함으로써, 제44조 통보와 정보 제공 조문의 일종의 예외로서 기능하고 있다.

한편, 중·파키스탄 FTA는 제32조에서 SPS조치의 투명성을, 제40조에서 TBT조치의 투명성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생검역조치와 기술장벽조치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2) 중·칠레 FTA

2006년 10월 1일자로 발효한 중·칠레 FTA는 제9장에서 ‘투명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FTA의 일반적인 투명성 챕터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인 접촉선, 공표, 통보와 정보 제공, 행정절차, 재심과 불복청구, 다른 챕터와의 관계 및 정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은 다른 챕터와의 관계 조항에서 투명성 챕터가 ‘협력’ 챕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will not apply), 동 챕터와 다른 챕터와의 불합치가 발생하는 경우 다른 챕터가 우선한다고(shall prevail)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²⁷⁾

27) 중·칠레 FTA 제77조.

또한, 중·칠레 FTA는 제46조에 세이프가드 조사 절차와 관련하여 투명성 요건을, 제57조에 SPS조치의 정보교환과 문의처 설립을, 제67조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의 통보와 공표에 관한 규정을 함으로써 투명성 증대를 꾀하고 있다.

(3) 중·뉴질랜드 FTA

2008년 10월 1일자로 발효한 중·뉴질랜드 FTA는 제13장에 총 6개의 조문, 즉 정의규정, 공표, 행정절차, 재심과 불복청구, 접촉선, 통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으로 이루어진 투명성 챕터를 포함하고 있다. 그 중에서 제168조 공표에 관한 조문은 제1항에서 양국이 동 협정의 대상이 되는 법률, 규정, 절차 및 일반적용성이 있는 행정판정을 “그 이행 또는 집행일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90일 이내에(in no case later than 90 days after implementation or enforcement)” 신속히 공표하도록 보장할 의무를 규율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통보와 정보 제공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제172조에 의하면, 먼저 제1항에서 가능한 한 동 협정의 운영 및 다른 당사국의 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고려되는 조치에 대해 통보할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다른 당사국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within 30 days of receipt of the request) 관련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에 답변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투명성 관련 요건이 보다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뉴질랜드 FTA는 제69조에서 양자세이프가드 조치의 투명성을, 제98조에서 기술규정과 적합판정절차의 투명성을, 제116조에서 서비스무역의 투명성을, 제131조에서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투명성을, 제146조에서 투자의 투명성을 규정함으로써 투명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중·페루 FTA

2010년 3월 1일자로 발효된 중·페루 FTA는 제13장에 투명성에 관한 별도의 챕터를 두고 있는데, 동 챕터는 2개의 조문, 즉 투명성과 비밀정보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투명성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제167조는 제1항에 공표 의무를, 제2항은 가능한 한 다른 당사국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의 정보 제공 및 질의 답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정보, 요청 및 통보를 접촉선을 통해 수행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한편, 제1항의 공표 의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국의 법률에 대한 공표 또는 양국의 법률, 규정과 일반적용성이 있는 행정판정 및 “동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 협정 이후 발효한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을 공중이 이용 가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법률이나 규정을 포함하는 국내조치 뿐만 아니라 동 협정 이후 가입하는 국제무역협정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한 점은 매우 특이한 부분이다.

또한 비밀정보에 관한 제168조는 양국으로 하여금 정보 제공의 예외로서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공익에 반하며 경제운영자의 합법적인 상업상 이익을 훼손할 수 있는 비밀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페루 FTA는 투명성 챕터 이외에, 제72조에서 양자세이프가드 조치의 투명성을, 제88조에서 SPS조치의 투명성을, 제99조에서 기술규정과 적합판정절차의 투명성을, 제114조에서 서비스무역의 투명성을, 제119조와 제124조에서 각각 기업인의 일시적 입국과 관련한 정보 제공 및 투명성을 규율함으로써 투명성 증대에 힘쓰고 있다.

(5) 중·코스타리카 FTA

2011년 8월 1일자로 발효된 중·코스타리카 FTA는 제12장에 개별 챕터를 통해 투명성 강화를 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공표, 통보와 정보 제공, 행정절차, 재심과 불복청구, 특별규칙 및 정의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투명성 챕터는 특별규칙을 통해 다른 챕터와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며,²⁸⁾ 공표의 대상으로 ‘법률, 규정, 절차와 일반적용성이 있는 행정판정’이 아니라 ‘조치(measures)’를 언급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중·코스타리카 FTA는 다른 당사국에 투명성 챕터에 따라 제공된 모든 정보, 요청이나 통보를 ‘접촉선’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코스타리카 FTA는 제12장의 개별 챕터 이외에, 제65조에서 SPS 조치의 투명성을, 제75조에서 TBT조치의 투명성을, 제81조에서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의 투명성을, 제100조에서 서비스무역의 투명성을, 제104조에서 기업인의 일시적 입국에 관한 투명성을, 제115조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접촉선을 규정함으로써 투명성 개선에 관해 다루고 있다.

(6) 중·호주 FTA

2015년 6월 17일에 공식 서명한 중·호주 FTA는 제13장에 투명성에 관한 개별 챕터를 두고 있는데, 동 챕터는 FTA의 일반적인 투명성 챕터가 다루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규율하고 있다. 즉, 정의규정, 공표, 통보와 정보 제공, 행정절차, 재심 및 불복청구의 5개 조문으로 구성됨으로써 가장 정형화된 FTA의 기본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다.

28) 중·코스타리카 FTA 제133조 특별규칙에 의하면, 투명성 챕터의 규정은 다른 챕터에서 확립된 어떠한 특별규칙을 침해하지 않는다(are without prejudice to)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동 챕터와 다른 챕터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제13.2조 제1항에 기술된 공표 의무에 의하면, 가능한 경우 인터넷을 포함하여 신속하게 공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최신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한편, 중·호주 FTA는 제2.12조에서 비관세조치의 투명성과 재심을, 제4.7조와 제4.8조에서 각각 관세절차 및 무역원활화와 관련한 투명성 및 재심과 불복청구를, 제5.5조에서 SPS조치의 투명성을, 제6.8조에서 기술규정과 적합판정절차의 투명성을, 제7.4조에서 양자세이프가드 조치의 투명성을, 제7.10조에서 보조금 조치의 투명성을, 제8.18조에서 서비스무역의 투명성을, 부속서 8-B 제5조에서 금융서비스의 투명성을, 제9.17조에서 중재절차의 투명성을, 제10.5조에서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투명성을, 제11.6조에서 지식재산권 운영의 투명성을, 제12.4조에서 전자상거래의 투명성을 규율하고 있는데, 기존에 중국이 체결한 다른 FTA에 비해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투명성 증대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상대국인 호주의 입장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3. 소 결

이상으로 한국과 중국이 체결한 FTA에서 투명성에 대한 협정문의 주요 규정을 살펴보았다.

우리 정부는 FTA의 투명성 챕터가 우리나라 제도에 있어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과 기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 간주하는데, 일반적인 투명성 챕터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FTA에 관련된 국내법, 규정, 절차 등을 신속하게 공표하고 다른 당사국과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둘째 FTA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서는 다른 당사국에 통보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며, 셋째 FTA와 관련하여 행정 및 사법 검토와 재심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며, 넷째 다른 당사국의 상품과 서비스

와 관련하여 민간구매를 방해하지 않으며, 다섯째 무역 및 투자와 관련하여 부패를 방지하도록 국내조치를 확립하여야 한다.²⁹⁾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이 체결한 FTA는 아래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거의 모든 경우 공표, (통보와) 정보 제공, 행정절차, 재심과 불복청구 및 정의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한·EU FTA는 ‘접촉선’ 조문에 통보와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한·미 FTA, 한·터키 FTA, 한·호주 FTA 및 한·베트남 FTA는 ‘통보’에 관한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일부 FTA에서 투명성 챕터의 기본사항 이외에, 국가원조에 관한 정보 제공, 비차별의무, 부패방지, 민간구매 및 협력의무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표 2-15-2> 한국의 기체결 FTA별 투명성챕터 비교

FTA	일반규정	정의규정	접촉선	기타 규정
한·칠레	공표, 통보와 정보 제공, 행정절차, 재심과 불복청구	v	v	국가원조에 대한 정보 제공
한·싱가포르	공표, 통보와 정보 제공, 행정절차, 재심과 불복청구	v		
한·EU	공표, 행정절차, 재심과 불복청구	v	v (통보와 정보 제공)	목적과 적용범위, 모범행정행위, 비차별
한·페루	공표, 통보와 정보 제공, 행정절차, 재심과 불복청구	v		

29) 외교통상부, 한·미 FTA 상세설명자료, 2011, 173쪽.

FTA	일반규정	정의규정	접촉선	기타 규정
한·미국	공표, 정보 제공, 행정절차, 재심과 불복청구	v		민간구매, 부패방지
한·터키	공표, 정보 교환, 행정절차, 재심과 불복청구	v		다른 챕터와의 관계
한·호주	공표, 정보 제공, 행정절차, 재심과 불복청구	v		
한·캐나다	공표, 통보와 정보 제공, 행정절차, 재심과 불복청구	v		협력 의무, 민간구매
한·콜롬비아	공표, 통보와 정보 제공, 행정절차, 재심과 불복청구	v		
한·뉴질랜드	공표, 통보와 정보 제공, 행정절차, 재심과 불복청구	v		
한·베트남	공표, 정보 제공, 행정절차, 재심과 불복청구	v		

중국이 체결한 FTA의 투명성 챕터는 아래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점차적으로 진화되고 모형화되고 있는 듯하다. 즉, 중·파키스탄 FTA에서 공표, 통보와 정보 제공으로 이루어져 있던 간단한 조합이 중·칠레 FTA를 시작으로 공표, 통보와 정보 제공, 행정절차, 재심과 불복청구 및 정의규정이라는 기본 요소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왔다.

또한 중·칠레 FTA와 중·코스타리카 FTA의 경우, 투명성 챕터가 다른 챕터와 합치되지 않는 경우 다른 챕터가 우선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다른 챕터와의 관계를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투명성 챕터가 다른 챕터에 비해 좀 더 약한 법적 의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표 2-15-3> 중국의 기체결 FTA별 투명성챕터 비교

FTA	일반규정	정의규정	접촉선	기타 규정
중·파키스탄	공표, 통보와 정보 제공			비밀정보
중·칠레	공표, 통보와 정보 제공, 행정절차, 재심과 불복청구	v		다른 챕터와의 관계
중·뉴질랜드	공표, 통보와 정보 제공, 행정절차, 재심과 불복청구	v	v	
중·페루	투명성(공표, 정보 제공, 접촉선)			비밀정보
중·코스타리카	공표, 통보와 정보 제공, 행정절차, 재심과 불복청구	v		특별규칙(다른 챕터와의 관계)
중·호주	공표, 통보와 정보 제공, 행정절차, 재심과 불복청구	v		

제 4 절 한-중 FTA의 평가 및 시사점

1. 한-중 FTA 규정의 문제점

한-중 FTA의 투명성 챕터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투명성 증대를 위한 기본 요소인 공표, 통보와 정보 제공, 행정절차, 재심과 불복청구에 대해 규율하고 있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먼저 공표의 대상과 관련하여 한국의 기체결 FTA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단지 ‘조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공식적으로 지정된 매체를 통해 비차별적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공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면 투명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행정절차 규정에 있어 일관되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여야 할 대상의 성격과 관련하여 위 공표 의무의 대상과 동일하게 규율함으로써 한-중 FTA 투명성 챕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중 FTA는 다른 FTA와 구별되게 공표 의무의 대상에 ‘일반 적용성이 있는 행정판정’이라는 표현 대신, ‘조치’로 간단히 사용함으로써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만약 위 규정이 개정된다면 반드시 삽입되어야 부분이다. 또한,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회원국의 법 집행이나 공공이익을 훼손할 수 있는 비밀정보의 유출을 막는 예외조항을 두어 투명성 제고와 공익의 보호 간에 적절한 균형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한-중 FTA의 시사점 및 향후 과제

한-중 FTA에서 다루고 있는 투명성 챗터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한·EFTA FTA, 한·ASEAN FTA, 한·인도 CEPA를 제외한 가운데, 한·EU FTA를 기점으로 모든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 챗터 중의 하나이다. 중국의 경우, 모든 FTA에서 투명성 챗터를 필수요건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한-중 FTA는 우리나라의 기 체결 FTA가 모델이 되어 위에서 언급한바 미흡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주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패지수가 높고 투명한 법제를 갖고 있지 못한 중국과의 FTA에 투명성 챗터가 포함된 것은 그 자체로 분명 상당한 의미를 갖는 일이겠지만, 중국의 불투명한 법제 실무로 인해 우리나라에 무역상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다룬 개선사항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국을 세계은행의 관점처럼 개발도상국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선진국으로 대우함과 동시에 높은 수준의 투명성 제고 의무를 요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I. 국내문헌

1. 단행본 및 연구보고서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신국제경제법』, 박영사, 2012.

고일훈, “WTO 무역원활화협정 주요내용 및 영향”, Global Market Report 14-051, KOTRA, 2014년 12월.

관계부처합동,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 2015.

이주윤, FTA의 투명성 제고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년 6월.

외교통상부, 한·미 FTA 상세설명자료, 2011.

II. 외국문헌

Van den Bossche, Peter, *The Law and Policy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ext, Cases and Materials*,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Wolfrum, Rüdiger · Stoll, Peter-Tobias and Hestermeyer, Holger P. (eds.), *WTO - Trade in Goods (Max Planck Commentaries on World Trade Law)*,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1.

III. FTA 협정문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U FTA, 한-페루 FTA, 한-미 FTA, 한-터키 FTA,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한-콜롬비아 FTA, 한-뉴질랜드 FTA, 한-베트남 FTA.

China-Pakistan FTA, China-Chile FTA, China-New Zealand FTA, China-Peru FTA, China-Costa Rica FTA, China-Australia FTA.

제16장 분쟁해결제도

제 1 절 개 관

1. 분쟁해결제도의 의의

분쟁해결제도가 가지는 의의는 국제무역체제의 효율적 운영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국가 간 통상분쟁의 방지와 이를 통한 무역의 원활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대상분야별로 합의된 무역규범이 존재하여야 함은 명확하다. 그러나 이들을 해석과 적용 및 이행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통상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절차규범의 존재도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분쟁해결절차규칙은 합의된 국제규범의 적용과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한다.¹⁾ 실체규범 및 절차규범에서의 통상규범의 미비 및 결함은 무역보복조치의 남용을 초래하게 되며, 이는 국제통상분쟁을 악화시킬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복조치의 남용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²⁾

2. 한-중 FTA 분쟁해결제도의 체계

한-중 FTA 분쟁해결제도는 제20장 분쟁해결의 장에서 총 17개 조문과 부속서 A, B로 구성되어 있다. 17개의 조문은 협력(제20.1조), 적용범위(제20.2조), 분쟁해결절차의 선택(제20.3조), 협의(제20.4조), 주선, 조정 또는 중개(제20.5조), 패널의 설치(제20.6조), 패널의 구성(제20.7

1) J.H. Jackson, *The World Trading System: Law and Policy of International Economics Relations*, The MIT Press, 1990, p.88.

2) 최승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상의 분쟁해결절차규칙에 대한 법적정책적 제언”, 『경희법학』, 제47권 제4호, 2012, p.17.

조), 패널의 기능(제20.8조), 절차규칙(제20.9조), 패널절차의 정지 또는 종료(제20.10조), 패널보고서(제20.11조), 패널의 최종보고서의 이행(제20.12조), 합리적인 기간(제20.13조), 이행검토(제20.14조),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제20.15조), 정지 이후의 절차(제20.16조), 사적권리(제20.17조)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속서에서는 절차규칙(20-가)과 패널위원과 중개인에 대한 행동규범(20-나)을 규정하고 있다.

제 2 절 주요내용

1. 협 력

제20.1조 협력

양 당사국은 분쟁이 발생한 때에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항상 노력하며,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력 및 협의를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

한-중 FTA는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규정의 첫 번째 조항인 제20.1조에서 협력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다. 분쟁의 발생시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합의뿐만 아니라 협정의 운영에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한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을 위하여 협력 및 협의를 바탕으로 모든 시도를 하도록 되어 있다. 동 조항은 한국이 체결한 타 FTA에서도 동일 또는 유사하게 반영되어 있다.³⁾ 동 조항은 양국 간 통상분쟁의 발생 및 예방을 위한 협력 및 협의의무를 양국에 부여함으로써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선언적 의미도 가지지만, 일방 국가가 분쟁해결에 있어 협력과 협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지 않을 경우 협정위반의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실질적 의미도 가진다.

3) 한-칠레 FTA 제19.1조, 한-페루 FTA 제23.1조, 한-EU FTA 제14.3조(1), 한-미 FTA 제22.3조, 한-싱가포르 FTA 제20.1조, 한-EFTA FTA 제9.3조(1), 한-인도 CEPA 제14.1조, 한-호주 FTA 제20.1조, 한-캐나다 FTA 제21.1조 등

2. 적용범위

제20.2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되거나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또는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상의 의무와 불합치 한다. 또는

나.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하였다.

(1) 적용대상 조치

분쟁해결절차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한-중 FTA 분쟁해결 챕터는 ① 협정의 해석 및 적용 관련 모든 분쟁, ② 협정상의 의무와의 불합치 조치, 또는 ③ 협정상의 의무불이행의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와 위생검역(SPS), 기술무역장벽(TBT), 경쟁, 경제협력, 환경 관련 분쟁에서는 이 장의 분쟁해결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2) 비위반제소 미도입

한-중 FTA에서는 협정비위반에 관한 제소규정이 없다. 따라서 협정비위반 조치는 한-중 FTA 분쟁해결절차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WTO 협정은 협정위반이 아닌 조치더라도 대상협정에 따라 직접, 간접적으로 자국에게 발생하는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거나 동 협정의 목적달성이 저해되는 경우에는 분쟁해결절차를 원용할 있도록 하고 있다.⁴⁾ 이러한 내용의 협정비위반 제소는 한국이 체결한 FTA마다 각각 상이하게 나타난다.

4) 협정비위반제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 최승환, 「국제경제법」, 제4판, 법영사, 2014, pp.237-238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편, 「신 국제경제법」, 박영사, 2013, pp.50-54.

한-인도 CEPA 제4.2조, 한-미 FTA 제22.4조, 한-호주 FTA 제20.2조 등에서는 명문으로 협정비위반제소도 분쟁해결절차의 적용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다른 FTA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해석상 협정비위반 제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분쟁해결 포럼의 선택

제20.3조 분쟁해결 포럼의 선택

1. 분쟁이 이 협정과 세계무역기구협정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협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 포럼을 선택할 수 있다.
2. 제소 당사국이 제1항에 언급된 협정 중의 하나에 따라 분쟁해결패널의 설치를 요구하였으면, 선택된 포럼은 다른 포럼을 배제하고 이용된다.

한-중 FTA와 WTO 협정 또는 양국이 모두 당사국인 그 밖의 협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제소국은 이들 협정의 분쟁해결절차 중 적절한 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협정 중 어느 하나에 따라 패널의 설치를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협의’가 아닌 ‘설치 요청’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동 조항은 다른 FTA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쟁해결절차의 중복 이용을 통한 절차의 지연 및 통일된 결과의 미도출시 발생할 수 있는 또다른 분쟁의 예방 등을 위해 도입되었다.

4. 협 의

제20.4조 협의

1. 양 당사국은 이 조 또는 이 협정의 다른 협의 규정상의 협의를 통하여 모든 분쟁의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시도를 한다.

2.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제20.2조에 기술된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 당사국은 문제가 되는 조치에 대한 적시와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표시를 포함하여 그 요청의 사유를 서면통보로 제시한다. 협의 요청이 이루어지면 다른 쪽 당사국은 요청의 접수일 후 10일 내에 그 요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응답한다.
3. 협의는 요청의 접수일 후 30일 내에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신의성실하게 개최되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요청을 받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된다.
4. 요청을 받은 당사국이 협의 요청의 접수일부터 10일 내에 응답하지 아니하거나 30일 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 당사국은 제20.6조에 따라 패널의 설치를 직접 요청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 가. 협의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이 협정의 운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협의를 통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 나. 협의과정에서 교환된 모든 비밀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한다.
6. 협의는 비밀로 하며, 이 장에 따른 어떠한 이후 절차에서도 양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한-중 FTA는 협의를 통한 분쟁해결 시도를 규정하고 있다. 협의의 요청은 서면통보의 전달을 통해 이루어진다. 동 요청서에는 대상조치에 대한 적시, 제소의 법적근거 표시 등의 요청사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협의요청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응답하여야 하며,⁵⁾ 요청의 접수일 후 30일 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요청 당사국은 패널의 설치를 직접 요청할 수 있다.

5) 10일 이내의 서면응답은 한-페루 FTA(제23.4조)와 동일한 기준이다. 이에 반해 한-미 FTA(제22.7조(1))에서는 ‘신속하게 응답하고’, 한-ASEAN FTA 분쟁해결제도협정(제3.2조)에서는 ‘수령한 즉시 제소국을 비롯한 나머지 당사국에게 통보’라는 주관적인 시점을 기재하고 있으며, 한-EU FTA(제14.3조)는 응답에 관한 규정은 없이 30일 이내에 협의 개최라는 규정만 있다.

한-중 FTA는 농산물에 대한 양허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다른 FTA와 달리 부패성 상품에 대한 협의 규정이 없다. 협의 개시일은 한국이 체결한 FTA 마다 상이하게 나타나는데,⁶⁾ 한-중 FTA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이 일반적인 내용이다.

5. 주선, 조정 또는 중개

제20.5조 주선, 조정 또는 중개

1. 주선, 조정 및 중개는 양 당사국이 그러하게 합의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행하여지는 절차이다.
2. 주선, 조정 및 중개와 관련된 절차와 특히 그 절차에서 양 당사국이 취한 입장은 비밀로 하며, 어떠한 이후 절차에서도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3. 주선, 조정 또는 중개는 어느 쪽 당사국에 의하여도 언제든지 요청될 수 있다. 이들은 언제든지 개시될 수 있고,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제20.6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에서 분쟁이 해결을 위하여 진행되는 동안에 주선, 조정 또는 중개를 위한 절차는 계속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특히 한쪽 당사국이 특정 비관세조치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조치가 이 협정의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에 해당하는 사안에 관련되며 이 장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믿는 때에는 중개 절차를 개시할 것이 장려된다.
5. 양 당사국은 합의에 따라 양 당사국이 지정 또는 지명하는 중개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한 방식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호 합의된 해결에 도달할 목적으로 제4항에 규정된 중개 절차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양 당사국이 해결책에 합의한 경우 각 당사국은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6. 제4항에 규정된 중개 절차는 이 협정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자로 참가하는 다른 협정상 분쟁해결절차를 위한 근거로서 작용하도록 의도되지 아니한다.

6) 한-싱가포르 FTA(제20.4조)는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한-미 FTA(제22.7조)는 신속하게 응답하고 개시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기일은 규정에 없다.

(1) 패널절차와의 병행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한-중 FTA는 화해지향적 분쟁해결수단인 주선, 조정, 중개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 WTO 협정에서는 동 절차들이 종료된 이후에 패널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⁷⁾ 한-칠레 FTA에서도 동 절차들이 당사국간의 합의없이 종료된 후에 제소국이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⁸⁾

반면 한-중 FTA에서는 패널절차와 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양국간 발생한 통상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2) 비관세조치 중개절차

한-중 FTA는 비관세조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개 절차를 개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양 당사국은 중개인의 도움을 통해 합리적 기간 내 신속한 방식으로 상호 동의할 만한 해결책 모색을 노력하고, 합의된 해결책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6. 패널의 설치

제20.6조 패널의 설치

1. 제20.4조에 언급된 협의가 협의 요청 접수일 후 60일 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기간 내에 사안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제소 당사국은 패널을 설치하는 서면 요청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전달할 수 있다.
2. 제소 당사국은 그 요청서에 협의가 열렸는지 여부를 명시하고, 문제가 되는 특정 조치를 적시하며 문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기에 충분한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간략한 요약を提供한다.
3. 패널은 제1항에 언급된 요청서의 접수일에 설치된다.

7) WTO DSU 제5.3조.

8) 한-칠레 FTA 제19.5조.

한-중 FTA는 협의 요청 접수일 후 60일 이내,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한 그 밖의 기간 내에 사안이 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상기 기간 중 협의요청접수일과 관련하여서는 60일의 기간이 최장 기간이며,⁹⁾ 일부 FTA에서는 보다 더 짧은 기간을 두고 있다.¹⁰⁾

7. 패널의 구성

제20.7조 패널의 구성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양 당사국은 패널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의 절차를 적용한다.

가. 패널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나. 각 당사국은 패널 설치 후 15일 내에 각각 1인의 패널위원을 지명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한쪽 당사국이 그 기간 내에 패널위원을 지명하지 못하는 경우, 그 패널위원은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다.

다. 양 당사국은 패널 설치 후 30일 내에 의장 직무를 수행할 세 번째 패널위원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라. 양 당사국이 패널 설치 후 30일 내에 의장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분쟁의 어느 쪽 당사국이든 그 요청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이 30일의 추가 기간 내에 의장을 지명할 것이 기대된다.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이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거나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세계무역기구 사무차장이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요청된다.

2. 패널 의장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도 아니고, 어느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도 일상적 거주지를 두지 아니하며, 어느 한쪽 당사국에도 고용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자격으로도 그 사안을 처리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9) 한-페루 FTA 제23.4조, 한-EFTA FTA 제9.4조, 한-미 FTA 제22.9조. 단, 한-미 FTA의 경우에는 공동위원회 회부하는 기간이 별도로 60일 소요된다(제22.8조).

10) 한-터키 FTA(제6.5조) 30일, 한-EU FTA(제14.3조) 30일, 한-캐나다 FTA(제21.6조) 35일, 한-칠레 FTA(제19.6조) 45일, 한-싱가포르 FTA(제20.6조) 45일.

3. 이 조에 따라 임명된 패널위원이 사임하거나 패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후임자는 15일 내에 원래의 패널위원 선정절차에 따라 임명되고, 그 후임자는 원래의 패널위원의 모든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 그러한 경우, 패널절차에 적용 가능한 모든 기간은 그 후임자가 임명되는 동안 정지된다.
4. 모든 패널위원은
- 가. 법, 국제 무역,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그 밖의 사안 또는 국제무역협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전문성이나 경험을 보유한다.
- 나. 객관성, 신뢰성 및 건전한 판단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선정된다.
- 다. 어느 한쪽 당사국으로부터도 독립적이고, 제후 관계가 없거나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 라. 부속서 20-나(패널위원과 중개인에 대한 행동규범)에 규정된 행동규범을 준수한다.
5. 어느 한쪽 당사국이 패널위원이 부속서 20-나(패널위원과 중개인에 대한 행동규범)의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협의하며 그러하게 합의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그 패널위원을 교체한다.

(1) 패널위원의 구성

패널은 3인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되며, 패널 설치 후 15일 이내에 패널위원 3인 중 2인은 각 당사국이 1인씩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한 쪽 당사국이 그 기간 내에 패널위원을 지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쪽 당사국이 지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번째 패널위원은 의장직무를 수행하는데, 패널 설치 후 30일 이내에 양국이 세 번째 패널위원의 선정에 대해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WTO 사무총장이 의장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동 조항은 일방 당사국에 의한 절차의 부당한 지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2) 패널위원의 자격

패널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서는 여타의 FTA와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패널위원은 분쟁해결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어야

하며, 객관성·신뢰성 및 건전한 판단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선정된다. 또한 패널위원이 행동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 당사국의 합의에 의하여 패널위원을 교체한다.

(3) 패널위원의 선정

패널위원의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중 FTA와 한-페루 FTA와 같이 정부기관에 소속되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누구든지 패널위원으로 선정하는 유형, 한-칠레 FTA와 한-EU FTA와 같이 패널위원 명부를 사전에 선정한 뒤에 패널명부에서 추천하여 선정하는 유형¹¹⁾, 그리고 한-미 FTA와 같이 최초의 선정은 자유롭게 추천하지만 구성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패널위원명부를 별도로 작성하여 추천하는 유형¹²⁾ 등이 있다.

한-중 FTA의 유형은 WTO 협정에서도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패널위원의 명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판정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반면 패널위원의 명부를 구성하는 과정 자체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적격의 패널위원 숫자가 방대할텐데 동 인원들로 작성된 패널위원 명부를 당사국에 제공하는 것은 자유롭게 선정하는 것과 비교할 때 크게 실효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¹³⁾

11) 한-칠레 FTA(제19.7조)에서는 협정의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양국의 합의하에 15인의 명부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중 1/3은 양국의 국적을 가져서는 안되며, 3년의 임기를 가진다. 한-EU FTA(제14.18조)도 협정의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무역위원회에서 15인의 명부를 작성하고, 각 당사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개인 5인과 의장 역할을 할 5인(일방 당사국의 국민이 아니어야 함)을 선정한다.

12) 한-미 FTA(제22.9조(2))는 최초의 패널위원 선정시에는 각 당사국이 1인을 제안하도록 하되 일방 당사국이 그 기간 내에 패널위원을 제안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후보명부를 별도로 작성 후 추천으로 패널위원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13) 패널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명부 작성과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최송자, “한국과 중국이 ASEAN과 체결한 FTA 분쟁해결협정 비교 고찰”, 전계논문, pp.35-36 참조.

8. 패널의 기능

제20.8조 패널의 기능

1. 패널의 기능은 사건의 사실관계 조사와 이 협정의 적용 가능성 및 이 협정과
의 합치성을 포함하여 해당 분쟁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다.
2. 패널이 조치가 이 협정에 불합치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 패널은 피소 당
사국에게 그 조치를 이 협정에 합치시키도록 권고한다.

패널의 기능은 WTO 협정 및 타 FTA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 다만 WTO 협정에서는 패널은 분쟁당사자와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분쟁당사자에게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더 명기되어 있다.¹⁴⁾ 그러나 동 조항이 언급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20.1조의 협력조항 등으로부터 WTO 협정에서 규정하는 정기적 협의 및 적절한 기회 제공 등의 내용을 도출이 가능하다.

9. 절차 규칙

제20.9조 절차 규칙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부속서 20-가(절차 규칙)에
규정된 절차 규칙을 준수하고, 양 당사국과의 협의 후, 부속서 20-가(절차 규
칙)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추가적인 절차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2. 패널 설치의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내에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
니하는 한, 패널의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20.6조에 따라 패널 설치의 요청에서 언급된 사안을 이 협정의 관련 규정
에 비추어 조사하고,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사유와 함께 법 및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결정 및 권고를 하는 것”

14) WTO DSU 제11조.

3. 패널은,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자체 발의로,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정보 및 기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양 당사국이 그러하게 합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위원의 보수와 패널의 그 밖의 비용은 양 당사국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1) 절차규칙의 내용

양 당사국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부속서 20-가(절차 규칙)에 규정된 절차 규칙에 따라 분쟁해결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패널은 양 당사국과의 협의 후에 부속서 20-가(절차 규칙)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추가적인 절차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부속서20-가 절차규칙은 적용(1), 정의(2~3), 행정운영(4), 통보(5~10), 패널 절차 개시(11), 최초 서면 입장(12), 패널의 운영(13~17), 심리(18-24), 보충적 서면 입장(25), 비밀유지(26), 일방적 접촉(27~28), 기한 계산(29~30), 작업언어(31) 등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1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규칙의 몇 가지 특징으로는 패널심의회에는 패널위원만이 참여할 수 있으나 양국의 협의를 받은 경우에는 보조인, 통역사, 번역가 등도 출석할 수 있으며, 패널심리는 피소국의 영역에서 개최되며, 일방 당사국만에 의한 패널위원과의 접촉은 허용되지 않으며, 일부 패널위원이 부재한 상태에서 패널절차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서는 안되며, 원칙적으로 분쟁해결절차의 작업언어는 영어로 지정된다.

절차규칙의 개정에 관한 조항이 없으므로 동 규칙의 개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며, 다만 동 조에서처럼 필요시 추가적이 절차 규칙을 채택하여 내용을 보완하는 것만 가능하다.

(2) 정보 및 기술적 조언 요청권리

한-중 FTA는 다른 FTA와 유사하게 정보 및 기술적 조언 요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타의 FTA에서는 당사국의 요청에 의해서도 정보 및 기술적 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정보 및 기술적 조언이 당사국의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WTO 협정에서는 패널의 정보요청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분쟁당사국이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WTO 협정에서는 “분쟁당사국 일방이 제기하는 과학적 또는 그 밖의 기술적 사항과 관련된 사실문제에 관하여는 전문가 검토단에게 서면 자문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¹⁵⁾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해석상 당사국이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10. 패널 절차의 정지 또는 종료

제20.10조 패널 절차의 정지 또는 종료

1. 양 당사국은 패널이 그러한 합의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언제라도 패널의 업무를 정지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그러한 정지의 경우, 이 장에 규정된 모든 관련 기간은 업무가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된다. 패널의 업무가 12개월을 초과하여 정지되는 경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 설치 권한은 소멸된다.
2. 양 당사국은 패널 절차를 종료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패널절차는 양국 간 별도의 합의를 통해 패널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정지된 기간은 분쟁해결절차에 규정된 모든 관련기관에 삽입되어 연장된다. 또한 양 당사국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패널의 업

15) WTO DSU 제13.2조.

무가 12개월을 초과하여 정지되는 경우에는 패널 설치 권한은 소멸된다.

동 조항은 WTO 협정에서는 제소국의 요청에 의해 패널의 절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¹⁶⁾과, 한-중 FTA에서는 양 당사국이 패널의 절차를 종료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즉, WTO 협정은 당사국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절차가 정지가 되지만, 한-중 FTA에서는 합의에 의해 절차의 정지 및 절차의 종료가 이루어진다.

11. 패널 보고서

제20.11조 패널 보고서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최후의 패널위원이 임명된 후 120일 내에 잠정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게 제출한다.
2. 예외적인 경우에 패널이 그 120일의 기간 내에 잠정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패널은 지연의 사유와 함께 잠정 보고서를 제출할 예상 기간을 양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지연도 30일의 추가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패널은 이 협정의 관련 규정과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에 기초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패널은「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9년)에 성문화된 것을 포함하여 국제공법에 관한 관습적인 해석규칙에 따라 이 협정을 검토한다.
4. 각 당사국은 잠정 보고서의 제출부터 15일 내에 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을 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잠정 보고서에 대한 양 당사국의 서면 의견을 고려한 후, 패널은 보고서를 수정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검토를 할 수 있다.
5.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잠정 보고서의 제출부터 45일 내에 최종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게 제출한다. 양 당사국이 그러하게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양 당사국은 비밀정보의 보호를 조건으로 최종 보고서 제출 후 15일 내에 최종 보고서를 공개한다.
6. 패널은 컨센서스로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패널이 컨센서스에 이를 수 없는 경우 패널은 다수결로 결정을 취할 수 있다. 패널위원은

16) WTO DSU 제12.12조.

만장일치로 합의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별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패널 보고서에 표현된 개별 패널위원의 모든 의견은 익명이다.

7. 패널의 최종 보고서는 그 분쟁에 대하여 양 당사국에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가지며, 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창설하지 아니한다. 최종 보고서에는 사실의 조사결과,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의 적용 가능성, 그리고 패널이 한 조사결과 및 결론에 대한 기본 근거를 제시한다.

(1) 패널보고서 제출 및 채택 시한

마지막 패널위원이 선출된 때부터 120일 내에 잠정보고서가 양 당사국에게 제출되어야 한다.¹⁷⁾ 패널은 예외적으로 상기 기일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연의 사유와 함께 잠정 보고서를 제출할 예상 기간을 양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잠정보고서의 제출에 있어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지연도 30일의 추가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잠정 보고서의 제출부터 15일 내에 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을 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¹⁸⁾ 또한 잠정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된 최종보고서는 양 당사국이 비밀정보의 보호를 조건으로 제출 후 15일 내에 공개된다.

WTO 협정은 일반적으로 패널의 구성 및 위임사항의 합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6개월(180일) 내에 잠정보고서가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¹⁹⁾ 패널이 6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중 FTA와 동일하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3개월의 추가기간을 초

17) 주요 FTA의 잠정보고서 제출일은 다음과 같다. 한-미 FTA(제22.11조(1)) 180일 이내, 한-페루 FTA(제23.13조) 120일 이내, 한-EU FTA(제14.6조(1)) 90일 이내, 한-ASEAN FTA 분쟁해결협정(제11.2조) 90일 이내.

18) 주요 FTA의 서면의견 제출일은 다음과 같다. 한-페루 FTA(제23.14조) 10일 이내, 한-미 FTA(제22.11조(3)) 14일 이내, 한-EU FTA(제14.6조(2)) 14일 이내, 한-칠 FTA(제19.12조(4)) 14일 이내.

19) WTO DSU 제12.8조.

과하여서는 안된다.²⁰⁾ 패널보고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해결기구 회의가 개최되기 10일 이전에 서면 의견을 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²¹⁾ 회원국에게 패널보고서를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하여 회원국에게 배포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다.²²⁾ 패널보고서는 회원국에 배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해결기구에서 채택된다.²³⁾

한-중 FTA에서는 WTO 협정 및 다른 FTA처럼 패널절차별로 단계별 시한을 두어 절차의 지연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WTO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한보다 짧은 시한을 규정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WTO 협정에서는 오히려 배포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채택을 위한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여 당사국에게 검토기간을 좀더 부여를 하고 있으나, 한-중 FTA에서는 양 당사국에게 비밀정보의 보호를 조건으로 최종 보고서 제출 후 15일 내에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분쟁의 해결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2) 패널보고서 및 기타 서면 자료 등의 공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중 FTA에서는 최종보고서 제출 후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²⁴⁾ 다만 패널보고서 이외의 공개가 가능한 문서 등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

WTO 협정에서는 패널이나 상소기구에 제출되는 서면입장은 비밀로 취급되지만 분쟁당사국이 입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국의 입장에 관한 진술은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이 요

20) WTO DSU 제12.9조.

21) WTO DSU 제16.2조.

22) WTO DSU 제16.1조.

23) WTO DSU 제16.4조.

24) 주요 FTA의 최종보고서 공개일은 다음과 같다. 한-칠레 FTA(제19.13조(3)) 15일 이내, 한-미 FTA(제22.11조(4)) 15일 이내. 한-EU FTA, 한-페루 FTA에서는 최종보고서 공개일에 관한 별도규정이 없다.

청하는 경우에는 서면 입장에 포함된 공개가능한 정보의 평문 요약문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²⁵⁾

또한 일부 FTA에서는 비밀정보를 제외하고는 분쟁당사국의 서면입장, 구두진술의 서면, 중재패널의 요청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일반시민에게까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⁶⁾ 특히 중-싱가포르 FTA는 중재패널에 제출할 경우, 일반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는 서면입장에 포함된 정보의 비밀정보가 아닌 요약본을 타방당사국이 요청할 경우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⁷⁾

분쟁당사국의 기밀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비밀정보가 아닌 여타의 정보를 공중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통상분쟁의 해결과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보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동 절차를 통해 진행된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이 결정한 결론에 대해 정당성과 타당성을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중 FTA에서 자료의 공개관련 조항이 부재는 아쉬운 점이 있다.

3) 패널보고서의 채택

WTO 협정에서는 역총의제의 의한 방식으로 패널보고서 및 상소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중 FTA에서는 총의제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을 두고 있다. 다만, 당사국간의 총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수결원칙을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4) 패널보고서의 성격

WTO 협정은 상소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타 FTA와 동일하게 한-중 FTA도 패널절차만을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패널보고서는 최종적

25) WTO DSU 제18.2조.

26) 한-싱가포르 FTA, 한-미 FTA, 중-뉴질랜드 FTA 등.

27) 중-싱가포르 FTA 제99.4조.

이며 당사국을 구속한다. 패널보고서에 법적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은 분쟁해결기관에 권위를 제고하고 규범지향적 분쟁해결방식을 확립하는데 기여한다.²⁸⁾

12. 패널의 최종 보고서의 이행

제20.12조 패널의 최종 보고서의 이행

1. 패널이 최종 보고서에서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의무에 합치하지 아니하였다 고 판정하는 경우, 가능한 때에는 언제나, 그 불합치를 제거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피소 당사국은 즉시 또는 이것이 실행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0.13조에 언급된 합리적인 기간 내에 패널의 최종 보고서에서 판정된 불일치를 제거한다.

패널의 최종결정에 대해 양 당사국은 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제거하여야 하며, 이는 즉시 또는 즉시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제20.13조) 이내에 불일치를 제거하여야 한다.

WTO 협정에서는 패널 및 상소기구가 회원국에게 대상협정에 일치하는 않는 조치를 대상 협정에 합치시키도록 권고를 하고,²⁹⁾ 권고 및 판정의 이행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다.³⁰⁾ 한-중 FTA에서도 패널에게 불합치를 제거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소 당사국에게도 불일치를 제거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28) 최승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상의 분쟁해결절차규칙에 대한 법정정책적 제언”, 『경희법학』, 제47권 제4호, 2012, p.16.

29) WTO DSU 제19.1조.

30) WTO DSU 제21조.

13. 합리적인 기간

제20.13조 합리적인 기간

1. 합리적인 기간은 양 당사국에 의하여 상호 결정되거나 양 당사국이 패널의 최종 보고서 제출로부터 30일 내에 합리적인 기간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에서 원래 패널이 합리적인 기간을 결정하도록 원래 패널에 그 사안을 회부할 수 있다.
2. 패널은 그 사안의 회부일 후 30일 내에 양 당사국에 보고서를 제공한다. 패널이 이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패널은 지연의 사유와 함께 보고서를 제출할 예상 기간을 양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지연도 30일의 추가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합리적인 기간은 통상적으로 패널의 최종 보고서의 제출일로부터 15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4. 피소 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최소 30일 전에 패널의 최종 보고서의 준수에 대한 진전 상황을 제소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다.

합리적인 이행기간의 결정은 양 당사국의 합의로 이루어지지만, 패널의 최종 보고서 제출로부터 30일 내에 합리적인 기간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방 당사국은 동 건을 원 패널에 회부할 수 있다.

패널은 동 건이 회부된 후 최대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합리적인 기간은 통상 패널의 최종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피소 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 만료 최소 30일 전에 최종보고서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제소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WTO 협정에서도 합리적인 기간은 일반적으로 15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있다.³¹⁾

31) WTO DSU 제21.3조 (c).

14. 이행 검토

제20.14조 이행 검토

1. 피소 당사국은 자신이 패널의 최종 보고서를 준수하기 위하여 한 조치를 제소 당사국에 합리적인 기간의 종료 전에 통보한다.
2. 패널의 권고를 준수하기 위하여 한 조치의 존재나 이 협정과 합의성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분쟁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원래 패널에 회부되는 것을 포함하여 패널 절차에 회부된다.
3. 패널은 그 사안의 회부일 후 60일 내에 양 당사국에 보고서를 제공한다. 패널이 이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패널은 지연의 사유와 함께 보고서를 제출할 예상 기간을 양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지연도 30일의 추가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4. 이 협정상 패널 절차에 관한 조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조의 절차에 적용된다.

피소 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의 종료 전에 이행조치 실시여부를 제소당사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행조치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경우에는 원패널 절차에 회부되며, 패널은 회부일 후 60일 이내에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연사유와 함께 예상 기간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지연은 30일의 추가 기간을 넘지 않는다. WTO 협정에서는 9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하고 있는데,³²⁾ 이를 제외하고는 한-중 FTA와 동일한 내용을 두고 있다.

32) WTO DSU 제22.5조.

15.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제20.15조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1. 피소 당사국이 이 협정에 불합치된다고 판단된 조치를 정하여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패널의 권고에 맞추어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제20.14조의 패널이 판단하는 경우, 또는 피소 당사국이 서면으로 패널의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또는 준수를 위하여 취하여야진 조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양 당사국이 보상을 위한 협상을 개시한 후 20일 내에 보상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제소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에 대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제소 당사국은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기 30일 전에 피소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그 통보는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의 수준과 범위를 명시한다.
2. 보상과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권고와 결정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용 가능한 임시적인 조치이다. 그러나 보상이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중 어느 것도 조치를 이 협정에 합치되도록 하기 위한 권고의 완전한 이행보다 선호되지 아니한다. 보상은 이 협정에 합치한다.
3. 정지할 양허나 그 밖의 의무를 검토하는 데 있어,
 - 가. 제소 당사국은 패널이 이 협정에서 파생된 의무에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동일한 분야나 분야들에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 나. 제소 당사국은 동일한 분야 또는 분야들에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 것이 실행 가능하지 아니하거나 효과적이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할 수 있다.
4.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과 동등하다.
5. 피소 당사국이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수준이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과 동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원래 패널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피소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원래 패널은 제소 당사국에 의하여 정지되는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수준이 제4항에 따른 수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패널이 원래 패널의 패널위원으로 설치될 수 없는 경우 제20.6조에 규정된 절차가 적용된다.

6. 패널은 요청의 접수일 후 60일 내에 또는 패널이 원래 패널의 패널위원으로 설치될 수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 패널위원이 임명된 날부터 60일 내에 결정을 내린다.
7. 제소 당사국은 이 조에 따른 패널의 결정이 있기 전에 양허나 그 밖의 의무의 적용을 정지할 수 없다.

(1) 조건 및 기한

패널이 제시한 권고를 피소 당사국이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패널이 판단하는 경우, 또는 피소 당사국이 패널의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또는 준수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양 당사국이 보상을 위한 협상을 개시한 후 20일 내에 보상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제소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에 대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WTO 협정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³³⁾ 패널의 결정 및 피소당사국의 미이행 의사 통보의 요건은 한-중 FTA에서 별도로 확인되는 요건이다.

(2) 성격

보상과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는 임시적인 조치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가능한한 패널이 제시한 권고의 완전한 이행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동 조항은 양국 간 통상분쟁의 해결은 가능한한 패널이 제시한 권고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과, 패널 권고의 완전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임시적으로 보복조치가 허용됨을 선언하고 있다.

33) WTO DSU 제22.2조.

(3) 조치적용의 대상분야

양허 및 그 밖의 의무의 정지가 적용되는 분야는 우선 동 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동일한 분야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동 분야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실행가능하지 않거나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WTO 협정에서는 동일한 분야에서 먼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동 조치가 비효과적이거나 비현실적인 경우에는 동일 협정상의 다른 분야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이것도 비효과적이거나 비현실적인 경우에는 다른 대상협정상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³⁴⁾ 또한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다양한 경제적 요소와 경제적 과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³⁵⁾ 동일한 분야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사유를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³⁶⁾ 이들 조항은 해석상 서로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

(4) 이의제기

피소 당사국이 양허 및 그 밖의 의무의 정지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이의제기가 서면으로 있는 경우, 원 패널은 제소 당사국에 의하여 정지되는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동 절차는 WTO 협정에서도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³⁷⁾ 다만 동 사건의 만료와 관련하여 WTO 협정은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결됨을 규정하고 있지만, 한-중 FTA는 패널에게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패널이 원래 패널의 패널위원으로 설치될 수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 패널위원이 임명된 날부터 60일

34) WTO DUS 제22.3조 (a)~(c).

35) WTO DUS 제22.3조 (d).

36) WTO DUS 제22.3조 (e).

37) WTO DSU 제20.6조.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함으로써 기간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6. 정지 이후의 절차

제20.16조 정지 이후의 절차

1. 제20.15조의 절차를 저해함이 없이,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를 제거하였다고 피소 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 그 피소 당사국은 불합치가 어떻게 제거되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소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소 당사국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러한 서면 통보 접수 후 60일 내에 원래 패널에 그 사안을 회부할 수 있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제소 당사국은 신속하게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중단한다.
2. 패널은 그 사안이 회부된 후 60일 내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3. 패널이 피소 당사국이 불합치를 제거하였다고 결정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신속하게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중단한다.

피소 당사국이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를 제거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불합치가 어떻게 제거되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소 당사국에게 서면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소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의 판단에 동의하는 경우 신속하게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중단하여야 하며, 만약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통보 접수 후 60일 이내에 원 패널에 동 사안을 회부할 수 있다. 패널은 동 사안이 회부된 후 60일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WTO 협정에서는 권고 및 판정의 준수를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지 여부 또는 동 조치가 대상협정에 합치하는 여부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 패널에 회부하도록 하는 규정³⁸⁾과, 모든 회원국은 권고 또는 판정이 채택된 후 언제라도 이행문제를 분쟁해결

38) WTO DSU 제21.5조.

기구에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³⁹⁾을 통해 한-중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소 당사국의 조치가 가능함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협정문에 의해 직접적으로 권한을 인정받고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적용가능할 수도 있는 조항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패널의 관할대상 및 입증책임의 범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음은 자명하다. 동 조항은 양허 및 그 밖의 의무의 정지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양국간의 통상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WTO 협정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던 피소 당사국에게 능동적으로 현재의 통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7. 사적 권리

제20.17조 사적 권리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에 불합치한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자국의 국내법 상의 제소권을 규정할 수 없다.

다른 FTA와 동일하게 타 당사국의 협정 불합치 조치에 대해서는 자국 국내법상의 제소권을 규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한-중 FTA와 같은 국제규범이 국내법원에서 재판준칙으로 직접 적용될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소송남용의 조장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제 3 절 평가 및 제언

한-중 FTA상의 분쟁해결제도도 WTO 협정 및 다른 분쟁해결절차들 처럼 협력의무 및 협의, 주선·조정·중개, 패널의 심리, 보고서의 제출, 이행방식 및 합리적 이행기간에 대한 당사국간의 합의, 이행검토 및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

39) WTO DSU 제21.6조.

만 아래의 분야들에 있어서는 타 FTA와의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하에서는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한-중 FTA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평가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협정비위반 제소의 도입 여부

협정비위반 제소 제도의 목적은 협정을 위반하지 않은 조치라도 타국의 기대이익에 대한 무효화 또는 침해로 인한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협정비위반제소는 WTO 협정뿐만 아니라 한국이 체결한 일부 FTA⁴⁰⁾에서도 도입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다수의 FTA에서는 협정비위반 제소 제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이는 양자협정인 FTA에서는 양국 간의 협의과정에서 대상품목별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양허의 범위를 결정하므로 협정비위반 제소 관련 조항을 굳이 명시할 필요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⁴¹⁾ 실제 WTO 체제에서 협정비위반제소가 이루어진 것도 단 3건에 불과하다. 오히려 협정위반이 아닌 조치마저도 분쟁의 대상으로 둘 경우 분쟁해결절차의 남용가능성마저 있을 수 있고, 이는 통상분쟁의 증가라는 결과로 귀결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중 FTA에 비위반제소의 규정이 없다는 점은 유의미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또 다른 측면은 협정비위반 제소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협정비위반 제소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

40) 한-인도 CEPA 제4.2조, 한-미 FTA 제22.4조, 한-호주 FTA 제20.2조

41) 반면, 협정비위반제소는 FTA 회원국들간의 ‘이익의 균형’을 형평이라는 차원에서 보전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하므로, 협정비위반 제소 제도는 예측하지 못한 다른 회원국의 조치로 인해 통상협정상의 기대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확보장치를 제공함으로써 국제통상규범 및 자유무역규범의 제정 및 분쟁해결을 위한 협상장으로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협정비위반 제소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최승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상의 분쟁해결절차규칙에 대한 법정정책적 제언”, 전계논문, p.16. 참조할 것.

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점이다. 한-중 FTA 제20.2조 가항은 ‘협정상의 의무와 불합치’한 경우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이는 협정위반제소를 나타내고 있음은 명확하다 할 것이다. 반면 나항에서는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의 해석상 협정비위반 제소가 가능한가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⁴²⁾ 한-중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국의 의무의 범위에 대한 정의는 “협정상 모든 의무와 약속의 준수를 포함하는 것을 포함하여,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 협정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것⁴³⁾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동 조항을 넓게 해석하면 협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협정상의 약속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즉 협정의 목적⁴⁴⁾을 저해하는 행위는 분쟁해결절차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분쟁해결절차의 적용대상 및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무효화 또는 침해 표현의 미사용

한-중 FTA에서 나타나는 또다른 특이점은 ‘무효화 또는 침해’ 요건을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의무의 불합치 또는 의무의 불이행만을 언

42) 박덕영, 이주윤, 「주요 FTA 분쟁해결절차규칙의 비교분석」, 현안분석 2012-09, 한국법제연구원, 2012, p.117.

43) 한-중 FTA 제1.4조.

44) 한-중 FTA 제1.2조(목적)

양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이 협정을 체결한다.

가. 양 당사국 간 무역의 확대 및 다양화 장려

나. 양 당사국 간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 장벽 제거 및 국경 간 이동 촉진

다. 양 당사국의 시장에서 공정 경쟁 증진

라. 새로운 고용 기회 창출, 그리고

마. 이 협정의 이익 확대 및 증진을 위하여 양자, 지역 및 다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틀 마련

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한-페루 FTA, 한-EU FTA에서도 나타난다.⁴⁵⁾ 하지만 한국이 체결한 대부분의 다른 FTA의 경우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에서 무효화 또는 침해를 언급하고 있으며, 적용범위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협약’ 조항에서 무효화 또는 침해가 된다고 간주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동 요건이 분쟁해결절차의 적용기준임을 명시⁴⁶⁾하고 있다. 실제로 한-칠레 FTA에서는 “이 협정의 의무와 불합치하거나 불합치 할 수 있거나 부속서 19.2의 의미에서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경우”⁴⁷⁾라고 규정함으로써 의무불합치와 무효화 또는 침해를 병기하여 표기하고 있으며, 한-싱가포르 FTA와 한-캐나다 FTA에서도 두 표현을 병기하고 있다.⁴⁸⁾ 반면 협정비위반 제소를 도입하고 있는 FTA에서는 협정비위반의 결과로써 무효화 또는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무효화 또는 침해는 협정비위반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다.⁴⁹⁾ 결국 FTA에 따라 도입여부가 상이한 협정비위반 조치를 제외하고 협정위반 조치만을 대상으로 접근하면 ‘무효화 또는 침해’요건을 사용하고 있는 FTA는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캐나다 FTA 등이고, 나머지 FTA에서는 무효화 또는 침해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 각 FTA의 체결시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무효화 또는 침해의 요건과 관련하여 일관된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 조항이 가지는 법적인 의미는 해석상 대상행위의 존재만으로 분쟁해결절차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대상행위의 결과로 무효화 또는 침해까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인지를 문제로까지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이

45) 한-페루 FTA 제23.2조, 한-EU FTA 제14.2조.

46) 한-EFTA FTA 제9.3조.

47) 한-칠레 FTA 제19.2조.

48) 한-싱가포르 FTA 제20.2조, 한-캐나다 FTA 제21.2조.

49) 이러한 사례로는 한-인도 CEPA 제14.2조, 한-미 FTA 제22.4조, 한-호주 FTA 제20.2조가 있다.

다. WTO 협정에서는 분쟁해결양해(DSU) 제3.8조에서 대상협정의 위반행위는 일견 명백한 무효화 또는 침해사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FTA에서는 동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협정위반이 무효화 또는 침해로 귀결된다는 해석에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무효화 또는 침해는 합리적인 기대이익의 상실을 의미하는데,⁵⁰⁾ 무효화 또는 침해요건이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대이익의 상실 없이도 분쟁해결절차를 원용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귀결도 가능하다. 물론 추후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과 동등하므로⁵¹⁾ 결과적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우려점도 제기된다.

우선 일단 무효화 또는 침해의 요건 없이도 제소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은 일방 당사국에 의한 제소를 더욱 용이하게 된다는 점이다. 제소가 용이하다는 점은 양국간 불필요한 통상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는 화해지향적 분쟁해결방식의 병행으로 인한 문제점도 예측할 수 있다. 한-중 FTA를 포함한 대다수의 FTA는 협의, 주선, 중재 등의 화해지향적 분쟁해결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즉, 일단 제소된 사건의 경우 양국은 제소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화해지향적 방식에 의한 해결도 함께 모색하게 되는데, 이때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서 사안에 접근하게 될 수 있다.

3. 분쟁대상이 되는 조치의 범위

적용범위에서 한-중 FTA 후속협상에서 추후 검토가 필요한 것은 분쟁의 대상이 되는 조치에 관한 범위의 확정이다. 중국의 경우 다수의 국유기업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들의 조치가 분쟁대상의 조치에 포함되느냐에 대한 양국 간 논의가 필요하다. 한-중 양국이 각각 체결한

50) 한-칠레 FTA 부속서 제19.2조, 한-인도 CEPA 제14.2조

51) 한-중 FTA 제20.15조.

ASEAN과의 FTA를 보면, 한-ASEAN FTA의 경우 당사국의 중앙, 지역 또는 지방의 정부 및 당국 그리고 이들의 위임을 받은 비정부기관의 조치도 대상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것에 반해, 중-ASEAN FTA에서는 중앙, 지역, 지방 정부 또는 권력기구에서 취하는 대상협정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만이 포함되고 있다.⁵²⁾ 동 조항의 엄격한 문리적 비교해석에 따르면 중-ASEAN FTA는 국유기업의 조치는 분쟁해결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4. 분쟁해결 포럼의 선택

분쟁해결 포럼의 선택에 관한 내용은 WTO 협정 및 타 FTA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한-EU FTA와 비교하였을 때 다음의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후속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EU FTA에서는 분쟁해결 포럼의 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건으로 2가지를 제시하고 있다.⁵³⁾ 첫 번째 요건은 당사자가 선택한 첫 번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다른 쪽 포럼에서 동일한 조치에 대한 분쟁해결절차 개시를 제한하는 것이다. 두 번째 요건은 동일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른 쪽 포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이 중 검토가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요건과 관련한 부분이다. 첫 번째 요건에 따르면, 첫 번째 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는 다른 쪽 포럼

52) 최송자, “한국과 중국이 ASEAN과 체결한 FTA 분쟁해결협정 비교 고찰”, 『중재 연구』, 제23권 제1호, 2013, p.28.

53) 한-EU FTA 제14.19조. “당사자가 이 장(분쟁해결챕터) 또는 세계무역기구 협정 중 어느 한 쪽에 따라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첫 번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다른 쪽 포럼에서 동일한 조치에 대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당사자는 이 협정과 세계무역기구협정상 동일한 의무의 시점을 그 두 포럼에서 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한 경우에 하나의 분쟁해결절차가 개시 되면, 선택된 포럼이 절차적 또는 관할적인 이유로 그 의무의 시정을 구하는 주장에 대한 판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다른 협정상의 동일한 의무의 시정을 구하려는 주장을 다른 쪽 포럼에서 제기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저자 강조.

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일방 당사자의 특정조치가 한-EU FTA 협정상의 의무 A를 위반하는 동시에 WTO 협정상의 의무 B를 동시에 위반한다고 했을 때 먼저 FTA 분쟁해결포럼을 선택했다면 동 절차에서 의무 A에 대한 판정결과 후 WTO 분쟁해결절차에 의무 B 위반 여부에 대해 제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⁵⁴⁾ 반면 한-중 FTA에는 상기와 같은 경우 제2호를 적용하여 다른 분쟁해결포럼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인지, 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한-EU FTA의 해석을 원용하여 동일 의무가 아닌 경우에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다른 포럼의 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후자의 경우로 해석이 된다고 한다면, 한-EU FTA와 같은 보충요건에 대한 후속논의도 필요하다.

5. 비관세조치 중개절차의 도입

한-중 FTA는 비관세조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개 절차를 개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기존의 분쟁해결 절차가 조치의 위법성 여부만을 따져 승패를 가르는 사법적 절차인 반면, 중개절차는 비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불문’하고 무역에 부정적 영향이 있으면 제기될 수 있으며, 일률적으로 승패를 판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않고 상호 만족스러운 합의점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동 제도는 무역원활화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절차로서, 기존의 분쟁해결 제도를 교체, 대체 또는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즉, 사법적 분쟁해결제도가 비교적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을 보완하고, 상호만족스러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제도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⁵⁵⁾

54) 박덕영 외 16인, 『EU법 강의』, 제2판, 박영사, 2012, pp.691-692.

55) 한-EU 비관세조치 중개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계서, p.695 참조.

비관세조치에 대한 별도규정은 한-중 FTA와 한-EU FTA에서 발견되는 특징으로 향후 중국의 비관세조치에 기반한 무역장벽을 해소하는데 있어 보다 능동적인 대처와 함께 광범위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상호 합의된 해결책의 발견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⁵⁶⁾

6. 정보 및 기술적 조언 요청권리

정보 및 기술적 조언 요청권리와 관련하여서는 명확한 기준의 확립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이다. 패널은,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자체 발의로,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인이나 기관으로 부터 정보 및 기술적 자문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인이나 기관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한-싱가포르 FTA 또는 한-인도 CEPA처럼 이해관계자와 이해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구분도 없으며,⁵⁷⁾ 한-싱가포르 FTA처럼 중재패널이 내릴 결정에 대하여 투표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전문가들의 선정이라는 규정도 없다.⁵⁸⁾ 물론 이러한 정보 및 기술적 자문을 구하는 것은 양 당사국의 합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루어진다는 단서조항이 있으며,⁵⁹⁾ 또한 패널절차에서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절차가 진행되기는 하겠지만, 사전에 범위 및 내용에 관한 절차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패널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검토의 필요성은 있다.

56) 한-EU FTA 부속서 14-가 비관세조치에 대한 중개 매커니즘 제1조(목적) 참조. “이 부속서는 양 당사자 간 무역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조치에 대하여 중개인의 지원으로 광범위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상호 합의된 해결책의 발견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7) 한-EU FTA(제14.15조)에서는 이해관계자의 경우에는 부속서 14-나 제11조에 따라 외부조언자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별도의 내용을 두고 있다. 유사한 내용으로 한-캐나다 FTA 부속서 21-다 모범절차규칙 35~37항이 있다.

58) 한-싱가포르 FTA 제20.10조. 한-인도 CEPA 제14.10조.

59) 한-중 FTA 제20.9조(3)의 후단.

또 다른 검토사항으로는 “패널에 의해 획득된 정보 및 조언을 양 당사국이 이용 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패널이 조치를 하여야 한다”⁶⁰⁾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동 조항이 없는 한-중 FTA와 한-미 FTA에서는 패널이 당사국들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서도, 패널 위원은 양 국에 의해 지명되고 세 번째 패널위원은 합의에 의해 선출되도록 하며, 패널보고서의 채택시 패널은 컨센서스로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규정 등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방 당사국이 패널위원을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타방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되고, 세 번째 패널위원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WTO 사무총장(또는 사무차장)에 의해 지명되며, 패널보고서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도록 함으로써⁶¹⁾ 양국간의 합의에 의해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분쟁해결 제도가 절차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분쟁해결절차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고, 이를 위해서는 패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타의 자료에 대해 당사국에 충분한 의견진술 또는 항변의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패널절차의 투명성 확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패널이 독자적으로 제출된 정보 및 조언을 판단하도록 하고, 당사국들에게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규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상기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우선 양국이 후속논의를 통해 법정의견서 내용의 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도 제고하는 방법과

60) 한-싱가포르 FTA 제20.10조, 한-EU FTA 제14.15조, 한-칠레 FTA 제19.11조, 한-페루 FTA 제23.11조 등에는 패널에게 획득된 정보 및 전문적 조언에 관한 의견 접수를 위해 당사국에게 이들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1) 한-중 FTA 제20.7조. 및 한-중 FTA 제20.11조 참조.

함께,⁶²⁾ 정보 및 기술적 조언은 양 당사국이 그러하게 합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조항을 활용하여 개별사안의 발생시 당사국간의 합의 내용에 상기의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7.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한-중 FTA에서 발견되는 특이한 요소 중의 하나는 통보에 관한 규정이다. 양허 및 그 밖의 의무 정지의 통보의 경우 한-중 FTA는 30일 전에 제소 당사국이 피소 당사국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WTO 협정에서는 WTO 분쟁해결기구에 양허 및 의무정지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 통보규정은 타 분쟁당사국에게 양허 및 의무정지 조치의 발동시기 및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통보토록 함으로써 분쟁의 발생을 미리 예측하고 당사국 간에 사전 협의에 의한 분쟁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또 다른 쟁점은 보복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분야에 관한 규정이다. 한-중 FTA와 WTO 협정 모두 첫 번째 요건인 최초의 조치는 동일한 분야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동 분야에서 조치의 비효과적이거나 비현실적인 경우에는 WTO 협정에서는 두 번째 요건인 ‘동일 협정상의 다른 분야에서의 조치’와 세 번째 요건인 ‘다른 대상협정에서의 조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중 FTA는 이에 대한 구별 없이 제소국이 “다른 분야에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해석상 동일 분야에서 보복조치가 비효과적이거나 비현실적인 경우에는 제소국이 선택하는 분야에서 보복조치를 실행하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실제 과

62) 최승환, “한-중 FTA상의 분쟁해결제도: 공공참여 확대를 통한 투명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제21집 제1호, 2012.7, p.229; 박덕영, “WTO 분쟁해결 과정에서 Amicus Brief 취급문제”, 『국제법평론』, 통권 제24호, 2006.12, pp.67-68.

거 우리나라와 중국은 마늘 세이프가드 분쟁에서 상기 우려에 해당하는 보복조치를 당한 경험이 있으므로,⁶³⁾ 후속논의를 통해 조치적용의 대상분야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동훈, 김봉철, 박찬호, 「FTA 세이프가드 규정에 관한 연구-동북아시아 FTA의 일반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 분석과 한중일 FTA의 세이프가드 규정 방향 및 국내법적 대응」, 현안분석 2008-34, 비교법제 연구 08-03, 한국법제연구원, 2008.

박덕영 외 16인, 「EU법 강의」, 제2판, 박영사, 2012.

박덕영, “WTO 분쟁해결과정에서 Amicus Brief 취급문제”, 「국제법 평론」, 통권 제24호, 2006.12.

박덕영, 이주윤, 「주요 FTA 분쟁해결절차규칙의 비교분석」, 현안분석 2012-09, 한국법제연구원, 2012.

이춘삼, 「글로벌 통상법」, 도서출판 범한, 2007.

최송자, “한국과 중국이 ASEAN과 체결한 FTA 분쟁해결협정 비교 고찰”, 「중재연구」, 제23권 제1호, 2013.

63) 2000년 6월 한국이 중국산 마늘에 대하여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하였는데,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산 휴대폰 등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였다. 물론 동 사건은 중국이 WTO 협정에 가입하기 전(2001년 11월 가입)이므로 WTO 분쟁해결제도의 적용은 불가능하였지만, 당시 중국은 WTO 가입이 사실상 확정된 예정회원국이므로 정식으로 WTO 세이프가드협정을 위반하는 중국의 일방적 보복조치는 조약당사국이 되지는 않은 국가라 하더라도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하고 있는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위반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중 세이프가드 분쟁의 내용 및 시사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이춘삼, 「글로벌 통상법」, 도서출판 범한, 2007, pp.185-193; 김동훈, 김봉철, 박찬호, 「FTA 세이프가드 규정에 관한 연구-동북아시아 FTA의 일반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 분석과 한-중-일 FTA의 세이프가드 규정 방향 및 국내법적 대응」, 현안분석 2008-34, 비교법제 연구 08-03, 한국법제연구원, pp.103-105.

최승환, 「국제경제법」, 제4판, 법영사, 2014.

최승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상의 분쟁해결절차규칙에 대한 법적 정책적 제언”, 「경희법학」, 제47권 제4호, 2012.

최승환, “한-중 FTA상의 분쟁해결제도: 공공참여 확대를 통한 투명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제21집 제1호, 2012.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편, 「신 국제경제법」, 박영사, 2013.

Jackson, J. H., The World Trading System: Law and Policy of International Economics Relations, The MIT Press, 1990.

중-ASEAN FTA 협정문

중-싱가포르 FTA 협정문

중-뉴질랜드 FTA 협정문

한-ASEAN FTA 협정문

한-EFTA FTA 협정문

한-EU FTA 협정문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

한-미국 FTA 협정문

한-베트남 FTA 협정문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

한-인도 CEPA 협정문

한-칠레 FTA 협정문

한-캐나다 FTA 협정문

한-콜롬비아 FTA 협정문

한-터키 FTA 협정문

한-페루 FTA 협정문

한-호주 FTA 협정문

WTO 분쟁해결양해(DSU)

**제 3 부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 대비
중국 법제 연구**

제 1 장 중국 투자 규제

제 1 절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개관

개혁개방(改革開放) 이후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및 제도는 외국인 우대조치 여부, 국내법규와 체계적 정합성 등을 기준으로 크게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1978년 개혁개방부터 2000년대 중후반까지 약 30여년 가까운 시기이고, 두 번째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최근까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시기의 특징은 중국 내 내외국인 투자제도가 각각 별개의 영역에서 독자적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¹⁾.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 이하 합자기업법이라 칭함)은 1979년에,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 이하 합작기업법이라 칭함)은 1988년에, 외국인 독자회사를 허용한 외자기업법(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은 1986년에 각각 최초로 제정되었다. 이에 반해 재산권에 관한 최초의 종합적 법규인 민법통칙(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은 1986년²⁾에, 중국내 회사조직에 관한 기본법률인 회사법(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은 1993년에 최초로 제정된다.

이처럼 중국은 투자법제와 관련하여 개혁개방 초기부터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별도의 법제를 먼저 제정하고, 선전(深圳) 등 경제특구에서

1) 유사한 견해로는 변웅재, 중국의 외상투자기업 설립법제-주요 특징과 변화 동향, 향후 개선 필요사항, 한국법제연구원(2012)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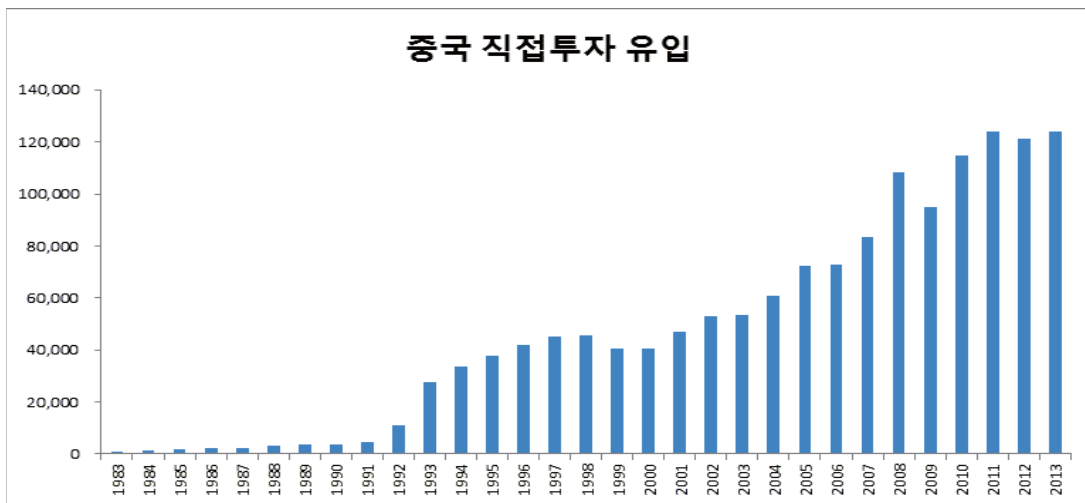
<http://www.yulchon.com/KOR/publication/articleList.asp?CM=PG3&searchPg=90&searchKey=&searchVal=&startYear=&startMonth=&endYear=&endMonth=&page=2> (2015.9.20. 검색)

2) 하지만 해당 민법통칙은 매우 기본적 사항만을 포함하여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결국 1999년 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2007년 물권법(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등 후속법제를 제정을 통하여 비로소 중국 재산권 법체계가 온전한 형태를 구축하게 된다.

이를 실험한 이후 이를 국내 법제로 점차 확대시켜나가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러한 내외국인 이원적 투자제도 시스템은 중국 경제와 법제도의 오랜 특징이었고, 개혁개방 이후 거의 30여년 가까이 지속되었다. 이 시기 외국인투자자는 중국 국내 법제의 예외 혹은 우대를 받던 시기였으며, 이는 낙후한 중국경제발전예 기여한다는 현실적 이유로 정당화되었다.

1990년대부터 고속성장을 질주하던 중국경제는 세계의 공장으로서 불리며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고, 2000년대 후반부터 세계적 경제대국³⁾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0년대 중 후반부터 중국의 경제제도도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도표 3-1-1> 對중국 FDI 유입 추이



자료: UNCTAD, [http://unctad.org/en/pages/newsdetails.aspx?OriginalVersionID=790&Sitemap_x0020_Taxonomy=UNCTADHome;#6;#Investment and Enterprise;#640;#World Investment Report\(2015.8.31.일 검색\)](http://unctad.org/en/pages/newsdetails.aspx?OriginalVersionID=790&Sitemap_x0020_Taxonomy=UNCTADHome;#6;#Investment and Enterprise;#640;#World Investment Report(2015.8.31.일 검색))

3) 2014년 기준 중국의 명목 GDP는 10.4조 달러에 달하여 1위 미국에 이어 단일국가 중 2번째로 10조 클럽에 진입하였다.

찬란했던 ‘12차 5개년 계획’, 그 업적 살펴보기,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13:55, October 14, 2015, <http://kr.people.com.cn/n/2015/1014/c203280-8961803.html>(검색일: 2015.10.16.)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고⁴⁾와 안정적 FDI 유입 등은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을 외국자본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제고로 방향전환을 촉진시켰다. 즉, 모든 외국자본을 우대하기보다, 자국 산업 고도화, 낙후한 변방지역 경제개발이라는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외국자본만 선별적으로 우대⁵⁾하고, 나머지 외국자본은 내국자본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2007년 기업소득세(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법 개정은 이러한 정책전환의 상징이라 할 수 있었다. 동법에서는 오랜 기간 유지되던 외국기업에 대한 법인세 우대조치를 철회하고 내외자기업 모두 25%의 단일 세율을 적용받게하였다.

2012년 11월 8일 중국공산당 18차 당대회(中国共产党第十八次全国代表大会)에서 출범한 시진핑 정권에서는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2013년 10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전회(中国共产党第十八届中央委员会第三次全体会议, 이하 18기 3중전회라 약칭)에서는 중국 경제의 질적 도약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제시하며, 제2의 개혁개방을 선언하였다. 3중전회 폐막시 발표한 “전면적 개혁심화에 관한 중대문제에 대한 결정”(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에서는 개방형 신경제체제로 전환을 표방하며, 투자진입규제 완화, 자유무역지대의 건설 가속화, 내륙 및 해안지역의 개방확대를 중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중국에서는 일대일로(一帶一路)⁶⁾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4) 중국 인민은행의 외환보유고는 3조5,255억 달러(2015.10월말 기준)로 세계 1위이다. ‘달러화 강세’ 외환보유고 줄었다, 11월 3685억弗 전월비 11억弗 감소,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203000463>(검색일: 2015.12. 7.)

5) 예를 들어, 첨단기술분야 등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경우(기업소득세법 제28조)가 있다. 第二十八条 国家需要重点扶持的高新技术企业, 减按15%的税率征收企业所得税. http://www.gov.cn/flfg/2007-03/19/content_554243.htm (2015.9.2. 검색)

6) 일대일로의 일대(一帶)는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일로(一路)는 해상실크로드를 지칭.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지역의 60여개 국가 44억명을 연결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임영석, 박두정, 《중국 일대일로 추

와 같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외국투자법(外国投資法) 제정과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투자자유화 추진과 같은 제도 개혁⁷⁾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

투자법제 측면에서는 외국투자법 제정과 네거티브 방식의 자유화 개혁이 특히 중요하다. 이는 먼저 실질적 측면에서는 향후 중국 진출 한국기업과 개인의 비즈니스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부문 후속협상에서도 핵심적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중국 투자법제의 역사적 측면에서 보면, 내외국인 이원적 투자제도/ 허가제 중심의 권위적 행정시스템/ 제한적 투자시장 개방이라는 기존 특징이 사실상 종언을 고하게 되고, 내외국인이 동일한 규범아래, 투자자의 사적자치가 확대되며, 보다 개방된 시장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외국투자법과 네거티브 방식의 자유화 2개 대상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외국투자법은 중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초안을, 네거티브 방식 자유화는 국무원에서 발표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중심으로 관련된 문헌자료들을 함께 분석 대상으로 할 것이다.

연구를 통해 외국투자법과 네거티브 리스트의 법적 성격과 특징, 의미를 명확히 한 후, 한-중 FTA 후속협상에서 이에 대한 한국정부와 기업의 대응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진동향 및 시사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ssue Report, Vol. 2015-지역 이슈-09(2015.7.), p.3.
7) 외국투자법과 네거티브 방식 자유화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각 절을 참고하라.

<표 3-1-1> 중국 투자규제 전환 추세

구분	현재	미래
외국인투자 기본법	-외자3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 외국투자법
외국인투자 행정절차	- 강력한 규제절차	- 규제완화
투자자유화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 WTO 양허안(positive)	- 네거티브리스트 - 중미BIT, 한-중 FTA 후속협상 등

* 자료: 필자작성

제 2 절 최근 투자규제 현황 및 주요 내용

1. 외국투자법(外國投資法)

(1) 현황 및 배경

2013년 중국공산당 당대회 이후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법제정비에 본격 나섰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2015년 1월 19일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법 초안(中华人民共和国外国投资法(草案征求意见稿))(이하 외국투자법 초안이라 칭함)을 공개하고, 2월 18일까지 의견수렴절차에 들어갔다. 동법 초안은 총 11장 170개 조항(부칙 18개 조항)으로 이뤄진 외국인투자관련 법규 가운데 가장 방대한 규모를 자랑 한다⁸⁾. 외국투자법 초안은 향후 2015년 하반기 내용이 확

8) 비슷한 성격의 한국의 외국인투자촉진법도 전체 8장에 37개 조문(부칙 제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장의 중국 외국투자법 초안(中华人民共和国外国投资法(草案征求意见稿))은 중국 상무부가 전인대 제출본을 기초로 연구를 진행한다. 중국 상무부 (2015.1.19), 중국 외국투자법 초안에 대한 설명(关于《中华人民共和国外国投资法

정되어, 2016년 3월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인대(全人代:全国人民代表大会의 약칭)에서 입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이 제정되는 외국투자법은 기존의 외국인투자법규(소위 외자3법)를 대체하여 중국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에 적용되는 기본규범이 될 것이다. 즉, 외국투자법은 기존의 합자기업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 합작기업법(中外合作經營企業法), 외자기업법(外資企業法) 이라는 외자3법을 통합 및 업그레이드 한 법규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새로운 외국인투자법규를 제정하는가?! 이는 크게 다음과 같은 원인 및 배경⁹⁾을 통해 알 수 있다.

첫 째, 기존의 외자3법에서 실시하던 외국자본에 대한 사안별 심사 및 비준 방식으로는 개방형 경제체제 하에서 경제적 수요에 부응¹⁰⁾하기 어려워, 시장경제의 활력제고와 정부역할 조정이라는 정책방향 따라 추진된 외국투자법 제정이 추진된 것이다.

시진핑 시기 중국은 전면적 샤오강(小康) 사회의 완성을 위한 제2의 개혁개방에 돌입하였다. 이에 중국 공산당은 개혁개방을 더욱 확대 및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즉 외국투자자에 대한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외국인이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나아가 이를 위해 시장에 개입하던 정부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축소 및 조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국가 사회적 환경변화로 인해 외국투자법의 제정이 추진된 것이다.

둘 째, 전체 투자법체계 상 법규 간 중복과 충돌 등을 방지하고 체

(草案征求意见稿)》的说明), P.1.

<http://tfs.mofcom.gov.cn/article/as/201501/20150100871010.shtml> (2015.9.3일 검색)

9) 중국 상무부(2015.1.19), 중국 외국투자법 초안에 대한 설명(关于《中华人民共和国外国投资法(草案征求意见稿)》的说明), P.1.

<http://tfs.mofcom.gov.cn/article/as/201501/20150100871010.shtml> (2015.9.3일 검색)

10) 중국 상무부(2015.1.19), 중국 외국투자법 초안에 대한 설명(关于《中华人民共和国外国投资法(草案征求意见稿)》的说明), P.1.

<http://tfs.mofcom.gov.cn/article/as/201501/20150100871010.shtml> (2015.9.3일 검색)

계화하기 위해서이다. 외자3법상 기업조직형식 및 경영활동 등 규정이 회사법 등 관련법률과 중복 및 충돌이 존재한다.

셋 째, 외국자본의 인수합병(M&A, 并购), 국가안전심사 등 중요한 제도를 외국투자법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외국자본의 중국기업 인수합병시 국가안전심사의 경우, 기존에는 국무원과 상무부 등 관련부처의 행정법규와 부령¹¹⁾을 통해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였고, 이를 실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기존 법규이 부족한 점을 보완¹²⁾하기 위하여 상위규범인 법률에 이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금번 외국투자법 제정 과정에 해당 내용이 포함¹³⁾된 것이다.

끝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이미 외국자본 도입을 위한 제도적 특혜를 부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풍부한 외화와 거대한 자본을 형성하였다. 2014년의 경우 사상최초로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자본(IFDI)보다 해외로 나가는 내국자본(OFDI)의 규모가 더 클 정도이다¹⁴⁾. 따라서 투자 및 재산권 제도의 논리적 일관성을 저해하고, 국내

11) 2011년 2월 12일 국무원에서 발표한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안전심사제도의 통지”(国务院办公厅关于建立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安全审查制度的通知)(国办发〔2011〕6号)가 대표적인 것이다.

http://www.gov.cn/zwgk/2011-02/12/content_1802467.htm (2015.9.13.일 검색)

또한 상무부는 상기 국무원 통지에 근거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규정”을 운용하고 있다. (商务部实施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安全审查制度的规定)(2011年第53号)

http://www.gov.cn/gzdt/2011-08/26/content_1934046.htm (2015.9.13.일 검색)

12) 廖凡, 《外国投资法》宜完善审查机构设计, 经济参考报(2015-01-28)

http://jjckb.xinhuanet.com/opinion/2015-01/28/content_536292.htm (2015.7.31. 검색)

13) 외국투자법 초안 제4장(国家安全审查, 국가안전심사제도)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4) 2014년 기준 중국의 해외투자는 약 1,400억 달러로 국내유입 외국자본(1195.6억 달러)을 처음으로 추월하였다. 김성애(베이징무역관), 中 해외투자, 외자유치 균형시대 진입, 코트라 글로벌윈도우(2015.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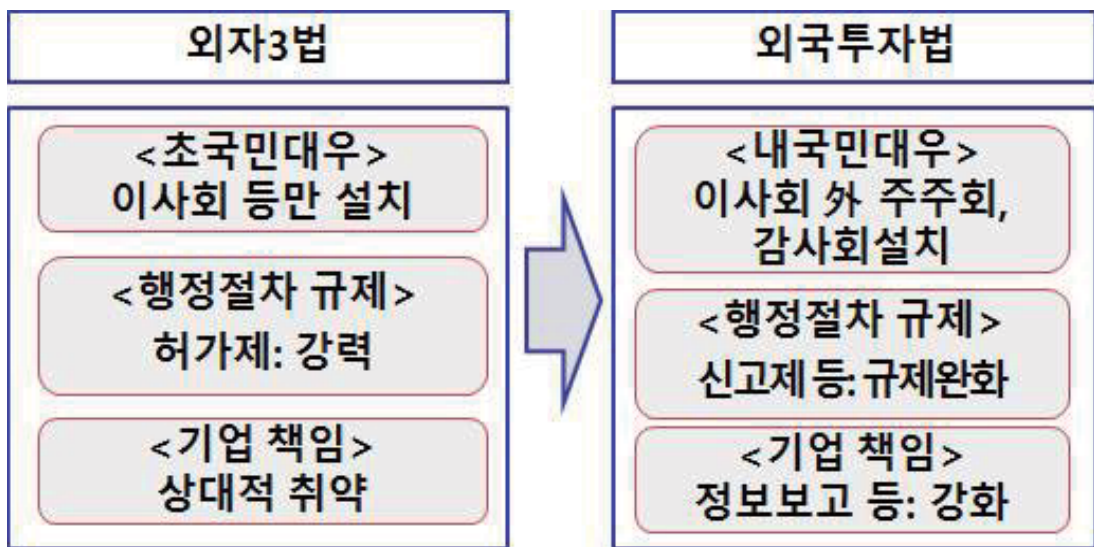
http://www.globalwindow.org/GW/global/trade/all-all/overseamarket-detail.html?&SCH_TYPE=SCH_SJ&MENU_CD=M10103&MODE=L&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E_CD=0000000&ARTICLE_ID=5026006&UPPER_MENU_CD=M10102&BBS_ID=10&SCH_VALUE=&MENU_STEP=3&SCH_AREA_CD=00000&Page=1&SCH_NATION_

적으로 불필요한 내외국 기업 간 역차별 논란을 부추기는 외국인에 대한 특혜를 과감히 축소 및 정리하는 것이 중국의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득인 것이다.

(2) 외국투자법 주요 내용

외국투자법은 기존 외자3법과 비교할 때, 내외국인 평등대우 즉 외국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 확대, 외국기업에 대한 행정절차상 규제 완화, 외국기업의 책임 강화라는 3가지 특징이 두드러진다. 이하에서는 각 항목별 주요 내용 및 특징을 살펴보겠다.

<그림 3-1-1> 외국투자법과 외자3법의 주요 특징 비교



* 자료: 필자작성

① 내국민대우 확대

기존 외자3법 체제 하에서 외국기업은 중국기업에 비해 지배구조에서 특별대우를 받았다. 1993년 제정된 중국 회사법(公司法)상 회사지

배구조는 유럽 및 일본법과 유사한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 3기관 체제로 구성¹⁵⁾되어 있다.

그러나 외자3법상 기업은 이와 다른 형태로 되어 있다. 합자기업법상 중외합자기업(이하 합자기업이라 칭함)과 합작기업법상 중외합작기업(이하 합작기업이라 칭함)에서는 주주총회와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이사회 혹은 유사한 기관으로도 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다. 합자기업법의 경우 지배구조를 규정한 합자기업법 제6조¹⁶⁾를 보면, 합자기업은 이사회를 설치하고, 그 인원수는 합자파트너간 협상을 통해 계약 또는 회사정관에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합작기업도 유사한 구조이다. 합작기업법 제12조에는 합작기업은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하며 합작계약 혹은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라 합작기업의 중대문제를 결정한다¹⁷⁾고 되어 있다. 이

15) 중국 회사법 관련 규정을 참고하라. 제2장 유한회의 설립과 조직기구 제2절 조직기구에는 주주회(제36~39조), 이사회와 경리(제40~50조), 감사회(제51~56조)를 규정하고 있고, 제4장 주식회사의 설립과 조직기구에는 제2절 주주총회, 제3절 이사회 및 경리, 제4절 감사회로 구성되어있다.

http://www.gov.cn/flfg/2005-10/28/content_85478.htm (2015.7.1.일 검색)

16) 합자기업법 제6조.

第六条 合营企业设董事会, 其人数组成由合营各方协商, 在合同、章程中确定, 并由合营各方委派和撤换。董事长和副董事长由合营各方协商确定或由董事会选举产生。中外合营者的一方担任董事长的, 由他方担任副董事长。董事会根据平等互利的原则, 决定合营企业的重大问题。

董事会的职权是按合营企业章程规定, 讨论决定合营企业的一切重大问题: 企业发展规划、生产经营活动方案、收支预算、利润分配、劳动工资计划、停业, 以及总经理、副总经理、总工程师、总会计师、审计师的任命或聘请及其职权和待遇等。

正副总经理(或正副厂长)由合营各方分别担任。

合营企业职工的录用、辞退、报酬、福利、劳动保护、劳动保险等事项, 应当依法通过订立合同加以规定。

http://www.gov.cn/banshi/2005-08/31/content_69775.htm (2015.7.3일 검색)

17) 합작기업법 제12조.

第十二条 合作企业应当设立董事会或者联合管理机构, 依照合作企业合同或者章程的规定, 决定合作企业的重大问题。中外合作者的一方担任董事会的董事长、联合管理机构的主管的, 由他方担任副董事长、副主任。董事会或者联合管理机构可以决定任命或者聘请总经理负责合作企业的日常经营管理工作。总经理对董事会或者联合管理机构负责。

合作企业成立后改为委托中外合作者以外的他人经营管理的, 必须经董事会或者联合管

는 주주총회와 감사회의 감시와 견제라는 회사법상 원칙의 중대한 예외로서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합자 혹은 합작 파트너와 협상만 잘 하면 외부의 감시와 견제 없이 기업경영에 나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이러한 지배구조상 유연함은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에게 적지않은 매력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외국투자법에서는 중국 내 모든 외국기업은 중국기업과 동일하게 중국 회사법이 적용¹⁸⁾되어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 3기관 체제가 적용된다. 기존 합자회사와 합작회사의 대부분은 중국 정부의 정책적 권고에 따라 대부분 유한회사(有限責任會社)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합자기업의 경우 합자기업법 제4조에 합자기업의 형식은 유한회사로 한다고 아예 명시¹⁹⁾를 하고 있다. 합작기업도 하위규범인 합작기업법실행세칙(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에서는 합작기업이 법에 따라 중국의 법인자격을 취득할 경우, 유한회사형태로 한다고 되어 있다²⁰⁾. 반면 외자기업법실행세칙(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实施细则)에 따르면 외국인 독자기업인 외자기업은 유한회사 형식으로 하나, 정부의 심사비준을 거쳐서 다른 조직형태로도 할 수 있

理机构一致同意, 报审查批准机关批准, 并向工商行政管理机关办理变更登记手续。

http://www.gov.cn/banshi/2005-08/31/content_69772.htm (2015.7.4.일 검색)

18) 외국투자법에서는 새로운 지배구조 관련 규정을 본문에 신설하기 보다, 기업지배구조상 특칙이 규정된 기존 외자3법을 폐기하고, 부칙 제157조에 회사법과 조합기업법 등 국내법에 따라 지배구조를 변경하여야 하는 기한을 명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第一百五十七条 本法生效前依法存续的外国投资企业, 在本法生效后三年内应按照《公司法》, 《合伙企业法》, 《个人独资企业法》等法律法规变更企业组织形式和组织机构, 但企业既有经营期限在本法生效后三年内届满且拟延长经营期限的, 应在企业既有经营期限内进行变更。

依前款规定完成变更之前, 继续适用《中外合资经营企业法》, 《外资企业法》, 《中外合作经营企业法》中关于企业组织形式和组织机构的规定。

19) 합자기업법 제4조 참고. 第四条 合营企业的形式为有限责任公司。

20) 합작기업법실행세칙(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 제14조.

第十四条 合作企业依法取得中国法人资格的, 为有限责任公司。除合作企业合同另有约定外, 合作各方以其投资或者提供的合作条件为限对合作企业承担责任。

<http://www.mofcom.gov.cn/aarticle/b/f/200207/20020700031062.html>(2015.7.12.일 검색)

다고 되어 있다²¹⁾.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은 유한회사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²⁾.

따라서 외국투자법 초안이 그대로 발효될 경우, 향후 중국 진출 외국기업도 회사법상 유한회사 규정이 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 주주총회와 감사회가 없고, 이사회만 있는 기존의 외국기업의 지배구조에는 일대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표 3-1-2> 외자3법과 회사법상 회사의 지배구조 비교

구분	외자3법상 기업			회사법상 회사
	외자기업	합자기업	합작기업	
지분구조	- 외국측이 자본전액을 투자하여 100% 지분 보유	- 외국측과 중국측이 공동투자하여 설립 - 경영권, 이익배분 및 손실분담 등은 투자비율에 따라 결정	- 투자 비율이 아닌 외국측과 중국측이 체결한 합작계약에 의해 경영권, 이익배분 등을 결정	- 출자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지분 보유
지배구조	- 회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회사법의 경우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 설치	- 이사회가 최고 권력기구 - 주주총회 및 감사회 설치의무 없음	- 이사회 혹은 연합 관리기구가 최고 권력기구 - 주주총회 및 감사회 설치의무가 없음	-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 3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

* 자료: 관련법규를 참고하여 필자작성

21) 외자기업법실행세칙(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实施细则) 제18조.

第十八条外资企业的组织形式为有限责任公司。经批准也可以为其他责任形式。外资企业为有限责任公司的，外国投资者对企业的责任以其认缴的出资额为限。外资企业为其他责任形式的，外国投资者对企业的责任适用中国法律、法规的规定。

http://project.mofcom.gov.cn/1800000121_23_67947_0_7.html (2015.7.16.일 검색)

22) 실무에서 한국의 대기업인 베이징현대자동차와 같은 대형기업도 유한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다.

② 외국인투자행정절차 규제: 심사비준제 → 보고제 등 규제완화

외국투자법 초안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 중국정부가 유지해온 외국기업에 대한 심사비준(审批:审查批准) 제도를 폐지 혹은 축소함에 따라 기업규제가 크게 완화된 것이 특징이다.

외국투자자에 대한 심사비준제도는 효력 상 정부가 시장진입을 결정하는 허가제를 의미한다. 특히 중국의 경우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별 즉 건별로 심사하는 제도(逐案审批制度)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 특유의 외국인투자행정절차를 심사비준제도라 한다. 심사비준은 중국의 각급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이하 발개위로 약칭)에서 실시²³⁾하나, 본문에서는 외국인투자진입 전반에 실시되는 행정허가를 지칭하는 광의의 의미로 사용한다.

외국투자법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전면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외국투자법에서는 외국인투자가 제한 혹은 금지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심사비준제도를 철폐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은 합자계약, 정관 등에 대한 심사비준은 사라지고,²⁴⁾ 동일한 상황에서 회사구성원의 자율적 판단을 우선하여(구성원의 사적자치가 확대), 정부의 허가가 아닌 신고 혹은 보고사항이 될 것이다.

그 다음 외국인투자가 제한 혹은 금지되는 분야에서는 시장진입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한다.²⁵⁾ 허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허가절차²⁶⁾

23) 郭冠男 李晓琳, 市场准入负面清单管理制度与路径选择:一个总体框架, 《改革》2015年07期, P31~32 참고

24) 关于《中华人民共和国外国投资法(草案征求意见稿)》的说明(2015년1월19일), P4 참고, <http://tfs.mofcom.gov.cn/article/as/201501/20150100871010.shtml>(2015.9.3일 검색)

25) 외국투자법 초안 제26조(제한실시목록)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限制实施目录包括以下情形:(一)超过国务院规定的金额标准的投资;(二)限制实施外国投资的领域。外国投资涉及限制实施目录所列情形的,应符合限制实施目录规定的条件,并依照本法向外国投资主管部门申请外国投资准入许可。

26) 외국투자법 초안 제2절 진입허가(准入许可)에서는 제27조에서 제47조까지 시장진

와 제한 및 금지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 과거보다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특히 과거에는 행정부 각 부처의 명령의 형태로도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을 설정한 경우가 적지 않았으나, 외국투자법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 혹은 금지의 주체는 국무원 행정법규나 결정, 전인대의 법률 형태로만 작성되게끔 하였다²⁷⁾. 또한 외국인투자가 제한 혹은 금지분야를 외국투자법 초안에서는 특별관리조치목록(特別管理措施目录, 소위 네거티브 리스트)²⁸⁾(이하 네거티브 리스트라 칭함)이라 하고, 이는 해당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무원에서 통일적으로 작성할 것을 밝히고 있다²⁹⁾.

③ 외국투자기업의 책임 강화

외국투자법은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동시에 기업에 대한 새로운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크게 국가안전심사제도의 도입³⁰⁾, 정보보고 의무 강화³¹⁾, 외국기업의 우회진출에 대한 단속 강화 3가지로 구분된다.

입허가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27) 외국투자법 초안 제22조 【特別管理措施目录】对外国投资者及其投资给予低于中国投资者及其投资的待遇或施加其他限制的，须以法律、行政法规或国务院决定的形式予以规定，并纳入特别管理措施目录。제23조 【目录制定程序】特别管理措施目录由国务院统一制定并发布。国务院外国投资主管部门会同有关部门，根据国家缔结的多双边、区域投资条约、公约、协定和有关外国投资的法律、行政法规、国务院决定，提出制定或调整特别管理措施目录的建议，提交国务院审议。

28) 특별관리조치목록의 법적 성격 및 구체적 내용은 제2절 해당부분을 참고하라.

29) 외국투자법 초안 제23조.

第二十三条 【目录制定程序】特别管理措施目录由国务院统一制定并发布。国务院外国投资主管部门会同有关部门，根据国家缔结的多双边、区域投资条约、公约、协定和有关外国投资的法律、行政法规、国务院决定，提出制定或调整特别管理措施目录的建议，提交国务院审议。

현재 중국은 상하이자유무역지대 4대 자유무역지대에서 특별조치관리목록에 대한 실험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당부분을 참고하라.

30) 외국투자법 초안에서는 국가안전심사제도(国家安全审查)에 별도의 장(제4장)을 할애하고, 2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31) 외국투자법 초안 제5장 정보보고(信息报告)는 총 3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정보보고(信息报告)의무 강화

외국투자법에서는 외국기업의 대정부 정보보고 의무를 강화하였다. 이는 심사비준제도의 폐지 혹은 완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파악된다. 초안에 따르면 정보보고는 크게 투자사항보고(外國投資事項報告), 투자사항 변경보고(外國投資事項變更報告), 정기보고(定期報告)로 구성³²⁾된다.

투자사항보고(外國投資事項報告)의 경우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기업의 자산규모 등 기본 정보를 투자 실행 전 또는 투자 완료 후 30일 내에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³³⁾

투자변경 보고는 지분 변동 등 투자사항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해당 변경사항이 발생한 후 30일 내에 보고하는 것을 의미한다.³⁴⁾

32) 외국투자법 초안 제5장 정보보고는 다시 제1절 일반규정(一般規定), 제2절 외국 투자사항보고(外國投資事項報告), 제3절 외국투자사항변경보고(外國投資事項變更報告), 제4절 정기보고(定期報告), 제5절 외국투자통계(外國投資統計)로 구성되어 있다.

33) 외국투자법 초안 제87, 88조.

第八十七条 【信息报告内容】外国投资者在中国境内投资涉及外国投资企业的设立或变更的,外国投资企业应报告以下信息:

(一) 外国投资者基本信息,包括名称、住所、注册地、实际控制人、组织形式、主营业务、联系人及联系方式;

(二) 外国投资基本信息,包括投资金额、投资来源地、投资领域、投资区域、投资时间、投资方式、出资比例和方式,获得相关行政许可或备案的情况;

(三) 外国投资企业基本信息,包括名称、住所、组织机构代码、注册地、股权结构、投资金额、注册资本、实际控制人、组织形式、经营范围、联系人及联系方式;

外国投资者在中国境内投资不涉及外国投资企业的设立或变更的,仅需报告前款(一)和(二)项内容。

外国投资主管部门可要求外国投资者或外国投资企业补充提交与前两款规定信息相关的材料。

第八十八条 【准入许可情况的报告】外国投资需按照本法规定获得准入许可的,应在获得准入许可后30日内履行报告义务。除按照本法第八十七条【信息报告内容】报告有关信息外,还应报告获得准入许可的有关情况。

34) 외국투자법 초안 제89조.

第八十九条 【变更报告内容】外国投资事项发生变更的,外国投资者或外国投资企业应在变更事项发生后30日内提交变更报告。前款所称变更包括:

(一) 外国投资者的名称、住所、注册地、实际控制人、组织形式、主营业务、联系人及

정기 보고는 다시 연도 보고와 분기 보고로 구분된다. 연도 보고는 매년 4월 30일전에 전년도 정보 보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분기 보고는 자산총액 100억 위안(약 1.8조원) 이상 대형 외국기업에만 적용된다.³⁵⁾

정보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기업에게는 과징금 등 행정처벌이 부과되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 관련 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도 있다. 과징금은 5만~50만 위안(약 90~900만원) 혹은 투자금액 5%

联系方式发生变更；

(二) 外国投资者的身份因发生合并、分立、破产、解散、撤销、吊销、注销或改变国籍、死亡而发生变更；

(三) 外国投资的投资金额、投资来源地、投资领域、投资区域、投资时间、投资方式、出资比例和方式，获得相关行政许可或备案的情况发生变更；

(四) 外国投资权益被转让、出租、抵押或质押；

(五) 外国投资企业的名称、住所、组织机构代码、注册地、股权结构、投资金额、注册资本、实际控制人、组织形式、经营范围、联系人及联系方式发生变更；

(六) 外国投资企业的身份因发生合并、分立、破产、解散、撤销、吊销、注销而发生变更；

外国投资主管部门可要求外国投资者或外国投资企业补充提交与前款规定信息相关的材料。

35) 외국투자법 초안 제92조, 94조.

第九十二条 【年度报告内容】外国投资者在中国境内投资涉及外国投资企业的设立或变更的，外国投资企业应在每年4月30日前提交上一年度的信息报告，包括以下内容：

(一) 外国投资者基本信息，包括名称、住所、注册地、实际控制人、组织形式、主营业务、联系人及联系方式；

(二) 外国投资基本信息，包括投资金额、投资来源地、投资领域、投资区域、投资时间、投资方式、出资比例和方式，获得相关行政许可或备案的情况；

(三) 外国投资企业基本信息，包括名称、住所、组织机构代码、注册地、股权结构、投资金额、注册资本、实际控制人、组织形式、经营范围、联系人及联系方式；

(四) 上一年度外国投资企业经营状况信息，包括行业领域、主要产品或服务、进出口、用工情况、纳税、研发等；

(五) 上一年度外国投资企业财务会计信息，包括资产、负债、所有者权益、收入、费用、利润等；

(六) 上一年度外国投资企业与外国投资者及其关联方开展的投资和进出口贸易情况等；

(七) 上一年度外国投资企业在境内外涉及的重大诉讼、行政复议、行政或刑事处罚以及依照本法第八章【投诉协调处理】提起的投诉等有关情况；

外国投资者在中国境内投资不涉及外国投资企业的设立或变更的，应在每年4月30日前提交年度报告，内容包括前款第(一)、(二)项规定的信息以及上一年度投资资产的交易和投资收益情况。外国投资主管部门可要求外国投资者或外国投资企业补充提交与前两款规定信息相关的材料。

第九十四条 【重点外国投资企业的季度报告】由外国投资者控制的外国投资企业，其资产总额、销售额或营业收入超过100亿元人民币，或其子公司数量超过10家的，应在每季度结束后30日内报告季度经营状况信息和财务会计信息。

이하이며, 형사처벌은 1년 이하 유기징역이나 단기징역형을 부과³⁶⁾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㉔ 국가안전심사(国家安全审查)제도 도입

외국투자법 초안에서는 외국인투자가 중국의 국가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국가안전심사제도를 신설하였다. 동 초안 제4장에서 규정된 국가안전심사제도는 국가안전을 해하거나, 해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국가안전심사를 실시한다³⁷⁾고 되어 있다. 국가안전심사제도는 기존에 국무원 통지³⁸⁾등의 형태로 시행되다가, 이를 기초로 다른 나라의 관련 입법례³⁹⁾를 참고하여 외국투자법에서 법률화를 시도하고 있다.

36) 외국투자법 초안 제147, 148조.

第一百四十七条 【违反信息报告义务的行政法律责任】外国投资者或外国投资企业违反本法规定，未能按期履行或逃避履行信息报告义务，或在进行信息报告时隐瞒真实情况、提供误导性或虚假信息的，投资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外国投资主管部门应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或情节严重的，处5万元以上、50万元以下或投资额5%以下的罚款。

第一百四十八条 【违反信息报告义务的刑事法律责任】外国投资者或外国投资企业违反本法规定，逃避履行信息报告义务，或在进行信息报告时隐瞒真实情况、提供误导性或虚假信息，情节特别严重的，对单位判处罚金，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责任人员，处一年以下有期徒刑或拘役。

37) 외국투자법 초안 제48조 국가안전심사제도.

第四十八条 为确保国家安全，规范和促进外国投资，国家建立统一的外国投资国家安全审查制度，对任何危害或可能危害国家安全的外国投资进行审查。

38) 2009년 국무원이 발표한 외국투자자의 국경내 기업합병안전심사제도에 관한 통지(关于建立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安全审查制度的通知)가 대표적이다. 또한 최근(2015.4.8)에는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등 4대 자유무역시험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유무역시험구외국인투자국가안전심사임시시행방법(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国家安全审查试行办法)을 실시하고 있다.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5-04/20/content_9629.htm (2015.8.4.일 검색)

39)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가안전심사를 진행하기 시작하였고, 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 of 2007 등이 대표적 법규이다. 廖凡, 《外国投资法》宜完善审查机构设计, 经济参考报(2015.1.28.),

http://jjckb.xinhuanet.com/opinion/2015-01/28/content_536292.htm (2015.8.31일 검색)

과거와 비교할 때, 외국투자법상 국가안전심사제도는 일단 대상범위가 확장되었다. 기존에는 인수합병만이 국가안전심사의 적용대상이었다면 신외국투자법 초안에서는 국가안전을 위해하거나 위해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외국인투자가 대상⁴⁰⁾이 되기 때문이다.

외국투자법 초안에서는 국가안전심사절차, 주관 기관 및 효과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주관 기관의 경우, 국무원 산하에 설립되는 외국투자국가안전심사부연석회의(外國投資國家安全審查部際聯席會議, 이하 연석회의)에서 진행한다. 연석회의에는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나 상무부와 같은 국무원 외국투자 관련 부처에서 연석회의를 소집하며, 관련된 부처에서 참여하여 심사를 진행⁴¹⁾한다. 심사는 일반심사와 특별심사로 구별⁴²⁾되며, 심사결과는 통과, 조건부 통과, 불허 3가지 형태로 나뉘⁴³⁾지며, 국가안전심사결과에 대한 행정소송이나 재심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⁴⁴⁾

40) 외국투자법 초안 제48조.

41) 외국투자법 초안 제49조.

第四十九条 【安审联席会议】 国务院建立外国投资国家安全审查部际联席会议（以下简称联席会议），承担外国投资国家安全审查的职责。国务院发展改革部门和国务院外国投资主管部门共同担任联席会议的召集单位，会同外国投资所涉及的相关部门具体实施外国投资国家安全审查。

42) 외국투자법 제60조에서는 심사의 종류를, 제61-62조는 일반심사(一般性审查), 제63-64조는 특별심사(特別审查)의 시한 및 의견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第六十条 【安审阶段】 联席会议进行国家安全审查，分为一般性审查阶段和特别审查阶段。

43) 외국투자법 초안 제58조.

第五十八条 【安审决定类型】 根据国家安全审查结果，国务院或者联席会议可作出如下决定：

(一) 外国投资不危害国家安全的，予以通过；
 (二) 外国投资危害或者可能危害国家安全、但可通过附加限制性条件消除的，予以附条件通过；
 (三) 外国投资危害或者可能危害国家安全且无法消除的，不予通过。

44) 외국투자법 초안 제73조.

第七十三条 【行政复议和诉讼的豁免】 对于依据本章作出的国家安全审查决定，不得提起行政复议和行政诉讼。

㉔ 계약통제방식(協議控制, VIE)에 따른 우회진출 금지

외국투자법 초안에서 주목할 점은, 외국인투자가 금지된 업종에 대한 외국기업의 편법적 우회진출, 즉 계약통제방식(協議控制, VIE: Variable Interest Entities)에 인한 시장진입을 불허한다는 점이다.

외국투자법 초안에서는 중국 내 기업을 통제 즉 지배(控制)하는 기업이 외국인투자자인 경우 해당 기업은 외국기업으로 간주한다고 규정⁴⁵⁾하였다. 여기서 지배(控制)는 첫째, 직간접적으로 해당 기업의 50% 이상 지분, 표결권 등을 보유한 경우; 둘째, 실령 지분 등이 5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이사회 혹은 유사한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 구성원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거나,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결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표결권을 보유한 경우 등; 셋째, 계약, 신탁 등의 방식으로 해당 기업의 경영, 재무, 인사 또는 기술 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미치는 경우를 말 한다⁴⁶⁾.

소위 계약통제 모델은 인터넷, 교육, 전자상거래 등 외국인투자가 금지된 업종에 진출하기 위해 중국인 주주를 내세워 중국 내자기업을 설립하고, 외국인이 설립한 외자기업과 대출, 위탁 등을 통해 해당 중국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업모델⁴⁷⁾을 말한다. 이같은 사업방

45) 외국투자법 초안 제12조에서는 중국투자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第十一条【外国投资者】本法所称的中国投资者，是指以下主体：(一) 具有中国国籍的自然人；(二) 中国政府及其所属部门或机构；(三) 受前两项主体控制的境内企业。

46) 외국투자법 초안 제18조.

第十八条【控制】本法所称的控制，就某一企业而言，是指符合以下条件之一的情形：

(一) 直接或者间接持有该企业百分之五十以上的股份、股权、财产份额、表决权或者其他类似权益的。

(二) 直接或者间接持有该企业的股份、股权、财产份额、表决权或者其他类似权益虽不足百分之五十，但具有以下情形之一的：

1. 有权直接或者间接任命该企业董事会或类似决策机构半数以上成员；
2. 有能力确保其提名人员取得该企业董事会或类似决策机构半数以上席位；
3. 所享有的表决权足以对股东会、股东大会或者董事会等决策机构的决议产生重大影响。

(三) 通过合同、信托等方式能够对该企业的经营、财务、人事或技术等施加决定性影响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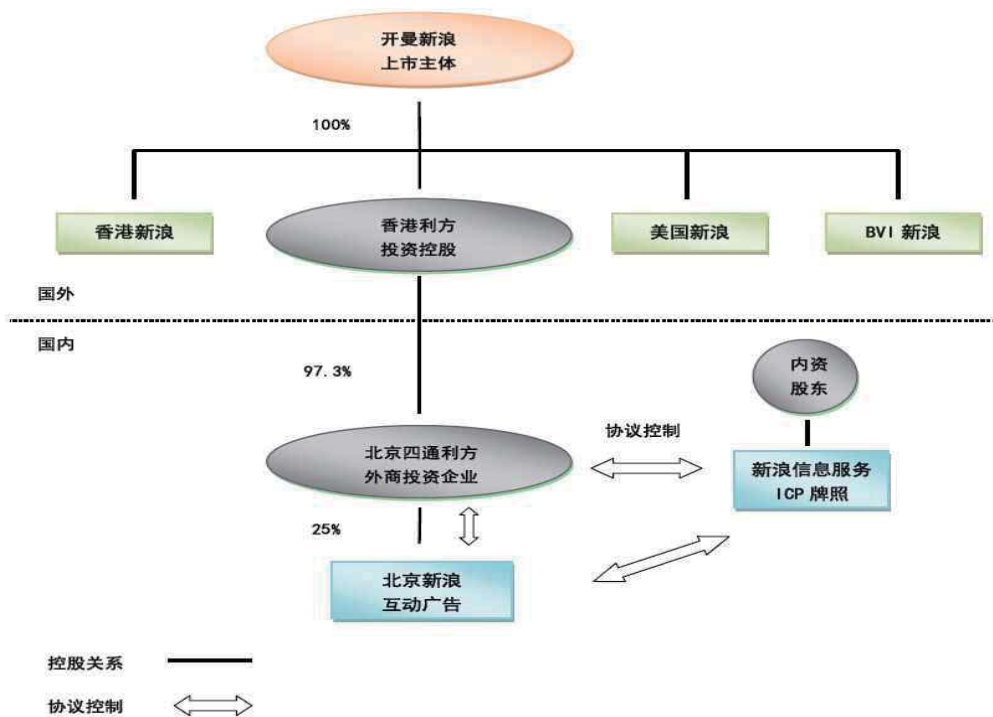
47) 张鸣, 浅析“协议控制+VIE”模式相关法律问题, 北大法律网

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Html/Article_76442.shtml (2015.9.1일 검색)

식은 중국과 미국 IT기업들이 주로 사용하였는데, 중국기업 중에서는 신랑(Sina.com, 新浪)이 가장 먼저 사용하였다.

과거 신랑은 케이먼 군도 등에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통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고, 동시에 동 법인을 통해 중국 내 인터넷 서비스회사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뉴욕증시와 나스닥 등에 상장한 200여개 중국기업 중 바이두(百度), 알리바바(阿里巴巴) 등 95개가 이와 같은 사업구조로 알려져 있다. 또한 중국기업 외 아마존, CBS 등 미국기업도 계약통제방식으로 중국의 전자상거래 및 미디어 시장에 진출⁴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3-1-2> 계약통제방식(VIE)의 신랑(Sina.com, 新浪 회사 구조)



자료: CIL Group LTD 홈페이지, <http://www.cil.bz/case-study/overseas-listing/529-spv-listing-sina>(검색일: 2015.9.1.)

48) 李艳娜, 新外国投资法下结构投资模式的法律解读, 中国对外交易(2015.3) P.36

현재 중국에서는 이미 설립된 계약통제모델의 기업을 둘러싼 논쟁이 여전히 존재한다. 중국 정부는 계약통제모델의 불허 원칙은 세웠으나, 이미 설립된 계약통제방식의 기업 처리문제에 대해서 첫 째, 국무원에 신고만 하고 계약통제 방식으로 계속 경영하는 안; 둘째, 국무원 주관부서에 신고하고 해당 부서가 승인 후 계약통제방식으로 계속 운영하는 안; 셋 째,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에 허가를 신청하면 해당부서가 진입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기업의 계속 존속 여부가 정해지는 안 등 3가지를 검토 중⁴⁹⁾이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향후 중국에서 외국기업이 계약통제(協議控制) 모델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가 금지된 업종에 우회적으로 진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다만, 중국에서는 편법진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외국인 진입이 금지된 전자상거래 분야의 개방을 확대⁵⁰⁾함으로써 합법적 진출을 유도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평가 및 시사점

향후 외국투자법이 입법화될 경우, 중국 내 외국기업의 사업환경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긍정적 측면을 보면, 전반적 규제완화에 따른 현지 사업환경이 개선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미 진출한 기업과 진출 예정인 기업은 해당지역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투자규제의 추이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비용절감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다음, 가장 중요한 측면은 전반적 투

49) 关于《中华人民共和国外国投资法(草案征求意见稿)》的说明 (2015년1월19일), P7~8
<http://tfs.mofcom.gov.cn/article/as/201501/20150100871010.shtml> (2015.9.3일 검색)

50) 지난 6월 중국 공업정보부는 '온라인데이터처리 및 거래처리 업무(전자상거래 경영)의 외자비율 제한에 관한 통보(工业和信息化部关于放开在线数据处理与交易处理业务(经营类电子商务)外资股比限制的通告)'를 통해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분율을 100%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전자상거래 분야 외국인 투자지분 비율은 55%로 제한되었다.

중국, 전자상거래 100% 외국인회사 허용, 아주경제(2015.6.21.)

<http://www.ajunews.com/view/20150621110653651> (2015.9.2일 검색)

자시장개방이 확대된다는 점이다. 특히 금융, 문화, 의료, 전자상거래 등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기회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관련 기업들은 중국 시장 개척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반면, 위협 요소 또한 존재한다. 중국 진출 한국기업은 대부분 합자기업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주주총회와 감사회가 없으나, 향후 외국기업법이 실시되면 회사법(公司法)상 지배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외국기업법 초안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동법 발효 후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부여⁵¹⁾하는데, 기존 합자파트너와 원활한 협의가 필요하며, 예상치 못한 분쟁발생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안전심사제도 및 정보보고에 따른 기업책임 강화에 따른 리스크도 유의해야 한다. 정보보고의 경우 기존의 기업정보공시제도와 중첩될 가능성이 있어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존재한다. 또한 국가안전심사제도의 경우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규정을 담고 있으나, 추상적 규정과 절차적 모호함으로 인해 남용가능성이 존재한다.

2. 특별관리조치목록

(1) 네거티브 리스트(负面清单, Negative list)의 의의 및 배경

2013년 9월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 건설과 같은 해 11월 개최된 중국 공산당의 18기 3중전회(제3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중국의 외국인 투자규제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변화의 기본방향 중 하나는 “설립전 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准入前国民待遇, pre-establishment National Treatment)”의 인정과 외국인투자진입에 대한 “특별관리조치목록(特别管理措施目录)” 즉, “네거티브 리스트(负面清单, Negative list)”를 통한 투자시장 개방으로 요약할 수 있다.

51) 외국투자법 초안 제157조.

설립전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는 모두 국제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및 FTA 투자챕터에서 사용되던 개념이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여 발전시킨 개념이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⁵²⁾.

설립전 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라 함은 외국인투자자가 특정국가의 시장진출 전 단계에서부터 내국민투자자와 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한다. NAFTA나 한-미 FTA 투자챕터 등 미국식 투자협정에서는 내국민대우(NT)의 범위에 대해 투자의 설립(establishment), 인수(acquisition), 확장, 경영, 영업, 운영과 및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적용된다고 규정⁵³⁾하고 있다. 즉 투자의 생성과 소멸을 설립, 인수에서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이라는 문구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석상으로도 설립과 인수는 투자가 형성되기 전, 즉 설립전 투자에 해당하는 단계이다. 설립과 인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단 외국인투자가 해당국가 시장에 진입하여 실체가 형성된 이후 경영 및 운영단계이고, 이 단계에서 내국민대우(설립후 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는 일반적 투자협정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NAFTA 이후 미국에서는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MFN: 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의 적용대상에 설립(establishment), 인수(acquisition)라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투자의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의 보장범위를 투자의 형성(설립) 전으로 확대시킨 것이다.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설립전 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보장은 WTO 등 국제통상의 핵심원칙 중 하나인 시장진입(MA: Market Access)과 동일하다. 즉, 설립전 투자에 대해 내

52) 刘超, 禹伟, 上海自贸区负面清单若干问题及对中BIT的启示, 南京财经大学学报(2014年06期), P.7.

53) 한-미 FTA 투자챕터 제11.3조(NATIONAL TREATMENT) 제1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은 NAFTA 1102조(내국민대우)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양자의 문구는 동일하다. Each Party shall accord to investors of the other Party treatment no less favorable than that it accords, in like circumstances, to its own investors with respect to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management, conduct, operation, and sale or other disposition of investments in its territory.

국민대우를 인정한다는 것은 외국투자자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투자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 투자시장 개방의 방식으로 NAFTA이래 미국의 FTA와 투자협정에서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포지티브(Positive) 리스트⁵⁴⁾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시장개방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거티브는 개방되지 않는 부분을 명기하고, 나머지 기재되지 않는 부분은 개방된 것으로 간주한다. 반면 포지티브는 개방 부분을 명기하고, 규정되지 않는 부분은 개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⁵⁵⁾ 즉 양자는 자유화 형식에 대한 입법적, 논리적 차이일 뿐 그 자체로 어느 시스템이 우월하다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새로이 등장한 산업의 개방여부와 관련해서 효과의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네거티브 리스트에서는 새로이 등장한 신산업의 경우, 자동으로 개방이 된 것이 되나, 포지티브에서는 리스트에 명기되기 전까지 해당 산업은 개방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⁵⁶⁾. 결국, 신산업과 관련성에서 보면, 네거티브가 좀 더 개방 친화적이라면, 포지티브는 법적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스템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단, 이 같은 효과는 국가별로 상대적인 것임에 유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새로이 등장한 신산업에서 해당 분야에 경쟁력이 있는 국가는 네거티브와 같이 자동으로 개방되는 시스템이 유리할 것이나, 경쟁력이 취약한 국가에서는 자국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개방여부를 좀 더 시간을 두고 결정할 수 있는 포지티브 방식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네거티브 방식이 개방친화

54) 포지티브 방식에 따른 시장개방 모델로 대표적인 것은 WTO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양허안(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이 있다.

55) 郭冠男, 李晓琳, 市场准入负面清单管理制度与路径选择:一个总体框架, 中国经济转型(2015年第7期 总第257期). P 33

56) 이외 자유화 후퇴방지와 관련, 포지티브에서는 현상유지(Stand-Still)원칙이, 네거티브에는 역진방지조항(Ratchet Mechanism)이 각각 적용된다. 이에 관해서는 김종덕, 엄준현, 한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및 투자협정문 분석-한미와 한-EU FTA를 중심으로,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4), P28-29를 참고할 것.

적이라 함은 자본력에 우위가 있고, 산업경쟁력이 강한 국가에 유리한 방식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은,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의 차이점은 주로 이론적인 것이고, 국제통상 현실에서는, 네거티브와 포지티브는 상호 융합되는 형태(hybrid)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⁵⁷⁾. 결국 미국식 네거티브 방식과 유럽식 포지티브 모델은 입법례의 역사적 차이에서 오는 비용분담의 문제⁵⁸⁾와 자국의 경제상황에 따른 有不利가 본질적인 것이다.

<표 3-1-3>외국인투자규제 모델 비교: Negative vs. Positive

구분	Negative	Positive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분야는 명시적으로 조건 및 내용을 규정하고, 명문규정이 없는 나머지 분야는 개방된 것으로 간주 - 국제적으로는 NAFTA에서 도입이후, 세계적으로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분야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미규정 부분은 개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방식 - WTO 서비스분야 양허안 작성에 기본적으로 사용. EU 및 동남아 등 개도국형 FTA에서 선호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점: 신산업 출현시 관련 규정이 생기기전까지 네거티브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점: 신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상대적으로 쉬움

57) WTO GATS 양허안도 적용대상은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나, 시장진입(MA)과 내국민대우(NT)와 같은 의무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네거티브적 방식을 취한다 (WTO GATS 제16조 시장접근 및 제17조 내국민대우, 한철수, 서비스산업개방과 WTO, 다산출판사(1994), P.169.). 반면 한-미 FTA 등 미국의 FTA 서비스투자협정을 보면, 시장진입 관련,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된 미국의 WTO GATS 양허안을 그대로 한-미 FTA 네거티브 리스트 안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식만 네거티브 리스트 일 뿐 실제로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개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미 FTA 협정문(영문판) P635, 637 이하 참고할 것)

58) 이는 결국 협상당사자 가운데 누가 자국의 기존 법제도 시스템을 변경할 것인가, 즉 시스템 변경에 따른 비용(손실)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익숙한 기존 시스템과 절연하고 새로운 체계를 받아들이는 쪽은 결국 일정하게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데, 국제사회에서 이는 결국 국력의 차이에 따라 좌우된다.

구분	Negative	Positive
	<p>식에서는 해당 산업이 개방된 것으로 간주되어 개방 친화적</p> <p>- 단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어려워 질 가능성</p>	<p>- 단점: 신산업 출현에 따른 즉각적 대응이 네거티브에 반해 상대적으로 느림</p>

* 자료: 필자작성

중국 정부가 18기 3중전회 이후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및 설립전 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등 투자자유화 확대로 정책방향을 전환한 것은 2008년부터 진행된 미국과 양자간 투자협정(BIT) 협상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동 협상은 양국 간 입장차이로 인해 한 동안 중단되었다가 재개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최근 네거티브 리스트를 교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⁹⁾.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시진핑 시기 중국의 투자규제 변화는 2001년 WTO 가입 당시 채택한 포지티브 방식에서 NAFTA 방식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은 미국식 투자자유화 모델을 받아들임으로서 대외적 신인도를 제고하고, 자국 내 투자규제 시스템의 개선이라는 다목적 포석 하에 전면적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2) 네거티브 리스트의 법적 성격

현재 중국의 외국인투자자유화 관련 핵심법규는 크게 2가지가 있다. 첫 째는 199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⁶⁰⁾(이하 지도목록으로 약칭)이고, 두 번째는 금년 4월

59) Chen Jia, Negative list talks can smooth BIT road, CHINADAILY(2015.6.9)

http://www.chinadaily.com.cn/cndy/2015-06/09/content_20944222.htm (2015.7.8 검색)

60)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은 2015년 4월 10일자로 수정 및 실시되었다.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2015年修订),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令 第22号,

20일 국무원에서 발표한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⁶¹⁾(이하 네거티브 리스트로 약칭)이다.

본고에서는 국무원 네거티브 리스트를 중심으로 외상투자산업지도 목록과 비교분석을 할 것이다. 국무원의 네거티브 리스트를 중심으로 보는 이유는 국무원의 네거티브 리스트가 외국투자법이 발효되는 등 향후 중국의 네거티브 방식의 자유화 개혁의 기본 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중국 투자정책의 자유화 수준을 살펴봄에 있어 지도목록은 현재의 개방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 법규라면, 네거티브 리스트는 향후 개방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 규제이다. 따라서 양자를 비교하는 것이 현재 및 향후 중국의 전반적 투자자유화 수준 및 투자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적 작업이다. 이외 2014년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에서 별도로 작성한 네거티브 리스트(이하 상하이 네거티브 리스트라 칭함)⁶²⁾가 존재하나, 이는 국무원의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하여 살펴볼 것이다.

① 네거티브 리스트와 지도목록의 관계

지도목록의 법적 성격은 기존 외자3법을 구체화한 국무원의 실행세칙상 수권규정에 따라 중국 국가발개위(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등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하는 부문규장(部门规章)⁶³⁾이다. 구체적 설명

http://www.sdpc.gov.cn/zcfb/zcfbl/201503/t20150313_667332.html (2015.7.15일 검색)

61) 본장은 2015년 4월 8일 발표된 국무원 네거티브 리스트에 근거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的通知(国办发[2015]23号), 国务院办公厅(2015年4月8日),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5-04/20/content_9627.htm (2015.7.18일 검색)

62)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14年修订), 上海市人民政府(2014.6.30.),

<http://www.china-shftz.gov.cn/PublicInformation.aspx?GID=8f7d8298-3462-4c6f-8cc8-8c42a315143c&CID=953a259a-1544-4d72-be6a-264677089690&MenuType=1> (2015.7.21일 검색)

63) 부문규장은 국가최고행정기관인 국무원의 각 부문과 위원회가 전인대에서 제정한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등에 근거하여 자신의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제정

하면, 외자3법은 중국 전인대(全人大)⁶⁴에서 제정한 법률이고, 이를 행정부인 국무원에서 구체화한 외자3법에 대한 실행세칙 및 조례⁶⁵가 있다. 중외합자경영기업은 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행조례(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은 중외합작경영기업법실행세칙(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 외자기업법은 외자기업법실행세칙(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实施细则)이 각각 있다. 이들 실행조례 및 실행세칙에서는 외자3법상 기업의 설립이 금지 및 제한되는 산업은 외상투자지도방향규정(指导外商投资指导方向规定)⁶⁶과 지도목록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⁶⁷. 동 세칙의 수권규정에 따라 발개위 등 중앙부처에서 지도목록을 제정 및 반포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최근 외자3법이 외국투자법으로 통합되고 있으며, 외국투자법 초안에서는 외국인투자자의 시장진입과 관련하여 소위 네거티

및 발표하는 규범성 문건을 말한다.(중국 헌법 제90조 제2항 참고) 한국의 행정 각부의 부령과 유사한 것이다.

64)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의 약칭. 한국의 국회와 같은 최고입법기관이다. 이외, 한국의 광역자치단체 내 지방의회와 유사하게 중국의 성(省)과 시(市) 등 각급 지방 각급 행정단위에도 각각 지방인민대표대회 즉 지방인대가 구축되어 있다.

65) 국무원에서 반포하는 각종 세칙, 조례 등은 행정법규(行政法规)로서, 전인대에서 제정한 법률에 비해서는 효력순위가 낮으나 행정 각부 등에서 제정한 규장(规章), 각급 지방 인민대표대회(人大) 및 정부에서 제정한 지방성법규(地方性法规)에 비해서는 효력이 높다. 행정법규의 법적 근거는 중국 헌법 제89조 제1항 및 중국 입법법(立法法) 제9조 및 제56조 등에 있다. 참고로 중국 입법법에 따르면 중국 법체계상 효력순위는 헌법-법률-행정법규-부문규장, 지방성법규 및 자치조례 및 단행 조례의 순서이다.

66) 2002년 국무원령으로 공포된 동 규정은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과 중서부지역외국인투자우대산업목록의 작성취지, 주제 및 기본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67) 외자기업법 실행세칙 제4조.

第四条 禁止或者限制设立外资企业的行业，按照国家指导外商投资方向的规定及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执行. 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행조례 제3조: 国家鼓励、允许、限制或者禁止设立合营企业的行业，按照国家指导外商投资方向的规定及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执行.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제2조: 在中国境内举办中外合作经营企业(以下简称合作企业)，应当符合国家的发展政策和产业革命政策，遵守国家关于指导外商投资方向的规定.

브리스트라고 부르는 특별관리조치목록으로 관리할 것으로 명시⁶⁸⁾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중국에서 외국투자자의 시장진입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역할은 기존의 지도목록에서 네거티브 리스트(특별관리조치목록)로 점차 대체될 것이다.

또한 금년 4월 발표된 국무원 네거티브리스트는 지도목록(規章)과 달리 국무원 행정법규(行政法規) 형태로 발표되어 법적 위상이 지도목록에 비해 높다. 뿐만 아니라, 특별관리조치목록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시장진입 가이드라인 제시 뿐 아니라, 절차상 규제가 심사비준에서 보고제로 전환 등 더욱 깊이 있는 개혁적 함의를 포함하고 있다.

효력측면에서 볼 때, 외국투자법은 아직 입법화되지 않았으므로, 아직까지 전국적 의미의 외국인투자자이드라인은 지도목록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무원 네거티브 리스트는 상하이 등 4대 자유무역시험구⁶⁹⁾에만 적용되는 특별규범이다.

끝으로 FTA나 BIT 등 국제조약과의 관계를 보면, 네거티브 리스트와 지도목록 모두, 중-홍콩 경제긴밀화협정(CPEA), 중-마카오 경제긴밀화협정, 중-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중국이 체결한 FTA 중 외국투자자에게 네거티브 리스크보다 우대한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협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⁷⁰⁾.

68) 외국투자법 초안 제20조.

69) 시진핑 정권 들어 중국에서는 상하이(2013), 텐진(2015), 광둥(2015), 푸젠(2015) 지방 4개 지역에 각각 자유무역시험구가 신설되어 새로운 개혁개방의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70) 국무원 네거티브 리스트(国办发〔2015〕23号)에 포함된 공식설명 5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五、(중략) … 内地与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及其补充协议, 《海峡两岸经济合作框架协议》, 我国签署的自贸协定中适用于自贸试验区并对符合条件的投资者有更优惠的开放措施的, 按照相协定或协定的规定执行。

<표 3-1-4> 네거티브 리스트와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의 법적 성격 비교

구분	네거티브 리스트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법적근거	외국투자법	외자3법, 외상투자지도방향규정
제정 주체	국무원	발개위 등 국무원 관련 부처
법적 성격	행정법규	규장(부령)
적용 범위	4대 자유무역시험구	전국
국제조약과 관계	해당 조약 내용 우선	해당 조약 내용 우선

* 자료: 필자작성

② 국무원 네거티브리스트와 상하이 네거티브 리스트의 관계

네거티브 리스트를 연구함에 있어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은 상하이 네거티브 리스트와 관계이다. 2013년 출범한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는 출범과 함께 최초의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하였고, 2014년 7월까지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상하이 네거티브리스트는 4대 자유무역시험구로 적용되는 국무원 네거티브리스트 작성의 기초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즉, 중국 정부는 상하이자유무역지대에서 시작된 네거티브 방식의 투자규제 개혁 작업을 이제 4대 자유무역시험구로 확대하였고, 금년 내 중국 내 모든 외국인투자자에게 적용할 것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온다⁷¹⁾.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국무원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4년 판 상하이 네거티브 리스트에 비해 더욱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적 효력 측면에서 보면, 상하이 네거티브 리스트는 상하이 인민정부가 제정한 상하이 지역에 적용되는 지방법규(地方性法规)이다. 반면, 국무원 네거티브 리스트는 중앙정부인 국무원에서 발표한 행정법규라

71) 중국, 외국인투자에 '네거티브 리스트' 연내 도입, 연합뉴스(2015.4.1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18/0200000000AKR20150418038800083.HT>
 ML?input=1179m (2015.9.13일 검색)

는 점에서 법적 위상이 더욱 높다. 또한 외국투자법 초안에서도 있지만, 외국인투자자에게 중국투자자와 차별대우 혹은 제한을 가할 경우 반드시 법률 및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 등의 형식으로 특별관리 조치목록에 규정한다고 되어있으며⁷²⁾, 특별관리조치목록은 국무원에서 통일적으로 제정 및 반포한다고 명기⁷³⁾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네거티브 리스트는 지난 4월 발표한 국무원 네거티브 리스트를 중심으로 개방범위가 확대 및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국무원 네거티브 리스트, 지도목록, 상하이 네거티브 리스트 3가지는 시기적 차이는 있으나 결국 국무원 네거티브 리스트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도목록과 상하이 네거티브 리스트는 단기간에 소멸되지는 않겠으나, 향후 중국 전역에서 외국인이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 1차적 가이드라인 역할은 국무원 네거티브 리스트가 될 것이다.

(3) 네거티브 리스트의 개방수준 및 체계

2015년판 네거티브 리스트의 개방수준에 대해 살펴보겠다.

먼저, 2015년판 네거티브 리스트를 그 바탕이 된 2014년 및 2013년 상하이 네거티브리스트에 비교해보면, 제한 및 금지 목록 수가 현저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한 및 금지조치 수가 139개에서 122개로 줄었다. 대부분류 산업 기준으로는 4개의 특별관리조치를 포함한 건축업(建筑业)과 3개의 조치를 포함한 부동산업(房地产业) 2개가 통째로 삭제되었고, 3개의 조치를 포함한 모든 산업(所有行业)이라는 카테고리가 새로이 생겨나 전체 개수는 16개에서 15개로 1개가 감소하였다.

72) 외국투자법 초안 제22조.

73) 외국투자법 초안 제23조.

산업별로 보면, 1차 산업에서는 광업 분야의 14개 규제조치가 8개로 감소하였다. 예를 들면, 비금속 광물 중 중정석(重晶石), 다이아몬드 등에 대한 탐사, 개발 등에 대한 제한이 삭제되고, 대신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 자원탐사 및 개발 등에 대한 제한을 추가하였다.

제조업의 경우, 2014년판 네거티브 리스트에서는 기존의 46개 조치에서 17개로 약 1/3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농부식품가공업, 주류·음료 및 정제차(茶) 제조, 연초(煙草)제품업, 인쇄와 기록매개물복제업, 통용설비제조업(중장비제조), 전기기계 등은 중분류 영역 자체가 삭제되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문도 통합하고 대폭 축소되는데, 의약품의 경우, 기존의 4개의 제한 및 금지조치에서 마취제 및 혈액제품에 대한 제한이 삭제되고 2개가 남았다.

서비스산업의 조치 내용도 크게 변화하였다. 주의할 것은 제조업의 경우 조치의 개수를 축소하여 개방 확대에 주력하였다면, 서비스 산업도 건설업과 부동산업이라는 대분류 2개를 삭제하는 등 개방이 확대되었으나, 그 비율은 제조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업의 경우 2014년에는 화폐금융서비스, 자본시장서비스, 보험업, 기타 금융업 등에서 5개의 제한 및 금지 조치가 규정되었으나, 2015년에는 은행업, 증권 및 선물회사, 보험 등에서 조치의 숫자 오히려 14개로 증가하였고, 그 내용도 더욱 자세해 졌다. 마찬가지로 문화, 체육 및 오락업 분야도 2014년에는 총 8개의 조치가 명기되었으나, 2015년에는 24개로 3배나 증가하였다.

<표 3-1-5> 시기별 네거티브 리스트 비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발표일자	2013.9.29	2014.7.1	2015.4.20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적용범위	상하이자유무역 시험구	상하이자유무역 시험구	상하이, 텐진, 광둥, 푸젠 4대 자유무역구
산업분류	16개	16개	15개
조치	190개	139개(전년대비 26.8개 축소)	122개(전년대비 12.2% 축소)
금지류	38개	29개	37개
제한류	152개	110개	85개

* 자료: 코트라 글로벌 윈도우⁷⁴⁾

다음, 2015년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5년 지도목록의 체계를 비교해보자. 첫 째, 지도목록은 산업분류의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으나, 네거티브 리스트에서는 국민경제산업분류(国民经济行业分类, GB/T47542011)에 따라 15개 대분류(네거티브 리스트에는 중국어 一, 二, 三 순서로 표기), 50개 중분류(네거티브 리스트에는 (1),(2),(3) 순서로 표기), 122개 소분류(네거티브 리스트는 1.2.3 순으로 표기)로 구분⁷⁵⁾하고 있다. 소분류인 122개 항목이 바로 특별관리조치의 숫자이며, 여기에는 산업별 적용되는 조치와 모든 산업에 공통적용 되는 수평적 조치(3개)가 포함된다. 분류 기준의 명확성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네거티브 리스트가 지도목록 대비 진일보한 면으로 평가되며, 본고는 이 기준에 따라 서술한다.

둘째, 지도목록은 외국인투자분야를 장려, 제한, 금지로 구분⁷⁶⁾하고

74) 강민주(상하이무역관), 190→139→122, 中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의 변천사, 코트라 글로벌 윈도우(2015.4.29.)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28088&ARTICLE_SE=20302 (2015.9.14일 검색)

75) 국무원 네거티브 리스트(国办发〔2015〕23号)의 공식설명 2항.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5-04/20/content_9627.htm (2015.9.12일 검색)

76) 장려는 외국인투자시 인센티브가 있음을, 제한은 외국인투자가 금지되지 않는

있으나, 네거티브 리스트에서는 장려 분야는 따로 존재하지 않고, 산업별 분류 안에 제한과 금지 내용을 함께 기술하고 있다. 즉, 지도목록에서는 전체 목록을 먼저 장려, 제한, 금지로 크게 분류하고, 그 아래 산업별로 구체적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반면, 네거티브 리스트는 산업별로 크게 분류한 다음 그 안에 제한과 금지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기준으로 지도목록상 해당 카테고리 관련 분야를 대입해서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셋째, 네거티브 리스트와 지도목록상 각각의 공백의 해석에 있어 주의해야 한다. 네거티브 리스트에서는 산업에 대한 특정조치가 삭제 혹은 명기되지 않았다 함은 이는 곧 개방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지도목록에서도 제한, 금지, 장려류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허용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⁷⁷⁾이 있다. 일견 양자 모두 '법으로 금지 및 제한되지 않은 것은 개방된 것을 본다(法无禁止即可为)'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나, 같은 공백이라도 양자는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네거티브 리스트의 경우, 기재되지 않은 산업부문은 개방된 것으로 간주되어, 외국인투자자가 내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것이다⁷⁸⁾. 특히 개방된 분야에서 외국인투자자는 기존과 같은 심사비준이 아니라 보고제와 같은 완화된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 지도목록에 규정되지 않아, 허용된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여전히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의 심사 및 비준(审批)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⁷⁹⁾ 즉, 지도목록상 공백(허용)의 의미는

나, 제한이 있음을, 금지는 외국인투자 자체가 허락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77)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指导外商投资方向规定) 제4조.

第四条 外商投资项目分为鼓励、允许、限制和禁止四类。鼓励类、限制类和禁止类的外商投资项目，列入《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不属于鼓励类、限制类和禁止类的外商投资项目，为允许类外商投资项目。允许类外商投资项目不列入《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78) 외국인투자법 초안 제6조 내국민대우.

79)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指导外商投资方向规定) 제12조.

第十二条 根据现行审批权限，外商投资项目按照项目性质分别由发展计划部门和经贸部门审批、备案；外商投资企业的合同、章程由外经贸部门审批、备案。其中，限制类限额

다른 법규에 규정된 심사 및 비준(허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실질적으로 개방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지도목록상 공백은 이것이 곧 내국인투자자와 동등대우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중국 정부의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각종 규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도목록은 WTO 가입 이후 중국의 외국인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길잡이로서 역할을 해왔다. 중국 정부도 이러한 점을 알고 있어서, 가급적 지도목록과 전체 투자 및 산업정책이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관리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경제 규모와 FDI 유입규모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임시변통적 방식으로 외국인투자를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왔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도목록으로 대변되던 기존 외국인투자정책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체제로의 전환은 중국의 경제발전에 비춰볼 때 필연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4) 평가 및 시사점

네거티브 리스트를 중심으로 중국의 투자자유화 추세와 법적 의의 등을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네거티브 리스트는 기존 조치에 비해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투자규제의 내용과 형식적 측면에서 몇 지 개선사항이 남아 있다.

첫째, 내용적 측면에서 일부 산업에서 여전히 투자장벽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중국은 경제규모에 비해 아직 고도화되지 않은 신흥국이므로 모든 산업이 고르게 발전한 선진국과 비교할 때 개방수준이 높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以下의外商投资项目由省、自治区、直辖市及计划单列市人民政府的相应主管部门审批，同时报上级主管部门和行业主管部门备案，此类项目的审批权不得下放。属于服务贸易领域逐步开放的外商投资项目，按照国家有关规定审批。涉及配额、许可证的外商投资项目，须先向外经贸部门申请配额、许可证。法律、行政法规对外商投资项目的审批程序和办法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도, 일부 산업 분야에서는 지나치게 규제조치가 제한된 점은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네거티브 리스트의 十四, 문화, 체육 및 오락산업의 경우 중국의 정치체제에 따른 영향으로 지나치게 많은 제한조치가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장기적으로 중국의 국격 및 국가브랜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보다 더 전향적 자세를 기대한다.

둘째는, 조치내용의 기술문제다. 외국투자법 초안에 따르면 제한목록상 제한조건은 상세하게 예를 들어 명확하게 기술해야 한다⁸⁰⁾고 되어 있다. 이는 네거티브 리스트의 투명성 원칙을 대표하는 조항으로서 국제적으로도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이다. 이 같은 원칙을 명기한 것은 분명히 진일보한 측면이라 할 것이다. 특히, 투자제한의 경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투자자는 본의 아니게 법규를 저촉하게 되어 손실을 입게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문제점은 완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 같다. 예를 들어, 네거티브 리스트 (18)-41. 도로운수 부문을 보면, “도로여객운수회사는 제한류에 속한다(公路旅客运输公司属于限制类)”라고만 되어 있다. 동규정만 보아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에서 도로여객운수회사를 설립하려면, 합자나 합작 방식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지배주주가 될 수 있는지, 영업범위 제한여부 등 투자의 핵심정보가 전혀 없다. 이는 해당 분야의 투자규범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서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국내 투자규제의 개선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이러한 문제점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80) 외국투자법 초안 제24조(특별관리조치목록 분류) 후단.
限制实施目录详细列明对外国投资的限制条件.

제 3 절 한-중 FTA 후속협상 대응방안

한-중 FTA 협상은 타결되었으나, 양국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부문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후 2년 내 네거티브 방식으로 후속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⁸¹⁾. 따라서 사실상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은 마무리 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진정한 시작을 유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국내 투자정책 및 투자법규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며 분석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아가 향후 보다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념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중국의 네거티브 리스트가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4년 상하이 네거티브 리스트와 2015년 국무원 네거티브 리스트의 변화 폭을 보았을 때, 향후에도 상당부분 개방수준이 제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의 빠르게 제고되는 투자자유화 수준을 감안할 때, 기존의 등식 -한국은 투자자유화 수준이 높아서 중국과 FTA에서 기존 FTA 대비 추가개방이 없을 것이다-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부 산업에서라도 이 같은 구도가 무너질 경우 협상전략의 수립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같은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한국의 기체결 FTA에서 투자시장 개방수준과 중국의 네거티브 리스트 간 산업별 규제 및 개방수준 분석 작업이 추가로 진행되어야 한다.

다음, 중국의 서비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한국기업의 진출도 기존의 전통적 제조업 위주에서 첨단산업 및 서비스업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후속협상 개시 전부터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시장 진출 유망분야를 선정하여 해당분야에

81)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 관계부처 합동(2015.3)
<http://www.fta.go.kr/cn/doc/2/> (2015.9.18일 검색)

서 중국 내 개혁의 진행상황 및 산업발전 수준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협상전략 관련, 중국은 현재 진행 중인 중미 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ment) 협상이 타결될 경우, 해당 네거티브 리스트를 그대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도 관철시키려 할 것이다. 이 경우 해당 네거티브 리스트는 미국기업의 관심사가 주로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기업의 공략지점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강대국간 이해가 일치된 국제협정을 한국같은 중견국이 이를 바꾸기는 쉽지가 않다. 최근 타결된 WTO 정보기술협정(ITA) 협상 타결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잘 드러났다⁸²⁾. 물론 FTA와 ITA는 양자와 다자간 통상협정이라는 차이점이 있으나, 한국과 중국 간 경제력 격차를 감안할 때 이러한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국의 국내 산업발전 및 개혁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한국기업의 수요가 큰 지점을 관철시키기 위한 치밀한 협상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지금부터 이에 대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한철수, 서비스산업개방과 WTO, 다산출판사(1994),

김종덕, 엄준현, 한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및 투자협정문 분석-한미와 한-EU FTA를 중심으로,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4), P28-29를 참고

82) ITA추가협상에서 미국과 중국은 상호간 관심품목을 교환하여 합의하였으나, 한국과 대만이 강력히 개방을 요구한 LCD가 제외되어, 강대국간 타협에 국익이 손상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한준호, “ITA협상, 중국의 벽에 막히고 미국의 압력에 무너졌다”, 아주경제(2015.7.29.)

<http://www.ajunews.com/view/20150728111048272> (2015.9.20일 검색)

2. 외국문헌

郭冠男, 李晓琳, 市场准入负面清单管理制度与路径选择:一个总体框架, 中国经济转型(2015年第7期 总第257期)

刘超, 禹伟, 上海自贸区负面清单若干问题及对中BIT的启示, 南京财经大学学报(2014年06期)

李艳娜, 新外国投资法下结构投资模式的法律解读, 中国对外交易(2015.3)

3. 인터넷자료

임영석, 박두정, 《중국 일대일로 추진동향 및 시사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ssue Report, Vol. 2015-지역이슈-09 (2015.7.).

변용재, 중국의 외상투자기업 설립법제-주요 특징과 변화 동향, 향후 개선 필요사항, 한국법제연구원(2012), <http://www.yulchon.com/KOR/publication/articleList.asp?CM=PG3&searchPg=90&searchKey=&searchVal=&startYear=&startMonth=&endYear=&endMonth=&page=2> (2015.9.20.일 검색)

찬란했던 ‘12차 5개년 계획’, 그 업적 살펴보기,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13:55, October 14, 2015, <http://kr.people.com.cn/n/2015/1014/c203280-8961803.html>(검색일: 2015.10.16.)

한준호, “ITA협상, 중국의 벽에 막히고 미국의 압력에 무너졌다”, 아주경제(2015.7.29.), <http://www.ajunews.com/view/20150728111048272> (2015.9.20.일 검색)

‘달러화 강제’ 외환보유고 줄었다, 11월 3685억弗 전월비 11억弗 감소,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203000463>(검색일: 2015.12. 7.)

관계부처 합동,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2015.3), <http://www.fta.go.kr/cn/doc/2/> (2015.9.18일 검색)

강민주(상하이무역관), 190→139→122, 中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의 변천사, 코트라 글로벌 윈도우(2015.4.29.),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28088&ARTICLE_SE=20302 (2015.9.14일 검색)

연합뉴스, 중국, 외국인투자예 ‘네거티브 리스트’ 연내 도입, 연합뉴스 (2015.4.1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18/02000-00000AKR20150418038800083.HTML?input=1179m> (2015.9.13일 검색)

김성애(베이징무역관), 中 해외투자, 외자유치 균형시대 진입, 코트라 글로벌윈도우(2015.2.16.) 참고. http://www.globalwindow.org/GW/global/trade/all-all/overseamarket-detail.html?&SCH_TYPE=SCH_SJ&MENU_CD=M10103&MODE=L&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E_CD=0000000&ARTICLE_ID=5026006&UPPER_MENU_CD=M10102&BBS_ID=10&SCH_VALUE=&MENU_STEP=3&SCH_AREA_CD=00000&Page=1&SCH_NATION_CD=000000&SCH_START_DT=&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SCH_END_DT= (2015.9.18. 검색)

배인선, 중국, 전자상거래 100% 외국인회사 허용, 아주경제(2015.6.21.) <http://www.ajunews.com/view/20150621110653651> (2015.9.2.일 검색)

Chen Jia, Negative list talks can smooth BIT road, CHINADAILY(2015.6.9.), http://www.chinadaily.com.cn/cndy/2015-06/09/content_20944222.htm(2015.7.8. 검색)

中华人民共和国外国投资法(草案征求意见稿) <http://tfs.mofcom.gov.cn/article/as/201501/20150100871010.shtml> (2015.9.3.일 검색)

关于《中华人民共和国外国投资法(草案征求意见稿)》的说明, <http://tfs.mofcom.gov.cn/article/as/201501/20150100871010.shtml> (2015.9.3일 검색)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 2014年修订), 上海市人民政府(2014.6.30.), <http://www.china-shftz.gov.cn/PublicInformation.aspx?GID=8f7d8298-3462-4c6f-8cc8-8c42a315143c&CID=953a259a-1544-4d72-be6a-264677089690&MenuType=1> (2015.7.21.일 검색)

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的通知(国办发[2015]23号), 国务院办公厅(2015年4月8日),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5-04/20/content_9627.htm (2015.7.18.일 검색)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2015年修订),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令 第22号, http://www.sdpc.gov.cn/zcfb/zcfbl/201503/t20150313_667332.html (2015.7.15일 검색)

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实施细则, http://project.mofcom.gov.cn/1800000-121_23_67947_0_7.html (2015.7.16.일 검색)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 <http://www.mofcom.gov.cn/aarticle/b/f/200207/20020700031062.html> (2015.7.12.일 검색)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 http://www.gov.cn/banshi/2005-08/31/content_69772.htm (2015.7.4.일 검색)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 http://www.gov.cn/banshi/2005-08/31/content_69775.htm (2015.7.3.일 검색)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http://www.gov.cn/flfg/2005-10/28/content_85478.htm (2015.7.1.일 검색)

国务院办公厅关于建立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安全审查制度的通知(国办发〔2011〕6号), http://www.gov.cn/zwgk/2011-02/12/content_1802467.htm (2015.9.13.일 검색)

商务部实施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安全审查制度的规定(2011年第53号) http://www.gov.cn/gzdt/2011-08/26/content_1934046.htm (2015.9.13.일 검색)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http://www.gov.cn/flfg/2007-03/19/content_554243.htm (2015.9.2. 검색)

张鸣, 浅析“协议控制+VIE”模式相关法律问题, 北大法律网, 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Html/Article_76442.shtml (2015.9.1.일 검색)

廖凡, 《外国投资法》宜完善审查机构设计, 经济参考报(2015.1.28.), http://jjckb.xinhuanet.com/opinion/2015-01/28/content_536292.htm (2015.8.31.일 검색)

국제연합무역개발위원회(UNCTAD), [http://unctad.org/en/pages/newsdetails.aspx?OriginalVersionID=790&Sitemap_x0020_Taxonomy=UNCTAD Home;#6;#Investment and Enterprise;#640;#World Investment Report](http://unctad.org/en/pages/newsdetails.aspx?OriginalVersionID=790&Sitemap_x0020_Taxonomy=UNCTAD+Home;#6;#Investment+and+Enterprise;#640;#World+Investment+Report)(2015.8.31.일 검색)

CIL Group LTD 홈페이지, <http://www.cil.bz/case-study/overseas-listing/529-spv-listing-sina>(검색일: 2015.9.1.)

제 2 장 법률 서비스 분야

제 1 절 중국의 법률시장 개관

1. 중국 국내로펌 현황

중국의 전체 변호사 수는 2012년 기준 23만 명이고, 201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 로펌은 19,361개이며, 13억 인구를 변호사 수로 나누면 평균 5,700명당 1명의 변호사가 있는 셈이다.¹⁾ 100만 명의 변호사가 있는 미국은 전국 평균으로 260명 당 1명의 변호사가 있는 것과 비교하면 중국의 변호사 수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의 변호사 수는 2015년 7월 말 기준으로 19,835명이며, 로펌은 1113개이며²⁾, 우리나라 인구 5000만 명을 이들 변호사 수로 나누면 평균 2,520명 당 1명의 변호사가 있는데, 이와 같은 한국과 비교해도 중국의 변호사 수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현재 중국의 법률시장 규모는 약 500억 위안(약 한화 5조원) 정도로 인구와 경제규모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작은 규모이며, 향후 10년 후면 현재의 10배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³⁾ 중국변호사들의 수입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매우 적다. 예컨대 2010년 기준으로 중국 변호사총수입은 GDP의 0.09%, 358억 위안에 불과하다.⁴⁾

1)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전체 변호사 수는 1979년에 212명, 2008년에 156,710명으로 개혁개방 시기에 비하면 변호사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中国法律服务的改革：局限、政策和战略，作者：利安，THE JOURNAL OF POLITICAL RISK, Vol. 1, No. 6, October 2013.

2) 전체 변호사 수 중 개업변호사는 16,481명, 휴업 및 미개업변호사는 3,354명이며, 로펌의 유형별로 보면 법무법인 865개, 법무법인(유한) 33개, 공증인가합동 31개, 공동로펌 127개이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원현황, <http://www.koreanbar.or.kr/info/info07.asp>(검색일: 2015.08.14.)

3) 中国法律服务市场的规模到底有多大，发布时间：2015-06-24 11:05:17 作者：蒋勇 来源：天同诉讼圈, <http://www.acla.org.cn/html/industry/20150624/21566.html>(검색일: 2015.08.14.)

4) 中国法律服务市场现状与投资预测报告(2013版), <http://wenku.baidu.com/link?url=OPXpR57>

중국의 로펌 규모면에서 소규모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0년 중국의 전체 로펌은 1.72만 개, 변호사 수는 약 20만 명에 이르렀으나, 1.72만 로펌 중 1000명 이상인 로펌은 단지 2개에 불과하고, 100인 이상이 28개, 50-100인이 149개, 30-50인이 471개이며 이들을 모두 합하면 650개에 불과하고, 10인 이하의 로펌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⁵⁾

그러나 중국의 변호사시장 규모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예컨대 2007-2012년 사이 중국로펌 수량은 13,593개에서 19,361개로 증가하였으며 증가폭은 42.43%에 달하고, 변호사업무인원수는 143,967명에서 232,384명으로 증가하여 5년간 61.41% 증가하였다.⁶⁾

또한 중국의 로펌은 연해와 경제발달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예컨대 2011년까지 중국의 로펌은 약 1.9만 개, 종사자 수는 20만 명에 달하며, 베이징 1,415개 소, 종사자 22,418명, 상하이 1,078개소, 종사자 12,562명, 다음으로 광저우, 선전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반면, 중서부 지역의 간수성(甘肅省)의 경우 성 전체 변호사 수가 단지 1000여명이며 이들 변호사들의 연간 총수입 또한 5600만 위안에 불과하고, 산시성(陝西省)의 경우에도 변호사 수가 약 4000명이고, 연수입이 1억 위안에 못 미치고 있다.⁷⁾

vCcyC_4MIOpXGQ-jFGeBSVL4SvTi4JSHUgQEv1h5_P7j8FXTZfnhxReDt1Mswl1EFwWRXyTc8zuqpROeGQWDlu7sePe86YnVAjoe(검색일: 2015.08.14.)

5) 我国法律服务行业发展现状分析, 更新: 2014-10-24 17:43, <http://jingyan.baidu.com/article/2fb0ba4041c34c00f3ec5f40.html>(검색일: 2015.08.14.)

6) 我国法律服务行业发展现状分析, 更新: 2014-10-24 17:43, <http://jingyan.baidu.com/article/2fb0ba4041c34c00f3ec5f40.html>(검색일: 2015.08.14.)

7) 中国法律服务市场现状与投资预测报告(2013版), http://wenku.baidu.com/link?url=OPXpR57vCcyC_4MIOpXGQ-jFGeBSVL4SvTi4JSHUgQEv1h5_P7j8FXTZfnhxReDt1Mswl1EFwWRXyTc8zuqpROeGQWDlu7sePe86YnVAjoe(검색일: 2015.08.14.)

2. 외국로펌 진출 현황

외국로펌의 중국 본토 진출은 1992년 5월 26일 사법부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공동으로 제정한 <외국로펌의 중국 경내 사무처설립에 관한 임시규정>(이하 임시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1992년의 <임시규정>에 따라 외국로펌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19개 도시에서 외국로펌의 대표처를 통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하나의 외국로펌은 하나의 주중대표처만 설립할 수 있고, 이 대표처와 그 변호사는 중국법률사무를 대리할 수 없고, 당사자에게 중국법률해석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으며, 대표처는 중국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었다.⁸⁾ 이러한 제한사항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현재에도 여전히 고수되고 있다.

2001년 12월 11일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정부는 향후 외국로펌의 중국시장진입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 2001년 12월 19일 중국 국무원은 기존의 <임시규정>보다 효력이 높은 <외국로펌주중대표기구관리조례>(이하 관리조례)를 제정하였다.⁹⁾ 2002년 중국이 250억 달러의 거래총액으로 아시아지역 인수합병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중국 자본의 해외인수합병과 투자가 대규모로 증가하면서 중국의 법률시장 또한 확대되면서 세계각국의 로펌들이 중국시장에 진출하였다.¹⁰⁾ 2003년 1월 8일 중국사법부는 제2호 주중대표처의 증설을 요청한 11개 외국로펌의 신청을 승인하여 중국이 WTO 가입 시 약속했던 외국로펌 주중대표처의 설립에 관한 지역과 양적 제한 철폐를 실현함으로써 중국법률시장이 한 단계 더 외국로펌에게 개방되었다. ¹¹⁾

8) 외국로펌의 중국진출 현황은 外国律所与国内律所征战20年 从竞争走向合作, 时间: 2012-10-26 11:37:00作者: 全海龙新闻来源: 《方圆》杂志, http://news.jcrb.com/jxsw/201210/t20121026_972101.html(검색일: 2015.08.14.).

9) 앞의 자료.

10) 앞의 자료.

11) 앞의 자료.

이러한 과정을 거쳐 WTO 가입 전 중국에 진출한 외국로펌 주중대표처 수 100개에서 2012년 7월 기준으로 20개 국가 출신의 외국로펌이 250개의 대표처를 설립하였으며, 이러한 숫자는 중국 국내로펌의 수량에 비해 약 175분 1, 영업수입비율은 약 110분의 1이다.¹²⁾ 또한 2011년 한 해를 기준으로 외국로펌 주중대표기구의 영업수입액이 1천만 위안을 초과하는 수가 101개, 1억 위안을 초과하는 수가 11개이며, 글로벌 10대 로펌은 모두 중국에 대표기구를 설립하고 있다.¹³⁾

2014년도 연도검사를 통과한 외국로펌주중대표처는 총 225개이며¹⁴⁾, 미국(110개)이며, 영국(31개), 일본(20개), 프랑스(12개), 독일(11개), 호주·한국·싱가포르(7개), 스페인·이탈리아(5개), 스위스·네덜란드(2개), 캐나다 등 6개국(1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상하이(124개)와 베이징(87개)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수도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7개의 한국로펌의 주중대표처는 베이징에 광장, 율촌, 세종, 태평양이 각각 1개씩(총 4개), 상하이에 지평, 세종, 태평양이 각각 1개씩(총 3개)이 설립되어 있으며, 전체 18개 국가 중 6번째(아래 홍콩을 포함하면 7위)로 많은 수의 대표처를 두고 있으나 절대적인 수는 적은 편이다.

12) 앞의 자료.

13) 앞의 자료.

14) 中华人民共和国司法部公告 第156号, 发布时间: 2015-08-14, http://www.moj.gov.cn/index/content/2015-08/14/content_6221109.htm?node=7346(최종검색일: 2015.08.20.). 세부적인 외국로펌 주중대표처의 명단은 부록을 참고할 것.

<표 3-2-1> 2014년 연도검사 통과한 외국로펌 주중대표처 현황

(단위: 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다롄	선양	톈진	샤먼	난징	항저우	계
미국	48	57	1	-	-	2	1	-	1	110
영국	15	14	2	-	-	-	-	-	-	31
일본	7	11	-	1	1	-	-	-	-	20
프랑스	3	8	1	-	-	-	-	-	-	12
독일	2	8	1	-	-	-	-	-	-	11
호주	3	3	1	-	-	-	-	-	-	7
한국	4	3	-	-	-	-	-	-	-	7
싱가포르	1	6	-	-	-	-	-	-	-	7
스페인	1	3	1	-	-	-	-	-	-	5
이탈리아	1	3	-	-	-	-	-	1	-	5
스위스	1	1	-	-	-	-	-	-	-	2
네덜란드	-	2	-	-	-	-	-	-	-	2
스웨덴	-	1	-	-	-	-	-	-	-	1
캐나다	1	-	-	-	-	-	-	-	-	1
브라질	-	1	-	-	-	-	-	-	-	1
벨기에	-	1	-	-	-	-	-	-	-	1
모리셔스	-	1	-	-	-	-	-	-	-	1
노르웨이	-	1	-	-	-	-	-	-	-	1
계	87	124	7	1	1	2	1	1	1	225

자료: 필자 작성

한편, 2014년 연도검사를 통과한 홍콩 로펌의 주중대표처는 총 59개¹⁵⁾이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대표처를 설립하고 있다. 외국 로펌과 홍콩로펌의 주중대표처를 모두 합치면 전체 284개이다.

제 2 절 중국의 법률시장 개방 관련 규제현황

1. 전국 단위

중국의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국내법제는 국무원이 <중국변호사법> 제51조¹⁶⁾에 근거하여 2001년 12월에 제정한 <외국로펌 주중 대표기구 관리조례>¹⁷⁾(이하 대표기구관리조례)이다. 동 조례는 전체 6개장(제1장 총칙, 제2장 대표기구의 설립·변경 및 말소, 제3장 업무범위와 규칙, 제4장 관리감독, 제5장 법률책임, 제6장 부칙) 3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변호사 사무소에 대한 규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진출형태

외국로펌은 중국당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대표기구(대표처) 형태로만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즉 외국로펌, 외국의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은 자문회사 또는 기타 명의로 중국에서 법률서비스활동에 종

15) 中华人民共和国司法部公告 第157号, 发布时间: 2015-08-14 11:00:43, http://www.moj.gov.cn/lsgzgzds/content/2015-08/14/content_6221287.htm(최종검색일: 2015.08.20.)

16) 중국변호사법 제51조에서는 “외국로펌이 중국 경내에 기구를 설립하여 규정된 법률서비스활동에 종사하는 것에 관한 관리관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라는 수권규정만 두고 있다.

17) 《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例》, 国务院令338号, 2002.01.01 시행. 한편, 홍콩 및 마카오특별행정구 로펌 주중 대표기구의 설립 및 법률서비스활동에 대해서는 <홍콩 마카오특별행정구 로펌 주내지 대표기구 관리관법(香港、澳门特别行政区律师事务所驻内地代表机构管理办法, 司法部令 第70号, 2002.04.01. 시행, 2015.4.27. 최신 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현행 <외국로펌 주중대표기구 관리조례>와 유사하다.

사할 수 없으며, 외국로펌의 주중대표기구 설립 및 대표의 파견은 국무원 사법행정부문(사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¹⁸⁾

(2) 대표처의 신설 및 증설

외국로펌의 주중 대표기구 설립 및 대표 파견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① 로펌의 자격: 외국로펌이 본국에서 이미 합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변호사직업윤리, 업무수행규율의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았을 것; ② 대표의 자격: 대표기구의 대표는 집업변호사¹⁹⁾로서 집업자격취득국가의 변호사협회회원이며 중국 경내에서의 업력이 2년 이상이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변호사직업윤리, 집업규율위반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으며, 이중 수석대표의 중국 경외 업력이 3년 이상이며, 해당 로펌의 파트너이거나 동일한 직위를 가진 사람일 것; ③ 중국에 대표기구를 설립하여 법률서비스업무를 전개할 실질적인 수요가 있을 것 등 3가지이다.²⁰⁾ 이중 모호하게 규정된 ③ 요건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대표처가 설립될 주소지의 사회경제발전상황; ㉡ 대표처가 설립될 주소지의 법률서비스 발전 수요; ㉢ 신청인의 규모, 성립시간, 주요업무영역과 전문성, 설립될 대표처의 업무전망에 대한 분석,

18) 대표기구관리조례 제6조.

19) 执业律师란 법에 따라 변호사집업증서를 취득하고 법률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법률업무자의 총칭이다. 중국변호사법 제5조에 의하면 “변호사집업은 변호사 자격과 집업증서를 취득해야 한다(律师执业应当取得律师资格和执业证书).” 이는 중국에서 변호사 자격과 변호사 집업을 상호 분리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으로, 변호사 자격의 취득과 동시에 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변호사 집업증서를 발급 받아야 비로소 변호사 명의로 집업을 할 수 있다. 변호사 집업증서를 받지 못하면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업무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중국 변호사법 제5조에 따르면 변호사 집업의 신청조건으로 중국헌법을 옹호할 것; 국가통일사법고시를 통과할 것; 변호사 사무소 실습 만 1년일 것; 품행이 양호할 것 등 4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개업변호사에 관한 보다 상세한 규정인 <변호사 집업관리 판법>(2008年07月21日, 司法部, 《律师执业管理办法》 제4조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20) 대표기구관리조례 제7조.

미래업무발전규획; ④ 중국의 법률, 법규의 특정 법률서비스 활동 또는 사무에 대한 제한 규정 등 4가지이다.²¹⁾

또한 이미 주중대표처를 설립하고 있는 외국로펌은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대표처 증설이 가능하다. 증설조건은 ① 중국에서 최근 설립한 대표처의 연속업력이 만 3년이 되어야 하며, 이때 연속업력의 기간은 대표처 주소지의 성·자치구·직할시 사법청(국)이 처음으로 개업등록을 한 날부터 기산하며; ② 이미 설립한 각 대표처 및 그 대표가 중국의 법률·법규·규장을 준수하고 변호사직업윤리와 직업기율을 준수하고 <대표기구관리조례>가 규정한 각항의 법률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은 경우 등 2가지이다.²²⁾

(3) 신청서류 및 절차

외국로펌은 설립예정인 대표기구 주소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사법행정부문(이하 지방정부사법행정부문)에 대표기구설립·대표과건 신청서 및 상기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²³⁾ 이 때 설립하고자 하는 대표기구의 명칭은 “XX로펌(당해로펌의 중문번역명칭)주XX(중국 도시명)대표처”로 해야 한다.²⁴⁾ 예컨대 “한국 태평양로펌 주베이징 대표처(韩国太平洋律师事务所驻北京代表处)”와 같은 형식이다.

외국로펌의 신청서류를 접수한 지방정부사법행정부문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의견과 관련 자료를 국무원사법

21) <사법부의 “외국로펌 주중대표기구 관리조례”의 집행에 관한 결정(2004년 개정) (司法部关于执行《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例》的规定) (2004修正)>, 司法部令第92号, 2004.09.02, 제4조.

22) <사법부의 “외국로펌 주중대표기구 관리조례”의 집행에 관한 결정(2004년 개정) (司法部关于执行《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例》的规定) (2004修正)>, 司法部令第92号, 2004.09.02, 제10조.

23) 대표기구관리조례 제8조.

24) 대표기구관리조례 제8조 1항.

행정부문(사법부)에 발송하여야 한다. 국무원사법행정부문은 6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설립을 허가한 대표기구에 집업집조(执业执照, 일종의 영업허가증)를 발급하고, 그 대표에게는 집업증서(执业证书, 변호사 자격취득 후 변호사 업무를 하기 위한 허가증)를 발급하며, 만약 불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고지해야 한다.²⁵⁾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중국 당국의 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장 9개월이라는 점이며, 이는 비교적 긴 시간으로 볼 수 있다.

대표기구를 설립한 후 대표기구 및 그 대표는 집업집조와 집업증서를 가지고 대표기구 소재지 지방정부사법행정부문에 등록(注册)을 해야 비로소 법률서비스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등록은 매년 1회씩 해야 한다.²⁶⁾

(4) 업무범위

현재 중국의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외국로펌의 업무범위가 중국법률사무를 제외한 변호사자격취득국가의 법과 국제법에 관한 자문으로 제한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기구관리조례 등에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표기구 및 그 대표는 ‘중국법률사무’를 제외한 다음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²⁷⁾ ① 외국로펌의 변호사가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국가의 법률에 관한 자문 및 국제조약, 국제관례에 관한 자문(원자격국법과 국제법에 관한 자문); ② 당사자(고객) 또는 중국로펌의 위탁을 받아 외국변호사의 변호사 원자격국가의 법률사무; ③ 외국당사자를 대표하여 중국로펌에 위탁하여 중국법률사무를 처리; ④ 계약체

25) 대표기구관리관법 제9조.

26) 대표기구관리조례 제10조 1항.

27) 대표기구관리조례 제15조 1항.

결을 통해 중국로펌과 장기적인 위탁관계를 유지하고 법률사무를 처리; ⑤ 중국법률환경영향에 관한 정보의 제공²⁸⁾ 등 5가지로 제한된다.

위에서 언급한 ‘중국법률업무’란 ① 변호사 신분으로 중국 경내에서 소송활동에 참여; ② 계약서, 협의서, 정관 또는 기타 서면문서에서 중국법률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의견 또는 증명을 제공; ③ 중국법률을 적용하는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해 의견과 증명을 제공; ④ 중재활동 중 대리인 신분으로 중국법률의 적용에 대해 대리의견을 발표²⁹⁾; ⑤ 위탁인을 대리하여 중국정부기관 또는 기타 법률법규가 수권한, 행정관리직능을 가진 조직에게 등기, 변경, 신청, 신고(备案) 수속 및 기타 수속을 처리해 주는 것 등 5가지이다.³⁰⁾ 이중 ④와 관련하여, 주중대표처가 중재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에는 제한이 없으나 중재활동 과정에서 중국법률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³¹⁾ 다시 말해 모든 중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원자격국법과 국제법 등에 대한 의견발표는 가능하지만 중국법률업무 관련 활동은 금지된다는 것이다.

28)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2015년)(국가발전개혁위원회령 제22호, 2015-03-10.)에서도 중국법률환경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중국법률사무자문(中国法律事务咨询)서비스는 금지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29) <사법부의 “사법부의 외국변호사 주중대표기구 관리조례”의 집행에 관한 결정의 개정에 관한결정(《司法部关于修改〈司法部关于执行〈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例〉的规定〉的决定》)(이하 대표기구관리조례 2004년 개정본), 司法部令第92号 (2004.9.2.발표) 에서 “在仲裁活动中, 以代理人身份对中国法律的适用发表代理意见”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사법부의 “외국로펌 주중대표기구 관리조례”의 집행에 관한 결정(2004년 개정), 제32조 1항 4호에서 “중재활동 중 대리인 신분으로 중국법률의 적용 및 중국법률에 관련되는 사실에 대해 대리의견 또는 평론을 발표(四) 在仲裁活动中, 以代理人身份对中国法律的适用以及涉及到中国法律的事实发表代理意见或评论)” 중 ‘평론’ 부분은 삭제하여 제한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

30) <대표기구관리조례 2004년 개정본>, 제32조.

31) 司法部办公厅关于对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就《司法部关于执行〈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例〉的规定》所提建议回复意见的函 (2003年1月6日司办函[2003]第10号) .

또한 중국법률환경영향에 관한 정보 제공 시 중국법률의 적용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 또는 판단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며³²⁾, 대표처의 대표 및 그 보조인원은 “중국법률고문”이라는 명의로 고객에게 중국법률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³³⁾

또한 대표기구가 중국법률업무를 다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대표기구의 중국집업변호사 고용을 금지하고, 보조인원이 법률서비스를 당사자(고객)에게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³⁴⁾ 여기서 ‘중국의 집업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는 중국의 집업변호사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 중국집업변호사와 고용 또는 노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중국집업변호사와 사실상의 고용 또는 노무관계를 형성한 경우; ③ 중국집업변호사와 이윤의 공동향유, 리스크의 공동분담 또는 관리참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④ 중국집업변호사 개인에게 보수, 비용을 지급하거나 업무를 분담한 경우 ⑤ 중국집업변호사를 채용하여 대표처가 속한 로펌 또는 대표처의 명의로 대외업무활동을 한 경우 등 5가지이다.

뿐만 아니라 대표처는 홍보활동 시에도 대표처가 중국법률업무를 취급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힐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대표처는 ① 고객에게 대표처가 중국 경내에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표명하는 경우 이와 동시에 대표처가 중국법률서비스에 종사할 자격, 집조(영업허가증) 또는 능력이 없음을 표명해야 하며, ② 고객에게 중국변호사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중국집업변호사를 담당할 적이 있음을 밝히는 경우 이와 동시에 대표처가 현재에는 중국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하며, ③ 편지지, 명함에서 상술한 홍보를 하는 경우 앞의 ①, ②에서 규정한 내용을 포함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³⁵⁾

32) <대표기구관리조례 2004년 개정본>, 제33조.

33) <대표기구관리조례 2004년 개정본>, 제38조.

34) 대표기구관리조례 제16조.

35) <대표기구관리조례 2004년 개정본>, 제37조.

이처럼 대표처 및 그 대표가 중국법률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것 이외에, 대표처 및 그가 소속된 로펌이 중국로펌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대표처 형식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중국법률시장에 진입하는 것과 중국법률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표처 및 그 소속 로펌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① 직·간접적으로 중국로펌에 투자; ② 중국로펌 또는 중국변호사와 이윤공유 또는 리스크를 공동부담하는 집업연합체의 설립³⁶⁾; ③ 연합사무실의 건립 또는 파견인원을 중국로펌에 입주시켜 법률서비스활동에 종사; ④ 중국로펌의 주식성 권익을 관리, 경영, 지배 또는 향유하는 것 등 4가지이다.³⁷⁾

(5) 대표기구 및 대표

대표기구의 대표는 동시에 2개 이상의 대표기구에서 대표 또는 겸임대표를 맡을 수 없으며³⁸⁾, 매년 중국 경내에서의 체류시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³⁹⁾ 대표기구는 유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수취한 서비스요금은 반드시 중국 경내에서 결산하여야 한다.⁴⁰⁾

(6) 감독관리 및 처벌

외국로펌대표처에 대한 감독관리부서는 중앙의 국무원사법행정부문(특히 사법부)와 지방정부사법행정부문(사법국)이며, 주요 감독관리업무는 연도검사업무로서 대표처는 매년 3월 31일 이전에 주소지의 지

36) 다만, 대표기구는 중국로펌과 체결한 협의약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중국로펌의 변호사에게 직접 업무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된다(대표기구관리조례 제15조 2항).

37) <대표기구관리조례 2004년 개정본> 제39조.

38) 대표기구관리조례 제18조.

39) 대표기구관리조례 제19조.

40) 대표기구관리조례 제20조.

방정부사법행정부문에 집행집조와 대표집업증서의 부분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연도검사를 받아야 한다.⁴¹⁾

대표처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다양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대표기구 또는 대표가 중국의 국가안전, 공공안전 또는 사회관리질서를 위해한 경우, 형법상 국가안전위해죄, 공공안전위해죄 또는 사회관리질서방해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당하며,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가 아니면 치안관리처벌을 받는다.⁴²⁾ 다음으로 대표기구 또는 대표가 외국로펌주중대표처의 업무범위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정부사법부문이 영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사법부가 해당 대표기구의 집행집조 또는 해당 대표의 집행증서를 말소시킬 수 있으며, 또한 전술한 위법행위에 관한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직접책임이 있는 대표에 대해서는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⁴³⁾ 또한 대표처가 중국집업변호사를 고용하거나 고용한 보조인원이 법률서비스활동에 종사한 경우, 법률서비스대가로 받은 비용을 중국 경내에서 결산하지 않은 경우, 연도검사자료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거나 연도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기구의 집행집조가 말소될 수 있으며, 중국 경내 결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결산금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⁴⁴⁾ 그 외 외국로펌, 외국변호사 또는 외국의 기타조직 및 개인이 무단으로 중국 경내에서 법률서비스활동에 종사할 경우 위법소득의 몰수와 5만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⁴⁵⁾

대표처의 위법행위에 관하여 대표처와 대표에 대한 상기의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로펌은 공공연하게 위법행위를 하고 있으며, 특히 영미계 대표처를 중심으로 중국변호사를 보조인원 형식 등으로 고

41) 대표기구관리조례 제21, 22조.

42) 대표기구관리조례 제24조.

43) 대표기구관리조례 제25조.

44) 대표기구관리조례 제26조.

45) 대표기구관리조례 제30조.

용하여 중국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⁶⁾ 그러나 이와 같은 외국로펌의 위법행위에 대해 중국당국은 그다지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다만 상하이시, 북경시 등 대도시의 중국로컬변호사집단을 중심으로 외국로펌의 위법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⁴⁷⁾ 공개된 외국로펌 주중대표처의 위법행위사례로는 주로 대표처 보조인력이 대리인 신분으로 중재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직접 중국법률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이다.⁴⁸⁾

2. 자유무역시험구(自由贸易试验区)

2013년 9월 29일 정식으로 발족한 중국 최초의 자유무역시험구인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와 같은 자유무역시험구를 광둥(廣東), 텐진(天津), 푸젠(福建) 등 3개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는 등 자유무역시험구 정책을 확대·강화하고 있다.⁴⁹⁾ 주지하다시피 이들 자유무역시험구는 “선행선시(先行先试), 개혁심화

46) 법무법인 율촌, 국내 로펌 해외진출대상국들의 법률시장 개방정책 연구, 2012년 12월 20일, 22면.

47) 최송자, 홍콩을 통한 중국 법률시장 진출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2012년 6월, 33면. 대표적으로 중국 상하이시 변호사협회는 2006년 5월 “외국로펌 주중대표기구의 불법법률서비스활동 종사에 관한 보고(关于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严重违法从事法律服务活动的报告)”를 상하이시 사법국에 제출하였으며, 동 보고서에서 외국로펌의 위법활동으로 중국변호사를 보조인원으로 고용하여 불법적인 법률서비스 활동에 종사, 중국법률서비스 영역에 속하는 비송사건, 법률서비스의 공개적인 종사, 중국의 소송업무와 중재업무 간접종사, 의뢰인을 대리하여 등기, 변경, 신청 등 절차 진행, 외국로펌과 외국변호사도 중국법률서비스 제공가능하다는 광고 행위, 법률서비스업무는 중국 경내에서 하고 비용수취는 자국의 본부에서 진행하는 방식의 탈세, 불법적인 투자행위로 중국로펌과 중국변호사 통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 전계자료, 23면.

48) 2005년 9월 베이징시 미국의 高特兄弟(Coudert Brothers LLP)사건, 2009년 상하이시 프랑스 CMS法乐菲 및 싱가포르 凯德(KHATT ARWONG)로펌 사건 등. 상세내용은 최송자, 전계논문, 34면.

49) 광둥, 텐진, 푸젠 등 3개 자유무역시험구는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가 출범한 지 약 1년 반이 지난 2015년 4월 21일 같은 날에 정식으로 출범되었다. 中国金融新闻网(2015.04.09.). 중국 4대 자유무역구 발전과정 <http://csf.kiep.go.kr/news/M001000000/view.do?articleId=12923>(검색일: 2015.8.20.)

(深化改革), 개방확대(扩大改革)”라는 국가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실험 장소로서 특히 대외개방을 위한 제도개혁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시험구에서 추진하는 제도개혁조치의 핵심내용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중국 정부는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출범 이래 다양한 대외개방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중 가장 최근인 2015년 4월 20일 국무원은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⁵⁰⁾를 발표하여 외국인투자 진입에 대해 중국 내에서는 최초로 네가티브 리스트 규제방식을 도입하였다. 동 네가티브 리스트 규제는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뿐만 아니라 추가로 설립된 광둥자유무역시험구, 텐진자유무역시험구, 푸젠자유무역시험구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동 네가티브 리스트에서⁵¹⁾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한 제한사항으로서 ① 외국로펌은 대표기구의 방식으로만 중국 진출이 가능하며 중국에 대표기구를 설립하거나 상주대표 파견 시 중국 사법행정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② 중국법률사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며 중국 국내로펌의 파트너가 될 수 없으며, ③ 외국 로펌의 주중대표기구는 중국의 집업변호사를 채용해서는 아니 되며 채용된 보조인력은 고객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아니 될 것 등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률시장 개방에 관한 규제는 앞서 살펴본 전국단위 법률시장 개방에 관한 규제의 핵심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처럼 4개의 자유무역시험구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법률시장개방 조치외에 가장 먼저 출범한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에서는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개방조치를 단행하였다.

50) 《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的通知》, 国办发[2015]23号, 2015년 4월 20일.

51) 《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的通知》, 国办发[2015]23号, 九、租赁和商务服务 (三十八) 法律服务 79-81.

즉 지난 2014년 12월 상하이시사법국은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중·외로펌변호사 상호 파견을 통한 법률고문직 수행에 관한 실시판법>(이하 중·외변호사상호파견판법)과<중국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중·외로펌 연합경영에 관한 실시판법>⁵²⁾을 제정하여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 중-외 로펌 간에 변호사를 상호 파견하여 법률고문직을 수행하는 것(이하 법률고문(변호사)상호파견제도)과 중-외 로펌 간 연합경영(이하 연합경영제도)이라는 두 가지 방식의 중·외로펌간 협력방식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이하에서는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에서 시행 중인 법률고문상호파견제도와 중-외로펌 간 연합경영제도의 내용을 상세히 소개한다.

(1) 법률고문상호파견제도

1) 개념

먼저 법률고문(변호사)상호파견제이란 중국로펌과 외국로펌이 계약을 통해 중국로펌과 외국로펌이 상대방에게 각각 변호사를 파견을 하여 법률고문으로서 각자의 업무수행 범위, 권한 내에서 분업과 협력 방식으로 업무협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⁵³⁾

2) 로펌의 조건

시범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로펌의 조건으로서 중국측 로펌은 ① 법인이 아닌 조합형식(合伙形式)으로 설립 후 만 3년 이상, 전임집업 변호사(专职执业律师)⁵⁴⁾가 20인 이상, 비교적 강한 법률서비스능력을

52) 上海市人民政府办公厅关于转发市司法局制订的《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中外律师事务所互派律师担任法律顾问的实施办法》、《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中外律师事务所联营的实施办法》的通知, 沪府办发[2014]63号, 2014年11月18日.

53) 중·외변호사상호파견판법 제2조 1항.

54) 전직변호사(专职律师)란 겸직변호사와 상대되는 의미로서, 변호사 자격 또는 법률직업자격증서를 취득한 자, 변호사 사무소에서 1년의 실습 후 전임변호사집업증을 받고 변호사 업무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직변호사는 반드시

보유하고 내부 관리 규범이 있을 것, ②최근 3년 내에 행정처벌 또는 업종협회의 처분(行业处分)⁵⁵⁾을 받은 적이 없을 것, ③ 주사무소(总所)가 자유무역시험구를 포함한 상하이에 소재하거나, 주사무소가 다른 성, 자치구, 직할시에 소재하나 이미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포함)에 분사무소를 설립한 경우이어야 한다. 외국로펌의 경우 ① 상하이에 대표기구를 설립한 기간이 만 3년 이상인 경우, 또는 다른 성과 시에 대표기구를 설립한 기간이 만 3년 이상인 경우, ② 기 설립한 대표기구가 최근 3년 내에 중국 감독관리부문의 행정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 이외에 중·외 로펌 중 최소 일방은 자유무역시험구 내에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즉 외국로펌이 자유무역시험구 내에 대표기구를 설립하거나 중국 로펌(또는 분사무소)이 자유무역시험구 내에 설립되어야 한다. 또한 중국 로펌 또는 외국로펌이 상호파견 또는 제휴할 수 있는 파트너 로펌은 1개로 제한되고, 상호 파견할 수 있는 변호사 수는 3명이하이며, 법률고문상호파견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중·외로펌은 제3의 로펌 및 그 분사무소(또는 대표기구)와 연합경영협력관계를 맺을 수 없다.⁵⁶⁾

3) 법률고문상호파견협약서의 체결

법률고문상호파견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외로펌 간에 관련 협의(계약)를 체결해야 한다. 이 때 중국의 다른 성, 자치국, 직할시의 로펌이 상하이에 설립한 분사무소에서 변호사를 파견하는 경우 또는 외국로펌이 주 상하이대표기구에서 변호사를 파견하는 경우

변호사 사무소에서 집업을 해야 하며, 집업의 범위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 송무와 법률자문, 법률고문 등 비소송업무도 포함한다. 百度百科, 专职律师, <http://baike.baidu.com/link?url=HRUrynhEc620b6cCo5ohhZmvcKCQJeqR7A4tUXFgutbzG0ZGWjQsaRf3rHwo16zgAAG0NaGTWekSGQEBRZkjAa>(최종검색일: 2015.8.23.)

55) 업종협회에 의한 처분(行业处分)이란 변호사 협회 등 업종 관련 협회가 변호사에게 내린 징계 등을 말한다.

56) 중·외변호사상호파견관법 제7조.

에는 주사무소의 서면수권을 받은 분사무소 또는 대표기구가 협력파트너 로펌과 법률고문상호과건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57)

법률고문상호과건계약서의 내용에는 ① 쌍방로펌의 집업허가증(조)번호, 외국로펌 주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포함) 대표기구 및 중국로펌(또는 분사무소)의 명칭, 수석대표 및 로펌 책임자의 성명 및 집업허가증(조)번호, 주소지; ② 쌍방이 상호과건하는 법률고문 변호사의 수량·명단·변호사집업증(조)번호; ③ 쌍방 상호과건변호사의 법률고문담당기간의 업무지점·업무범위·협력방식 및 그 권리의무; ④ 쌍방의 과건변호사에 관한 비용문제·협력수익·분배문제 및 채무부담방식; ⑤ 쌍방의 분쟁해결절차, 과건 변호사의 변경·증가에 대한 조건 및 절차; ⑥ 쌍방의 협력기한(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함), 위약책임 및 종료·협력연장의 절차; ⑦ 기타 기재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58)

4) 과건변호사의 요건

중국법률고문과 외국법률고문을 담당하기 위한 상호과건변호사가 구비해야 할 자격조건이다. 먼저 중국 로펌이 외국로펌의 주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포함)대표기구에 과건하여 중국법률고문을 맡는 중국 변호사는 5년 이상 중국에서 직업변호사 업무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비교적 강한 중국 대륙(内地) 및 섭외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최근 3년 내 행정처벌 또는 업종협회의 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외국로펌이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포함)에 설립한 중국로펌(또는 분사무소)에 과건하여 외국법률고문을 맡는 외국변호사는 5년 이상의 외국법률 업무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비교적 강한 소재국 및 국제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최근 3년 내 업무수행지 소재국 및 중국 변호사

57) 중·외변호사상호과건관법 제8조.

58) 중·외변호사상호과건관법 제9조.

감독관리부문의 행정처벌 또는 업종협회의 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중국로펌의 책임자(负责人) 및 분사무소 책임자는 외국로펌 파견 법률고문이 될 수 없으며⁵⁹⁾, 외국로펌의 책임자 및 그 주 중국대표기구의 수석대표 또한 중국로펌에 파견되어 외국법률고문이 될 수 없다.⁶⁰⁾

5) 파견변호사의 업무범위

먼저 외국로펌에 파견된 중국법률고문은 파견을 접수한 외국로펌 및 그 대표기구에게 중국법률정보·법률환경 등 방면의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중국변호사 신분으로 고객에게 중국법률자문서비스 및 중국법률의 적용에 관련된 민사소송·비소송법률사무의 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분업 및 협력의 방식으로 외국로펌 주 상하이 대표기구와 초국경적 또는 국제법률사무를 협력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중대하고 복잡한 법률사무에 대해서는 소재하는 중국로펌과 외국로펌이 협력하여 처리할 것을 제청할 수 있다.⁶¹⁾ 중국로펌에 파견된 외국법률고문은 파견을 접수한 중국로펌에 외국의 법률정보·법률환경 등 방면의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외국변호사 신분으로 고객에게 외국법률적용에 관련된 자문과 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분업 및 협력의 방식으로 중국로펌과 초국경적 또는 국제법률사무를 협력하여 처리할 수 있다.⁶²⁾ 다시 말해 협력 상대방인 중국로펌에 파견된 외국법률고문의 업무범위는 외국법률정보 및 법률환경, 초국경적 또는 국제법률사무로 한정되고 중국법률자문 등은 그 업무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는 중·외변호사상호파견관법 제12조 2항에서도 다시 한번 명시하고 있다.⁶³⁾

59) 중·외변호사상호파견관법 제5조 2항.

60) 중·외변호사상호파견관법 제6조 2항.

61) 중·외변호사상호파견관법 제11조 1항.

62) 중·외변호사상호파견관법 제11조2항.

63) “중국로펌 또는 그 분사무소에 파견된 외국법률고문이 본 관법에서 규정한 업무

6) 파견변호사의 책임부담방식

제휴쌍방의 책임부담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상호파견쌍방은 파견기간 동안 위법행위 또는 업무상 과실로 인해 당사자 또는 파견을 받은 외국로펌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포함)소재 대표기구 및 중국로펌 또는 분사무소에 손실을 끼친 경우 그가 소재한 중국로펌 또는 외국로펌이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중국로펌과 외국로펌은 각자의 규정에 따라 과실이 있는 파견변호사에 대해 구상할 수 있다.⁶⁴⁾ 중국법률고문 또는 외국법률고문이 그가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로펌과 제휴하여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동과실로 인해 당사자 또는 쌍방의 로펌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제휴쌍방의 로펌이 제휴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한다.⁶⁵⁾

7) 감독관리기제

제휴쌍방인 중·외 로펌은 협의서의 약정에 따라 법률고문상호파견의 업무활동, 시범사업의 협력상황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하며, 협력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파견변호사에 대해서는 쌍방의 협상을 통한 의견일치를 거쳐 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여 즉시 파견변호사를 교체하고 협력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즉시 소통·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⁶⁶⁾ 중국로펌이 외국로펌 주중국 대표기구에 파견한 변호사가 중국법률고문을 담당할 업무현황 및 외국로펌이 파견한 외국법률고문과의 협력상황은 로펌의 연도검사평가 및 변호사업무수행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외국로펌주중국대표기구관리조례>와 <사법부의 <외국로펌주중국대표기구관리조례>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파견기간 동안 중국법률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고 중국법률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다고 표명할 수도 없으며, 명의상 또는 실질상 중국로펌의 동업인(合伙人)이 될 수 없으며, 중국로펌 또는 분사무소의 내부관리에 참여하여서도 아니 된다.”

64) 중·외변호사상호파견관법 제13조1항.

65) 중·외변호사상호파견관법 제13조2항.

66) 중·외변호사상호파견관법 제14조.

연도평가에 포함된다.⁶⁷⁾ 마찬가지로 외국로펌이 중국로펌에 파견한 중국법률고문과의 협력상황 및 중국로펌 또는 분사무소에 파견되어 외국법률고문을 맡아 수행한 업무상황도 외국로펌의 주중대표기구의 연도검사에 포함된다.⁶⁸⁾

(2) 중·외로펌연합경영제도

1) 연합경영(联营)⁶⁹⁾의 개념

중국로펌과 외국로펌 간 연합경영이란 중국로펌과 외국로펌이 협의서(계약서)에서 약정한 권리와 의무에 따라 자유무역구시험구에서 제휴를 실시하는 것으로 분업·협력방식으로 중국과 외국고객에게 각자 중국법률과 외국법률의 적용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초국경 그리고 국제법률사무를 협력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연합경영기간 동안 쌍방의 법적 지위, 명칭과 재무는 각자 독립을 유지하고, 민사책임도 각자 독립적으로 부담한다.

67) 중·외변호사상호파견관법 제16조 1항.

68) 중·외변호사상호파견관법 제16조 2항.

69) “联营”, 즉 연합경영은 “공동경영”(한-중 FTA 투자기회: 중국 법률시장, 코트라, 2015.06.09), “제휴”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연합경영의 경우 중국의 <민법통칙(民法通则)>상 연합경영에 대한 정의와 중·외로펌간 연합경영제도의 내용을 고려할 때 “계약형연합경영”방식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합경영이란 기업 간, 기업과 사업단위 간 수평적 경제연합의 법률형식 중 하나로서 법인형연합경영(法人型联营), 동업형연합경영(合伙型联营) 및 계약형연합경영(合同型联营)으로 나뉜다. 중국의 <민법통칙> 제51조~제53조에서 이들 3가지 종류의 연합경영방식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법인형연합경영은 유한책임회사이며(민법통칙 제51조), 계약형연합경영은 계약의 약정에 따라 각자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그 권리의무는 계약상 약정에 따르고, 민사책임을 각자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민법통칙 제53조). 동업형연합경영은 연합경영자 간에 연합경영하지만 법인의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상호간에 연대책임을 부담하고 연합경영자는 자기가 이 연합경영단위의 모든 재산으로서 무한책임을 부담한다(민법통칙 제52조). 百度百科, 联营, <http://baike.baidu.com/subview/10922/10922.htm>(검색일: 2015.8.1.).

2) 연합경영의 신청조건

(a) 중국로펌

연합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중국로펌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한다.⁷⁰⁾ ① 파트너십형식으로 설립 후 만 3년이 경과할 것; ② 전임변호사를 20인 이상, 비교적 강한 법률서비스능력, 내부관리규범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3년내 행정처벌 또는 업계의 처분의 받지 않았을 것; ③ 본점이 상하이(자유무역구 포함)에 설립되었거나, 본점이 다른 성·자치구·직할시에 설립되었으나 이미 상하이(자유무역구 포함)에 분사무소가 설립된 경우이다. 한편 중국로펌 분사무소는 연합경영 일방 주체로서 신청할 수 없다.⁷¹⁾

(b) 외국로펌

외국로펌의 경우, ①상하이에 설립한 대표기구가 만 3년이 경과, 또는 중국의 다른 도시에 설립한 대표기구가 만 3년이 경과하였고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포함)에 대표기구를 설립하였을 것; ②이미 설립한 대표기구가 최근 3년 내 중국 감독관리부문의 행정처벌을 받은 적이 없을 것 등 2가지이다.⁷²⁾ 한편 외국로펌의 주중 대표기구는 연합경영의 일방 주체로서 연합경영을 신청할 수 없다.⁷³⁾

3) 연합경영의 승인절차 및 제한사항

중국로펌 또는 외국로펌은 오직 하나의 연합경영합작관계를 설립할 수 있으며, 연합경영은 상하이시사법국의 승인(核准)을 받아야 한다.⁷⁴⁾ 또한 연합경영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중국로펌과 외국로펌은 제3의 로

70) 중·외연합경영관법 제3조 1항.

71) 중·외연합경영관법 제3조 2항.

72) 중·외연합경영관법 제4조 1항.

73) 중·외연합경영관법 제4조 2항.

74) 중·외연합경영관법 제5조 1항.

펌 및 그 분사무소(혹은 대표기구)와 변호사상호과건을 통한 법률고문
 합작관계를 설립해서는 아니 된다.⁷⁵⁾ 즉 중국로펌이든 외국로펌이든
 모두 변호사상호과건제도와 연합경영제도를 동시에 활용할 수 없고
 둘 중 하나의 협력방식만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외 연합경영을 위해서는 연합경영서면협약(协议)을 체결해야
 하며 그 협약서의 내용은 ㉠ 연합경영쌍방의 명칭, 주소지, 책임자 또
 는 관리파트너 성명; ㉡ 연합경영의 명칭, 로고; ㉢ 연합경영기간; ㉣
 연합경영업무범위; ㉤ 쌍방의 연합경영업무참여변호사 및 각자 책임
 자의 안배; ㉥ 공용사무장소 및 설비의 안배; ㉦ 공용행정, 사무요원
 등 보조인원의 안배; ㉧ 연합경영수임료의 분배 및 운영비용의 분담
 계획; ㉨ 연합경영 쌍방 변호사의 업무수행보험 및 책임부담방식의
 안배; ㉩ 연합경영의 종료 및 청산; ㉪ 위약책임; ㉫ 분쟁해결; ㉬ 기
 타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⁷⁶⁾ 한편 협약서에서 약정하는 연합경영기
 한은 통상 2년 이상이어야 한다.⁷⁷⁾

이때 연합경영명칭의 경우 중국로펌의 명칭에 외국로펌명칭(중국어,
 외국어 번역명칭 사용가능)을 더하고 여기에 “(자유무역시험구)연합경
 영사무실”을 더한 명칭으로 구성해야 하며, 이러한 명칭은 상하이시사
 법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⁷⁸⁾

중-외로펌 간 연합경영의 신청 및 승인은 사법부의 <홍콩특별행정
 구와 마카오특별행정구로펌과 내지로펌의 연합경영관리관법>에서 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⁷⁹⁾ 연합경영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외로펌
 은 공동으로 상하이시사법국에 연합경영신청서, 연합경영협약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시

75) 중·외연합경영관법 제5조 2항.

76) 중·외연합경영관법 제6조 1항.

77) 중·외연합경영관법 제6조 2항.

78) 중·외연합경영관법 제7조.

79) 중·외연합경영관법 제8조 1항.

사법국은 승인해 주고 연합경영허가증을 발급하며,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승인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한다.⁸⁰⁾

4) 연합경영 시 쌍방의 업무범위, 수입료 분배 등

중국로펌과 외국로펌의 연합경영은 공동으로 연합경영의 명의로 당사자의 위탁 또는 기타 로펌의 위탁을 받아 각자 허가받은 업무범위 내에서 분업과 협력의 방식으로 중국 및 외국법률사무를 처리하거나 초국경 및 국제법률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외국로펌 및 그 주중대표기구·대표 및 피고용인은 중국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⁸¹⁾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변호사 상호과건제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외국로펌의 업무범위는 국제법과 외국변호사의 원자격국법에 한정되고 중국법률사무는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입료 분배와 관련하여, 중·외로펌이 연합경영명의로 공동으로 법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위탁인으로부터 전체 수입료를 수취한 후 다시 연합경영협약서에 따라 분배할 수 있다. 또한 연합경영 중 각자가 처리한 법률사무에 대해서는 각자 위탁인으로부터 수입료를 수취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전에 위탁인에게 고지해야 한다.⁸²⁾

연합경영을 위한 공간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사무공간 및 시설을 공동사용하고 같은 공간에서 사무를 처리해야 하며, 행정·사무요원 등 보조인원을 공동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공동사용하는 사무장소는 자유무역시험구 내의 중국로펌(또는 그 분사무소) 또는 자유무역시험구 내에 설립한 외국로펌 주 상하이대표기구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공용사무장소 및 설비 및 보조인원의 비용은 연합경영협약서의 약정에 따라 분담한다.⁸³⁾

80) 중·외연합경영관법 제8조 2항.

81) 중·외연합경영관법 제9조.

82) 중·외연합경영관법 제10조.

83) 중·외연합경영관법 제12조.

업무상 책임부담과 관련하여, 연합경영 쌍방이 연합경영 업무 수행 중 위법한 업무처리 또는 과실로 인해 위탁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연합경영협약에 따라 과실이 있는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또는 쌍방이 배상책임을 분담한다.⁸⁴⁾ 한편, 연합경영쌍방 및 그 소속변호사는 각각 관련 규정에 따라 각자의 명의로 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⁸⁵⁾

5) 연합경영기한의 연장 및 종료

연합경영기한이 만료하고 합작쌍방이 연장을 결의한 경우 기존 협약에 추가 서명한 연합경영협약을 시 사법국에 제출해야 하며, 종료할 것으로 결의한 경우 쌍방 명의로 시 사법국에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⁸⁶⁾

중·외연합경영은 다음의 상황에서 종료된다. 연합경영기한이 도래했을 때 쌍방이 연장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연합경영 쌍방이 협약의 약정에 따라 연합경영을 종료한 경우; 연합경영의 한쪽 당사자가 존속하지 않거나 파산한 경우; 외국로펌의 주중 대표기구가 법에 따라 말소된 경우; 기타 법에 따라 연합경영을 종료해야 하는 경우 등 5가지가 규정되어 있다.⁸⁷⁾

6) 연합경영의 관리감독

주관기관인 상하이시사법국(上海市司法局)은 중국로펌과 외국로펌 간에 체결한 상호과건계약, 필요조건의 증명자료 및 기타 자료를 접수보관(备案)한다.

84) 중·외연합경영관법 제11조 1항.

85) 중·외연합경영관법 제11조 2항. ‘변호사배상책임보험제도’는 미국과 영국에서도 의무화 되어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의무화 되어 있지는 않고, 법률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책임보험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변호사 배상책임보험 가입의 의무화가 제안되고 있다. 법률신문, “변호사배상책임보험제도의 필요성” - 제3010호 - 2001-09-12 오전 9:45:23, <https://m.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5856&kind=BA01&key=>(검색일: 2015.07.20.)

86) 중·외연합경영관법 제8조 3항.

87) 중·외연합경영관법 제13조 1항.

연합경영시범사업의 시행에 대해 상하이시 사법국이 감독관리를 맡고, 푸둥신구사법국이 연합경영 및 업무진행상황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 지도를 진행한다.⁸⁸⁾ 또한 연합경영 쌍방인 중·외로펌은 매년 1분기 내에 푸둥신구 사법국을 통해 상하이시 사법국에 연합경영상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⁸⁹⁾

중국로펌과 외국로펌이 연합경영 및 그 업무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위법위규행위가 있는 경우 상하이시 사법국이 관련 구와 현의 사법국과 함께 조사처리한다.⁹⁰⁾ 이때 중국로펌 및 그 변호사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 사법국 또는 관련 구·현사법국(区县司法局)이 <중국변호사법>과 <변호사 및 로펌 위법행위 처벌관법(律师和律师事务所违法行为处罚办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반면, 외국로펌 주중 대표기구 및 그 대표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 사법국이 <외국로펌 주중대표기구 관리조례(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例)>와 <사법부의 ‘외국로펌 주중대표기구 관리조례’의 집행에 관한 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 외국로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3) 소 결

이번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에서 수행하는 중국의 법률시장개방조치는 지금까지 중국의 법률시장개방의 역사적 과정에서 볼 때 두 가지 정도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⁹¹⁾ 첫 번째로, 홍콩과 마카오지역의 로펌에 대해 다년간 시행해오던 법률고문과견제도와 연합경영제

88) 중·외연합경영관법 제14조 1항.

89) 중·외연합경영관법 제14조 2항.

90) 중·외연합경영관법 제15조 1항.

91) 自贸区中外律所互派律师、联营焦点十问, 发布时间: 2014-12-10 10:49:40 作者: 王凤梅来源: 上海法治声音, <http://www.acla.org.cn/html/lilunyanjiu/20141210/19093.html> (검색일: 2015.07.15.)

도를 외국로펌에까지 확대·시행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중국은 2001년말과 2002년초에 각각 <외국로펌 주중대표기구관리조례>와 <홍콩·마카오특별행정구 로펌 주내지대표기구관리관법>⁹²⁾을 제정하여 처음으로 중국의 법률시장을 대외에 개방하였다. 상기 규정에 따라 당시에는 홍콩, 마카오로펌이든 외국로펌이든 모두 중국대륙로펌과 연합경영할 경우 단일법률사무에 대한 위탁계약체결방식만 허용되었다. 그 후 2003년 중국 사법부는 홍콩과 마카오로펌과 중국대륙로펌 간에 위탁계약방식 이외에 법률고문담당과 연합경영방식 두 가지 합작방식을 허용하여 홍콩과 마카오 로펌에 대한 추가적인 개방이 이루어졌다.⁹³⁾ 이에 따라 앞에서 살펴본 중국대륙로펌과 외국로펌 간의 변호사상호과건제도와 연합경영방식의 합작을 허용한 것은 동 조치가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내로 한정되었다는 한계가 있지만 중국정부가 그동안 홍콩과 마카오 로펌에게만 특혜를 주었던 법률시장개방조치를 외국로펌에게까지 확대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두 번째는, 앞서 언급한 홍콩과 마카오로펌과 중국대륙로펌 간 변호사상호과건제도는 홍콩과 마카오변호사가 중국대륙로펌으로 파견되는 “일방과건”방식이라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에서의 시범사업은 중국과 외국변호사의 “쌍방과건”으로 그 범위를 확대시켰다는 점이다. 이러한 “쌍방과건”방식은 홍콩과 마카오로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⁹⁴⁾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현재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에서 시범시행되고 있는 중·외로펌 간 변호사상호과건제도와 연합경영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외국로펌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홍콩과 마카오로펌에 대해서도

92) 원문명은 《香港、澳门特别行政区律师事务所驻内地代表机构管理办法》이다.

93) 원문명은 각각 《香港法律执业者和澳门执业律师受聘于内地律师事务所担任法律顾问管理办法》과 《香港特别行政区和澳门特别行政区律师事务所与内地律师事务所联营管理办法》이다. 여기서 “내지(内地)”는 홍콩, 마카오, 대만을 제외한 중국 대륙을 말한다.

94) 중·외변호사상호과건관법 제19조.

진일보한 개방조치로서 중국법률시장개방 과정에서 비교적 큰 폭의 시장개방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 번째는, 변호사상호과건제도와 연합경영제도의 도입은 고객입장에서 중국법률서비스와 외국법률서비스를 “원스톱(一站式)”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고객은 변호사상호과건계약을 체결한 중국로펌 또는 외국로펌대표처, 또는 중·외연합경영기구 중 한 곳을 통해서 중·외법률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상하이시에 외국(홍콩과 마카오)로펌의 진출상황과 중·외연합경영 등 협력기제에 대한 수요는 다음과 같다.⁹⁵⁾ 현재 상하이시에는 153개의 외국로펌이 진출해 있으며, 이들의 중·외합작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고 한다. 그러나 상하이에는 약 1,300여 개의 로펌이 있으며 이중 70%는 변호사상호과건 및 연합경영제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특히 국제법률서비스의 수요는 매우 높으나 관련 인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다.

3. 광둥-홍콩, 광둥-마카오 간 파트너십연합경영로펌 시범사업

(1) 개요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은 자유무역시험구에서 법률시장 추가 개방을 위한 조치로서 외국로펌과 중국로펌 간의 변호사상호과건제도와 연합경영제도를 도입하여 중·외 로펌간 협업메커니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에 기초한 연합경영제도(合同型联营)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EPA의 체결에 따라 광둥성과 홍콩·마카오 간 각각 우선적으로 시행되었으나 그 결과는 그다지 좋지

95) 自贸区中外律所互派律师、联营焦点十问, 发布时间: 2014-12-10 10:49:40 作者: 王凤梅来源: 上海法治声音, <http://www.acla.org.cn/html/lilunyanjiu/20141210/19093.html> (검색일: 2015.07.15.)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4년 1월 중국정부는 광둥성과 홍콩·마카오의 로펌 간의 협력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파트너십형태의 연합경영(合伙型联营)을 시범적으로 허용하는 <사법부의 광둥성에서 본토로펌과 홍콩·마카오로펌 간 파트너십연합경영시범사업업무의 시행의 동의에 관한 승인·회신>⁹⁶⁾(이하 파트너십시범사업회신)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중국정부의 승인에 따라 광둥성사법청(广东省司法厅)은 광둥-홍콩, 광둥-마카오 간 파트너십연합경영로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홍콩특별행정구와 마카오특별행정구로펌과 본토로펌의 광둥성에서 파트너십연합경영시행에 관한 시범시행판법>(이하 시범시행판법)⁹⁷⁾을 제정·시행 중에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규범들을 중심으로 파트너십연합경영로펌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2) 제도의 주요 내용

1) 개념

파트너십연합경영이란 하나의 본토로펌과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홍콩 또는 마카오 로펌이 광둥성 내 지정된 시험구역에서 파트너십 연합경영로펌을 설립하고 연합경영로펌의 명의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⁹⁸⁾

96) 司法部关于同意在广东省开展内地律师事务所与港澳律师事务所合伙联营试点工作的批复, 司复[2014]2号, 2014年1月27日.

97) 广东省司法厅关于香港特别行政区和澳门特别行政区律师事务所与内地律师事务所在广东省实行合伙联营的试行办法, (广东省司法厅2014年8月4日以粤司办[2014] 218号发布 自2014年9月1日起施行)

98) 시범시행판법 제2조.

2) 구비조건

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양 지역 로펌의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홍콩, 마카오로펌의 구비조건은 ① 홍콩, 마카오 법률에 따라登記·설립되었을 것; ② 홍콩, 마카오에서의 법률서비스 업력이 만 5년 일 것; ③ 10명 이상의 집업변호사가 있어야 하며, 파트너 또는 책임자는 반드시 홍콩, 마카오에 등록된 집업변호사 일 것; ④ 홍콩, 마카오의 법률사무 및 중국 이외의 변호사 집업을 획득한 다른 국가(지역)의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 ⑤ 연합경영 신청 전 3년 내 주사무소가 홍콩, 마카오변호사 관리감독기구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본토주재대표기구가 본토감독관리부문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을 것 등이다.⁹⁹⁾ 그 외에 연합경영에 참여하는 홍콩, 마카오로펌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한 개의 로펌의 집업변호사는 10명이상이며, 기타 로펌집업변호사는 5명 이상이어야 한다.¹⁰⁰⁾

다음으로 본토로펌의 구비조건은 ① 설립한 지 5년 이상된 파트너십로펌일 것; ② 집업변호사가 30명 이상 있을 것; ③ 주사무소가 광둥성 내에 설립된 경우 또는 다른 성, 자치구, 직할시에 주사무소가 설립된 경우에는 광둥성 내에 분사무소가 설립되어 있을 것; ④ 연합경영 신청 전 3년 내에 주사무소 및 광둥성에 설립된 분사무소가 행정처벌과 업계의 처분을 받은 적이 없을 것 등이다.¹⁰¹⁾ 이와 동시에 본토와 홍콩, 마카오로펌이 각각 광둥성 시범지역에 설립한 분사무소 또는 대표처를 각각의 파트너십연합경영에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며, 연합경영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시범사업소재지시에 설립한 원 대표기구 또는 분사무소는 말소해야 한다.¹⁰²⁾

99) 시범시행관법 제5조 1항.

100) 시범시행관법 제5조 2항.

101) 시범시행관법 제6조.

102) 시범시행관법 제11조.

한편, 파트너십연합경영로펌의 명칭은 “연합경영자호¹⁰³⁾+(설립소재지명칭)+연합경영로펌” 3부분의 내용의 순서대로 구성된다.¹⁰⁴⁾

3) 출자액과 파견변호사의 자격

출자액과 관련하여, 파트너십연합경영로펌의 최저출자액은 500만 위안이며, 출자방식은 연합경영 각 측이 협상하여 확정한다. 연합경영의 홍콩, 마카오측이 하나의 로펌인 경우에는 그 출자비율은 30% 이상이어야 하며 49% 이하여야 하며, 여러 개의 로펌인 경우에는 각 측의 출자비율은 모두 본토로펌의 출자비율보다 낮아야 한다.¹⁰⁵⁾ 또한 본토로펌이 파트너십연합경영의 주도를 보장하기 위해 연합경영로펌의 책임자는 본토로펌에서 파견한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하나 다른 파트너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¹⁰⁶⁾

인수출자방식(认缴出资方式)을 채택하나 연합경영을 신청할 때 실제 출자는 인수액의 30% 이상일 것이 요구되며, 그 나머지는 연합경영을 승인받은 후 3년 내에 납부완료해야 한다.¹⁰⁷⁾

연합경영로펌의 각 측 파견변호사의 인원수 합계가 10인 이상이어야 하며, 각 측의 파견변호사 수는 연합경영 각 측의 협의로 결정하고, 연합경영 각 측은 파견한 변호사 중에서 1명의 책임리더 변호사를 지정한다.¹⁰⁸⁾ 연합경영 각 측의 파견변호사의 업력은 3년 이상이어야 하며, 파견 전 2년 내에 행정처벌 또는 업계의 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¹⁰⁹⁾ 홍콩, 마카오로펌이 파견한 변호사는 홍콩, 마카오지역변호사일 수도 있고 홍콩, 마카오에서 고용되어 등록된 외국변호사일 수도 있다.

103) 字号란 “SONY” 등과 같은 기업명칭 중 가장 핵심적이고 구별성이 있는 명칭을 말한다. 百度百科, 字号, <http://baike.baidu.com/view/240832.htm>(검색일: 2015.7.20.)

104) 시범시행판법 제7조.

105) 시범시행판법 제8조 1항.

106) 시범시행판법 제9조 3항.

107) 시범시행판법 제8조 2항.

108) 시범시행판법 제9조 1항.

109) 시범시행판법 제9조 2항.

파견변호사는 동시에 주사무소의 주중국대표기구에서 대표를 겸임할 수 없고 동시에 외국로펌 주중국대표기구에 고용될 수 없다.¹¹⁰⁾

4) 파트너십연합경영협의를 및 정관의 작성

연합경영을 신청한 각 측은 파트너십연합경영협의를 체결해야 하며, 동 협의서에는 연합경영 각 측의 출자비율, 출자액 및 출자방식, 파견변호사 수 및 연합경영로펌의 책임자, 연합경영 각 측의 권리의무, 연합경영의 수입배분방식, 업무지출부담방식 및 책임부담방식, 연합경영 각 측의 파견변호사 및 채용된 보조인원의 분배방식, 직업책임보험 및 사회보험안배, 연합경영 각 측의 위약책임, 분쟁해결절차, 연합경영의 기한 및 종료, 연장의 조건과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¹¹¹⁾ 이중 각 측이 협의서에서 약정하는 연합경영의 최소기한은 최소 3년 이상이어야 하며, 파트너십연합경영협의를 연합경영이 승인된 날로부터 발효한다.¹¹²⁾

연합경영로펌은 정관을 작성해야 하며, 정관의 내용은 연합경영로펌의 명칭, 책임자 및 주소; 연합경영 각 측 로펌의 명칭; 연합경영로펌의 조직형식; 업무범위; 출자비율, 출자액 및 출자방식; 연합경영 각 측 파견변호사 및 고용된 보조업무인원의 안배; 연합경영로펌의 관리구조 및 각 측의 권리의무; 연합경영로펌의 책임자의 직책(职责) 및 선임, 변경절차; 수입분배방식, 업무지출부담방식, 책임부담방식; 연합경영로펌의 재무관리제도, 인원분배제도, 변호사직업책임보험안배 및 자산처리방법; 연합경영사무소의 변경, 종료의 조건과 절차; 연합경영사무소정관의 개정절차; 연합경영기한 및 연장절차 등 13가지이며, 이러한 정관은 연합경영이 승인된 날로부터 발효한다.¹¹³⁾

110) 시범시행관법 제9조 4항.

111) 시범시행관법 제11조 1항

112) 시범시행관법 제11조 2, 3항.

113) 시범시행관법 제13조.

5) 업무배치와 제한

파트너십연합경영의 업무배치 및 제한과 관련하여, 두 지역의 파트너십연합경영 방식으로 법률서비스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본토의 법률, 법규 및 규장을 준수해야 하고 변호사직업윤리와 직업기율을 지켜야 하며, 국가안전, 사회공공질서 및 공공이익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광둥성사법행정기관과 변호사협회의 감독과 지도를 받는다.¹¹⁴⁾ 중국의 국가적 상황(国情)을 바탕으로 외국의 경험을 참조하여 파트너십연합경영로펌은 오직 민상사영역의 소송 및 비소송법률사무의 처리만을 수리할 수 있으며, 본토 법률이 적용에 관련되는 형사소송, 행정소송법률사무의 처리는 수리할 수 없다.¹¹⁵⁾ 이와 동시에 연합경영 각 측의 파견변호사의 직업범위, 즉 본토 일방 파견 변호사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직업관리관법>의 규정을 집행하고, 홍콩과 마카오측 파견변호사는 <홍콩·마카오특별행정구로펌주본토대표기구관리관법>의 규정을 집행하며 본토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¹¹⁶⁾

연합경영로펌은 주사무소의 명의로 통일적으로 업무를 수리한다. 본토법률사무에 속하는 것은 본토파견변호사가 처리하고 홍콩, 마카오 또는 외국법률사무에 속하는 것은 홍콩, 마카오 파견변호사가 처리한다. 이중 본토법률의 적용과 홍콩, 마카오 또는 외국법률의 적용에 관한 법률사무에 대해서는 각 측의 파견 변호사가 각자의 직업범위에 따라 분업과 협력으로 처리한다. 섭외법률사무, 특히 국제조약, 국제관습법의 적용에 관한 법률사무는 각 측의 파견변호사가 협력해서 처리한다.¹¹⁷⁾

한편, 연합경영로펌 각 측의 파견변호사와 연합경영에 참여하는 각 측 로펌의 변호사는, 동일 민상사소송 또는 비소송법률사무사건에서

114) 시범시행관법 제3조.

115) 시범시행관법 제20조.

116) 시범시행관법 제21조.

117) 시범시행관법 제22조 1항.

이익충돌관계에 있는 당사자를 위해 동시에 대리인을 맡거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¹¹⁸⁾

6) 파트너십연합경영의 내부관리

연합경영로펌내부의 효과적인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연합경영변호사사무소는 당사자로부터 변호사서비스비용을 통일적으로 받아야 한다. 본토법률사무에 속하는 것은 본토변호사서비스비용관리규정 및 그 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홍콩, 마카오법률사무에 속하는 것은 홍콩, 마카오의 변호사서비스비용기준 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비용을 받으며, 섭외법률사무에 속하는 것은 당사자와 협의하여 비용을 받는다.¹¹⁹⁾

연합경영로펌은 업무수요에 따라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으며, 본토 변호사의 고용은 연합경영 본토측 로펌 명의로 고용하고 당해 과건변호사로 삼아야 한다. 홍콩, 마카오 또는 외국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연합경영 홍콩, 마카오 측의 로펌의 명의로 고용하고 당해 과건변호사로 삼아야 한다.¹²⁰⁾ 그 외 연합경영로펌은 조리(助理), 사무직원 및 기타 보조업무인원을 고용할 수 있다.¹²¹⁾

연합경영로펌은 변호사직업책임보험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연합경영로펌 및 그 과건변호사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법 또는 과실로 인해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특수보통파트너십(特殊普通合伙)¹²²⁾의 책임기제 및 파트너십연합경영협약서가 약정한 방식에 따라 그 채무

118) 시범시행판법 제22조 2항.

119) 시범시행판법 제23조.

120) 시범시행판법 제25조 1항.

121) 시범시행판법 제25조 2항.

122) 특수보통파트너십이란 유한책임파트너십(有限责任合伙,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약칭LLP)로서 보통파트너십(普通合伙)과 구별되며, 가장 큰 특징은 과실이 없는 동업인은 무한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출자액만큼의 유한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로펌, 회계사사무소, 의사사무소, 설계사사무소 등에서 채택되며, 특수보통파트너십기업은 그 이름에 반드시 ‘특수보통파트너십’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百度百科, 有限责任合伙, <http://baike.baidu.com/view/4507186.htm> (최종검색일: 2015.08.19.)

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¹²³⁾ 연합경영로펌은 관리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위원회 구성원은 연합경영 각 측의 파견변호사 중에서 추천·선임한다.¹²⁴⁾ 연합경영 각 측의 로펌은 파트너십연합경영 및 파견변호사의 집업활동에 대해 감독을 하고, 연합경영중대사무협의결정기제를 마련하며 연합경영 중 발생한 문제를 제때에 협상으로 해결한다.¹²⁵⁾

7) 연합경영에 대한 감독관리

광둥성사법청(省司法厅)은 관련 지방시사법국과 함께 연합경영로펌의 집업상황에 대해 감독 및 지도를 한다. 연합경영로펌 소재지의 지방시사법국은 연합경영로펌의 집업활동에 대해 일상적인 감독·관리를 시행하고 시 변호사협회는 연합경영로펌 및 그 변호사의 집업활동을 관리한다. ¹²⁶⁾ 연합경영홍콩·마카오 일방의 파견변호사는 ‘홍콩·마카오변호사회원’의 신분으로 성·시 변호사협회에 가입하여 변호사협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업계의 관리를 받을 수 있다. ¹²⁷⁾

연합경영사무소는 매년 1분기에 설립지의 시 사법국에 의해 연도검사를 받는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전년도 주사무소의 법률서비스활동에 대한 종결보고서; 회계사무소 또는 심계(审计)사무소의 심계¹²⁸⁾를 거친 주사무소의 연도재무제표 및 납세증빙서류; 각 측이 파견한 변호사 및 고용인원 변동상황 및 주사무소의 중요변경사항; 이 판법규정을 집행한 기타 상황에 관한 자료이다.¹²⁹⁾ 연합경영사무소에 집업위법위규행위가 있거나 내부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상

123) 시범시행판법 제26, 27조.

124) 시범시행판법 제28조.

125) 시범시행판법 제30조.

126) 시범시행판법 제31조.

127) 시범시행판법 제32조.

128) 심계(审计)란 전문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법률에 따라 국가의 각급 정부 및 금융기구, 기업사업조직의 중대프로젝트와 재무수지에 대해 사전, 사후에 진행하는 독립적인 경제감독활동으로서 일종의 재무감사를 의미한다. 百度百科, 审计, <http://baike.baidu.com/subview/289/5033556.htm> (최종검색일: 2015.08.19.)

129) 시범시행판법 제33조.

응하는 처벌을 받게 되고, 본토변호사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변호사법>과 <변호사 및 로펌의 위법행위 처벌관법>에 따라, 홍콩, 마카오 측이 파견한 변호사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홍콩·마카오특별행정구 로펌 주본토대표기구관리관법>에 따라 처리한다.¹³⁰⁾

8) 시범사업의 배치 및 수량

중국공산당광둥성위원회, 성정부의 광둥성-홍콩, 광둥성-마카오 간 진일보한 경제협력과 광둥성-홍콩·마카오자유무역원구 건설의 전체 배치에 따라, 파트너십연합경영의 시범사업지역은 셴전첸하이(深圳前海)·광저우난샤 및 주하이형친 3개 지역이며, 초기시범사업을 위한 파트너십연합경영로펌은 10개 정도로 정하고, 향후 시범사업의 상황 및 양 지역 로펌의 협력 수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¹³¹⁾

제 3 절 한-중 FTA 후속협상 대응방안

이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중국의 법률시장 개방에 관한 국내법상 규제조치를 한국의 외국법자문사법 및 동법 시행령과 한-중 FTA 법률시장 양허안 그리고 중국의 기체결 FTA 중 법률시장 개방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중국 대륙과 홍콩 간 CEPA상 중국의 법률시장 양허안 등과 비교검토하여 한-중 FTA 법률시장 후속협상 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30) 시범시행관법 제35조.

131) 시범시행관법 제4조 2항.

1. 한-중 양국의 국내법상 법률시장 규제 비교

(1) 외국인의 변호사자격취득

중국은 외국인의 변호사자격취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은 국가사법고시를 통과하는 것인데, 중국의 <국가사법고시실시관법>¹³²⁾ 제15조에서는 국가사법고시의 참여자격 중의 하나로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보유할 것”을 규정하여 외국인의 중국변호사 자격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홍콩과 마카오의 영구주민 중 중국공민은 2003년 11월에 제정된 <홍콩특별행정구와 마카오특별행정구 주민의 국가사법고시 참가에 관한 약간의 규정>제1조와 2조에 따라 2004년부터 국가사법고시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졌고,¹³³⁾ 대만 출신 또한 2008년 5월에 제정된 <대만주민의 국가사법고시 참가에 관한 약간의 규정> 제2조¹³⁴⁾에 따라 국가사법고시 참가자격이 부여되었다.

한국의 경우 변호사 자격시험을 규율하고 있는 사법시험법과 변호사시험법 모두에서 국적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도 변호사 자격 취득 기회는 열려있는 셈이다.¹³⁵⁾

132) 《国家司法考试实施办法》，2008年8月8日 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司法部印发，司发[2008]11号，제2조.

133) 《香港特别行政区和澳门特别行政区居民参加国家司法考试若干规定》，中华人民共和国司法部令 第 80 号，2003.11.30., 第一条 为了落实国务院批准的《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和《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以下简称两个《安排》)，允许符合规定条件的香港、澳门居民参加国家司法考试，根据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司法部联合制定的《国家司法考试实施办法(试行)》，制定本规定。第二条 香港、澳门永久性居民中的中国公民，可以报名参加在内地举行的国家司法考试。상기 제1조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홍콩과 마카오 출신에 대한 중국의 국가사법고시 참가 허용은 중국대륙과 홍콩, 마카오 간에 각각 체결된 CEPA에서의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조치였다.

134) 《台湾居民参加国家司法考试若干规定》中华人民共和国司法部令 第110号，2008.6.4., 第二条具有台湾地区居民身份的人员可以报名参加国家司法考试。

135) 그러나 외국인의 한국변호사자격취득은 법제도적으로는 개방되어 있지만 시험

(2) 진출형태 및 대표처 증설

중국의 경우 외국변호사는 주중대표처를 설립하고 이 대표처를 통해서만 법률서비스활동을 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한 후 ① 외국법자문로펌의 구성원; ② 외국법자문로펌의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 ③ 로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소속 외국법자문사 등 3가지 형태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¹³⁶⁾ 중국보다 외국변호사의 업무수행방식이 더 자유롭다.

대표처의 증설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중국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대표처의 증설을 허용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 외국법자문사가 2개이상의 외국법자문로펌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여 증설을 금지하고 있다.¹³⁷⁾

(3) 대표의 인원수 및 자격요건

대표처 또는 외국법자문로펌의 대표의 인원수는 중국의 경우 2명 이상(수석대표 및 대표)인 반면 한국의 경우 1명 이상이다. 변호사의 직무수행 경력과 관련하여, 중국의 경우 수석대표는 3년, 대표는 2년인 반면, 한국의 경우 대표자는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을 포함하여 총 7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해야 한다.¹³⁸⁾

(4) 외국변호사 고용

진출국 변호사의 고용 허용과 관련하여 중국의 대표처와 한국의 외국법자문사 또는 외국법자문로펌 모두 이를 금지하고 있다.¹³⁹⁾ 즉 주

의 난이도, 로스쿨 입학 장벽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이 한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다.

136) 외국법자문사법 제25조 1항

137) 외국법자문사법 제15조 3항.

138) 외국법자문사법 제16조 1항 3호.

139)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 1항.

중대표처는 중국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고, 한국의 외국법자문사 또는 외국법자문로펌은 한국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다. 나아가 진출국 로펌에 대한 투자 또는 동업 등 어떠한 형태의 공동운영에 대해서도 한-중 양국이 모두 금지하고 있다.¹⁴⁰⁾

외국변호사자격으로 진출국 로펌에 고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중국에 진출한 한국변호사는 중국 현지 로펌에 고용될 수 없으나, 한국에 진출한 외국변호사는 외국법자문사 신분으로 한국 로펌에 고용될 수 있다.¹⁴¹⁾

(5) 업무범위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로펌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한-중 양국 모두 유사하게 자국의 법률사무는 제외하고 외국변호사의 원자격국법과 국제법 및 국제관습법의 자문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국제법 및 국제관습법에 대한 자문의 허용과 관련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중국의 경우 “국제조약·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有关国际条约、国际惯例的咨询)”으로 규정하여 외국변호사의 원자격국이 체결, 참여한 조약이 아닌 경우에도 외국변호사의 자문이 가능하나, 한국의 경우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¹⁴²⁾으로 규정하여 원자격국이 체결, 참여한 조약에 대해서만 자문을 허용하고 있어, 한국이 중국보다 좁게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중재사건의 대리도 관련하여, 중국의 경우 주중대표처가 중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나 중재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중국법률의 해석 등 중국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긴 하지만 중국보다 더 제한적이다.

140) 한국의 경우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 2, 3항.

141) 외국법자문사법 제25조 1항 3호.

142) 외국법자문사법 제24조 2호.

즉 한국의 외국법자문사는 국제중재사건의 대리를 할 수 있지만 ‘중재에서 원자격국의 법령과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그 사건을 대리할 수 없다.’¹⁴³⁾고 하여 원자격국법령과 조약 등에 관한 업무가 없으면 아예 중재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6) 외국변호사의 체류요건

외국변호사의 진출국 내 체류기간 요구와 관련하여, 한-중 양국 모두 6개월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광둥-홍콩·마카오 파트너십연합경영제도하에서는 홍콩·마카오변호사의 중국 본토 체류기간 요구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체류기간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한-중 FTA상 법률시장 개방 비교

이상에서 한-중 양국의 국내법상 법률시장 개방 내용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한-중 FTA상 양국의 법률시장 개방 내용을 비교·분석한다. 한-중 FTA상 양국의 법률시장 개방에 대해 Mode 1(국경 간 공급), Mode 2(해외소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고, Mode 4(자연인의 주재)는 개방이 제외되었으며, Mode 3(상업적 주재)과 관련한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관한 제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Mode3과 관련된 시장개방 내용이 핵심이며, 이를 중심으로 시장개방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진출형태 및 업무수행방법

먼저 중국의 양허안에 따르면, 한국법률회사는 대표사무소 형태로만 법률서비스 공급을 할 수 있으며 대표사무소의 이윤추구활동이 허용

143) 외국법자문사법 제24조 1호.

된다. 중국 내 대표사무소가 있는 한국 법률회사는 상해자유무역시험구에서 중국 로펌과 제휴 형태(공동운영 형태)로 법률서비스 공급 가능하다. 이때 제휴 기간 동안 양 당사자의 법적 지위, 명칭 및 재정 상태는 독립적이며, 각 당사자는 고유의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공동 운영의 고객은 상하이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내에 대표사무소가 있는 한국 로펌과 중국 로펌은 법률자문가로서의 변호사 상호 파견이 허용된다.

한국 역시 대표사무소 형태로만 가능한 것으로 양허하고 있다.¹⁴⁴⁾

(2) 외국변호사 자격 및 체류요건

한국 로펌의 대표 및 수석대표의 자격요건으로서, 대표는 중국 외 지역에서 2년 이상 개업한 WTO 회원국의 변호사 또는 법률협회의 회원인 개업변호사이어야 하며, 수석대표는 중국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개업한 파트너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자(예, 유한책임 로펌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모든 대표자들은 매년 6개월 이상 중국에 거주하여야 한다.

한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국의 국내법상 규제와 거의 동일하게 양허하고 있다. 즉 한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변호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고 변호사 원자격국에서의 3년 이상 업력이 요구된다. 주한 대표사무소의 설립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고 동 대표사무소는 법무부장관이 승인한 외국법 자문사 1명 이상으로 구성, 대표사무소의 대표는 원자격취득국의 3년 업력을 포

144) 앞서 언급한 국내법인 외국자문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한국의 법무법인 등에서의 외국법자문사로 근무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규정내용이 없는데, 이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국내법에서보다 한-중 FTA에서 중국로펌의 활동을 더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양자의 적용 및 효력 관계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국내법과 FTA 규정 간의 불일치, 특히 FTA에서의 양허내용이 국내법상 시장개방 수준보다 더 낮은 경우, 그 반대의 경우의 법적 효력 문제에서는 본고의 주요 쟁점이 아니므로 다른 기회에 다루고자 한다.

함하여 7년 이상의 업력이 요구된다. 대표사무소는 이윤추구행위를 할 수 있으며, 중국에 본사를 둔 로펌만이 한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3) 업무범위와 변호사 고용

중국은 한국 대표사무소의 사업 범위로서 ① 변호사의 원자격국법 및 국제 협약 및 실무에 관한 자문 제공; ② 고객 또는 중국 로펌에 의해 위탁된 경우 그 법률회사의 변호사가 변호사의 전문업무에 종사하도록 허용된 그 나라/지역의 법률 사무의 취급; ③ 외국인 고객을 대신하여 중국 법무법인에 중국 법률 사무를 처리하도록 위탁; ④ 법률 사무를 위해 중국 법무법인과 장기 위탁 관계 유지를 위한 계약의 체결; ⑤ 중국 법률환경의 영향에 관한 정보 제공 등 5가지를 양허하고 있다. 이중 ③과 관련하여 중국로펌에 중국법률사무를 위탁한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한국 대표사무소가 위탁을 받은 중국 로펌의 변호사에게 직접 지시하는 것은 허용된다. 한편, 한국 변호사의 중국 법률 사무 취급은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에서의 공동 운영하에서도 허용되지 아니하며, 대표사무소의 중국인 등록변호사 고용도 금지된다.

한국은 원자격국법 및 국제공법에 대한 자문서비스만을 업무범위로 한정하고 다음의 4가지 분야를 업무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i) 법원 및 그 밖의 정부기관에서의 사법절차 또는 법적 절차를 위한 대리 및 그러한 절차를 위한 법률 문서의 준비 (ii) 공증 증서의 준비 위탁을 위한 법적 대리 (iii) 노동 분야 자문 서비스 또는 한국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권, 광업권 또는 한국의 정부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그 밖의 권리의 취득 또는 상실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행위, 그리고 (iv) 한국 국민이 당사자이거나, 관련된 재산이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의 가족관계 또는 상속에 관한 법률 사건에 관한 행위이다. 또한 중재에서 적용가능한 절차법과 실제

법이 외국법자문사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법이어야 함을 조건으로 국제상사중재에서의 대리가 허용되는 것으로 양허하고 있다.¹⁴⁵⁾

변호사 고용과 관련하여, 중국로펌의 주한대표사무소는 한국의 변호사 자격 또는 이와 유사한 자격을 가진 변호사와의 제휴 또는 고용을 할 수 없다.

이상 한-중 FTA에서 한-중 양국의 법률시장 개방 현황을 비교한 결과, 중국은 광둥-홍콩·마카오 간 법률시장 개방 수준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에서,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를 포함한 기존의 국내법에서 개방하는 수준에서 법률시장을 개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역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한국이 기존 국내법에서 약속한 수준과 유사하게 중국에게 법률시장을 양허하고 있으며, 다만 일부의 양허 내용은 국내법에서보다 더 자유화시킨 부분도 있고, 반대로 국내법에서보다 개방수준을 더 낮춘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한-중 FTA 법률서비스 후속협상에 대한 시사점

지금까지 법률서비스 시장개방에 관한 중국 국내법의 주요 내용과 이들 중 한-중 FTA 법률서비스 후속협상 시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

145) 한-중 FTA상 이와 같은 업무범위 제한은 한국의 국내법인 외국법자문사법상 관련 규정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차이점이 발견된다. 첫째, ‘원자격국법 및 국제공법에 대한 자문서비스’ 부분과 관련하여, 외국법자문사법에서는 이 외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외국법자문사법에서는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이라고 하여 조약의 범위를 줄이고 있으나 한-중 FTA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둘째, 한-중 FTA에서 ‘국제상사중재’의 대리를 허용하고 있으나 외국법자문사법에서는 상사중재뿐만 아니라 민사중재도 포함시키고 있다(제2조 7호, 제24조 3호). 셋째, 구체적으로 제외되는 업무범위 중 “(iii) …… 한국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권,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행위”가 외국자문사법 제47조(별칙) 5호 가목의 규정과 유사하며, 이 외 나머지 (i), (ii), (iv) 및 (iii)의 “노동분야 자문서비스” 부분은 외국자문사법에는 없는 제한 내용이다.

을 중심으로 다시 한국의 관련 국내법과 비교하고, 이와 동시에 한-중 FTA상 법률시장 개방에 관한 양국의 양허안을 비교하여 중국의 법률 시장 개방 수준과 관련 규제 현황을 검토하였다.

본고의 연구목적이 중국의 법률시장 개방 관련 규제의 수준을 파악 하는데 있으므로 여기서는 중국 전역에 적용되는 전국단위 규제,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에서의 규제, 광둥성에서 홍콩·마카오로 폼에게 적용되는 규제, 그리고 한-중 FTA에서 중국측의 법률시장 양허안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비교분석하여 향후 있을 한-중 FTA 법률서비스 추가협상 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3-2-2> 중국의 국내법과 한-중 FTA상 중국측 법률시장 개방 수준 비교

항목	중국 국내법				한-중 FTA 중국측 양허안
	전국단위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내		광둥-홍콩· 마카오	
		변호사 상호 파견	연합경영		
진출형태	대표처	중·외 로펌 변호사 상호 파견	중·외 로 펌 간 업무 전반 계약 형 연합경 영	광둥성 내 파 트너십 연합경 영	- 대표처 - 상하이자 유무역시험 구의 변호사 상호파견 및 연합경영제 도를 그대로 규정
자격요건	- 본국에서 합법적 임 무수행 및 규율 위 반 없을 것	- 상하이 소재 대표처 설립 만 3년 이상 및 최근 3년 이내 제재 경	- 상하이 대표처 만 3년 경과, 또는 타지 역 대표처	- 홍콩·마카 오 업력 만 5년 이상 - 10명이상 집 업변호사 보유	- 대표 업력: 중국외 지역 2년 이상인 개업변호사 - 수석대표:

항목	중국 국내법			광둥-홍콩· 마카오	한-중 FTA 중국측 양허안
	전국단위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내			
		변호사상호 파견	연합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중국 내 업력 2년 이상, 형사 처벌 및 윤리위반 없을 것 - 수석대표: 중국 외 경력 3년 이상, 로펌의 파트너 - 실질적 수요: 대표처 설립지 사회경제발전 상황 등 4가지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력 없을 것 - 외국파견변호사: 5년 이상 외국법업무경력, 외국 로펌 대표 및 주중 대표처 수석대표는 파견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3년 및 상하이대표처 설립; 대표처 최근 3년 내 제재경력 없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트너변호사는 홍콩·마카오 등록 - 홍콩·마카오 법률사무 및 중국 외의 변호사 집업자격 획득 - 최근 3년 홍콩·마카오에서 제재 경력 없고 주중대표처의 제재 경력 없을 것 - 각 측 변호사 수 합계 10인 이상 - 변호사 업력 3년 이상, 최근 2년 내 제재경력 없을 것 - 홍콩·마카오변호사, 홍콩·마카오 고용·등록 외국변호사 모두 가능 	중국 외 지역 3년 이상 파트너 변호사 및 동등 경력자
인·허가 시간소요	최장 9개월 (지방3+중앙6개월)	규정 없음	규정 없음	2.5개월(시 30 일+성 45일)	해당 규정없음

제 3 부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 대비 중국 법제 연구

항목	중국 국내법				한-중 FTA 중국측 양허안
	전국단위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내		광둥-홍콩· 마카오	
		변호사 상호 파견	연합경영		
매년 등록	의무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규정 없음	해당 규정 없음
기구 증설	조건부 가능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조건부 가능	해당 규정 없음
업무범위	- 원자격국 법, 국제조 약 및 국제 관례, 중국 법률환경영 향 정보 - 중국 법률 사무 금지 - 중재업무 가능	- 좌동	- 좌동	- 민상사영역의 소송 및 비소 송 법률사무의 처리 가능(본 토법률 관련 형사·행정소 송업무 불가) - 홍콩·마카 오변호사는 본 토법률사무처 리 불가	- 전국단위 와 동일
중국로펌 과의 합작	- 직간접투 자 금지 - 이윤·리 스크공동부 담 집행연 합체 설립 금지 - 연합사무 실 건립, 중 국 로 펴 에 외국변호사 파견 금지 - 중국로펌 에 대한 주	- 중·외 로펌 1+1 형식의 제휴 - 상호파견과 제휴 중 택일 - 상호파견변 호사 수: 3명 이하 - 중·외 상호 파견 변호사 각자 독립적 으로 책임 부 담	- 중·외 로펌은 각 각 1개의 연합경영 만 허용 - 변호사 상호 파견 과 동시 시 행 불가 - 연합경 영기간: 2 년 이상 - 연합경 영 명의로	- 본토로펌 1+ 홍콩·마카오 로펌 다수 - 최저출자액: 500만 위안 - 설립 시 출자 금 납입: 인수 액의 30% 이 상, 설립 후 3 년 내 완납 - 출자비율: 홍 콩·마카오측 1 개 로펌인 경우 30%이상 49%	관련 양허 없음

항목	중국 국내법				한-중 FTA 중국측 양허안
	전국단위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내		광둥-홍콩· 마카오	
		변호사상호 파견	연합경영		
	식성 권익 지배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 수입 - 수입료는 약정에 따라 분배 - 사무공간, 행정인원 공동 사용 및 비용분담 - 업무상 과실 책임 각자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하; 다수인 경우 총합은 본토로 폼보다 낮아야 함 - 연합경영로 폼의 대표: 본토변호사일 것 - 연합경영기간: 3년 이상 - 변호사직업 책임보험제도 마련 - 무과실측의 유한책임 인정 - 관리위원회 설립 - 홍콩·마카오 변호사의 성·시 변호사협회 가입 가능 	
대표의 겸임	2개 이상 대 표처의 대 표겸임 금 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홍콩마카오과 견변호사의 주 사무소주중대 표처 대표겸임 금지	해당 규정 없음
대표의 중국 체류의무	6개월 이상	해당 없음	해당 없음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항목	중국 국내법				한-중 FTA 중국측 양허안
	전국단위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내		광둥-홍콩· 마카오	
		변호사상호 파견	연합경영		
중국 경내 결산	의무	의무	의무	의무	해당 규정 없음
대표처의 중국변호 사 고용	금지	금지	금지	금지 (본 토 측 로펌 명의로 본 토변호사 고용 하여 연합경영 사무소에 파견, 홍콩·마카오 변호사 고용은 홍콩·마카오 측 로펌이 고용 하여 파견)	금지
정기검사	매년 1회	연도검사에 포함	매년 1분기	매 1분기	해당 규정 없음

자료: 필자 작성

상기 <표 3-2-2>에서 비교한 내용을 중심으로 현행 중국의 법률시장 개방 관련 주요 규제와 관하여, 한-중 FTA 법률시장 양허 협상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반적으로 볼 때 현행 한-중 FTA 법률시장 개방 수준은 중국의 전국단위 및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률 시장 개방 수준과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는 한-중 FTA상 중국의 법률시장 개방 수준은 중국의 국내법에 따라 허용되는 수준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중 FTA 법률시장 관련 추가협상에서 관건은 중국이 기존 국내법에서 허용하는 수준 이상으로 우리나라에게 법률시장을 개방할 것인가에 있으며, 우

리의 협상 목표 역시 중국의 국내법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법률시장 개방을 합의해 내는데 있다 하겠다.

두 번째로, 기타결된 한-중 FTA 법률시장 개방 내용이 중국의 현행 국내법상 시장개방 수준을 확인하는 내용이라면 향후 진행될 추가협상은 사실상 제로베이스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된 중국의 국내법제를 비롯하여 중국의 정책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보다 더 진일보한 시장개방을 실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와 광둥성에서의 법률시장 개방에 관한 정책과 법제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다 구체적인 협상대응방안으로서, 진출형태와 관련하여 현행 중국 국내법에서 허용하는 대표처 형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만 허용되는 중외변호사 상호과건제도와 계약형연합경영제도를 넘어 광둥-홍콩마카오 로펌 간에 허용되는 파트너십형태의 연합경영제도를 우리나라 로펌도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¹⁴⁶⁾

넷째, 법률시장 개방 확대의 핵심 이슈인 외국로펌의 중국법률사무취급 허용 여부에 있어서, 현재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방을 실험하고 있는 광둥-홍콩·마카오 파트너십연합경영에서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어, 이를 허용하는 것은 중국의 법률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¹⁴⁷⁾ 단기적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운 요구사항일 수 있다. 다만, 광둥-홍콩마카오 파트너십연합경영제도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준에서 개방할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중국의 사법고시

146) 물론 한-중 FTA가 발효된 후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이 시작될 즈음엔 중국 스스로 국내법 개정을 통해 광둥의 홍콩, 마카오에 대한 개방 수준과 같거나 그 이상으로 개방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와 같은 대응방안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147) 외국로펌이 진출국 법률 사무의 취급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동일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응시자격을 한국에게 개방하면 한국인의 중국법 사무에 대한 접근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달리 현재 제한되고 있는 중국 로펌의 한국변호사 고용을 허용할 것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상세히 검토하지 않았지만, 한-중 FTA에서도 한미, 한-EU FTA에 따른 법률 시장 3단계 수준의 개방을 상호 부여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중 FTA가 예상한대로 2016년도에 발효한다면 2017년 또는 늦어도 2018년에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2018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한미, 한-EU FTA에 따른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러한 우리나라의 미국, EU에 대한 법률시장 개방 수준을 고려하면 후속협상에서 한중 양국이 상호 한미, 한-EU FTA 법률시장 3단계와 유사한 수준의 시장 개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국내외 문헌

법무법인 율촌, 국내 로펌 해외진출대상국들의 법률시장 개방정책 연구, 2012년 12월.

최송자, 홍콩을 통한 중국 법률시장 진출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2012년 6월.

中国法律服务的改革：局限、政策和战略，作者：利安，THE JOURNAL OF POLITICAL RISK, Vol. 1, No. 6, October 2013.

한-중 FTA 투자기회: 중국 법률시장, 코트라, 2015.06.09.

2. 인터넷 자료

대한변호사협회, 회원현황, <http://www.koreanbar.or.kr/info/info07.asp>
(검색일: 2015.08.14.)

中国法律服务市场的规模到底有多大, 发布时间: 2015-06-24 11:05:17
作者: 蒋勇 来源: 天同诉讼圈, <http://www.acla.org.cn/html/industry/20150624/21566.html>(검색일: 2015.08.14.)

中国法律服务市场现状与投资预测报告(2013版), http://wenku.baidu.com/link?url=OPXpR57vCcyC_4MIOpXGQ-jFGeBSVL4SvTi4JSHUgQEv1h5_P7j8FXTZfnhxReDt1Mswl1EFwWRXyTc8zuqpROeGQWDlu7sePe86YnVAjoe(검색일: 2015.08.14.)

我国法律服务行业发展现状分析, 更新: 2014-10-24 17:43, <http://jingyan.baidu.com/article/2fb0ba4041c34c00f3ec5f40.html>(검색일: 2015.08.14.)

中国法律服务市场现状与投资预测报告(2013版), http://wenku.baidu.com/link?url=OPXpR57vCcyC_4MIOpXGQ-jFGeBSVL4SvTi4JSHUgQEv1h5_P7j8FXTZfnhxReDt1Mswl1EFwWRXyTc8zuqpROeGQWDlu7sePe86YnVAjoe(검색일: 2015.08.14.)

外国律所与国内律所征战20年 从竞争走向合作, 时间: 2012-10-26 11:37:00
作者: 全海龙新闻来源: 《方圆》杂志, http://news.jcrb.com/jxsw/201210/t20121026_972101.html(검색일: 2015.08.14.)

中华人民共和国司法部公告 第156号, 发布时间: 2015-08-14, http://www.moj.gov.cn/index/content/2015-08/14/content_6221109.htm?node=7346
(최종검색일: 2015.08.20.)

中华人民共和国司法部公告 第157号, 发布时间: 2015-08-14 11:00:43,
http://www.moj.gov.cn/lsgzgzzds/content/2015-08/14/content_6221287.htm(최종검색일: 2015.08.20.)

百度百科, 联营, <http://baike.baidu.com/subview/10922/10922.htm>(검색일: 2015.8.1.)

법률신문, “변호사배상책임보험제도의 필요성” - 제3010호 - 2001-09-12
오전 9:45:23, <https://m.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5856&kind=BA01&key=>(검색일: 2015.07.20.)

自贸区中外律所互派律师、联营焦点十问, 发布时间: 2014-12-10 10:49:40
作者: 王凤梅来源: 上海法治声音, <http://www.acla.org.cn/html/lilunyanjiu/20141210/19093.html> (검색일: 2015.07.15.)

百度百科, 字号, <http://baike.baidu.com/view/240832.htm>(검색일: 2015.7.20.)

百度百科, 有限责任合伙, <http://baike.baidu.com/view/4507186.htm>(최종
검색일: 2015.08.19.)

百度百科, 审计, <http://baike.baidu.com/subview/289/5033556.htm>(최종
검색일: 2015.08.19.)

百度百科, 专职律师, <http://baike.baidu.com/link?url=HRUrynhEc620-b6cCo5ohhZmvcKCQJeqR7A4tUXFgutbzG0ZGWjQsaRf3rHwo16zgAAG0NaGTWekSGQEBrZkjAa>(검색일: 2015.8.23.)

中国金融新闻网(2015.04.09.). 중국 4대 자유무역구 발전과정

<http://csf.kiep.go.kr/news/M001000000/view.do?articleId=12923>(검색일: 2015.8.20.)

3. 기타 자료

《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的通知》, 国办发[2015]23号

[부록 3-2-1] 2014년도 연도검사를 통과한 225개 외국로펌
주중대표기구 명단

번호	대표처이름	중국내 소재지	국가	최초승인일
1	MINTER ELLISON LAWYERS BEIJING REPRESENTATIVE OFFICE ¹⁴⁸⁾	베이징	호주	2010年8月24日
2	LIN TANG & Co. LAWYERS	베이징	호주	2003年11月5日
3	ASHURST	베이징	호주	2013年3月8日
4	BEITEN BURKHARDT	베이징	독일	2002年6月10日
5	TAYLOR WESSING	베이징	독일	2008年6月5日
6	DS LAW FIRM	베이징	프랑스	1999年3月12日
7	GIDE LOYRETTE NOUEL	베이징	프랑스	2002年6月10日
8	ADAMAS	베이징	프랑스	1992年10月20日
9	LEE & KO (광장)	베이징	한국	2005年5月16日
10	YULCHON (울촌)	베이징	한국	2011年3月3日
11	SHIN & KIM (세종)	베이징	한국	2006年1月12日
12	BAE, KIM & LEE LLC (태평양)	베이징	한국	2004年10月27日
13	BLAKE, CASSELS & GRAYDON LLP	베이징	캐나다	1998年2月20日
14	AKIN GUMP STRAUSS HAUER & FELD LLP	베이징	미국	2006年12月20日
15	ANDREWS KURTH LLP	베이징	미국	2005年5月16日
16	ORRICK, HERRINGTON & SUTCLIFFE LLP	베이징	미국	2006年9月6日
17	ALSTON BIRD LLP	베이징	미국	2014年8月21日

제 3 부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 대비 중국 법제 연구

번호	대표처이름	중국내 소재지	국가	최초승인일
18	PAUL, WEISS, RIFKIND, WHARTON & GARRISON LLP	베이징	미국	1993年9月6日
19	BAKER BOTTS LLP	베이징	미국	2006年12月20日
20	BAKER & DANIELS LLP	베이징	미국	2003年11月5日
21	BAKER & McKENZIE LLP	베이징	미국	1993年4月27日
22	PERKINS COIE LLP	베이징	미국	2001年3月28日
23	TROUTMAN SANDERS LLP	베이징	미국	2012年4月13日
24	DAVIS POLK & WARDWELL LLP	베이징	미국	2006年12月20日
25	DECHERT LLP	베이징	미국	2008年4月10日
26	K&L GATES LLP	베이징	미국	2004年4月12日
27	GUNDERSON DETTMER STOUGH VILLENEUVE FRANKLIN & HACHIGIAN LLP	베이징	미국	2012年10月26日
28	GARVEY SCHUBERT BARER	베이징	미국	2004年7月7日
29	GOULSTON & STORRS,P.C.	베이징	미국	2009年1月12日
30	SQUIRE PATTON BOGGS LLP	베이징	미국	1993年4月15日
31	HUNTON & WILLIAMS LLP	베이징	미국	2005年5月16日
32	WONG, WONG ASSOCIATES, P.C.	베이징	미국	2014年8月21日
33	GIBSON, DUNN & CRUTCHER LLP	베이징	미국	2012年9月11日
34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베이징	미국	2006年1月12日
35	ADWALADER, WICKERSHAM & TAFT LLP	베이징	미국	2005年5月16日
36	KIRKLAND & ELLIS INTERNATIONAL LLP	베이징	미국	2013年4月26日

번호	대표처이름	중국내 소재지	국가	최초승인일
37	CURTIS MALLET-PREVOST, COLT & MOSLE LLP	베이징	미국	2013年04月26日
38	COVINGTON & BURLING LLP	베이징	미국	2008年6月5日
39	LOEB & LOEB LLP	베이징	미국	2010年2月11日
40	MILBANK, TWEED, HADLEY & MCCLOY LLP	베이징	미국	2006年8月30日
41	MORRISON & FOERSTER LLP	베이징	미국	1998年2月20日
42	O'MELVENY & MYERS LLP	베이징	미국	2002年12月5日
43	MORGAN LEWIS & BOCKIUS LLP	베이징	미국	2005年11月25日
44	PAUL HASTINGS LLP	베이징	미국	1998年6月20日
45	PROSKAUR ROSE LLP	베이징	미국	2011年9月19日
46	PILLSBURY WINTHROP SHAW PITTMAN LLP	베이징	미국	2013年4月26日
47	LATHAM & WATKINS LLP	베이징	미국	2009年7月30日
48	SIDLEY AUSTIN LLP	베이징	미국	1996年2月26日
49	SIMPSON THACHER & BARTLETT LLP	베이징	미국	2007年3月28日
50	SHEPPARD MULLIN	베이징	미국	2011年6月17日
51	SKADDEN, ARPS, SLATE, MEAGHER & FLOM LLP	베이징	미국	1995年5月3日
52	STEPTOE & JOHNSON LLP	베이징	미국	2009年7月30日
53	SULLIVAN & CROMWELL LLP	베이징	미국	1999年3月12日
54	WILSON SONSINI GOODRICH & ROSATI PROFESSIONAL CORPORATION	베이징	미국	2012年10月26日

제 3 부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 대비 중국 법제 연구

번호	대표처이름	중국내 소재지	국가	최초승인일
55	WEIL, GOTSHAL & MANGES LLP	베이징	미국	2008年6月5日
56	WHITE & CASE LLP	베이징	미국	2004年4月12日
57	WILMER CUTLER PICKERING HALE AND DORR LLP	베이징	미국	2004年10月27日
58	VINSON & ELKINS LLP	베이징	미국	1999年3月12日
59	WINSTON & STRAWN LLP	베이징	미국	2003年11月10日
60	SHEARMAN & STERLING LLP	베이징	미국	1993年9月6日
61	JONES DAY	베이징	미국	2002年12月25日
62	ANDERSON MORI & TOMOTSUNE	베이징	일본	1998年2月20日
63	TAKAI OKAZERI LAW FIRM	베이징	일본	2006年1月12日
64	CAST LAW P.C.	베이징	일본	2014年2月17日
65	MORI HAMADA & MATSUMOTO	베이징	일본	1998年2月27日
66	NISHIMURA & ASAHI	베이징	일본	2010年2月11日
67	URYU & ITOGA LAW P.C.	베이징	일본	2005年7月13日
68	TMI ASSOCIATES	베이징	일본	2012年12月13日
69	WENFEI ATTORNEY AT LAW LTD	베이징	스위스	2000年6月8日
70	URIA MENENDEZ ABOGADOS SLP	베이징	스페인	2009年9月1日
71	WONG PARTNERSHIP LLP	베이징	싱가포르	2010年8月24日
72	CHIOMENTI STUDIO LEGALE	베이징	이탈리아	2007年3月28日
73	ALLEN & OVERY LLP	베이징	영국	1993年9月6日
74	EVERSHEDS LLP	베이징	영국	2012年8月13日
75	BERWIN LEIGHTON PATISNER LLP	베이징	영국	2012年10月26日
76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LLP	베이징	영국	1996年7月23日

번호	대표처이름	중국내 소재지	국가	최초승인일
77	CLIFFORD CHANCE LLP	베이징	영국	1993年9月6日
78	CMS CAMERON MCKENNA LLP	베이징	영국	1993年9月6日
79	REED SMITH RICHARDS BUTLER LLP	베이징	영국	1996年6月26日
80	HOGAN LOVELLS INTERNATIONAL LLP	베이징	영국	1992年10月20日
81	LINKLATERS LLP	베이징	영국	2001年3月28日
82	NORTON ROSE LLP	베이징	영국	2002年6月10日
83	DLA PIPER LLP	베이징	영국	2006年1月12日
84	PINSENT MASONS LLP	베이징	영국	2006年12月20日
85	HERBERT SMITH FREEHILLS LLP	베이징	영국	1999年3月12日
86	SLAUGHTER AND MAY	베이징	영국	2009年7月30日
87	INCE & CO LLP	베이징	영국	2012年7月3日
88	HUNT & HUNT	상하이	호주	1998年2月20日
89	MINTER ELLISON	상하이	호주	1999年9月6日
90	ASHURST	상하이	호주	1998年2月20日
91	NORONHA ADVOGADOS	상하이	브라질	2001年3月18日
92	DE WOLF & PARTNERS LAW FIRM LLCC	상하이	벨기에	2007年11月29日
93	BEITEN BURKHARDT RECHTSANWALTSGESELLSCHAFT MBH	상하이	독일	2003年11月3日
94	CMS HASCHE SIGLE	상하이	독일	2006年8月30日
95	GRAF VON WESTPHALEN	상하이	독일	2009年3月25日
96	RODL	상하이	독일	2002年6月7日

제 3 부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 대비 중국 법제 연구

번호	대표처이름	중국내 소재지	국가	최초승인일
	RECHTSANWALTSGESELLSCHAFT STEUERBERATUNGSGESELL- SCHAFT MBH			
97	NOERR LLP	상하이	독일	2011年11月7日
98	SCHINDHELM ATTORNEY AT LAW	상하이	독일	2007年11月29日
99	SCHULZ NOACK BARWINKEL GERMAN ATTORNEYS AT LAW	상하이	독일	1995年3月16日
100	TAYLOR WESSING	상하이	독일	2003年5月15日
101	ADAMAS	상하이	프랑스	2004年10月27日
102	BIGNON LEBRAY & ASSOCIES	상하이	프랑스	2007年2月7日
103	DS LAW FIRM	상하이	프랑스	2002年12月25日
104	GIDE LOYRETTE NOUEL	상하이	프랑스	2002年12月25日
105	AKLEA SOCIETE D'AVOCATS	상하이	프랑스	2011年2月15日
106	LEFEVRE PELLETIER & ASSOCIES	상하이	프랑스	2008年6月5日
107	AXTEN AVOCATS ASSOCIES	상하이	프랑스	2014年2月19日
108	UGGC AVOCATS	상하이	프랑스	2013年4月26日
109	JIPYONG ATTORNEYS AT LAW(지평)	상하이	한국	2007年7月13日
110	SHIN & KIM (세종)	상하이	한국	2010年2月21日
111	BAE KIM & LEE LLC(태평양)	상하이	한국	2008年9月12日
112	DEBRAUW BLACKSTONE WESTBROEK	상하이	네덜란드	2014年2月18日
113	HOLTHUIS INTERNATIONAL LAWYERS	상하이	네덜란드	2004年10月27日

번호	대표처이름	중국내 소재지	국가	최초승인일
114	APPLEBY(JV)LTD & CIE	상하이	모리셔스	2013年3月30日
115	ARMSTRONG & TEASDALE LLP	상하이	미국	2000年6月8日
116	ORRICK HERRINGTON & SUTCLIFFE LLP	상하이	미국	2006年9月6日
117	BAKER & McKENZIE LLP	상하이	미국	2002年12月25日
118	BENESCH FRIEDLANDER COPLAN & ARONOFF LLP	상하이	미국	2007年2月7日
119	BRYAN CAVE LLP	상하이	미국	1999年4月21日
120	PERKINS COIE LLP	상하이	미국	2006年8月30日
121	BLANK ROME LLP	상하이	미국	2011年3月3日
122	THE LAW OFFICES OF GREG PILAROWSKI	상하이	미국	2013年3月8日
123	TROUTMAN & SANDERS LLP	상하이	미국	2007年2月7日
124	DIAZ REUS & TARG LLP	상하이	미국	2009年3月25日
125	DAI & ASSOCIATES P.C.	상하이	미국	2012年12月13日
126	DAVIS WRIGHT TREMAINE LLP	상하이	미국	1993年9月6日
127	DORSEY & WHITNEY LLP	상하이	미국	2001年6月4日
128	DECHERT LLP	상하이	미국	2012年7月3日
129	DEBEVOISE & PLIMPTON LLP	상하이	미국	2002年6月10日
130	FREDRIKSON & BYRON P.A.	상하이	미국	2007年2月7日
131	FRIED FRANK HARRIS SHRIVER & JACOBSON LLP	상하이	미국	2007年7月13日
132	FENWICK & WEST LLP	상하이	미국	2013年12月23日
133	FINNEGAN HENDERSON FARABOW GARRETT & DUNNER LLP	상하이	미국	2008年4月10日

제 3 부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 대비 중국 법제 연구

번호	대표처이름	중국내 소재지	국가	최초승인일
134	FAEGRE & BENSON LLP	상하이	미국	2002年6月10日
135	FOLEY & LARDNER LLP	상하이	미국	2007年11月29日
136	GT GREENBURG TRAUIG LLP	상하이	미국	2007年7月13日
137	K & L GATES LLP	상하이	미국	2008年4月10日
138	HAYNES & BOONE LLP	상하이	미국	2011年11月7日
139	SQUIRE SANDERS & DEMPSEY LLP	상하이	미국	2004年4月12日
140	GLOBAL LAW GROUP CORPORATION	상하이	미국	2011年11月7日
141	KELLER & HECKMAN LLP	상하이	미국	2004年10月27日
142	KAYE SCHOLER LLP	상하이	미국	1998年2月20日
143	KATTEN MUCHINROSENMAN LLP	상하이	미국	2011年11月28日
144	KILPATRICK TOWNSEND & STOCKTON LLP	상하이	미국	2012年9月11日
145	KIRKLAND & ELLIS INTERNATIONAL LLP	상하이	미국	2009年7月30日
146	COOLEY LLP	상하이	미국	2011年11月7日
147	COVINGTON & BURLING LLP	상하이	미국	2012年12月13日
148	LIU YU & ASSOCIATES PLLC	상하이	미국	2013年4月26日
149	MORRISON & FOERSTER LLP	상하이	미국	2002年12月25日
150	O'MELVENY & MYERS LLP	상하이	미국	1996年7月24日
151	MILLER CANFIELD PADDOCK & STONE P.L.C.	상하이	미국	2008年9月12日
152	NIXON PEABODY LLP	상하이	미국	2007年11月29日
153	PAUL HASTINGS LLP	상하이	미국	2003年5月15日

번호	대표처이름	중국내 소재지	국가	최초승인일
154	PILLSBURY WINTHROP SHAW PITTMAN LLP	상하이	미국	2006年8月30日
155	ROPES & GRAY LLP	상하이	미국	2011年6月17日
156	LATHAM & WATKINS LLP	상하이	미국	2004年10月27日
157	SEYFARTH SHAW LLP	상하이	미국	2012年11月28日
158	SIDLEY AUSTIN LLP	상하이	미국	1999年3月12日
159	SHEPPARD MULLIN RICHTER & HAMPTON LLP	상하이	미국	2006年12月20日
160	SKADDEN ARPS SLATE MEAGHER & FLOM LLP	상하이	미국	2007年11月29日
161	WANG & WANG LLP	상하이	미국	2004年4月4日
162	WILSON SONSINI GOODRICH & ROSATI P.C.	상하이	미국	2006年12月20日
163	WEIL GOTSHAL & MANGES LLP	상하이	미국	2004年7月7日
164	WILMER CUTLER PICKERING HALE AND DORR LLP	상하이	미국	2011年11月7日
165	WHITE & CASE LLP	상하이	미국	2000年7月31日
166	WINSTON & STRAWN LLP	상하이	미국	2009年11月10日
167	VINSON & ELKINS LLP	상하이	미국	2002年12月25日
168	SHEARMAN & STERLING LLP	상하이	미국	2007年3月28日
169	STEIN SHOSTAK SHOSTAK POLLACK & O'HARA LLP	상하이	미국	2006年1月12日
170	MICHAEL S. YU A LAW CORPORATION	상하이	미국	2004年7月7日
171	JONES DAY	상하이	미국	1999年3月12日

제 3 부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 대비 중국 법제 연구

번호	대표처이름	중국내 소재지	국가	최초승인일
172	WIRKBORG REIN & Co.	상하이	노르웨이	2003年5月15日
173	BRIDGEROOTS	상하이	일본	2008年9月12日
174	ANDERSON MORI & TOMOTSUNE	상하이	일본	2013年7月17日
175	OH-EBASHI LAW OFFICES	상하이	일본	1995年3月16日
176	NOBUO TAKAI	상하이	일본	1999年3月12日
177	SOGA URYU & ITOGA LAW P.C.	상하이	일본	2009年9月15日
178	KURODA LAW OFFICES	상하이	일본	2004年10月27日
179	CAST LAW P.C.	상하이	일본	2009年6月30日
180	KYOEI LEGAL PROFESSION CORPORATION	상하이	일본	2005年8月30日
181	MORI HAMADA & MATSUMOTO	상하이	일본	2004年12月17日
182	TMI ASSOCIATES	상하이	일본	1998年2月20日
183	NISHIMURA & ASAHI	상하이	일본	2013年10月28日
184	MANNHEIMER SWARTLING ADVOKATBYRA AB	상하이	스웨덴	2007年3月28日
185	BONNARD & LAWSON	상하이	스위스	2007年2月7日
186	CUATRECASAS GONCALVES PEREIRA	상하이	스페인	2008年6月5日
187	J & A GARRIGUES S. L.P.	상하이	스페인	2006年1月12日
188	ROCA JUNYENT INTERNATIONAL S.L.	상하이	스페인	2006年1月12日
189	DUAN MORRIS & SELVAM LLP	상하이	싱가포르	2014年6月25日
190	RAJAH & TANN LLP	상하이	싱가포르	2003年5月15日
191	RODYK & DAVIDSON LLP	상하이	싱가포르	1996年12月9日

번호	대표처이름	중국내 소재지	국가	최초승인일
192	WONG PARTNERSHIP LLP	상하이	싱가포르	2004年1月8日
193	KELVIN CHIA PARTNERSHIP	상하이	싱가포르	2004年4月12日
194	YEO LEONG & PEH LLC	상하이	싱가포르	1997年3月6日
195	NEGRI CLEMENTI TOFFOLETTO MONTIRONI & SOCI	상하이	이탈리아	2010年7月15日
196	STUDIO LEGAL PICOZZI & MORIGI	상하이	이탈리아	2006年12月20日
197	CHIOMENTI STUDIO LEGALE	상하이	이탈리아	2002年12月25日
198	ALLEN & OVERY LLP	상하이	영국	2002年6月10日
199	EVERSHEDS LLP	상하이	영국	2006年8月30日
200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LLP	상하이	영국	1998年2月20日
201	CLIFFORD CHANCE LLP	상하이	영국	1993年3月20日
202	HOGAN LOVELLS INTERNATIONAL LLP	상하이	영국	2003年5月15日
203	REED SMITH LLP	상하이	영국	2011年6月17日
204	LINKLATERS LLP	상하이	영국	1998年3月27日
205	NORTON ROSE LLP	상하이	영국	2006年1月12日
206	DLA PIPER LLP	상하이	영국	2002年6月10日
207	PINSENT MASONS LLP	상하이	영국	2002年12月25日
208	SALANS LLP	상하이	영국	2004年4月12日
209	HERBERT SMITH FREEHILLS LLP	상하이	영국	2002年12月25日
210	HOLMAN FENWICK & WILLAN LLP	상하이	영국	1999年3月12日
211	INCE & Co.LLP	상하이	영국	2000年6月18日

제 3 부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 대비 중국 법제 연구

번호	대표처이름	중국내 소재지	국가	최초승인일
212	GORDON CHENG BARRISTERS & SOLICITORS	광저우	호주	2011年9月19日
213	RODL RECHTSANWALTSGESELLSCHAFT STEUERBERATUNG-ESELLSCHAFT MBH	광저우	독일	2008年8月11日
214	DS LAW FIRM	광저우	프랑스	2006年12月20日
215	FREDERICK W. HONG LAW OFFICES	광저우	미국	1993年9月6日
216	NET CRAMAN ABOGADOS ASOCIADOS, S.L.	광저우	스페인	2009年3月25日
217	CHRISTINE LEE & CO (SOLICITORS) LIMITED	광저우	영국	2009年3月25日
218	WRAGGE & CO LLP	광저우	영국	2008年9月12日
219	HOENZAKA LAW FIRM	다롄	일본	2000年6月8日
220	AMEMIYAMASAYA LAW OFFICE	선양	일본	2006年1月12日
221	CHANG & COTE LLP	톈진	미국	2008年4月10日
222	WU & KAO PLLC	톈진	미국	2010年7月15日
223	CHRISTIE KIM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샤먼	미국	2009年6月30日
224	PICOZZI & MORIGI LAW FIRM	난징	이탈리아	2010年2月15日
225	OSHA LIANG	항저우	미국	2012年4月13日

148) 모든 대표처의 명칭에는 지역+대표처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하에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였다.

[부록 3-2-2] 중국의 법률시장 관련 국내법규

명칭	제정기관	문서번호/ 호력급별	반포/시행일
关于对中国律师与外国律师合作 办理境外的诉讼或非诉讼事务如 何收取律师费用的批复	사법부 율사사 (律师司)	부문규장	1998-01-24 /1998-01-24
关于外国律师事务所不能联合申 请在华设立办事处的批复	사법부	부문규장	1998-07-03/1998 -07-03
在华外国律师事务所办事处常驻 律师登记办法	사법부	부문규장	1999-09-18 /1999-12-01
关于中国加入WTO后加快律师业 改革与发展的意见	사법부	司发通 [2001] 030号/ 부문규장	2001-03-07/ 2001-03-07
关于执行《外国律师事务所驻华 代表机构管理条例》的规定	사법부	司法部令第 7 3号/ 부문규장	2002.06.25./ 2002.09.01
关于对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 就《司法部关于执行〈外国律师 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例〉 的规定》所提建议回复意见的函	사법부	司办函[2003] 第10号/ 부문규장	2003-01-06/ 2003-01-06
关于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处 变更有关登记事项办理程序的通 知	사법부	司发通[2003] 52号/ 부문규장	2003年 6月4日
关于执行《外国律师事务所驻华 代表机构管理条例》的规定 (2004修正)	사법부	司法部令第 92号/部门规章	2004.09.02./ 2004.09.02
关于《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 机构管理条例》有关适用问题的 复函	사법부	司复[2009]2号/ 부문규범성문건	2009年 3月13日

제 3 부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 대비 중국 법제 연구

명 칭	제정기관	문서번호/ 효력급별	반포/시행일
中华人民共和国律师法	전국인대 상무위	主席令[第六十七号]/법률	中华人民共和国 律师暂行条例[失效][19800826] 中华人民共和国 律师法[1996051 5] 제정 2001, 2007, 2012.10.26. 개정/
香港、澳门特别行政区律师事务所驻内地代表机构管理办法	사법부	司法部令第126 号第五次修正/ 부문규장	2002.02.20./ 2002.04.01 제정/ 2012.11.21./ 2013.0101
香港特别行政区和澳门特别行政区居民参加国家司法考试若干规定	사법부	司法部令 第 80号	2003.11.30.
台湾居民参加国家司法考试若干规定	사법부	司法部令 第110号	2008.6.4.
国家司法考试实施办法	최고인민 법원, 최고인민 검찰원, 사법부	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检察院 、司法部印发, 司发[2008]11号	2008.8.8.
律师事务所管理办法	사법부	司法部令第125 号/부문규장	2008.07.18. 제정 2012.11.30. 개정/좌동
司法部关于同意在广东省开展内地律师事务所与港澳律师事务所合伙联营试点工作的批复	사법부	司复[2014]2号	2014.1.27.

명 칭	제정기관	문서번호/ 효력급별	반포/시행일
广东省司法厅关于香港特别行政区和澳门特别行政区律师事务所与内地律师事务所在广东省实行合伙联营的试行办法	광둥성	广东省司法厅2014年8月4日以粤司办〔2014〕218号发布	2014.9.1.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中外律师事务所互派律师担任法律顾问的实施办法》、《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中外律师事务所联营的实施办法》	상해시사 법국	沪府办发〔2014〕63号/ 지방규장	2014.11.18./ 2014.11.18

제 3 장 금융 서비스 분야

제 1 절 중국의 주식시장 개혁정책 개관

2012년말 출범한 시진핑 체제는 세계 2위 경제대국에 걸 맞는 금융 시장 및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한다. 시진핑 집권 2년차인 2013년 11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18기 3중전회에서는 집권기간 금융개혁 청사진을 발표하였고, 이후 중국 정부인 국무원은 3중전회 결정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신국9조¹⁾를 발표하였다.

먼저 18기 3중전회에서 발표한 금융개혁의 주요 정책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²⁾ 첫째, 금융업 대외개방 확대, 금융감독관리 강화, 금융 혁신 및 다층적 자본시장 체계 건설이라는 전체 기조 하에 상업 및

1) 国务院关于进一步促进资本市场健康发展的若干意见（国发〔2014〕17号，新国九条，2014年5月8日）.

http://www.csrc.gov.cn/pub/shenzhen/xxfw/tzssyd/ssgs/zh/zhxx/201409/t20140918_260581.htm (2015.9.23. 검색)

2) 18기 3중전회에서는 시진핑 집권기 향후 10년간 중장기 국가개혁 및 발전정책을 담은 “전면적 개혁심화에 대한 중대문제에 대한 결정(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을 통과하였다. 동결정에서는 중국의 정치안보, 경제, 사회, 문화, 생태문명 등 전분야에 대한 총 60여개의 개혁조치를 망라하고 있는데, 그중 금융개혁 관련한 내용은 12번째 개혁항목인 금융시장체계의 개선(完善金融市场体系) 분야에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12) 完善金融市场体系。扩大金融业对内对外开放，在加强监管前提下，允许具备条件的民间资本依法发起设立中小型银行等金融机构。推进政策性金融机构改革。健全多层次资本市场体系，推进股票发行注册制改革，多渠道推动股权融资，发展并规范债券市场，提高直接融资比重。完善保险经济补偿机制，建立巨灾保险制度。发展普惠金融。鼓励金融创新，丰富金融市场层次和产品。

完善人民币汇率市场化形成机制，加快推进利率市场化，健全反映市场供求关系的国债收益率曲线。推动资本市场双向开放，有序提高跨境资本和金融交易可兑换程度，建立健全宏观审慎管理框架下的外债和资本流动管理体系，加快实现人民币资本项目可兑换。

落实金融监管改革措施和稳健标准，完善监管协调机制，界定中央和地方金融监管职责和风险处置责任。建立存款保险制度，完善金融机构市场化退出机制。加强金融基础设施建设，保障金融市场安全高效运行和整体稳定。

http://www.gov.cn/jrzq/2013-11/15/content_2528179.htm (2015.9.26 검색)

정책은행의 개혁, 주식과 채권 등 자본시장 발전을 통한 기업자금에서 직접조달 비중 확대, 보험업의 제도 개선 등이 그것이다. 둘째는 위안화 환율과 금리 시장화 개혁을 가속화하고, 자본시장의 점진적 개방 확대와 위안화 자본항목 자유태환의 실현 등이다. 세 번째는, 금융감독관리체제의 개혁과 위험관리 시스템의 강화라는 큰 방향 하에 예금자보호제도 및 금융기관 퇴출기제 확립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어 있다.

2014년 국무원에서 발표한 신국9조는 18기 3중전회에서 제시한 금융개혁의 큰 틀 가운데 자본시장 개혁의 목표와 정책과제를 상세히 규정한 것이다.

신국9조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먼저 대상에 따라 주식시장, 채권시장, 사모(私募)시장, 선물시장의 4대 자본시장의 육성방향 및 주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와 함께 전체 공통적인 과제로서 자본시장의 대외개방 확대, 금융리스크의 예방 및 해소, 자본시장의 양호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이라는 3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주식시장 관련, 다층적 주식시장의 발전이라는 전체 방향 하에, 규제완화를 통한 주식발행제도의 개선, 증권거래소 내 大中小 기업 별 다양한 거래 상품 개발 및 다층적 자본시장체계에 역외지역시장의 편입, 주주중심 감독체계 강화 등 상장회사의 질적 제고, 상장회사의 자율적 합병, 구조조정 장려, 상장회사의 퇴출기제의 정비를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주식시장의 대외개방이라는 측면에서는, QFII와 QDII³⁾ 등 국내외 기관 및 개인투자자에 대한 자본시장의 개방 확대 등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본장에서는 중국 자본시장 가운데 개혁과 변화가 가장 선도적이며 전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식시장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

3) QFII와 QDII 제도의 의의 및 주요 내용은 아래 제2절 해당부분을 참고하라.

다. 특히 주식시장의 대외적 개방과 관련된 QFII와 후강통 제도와 증권시장 내 제도적 환경개선의 핵심인 증권법 개정 관련 이슈를 대상으로 중국 주식시장 개혁의 현황 및 주요 이슈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해 한-중 FTA 후속협상에서 한국기업과 정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및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장의 주요 연구목적이다.

<표 3-3-1> 신국9조를 통해본 중국 자본시장 발전정책 주요 내용

정책 방향	주요 내용
다층적 주식시장 발전	-주식발행제도 개혁, 다층적 주식시장 건설 가속화, -상장회사의 질적 제고, M&A와 증시퇴출제도 구축
채권시장의 규범적 발전	-회사채, 지방채 등 채권시장의 적극적 발전, -채권시장의 신용도 제고 및 대외적 연계 강화 등
사모시장 육성	-건전한 사모발행제도 건설, 사모투자기금의 발전
선물시장 건설 추진	-상품 및 금융선물시장 발전, -증권선물서비스업 경쟁력 제고
자본시장 개방 확대	-QFII 등 국내외 투자의 편리성 제고, -증권선물업의 점진적 개방 확대 등
금융위험 예방과 대응	-위험의 감독·경보 및 평가시스템, 시장안정화 기제 구축, -위법행위 단속 강화 및 감독모델의 전환 추진
자본시장 발전환경 조성	-증권법 등 관련 법규 정비, 투자자 권익 보호 강화, -자본시장 세수정책 및 금융시장 인프라 건설 강화 등

자료: 신국9조를 참고로 필자 정리

제 2 절 최근 주식제도의 현황 및 주요 내용

1. QFII의 확대

(1) QFII의 배경: 중국 특유의 주식제도와 자본시장 개방

적격해외기관투자자(合格的境外机构投资者: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이하 QFII라 약칭)는 상하이와 선전 A주식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외국투자기관(기관투자자)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2002년부터 시작된 QFII의 탄생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 주식시장의 특성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90년 상하이와 선전증권거래소 설립과 함께 중국 주식시장도 본격 출범한다. 당시 중국 경제와 금융의 발전수준이 낮아, 주식시장 설립에서 해외 투기자금의 공격에 대비하면서,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식제도를 운영한다. 이를 거래대상, 사용화폐, 증권거래시장의 위치 등에 따라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중국 국내 증시는 A주식시장과 B주식시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A주식시장은 A주를, B주식시장은 B주를 거래하는데, 여기서 A주는 위안화보통주식(人民币普通股票)을 지칭하며, 중국 내 기업이 발행하고, 중국 내 기관과 개인 등이 위안화로 거래하는 위안화로 표시된 주식을 말한다. 반면, B주식은 위안화특별주식(人民币特种股票)이 정식명칭이며, 위안화로 표시되나 외화로 거래되며, 거래주체도 중국인이 아닌 외국의 자연인, 법인 등 기타조직에 한정 된다⁴⁾. 그러나, 2001년부터 중국인도 B주식을 투자할 수 있게 되어⁵⁾, 앞서 A주식시

4) 赵旭东, 公司法学, 高等教育出版社(2003), P.314.

5) 关于境内居民个人投资境内上市外资股若干问题的通知, 证监发[2001]22号,
http://www.csrc.gov.cn/pub/newsite/flb/flfg/bmgf/wz/jwfx/201012/t20101231_189764.html
(2015.9.29 검색)

장에 외국인투자를 부분적으로 허용한 QFII와 함께 고려해볼 때, 오늘날 A, B 주식시장의 인적 경계선은 점차 취약해져 가고 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 해외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의 주식을 크게 H주와 레드칩(红筹股, Red Chip)으로 구분된다.

H주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의 주식을 지칭한다. 즉, 중국 국내기업이 해외투자자의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해외주식시장에서 상장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이니셜을 따서, 주식시장이 홍콩(Hong Kong)증시면 H주식, 런던(London)증시는 L주식, 싱가포르(Singapore) 증시는 S주, 뉴욕(New York)증시는 N주라고 부른 것이. 다만, 최근에는 해외증시 상장하는 중국기업 대부분이 홍콩증시에 상장하고 있어 중국 증감회에서는 편의상 해외증시 상장기업을 통틀어서 H주라고 부르기도 한다⁶⁾.

레드칩은 중국 대륙 자본이 지배하는 홍콩증시에 상장된 회사의 주식을 지칭한다. 1990년대 초부터 중국의 일부 지방정부 산하 기업들이 홍콩증시의 중소형 상장회사를 인수합병하여, 이를 해외자금 유치 통로로 활용하였다. 레드칩이란 용어는 홍콩증시에서 사용한 용어이다. 사회주의 중국을 뜻하는 붉은 자본이 지배하는 주식이라는 의미에서 사용된 것이다.⁷⁾

중국기업의 해외증시 상장요건에 대해 규정한 현행 증권법 제238조⁸⁾의 각도에서 보면, H주는 중국기업이 해외증시에서 ‘직접’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라면, 레드칩은 중국기업이 해외증시에서 ‘간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해당한다.

6) 周友苏, 新公司法论, 法律出版社(2006), P.249.

7) 周友苏, 전개서, P.249.

8) 중국 증권법(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2014年)) 제238조.

第二百三十八条 境内企业直接或者间接到境外发行证券或者将其证券在境外上市交易, 必须经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依照国务院的规定批准。

http://www.npc.gov.cn/npc/lfzt/rlyw/2015-04/23/content_1934291.htm (2015.9.23일 검색)

이처럼 복잡한 중국의 주식제도 하에서 한국 등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 일차적 관심사는 중국 국내증권시장의 개방문제가 될 것이다. 중국 국내증시에서 외국인 전용의 B주식시장은 상장기업의 양과 질적인 측면 등에서 갈수록 A주식시장과 격차를 보임에 따라 투자의 주체인 외국인의 참여가 부진해졌다. 결국, A주식시장이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의 대표 주식시장이 되었었다. 또한, 중국은 WTO 가입 당시 약속⁹⁾과 중국 자본시장의 투자활성화 및 신뢰제고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자에게 A주식시장을 부분적으로 개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QFII 제도가 탄생한 배경이다.

<표 3-3-2> 중국 주식의 종류 및 특징

구분		주요 내용 및 특징
중국 내 증시	A주	- 액면가: 인민폐 / 거래화폐: 인민폐 - 거래소: 상하이와 선전 A주식시장
	B주	- 액면가: 인민폐 / 거래화폐: 외화 - 거래소: 상하이 B주식시장(달러), 선전 B주식시장(홍콩달러)
해외 증시	H주	- 의의: 해외증시에 직접 상장한 중국기업의 주식 - 주로 홍콩 증시 상장한 경우 H주라고 부르나, 해외증시에 상장된 기업을 통칭하는 용어로도 사용
	레드칩 (红筹股)	- 의의: 중국기업이 홍콩상장회사를 인수합병 등으로 지배 하는 홍콩증시 주식 (간접적 해외자금 조달 수단)

자료: 필자 정리

9) 한광수, 중국자본시장개방의 특성, 동북아경제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동북아경제학회(2010), p.157.

참고로 QFII와 관련된 제도로 RQFII와 QDII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다. 먼저 RQFII는 QFII와 유사한 것으로 위안화적격해외기관투자자(人民币合格的境外机构投资者: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이하 RQFII라 약칭)제도를 말한다. 이는 중국 자산운용사 또는 증권사의 홍콩자회사가 중국 본토 밖의 지역에서 허가받은 한도 범위에서 위안화로 중국 증시투자를 허용한 것¹⁰⁾로서 201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RQFII 역시 QFII와 동일한 취지에서 탄생하였다. 다만, 거래통화 및 주체가 달러와 중국 증권회사 등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분된다.

반면, QDII는 2007년부터 개시된 적격국내기관투자자 제도(合格境内机构投资者: Qualified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이하 QDII라 약칭)를 지칭한다. 이는 QFII나 RQFII와 달리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모집한 중국 국내 자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포트폴리오(资产组合) 방식으로 해외 증권시장에 투자 및 관리를 하는 중국 내 펀드관리회사 및 증권회사 등 증권경영기관을 지칭한다.¹¹⁾ QDII는 앞서 언급한 QFII나 RQFII와 달리 중국 자본의 해외진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종합하면, QFII, RQFII, QDII는 이원화된 주식시장과 자본통제라는 중국적 환경 하에서 실시된 제한적 금융개방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0) 基金管理公司、证券公司人民币合格境外机构投资者境内证券投资试点办法,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中国人民银行, 国家外汇管理局 第76号令.

http://www.csrc.gov.cn/pub/zjhpublic/G00306201/201112/t20111216_203868.htm (2015.9.18 검색)

11) 合格境内机构投资者境外证券投资管理试行办法,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令 第46号 (2007.6.18), 제2조.

第二条 本办法所称合格境内机构投资者(以下简称境内机构投资者), 是指符合本办法规定的条件, 经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以下简称中国证监会)批准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募集资金, 运用所募集的部分或者全部资金以资产组合方式进行境外证券投资的境内基金管理公司和证券公司等证券经营机构。

http://www.gov.cn/gzdt/2007-06/21/content_655612.htm (2015.9.14 검색)

(2) QFII 제도의 주요 내용

QFII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이하 증감회로 약칭), 인민은행, 외환관리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며, 적법한 외국투자기관이 신청을 하면 심사기준을 통해 투자기관을 선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투자금액을 부여한다. 정부기관 간 역할을 보면,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QFII투자자의 국경내 증권투자에 대한 감독관리를, 국가외환관리국은 QFII투자자의 국내 투자자금액에 대한 외환관리 등을 실시한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기관이 QFII가 될 것인가 하는 자격요건의 문제인데, 중국이 제시한 QFII 기준은 다음과 같다¹²⁾.

첫째,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자산신용이 양호하며, 중국 증감위가 제시한 자산규모 조건을 충족할 것;

둘째, 종업원이 소재국가 혹은 지역의 관련자격요건에 부합할 것;

셋째,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 내부 통제제도의 완비와 규범적 경영 행위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감독기관으로부터 중대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어야 함;

넷째, 신청기관의 소재국 혹은 지역이 관련 법률과 감독관리제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증권감독기관은 이미 중국 증감위와 감독관리 양해협력이 체결되어있고, 동시에 유효한 감독관리 협력관계가 구축되어있어야 함;

다섯째, 증감회의 감독관리원칙에 따른 기타 조건에 부합해야 함.

이상과 같은 자격요건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12) 合格境外机构投资者境内证券投资管理暂行办法,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中国人民银行, 国家外汇管理局 第36号(2006), 제6조.

第六条 申请合格投资者资格, 应当具备下列条件: (一)申请人的财务稳健, 资信良好, 达到中国证监会规定的资产规模等条件; (二)申请人的从业人员符合所在国家或者地区的有关从业资格的要求; (三)申请人有健全的治理结构和完善的内控制度, 经营行为规范, 近3年未受到监管机构的重大处罚; (四)申请人所在国家或者地区有完善的法律和监管制度, 其证券监管机构已与中国证监会签订监管合作谅解备忘录, 并保持着有效的监管合作关系; (五)中国证监会根据审慎监管原则规定的其他条件。

http://www.gov.cn/ziliao/flfg/2006-09/26/content_399342.htm (2015.9.19 검색)

그러나 QFII가 도입된 2002년 이후 10여년 간 중국 정부는 점진적 개방의 원칙 아래 매우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였다. 그러나, 최근 시진핑 정부 들어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면서, 국내 금융개혁에도 박차를 가하면서 주식 등 증권시장 개방범위도 더욱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2년에 새로이 발표된 증감위 규정(이하 2012년 규정이라 약칭)은 기존에 비해 조치가 크게 완화된 것이다¹³⁾.

- 자산관리기관: 자산관리업무 2년 이상, 최근 1회계년도에 관리한 증권자산 규모가 5억 달러보다 작아서는 안 됨;
- 보험회사: 회사성립 2년 이상, 최근 1회계년도에 보유한 증권자산이 5억 달러보다 작아서는 안 됨;
- 증권회사: 증권업무 5년 이상, 순자산은 5억 달러보다, 1개 회계연도에 관리한 증권자산이 50억 달러보다 작아서는 안 됨;
- 상업은행: 은행업무 경영 10년 이상, 기본자기자본(1급자본)¹⁴⁾이 3억 달러보다 작아서는 안되고, 최근 1회계년도에 관리한 증권자산이 50억 달러보다 작아서는 안 됨;
- 기타 기관투자자(양로기금, 자선기금회, 신탁회사, 정부투자관리회사 등): 성립된 지 2년 이상, 최근 1회계년도에 관리 또는 보유한 증권자산이 5억 달러보다 작아서는 안 됨.

13) 关于实施《合格境外机构投资者境内证券投资管理暂行办法》有关问题的规定,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公告 [2012] 17号, 一.

一、申请合格投资者资格的, 应当达到下列资产规模等条件: (一) 资产管理机构: 经营资产管理业务2年以上, 最近一个会计年度管理的证券资产不少于5亿美元; (二) 保险公司: 成立2年以上, 最近一个会计年度持有的证券资产不少于5亿美元; (三) 证券公司: 经营证券业务5年以上, 净资产不少于5亿美元, 最近一个会计年度管理的证券资产不少于50亿美元; (四) 商业银行: 经营银行业务10年以上, 一级资本不少于3亿美元, 最近一个会计年度管理的证券资产不少于50亿美元; (五) 其他机构投资者(养老基金、慈善基金会、捐赠基金、信托公司、政府投资管理公司等): 成立2年以上, 最近一个会计年度管理或持有的证券资产不少于5亿美元。

http://www.gov.cn/gongbao/content/2012/content_2266933.htm (2015.9.19 검색)

14)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에서는 자기자본을 기본자기자본(Tier 1)과 보완자본(Tier 2)으로 구성되는데, 기본자기자본에는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를 기존 규정(2006년판)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자산관리기구의 경우, 업무경력이 5년에서 2년으로, 1회계연도 내 관리한 자산규모는 50억 달러에서 5억 달러로 감소
- 보험회사의 경우 회사성립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1회계연도 내 관리한 자산규모가 50억 달러에서 5억 달러로 변경
- 증권회사의 경우, 업무경력은 3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순자산은 10억 달러에서 5억 달러로, 1회계연도 내 관리한 자산규모는 10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축소.
- 상업은행은 총자산 세계 100위 내 요건은 삭제되고 대신 업무경력 10년 이상 요건과 기본자기자본 요건이 신설되었고, 1회계연도 내 관리한 증권자산규모도 10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감소
- 끝으로 기타 기관투자자는 성립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관리한 증권자산규모는 50억 달러에서 5억 달러로 축소

이외에 2012년 규정은 QFII 투자자가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고정수익상품과 주가선물지수(Share Price Index Futures) 등에 대한 투자도 가능¹⁵⁾하게 하였다. 1개의 상장회사에 대한 모든 QFII 투자자의 주식보유비율 최대 30%(기존에는 20%)까지 확대¹⁶⁾하였다. 이외 절

15) 关于实施《合格境外机构投资者境内证券投资管理暂行办法》有关问题的规定,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公告〔2012〕17号, 8조.

八、合格投资者在经批准的投资额度内, 可以投资于下列人民币金融工具: (一) 在证券交易所交易或转让的股票、债券和权证; (二) 在银行间债券市场交易的固定收益产品; (三) 证券投资基金; (四) 股指期货;

http://www.gov.cn/gongbao/content/2012/content_2266933.htm (2015.9.20 검색)

16) 关于实施《合格境外机构投资者境内证券投资管理暂行办法》有关问题的规定,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公告〔2012〕17号, 9조.

九、境外投资者的境内证券投资, 应当遵循下列持股比例限制: (一) 单个境外投资者通过合格投资者持有一家上市公司股票的, 持股比例不得超过该公司股份总数的10%; (二) 所有境外投资者对单个上市公司A股的持股比例总和, 不超过该上市公司股份总数的30%。

http://www.gov.cn/gongbao/content/2012/content_2266933.htm (2015.9.20 검색)

차적으로 투자자들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증감회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서류 교부¹⁷⁾ 등이 새로이 개선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표 3-3-3> QFII 제도의 변화: 2012년과 2006년 증감회 규정 비교

구분		2006년 규정	2012년 규정
자 산 규 모	자산관리 기구	업무경력 5년 이상 관리자산규모: 50억 달러	업무경력 2년 이상 관리자산규모: 5억달러
	보험회사	회사성립 5년 이상 보유자산규모 50억 달러	회사성립 2년 이상 보유자산규모 5억 달러
	증권회사	업무경력 30년 이상 순자산 10억달러 관리자산규모 100억 달러	업무경력 5년 이상 순자산 5억 달러 관리자산규모 50억 달러
	상업은행	총자산 세계 10위 내 관리자산규모 100억 달러	업무경력 10년 이상 기본자기자본 3억 달러 관리자산규모 50억 달러
	기타 기관투자자	성립 5년 이상 관리자산규모 50억 달러	성립 2년 이상 관리자산규모 5억 달러
투자대상		주식, 채권, 증권투자펀드 등	추가: 은행 간 채권거래상품 주가선물지수
주식보유비율		한 개 상장회사에 20%	한 개 상장회사에 30%까지
신청 절차		증감회에 직접 서류 제출	증감회 사이트에 제출

자료: 각 규정을 참고하여 필자 정리

17) 关于实施《合格境外机构投资者境内证券投资管理暂行办法》有关问题的规定,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公告〔2012〕17号, 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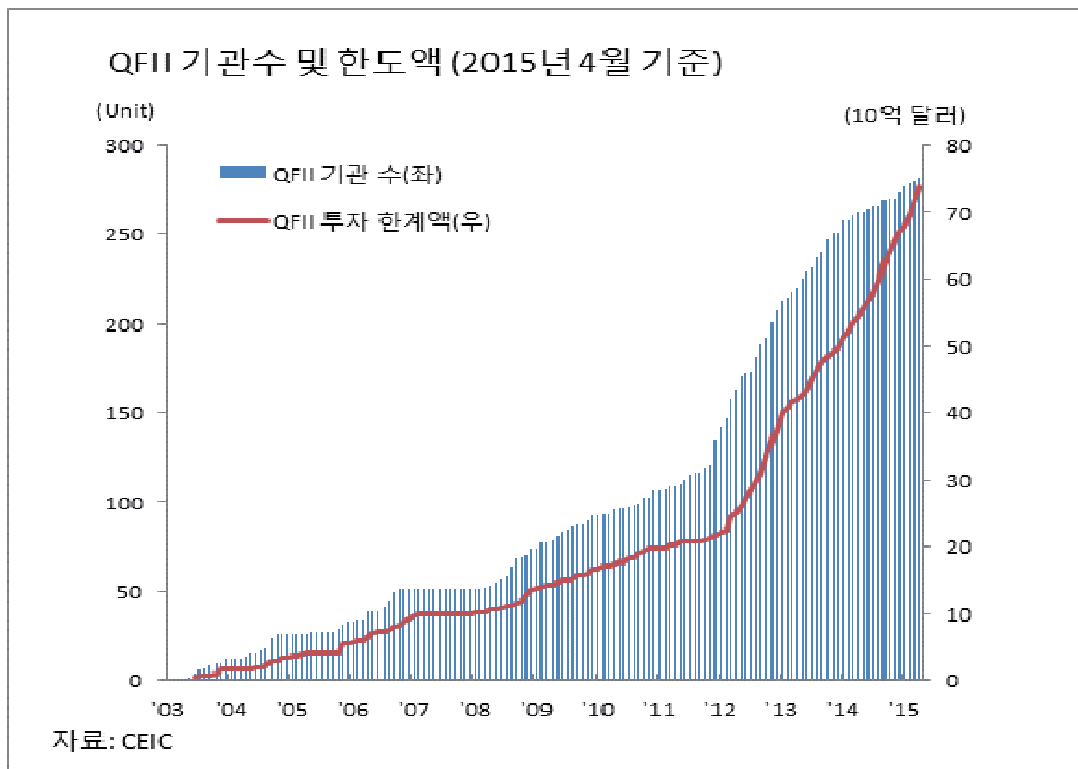
二、申请合格投资者资格的, 应当通过中国证监会网站以电子方式提交以下申请材料, 并向中国证监会提交一份内容相同的书面申请文件

http://www.gov.cn/gongbao/content/2012/content_2266933.htm (2015.9.20 검색)

(3) 시사점

2003년 QFII 개설 이후, 2015년 4월까지 QFII 자격을 얻은 외국인 기관투자자는 모두 260개를 넘었고, 이들의 누적 투자 한도는 700억 달러를 넘었다.

<도표 3-3-1> 중국의 QFII 기관수 및 한도액(2015년 4월 기준)



또한 일부에서는 QFII나 RQFII의 투자금액이 기존의 엄격한 허가제(审批制) 방식에서 보다 완화된 등록제(备案制)형태로 바뀌고, 투자범위도 주식 등에서 나아가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 등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소식¹⁸⁾도 있었다.

18) 外媒：中国QFII和RQFII额度拟由审批制改备案制，中国证券网(2015.3.26)
http://stock.cnstock.com/stock/smk_gszbs/201503/3380588.htm (2015.8.3. 검색)

이런 측면을 감안할 때, QFII는 중국의 금융개혁 및 개방의 확대 추세에 발맞추어 향후에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중국 주식시장의 활성화 및 체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후강통

(1) 후강통(沪港通)의 배경 및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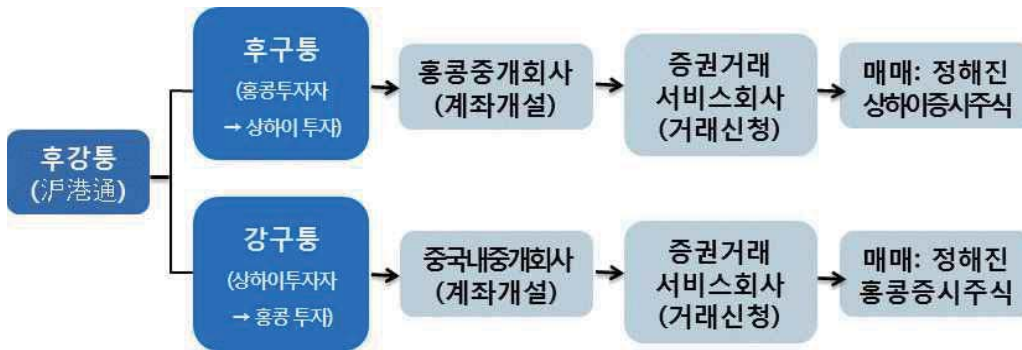
2014년 11월 17일자로 전격 개시된 후강통(沪港通) 제도는 상하이증권거래소와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교차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후강통의 후(沪)는 상하이 지방을 뜻하고, 강(港)은 홍콩을 의미한다. 그리고 두 곳을 통하게 한다는 의미의 통(通)을 합성한 용어이다. 즉 상하이와 홍콩증권거래소를 서로 연결함으로써 한쪽 거래소를 통해 타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다.

후강통은 다시 후구통(沪股通)과 강구통(港股通)으로 분류된다. 후구통은 홍콩 내 투자자에게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상장된 A주식에 대한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고, 강구통은 반대로 상하이의 중국 본토 투자자들에게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 것이다.¹⁹⁾ 중국어로 구(股)는 주식을 말하므로, 후구통은 상하이(沪)증시의 주식, 강구통은 홍콩증시(港)의 주식에 대한 접근 및 거래(通)를 뜻하는 것이다.

19) 상하이 증권거래소 홈페이지 참고.

<http://www.sse.com.cn/marketservices/hkexsc/intro/>(검색일: 2015.8.10.)

<그림 3-3-1> 후강통 개념도



자료: 관련 법규²⁰⁾에 근거하여 필자 정리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후구통이다. 즉, 홍콩의 투자자들이 상하이증시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인데, 홍콩의 투자자는 사실상 외국인투자자를 의미하므로, 후강통은 결과적으로 외국인투자자에게 상하이 증시를 개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에 외국인투자자가 중국의 증시에 접근하는 대표적 방법인 QFII였으나, 이제 새로운 접근 통로가 생긴 것이다. 이로서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중국 정부는 후강통을 통해 자국 증시 부양, 증권거래 관행의 선진화 등 금융시장 개혁이라는 목표달성과 함께 상장된 기업들의 투명성 제고, 경영혁신 등 국유기업의 개혁과정에도 활용하고, 나아가 증권거래에 위안화 사용률을 제고함에 따라 위안화 국제화에도 기여하는 다목적 포석 하에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한 형태도 선전(深圳)증시와 홍콩증시의 교차거래를 허용하는 선강통(深港通)도 금년 내 시행될 것²¹⁾으로 예상된다.

20) 沪港股票市场交易互联互通机制试点若干规定,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令 第101号 (2014.6.13.) 참고 http://www.cs.gov.cn/pub/zjhpublish/zjh/201406/t20140613_256078.htm (2015.9.20. 검색)

21) 深港通多轮测试完毕或年内推出, 中国证券网(2015.9.11.), http://www.cs.com.cn/xwzx/zq/201509/t20150911_4795960.html (2015.9.20 검색)

(2) 후강통의 주요 내용

후강통에서 후구통은 외국인투자자에게 홍콩을 통한 중국 본토 증시에 대한 참여를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내외국인투자자가 자유롭게 상하이와 홍콩의 모든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투자대상, 한도, 방식 등에서 제한이 존재한다.

첫째, 투자금액에 있어 한도가 존재한다. 먼저 총 한도의 경우, 후강통 전체 총 한도금액은 5,500억 위안이고, 이중 후구통이 3천억 위안, 강구통이 2,500억 위안이다. 또한 일일 매매한도도 규정하고 있는데, 후구통은 130억 위안, 강구통은 105억 위안이다²²⁾.

둘째, 거래대상 주식에도 제한이 있다. 후구통의 경우, 상하이 180지수 주식(上证180指数成份股)²³⁾, 상하이 380지수 주식(上证380指数成份股)²⁴⁾, 상하이와 홍콩에 동시 상장된 A+H주식된 A주식(A+H股上市公司的本所上市A股)²⁵⁾에 제한된다²⁶⁾. 강구통은 항생(恒生)종합 대형주 주식, 항생종합 중형주 주식, 홍콩과 상하이에 동시 상장된 A+H 주식의 H주가 대상²⁷⁾이 된다. 이에 상하이 A주식시장에서 대상이 되는 기

22)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香港证券及期货事务监察委员会联合公告 (2014.4.10),

http://www.gov.cn/xinwen/2014-04/10/content_2656483.htm (2015.9.20 검색)

23) 상하이 증권거래소의 시가총액 상위 우량기업 180개로 구성되어 있다.

24)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형주 380개로 구성되어 있다.

25) 상하이(A)와 홍콩증권거래소(H)에 교차상장된 종목을 지칭하며, H주는 홍콩증시에 상장된 중국 대륙기업의 주식을 의미한다.

26) 上海证券交易所沪港通试点办法, 上证发[2014] 60号(2014.9.26), 제16조

第十六条 沪股通股票包括以下范围内的股票：(一) 上证180指数成份股；(二) 上证380指数成份股；(三) A+H股上市公司的本所上市A股。

在本所上市公司股票风险警示板交易的股票(即ST、*ST股票和退市整理股票)、以外币报价交易的股票(即B股)和具有本所认定的其他特殊情形的股票, 不纳入沪股通股票。经监管机构批准, 本所可以调整沪股通股票的范围。

http://www.sse.com.cn/aboutus/hotandd/ssenews/c/c_20140926_3845152.shtml (2015.9.20 검색)

27) 上海证券交易所沪港通试点办法, 上证发[2014] 60号(2014.9.26), 제57조,

第五十七条 港股通股票包括以下范围内的股票：(一) 恒生综合大型股指数的成份股；(二) 恒生综合中型股指数的成份股；(三) A+H股上市公司的H股。

本所上市A股为风险警示板股票的A+H股上市公司的相应H股、同时有股票在本所以外

업의 주식은 총 566개이고, 홍콩증시의 경우 273개 회사의 주식이 후강통의 거래대상이 되는 것이다.

셋째, 투자자의 자격도 제한된다. 강구통에 참여할 수 있는 중국 본토 투자자는 기관투자자와 증권계좌 잔액 합계가 50만 위안 보다 적지 않은 개인 투자자²⁸⁾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후구통에 참여하는 홍콩 투자자의 자격은 따로 제한하지 않았다.

넷째, 거래규칙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교차거래로서 후강통의 특성 때문이다. 즉, 후구통의 경우, 상하이증권거래소의 규칙을, 강구통의 경우 홍콩증권거래소의 규칙을 따르게 되어 있다. 따라서, 양 증권거래소간 규칙의 차이가 거래에 반영됨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거래 및 결제일 관련, 상하이증권거래소는 주식을 매입한 다음날 매각이 가능(T+1)하나, 홍콩증권거래소는 주식 매입 당일 날 매각이 가능(T+0)하다는 규칙을 사용하고 있다. 거래시간도 상하이증시는 현지시간 오후 3시에 거래가 종료되나, 홍콩증시는 현지시간 오후 4시에 거래가 종료된다. 반면, 거래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일괄주문취소주문(bulk cancel order), 24시간 스프레드 룰, 거래지원시설 등은 홍콩증시에서는 인정되나, 상하이 증권시장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규칙²⁹⁾이다.

의内地证券交易所上市的发行人的股票、在联交所以港币以外货币报价交易的股票和具有本所认定的其他特殊情形的股票，不纳入港股通股票。

经监管机构批准，本所可以调整港股通股票的范围。

http://www.sse.com.cn/aboutus/hotandd/ssenews/c/c_20140926_3845152.shtml (2015.9.20 검색)

28) 上海证券交易所沪港通试点办法, 上证发〔2014〕60号(2014.9.26.), 제86조

第八十六条 个人投资者参与港股通交易，至少应当符合下列条件：（一）证券账户及资金账户资产合计不低于人民币50万元；（二）不存在严重不良诚信记录；（三）不存在法律、行政法规、部门规章、规范性文件和业务规则规定的禁止或者限制参与港股通交易的情形。本所可以根据市场情况，调整前款规定的条件。

http://www.sse.com.cn/aboutus/hotandd/ssenews/c/c_20140926_3845152.shtml (2015.9.20 검색)

29) 천창민, 후강통제도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2014년 가을호, 자본시장연구원, P.2.

다섯째, 해외투자자의 주식보유비율 제한이 있다. 증감회 규정에 따르면, 한명의 해외투자자가 하나의 상장회사에 대한 보유지분은 해당 상장회사 주식총수의 10%를 넘어서는 안 되며, 모든 해외투자자가 하나의 상장회사 A주식에 대한 보유총합이 해당상장회사의 주식총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³⁰⁾이 그것이다.

<표 3-3-4> 후강통의 차이 및 제한사항

구분	후구통	강구통
투자한도	-총액: 3000억 위안 -일일한도: 130억 위안	-총액: 2,500억 위안 -일일한도: 105억 위안
대상주식	-상하이 180지수 주식, -상하이 380지수 주식, -상하이 증시상장 A+H주식	-항생(恒生)종합 대형주 주식, -항생종합 중형주 주식, -홍콩 상장 A+H 주식
투자자 자격	-홍콩주민, 외국인 -자격제한없음	-중국본토주민 -기관투자자, 증권계좌 잔액합계 50만 위안이 넘는 개인투자자
주식보유 비율	-한명의 해외투자자가 하나의 상장회사에 대한 보유지분은 해당 상장회사 주식총수의 10%를 넘을 수 없음 -모든 해외투자자가 하나의 상장회사 A주식 보유총합이 해당 상장회사의 주식총수의 30%를 초과할수 없음	
거래통화	-위안화	-홍콩달러/위안화

30) 沪港股票市场交易互联互通机制试点若干规定,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令 第101号 (2014.6.13), 제12조.

第十二条 境外投资者的境内股票投资, 应当遵循下列持股比例限制: (一) 单个境外投资者对单个上市公司的持股比例, 不得超过该上市公司股份总数的10%; (二) 所有境外投资者对单个上市公司A股的持股比例总和, 不得超过该上市公司股份总数的30%。境外投资者依法对上市公司战略投资的, 其战略投资的持股不受上述比例限制。

http://www.csrc.gov.cn/pub/zjhpublic/zjh/201406/t20140613_256078.htm (2015.9.20. 검색)

구분	후구통	강구통
거래규칙	상하이증권거래소 규칙> -결제일: T+1/T+1 -10% 급등락시 거래 중단 -거래시간: 오전 09:30~ 오후 15:00 (현지시간 기준)	홍콩증권거래소 규칙> -결제일: T+0/T+2 -거래중단 제한 없음 -거래시간: 오전 09:30~ 오후 16:00 (현지시간 기준)

자료: 상하이증권거래소 사이트 등을 참고하여 필자 정리

여섯째, 거래통화에서도 차이가 있다. 후구통은 위안화로 거래 및 결제 하고, 강구통은 주문가격은 홍콩달러이나 결제는 위안화를 사용한다³¹⁾.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강통의 핵심은 홍콩을 통해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대륙의 상하이 증시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즉, 그렇다면 후강통은 QFII나 RQFII 등 기존의 주식시장 개방제도와 비교할 때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이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투자자 자격요건 및 대상이 다르다. 후강통의 경우, 중국 본토 투자자(기관투자자 및 일정요건을 구비한 개인투자자)와 홍콩투자자(홍콩인과 외국인)가 대상이 된다. 후강통의 경우, 대륙 개인투자자를 제외하면 기관투자자에게도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다. 반면 QFII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해외기관투자자가 투자자이다. RQFII도 자격있는 금융기관이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즉, 중국 기금관리회사, 증권회사, 상업은행, 보험회사 등의 홍콩자회사 혹은 주요 영업지가 홍콩에 있고, 홍콩증권감독부로부터 자산관리업무자격을 취득하여 자산관리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금융기관³²⁾이 대상이 된다.

31) 上海证券交易所沪港通试点办法, 上证发[2014] 60号(2014.9.26), 제20, 62조

第二十条 沪股通股票以人民币报价和交易。

第六十二条 港股通交易以港币报价,投资者以人民币交收。

http://www.sse.com.cn/aboutus/hotandd/ssenews/c/c_20140926_3845152.shtml (2015.9.20 검색)

32) 关于实施《人民币合格境外机构投资者境内证券投资试点办法》的规定, (2013年3月1

투자자의 자격요건과 관련해 볼 때, 후강통이 개인투자자의 참여도 허용하는 등 대상이 가장 광범위함으로 알 수 있다.

둘째, 감독 및 관리기관이 다르다. 후강통의 경우 중국 본토에서는 중국 증감회가, 홍콩의 경우 홍콩증권 및 선물사무감찰위원회(香港証券及期貨事務監察委員會, 이하 홍콩증감위로 약칭) 관리하나, QFII는 중국 증감회 외에 국가외환관리국과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관리감독에 참여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아, 중국은 자본통제의 시각에서 이를 관리하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는 RQFII도 QFII와 동일하다.

셋째, 대상시장에도 차이가 있다. 먼저 후강통의 경우, 상하이 A주 시장과 홍콩증권거래소 주식이 대상이다. 반면, QFII의 경우, 상하이와 선전증시의 A주식이 주요 대상이 되나, 최근에는 채권과 선물 등 주식 이외의 금융상품으로도 투자범위가 확대되었다³³⁾. 이는 RQFII 역시 마찬가지이다³⁴⁾.

日 证监会公告〔2013〕14号), 제1조.

一、申请人民币合格投资者资格的,注册地、业务资格等应当符合下列条件:(一)境内基金管理公司、证券公司、商业银行、保险公司等香港子公司,或者注册地及主要经营地在香港地区的金融机构;(二)在香港证券监管部门取得资产管理业务资格,并已经开展资产管理业务。

http://www.csrc.gov.cn/pub/newsite/flb/flfg/bmgf/jj/hgjw/201310/t20131021_236660.html
(2015.9.19 검색)

33) 关于实施《合格境外机构投资者境内证券投资管理暂行办法》有关问题的规定,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公告〔2012〕17号, 八.(二).

八、合格投资者在经批准的投资额度内,可以投资于下列人民币金融工具:(一)在证券交易所交易或转让的股票、债券和权证;(二)在银行间债券市场交易的固定收益产品;(三)证券投资基金;(四)股指期货;(五)中国证监会允许的其他金融工具。合格投资者可以参与新股发行、可转换债券发行、股票增发和配股的申购。

http://www.gov.cn/gongbao/content/2012/content_2266933.htm (2015.9.20 검색)

34) 关于实施《人民币合格境外机构投资者境内证券投资试点办法》的规定,(2013年3月1日 证监会公告〔2013〕14号), 제5조.

五、人民币合格投资者在经批准的投资额度内,可以投资于下列人民币金融工具:

(一)在证券交易所交易或转让的股票、债券和权证;(二)在银行间债券市场交易的固定收益产品;(三)证券投资基金;(四)股指期货;

http://www.csrc.gov.cn/pub/newsite/flb/flfg/bmgf/jj/hgjw/201310/t20131021_236660.html

넷째, 거래 통화도 다르다. 후강통은 투자한도 통화와 거래 및 결제 모두 위안화가 주로 사용되고, 강구통에서는 모두 위안화이나, 거래시에만 홍콩달러가 사용된다. QFII의 경우, 투자한도 통화는 달러이고, 결제통화는 위안화이고, RQFII는 모두 위안화가 사용된다.

다섯째, 투자한도에도 차이가 있다. 후강통은 총한도 5,500억위안 가운데 후구통의 총한도는 3천억 위안, 일일한도는 130억 위안이다. 또한 강구통의 총한도는 2,500억 위안이고, 일일한도는 105억 위안이다. 이에 반해 QFII는 누계 약 736억 달러(2015년 4월 기준)이고, RQFII는 3,115억 위안(2015년 2월 기준)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후강통의 한도는 투자자들이 선착순으로 사용하는 것일 뿐 특정 기관에 대한 쿼터개념이 아니다. 반면, QFII나 RQFII는 기관투자자나 특정 국가에 대해 일정한 쿼터를 부여하고, 쿼터 내에서는 독점적 권한을 가진다는 점은 공통된 요소이다. 이점에서 후강통과 QFII/QFII는 질적 차이가 있다 하겠다.

여섯째, 투자제한은 공통점 및 차이점이 있다. 공통점은 해외투자자에 대한 주식보유비중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즉, 하나의 상장회사에 대한 보유지분은 해당회사 주식총수의 10%를 넘으면 안되고, 모든 해외투자자가 하나의 상장회사 A주식에 대한 보유총합이 해당회사의 주식총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신주발행시장 참여 여부 등에 있다. 대표적으로 QFII와 RQFII의 경우 신주발행에 참여할 수 있으나³⁵⁾, 후강통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점에 있다.

(2015.9.19 검색)

35) 关于实施《人民币合格境外机构投资者境内证券投资试点办法》的规定, 证监会公告[2013] 14号 (2013.3.1.), 제5조.

五、人民币合格投资者在经批准的投资额度内, 可以投资于下列人民币金融工具: (一) 在证券交易所交易或转让的股票、债券和权证; (二) 在银行间债券市场交易的固定收益产品; (三) 证券投资基金; (四) 股指期货; (五) 中国证监会允许的其他金融工具。

人民币合格投资者可以参与新股发行、可转换债券发行、股票增发和配股的申购。

http://www.csrc.gov.cn/pub/newsite/flb/flfg/bmgf/jj/hgjw/201310/t20131021_236660.html

(2015.9.19 검색)

<표 3-3-5> 후강통과 QFII/RQFII의 비교

구분	후강통	QFII	RQFII
투자자 자격요건 및 대상	-중국 본토 투자자(기관투자자 및 일정요건을 구비한 개인투자자)와 홍콩투자자(홍콩인과 외국인/개인 및 기관) 후구통의 대륙 개인투자자를 제외하면 별도의 자격요건 無	-법규상 요건을 충족한 해외기관투자자가 투자자	-중국 기금관리회사, 증권회사, 상업은행, 보험회사 등의 홍콩 자회사 혹은 주요 영업지가 홍콩에 있고, 홍콩증권감독부로부터 자산관리업무 자격을 취득하여 자산관리업무를 진행하는 금융기관
감독기관	-중국 증감회와 홍콩 증권및선물사무감찰위원회가 관리	-중국 증감회, 국가외 환관리국, 인민은행이 관리감독	-QFII와 동일
대상시장	-상하이 A주 시장과 홍콩증권거래소 주식	-상하이와 선전증시의 A주, 채권과 선물 등 금융상품으로 확대	-QFII와 동일
투자한도	-총한도: 5,500억위안 -후구통: 총 3천억위안, 일일한도 130억 위안 -강구통: 총2,500억위안, 일일한도 105억 위안	-누계 약 736억 달러 (2015년 4월 기준)	-누계 3,115억 위안 (2015년 2월 기준)
거래통화	-위안화/홍콩달러 일부	-달러/위안화	-위안화

구분	후강통	QFII	RQFII
투자제한	공통점> -한개 상장회사에 대한 주식비중 제한	공통점> -한개 상장회사에 대한 주식비중 제한	공통점> -한개 상장회사에 대한 주식비중 제한
	-주식 발행에 참여 불가	-주식 발행에 참여	-주식발행에 참여

자료: 필자 정리

(3) 시사점

후강통의 시행은 중국 금융발전에 있어 획기적 전환점으로서 의미가 있다. 비록 최근 중국 증시의 불안감으로 인해 빛이 바래기는 하였으나, 후강통으로 인해 중국 금융개혁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후강통은 기존의 QFII와 RQFII에 비해 더욱 진일보한 주식시장 개방조치로 생각된다. 또한 증권거래 대금으로 위안화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이 적극 추진하는 위안화 국제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다만, 아직도 후강통에 남아있는 각종 제한은 조속히 완화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투자한도액의 제한과 거래상품이 주식에 한정되는 등 각종 투자제한은 향후 점진적으로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중화권 언론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선강통 출범과 함께 투자한도액 가운데 총한도액 규제를 철폐하고, 일일거래한도만 확대해서 둘 것이라는 보도도 있다³⁶⁾. 추측컨대, 중국 당국에서도 금융규제 완화의 대세에는 공감할 하면서 시기적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6) 港媒：深港通开通在即 沪港通总额度限制或将取消，凤凰国际iMarkets (2015.5.26), http://finance.ifeng.com/a/20150526/13732088_0.shtml (2015.9.23 검색)

이제 국내외 투자자의 시선은 금년 하반기 10월경으로 예정된 선강통(深港通)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선강통의 파트너 중 하나인 선전거래소는 대형 국유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상하이 증권거래소와 달리, IT 등 첨단산업 분야 민영기업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따라서 선강통이 출범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더욱 많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다. 최근에는 후강통, 선강통에 이어 후룬통(沪伦通)에 대한 타당성 연구에 돌입했다는 소식³⁷⁾도 있다. 후룬통은 상하이증시와 영국 런던증시 간의 교차거래를 의미한다. 이제 후강통에서 시작된 중국 증시의 국제화의 무대는 세계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3. 증권법(证券法)

(1) 증권법 개정 배경

증권법은 증권시장에 대한 기본법률로서, 증권의 발행, 거래와 증권시장에 대한 감독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법적 규범을 말한다. 그런데, 중국 최초의 증시인 상하이와 선전증권거래소는 1990년대 초반에 설립되었으나, 최초의 증권법은 1998년 12월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과하여 제정되었다. 당시 증권법은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1년 WTO 가입을 목전에 두고, 국내 금융시장의 규범화와 업그레이드를 위해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최초의 증권법은 중국 금융시장의 빠른 발전- 예를 들어, QFII제도 도입에 따른 외국자본의 중국 증시 진출 확대 등-에 따른 수요에 부응할 수 없었다.³⁸⁾ 이에 따라 2005년 대규모 증권법 개정작업이 진행되었다.

37) 沪港通、深港通之后，沪伦通也将来了，中国经济网(2015.9.23.)，
http://finance.ifeng.com/a/20150923/13989683_0.shtml (2015.9.23 검색)

38) 评《证券法》修订的背景、历程和意义，证券日报(2005. 11.17)，
<http://business.sohu.com/20051117/n240738126.shtml> (2015.9.22 검색)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2012년 출범한 시진핑 지도부는 금융개혁과 증시개방을 더욱더 강력히 추진하였다. 이에 기존의 QFII와 RQFII 이외 후강통까지 실시됨으로서 중국 증권시장 개방은 더욱 가파르게 변하였다. 그러나 시장의 발전과 함께 많은 문제점 또한 노정되었다.³⁹⁾

먼저, 증권감독기관의 경직된 법집행구조로 인해 행정기관의 중복과 행정력의 낭비 등으로 인해 증권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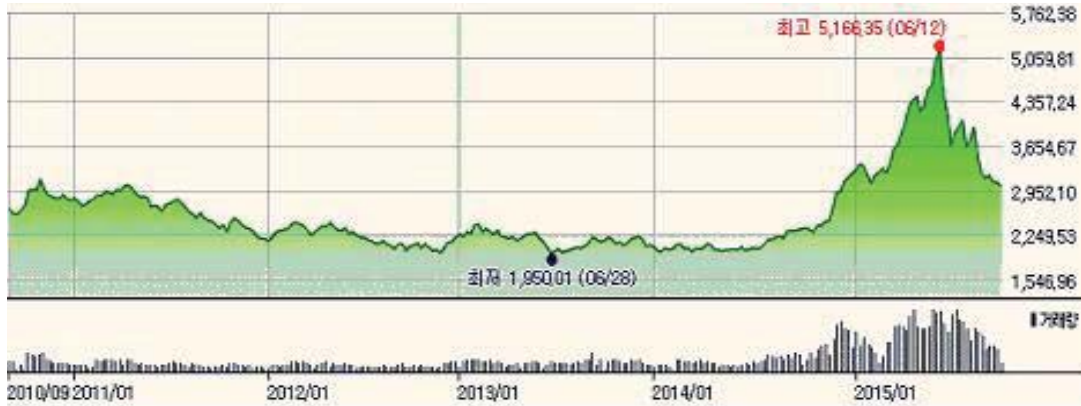
둘째, 내부자 거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실무에서 다칭(大成)주식회사의 前대표이사는 내부자거래로 막대한 이익을 남겼으나 재판결과 실재 부과된 벌금 5만 위안에 불과하였다. 반면, 법률에 민사상 손해배상제도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손실을 본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하기도 쉽지 않게 되어 있었다.

끝으로 부실이 누적되어 퇴출되어 마땅한 준비기업들이 여전히 퇴출되지 않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는 주로 지방 국유기업들이 다수인데, 세수결손이나 일자리 감소 등에 따른 사회문제를 우려한 지방정부의 무리한 지원으로 경쟁력 없는 기업들이 증시에 계속 상장되어, 전체 증시의 건전한 발전이 저해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서 중국 증시는 실물경제의 지속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주식시장의 규범화와 투자자의 보호 등을 위한 증권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39) 중국 증권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 股市改革背景下的证券法修改:必要性及重要性, 中国总会计师, 总第134期(2014.9月), P21~22

<도표 3-3-2> 중국 상하이종합지수 추이



자료: 네이버금융(<http://finance.naver.com/world/sise.nhn?symbol=SHS@000001#>
(2015.10.1 검색))

(2) 증권법 주요 내용

2015년 전인대에서 심의 중인 중화인민공화국증권법 수정초안(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 修订草案) (이하 증권법 수정안)⁴⁰⁾은 전체가 16장 33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행 증권법(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2014年))⁴¹⁾ 대비 새로이 증가한 조문이 122개, 수정한 조문이 185개, 삭제한 조문이 22개이다. 신증권법 초안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주식발행(IPO)에 있어 심사제(审核制)를 폐지하고 등록제(注册制)를 규정하였다. 기존의 주식발행 과정에서는 증권거래소가 아닌 증권감독기관이 상장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신법 초안에서는 주식발행 제도를 개혁하여 기존의 주식발행 심사위원회(股票发行审核委员会) 제도⁴²⁾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예정인 공

40) 본문에서는 2015년 4월20일 전인대에서 심의한 수정안(4月20日人大审议版)에 기초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http://www.financialservicelaw.com.cn/article/default.asp?id=4777> (2015.9.22 검색)

41) 본문에서는 2014년 4월 부분개정된 현행 증권법(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2014年))에 근거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http://www.npc.gov.cn/npc/lfzt/rlyw/2015-04/23/content_1934291.htm (2015.9.23일 검색)

42) 중국 증권법(2014年) 제22조.

모주의 경우 등록 서류의 구비 조건, 일치성, 이해가능성 등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다음, 증권거래소가 증권감독기관에 등록서류와 심사의견을 전달하면, 증권감독기관이 10일 내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등록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⁴³⁾

주식발행에서 등록제의 실시는 상장되는 기업의 투자가치에 대한 판단을 정부가 아닌 시장참여자의 판단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으로서, 주식시장에서 정부와 시장의 관계에서 중대한 진전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금융부문 전반에서 규제완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신법에서는 기존의 7가지 행정허가⁴⁴⁾를 삭제하였다.

다만, 주의할 것은 등록제로 개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현 단계에서 등록제의 대상은 주식에 한정하고, 채권과 기타 증권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점이다.⁴⁵⁾

第二十二條 國務院證券監督管理機構設發行審核委員會，依法審核股票發行申請。發行審核委員會由國務院證券監督管理機構的專業人員和所聘請的該機構外的有關專家組成，以投票方式對股票發行申請進行表決，提出審核意見。發行審核委員會的具體組成辦法、組成人員任期、工作程序，由國務院證券監督管理機構規定。

43) 중국 증권법 수정안 제2절 주식발행등록 제22조, 제23조.

第二十二條 公開發行股票，由證券交易所負責審核註冊文件。審核程序應當公開，依法接受監督。證券交易所可以要求發行人、保薦人、證券服務機構對註冊文件作出解釋說明，或者補充、修改註冊文件。解釋說明或者補充修改的情況應當公開。證券交易所應當對註冊文件的齊備性、一致性、可理解性進行審核，並出具審核意見。參與審核的人員，不得與發行人有利害關係，不得直接或者間接接受發行人的饋贈，不得持有所審核的發行人的股票，不得私下與發行人進行接觸。

第二十三條 證券交易所出具同意的審核意見的，應當將審核意見及發行人的註冊文件報送國務院證券監督管理機構。國務院證券監督管理機構自收到審核意見及註冊文件之日起十日內未提出異議的，註冊生效。註冊生效不表明國務院證券監督管理機構對股票的投资價值或者投资收益作出實質性判斷或者保證，也不表明國務院證券監督管理機構對註冊文件的真實性、準確性、完整性作出保證。

44) 청약매수 면책; 역내기업의 해외발행 상장; 증권회사의 설립, 인수 또는 지점 말소; 등록자본 변경; 정관의 중요조항 변경; 해외에서 증권사의 설립, 인수 또는 지분참여; 이사 및 감사의 재직 자격 등이 해당함.

45) 중국 증권법 수정안 제35조.

第三十五條 公開發行債券，由國務院證券監督管理機構或者國務院授權的部門核准；

둘째, 증권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다. 앞서 주식발행에서의 등록제 개혁이 정부의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라면,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는 정부의 권한을 일정하게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주식발행인이 주주모집설명서 가운데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중대한 허위 내용을 제공할 경우, 주식이 아직 발행되지 않은 경우 100만 위안 이상 1천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만약 증권이 이미 발행된 경우, 불법으로 모집한 자금의 2% 이상 1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⁴⁶⁾하였다.

현행법이 전자의 경우 30만 위안 이상 60만 위안 이하, 후자의 경우 불법으로 모집한 자금의 1% 이상 5% 이하에 불과한 것⁴⁷⁾에 비춰볼 때,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신법 초안에서는 주주에 대한 현금배상제도를 신설하였다. 현금배당의 부족은 중국 주식시장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사안이다. 이를 위해 증권법 초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상장회사는 현금배당의 구체적 방안과 의사결정 절차를 정관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해당년도 세후 이윤, 즉 손실보상 및 법적 공적금 공제후의 이윤에 대해서는 상장회사의 정관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배당을 할 수 있게끔 하였다.⁴⁸⁾

公开发行其他证券，由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核准。

46) 중국 증권법 수정안 제270조.

第二百七十条 发行人在招股说明书或者其他证券募集说明书中隐瞒重要事实或者编造重大虚假记载，尚未发行证券的，处以一百万元以上一千万元以下的罚款；已经发行证券的，处以非法所募资金金额百分之二以上百分之十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以五十万元以上五百万元以下的罚款。

发行人的控股股东、实际控制人从事或者组织、指使从事前款违法行为的，依照前款的规定处罚。

47) 중국 증권법(2014년) 제189조.

第一百八十九条 发行人不符合发行条件，以欺骗手段骗取发行核准，尚未发行证券的，处以三十万元以上六十万元以下的罚款；已经发行证券的，处以非法所募资金金额百分之一以上百分之五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以三万元以上三十万元以下的罚款。

发行人的控股股东、实际控制人指使从事前款违法行为的，依照前款的规定处罚。

48) 중국 증권법 수정안 제171조.

동규정은 증시 투자자들에게 시세차익 뿐 아니라 주식을 장기보유하면서 배당금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해외기업의 중국내 상장을 위한 법적 공간을 마련하였다. 신증권법 초안에는 해외기업의 중국 증시 상장을 위해 관련된 4개의 조항(49)을 신설하였다. 해당 규정은 해외발행인이 국내 상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을 규정하였다. 예를 들어 해당발행인의 소재국은 증권법을 및 감독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중국정부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발행인은 유효한 회사지배구조와 내부감독기제를 갖추고 있을 것, 소재지 법률에 따라 정부를 공개할 뿐 아니라 중국 내에도 동시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재무회계보고, 감사보고 등을 국무원 관련부문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등에 관한 요건에 대해 규정했다.

다섯째, 증권업 종사자들의 주식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신법 초안에서는 증권사, 증권거래소, 증권등기결산기구,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 종사자, 기타 증권종사자는 먼저, 본인 및 배우자의 증권계좌를 신고하고, 증권거래 완료 후 3일 내에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50)을 신설하였다. 기존 증권법에서 증권관련 업무 종사자는 본인

第一百七十一条 上市公司应当在章程中明确分配现金股利的具体安排和决策程序, 依法保障股东的资产收益权。

上市公司当年税后利润, 在弥补亏损及提取法定公积金后有盈余的, 应当按照公司章程的规定分配现金股利。

49) 중국 증권법 수정안 제102조~105조.

第一百零二条 境外发行人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公开发行证券的, 其所在国家或者地区应当具有完善的证券法律和监管制度, 已经与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建立相应的监督管理合作机制。境外发行人的设立和组织机构适用其所在国家或者地区的法律。境外发行人应当具备规范有效的公司治理结构和内部控制制度, 对境内投资者所负义务和责任已经达到境内法律规定的同等水平。

第一百零三条 境外发行人依照境外法律和规则披露的信息, 应当在境内同时披露。

第一百零四条 境外发行人提供的财务会计报告、审计报告、审核报告及其他鉴证报告, 应当符合国家统一的会计制度、审计准则, 或者国务院有关主管部门认可的其他会计制度、审计准则。

第一百零五条 境外发行人在境内公开发行证券的, 证券登记结算机构可以作为名义持有人在境外证券持有人名册上登记。

50) 중국 증권법 수정안 제76조.

第七十六条 证券经营机构、证券交易所和证券登记结算机构的从业人员、国务院证

명의든, 타인 명의든 어떠한 형태의 주식거래도 금지⁵¹⁾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이다.

이는 기존 규정이 오히려 부정부패를 양산하였다는 반성 하에 증권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합법적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부패의 고리를 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위한 집단소송제도를 강화하였다. 기존 법에는 증권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규정⁵²⁾은 두고 있으나, 손해배상 관련 집단소송에 관한 명시적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는 피해주주들이 손해를 직접 배상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또한 현행법은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벌금이나 과징금에 비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집단소송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과징금과 벌금이 우선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신법 초안에서는 투자자는 허위공시, 내부자거래, 주가조작 등에 대한 증권민사손해배상책임 소송 시 당사자 일방의 숫자가 많을 경우, 법에 따라 대표인을 선정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 인가한 투자자보호 기구는 대표로 집단소송 및 청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⁵³⁾.

券监督管理机构的工作人员以及其他证券从业人员，应当事先向其所在单位申报本人和配偶的证券账户，在买卖证券完成后三日内申报证券买卖情况，并不得与其所任职务、工作职责等发生利益冲突。

证券经营机构、证券交易场所、证券登记结算机构应当建立从业人员买卖证券申报、登记、审查和处置等管理制度，并向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备案。

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应当建立工作人员买卖证券申报、登记、审查和处置制度。

51) 중국 증권법(2014년) 제43조.

第四十三条 证券交易所、证券公司和证券登记结算机构的从业人员、证券监督管理机构的工作人员以及法律、行政法规禁止参与股票交易的其他人员，在任期或者法定限期内，不得直接或者以化名、借他人名义持有、买卖股票，也不得收受他人赠送的股票。任何人在成为前款所列人员时，其原已持有的股票，必须依法转让。

52) 중국 증권법(2014년) 제232조.

第二百三十二条 违反本法规定，应当承担民事赔偿责任和缴纳罚款、罚金，其财产不足以同时支付时，先承担民事赔偿责任。

53) 중국 증권법 수정안 제176조.

증권집단소송제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으나, 신법 초안에 규정된 점은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필자가 보기에 이는 증권법상의 규정 뿐 아니라, 절차법인 민사소송법과 관계에서 보다 명확한 입법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표 3-3-6> 증권법 수정안과 현행 증권법 주요 내용 비교

유형	증권법 수정안(2015)	현행 증권법(2014)
주식발행제도	-등록제(注册制): 증권거래소 주도, 단, 주식 외 채권 등은 심사제 지속	-심사제(审核制):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 중심
증권위법행위 처벌 수위	-최고 1천만 위안, 모집자금의 10%까지 가능	-최고 60만 위안, 모집자금의 5% 수준
현금배당제도	-신설: 상장회사는 현금배당의 구체적 방안과 의사결정 절차를 정관에 명시	-규정 無
해외기업 상장규정	-신설: 해외발행인이 국내 상장에 필요한 정보공개, 재무회계 및 증권등기 및 결산 방면의 요구사항 등	-규정 無
증권업 종사자 주식거래 여부	-제한적 허용: 증권계좌 신고, 증권거래 완료 후 3일 내 거래 내역 신고 등	-불허: 본인 명의던, 타인 명의던 어떠한 형태의 주식거래도 금지

第一百七十六条 投资者提起虚假陈述、内幕交易、操纵市场等证券民事赔偿诉讼时，当事人一方人数众多的，可以依法推选代表人进行诉讼。
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认可的投资者保护机构可以作为代表人参加诉讼或者清算程序。人民法院作出的生效判决、裁定，对全体投资者发生法律效力，但明确表示不受判决约束的除外。

유형	증권법 수정안(2015)	현행 증권법(2014)
민사책임시 집단소송 여부	-명시적 규정 신설: 당사자 일 방의 숫자가 많을 경우, 법에 따라 대표인을 선정하여 소송 을 진행할 수 있음	-민사책임은 인정하나 집단소송 관련 규정은 無

자료: 필자 정리

(3) 시사점

중국 신증권법 초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기조가 잘 드러나고 있다.

다만, 몇 가지 문제점을 언급하자면 앞서 언급한 부실한 좀비기업의 원활한 퇴출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부족한 점은 문제로 보인다. 물론 이는 국유기업 개혁이라는 보다 큰 정책적 문제이기는 하나, 증권시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증시차원에서의 원칙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만연한 불법행위와 이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부족한 감이 있다. 물론 이는 법규 자체의 문제보다 시장참여자의 의식과 문화의 문제도 존재하나, 증시 규모에 비해 처벌규정 및 집단소송 부분에서는 보다 구체적 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 3 절 한-중 FTA 후속협상 대응방안

최근 중국 증시의 폭락 및 불안정성⁵⁴⁾으로 인해 금융개혁의 지속가능성에 회의적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

54) 최근 중국 상하이 증시는 6월말 최고 4720.70포인트에서 8월말에는 2850.71포인트로 급락한바 있다. 이후, 중국 정부의 개입과 시장의 조정을 거쳐 9월말 현재 3천포인트 초반에서 박스권 장세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증시의 급등락은 자본시장의 정착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통의 일환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일부 시차가 있을 수는 있으나 금융개혁과 개방이라는 큰 흐름은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본장에서는 중국 주식시장 개혁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았다. 중국 주식시장은 한국과 같이 급진적 개방정책을 취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은 금융개방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어, 이는 한국기업과 정부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먼저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거대한 중국 금융자본이 한국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 거론될 수 있다. 최근 중국의 안방(安邦)보험은 한국의 동양생명을 1조 1,319억원에 인수하였다⁵⁵⁾. 이처럼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중국자본이 미국, 유럽 자본에 이어 한국 시장 진출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국내 업체들은 더욱 긴장하고, 규모와 경쟁력을 강화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반면 중국자본의 한국진출 확대는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위협적일 수 있으나, 한국 전체적으로는 안정적 FDI 유입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를 거부감을 가지기 보다는 긍정적 계기로 활용하여, 금융업계의 토종기업들은 더욱 분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 기회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이웃나라 중국에서 세계적 규모의 금융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기업에게 큰 기회임에 틀림없다. 특히 중국은 위안화를 달러, 유로화에 이은 세계 3대 기축 통화로 육성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는 한국에게도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이미 영국은 유럽의 위안화 허브가 되기 위하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선도적

55) 중국 안방보험 동양생명 인수 작업 완료, 파이낸셜 뉴스(2015.9.16)
<http://www.fnnews.com/news/201509161756367883> (2015.9.16. 검색)

가입에 이어 중국정부에 대해 적극적 공세⁵⁶⁾를 펼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본고에서는 중국 주식시장의 제도 위주로 살펴보았으나, 향후 채권 시장 특히 외환시장과 연결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빠르게 진화하는 중국 금융개혁의 구체적 내용과 진행상황을 파악하여 한국의 대중국 금융시장 진출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2~3년 뒤로 예상되는 한-중 FTA 후속협상은 이러한 한국기업과 정부의 대응 전략이 국제조약의 형태로 제도화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한국 금융산업이 새롭게 도약하여 국가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천창민, 후강통제도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2014년 가을호, 자본시장연구원

한광수, 중국자본시장개방의 특성, 동북아경제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동북아경제학회(2010)

2. 외국문헌

股市改革背景下的证券法修改:必要性及重要性, 中国总会计师, 总第134期 (2014.9月)

赵旭东, 公司法学, 高等教育出版社(2003)

周友苏, 新公司法论, 法律出版社(2006)

56) 아편전쟁 175년만에 역전...영국, 중국에 열렬한 '구애', 연합뉴스(2015.9.2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22/0200000000AKR20150922212000009.HT>
 ML?input=1195m (2015.9.23)

3. 인터넷자료

연합뉴스, 아편전쟁 175년만에 역전...영국, 중국에 열렬한 '구애', 연
합뉴스(2015.9.2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22/0200000000AKR20150922212000009.HTML?input=1195m> (2015.9.23.)

홍창기, 중국 안방보험 동양생명 인수 작업 완료, 파이낸셜 뉴스
(2015.9.16.), <http://www.fnnews.com/news/201509161756367883>
(2015.9.16. 검색)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 (修订草案) (2015年4月20日人大审议版).

<http://www.financialservicelaw.com.cn/article/default.asp?id=4777> (2015.9.22 검색)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2014年),

http://www.npc.gov.cn/npc/lfzt/rlyw/2015-04/23/content_1934291.htm
(2015.9.23.일 검색)

关于实施《人民币合格境外机构投资者境内证券投资试点办法》的规定,
证监会公告 [2013] 14号 (2013.3.1),

http://www.csrc.gov.cn/pub/ewsite/flb/flfg/bmgf/jj/hgjw/201310/t20131021_236660.html (2015.9.19. 검색)

关于实施《合格境外机构投资者境内证券投资管理暂行办法》有关问题的规
定,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公告 [2012] 17号,

http://www.gov.cn/gongbao/content/2012/content_2266933.htm
(2015.9.20. 검색)

上海证券交易所沪港通试点办法, 上证发 [2014] 60号(2014.9.26.),

http://www.sse.com.cn/aboutus/hotandd/ssenews/c/c_20140926_3845152.shtml (2015.9.20. 검색)

沪港股票市场交易互联互通机制试点若干规定,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令 第101号(2014.6.13),
http://www.csrc.gov.cn/pub/zjhpublic/zjh/201406/t20140613_256078.htm
(2015.9.20. 검색)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香港证券及期货事务监察委员会联合公告,
http://www.gov.cn/xinwen/2014-04/10/content_2656483.htm
(2015.9.20. 검색)

深港通多轮测试完毕或年内推出, 中国证券网(2015.9.11.),
http://www.cs.com.cn/xwzx/zq/201509/t20150911_4795960.html
(2015.9.20. 검색)

沪港股票市场交易互联互通机制试点若干规定,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令 第101号(2014.6.13.),
<http://www.sse.com.cn/marketservices/hkexsc/rules/> (2015.9.20. 검색)

关于实施《合格境外机构投资者境内证券投资管理暂行办法》有关问题的规定,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公告〔2012〕17号, http://www.gov.cn/gongbao/content/2012/content_2266933.htm (2015.9.20. 검색)

合格境外机构投资者境内证券投资管理暂行办法,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中国人民银行, 国家外汇管理局 第36号(2006), http://www.gov.cn/ziliao/flfg/2006-09/26/content_399342.htm (2015.9.19. 검색)

合格境内机构投资者境外证券投资管理试行办法,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令 第46号(2007.6.18), http://www.gov.cn/gzdt/2007-06/21/content_655612.htm (2015.9.14. 검색)

基金管理公司、证券公司人民币合格境外机构投资者境内证券投资试点办法,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中国人民银行, 国家外汇管理局 第76号令, http://www.csrc.gov.cn/pub/zjhpublic/G00306201/201112/t20111216_203868.htm (2015.9.18. 검색)

关于境内居民个人投资境内上市外资股若干问题的通知,证监发[2001]22号, http://www.csrc.gov.cn/pub/newsite/flb/flfg/bmgf/wz/jwfx/201012/t20101231_189764.html (2015.9.29. 검색)

国务院关于进一步促进资本市场健康发展的若干意见(国发[2014]17号, 新国九条, 2014年5月8日), http://www.csrc.gov.cn/pub/shenzhen/xxfw/tzzsyd/ssgs/zh/zhxx/201409/t20140918_260581.htm (2015.9.23. 검색)

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 http://www.gov.cn/jrzq/2013-11/15/content_2528179.htm (2015.9.26. 검색)

评《证券法》修订的背景、历程和意义, 证券日报(2005. 11.17), <http://business.sohu.com/20051117/n240738126.shtml> (2015.9.22. 검색)

沪港通、深港通之后, 沪伦通也将来了, 中国经济网(2015.9.23.), http://finance.ifeng.com/a/20150923/13989683_0.shtml (2015.9.23. 검색)

港媒: 深港通开通在即 沪港通总额度限制或将取消, 凤凰国际iMarkets (2015.5.26), http://finance.ifeng.com/a/20150526/13732088_0.shtml (2015.9.23. 검색)

外媒: 中国QFII和RQFII额度拟由审批制改备案制, 中国证券网(2015.3.26) http://stock.cnstock.com/stock/smk_gszbs/201503/3380588.htm (2015.8.3. 검색)

상하이 증권거래소 홈페이지, <http://www.sse.com.cn/marketservices/hkexsc/intro/>(검색일: 2015.8.10.)

네이버 금융(<http://finance.naver.com/world/sise.nhn?symbol=SHS@000001#>) (2015.10.1 검색)

제 4 장 환경 서비스 분야

1. 환경서비스 시장의 현황과 시사점

(1) 현 황

환경산업(environment industry)에 관한 정의는 각 기관과 국가마다 달리고 있다.¹⁾ 환경산업의 정의가 어려운 이유는 장비, 기술 및 서비스간의 상호연관성, 사후처리기술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다용도성, 시장의 중심이 사후처리 기술 시장에서 통합적 청정기술로 전이되고 있으며 이들과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 활동이 등장하는 등 복잡다양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²⁾

대표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서는 환경산업을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 진동과 관련된 피해를 측정, 예방, 제어 또는 복원하기 위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³⁾ 그러나 본보고서에서는 한-중 FTA 서비스 분야 후속협상에 대한 연구인만큼 환경산업 중에서도 환경상품이 아닌 환경서비스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고자 한다.

오늘날 통상협상에서 이용되고 있는 UN의 중심상품분류(Central Production Classification, CPC) 분류에서는 환경서비스를 CPC 9401(폐수처리서비스), CPC 9402(고형폐기물처리서비스), CPC 9404(배출가스 청소서비스), CPC 9405(소음경감서비스), CPC 9403(위생서비스), CPC 9406(자연풍광보호서비스), CPC 9409(기타 환경보호서비스)로 구분하

1) Business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환경산업의 정의와 분류”, 뉴스레터 178호, 2009.4.30., p. 1. http://attfile.konetic.or.kr/konetic/xml/THEMA_INFO/11B2A1030269.pdf

2) 한택환, “WTO 환경서비스 부문 협상과 우리나라의 환경서비스산업”, 산업경영연구, 제5권, 1998, pp. 197-198.

3) OECD/Eurostat, “The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Industry Manual”, 1998.

고 있다. 따라서 본보고서에서는 환경서비스 중에서도 중국이 WTO와 FTA 양허표에서 개방한 분야 중심으로 그 연구범위를 국한하고자 한다.⁴⁾

환경서비스 분야는 한국 정부가 한-중 FTA를 통해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가장 기대하는 분야 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첫째, 한-중 FTA 환경서비스 분야에 대한 중국 측의 합의사항이 폭넓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경제의 발전으로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의식 제고로 인하여 환경서비스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환경서비스 시장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⁵⁾ 2015년 말 중국의 환경서비스산업 시장규모는 2500억 위안(元)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⁶⁾

2016년부터 시작하는 “13·5”기간에도 환경서비스 분야에 대한 중국정부의 관심과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중국 현지의 환경설비 및 제조업 생산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환경기술력과 설비 제조기술은 선진국에 버금가기 때문이다.⁷⁾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대 중국 진출의 강점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중 FTA와 같은 지속적인 경제협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국의 환경서비스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이 시기에 한-중 FTA가 체결되었고 중국의 환경서비스 시장은 우리나라 해당 업종의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시장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된 만큼 참여 기업과 종사자 수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시장경쟁 상황이 치열하여 일부 환경산업 분야에는 적자 기업이 나타나

4)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Detailed structure and explanatory notes”, <http://unstats.un.org/UNSD/cr/registry/regcs.asp?Cl=9&Lg=1&Co=940>, 검색날짜: 2014. 8. 9

5) 김준동·이하영·장범진·강상인·조성한, 「주요국의 서비스업 시장개방 현황과 WTO 뉴라운드 서비스협상: 통신·환경·에너지 서비스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p. 260.

6) 中国报大厅, “2015年我国环境服务产业规模发展前景分析”, <http://www.chinabgao.com/freereport/65334.html>, 검색날짜: 2014. 8. 9

7) 환경부, 「FTA 환경서비스 및 투자분야 시장개방협상 대응방안 연구」, 2005, p. 78.

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⁸⁾ 아래에서는 한-중 FTA 환경서비스에서 중국 측이 개방한 7개 분야 가운데 폐수처리서비스, 고품폐기물처리서비스와 소음저감서비스 등 일부 중요한 분야의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오폐수처리서비스

오폐수 처리 서비스업에는 공정 설계, 설치 및 시설운영, 모니터링, 자문, 연구개발 등이 포함된다. 중국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공업발달과 도시화로 오폐수 배출량이 연평균 2.5%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서비스 산업과 도시 생활 오수 증가의 속도가 공업폐수 증가 속도를 추월하고 있다. 중국 도시의 폐수처리율은 62.8%로 선진국에 비해 크게 저조한 상황이며, 현(縣) 정부 소재지 폐수처리율은 22.6%에 불과하다. 2004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폐수처리 산업의 연간 매출규모는 43억 달러로 중국 GDP의 0.2%를 차지하는 등 시장규모가 크지 않다.⁹⁾

중국 오폐수처리서비스 산업의 특징은 첫째, 국유기업이 중국의 폐수처리산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유기업이 전국 상하수도기업 자산의 62.9%, 매출의 56.5%를 차지하고 있다.¹⁰⁾ 그 이유는 중국 정부 정부가 상하수도 사업을 건설하고 직접 운영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중국의 오폐수처리 기업들 대부분이 중국 동부 연해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2008년 2월을 기준으로 상하수도 기업 총 1,744개 중에 52.3%가 동부 연해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성별

8) 이장규 외 4인, 「한-중 FTA 대비 중국의 FTA 서비스협정 분석과 정책적 제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pp. 232-236.

9) 채화정, “중국 오폐수 처리 산업의 현황과 우리기업의 참여방안”, 수은해외경제, 한국수출입은행, 2009. 6, pp. 68-70.

10) 中国产业银行, “国家政策力推城市节水、再生水利用, 我国污水处理产业盈利能力仍有上升空间 (图)”, <http://www.chyxx.com/industry/201507/327180.html>, 검색날짜: 2015. 8. 9

로는 광둥(廣東)이 273개, 저장(浙江)이 160개로 가장 많다. 셋째, 중국 산업정보(中国产业信息网)에서 공포한 《2015-2020년 중국 폐수처리 시장 전체 평가 및 투자전략연구보고(2015-2020年中国污水处理市场全景评估及投资战略研究报告)》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폐수처리영역의 기업수량이 끊임없이 증가하여 2011년 180개에서 2014년 277개가 되었으며, 기업총생산액도 2011년 3월 631.4억 위안에서 2014년 9월 1278.8억 위안으로 성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적자기업의 비중도 줄어들어 향후 폐수처리 산업의 발전 여지는 매우 넓다고 밝힌바 있다.¹¹⁾

따라서 중국 오폐수처리서비스 산업의 세 가지 특징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오폐수처리서비스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경우 경쟁해야 할 상대는 중국의 대형 국유기업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향후 이 분야의 발전 공간이 넓은 만큼 적극적인 진출을 고려하되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선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보인다.

2) 고품폐기물처리서비스

고형폐기물처리란 폐품 회수나 재이용을 할 수 없는 폐기물의 최종 처리, 즉 매립과 소각이 포함된다.¹²⁾ 2015년에는 도시지역에서만 생활쓰레기가 2억 5,000만 톤 이상에 달할 것이며, 일인당 하루 평균 쓰레기 배출량도 1kg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12·5 규획(2011-2015)에 따르면 생활쓰레기처리목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였다. 즉 계획기간 내 도시 쓰레기 무해화 처리율을 80%, 그리고 2020년까지 도시 단위에서는 100%, 향진 단위에서는 50%의 목표를 설정하였다.¹³⁾

11) Ibid.

12) naver 지식백과, “고형폐기물처리”,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4494&cid=50331&categoryId=50331>, 검색날짜: 2015. 8. 9.

13) Ibid.

증가하는 생활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12·5 규획 기간 중 환경보호분야에 총 1조 3,700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중에서 중국의 쓰레기 처리시장 규모가 2010년 120억 위안, 2015년 266억 위안 그리고 2020년에는 423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¹⁴⁾

이처럼 중국의 고형폐기물 배출량은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에 처리 서비스 산업은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외 선진기술과 자본이 필요한 만큼 이 분야의 발전 여지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분야 역시 중국에서는 산업의 규모도 크고 수요도 높은 만큼 우리나라 기업의 활발할 진출이 예상된다.

3) 소음저감서비스

중국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중국 사회 각 계층에서는 소음 및 진동 오염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점차적으로 제고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환경의 소음, 진동 제어에 대한 수준 높은 요구를 정책과 법령에 반영하고 있다. 10·5규획 기간 동안, 중국 소음 및 진동 제어 전문 기술 팀의 전체적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산업 영역도 부단히 확장되었으며, 산업 구조도 점차 조정되어, 산업 수준이 뚜렷하게 상향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빠른 발전 상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의 소음저감서비스 산업은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급속히 성장하였는데, <표 3-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음 및 진동 오염방지 산업은 2배가, 소음 통제 공정 및 설비산업은 3배가 성장하였다.¹⁵⁾

14) Ibid.

15) 与趋势, “我国噪声污染防治行业发展现状”,

http://wenku.baidu.com/link?url=dsdcG_ZYyaB92fbKHGoDFK-qe-ek090wpXP0YGkqJtPzgOM7VPOwIJ5eEF0i6h4SFv6nlEk51e9zuffKHTTheOUT-SvnpnMlanFh-oCCKGvMO, 검색

<표 3-4-1> 소음저감서비스 산업의 경영상황¹⁶⁾

(단위: 억 위안)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소음 및 진동 오염방지	40	60	80
소음 통제 공정 및 설비	16	25	46

10·5규획 기간 조사된 바에 따르면, 소음 및 진동 제어 관련 과학 연구, 설계, 개발, 교학, 계량, 모니터링에 종사하는 단위는 50여 곳, 종사 인원은 1000명에 이르며, 연간 기술 수입은 1000만 위안이다. 소음 진동 오염 제어 제품 생산 및 공정 기술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은 약 500개로 종사 인원수는 만 명 이상으로 연간 생산액이 2000만 위안 이상인 기업은 10%를 차지하고, 연간 생산액이 5000만 위안 이상인 기업은 10여 곳이다.

또한 일부 공장은 외국 자본과 합자를 통해 선진적인 관리 방법을 채택하고, 비교적 많은 자금을 확보하여, 골간 기업 대열에 빠르게 합류하고 있다. 일부 민영 대기업도 소음 및 진동 제어 분야에 진입하고 있는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 후 해외의 선진 기술 및 제어 설비는 중국의 환경보호 시장에 진입하여, 중국의 환경보호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중국의 소음저감서비스 산업은 심층적인 기술 훈련, 업무 추적 지원, 특정 제품 개발, 기업 제품 자가 검수 조건 완비 등을 통해 기업 자체의 기술 능력 및 경쟁 능력을 제고하고 있다.

13·5 규획을 앞둔 지금 소음 진동 오염 제어 관련 산업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중국의 관련 기업 중에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시스템이 비교적 완비된 기업은 상당히 경쟁력이

날짜: 2015. 8. 10.

16) Ibid.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중 FTA를 통해 우리나라 소음 및 진동 제어 서비스 산업의 중국 진출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기술력 강화를 바탕으로 다른 선진 해외 기업과 중국 국내 대형 국유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2) 시사점

2000년 이후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환경시장은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의 성장추세를 보였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도시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처리장의 건설 증가로 도시환경기초시설 건설 분야의 투자비율이 점점 증가하였으며, 2002년의 경우 전년대비 31.8%로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¹⁷⁾

중국의 환경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중 FTA 환경서비스에서 개방한 폐수처리서비스, 고형폐기물처리서비스와 소음경감서비스 분야 등 7개 분야는 중국이 WTO GATS에서 이미 개방을 한 분야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외상투자지도목록>을 통하여 일찍부터 환경서비스시장에서 외국 자본의 도입을 장려하고 있는 분야이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고 이에 대한 요구 수준도 점차적으로 높아질 것이므로 중국 환경서비스 시장의 성장은 여전히 기대가 높은 분야이다.

따라서 한-중 FTA를 계기로 우리나라 환경서비스 기업들의 중국 진출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이들 분야에 대한 해외 선진 기업들이 합자 또는 합작 형태로 중국에 진출해 있다는 점이다. 이들 해외 선진 기업들에 대한 동향 파악과 함께 중국 국내 관련 정책과 법규들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관련 정책 중에서도 특히 산업진출을 규제하는 정책과 장려하는 정책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국은 넓은 영토로 말미암아 지방정

17) 물사랑신문사, “해외 환경서비스 시장 동향”, 워터저널, 제27호, 2006.10, p. 38.

부 정책도 각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는 만큼 경쟁력이 있는 지역선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2. WTO·FTA에 나타난 중국의 양허 수준

(1) WTO GATS에서의 시장개방

서비스협상에서 논의되는 분야의 기준인 GATS의 서비스분류표(W/120)는 UN CPC에 따른 것으로서 크게 12개의 부문(Sector) 내 154개 업종으로 나누어져 있다.¹⁸⁾ 즉 사업서비스, 통신서비스, 건설 및 건설관련 기술서비스, 유통서비스, 교육서비스, 환경서비스, 재정금융서비스, 보건 및 사회적 서비스, 관광 및 여행관련 서비스, 레크리에이션·문화 및 스포츠서비스, 교통서비스, 기타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그 중 6번째 부문(Sector 6)인 환경서비스는 다시 CPC 9401(폐수처리 서비스), CPC 9402(고형폐기물처리서비스), CPC 9404(배출가스청소서비스), CPC 9405(소음경감서비스), CPC 9403(위생서비스), CPC 9406(자연풍광보호서비스), CPC 9409(기타 환경보호서비스)로 분류된다

중국은 <표 3-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WTO GATS(DDA 2차 수정 양허안도 GATS와 동일)에서 환경서비스 7개 분야 CPC 9401(폐수처리 서비스), CPC 9402(고형폐기물처리서비스), CPC 9404(배출가스청소서비스), CPC 9405(소음경감서비스), CPC 9403(위생서비스), CPC 9406(자연풍광보호서비스), CPC 9409(기타 환경보호서비스)를 개방하였다. 이들 분야에 대해서 외국기업은 합작투자형태로만 서비스공급을 허용하고 외국기업의 과반수 소유를 허용하였다.

18) 서비스산업의 분류와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립된 통일된 분류기준은 아직 없음. 다만,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 당시의 양허협상과 GATS에 따른 구체적 약속에 관한 개별 국가의 양허표 작성에 있어서는 전부는 아니지만 대체로 UN의 잠정적 중심상품분류체계(Provisional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Provisional CPC)상의 서비스업종에 관한 분류체계를 기초로 하였음. 법무부, 「GATS 해설서」, 2000.12, p. 20 재인용.

<표 3-4-2> WTO GATS 환경서비스 분야 중국 측 양허안¹⁹⁾

환경서비스 개방 분야	중국 측 합의사항	
	MA	NT
폐수처리서비스(CPC 9401)	(1) 환경컨설팅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 공급은 외국인이 대주주인 합작기업만 가능 (4) 수평적 약속 이외에 양허하지 않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고형폐기물처리서비스 (CPC 9402)		
위생서비스(CPC 9403)		
배기가스(대기) 정화서비스(CPC 9404)		
소음저감서비스(CPC 9405)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 (CPC 9406)		
기타 환경보호 서비스 (CPC 9409)		

(2) 기 체결 FTA 협정에서의 시장개방

중국의 기 체결 서비스 FTA 가운데 중국이 선진국과 체결한 중-스위스 FTA와 중-호주 FTA를 살펴보면 개방한 환경서비스 분야가 7개 분야, 즉 CPC 9401(폐수처리서비스), CPC 9402(고형폐기물처리서비스), CPC 9404(배출가스청소서비스), CPC 9405(소음경감서비스), CPC 9403(위생서비스), CPC 9406(자연풍광보호서비스), CPC 9409(기타 환경보호서비스)가 포함된다.

이들 분야 중에서 CPC 9401(폐수처리서비스), CPC 9402(고형폐기물처리서비스), CPC 9404(배출가스청소서비스), CPC 9405(소음경감서비스)

19) 한-중 FTA 협정문을 바탕으로 필자가 정리함.

스), CPC 9403(위생서비스) 분야는 스위스와 호주의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CPC 9406(자연풍광보호서비스), CPC 9409(기타 환경보호서비스)의 경우에는 합작투자기업형태로만 서비스공급이 허용된다. 그 밖에 지분제한은 없고, 스위스와 호주기업의 과반수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1) 중-뉴질랜드 FTA

흥미로운 점은 2008년 발효한 중-뉴질랜드 FTA에서는 CPC 9409(기타 환경보호서비스)에 대해서 외국인의 100% 지분을 허용하였으나, 그 후에 체결된 중-스위스 FTA, 한-중 FTA, 한-호주 FTA에서는 합작투자기업 형태로만 서비스공급을 제한하여 오히려 제한사항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개방이 확대된 것이 아니라 축소된 것이다. 그리고 중-홍콩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와 중-대만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에서도 CPC 9409(기타 환경보호서비스)에 대해서 홍콩과 대만서비스 제공자의 중국 내에서 독자기업 설립을 허락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중 FTA 서비스분야 후속 협상에서 CPC 9409(기타 환경보호서비스)에 대한 외국인의 100% 지분을 허용을 협상할 필요가 있다.

2) 중-홍콩 CEPA

CEPA V하에서는 환경보호 서비스를 위한 홍콩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하였다. 이는 WTO 가입 양허에 따라 외국 기업들에 다수지분 합작법인 설립만 허용되는 것과 비교하여 한층 개방된 조치이다. 한편 시험적인 조치로서 광둥성 지역에 환경오염 제어설비를 설립하는 홍콩 서비스 공급자의 자격승인 권한이 광둥성 정부에 주어지게 되었다.

3) 중-대만 ECFA

중국이 체결한 FTA 중에서 대만과 체결한 ECFA가 환경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개방한 것으로 보인다. CPC 9401(폐수처리서비스), CPC 9402(고형폐기물처리서비스), CPC 9404(배출가스청소서비스), CPC 9405(소음경감서비스), CPC 9403(위생서비스), CPC 9406(자연풍광보호서비스), CPC 9409(기타 환경보호서비스) 전 분야에서 대만 서비스제공자가 합자, 합작 또는 독자기업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또한 중-대만 ECFA 환경서비스 분야 mode 3에서는 대만서비스제공자가 대만과 대륙에서 환경오염처리시설운영에 종사한 시간을 환경오염처리시설운영 자질을 평가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만에서의 경력까지도 중국에서 인정해주고 이는 향후 중국이 관련 업체를 선정할 때에도 중요한 고려인소가 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한-중 FTA 후속협상에서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한-중 FTA에서의 합의사항

한국 측에서는 한-중 FTA에서 중국 측이 합의한 서비스 분야 가운데 환경서비스가 가장 유망한 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²⁰⁾ 한-중 FTA에서 중국 측 환경서비스 개방 분야도 중-스위스 FTA와 중-호주 FTA에서처럼 CPC 9401(폐수처리서비스), CPC 9402(고형폐기물처리서비스), CPC 9404(배출가스청소서비스), CPC 9405(소음경감서비스), CPC 9403(위생서비스), CPC 9406(자연풍광보호서비스), CPC 9409(기타 환경보호서비스)가 포함된다(<표 3-4-3>).

20) 최용민, “한-중 FTA 활용 포인트 8가지”, 한국무역협회, 월간 2015.4월, p. 58.

<표 3-4-3> 한-중 FTA 환경서비스 분야 중국 측 합의사항²¹⁾

환경서비스 개방 분야	중국 측 합의사항	
	MA	NT
폐수처리서비스(CPC 9401)	(3) 한국 소유기업 허용 (독자서비스 가능)	-제한 없음
고형폐기물처리서비스 (CPC 9402)		
위생서비스(CPC 9403)		
배기가스(대기) 정화서비스(CPC 9404)		
소음저감서비스(CPC 9405)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 (CPC 9406)	(3) 합작투자기업형태로만 서비스공급 허용, 지분제한 없음, 한국기업 과반수 소유 허용	-제한 없음
기타 환경보호 서비스 (CPC 9409)		

합의내용도 중-스위스 FTA와 중-호주 FTA와 마찬가지로 CPC 9401(폐수처리서비스), CPC 9402(고형폐기물처리서비스), CPC 9404(배출가스청소서비스), CPC 9405(소음경감서비스), CPC 9403(위생서비스)는 모두 한국의 독자기업 형태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CPC 9406(자연풍광보호서비스), CPC 9409(기타 환경보호서비스)의 경우에는 합작투자기업형태로만 서비스공급이 허용되며, 그 밖에 지분제한 없고, 한국기업의 과반수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21) 한-중 FTA 협정문을 바탕으로 필자가 정리함.

4. 주요 환경서비스 분야 정책 및 법령

중국 정부는 2015년 수정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이하 <지도목록>>²²⁾을 공포하였다. 수정 <지도목록>의 특징은 제한목록 항목이 대폭 줄어들고, 일부 산업의 외자 지분에 대한 통제가 완화되어 외자 진입 조건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점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제한목록 항목이 2011년 버전의 79개에서 38개로 감소하였고, 일부 산업에 대한 외자 지분 제한 조항이 43개에서 15개로 감소하였으며, 중국 측 지분제한 항목도 44개에서 35개로 감소하였다.²³⁾

<지도목록>에서 중국 정부는 친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였으므로 우리나라 환경기업들이 주목해야 될 서비스산업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외자에 대한 다양한 장벽이 존재하고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련 규제가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관련 분야의 상위법규가 부재하여 하위법규로 규제하는 것도 문제이다. 그 이유는 과련 상위법규의 공백 문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진출을 막는 또 다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자기업을 우대하는 정책과 지역별로 다른 정책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22) <지도목록>은 1995년 6월에 최초로 시행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진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음. 이후 1997년, 2002년, 2004년, 2007년, 2011년까지 총 5번 수정되었고, 지난 3월 10일에 6차 수정안이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2015년 4월 10일에 정식 발효하게 되었음. 따라서 2011년판 지도목록은 폐지가 되었음에 유의하여야 함.

23)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令”,

http://www.sdpc.gov.cn/zcfb/zcfbl/201503/t20150313_667332.html, 검색날짜: 2015. 8. 10.

(1) 오폐수처리서비스

1) 정 책

중국은 오랜 기간 동안 오폐수처리서비스를 공공복지분야로 취급하였으므로 국유기업이 관련 사업을 맡아 왔다. 그러나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이 분야의 민영화 시장화가 추진되어 오고 있다. 예컨대 2002년 건설부는 《시정공공업종 시장화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加快市政公共行业市场化进程的意见)》을 공포하여 도시 공용사업의 시장화 개혁에 대한 방향을 명확히 하였다. 즉 도시폐수처리를 비롯한 물 관리 업무의 전 방면에 있어서 시장화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4년 건설부가 연이어 공포한 《시정공용사업특허경영관리관법(市政公用事业特许经营管理办法)》에 따르면 도시공용사업은 특허경영(特许经营)을 통해 시장화 하는 데에 법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특허경영이란 정부가 입찰 방식으로 낙찰한 회사와 특허경영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한과 범위 내에서 도시수질업무를 경영하는 것에 대해 체결하는 계약이다.²⁴⁾

그러나 중국의 도시 폐수처리산업이 시장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2011년 5월 《전국도시폐수처리정보체계(全国城镇污水处理信息系统)》에 따르면 폐수처리기업의 상당수가 국유기업이 운영하며 외국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다는 것이다.²⁵⁾ 중국의 국유기업이 특허경영의 방식에 더 유리할 수 있고, 한국의 영세 폐수처리기업에 비해 훨씬 더 경쟁력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의 폐수처리기업은 중국 국유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기술과 자본으로 외국자본이 진출해 있지 않은 지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²⁶⁾

24) 张丽娜, “城市水务市场化中的政府规制与公众利益维护”,

<http://opinion.caixin.com/2015-08-11/100838384.html>, 검색날짜, 2015. 8.11.

25) 公司频道, “中国城镇污水处理行业亟需规范”,

<http://companies.caixin.com/2012-10-31/100454241.html>, 검색날짜, 2015. 8.11.

26) 채화정, 전계자료, p. 82.

중국 정부는 폐수처리서비스와 관련하여 외국자본에 대한 우대정책도 실시하고 있다. 1994년 재정국, 국가세무총국이 공포한 《기업 소득세 관련 몇 가지 특혜정책 통지 (关于企业所得税若干优惠政策的通知)》에 따르면 폐수, 폐기가스 및 고체폐기물을 주요 원료로 하는 생산기업은 5년내 소득세 면제 또는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 기관에서 공포한 2008년의 《자원종합이용 및 기타 제품 부가가치세 정책에 관한 통지(关于资源综合利用及其他产品增值税政策的通知)》에서도 재생수 생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오수 처리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해주고 있다.

국가세무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1994년에 《고정자산 투자방향 조절세금 ‘자원종합이용, 저장시설’ 세목 및 세율 주해 발행 관련 통지(关于印发‘固定资产投资方向调节税“资源综合利用, 仓储设施”税目税率注释’的通知)》에서 자원개발 과정에서 광물자원의 생산, 유통, 소비에서 발생하는 폐수, 폐기가스, 고체폐기물의 가공 및 이용에 대해 0%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5년 중국인민은행의 《신용대부정책 관철 및 환경보호산업 강화 관련문제통지(于信政策加强境保关贯彻贷与环)护工作有关问题的通知》에서도 환경보호설비 생산 및 운영 기업에 대하여 대출원칙에 부합하며 상환능력을 구비할 경우, 금융기관은 적극적으로 대출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보호 및 오정비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각 급금융기관은 산업이 가져다주는 경제효익 및 기업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차등대출 시행하고 있다. 중국농업은행, 환경보호부의 1997년 《향토기업 오염예방 및 대출금안전보증강화 관련 통지(关于加强乡镇企业污染防治和保证贷款安全的通知)》에서는 기술개조, 청정생산, 오염방지 및 3폐(폐기가스, 폐수, 폐기물)정비를 수행하는 종합 프로젝트에 대해 대출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환경기업의 중국 진출 시 중국 정부는 오폐수처리 서비스와 관련하여 외국자본에 대한 우대정책도 실시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의 정책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법 령

오폐수 처리 관련 법률로는 《중화인민공화국수법》, 《수오염예방법》, 《수오염예방법 실시세칙》, 《도시 물질약 관리 규정》, 《도시 재생수 시설관리 잠정방법》이 있다.

<표 3-4-4> 중국의 폐수처리관련 주요 법령²⁷⁾

주요 법령	주요 내용
중화인민공화국수법 (中华人民共和国水法)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자원계획, 개발이용, 수자원 관리 및 보호, 법률 위반 시 책임 규정 등이 있으며, 2002년 개정 시 단일화된 강 유역 관리, 물 배분과 소비의 거시적인 관리를 강조하고, 수질관리 시스템을 도입 - 국무원에 물 관리부서를 신설하여 중앙정부에서 통합관리하고, 각 지방정부는 물 관련 부서를 설립하여 실무를 담당하도록 규정
수오염방지법 (水污染防治法)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 배출기준, 오염예방, 공업 및 농업용수 오염 방지, 도시 및 농촌의 수오염 방지, 선박의 수질오염 방지 등 - 도시에 중앙하수처리장을 설립하고 처리비를 설정토록 요구하였으며, 강 유역 관리, 총량 관리, 수자원 오염의 감독관리 강화, 점원오염 관리 등을 규정 · 물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경우, 지방환경보호국에 등록하고 배출료를 지불할 것을 명시 - 그 외, 음용수안전보장, 지방정부의 책임소재 강화, 오수배출허가제도의 전면적 실시, 수오염 사

주요 법령	주요 내용
	고처리 및 법률책임의 명확화 등에 대한 규정이 있음
수오염방지법실시세칙 (水污染防治法实施细则) (2000)	- 수오염방지법의 구체적 시행절차 및 관리방법 규정
도시물절약관리규정 (城市节约用水管理规定) (1988)	- 도시의 계획적 용수사용 및 계획범위를 초과한 물 사용분에 대한 추가비용 징수 제도에 대하여 규정 - 주로 도시 지하수 개발,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오수처리에 대해서는 자원절약의 측면에서 각 도시의 재생수 사용률을 높이도록 권장
도시재생수시설관리 잠정방법 (城市中水设施管理暂行办法) (1995)	- 재생수, 재생수 사용시설 및 사용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재생수 처리시설의 계획, 건설기준, 운영 및 관리의 요구기준을 제시. 또한 재생수 사용에 대한 요금징수 방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규정 -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에서 동 법에 따라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하도록 함

(2) 고형폐기물처리서비스

1) 정 책

중국은 최근 고형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일련의 정책을 발표하였다. 2011년 4월 19일 《도시생활쓰레기처리 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 통지(关于进一步加强城市生活垃圾处理工作意见通知)》에 따르면 2015년까지 전국 도시 생활쓰레기 무공해 처리율 8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

27) 채화정, 전계자료, p. 81의 표 재인용.

다. 재활용, 소각발전, 바이오가스처리 등 쓰레기 자원화 이용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4월 19일에 공포된 《국무원 12·5 전국 도시향진 생활쓰레기 무공해처리 시설 계획이 통지(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十二五”全国城镇生活垃圾无害化处理设施建设规划的通知)》에서는 12.5 기간 생활쓰레기 무공해 처리율을 70%로 목표로 하고 있다. 무공해처리시설에 1,730억 위안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에서 도시 생활쓰레기 소각발전에 1000억 위안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2년 8월 6일 《신재생에너지발전12.5규획(可再生能源发展“十二五”规划)》에서도 2015년까지 쓰레기 발전 기계용량을 3,000MW로 목표를 두고 도시 쓰레기 소각발전, LFG 발전 추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고형폐기물처리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우대정책이다. 2007년 12월 6일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에서 쓰레기 소각 사업은 기업 소득세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2008년 12월 9일 《자원종합이용 및 기타 제품 증치세 정책의 통지(关于资源综合利用及其他产品增值税政策的通知)》에서도 쓰레기 이용 관련 증치세 면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고형폐기물처리 산업 분야에서도 중국의 이 분야에 대한 우대정책을 잘 활용할 필요 있다.

2) 법령

고형폐기물처리와 관련된 법률에는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화인민공화국 고형폐기물오염환경방지법(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청결생산촉진법(清洁生产促进法)》과 《중화인민공화국순환경제촉진법(中华人民共和国循环经济促进法)》이 있다.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에는 《도시모습과 환경위생관리조례(城市市容和环境卫生管理条例)》, 《폐기전기전자상품 회수처리관리조례(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处理管理条例)》와 《방사성폐

기물관리조례(放射性废物管理条例)》 등이 있다. 이외에도 건설부의 《도시생활쓰레기관리관법(城市生活垃圾管理办法)》과 《도시건축쓰레기관리관법(城市建筑垃圾管理办法)》, 경제위원회의 《자원종합이용에 관한 약간 문제에 관한 약간 규정(关于开展资源综合利用若干问题的若干规定)》 등이 있다.²⁸⁾

그 밖에도 2008년 9월 4일 공포된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관리 업무의 통지(关于进一步加强生物物质发电项目环境影响评价管理工作的通知)》에 따르면 기존 유동층 소각로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여 신청한 프로젝트에 대해 일반 연료의 혼용 소각은 20% 이하가 되어야 하고 신규 프로젝트는 일반원료 혼용하여 소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0년 4월 22일 공포된 《생활쓰레기처리기술지침(生活垃圾处理技术指南)》에서는 쓰레기 소각기술의 적용성, 소각장 건설 기술에 대한 요구 및 운영 검수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성과 시에서는 이들 상위 법률과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현지 특색에 따른 지방성법규를 제정하고 있다. 이들 지방정부가 제정한 고품폐기물처리에 관한 지방성법규 및 정책의 내용을 분류해 보면 첫째, 쓰레기처리에 대한 행정관리 방안, 둘째, 쓰레기처리의 자원화·감량화·해화 정책, 셋째, 쓰레기 재이용에 대한 세금감면, 대출우대 등 경제장려정책, 넷째, 쓰레기 처리의 산업화, 규모화 관련 정책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중국은 고품폐기물처리와 관련해서는 법률, 행정법규, 부문규장 및 지방성법규 형태로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 고품폐기물처리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그것의 재이용을 통한 환경보호가 핵심인 만큼 중국 지역별 경제장려정책을 파악하여 가장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선정이 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28) 张璐, “论城市生活垃圾处理的法律规制”, <http://www.docin.com/p-988266734.html>, 검색날짜: 2015. 8. 12.

(3) 소음저감서비스

1) 정책

2010년 환경보호부와 발전개혁위원회 등 11개 부처와 위원회는 연합하여 《환경소음오염방지업무개선 도시와 농촌의 소리환경질량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加强环境噪声污染防治工作改善城乡声环境质量的指导意见)》을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엄격한 사업 환경 소음 “3동시(三同时)”²⁹⁾ 검수관리를 실시하여 검수를 통과하지 못한 소음 방영 사업은 일률적으로 운영에 투입되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지면교통소음오염방지기술정책(地面交通噪声污染防治技术政策)》을 엄격히 시행하여 소음민감건축물집중구역의 고가도로, 고속도로, 도시철도 등 도로 양변에 반드시 방음 장벽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공 소음 오염 방지에 대해서도 강화하였다. 《건축물공장계통에 소음 한계치(建筑施工场界噪声限值)》를 엄격히 집행하도록 하여 시공소음이 방영 기준을 초과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속하도록 하였다. 《사회생활환경소음방영표준(社会生活环境噪声排放标准)》을 제정하여 사업소비스업 소음 오염을 엄격히 통제하도록 하여 냉각탑(冷却塔), 엘리베이터 사이, 에어컨 등 서비스 시설이 조성하는 소음 방지를 단속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업기업의 소음 오염 방지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공업기업공장환경의 소음 방영 표준(工业企业厂界环境噪声排放标准)》을 제정하여 공업기업의 소음 방영이 표준을 초과하여 거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 2015년까지 환경 소음 방지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되었는데 공업 교통 건축 시공과 사회생활 소음오염 방지 등 전면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중국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29) 3동시는 환경관리제도로써 동시설계, 동시시공, 동시생산투입을 말함.

중국은 일부 지방정부에서도 2007년 소음 방지를 위하여, 성도시(成都市) 환경국은 최근 각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市の 생활소음, 교통소음, 건설현장소음 및 산업체 소음 등에 대해 종합 관리를 추진할 것을 결정하였다.³⁰⁾ 성도시 정부의 관련요건에 따라 성도시정부는 환보국과 건설위원회 등 9개 부서에서 공동 제정한 《성도시 도시소음 종합관리 실시방안》을 시달하고 소음관리 사업에 착수하였다.

《실시방안》을 근거로 성도시 환경국이 종합 조정하고, 건설위원회와 교통위원회 등의 부서는 기능에 따라 책임을 분담한다. 각 지역과 각 부서에서는 사업계획 및 임무분담에 근거하여 관련지식의 보급과 홍보활동을 추진하며 관리조치를 완비하는 동시에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조사 분석, 처리 및 심사검수 등 3개 단계를 통해 市の 생활소음, 교통소음, 건설현장소음 및 산업체 소음 등에 대해 전면 관리를 추진한다. 대규모로 추진되는 동 사업을 통해 금년 말까지 환경소음기준 도달구역을 70% 이상으로 제고한다.

2) 법 규

80~90년대에 중국의 소음 및 진동 오염 제어 산업의 제1 발전 시기였다. 소음 및 진동 오염 제어 산업은 환경보호 영역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각급 정부와 환경보호부처의 정책 및 법제 방면에서 강력한 지원을 얻었으며, 《도시 구역 환경 소음 기준》, 《도시 구역 환경 진동 기준》, 《공업 기업 작업장 주변 소음 기준》, 《건축 시공 현장 주변 소음 한계치》, 《공항 주변 비행기 소음 환경 소음 기준》, 《철로 주변 소음 한계치 및 그 측량 방법》, 《자동차 소음 허용 기준》, 《도시 항구 및 강 하천 양안 구역 환경 소음 기준》, 《공업 기업 소음 제어 설계 규범》, 《민용 건축 방음 설계 규범》, 《주택방음기준》 등 일련의 소음 진동 제어 관련 기준, 규범, 조례 및 실시 관리

30) 중국환경시장동향, KONETIC NEWSLETTER [제 244호], 2007.4.20., p. 13.

세척이 계속해서 발표되었다. 1996년 10월 29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77호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법》이 정식 발표되었고, 1997년 3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이때부터 소음 및 진동 제어 과학 연구, 공정 응용 부분의 발걸음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소음 및 진동 오염 제어 산업도 유례없이 발전하게 되었다. 과학 연구 수준에 아주 커다란 발전이 있었고, 산업대열이 초보적으로 규모를 갖추었으며, 소음 및 진동 제어 공정 수준 및 산업 질량도 국내 시장의 수요를 기본적으로 만족시키게 되었다.

이 분야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 법률과 법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에 교통운수, 공업 및 도시지역의 소음 방지와 관련한 원칙성 규정이 있다. 그러나 1996년에 처음으로 소음오염 방지에 관한 법률인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법(中华人民共和国环境噪声污染防治法)》이 시행되면서, 환경보호부는 그에 상응하는 표준을 제정하였고, 공업·교통·철도와 공안부 등에서도 소음오염방지에 관한 전문 규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지방정부에서도 관련 지방성법규를 제정하였다.³¹⁾

《환경소음오염방지법》은 소음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소음 오염을 생산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소음오염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은 하위법규인 부문규장과 지방성법규로 미루고 있다. 따라서 문제는 하나의 통일되고 명확한 소음에 대한 표준이 부재하다는 것이며 지방과 부처마다 달라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소음오염방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 또한 통일되지 않아 아직까지 중국에서 소음오염과 관련된 법체계와 제도가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1) 论文网, “论中国噪音污染现状及防治对策”, <http://www.xzbu.com/4/view-4650838.htm>, 검색날짜: 2015. 8. 13.

5. 후속협상 대응방안

(1) 중국 진출 시 고려사항

우리 정부는 WTO-DDA 협상과 서비스시장 개방을 준비하면서 특히 환경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다. 환경선진국이 되기 위하여 환경산업 규모를 육성해 왔으며 수출도 장려해 왔다. 한-중 FTA는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발전과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³²⁾

따라서 한-중 FTA를 통하여 중국 환경서비스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국의 국내 환경서비스산업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오폐수처리산업, 고형폐기물처리산업, 소음저감산업 등은 대부분 국유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이들 기업의 민영화 시장화를 위하여 중국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의 대형 국유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환경기업들도 첨단 기술개발은 물론이고 대규모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 환경산업을 자원순환관리와 물 관리 등 전통적인 환경산업분야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파악하여 진출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폐수처리서비스, 고형폐기물서비스, 소음저감서비스 등 중국이 개방한 환경서비스 세부분야 별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점차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은 지방정부마다 환경서비스 분야의 외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조건과 환경서비스 분야별 수요도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지방정부의 경쟁상황 및 관련 규제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도시의 경제성장 수준과 속도가 다른 만큼 이미 외국기업이

32) 정금희, “환경서비스협상과 우리의 대응”, 나라경제, 2003.6, p. 56.

진출하여 선점하고 있거나, 중국 국내 국영기업이 선점하고 있는 지역은 피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중국의 환경서비스 산업은 이미 외국기업에 대하여 합작기업(외국기업 대주주 허용)의 형태로 상업적 주재를 허용하고 있다. 즉 미국, EU 및 일본 등 선진 환경기술을 가진 다수의 경쟁력 있는 외국기업들이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을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 등 선진국들과의 FTA를 통해서 그리고 홍콩, 대만과 체결한 FTA를 통해서 한-중 FTA와 동일하거나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이미 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영세기업인 우리나라 환경서비스기업들은 중국 거대 국유기업들과의 경쟁은 물론이고 중국에 이미 진출해 있는 선진국들 기업과도 경쟁하여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철저한 시장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서비스 공급유형별 후속 논의 방향

1) mode 1

추가 개방 및 논의사항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중국은 GATS와 한-중 FTA에서 환경컨설팅을 제외하고 개방하지 않았는데 이 업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환경컨설팅업은 환경경영 및 화경기술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민간이나 공공기관에 자문을 제공하는 업종이다.³³⁾ 이 분야는 점차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유망한 업종임에도 우리나라 업체의 전문성은 아직 미흡한 상태이지만, 우리나라가 IT강국이라는 장점을 살려 mode 1의 형태로 중국 환경서비스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살려야 할 것이다.

33) 물사랑신문사, “신규 환경서비스시장”, 워터저널, 제27호, 2006, p. 46.

2) mode 2

추가 개방 및 논의사항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mode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뉴질랜드 FTA에서는 CPC 9409(기타 환경보호서비스)에 대해서도 외국인의 100% 지분을 허용하였으나, 중-스위스 FTA, 한-중 FTA, 한-호주 FTA에서는 합작투자기업 형태로만 서비스공급을 허용하여 오히려 제한사항이 강화되었고, 중-홍콩 CEPA와 중-대만 ECFA에서도 CPC 9409(기타 환경보호서비스)에 대해서도 홍콩과 대만서비스 제공자의 중국 내에서 독자기업 설립을 허락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체결한 FTA를 사례로 들어 한국기업도 CPC 9406(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와 CPC 9409(기타 환경보호서비스)에 대해서도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중-대만 ECFA 환경서비스 분야 mode 3에서는 대만서비스제공자가 대만과 대륙에서 환경오염처리시설운영에 종사하여 종사한 시간을 대륙에 환경오염처리시설운영 자질을 평가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만에서의 경력까지도 중국에서 인정해주고 이는 향후 중국이 관련 업체를 선정할 때에도 중요한 고려 인소가 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한-중 FTA 후속협상에서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mode 4

추가 개방 및 논의사항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김준동 · 이하영 · 장범진 · 강상인 · 조성한, 「주요국의 서비스업 시장 개방 현황과 WTO 뉴라운드 서비스협상: 통신 · 환경 · 에너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물사랑신문사, “해외 환경서비스 시장 동향”, 워터저널, 제27호, 2006.10
- 물사랑신문사, “신규 환경서비스시장”, 워터저널, 제27호, 2006
- 법무부, 「GATS 해설서」, 2000.12
- 이장규 외 4인, 「한-중 FTA 대비 중국의 FTA 서비스협정 분석과 정책적 제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 정금희, “환경서비스협상과 우리의 대응”, 나라경제, 2003.6
- 중국환경시장동향, KONETIC NEWSLETTER [제 244호], 2007.4.20.
- 채화정, “중국 오폐수 처리 산업의 현황과 우리기업의 참여방안, 수은해외경제”, 한국수출입은행, 2009
- 최용민, “한-중 FTA 활용 포인트 8가지”, 한국무역협회, 월간 2015.4월
- 한택환, “WTO 환경서비스 부문 협상과 우리나라의 환경서비스산업”, 산업경영연구, 제5권, 1998
- 환경부, 「FTA 환경서비스 및 투자분야 시장개방협상 대응방안 연구」, 2005
- Business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환경산업의 정의와 분류”, 뉴스레터 178 호, 2009.4.30.
- OECD/Eurostat, “The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Industry Manual”, 1998

제 5 장 관광·여행·문화 서비스 분야

제 1 절 관광 및 여행서비스

1. 관광 및 여행서비스 시장의 현황과 시사점

(1) 현 황

중국 국가여유국(国家旅游局)이 발표한 《2014년 중국여행업 투자보고(2014年中国旅游业投资报告)》에 따르면 중국 국내 여행객이 연평균 8.5%씩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2020년에는 연인원 60억 명에 달하고 관광산업 총매출액은 5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인의 해외여행의 인구도 연간 4억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관광산업의 성장은 중국 경제의 발달로 인한 중국인의 소득 증가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기인한 것이며 이와 같은 성장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¹⁾

2013년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수는 총 1.29억 명으로 그중 홍콩, 마카오, 대만 등 중화권 지역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자는 총 2,628만 명이며, 국가별로는 한국이 397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순서이다.²⁾ 2013년 이들 외국인들로부터 얻은 관광수입은 516억 달러로 이들이 주로 방문하는 도시로는 대도시인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청두(成都), 우한(武汉) 등과 유명 관광도시들인 시안(西安), 쑤저우(苏州), 구이린(桂林), 황산(黄山) 등으로 나타났다.³⁾

1) 박정수·이홍식·고준성·김홍석·박문수·김천곤·고대영·구진경·박지혜, 「한-중 FTA 서비스협상의 업종별 대응방향」, 산업연구원, 2014, pp. 133-135.

2) china inside 중국 내 주요연구 동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관광 산업”

3) Ibid.

관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여행사나 호텔 등 관련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여행사 수는 2013년 총 26,054개로 전년대비 4.5% 증가하였고, 총매출액은 3,5999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6.7% 증가했다. 중국인의 해외여행 중 여행사를 통해 출국한 사람은 3,555만 명이었는데, 그중 단체 관광객이 2,085만 명으로 62%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30.4% 증가한 것이다. 중국 내의 1성급 이상 호텔은 총 13,293개로 그 중 재무상황을 공시한 11,687개 호텔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총매출액이 2,292억 위안이며, 연평균 객실 점유율은 56%였다.

1) 관광호텔업

2013년 국가여유국의 《2013년 중국여행업통계공보(2013年中国旅游行业统计公报)》에 따르면 세계 50위권 내의 글로벌 호텔 12개가 이미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다. 그리고 2013년 말을 기준으로 중국에 건립된 성급호텔이 485개, 영업이익은 258.47억 위안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급호텔의 경우 외자기업이 중국 국내기업보다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⁴⁾ 그러나 외자기업의 중국 내에 진출이 활발한 가운데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고급호텔이 난립하여 수익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특히 베이징에 입지한 50개 5성급 호텔 중 손익분기점을 넘긴 곳은 5-6개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통계도 있다.⁵⁾ 따라서 한-중 FTA에서 호텔 및 레스토랑 서비스에 대한 중국 측 제한사항이 없는 만큼 우리나라 호텔도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이지만, 지역선정과 경쟁기업에 대한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国际商报, “我国旅游服务开放度扩大: 放宽外资经营范围”, http://www.ce.cn/culture/gd/201412/17/t20141217_4138642.shtml, 검색날짜: 2015. 8.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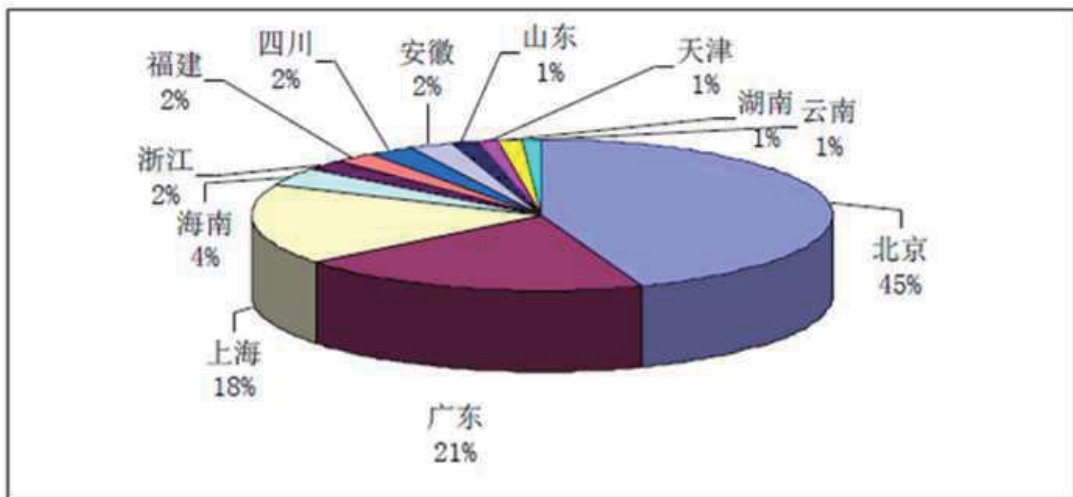
5) Ibid.

2) 여행알선대행업

2013년 9월 말을 기준으로 중국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외상투자여행사는 약 81개이다. 설립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북경 36개, 광둥 16개, 상해 14개, 해남 3개, 복건·사천·안휘·절강 각 2개, 천진·산둥·호남·운남 각 1개이다. <도표-1>에서처럼 북경·광둥·상해 세 지역에 설립된 외상투자여행사가 거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한국국적 여행사는 롯데관광 및 하나투어로, 중국기업과 합자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외상투자여행사가 북경·광둥·상해 세 지역에 외상투자여행사가 집중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향후 외상투자여행사가 해외여행업무(outbound, 이하에서는 “아웃바운드”)를 할 수 있도록 외상투자여행사의 해외여행정책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⁶⁾ 외상투자여행사는 중국 국내여행(inbound)이 주 업무이며, 중국 국내법에 의거해 아웃바운드 영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도표 3-5-1> 외상투자여행사의 중국 진출 현황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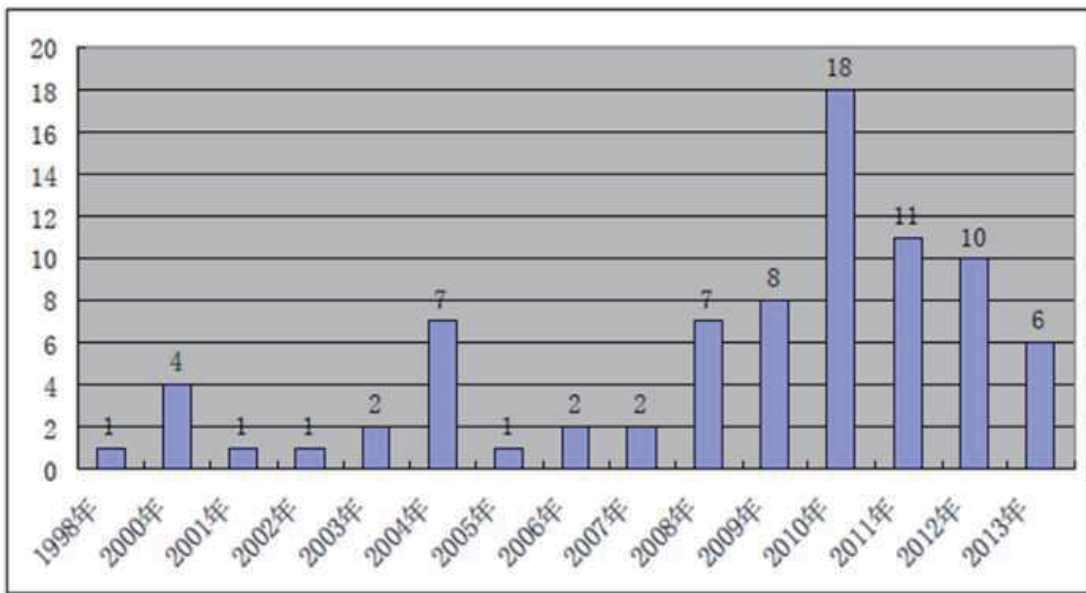


6) 杨柳, “外商投资旅行社在华发展研究” <http://cats.org.cn/lilunyuandi/yewu/22118>, 검색 날짜: 2015. 8. 13.

7) Ibid.

총 81개의 외상투자여행사가 중국에 진출한 시기를 보면 1998년 1개, 2001년 1개, 2002년 1개, 2003년 2개, 2004년 7개, 2005년 1개, 2006년 2개, 2007년 2개, 2008년 7개, 2009년 8개(이중 6개가 《여행사조례(旅行社条例)》 시행 이후에 설립), 2010년 18개, 2011년 11개, 2012년 10개, 2013년 9월 말 6개이다.

<도표 3-5-2> 외상투자여행사의 중국 진출 추세⁸⁾



《여행사조례》가 시행된 2009년을 기점으로 외상투자여행사의 중국진출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기존에는 외상투자여행사의 중국진출에 여러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001년에 제정된 《여행사관리조례(旅行社管理条例)》에서는 외상투자여행사의 경영자는 여행사 또는 주요 여행업무 종사자여야 하며, 연간 수입은 4,0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최저 등록자본이 4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과 외자여행사 투자설립 제한규정, 지사 설립 제한규정 및 외자독자의 여행사 설립 금지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상투

8) Ibid.

자여행사에 대한 제한규정들이 신 《여행사조례》에는 폐지되었고 외
자독자 여행사도 설립가능하게 되었다.

(2) 시사점

최근 중국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중국 국민의 생활수준이 상승하고, 관광의식이 향상되면서 중국인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을 찾는 관광객 수도 늘어나고 있어 이들을 위한 호텔 및 레스토랑 사업도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즉 FTA를 통한 관광산업의 발전과 개방은 관련 산업인 숙박, 외식, 오락, 리조트 등 부야에서의 투자 유치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⁹⁾ 이처럼 중국의 관광·여행서비스가 호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한-중 FTA가 체결되어 우리나라 여행사와 호텔서비스 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관광·여행서비스 중에서도 특히 여행알선대행업의 경우 우리정부가 한-중 FTA 서비스 분야 후속협상에서 우리나라 여행사를 위하여 중국 측으로부터 한층 더 폭넓은 개방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는 분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여행사들이 중국 국민의 아웃바운드 여행 업무에 진출하지 못하면서 한-중 FTA의 실질적인 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정부가 자국의 여행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상투자여행사의 아웃바운드 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우리 여행사의 발전 여지를 좁히는 것이다. 이 부분은 중국이 대만과 체결한 ECFA 또는 홍콩과 체결한 CEPA를 비교하여 후속협상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9) 장은정, “한-중 FTA 관련 관광서비스 분야의 영향과 대응방안”, 법학논총, 제46집, 2014, p. 468.

2. WTO·FTA에 나타난 중국의 양허 수준

(1) WTO GATS에서의 시장개방

UN의 중심상품분류(Central Production Classification)에 따른 12개의 부문(Sector) 가운데 아홉 번째 부문(Sector 9)인 관광서비스는 다시 네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¹⁰⁾ 즉 관광 및 여행서비스에는 호텔 및 레스토랑 제공 서비스(services provided by hotels and restaurants), 여행알선대행업(travel agencies and tour operators services), 여행안내업(tour guides services) 및 기타 그 밖의 서비스가 포함된다.¹¹⁾

중국은 WTO GATS에서 호텔(아파트) 및 레스토랑(CPC 641-643)과 여행알선대행(CPC 7471) 분야만을 개방하였다. 먼저 중국의 관광 및 여행서비스 분야의 양허수준을 살펴보면 호텔 및 레스토랑 제공 서비스의 경우 중국은 mode 1, 2에서 제한 없이 양허하고 있다. 그러나 mode 3에서 외국 서비스 공급자가 중국에 호텔과 레스토랑을 건축, 개축 및 운영할 수 있는 대신 4년의 과도기를 두고 있다. 즉 WTO 가입 후 4년 동안은 외국 기업이 다수 지분 소유할 수 있되, 합자형식으로만 설립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4년 후에는 외국인의 완전소유가 가능하다.

여행알선대행업에서는 WTO 가입 이후 제한사항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으나 mode 3에 대해 다소 부당한 제한을 두고 있어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가 쉽게 진입할 수 없었다. 즉 연간 대(對) 세계 매출액 제한(4,000만 달러이상)과 영업 범위, 지역 제한 등이며 이들 제한사항들은 사업 자체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었다. WTO 가입 후 3년 내에

10) 서용건, 「세계무역기구 (WTO) 서비스협상 관광분야 대응방안 연구」, 한국관광연구원, 2001, p. 11.

11) WTO, "Tourism and travel-related services",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serv_e/tourism_e/tourism_e.htm, 검색날짜: 2015. 7. 10.

최저자본금을 4배만 위안에서 2.5백만 위안으로 낮추고, WTO 가입 후 6년 내에 외국기업의 완전소유 기업 설립을 허락하고 지역 제한을 제거하였다. 즉 WTO 가입 후 서서히 일부 제한 사항을 완화 또는 제거하고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표 3-5-1> WTO GATS 관광·여행서비스 분야 중국 측 양허안¹²⁾

관광 및 여행서비스 개방 분야	중국 측 합의사항	
	MA	NT
호텔(아파트) 및 레스토랑 (CPC 641-64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 서비스 공급자가 중국에 호텔과 레스토랑을 건축, 개축 및 운영할 수 있 음. 외국 기업이 다수 지분 소유 가능. 합자형식으로 만 설립 가능 WTO 가입 후, 4년 내 부터 는 외국인 완전 소유 가능 (4) 수평적 약속 이외에 양 허하지 않음. 중국 내의 합 작 투자 호텔 및 레스토랑 과의 계약에 서명한 외국 매니저, 요리사를 포함한 전문가 및 고위 임원은 중 국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허용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약속 이외에 양 허하지 않음
여행알선대행	(1)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12) 한-중 FTA 협정문을 바탕으로 필자가 정리함.

관광 및 여행서비스 개방 분야	중국 측 합의사항	
	MA	NT
(CPC 7471)	(2) 제한 없음 (3)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와 시안에서만 합자기업 형태로 서비스 공급 가능 (a) 주로 여행 업무에 종사하여야 함 (b) 대(對) 세계 매출액 4,0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함. 합자기업의 최저등록 자본금은 RMB 4백만 위안 이상이어야 함. WTO 가입 후 3년 내에는 최저등록 자본금은 2.5백만 위안 이상이어야 함. (4) 수평적 약속 이외에 양허하지 않음	(2) 제한 없음 (3) 합자투자 또는 완전 지분 소유 여행 알선 대행업체는 중국인의 해외여행 및 홍콩, 대만으로의 여행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함(필자강조) (4) 수평적 약속 이외에 양허하지 않음

(2) 기 체결 FTA 협정에서의 시장개방

중국의 기 체결 서비스 FTA 가운데 선진국과 체결한 FTA협정에서 WTO 양허안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였다. 예컨대 중국이 호주, 스위스와 체결한 FTA 협정에서는 호텔 및 레스토랑업의 경우 mode 3의 개방정도는 WTO 양허안 수준이다. 여행알선대행업의 경우 GATS에서의 시장접근 상 mode 3에 두었던 MA 제한사항을 삭제하고 NT상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홍콩과 마카오와 체결한 중-홍콩 CEPA와 중-대만 ECFA에서는 여행알선대행업과 관련하여 개방의 폭을 더욱 넓혔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한-중 FTA 서비스분야 후속협상에서 CEPA와 ECFA를 사례로 들어 좀 더 폭넓은 개방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1) 중-홍콩 CEPA

중국과 홍콩은 2003년 1차 협정 개시 후, 2012년 6월 10차 협정을 체결하기까지 9년 동안 9차례의 보충협정을 체결하면서, 점진적으로 서비스 개방의 수준을 높여왔다.¹³⁾ 중-홍콩 CEPA 서비스 협상은 일괄 타결이 아닌 매년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개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분석하면 각 분야별 중국이 서비스 부문을 개방하는 단계별 전략과 개방의 상한선을 참고할 수 있다.

중-홍콩 CEPA의 서비스 분야별 양허내용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기 때문에 DDA나 기타 기 체결 FTA 서비스 협상에서의 양허와는 다른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즉 일부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로 개방한 후, 다음 단계에서는 한층 더 개방된 협상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과정에서 홍콩 서비스 업자들이 중국 서비스 시장에 진입하면서 실제로 겪었던 애로요인이나 문제점들이 반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표 3-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홍콩 CEPA에서만큼은 많은 서비스분야에서 폭넓은 개방을 하고 있다. 특히 중-홍콩 CEPA는 홍콩여행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진입조건을 완화하고, 지분제한을 취소하였다. 주목해야 할 점은 홍콩여행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는 경영범위와 경영지역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사 등록절차를 완화하여 시장진입에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

13) 여지나·박민숙, 「중·홍콩 CEPA 서비스 양허안 분석을 통한 한-중 FTA 서비스 협상전략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pp. 12-13.

<표 3-5-2> 중-홍콩 CEPA 단계별 여행서비스 양허내용¹⁴⁾

양허분야	양허내용
관광 및 여행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에 독자기업을 설립하려는 홍콩 여행사의 연간 거래액은 2,500만 US\$ 이상, JV 여행사의 경우 연간 거래액 1,200만 US\$ 이상(기타 외자기업 4000만 US\$) - 광둥지역 영주권자를 위한 홍콩/마카오 그룹투어 사업 신청(III, IV) - 연간 관광수입 요건이 독자여행사의 경우 1,500만 US\$, JV의 경우 800만 US\$로 더욱 완화됨(V&VI) - 중국 시민권을 가진 홍콩영주권자의 중국 아웃바운드 투어가이드 자격증 허용/대만을 관광하는 중국인들이 대만 방문 전후 1주일씩 모두 2주간 홍콩 방문 허용(VII) - 현재 광둥성의 정책인 ‘144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비자’(144시간, 즉 6일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것)를 Outbound control point의 선 등록의 요구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최적화하고, 적절한 시점에 여행단 규모에 관한 요구사항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IX) - 독자나 합자 홍콩여행사가 중국 주민의 홍콩과 마카오 그룹 여행을 인솔할 수 있도록 허용(X) - 자격을 갖춘 중국홍콩합자여행사의 중국인 아웃바운드 그룹 여행을 홍콩과 마카오 이외 지역에도 인솔하도록 허용(대만은 제외)(X)

2) 중-대만 ECFA

중-대만 ECFA에 따르면 대만 여행경영자는 대륙에서 여행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연도 여행경영총액 제한이 없다. 그리고 영업장소,

14) Ibid.

영업시설과 최저등록자본 등 방면에서 대륙과 동등한 대우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합의하고 있다(<표 3-5-3>).

<표 3-5-3> 중-대만 ECFA 관광 및 여행서비스 분야 중국 측 합의사항¹⁵⁾

양허분야	양허내용
9. 여행 및 여행관련 서비스	
B. 여행사 및 여행경영자 (CPC 747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① 대만 서비스 제공자는 대륙에 투자하여 여행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연도 여행경영총액 제한이 없음(필자강조) ② 대만 서비스 제공자가 대륙에 투자하여 설립한 여행사의 영업장소에 대한 요구, 영업시설 요구와 최저등록자본 요구는 대륙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시행함(필자강조) (4) 수평적 약속 이외에 양허하지 않음

3. 한-중 FTA에서 중국 측 합의사항

<표 3-5-4> 한-중 FTA 관광 및 여행서비스 개방 분야 중국 측 합의사항¹⁶⁾

관광 및 여행서비스 개방 분야	중국 측 합의사항	
	MA	NT
호텔(아파트) 및	(1)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15) 한-중 FTA 협정문을 바탕으로 필자가 정리함.

16) 한-중 FTA 협정문을 바탕으로 필자가 정리함.

관광 및 여행서비스 개방 분야	중국 측 합의사항	
	MA	NT
레스토랑 (CPC 641-643)	(2) 제한 없음 (3) 한국 서비스 공급자는 중국에 레스토랑 설립체를 건축, 개축 및 운영할 수 있음. 외국인 완전 소유자회사 가능 (4) 수평적 약속 이외에 양허하지 않음. 중국 내의 합작 투자 호텔 및 레스토랑과의 계약에 서명한 한국 매니저, 요리사를 포함한 전문가 및 고위 임원은 중국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허용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약속 이외에 양허하지 않음
여행알선대행 (CPC 747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약속 이외에 양허하지 않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또는 완전 지분 소유 여행 알선 대행업체는 중국인의 해외여행 및 홍콩, 대만으로의 여행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필자강조) (4) 수평적 약속 이외에 양허하지 않음

중국은 여타 국가와의 FTA협정에서 관광 및 여행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WTO 양허안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였다. 특히 호텔(아파트) 및 레스토랑(CPC 641-643) 분야는 한-중 FTA에서 중국이 체

결한 다른 FTA들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개방하였다. mode 4의 경우 피채용인의 중국 내 업무기간은 중국의 WTO 가입 수평적 양허조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외상투자기업에 고용되어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WTO 회원국 회사의 경리, 고급관리인원과 전문가 등은 관련 계약에 따라 장기거류허가를 주거나 최초 거류기간을 3년으로 하는데,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mode 3과 mode 4의 연계는 개방의 효과를 높일 것으로 보이며 향후 호텔 및 레스토랑의 한국의 특색을 담은 서비스 제공이 좀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여행알선대행업의 경우도 중국이 체결한 다른 국가와의 FTA에서처럼 GATS에서의 시장접근 상 mode 3에 두었던 MA 제한사항을 모두 삭제하고 NT상의 내용, 즉 “합작투자 또는 완전 지분 소유 여행 알선대행업체는 중국인의 해외여행 및 홍콩, 대만으로의 여행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함”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던 것처럼 이 부분은 한-중 FTA 후속 협상에서 중국이 홍콩과 마카오에게 부여하는 대우를 사례로 들어 외상투자여행사도 중국인의 해외여행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 보인다.

4. 관련 정책 및 법규

(1) 관광호텔업

2015년 수정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이하에서는 <지도목록>)에서는 외상 독자기업의 고급호텔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상하이시의 경우 <외상투자부동산기업설립절차>에 의하면, 고급부동산(고급오피스 빌딩, 고급아파트)은 외상독자기업에게 불허하지만, 고급호텔은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도목록>에서는 외상 독자기업의 외식업도 허용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외상기업의 외식기업 설립의 경우

자본금등록에 대한 특별요구나 조건사항이 없으므로 한-중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 외식업종의 활발한 중국 진출이 예상된다.

관광호텔업 분야는 WTO GATS에서도 점차적으로 외국기업에게 완전 개방한 분야이기 때문에 한-중 FTA 후속협상에서 더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분야에 있어서 외국기업의 투자를 특히 제한하는 정책이나 법규도 찾기 어려운 만큼 여행알선대행업에 관한 중국 구권 정책 및 법규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고자 한다.

(2) 여행알선대행업

1) 외상투자여행사의 영업에 관한 예외규정

중국은 비교적 엄격하게 외상투자여행사의 중국 진출을 제한하여 왔다. 그러나 2001년 WTO 가입 후 점차적으로 외상투자여행사에 대한 제한사항을 제거하고 개방을 확대하였다. 이와 같은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2009년 5월 1일자로 시행된 《여행사조례(旅行社条例)》에서는 외상투자여행사(중국계 여행사와 외국기업이 합자 혹은 합작하거나 순수 외국자본으로 설립된 여행사)가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여행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다.

또한 동 조례에서는 원칙적으로 외상투자여행사는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및 홍콩, 마카오, 대만 여행을 취급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국무원, 중국정부가 맺은 CEPA 혹은 FTA에 따라 예외조항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⁷⁾ 즉 외상투자여행사의 중국인 해외여행 취급 금지조항은 유지된다. 중국이 한국, 스위스, 호주와 체결한 FTA 모두에서 내국민대우에 제한사항으로 외상투자여행사가 중국인의 해외여

17) 《여행사조례》 第二十三条 外商投资旅行社不得经营中国内地居民出国旅游业务以及赴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旅游的业务，但是国务院决定或者我国签署的自由贸易协定和内地与香港、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另有规定的除外。

행 및 홍콩, 대만으로의 여행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CEPA협약에 따른 특별규정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와 체결한 CEPA협약과 일련의 보충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여유국은 <표 3-5-5>와 같은 정책 및 법령을 공포하였다.

<표 3-5-5> 2007년 홍콩마카오 여행사에 대한 특별규정¹⁸⁾

특별 규정
《광둥성에 설립한 홍콩 마카오여행사시범운영 광둥성 거주민의 홍콩마카오단체여행에 관한통지(关于在广东省设立的港澳资旅行社试点经营广东省居民赴港澳团队旅游的通知)》
《내지와 홍콩마카오의 <CEPA4> framework 하에서 홍콩마카오여행사 설립 및 운영사항에 관한 통지(关于在内地与香港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安排补充协议四>框架下港澳旅行社设立和经营有关事项的通知)》
《홍콩과 마카오 서비스 제공자의 광둥성에 설립한 여행사의 심사비준 신청 관법(香港和澳门服务提供者在广东省设立旅行社申请审批办法)》
《내지와 홍콩마카오의 framework 하에서 홍콩 마카오여행사의 시범운영 관련사항의 신청에 관한 통지(关于在内地与香港澳门框架下港澳资旅行社申请试点经营有关事项的通知)》
《내지와 홍콩 마카오의 <CEPA9>의 여행조치 시행에 관한 통지(关于落实内地与香港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安排补充协议九>有关旅游措施的通知)》

18) 한-중 FTA 협정문을 바탕으로 필자가 정리함.

이들 일련의 규정에 따르면 홍콩과 마카오 자본이 중국 내지에 여행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경영범위 확대, 진입장벽 제거, 심사비준 허가절차의 간소화 등 방면에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CEPA⁹⁾을 통하여 이미 홍콩의 여행사가 내지 주민의 홍콩 및 마카오 이외의 목적지(대만 제외)의 단체 해외업무를 허가 받았지만 현재 단 1개의 내지와 홍콩 마카오 여행사 시범운영지역이 허가받은 상황이라 아직까지 수량이 제한이 있고 해외업무의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3) 외상투자여행사에 대한 해외업무허가 규정

2010년 8월 국가여유국과 상무부가 연합하여 《중외합자여행사의 아웃바운드 업무시범 운영 관리감독 판법(中外合资经营旅行社试点经营出境旅游业务监管暂行办法)》을 공포하였다. 시범안 발표 원문에는 허가와 관련하여 별도로 특수 자격을 규제하지 않고, 제6조에서 《여행사조례》 8조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행사조례》 8조에 따르면 경영허가를 취득한지 만 2년이 경과하고 여행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행정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판법에 근거하여 2011년 5월 23일 국가여유국은 제1차 중국인의 해외여행 업무 시범경영 업체 3개의 중외합자경영여행사명단을 공개하였다. 당시 신청한 총 14개의 합자여행사중 3개만을 허가하였다. 이에 는 中旅途易旅游有限公司(TUI; 독일계), 运通旅行社有限公司(American Express; 미국계), 通公社新纪元国际旅行社有限公司(JTB; 일본계)가 포함된다. 2013년 3월에도 중국정부는 CEPA의 조건에 부합한 1개의 합자여행사 시범경영업체를 판법에 의거하여 공개하였다.¹⁹⁾ 판법은 중

19) 杨柳, “外商投资旅行社在华发展研究” <http://cats.org.cn/lilunyuandi/yewu/22118>, 검색 날짜: 2015. 8. 13.

국이 중국인의 해외여행업무를 외상투자여행사에게 주도적으로 개방한 근거 법령이라고 할 수 있다.

4) 일부지역의 외상투자여행사에 대한 아웃바운드 업무허가 규정

① 상 해

2013년 국무원이 승인 통과한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지역 총체방안(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에서는 상해자유무역구 내 설립된 여건에 부합되는 중외합작 여행사들이 대만을 제외한 해외로 관광객을 내보내는 아웃바운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허용됐다.²⁰⁾ 외국계 자본의 중국 해외여행 시장 진입이 겉으로는 작은 변화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그 영향이 크다고 업계 전문가는 분석했다. 지금까지 중국 본토에서 아웃바운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중외 합작 여행사는 3개에 그쳤다. 또 이번 개혁으로 여행사들이 영업허가증을 따낸 뒤 2년 후에야 아웃바운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규제가 취소됨에 따라 앞으로는 여행사 설립 대부분이 자유무역구 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시장 경쟁이 점차적으로 심각해짐에 따라 선도적 우위를 갖고 있던 국내 여행사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② 북 경

국무원은 최근 《북경시서비스업확대개방종합시험지역총체방안에 관한 비복(关于北京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总体方案的批复)》을 공포하여 북경에서의 서비스업 “종합시험지역(综合试点)” 확대개방에 동의하였다. 즉 동 방안에 따르면 외국투자자도 상업여행관광지역 개발건설에 참여할 수 있고, 여행상품 및 시설에 투자할 수 있으며, 동시에

20) 상하이방, “자유무역구내 중외합작여행사 아웃바운드 업무 가능”, <http://www.shanghaiibang.com/shanghai/news.php?code=ne01&mode=view&num=36884&page=4&wr=>, 검색날짜: 2015. 7. 7.

북경 지역 내에 설립된 중외합자여행사도 대만을 제외하고 해외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²¹⁾ 외상투자여행사의 해외업무 허가는 중국 여행시장에 해외투자 진출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는 점과 함께 향후 이 분야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질 것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될 수 있다.

5. 후속협상 대응방안

(1) 중국 진출 시 고려사항

한-중 FTA를 통하여 중국 관광 및 여행서비스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나라 환경산업을 자원순환관리와 물 관리 등 전통적인 환경산업분야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파악하여 진출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폐수처리서비스, 고품폐기물서비스, 소음저감서비스 등 중국이 개방한 환경서비스 세부분야 별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점차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은 지방정부마다 환경서비스 분야의 외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조건과 환경서비스 분야별 수요도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지방정부의 경쟁상황 및 관련 규제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도시의 경제성장 수준과 속도가 다른 만큼 이미 외국기업이 진출하여 선점하고 있거나, 중국 국내 국영기업이 선점하고 있는 지역은 피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중국의 환경서비스 산업은 이미 외국기업에 대하여 합작기업(외국기업 대주주 허용)의 형태로 상업적 주재를 허용하고 있다. 즉 미국, EU 및 일본 등 선진 환경기술을 가진 다수의 경쟁력 있는 외국기업들이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을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스위스, 호

21) 新华网, “中国旅游市场或将迎来外资进入潮”, http://news.xinhuanet.com/fortune/2015-06/13/c_1115606357.htm, 검색날짜: 2015. 7. 6.

주 등 선진국들과의 FTA를 통해서 그리고 홍콩, 대만과 체결한 FTA를 통해서 한-중 FTA와 동일하거나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이미 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영세기업인 우리나라 환경서비스기업들은 중국 거대 국유기업들과의 경쟁은 물론이고 중국에 이미 진출해 있는 선진국들 기업과도 경쟁하여야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철저한 시장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2) 후속협상 대응방향

1) 관광호텔업

① mode 1

추가 개방 및 논의사항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② mode 2

추가 개방 및 논의사항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③ mode 3

중국은 WTO GATS에서 이미 관광호텔서비스 분야를 개방하였고, 중국이 체결한 선진국과의 FTA에서도 동일한 정도로 개방하고 있다. 한-중 FTA에서도 다른 선진국과 동일한 정도로 개방하고 있지만 한-중 FTA 후속협상에 대비하여 참고할 것은 중-홍콩 CEFA와 중-대만 ECFA의 개방수준이다. 특히 중-대만 ECFA에서는 대만 여행경영자에게 대륙과 동등한 대우를 해줄 것을 명시하고 있다. FTA의 체결은 한, 중 양국 간의 관광서비스 교류의 장벽을 철폐해가는 협상과정이 요구되는 만큼²²⁾ 우리나라는 영업장소에 대한 요구, 영업시설 요구와

22) 김철원, 「한미 FTA 협상과 관광서비스 분야의 영향과 대책」,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p. 52.

최저등록자본 요구 등 분야에 대해서 중-대만 CEPA 수준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협상력과 근거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④ mode 4

추가 개방 및 논의사항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여행알선대행업

① mode 1

추가 개방 및 논의사항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② mode 2

추가 개방 및 논의사항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③ mode 3

a. 과도기적 규제 폐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여행서비스 산업은 지속적으로 대외 개방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여행서비스 산업의 대외 개방에 대한 제도 및 관리 면에서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 여행서비스 산업과 관련하여 일부 과도기적인 법률규정이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여행업무중 사적 리베이트 및 팁 수수 엄격금지에 고나한 규정(关于严禁在旅游业务中私自收受回扣和收取小费的规定)》상의 내용은 국제여행서비스 산업의 관행과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과도기적이며 국제적 관행과 뒤떨어진 규제에 관해서는 폐지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

b. 한국여행사의 아웃바운드 시장 확대

2013년을 기준으로 홍콩,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의 해외여행자가 한국의 2배가 넘는 3,121만 명(2013년 기준)을 기록하면서 세계 해외시

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²³⁾ 전체 인구에 고작 2.4%밖에 불과하나 그 정도 규모로도 이미 아시아 및 근거리 지역에 중국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숙박비, 현지 이동, 관광 알선 등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한국 국내의 여행사들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한국은 아웃바운드 시장을 개방해 중국의 ctrip(세칭) 기업이 진출하면서 한국의 대중국 아웃바운드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행사들이 비록 높은 수익을 기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향후 중국정부가 외상투자여행사에 대해서도 중국인의 해외여행업무, 즉 아웃바운드 영업시장 개방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홍콩 CEPA와 중-마카오 CEPA협약 후 추가협약을 통하여 홍콩 및 마카오 자본의 여행사가 중국인의 해외여행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한 것을 근거로 한-중 FTA 후속협상에서 한국여행사의 아웃바운드 업무확대에 대해 협상력을 집중할 필요 있다. 현재 중국정부는 일부 선진권 기업과 국유기업 간 합자기업 3개에만 아웃바운드 여행업을 허가하고 있으며, 설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c. 시범지역에서만이라도 부분적 이행 제안

중-홍콩 CEPA에서는 홍콩과 인접한 광둥성 지역에 우선적인 개방 조치를 시험한 후, 성공적으로 평가되면 이후 보충협정에서 지역을 확대해가는 선행시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후속 한-중 FTA 서비스 분야 후속협상에도 이러한 방식을 차용하여 북경과 상해 일부지역에서만이라도 한국여행사가 아웃바운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할 필요가 있다.

23) 김장훈, “폭발하는 중국 해외여행 시장과 한국의 대응”, 특별기고, 2014.10, pp. 60-61.

④ mode 4

추가 개방 및 논의사항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 2 절 문화서비스

1. 문화서비스 산업 현황 및 시사점

(1) 문화콘텐츠산업 현황

문화콘텐츠산업(Cultural Contents Industry)에 대한 명칭은 물론 그 정의와 범위는 국가마다 다르다.²⁴⁾ 우리나라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이라는 말은 2001년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으로서 영화, 음반, 비디오, 게임, 출판, 인쇄물, 정기간행물, 방송, 문화재관련, 캐릭터, 애니메이션, 디자인(산업디자인 제외), 광고, 공연, 미술품, 전통공예품, 디지털문화콘텐츠, 전통의상, 식품 등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산업 등이 포함된다.

중국에서는 2000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관한 중국 중앙공산당 제10차 5개년 계획제정의견》을 통해 문화산업 개념을 제시하면서 시작된 중국의 진흥정책은 11·5 및 12·5 계획을 통해 보다 구체화하였다.²⁵⁾ 11·5계획 동안에는 문화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중점 문화산업 육성, 해외진출 확대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2009년에

24) 미국에서는 Entertainment Industry라고 불리며 주로 영화, 비디오, 애니메이션, 음반, 게임, 방송, 테마파크 등이 포함되며, 일본에서는 Amusement Industry와 2005년부터 문화콘텐츠산업이라는 말을 혼용하고 있음. 여기에는 테마파크와 파친코산업도 포함하고 있음.

25) 박정수·이홍식·고준성·김홍석·박문수·김찬곤·고대영·구진경·박지혜, 「한-중 FTA 서비스협상의 업종별 대응방향」, 산업연구원, 2014, pp. 122-128.

는 중국 국무원은 “문화산업진흥계획” 발표를 통해 영상제작업, 출판업, 애니메이션 등 8개 주요산업을 규정하고 문화산업 육성 정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다.

12·5 계획에서는 문화산업의 구조조정 및 고도화, 차별화된 지역 문화산업 발전 등 질적 성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2012년 중국 국무원에서 발표한 “12·5 계획기간 문화산업 진흥계획”에서는 중점 업종으로 연예업, 오락업, 애니메이션산업 등 11개 업종을 선정하고 이들 산업에 대해 2015년에 문화산업 규모를 2010년 대비 두 배 성장 등 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콘텐츠산업 시장은 경제성장과 소득증대에 따른 문화소비가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 콘텐츠 시장은 세계 콘텐츠시장 매출 규모 3위를 차지하고 향후 중국경제와 콘텐츠산업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중국 콘텐츠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1년 홍콩을 포함하여 중국지역으로 수출한 비중을 살펴보면 27.0%로 일본(30.1%) 다음으로 그 비중이 높다.²⁶⁾

중국 문화콘텐츠 산업 규모는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할 때 2004년부터 10년간 연평균 20% 이상 꾸준히 성장했으며, 2013년 부가가치가 2조1000억 위안에 달해 전체 GDP의 3.8%를 차지하였다. 2004년에 비해 약 7배 이상이 증가한 수치이며, GDP 비중 차지 또한 1.6%가 증가하였다.²⁷⁾ 그 중 광둥(广东)이 22.8%, 산둥(山东) 11.4%, 장쑤(江苏)가 12.2%로 두 자릿수 퍼센트의 규모를 가지며 산업 부가가치는 200억 위안을 넘는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²⁸⁾ 아래에서는 중국 콘텐츠산업의 일부 장르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6) FTA 종합지원센터, “한-중 FTA로 양국 문화콘텐츠산업 부상”, <http://okfta.kita.net/dataRoom.do?method=referDataView&num=33285¤tPage=1&column=&mainNum=0309&field=>, 검색날짜: 2015. 8. 7

27) Ibid.

28) 박정수·이홍식·고준성·김홍석·박문수·김천곤·고대영·구진경·박지혜, 전 계보고서, pp. 122-128.

1) 방 송

국가광전총국 발전연구센터에서 발간한 <중국라디오영화TV방송보고(中国广播电影电视发展报告(2012))>에 따르면 2011년 중국의 방송 산업 총수입은 재정보조금 수입을 포함하여 2,717억 3,2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하였다.²⁹⁾ 2011년 말 기준 중국의 라디오 방송 인구 비율은 97.06%로 동기 대비 0.28% 증가하였고, TV 방송 인구 비율은 97.82%로 동기 대비 0.2% 증가하였다. 전국의 지상파 TV 비율은 94.52%로 나타났다.

중국 케이블 방송 가입자 규모는 약 2억 264만 3,900가구로 전년 동기대비 7.38% 증가하였고 중국의 전체 가구 수 대비 보급률은 49.43%로 통계되었다. 그 중 디지털 TV 서비스 이용세대 수는 1억 1,488만 9,600가구로 전년대비 29.52% 증가하였고 유료 디지털 TV 가입자는 1,760만 5,900가구로 59.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전국 위성TV채널의 방송 인구도 연인원 429억 명에 이르러 전년 대비 38억 3,000만 명 증가하였다.

2012년 5월 말 기준 방송기관은 2,594개에 이르고 그 중 라디오방송국은 184개, TV방송국은 197개, 교육TV방송국은 43개, 라디오TV방송국은 2,170개에 이른다. 전국의 방송사들이 개설한 채널은 총 4,118개이며 그 중 라디오 방송채널은 2,787채널이고 TV 채널은 1,331개에 이른다. 전국의 유료채널은 146개이고 그 중 유료TV 채널은 132개이며 전국적 유료 TV 채널은 105개, 다 지역 및 성내 유료TV채널은 27개이다. 유료 라디오 채널은 14개이며 그 중 전국 유료 라디오 채널은 9개, 성내 유료 라디오 채널은 5개이다.

29) 윤석환, 「중국 방송통신 규제체계 분석 및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pp. 26-28.

2) 영 화

UNESCO 의 전망에 따르면 2020 년 중국영화시장 규모는 12 조 (2013년 3.6 조원)를 돌파 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을 제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6년 뒤 일이다. 2025 년에는 시장규모가 배증하여 약 21 조원을 예상하고 있다. 단순 숫자로 보면 믿기 어렵다. 그러나 중국 영화시장 환경과 최근 성장세를 지켜보면 전망이 오히려 보수적일 수 있다. 중국의 박스오피는 최근 5 년간 매년 30%씩 성장했으며 아직까지 연간 인당 영화관람편수는 0.64 회에 불과하다.³⁰⁾

향후 지속적인 소득증가와 그에 따른 인당 영화관람편수 상승, ATP(Average Ticket Price) 상승, 정부의 정책적 의지 등을 고려할 때 유네스코의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 UNESCO 의 전망치는 중국의 경우 향후 5년간 20.5%(CAGR 5yr), 미국의 경우 2.9%(CAGR 5yr)다.³¹⁾

중국 영화시장의 성장은 정부의 정책, 콘텐츠와 플랫폼의 증가와 응축된 잠재 수요에 기반 한다. 정책적 측면에서 과거 통구통소(統購統銷)³²⁾와 정치적, 획일적 정책에 벗어나 민간자본에게 역할을 확대시키고 영화관에 대해서는 외국자본까지 허용하게 하는 등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영화제작 편수가 늘어나고 곳곳에 영화관이 생겨나는 듯 질적, 양적 변화가 일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영화를 재미있어하는 소비층이 늘어나고 있는 점이다. 필수 문화 활동의 일부로 자리 잡을 경우 장기간 시장 형성이 가능한 부분이다.³³⁾

30) BS 투자증권, “중국영화산업”, http://www.bnkfn.co.kr/uploads/13072/1/gsshin_22.pdf, 검색날짜: 2015. 8. 3.

31) Ibid.

32) 통구통소란 일괄 구입, 일괄판매를 의미함.

CJ는 2005년 7월 CJ Entertainment 중국사무소를 설립했고 극장, 중국영화 제작, 배급 등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CJ E&M에서 투자에 참여한 중국영화로는 ‘소피의 연애 매뉴얼(非常完美)’, ‘What women want(我知女人心)’이 있다. CJ E&M에서 수입해 한국에서 개봉한 중국 영화로는 ‘당산대지진(唐山大地震)’, ‘색계(色戒)’, ‘황후화(滿城盡帶黃金甲)’ 등이 있다. 중국에서 개봉한 한국영화로는 ‘7광구’, ‘해운대’가 있다. CJ CGV는 중국에서 극장체인사업을 확장하는 중이다. CJ CGV, CJ E&M는 또 2006년부터 중국의 국가광전총국과 한국의 영화진흥위원회와 손잡고 한국 내 중국영화제, 중국내 한국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CJ홈쇼핑은 중국 측 방송사업자와 합자하는 방식으로, 2004년 상하이에 동방CJ(東方CJ)를 개국했고 2008년 에는 텐진에 천천CJ(天天CJ)를 개국하여 중국 홈쇼핑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³⁴⁾

BBC, CNN, KBS, MBC, SBS 등 해외 방송사들은 2004년 8월부터 시행된 《해외기구 주중 방송사무기구 설립 관리규정(境外機構設立駐華廣播電視辦事機構管理規定)》의 틀 안에서 취재활동을 하고 있다. 《해외기구 주중 방송사무기구 설립 관리규정》에 따라 해외기구는 중국 국내에 방송 대리기구 또는 편집부를 설립할 수 없다. 해외기구 주중 방송사무기구 설립에 대해 허가제를 시행하며, 국가광전총국의 승인이 없이 무단으로 주중 사무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금지된다. ³⁵⁾

3) 엔터테인먼트

한-중 FTA가 타결되기 전 이미 일부 대형 연예기획사들은 중국에 진출하였다. 대표적으로 Sidus HQ, JYP와 같은 기획사들을 비롯하여 YG, SM, CUBE와 FNC와 같은 일부 대형 글로벌 공연매니지먼트사들도 현재 중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표 3-5-6> 참고). 향후 한-중

33) Ibid.

34) Ibid.

35) Ibid.

FTA가 발효되면 이들의 중국 진출은 본격화 될 것이다. 한국 최대 연예기획사인 Sidus HQ는 SK Telecom China와 Beijing Sidus HQ를 중국 북경에 설립하였다.³⁶⁾ SM은 현지법인³⁷⁾ SM CHINA 설립을 통해 중국 활동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큐브엔터와³⁸⁾ FNC는 현지 파트너와 공동 매니지먼트를 시작할 계획이다.³⁹⁾

<표 3-5-6> 우리나라 공연 매니지먼트사의 중국 진출 현황 및 유형

Korean entertainment companies	진출 년도	진출 유형	내 용
Sidus HQ	2007	현지법인	- 합자회사Beijing Sidus HQ 설립
JYP	2008	branch	- Beijingchongshangmedia와 협력하여 연습생 선발 및 training
YG	2013	동영상	- YOUKU에 “YG FAMILY CHANNEL” 오픈 - 현지법인 설립 예정
SM	2015	-	- 현지법인 설립 예정
CUBE	2015	-	- 현지법인 설립 예정
FNC	2015	-	- 현지법인 설립 예정

그런데 이들 매니지먼트사와는 달리 YG는 2013년부터 삼성전자와 함께 중화권 최대 동영상 사이트 YOUKU에 공식 채널인 “YG FAMILY

36) The Hollywoodreport, “Sidus HQ, SK Telecom establish China agency”, <http://www.hollywoodreporter.com/news/sidus-hq-sk-telecom-establish-148379>, 검색날짜: 2015. 6. 20.

37) 현지법인이란 자국의 자본만으로 외국법에 의거하여 외국에 설립된 외국 국적의 회사 법인임. 기업의 해외 진출에서, 현지의 협력을 얻기 위해 설립함.

38) 머니투데이, “큐브엔터① “중국 진출 확대…제2의 포미닛 만든다””,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5031114593979485, 검색날짜: 2015. 6. 20.

39) 머니투데이, “中 매니지먼트 사업진출..내년 성장 자신”,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20408591906971&outlink=1>, 검색날짜: 2015. 6. 20.

CHANNEL”을 오픈하여 이미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⁴⁰⁾ YOUKU 내 “YG FAMILY CHANNEL” 개설은 대기업과 매니지먼트사가 중국 내 공동 마케팅을 시작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처음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이다. YG의 경우, mode 3의 형태로 진출하는 다른 매니지먼트사들과 달리 먼저 mode 1의 형태로 중국 시장에 진출한 후 mode 3의 형태로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2) 시사점

중국정부가 문화콘텐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중국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외자 진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문화산업의 특성상 중국정부는 WTO GATS 양허안에서도 엔터테인먼트서비스와 인쇄·출판서비스를 개방하지 않았으며, 시청각서비스의 경우에는 개방을 하더라도 제한사항이 많았다. 한-중 FTA에서는 중국 측이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개방하면서 한-중 FTA를 통해 중국 콘텐츠산업 진출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초로 개방한 것이 초점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 개방이 얼마나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것인가가 초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WTO·FTA에 나타난 중국의 양허 수준

(1) WTO GATS에서의 시장개방

현재 WTO 서비스분야 협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UN의 Provisional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CPC)의 분류체계에 따르면,⁴¹⁾ 콘텐츠산업

40) osen, “YG, 중국 진출 박차..최대 동영상 사이트에 공식 채널 오픈”, <http://osen.mt.co.kr/article/G1109646108>, 검색날짜: 2015. 5. 20.

41) 이정미, 「한-중 FTA 교육서비스 분야 협상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연구원, 2012, p. 17.

(content industry)⁴²⁾에는 BUSINESS SERVICES, COMMUNICATION SERVICES, RECREATIONAL, CULTURAL AND SPORTING SERVICES 의 서비스들이 포함된다.

중국의 2001년 WTO 가입 당시 제출한 구체적 약속 양허표상 서비스시장 개방 약속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중국은 WTO GATS 협상을 통해 영상산업을 점차 개방하였으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콘텐츠에 대한 우려에 따라 높은 수준의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영화 등 제작 · 배급 및 상영, 음반녹음 등 콘텐츠산업의 일부 장르에 대해 선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였다.

<표 3-5-7> WTO GATS 문화콘텐츠서비스 개방 분야 및 중국 측 합의사항⁴³⁾

개방분야	중국 측 합의사항		
	MA	NT	추가적 약속
인쇄 · 출판 서비스	미개방		
시청각서비스 (CPC 83202)	비디오 배급 서비스, 녹음물 배급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시청각물의 내용을 조사하기 위한 중국의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영화	-제한 없음 영화의 행정에 관한 중국의 규정의 준수를 저해함이 없이, 중국은 수익분배에 기초한 극장 상영 영화의 수입을 허용하며,

42) The content industry is an umbrella term that encompasses companies owning and providing mass media and media metadata. This can include music and movies, text publications of any kind, ownership of standards, geographic data, and metadata about all and any of the above. Wikipedia, “content industry”, http://en.wikipedia.org/wiki/Content_industry, 검색날짜: 2015. 6. 20.

43) 한-중 FTA 협정문을 바탕으로 필자가 정리함.

개방분야	중국 측 합의사항		
	MA	NT	추가적 약속
		를 제외한 시청각물 배급에 종사하기 위 하여 중국 파트너와 계약 합작 투자 기 업 설립이 허용됨 (4) 수평약속 이외 에는 약속하지 않음	그러한 수입 편수 는 연간 20편이어 야 함
	영화관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 서비스 공 급자는 영화관 건축 및/또는 개축이 허 용되며 외국인 투자 는 49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함 (4) 수평약속 이외 에는 약속하지 않음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CPC 96191, 96192)	미개방		

중국의 WTO 시청각 서비스 양허안에서 중국은 기본적으로 외국 기업의 방송시장 진출을 금지하였다. 음향, 영상 제품과 비디오테이프 도소매 및 임대시장, 외국인 투자 영화관 설립 허가, 해외 영화에 대한 20편의 수입쿼터 개방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허가된 분야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외자기업들은 중국 방송시장에 대해서

중국사무소나 컨설팅 형태의 관련 회사 설립, 합작 제작 혹은 합자 등의 방법을 통해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⁴⁴⁾

(2) 기 체결 FTA 협정에서 중국의 시장개방

1) 중-홍콩 CEPA

중-홍콩 CEPA에서는 WTO 양허에 비해 시청각 서비스 분야에서 기존보다 비교적 폭넓은 개방을 합의하였다. 비디오와 녹음물 배급서비스의 경우 홍콩지분을 70%까지 허락하는 합작법인의 설립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영화관서비스의 경우 건축, 개축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개방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홍콩 독자회사도 설립이 허용되었다. 수입 영화로 분류되어 수입쿼터의 제한을 받았던 홍콩영화가 중국어로 제작된다는 조건하에 CEPA에서는 수입쿼터 제한에서 제외되었으며, 공동제작 영화의 제한요건도 기존 중국 국내 규정보다 완화되었다. 또한 공동제작한 TV 드라마에 대하여 중국 내에서 제작한 드라마와 동일하게 방영·유통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케이블 TV 네트워크를 광저우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중국과 홍콩의 합작 TV 드라마 제작을 위해서는 합작의 중국 측 파트너가 광전총국에 제목, 각 회 시놉시스 및 주요 제작 인력과 제작 계획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CEPA V하에서는 이러한 제안서에 각 회당 시놉시스 분량 요건이 한자 5,000자에서 1,500자로 축소되었는데, 이로써 관련 제작사의 시간과 행정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44) 윤석환, 전계보고서, pp. 41-42.

<표 3-5-8> 중-홍콩 CEPA 문화콘텐츠서비스 개방 분야 및 중국 측 합의사항⁴⁵⁾

양허분야		양허내용
비디오 배급 서비스, 녹음물 배급 서비스		- 홍콩지분 70% 이하의 합작법인 설립 허용
영화관서비스		- 영화관 건축, 리노베이션 및 운영 허용 - 독자회사 설립 허용
영화 및 공동제작 영화	수입영화	- 홍콩에서 제작된 중국어 영화는 수입쿼터 비적용 - 홍콩 영화사가 영화저작권의 75% 이상을 소유 - 홍콩 거주자가 영화의 전체 주요 인력의 50% 이상을 구성
	공동제작	- 홍콩 출신 주요 창작인력 비율에 제한이 없지만 중국 출신 주연급 배우가 최소 1/3 이상이어야 함 - 줄거리나 주요 인물은 중국과 관련되어야 함 - 공동제작 영화는 경외에서 프로세싱 할 수 있음
TV 드라마 공동제작		- 홍콩과 중국 합작의 TV 프로그램은 중국 제작 TV 프로그램과 동일한 방식으로 방송, 유통 허용 - 2008년 1월부터 중국과 홍콩의 합작 드라마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기관이 제출하는 제안서에서 각 회사 몫시스는 1,500자로 개정함
케이블 TV 네트워크		- 홍콩 케이블 TV 네트워크 사업자는 시범지역인 광저우에 전문기술 관련 서비스 제공 허용

2) 선진국과 체결한 FTA

중-뉴질랜드 FTA, 중-스위스 FTA와 중-호주 FTA에서 중국은 문화콘텐츠 서비스 가운데 인쇄서비스와 시청각서비스 분야에서 유사한

45) 한-중 FTA 협정문을 바탕으로 필자가 정리함.

폭의 개방을 약속하였다. 이들 FTA는 한-중 FTA와 달리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에 대한 개방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영화 및 TV 드라마 등에 대한 중국과의 공동합작 협정 및 협정 마련을 위한 근거 협정도 채택하지 않고 있다. 다만 한-중 FTA 서비스 후속협상에서 참고할 FTA는 중국과 홍콩간의 CEPA이다.

① 인쇄·출판서비스

중-뉴질랜드 FTA, 중-스위스 FTA, 중-호주 FTA는 모두에서 중국은 출판서비스를 전면 비(非)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인쇄서비스의 경우 포장물 인쇄에 대해 mode 3의 MA에 대해 외국인 전액출자기업을 허용하되, 경제적 수요 심사가 요구되는 등 부분적으로 개방하였다.

② 시청각서비스

a. 비디오와 녹음물 배급서비스

중국은 영화 제작 및 배급서비스에 대해서는 다수의 FTA에서 개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뉴질랜드 FTA, 중-스위스 FTA와 중-호주 FTA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비디오와 배급서비스 및 음반녹음 배급서비스에 한하여 mode 1 및 2에 대해 제한 없이 개방하였고, mode 3의 MA에 대해서는 중국의 시청각물의 내용을 검열할 권한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단서 하에 외국서비스공급자가 영화를 제외한 시청각물의 배급에 종사하기 위하여 중국 파트너와 계약상 합작투자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고, NT에 대해서는 제한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들 FTA에서 중국은 상기 서비스의 개방과 더불어 중-뉴질랜드 FTA 등에서 중국은 가입 시 필름관리에 관한 중국법규를 침해하지 않되, 극장상영용 영화의 수입은 수익분배기초 위에서 허용하고, 연간 수입 편수는 20편으로 한다는 추가적 약속을 제출하였다.

b. 영화관 서비스

영화관 서비스와 관련하여 중국의 다수의 기 체결 FTA에서 영화극장서비스에 한하여 mode 1 및 2를 제한 없이 개방하고, mode 3의 MA에 대해서는 외국서비스공급자가 49% 이하의 지분을 갖고 영화극장을 건축하거나 개조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한을 부과하나, NT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③ 엔터테인먼트서비스

엔터테인먼트서비스의 경우 중국의 WTO GATS 양허는 물론 기 체결 모든 서비스 FTA에서 mode 1, 2, 3 및 4의 전부에 대해 양허 약속을 한 사례가 없어 완전 미개방 업종에 해당된다.

3. 한-중 FTA에서 문화서비스 분야 중국 측 합의사항

<표 3-5-9> 문화콘텐츠서비스 개방 분야 및 중국 측 합의사항⁴⁶⁾

개방분야	중국 측 합의사항			
	MA		NT	추가적 약속
인쇄·출판서비스	- 인쇄의 경우 포장물 인쇄에 대해 모드3 개방, 외국인 완전소유 허용. 단 경제적 수요심사 요구됨 - 출판의 경우 미 개방		- 약속 안 함	- 없음
시청각 서비스	비디오 배급 서비스, 녹음물	시청각물의 내용을 조사하기 위한 중국의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한국 서비스 공	- 제한 없음	영화의 행정 에 관한 중국의 규정의 준수를 저해함

46) 한-중 FTA 협정문을 바탕으로 필자가 정리함.

개방분야	중국 측 합의사항			
	MA		NT	추가적 약속
	배급 서비스	급자는 영화를 제외한 시청각물 배급에 종사하기 위하여 중국 파트너와 합작 투자 기업 설립이 허용됨		이 없이, 중국은 수익분배에 기초한 극장 상영 영화의 수입을 허용하며, 그러한 수입 편수는 연간 20편이어야 함
	영화관 서비스	한국 서비스 공급자는 영화관 건축 및/또는 개축이 허용되며 외국인 투자는 49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함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CPC 96191, 961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서비스 공급자는 중국 파트너와 함께 합작 투자 기업 또는 계약 합작 투자 기업의 형태로 공연 중개 기관 또는 공연장 사업체를 설립하는 것이 허용됨 - 합작 투자 기업의 한국 투자는 49퍼센트 이하일 것. 합작 투자 기업의 중국 당사자는 의사결정권을 가짐 - 공연 중개 기관은 중개, 위탁 대행 및 대행의 형태로 상업적 공연업에 종사할 수 있음 - 공연장 사업체는 자신의 장소에서 상업적 공연을 개최할 수 있음 		- 약속 안 함	- 없음

(1) 인쇄·출판서비스

인쇄의 경우 포장 재료의 인쇄에 대해 mode 3 외국인 완전 소유 기업이 허용된다. 단 경제적 수요 심사가 요구된다. 그러나 출판의 경우 미개방 하였다.

(2) 시청각서비스

1) 비디오 및 녹음물 배급 서비스

시청각물의 내용을 조사하기 위한 중국의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한국 서비스 공급자는 영화를 제외한 시청각물 배급에 종사하기 위하여 중국 파트너와 계약 합작 투자 기업 설립이 허용된다.

2) 영화관 서비스

한국 서비스 공급자는 영화관 건축 및/또는 개축이 허용되며 외국인 투자는 49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영화, TV 드라마,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① 영 화

한, 중 양국은 2013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영화공동제작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한-중 FTA 부속서 8-나에서 영화 공동제작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한-중 FTA가 발효되면 기존 협정은 종료된다. 한-중 FTA는 공동제작영화로의 승인 절차, 조건, 기술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합작영화가 공동제작영화로 승인받는 경우 중국 내에서 자국영화로 인정된다. 이 경우 중국의 외국영화 수입제한제도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한국 영화의 중국시장 진출이 지금보다 더욱 증가할 것이며, 영화특수효과

기술(VFX) 협력, 현장 스태프 교류 등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⁴⁷⁾

② TV 드라마,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

TV드라마, 다큐멘터리 및 방송용 애니메이션에 대하여 한, 중 양국 간 공동제작을 장려하기로 합의하였다. 공동제작은 당사국의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데, 중국은 2004년 9월 21일 광전총국이 공포한 ‘중국 합작제작드라마 관리규정(애니메이션에도 적용)’을, 한국은 ‘방송법’을 따르게 된다. 그리고 한, 중 양국은 양국의 국내법에 따라 TV드라마와 애니메이션에 대한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검토하는데 합의하였으나, 다큐멘터리는 공동제작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3)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서비스산업 가운데에서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현재 우리나라의 중국 진출이 가장 활발한 분야 중 하나이고, 중국보다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되는 분야 중 하나이다. 물론 한-중 FTA가 타결되기 이전에도 한국 연예인들과 연예산업이 중국으로 진출 하긴 하였지만,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한-중 엔터테인먼트 합자(equity joint ventures) 또는 합작회사(contractual joint ventures)를 설립하더라도 중국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합작이 무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한-중 FTA의 타결로 인하여 엔터테인먼트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중국 내 기업의 지분을 49%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되는 등 법률적·제도적으로 명확히 보장받게 되었다.⁴⁸⁾

47)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한중 간 영화공동제작협정 체결”,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3605, 검색날짜: 2015. 6. 20.

48) 서울경제, “서비스·통신, 엔터테인먼트 시장 개방... 중국 지분 49% 보유가능”,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411/e2014111017565670070.htm>, 검색날짜: 2015. 6. 23.

국제 서비스 교역은 국제통상에서 점차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⁴⁹⁾ 중국 정부도 2001년 WTO 가입 이후 문화서비스를 포함하여 서비스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왔다.⁵⁰⁾ 특히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⁵¹⁾ 다행히 이러한 시기에 중국이 홍콩과⁵²⁾ 대만⁵³⁾ 등 중화권에도 개방하지 않은 엔터테인먼트서비스 분야를 한국에게 최초로 개방한 것은 우리나라가 중국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여 진다.

1) 엔터테인먼트서비스의 개념

WTO GATS는 모든 종류의 서비스 분야에 적용되지만⁵⁴⁾, 서비스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⁵⁵⁾ 이는 서비스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정의하기 곤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

49) Park, Ji-Yeon, "Service Sector Dispute Settlement in Free Trade Agreement: The Case of NAFTA Cross-Border Trucking Services", *International Trade Law*, Vol. 107, 2012.10, pp. 103-104.

50) Liujifa · hongji · Chenhuaiping, "Cultural Industry Study", Beijingjingjiguanli Press, 2005, pp. 5-9.

51) Guoyujun · Wangqing, "Legal Approach on Use of Foreign Capital in Domestic Cultural Industry", *Journal of henan administrative institute of politics and law*, Vol. 127, 2011, p. 71.

52) 중 · 홍콩 CEPA는 2003년 6월 29일 CEPA 1단계가 체결된 이후 2009년 5월 11일 CEPA VII까지 6차례의 보충협정을 체결함.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 6차례에 걸친 보충협상을 통해 중국은 홍콩에게 더욱 폭넓은 서비스 개방과 인력이동 수준을 보장해 줌으로써 CEPA는 중국이 체결한 어떠한 무역자유화협정보다도 높은 수준의 서비스 개방을 보장하고 있음.

53) 2010년 6월 29일 체결된 중 · 대만 ECFA에서 중국은 회계 · 은행 · 보험 · 전문 설계 · 병원 서비스 등 11개 부문에서, 대만은 연구개발 · 유통 · 은행 등 9개 부문을 개방함.

54) According to GATS I:3(b), "services include any service in any sector except services supplied in the exercise of government authority." Relevant to this, GATS I:3(c) specifies that "a service supplied in the exercise of governmental authority means any service which is supplied neither on a commercial basis, nor in competition with one or more suppliers."

55) 환철수, 「서비스산업개방과 WTO」, 다산출판사, 1994, p. 49.

로는 GATS의 적용범위를 가능한 넓게 열어둔다는 의미도 있다.⁵⁶⁾ 문제는 아직까지도 서비스분야 및 업종의 분류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확립되고 통일된 분류 기준이 없다.⁵⁷⁾ 따라서 현재 WTO 서비스분야 협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UN의 Provisional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CPC)의 분류체계에 따르면,⁵⁸⁾ 엔터테인먼트서비스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표 3-5-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콘텐츠산업(content industry)에는 BUSINESS SERVICES, COMMUNICATION SERVICES, RECREATIONAL, CULTURAL AND SPORTING SERVICES의 서비스들이 포함된다. 엔터테인먼트서비스는 콘텐츠산업의 하위범주인 RECREATIONAL, CULTURAL AND SPORTING SERVICES에 포함되는 서비스이다.

<표 3-5-10> 서비스산업 분류 중 콘텐츠산업 해당 분야⁵⁹⁾

Division	Group	Class
BUSINESS SERVICES	B. Computer and Related Services	b. Software implementation services
		e. Other
	F. Other Business Services	p. Photographic services
		r. Printing, publishing
		t. Other
2. COMMUNICATION SERVICES	D. Audiovisual Services	a. Motion picture and video tap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ervices
		b. Motion picture projection services
		c. Radio and television services

56) 법원행정처, 「WTO와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 1997, p. 48.

57) 법무부,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고찰」, 2003, p. 207.

58) 이정미, 전계보고서, p. 17.

59) 한국콘텐츠진흥원, “FTA가 국내 콘텐츠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향”, KOCCA Focus, Vol. 40, 2011, pp. 8-9.

Division	Group	Class
		d. Radio and television transmission services
		e. Sound recording
10. RECREATIONAL, CULTURAL AND SPORTING SERVICES	.A. Entertainment Services(including theatre, live bands and circus services)	* other entertainment services
	B. News agency services	

따라서 Photographic services, Motion picture and video tap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ervices, Motion picture projection services, Radio and television services, Radio and television transmission services, Sound recording 등 서비스 유형들은 비록 Entertainment Services와 외관상으로 유사해 보일지라도 다른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서비스(Entertainment Services)의 하위범주인 “기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는 <표 3-5-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시 CPC 96191, 96192, 96193, 96194, 96195, 96199로 세분된다는 것도 이해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한-중 FTA 엔터테인먼트서비스의 적용범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표 3-5-11> 기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의 분류

Subclass	Other Entertainment Services
CPC 96191	Theatrical producer, singer group, band and orchestra entertainment services

Subclass	Other Entertainment Services
CPC 96192	Services provided by authors, composers, sculptors, entertainers and other individual artists
CPC 96193	Ancillary theatrical services n.e.c
CPC 96194	Circus, amusement park and similar attraction services
CPC 96195	Ballroom, discotheque and dance instructor services
CPC 96199	Other entertainment services n.e.c.

2) 한-중 FTA 엔터테인먼트서비스의 적용범위

한-중 FTA에서 중국은 “기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모두 개방한 것이 아니다. “기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중에서도 CPC 96191 (Theatrical producer, singer group, band and orchestra entertainment services)⁶⁰⁾와 CPC 96192 (Services provided by authors, composers, sculptors, entertainers and other individual artists)⁶¹⁾에 해당하는 분야의 서비스만 개방하였다(<표 3-5-11>참고). 이들 서비스 분야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분야는 CPC 96191의 가수 그룹(singer group), 밴드(band)와 CPC 96192의 연예인(entertainers)이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이다.⁶²⁾

그러나 유의할 점은 첫째, CPC 96191의 Theatrical producer⁶³⁾가 제공

60)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Detailed structure and explanatory notes”, <http://unstats.un.org/unsd/cr/registry/regcs.asp?Cl=9&Co=96191&Lg=1>, 검색날짜: 2015. 6. 23.

61)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Detailed structure and explanatory notes”, <http://unstats.un.org/unsd/cr/registry/regcs.asp?Cl=9&Co=96191&Lg=1>, 검색날짜: 2015. 6. 23.

62)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글로벌 한류 이슈”, Vol. 84, 2015.4, p. 17.

63) A theatrical producer is a person who oversees all aspects of mounting a theatre production. The producer manages the overall financial and managerial functions of a production or venue, raises or provides financial backing, and hires personnel for creative positions(writer, director, designers, composer, choreographer-and in some cases, performers). Wikipedia, “theatrical producer”, http://en.wikipedia.org/wiki/Theatrical_producer,

하는 서비스는 CPC 96193의 Ancillary theatrical services n.e.c와 다르다는 점이다. 두 서비스는 외관상 매우 유사하고 상호보완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전자는 개방하였고, 후자는 개방하지 않았다. 둘째, CPC 96195의 dance instructor services의 개방 없이 CPC 96191의 singer group, band 분야를 개방하고 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상호보완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두 유형 모두를 개방하지 않았다. 셋째, CPC 96192의 other individual artists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other individual artists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에 대한 합의가 없다. 향후 그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3) 중국 측 합의내용

중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에 따르면, 중국은 “기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의 모드 164), 모드 265)에 대해 양허하지 않았고, 모드 466)에 대해서도 수평적 약속 이외에는 양허하지 않았다. 다만 모드 367)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한국 서비스 공급자는 중국 파트너와 함께 합작 투자 기업 또는 계약 합작 투자 기업의 형태로 공연 중개 기관 또는 공연장 사업체를 설립하는 것이 허용된다. 즉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공연 중개 기관 또는 공연장 사업체들은 독자기업의 형태로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지 합자회사의 형태로만 설립이 가능하다.

검색날짜: 2015. 6. 23.

64) Mode 1 (Cross-border Supply) is from the territory of one Member into the territory of any other Member.

65) Mode 2 (Consumption abroad) is in the territory of one Member to the service consumer of any other Member.

66) Mode 4 (Presence of Natural Person) is by a service supplier of one Member, through presence of natural persons of a Member in the territory of any other Member.

67) Mode 3 (Commercial Presence) is by a service supplier of one Member, through commercial presence in the territory of any other Member.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은 외국 자본 기업(또한 완전 외국인 소유 기업으로 지칭되는 기업)과 합작 투자 기업을 포함하며 다음 두 종류의 합작 투자 기업이 있다. 지분 합작 투자 기업(equity joint ventures) 및 계약⁶⁸⁾ 합작 투자 기업(contractual joint ventures)이다. ⁶⁹⁾ 지분 합작 투자 기업의 외국인 투자 비율은 그 합작투자 기업의 등록된 자본의 25 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 투자 기업의 한국 투자는 49% 이하이어야 한다. 계약 합작투자기업의 중국 당사자는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공연중개기관은 중개, 위탁 대행 및 대행의 형태로 상업적 공연업에 종사할 수 있다. 공연장 사업체는 자신의 장소에서 상업적 공연을 개최할 수 있다.

또한 수평약속⁷⁰⁾에서 중국 측은 지점(branch) 또는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s)의 형태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을 두고 있다. 한국 기업의 지점 설립은 특정 하위분야에서 달리 적시되지 아니하는 한 외국인 기업의 지점에 관한 법 및 규정이 제정 중에 있으므로 약속하지 않았다. 한국 기업의 중국 내 대표사무소 설립은 허용되나 분야별 구체적 약속의 CPC 861, 862, 863, 865 상의 대표사무소를 제외하고 이윤추구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한국의 매니지먼트사가 중국에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의 형태로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 이상과 같은 제한이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68) 중국 법, 규정 및 그 밖의 조치에 따라 체결된 “계약 합작 투자 기업”을 설립하는 계약의 조건은 그 합작 투자 당사자의 투자 또는 그 밖의 기여뿐만 아니라 그 합작 투자 기업의 운영 및 관리의 방법과 같은 문제를 규율함. 계약 합작 투자의 모든 당사자에 의한 지분 참여는 요구되지 아니하고 그 합작투자 계약에 따라 결정됨.

69) 동 양허표의 외국인 투자 기업은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및 《외자기업법》에 따라 정당하게 구성되거나 달리 조직된 외국인 투자 기업을 말함.

70) 한-중 양국은 각자 수평약속을 통해 양허표상 전 분야(all of the sectors)에 적용되는 약속 및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limitations)을 부과할 수 있음.

4) 한-중 FTA 엔터테인먼트서비스 분야 협상 평가

국제무역에서 서비스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⁷¹⁾ 천연자원이 거의 없고 인적자원이 풍부한 한국의 입장에서 서비스무역은 매우 중요하다.⁷²⁾ 서비스무역 중에서도 문화 콘텐츠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파급효과가 크다. 중국 및 아시아에서 한국의 문화서비스가 큰 호응을 일으키고 있는 이 시기에⁷³⁾ 한-중 FTA를 통한 엔터테인먼트서비스 분야 협상은 서비스 분야 중에서도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합의된 한-중 FTA 엔터테인먼트서비스 분야의 협상 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와 중요한 의의를 동시에 보이고 있다.

첫째, 한-중 FTA에서 중국이 개방한 엔터테인먼트서비스는 엔터테인먼트서비스 분야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기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other Entertainment Services)”에 국한된다는 점이다. 한-중 FTA에서는 “기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중에서도 CPC 96191, 96192만을 개방하였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중국이 엔터테인먼트서비스 전체를 개방한 것처럼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오해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중국이 개방한 CPC 96191, 96192 중에서도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산업이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가수그룹과 밴드, 연예인이 제공하는 서비스(services provided by singer group and band services, entertainers) 등이다. 이들 분야가 한-중 FTA로 인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분야의 개방 확대가 필요하다.

71) Chow Schoenbaum, *International Trade Law: Problems, Cases, and Materials*,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08, p. 277.

72) 류병운, “WTO GATS 협정과 서비스 분쟁”, 무역상무연구, Vol. 53, No. 3, 2012, p. 267.

73)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전계자료, pp. 7-16.

예컨대 한-EU FTA⁷⁴⁾에서 EU 측은 CPC 9619 기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개방하였다.⁷⁵⁾ CPC 9619는 한-중 FTA에서 중국 측이 개방한 CPC 96191, 96192의 상위 범주이다. CPC 9619의 하위범주로 갈수록 모호하고 유사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그 구분이 어렵고, 개방의 진정한 효과도 적다. 따라서 향후 한-중 FTA 문화서비스분야 후속협상에서 상위범주의 엔터테인먼트서비스를 개방하여 개방효과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 진다.

셋째, 모드 1을 개방하지 않은 엔터테인먼트서비스 시장은 진정한 개방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은 2015년 국무원이 공포한 최신 <지도목록>⁷⁶⁾에서 외국인의 투자 금지 항목(Catalogue of Prohibited Foreign Investment Industries)에 인터넷시청각프로그램서비스(online audio and video programs), 인터넷온라인서비스영업장소(business premises for internet-access services), 인터넷문화경영(internet cultural business)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한-EU FTA에서 유럽의 선진국들도 모드 1을 통한 문화서비스 개방에 보수적인 경향을 띄는 만큼 향후 한-중 FTA 후속협상에서도 엔터테인먼트서비스 분야의 모드 1 개방에 대한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우리나라가 중국의 공연매니지먼트사 또는 공연장 경영업체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은 열어두었지만, 우리나라 투자회사가 결정권을 보유할 수는 없다. 중국은 “문화안보”가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외국인의 문화서비스 지배권을 제한하고 있다. 공연의 방식과 의미가 한국 측 투자자가 결정할 수 없다면, 진정한 개방이라고 할 수 없지만, 중국 측에서 그 어느 나라에도 열어주지 않은 시장을 이

74) 산업통상자원부, “한-EU FTA”, <http://www.fta.go.kr/eu/doc/1/>, 검색날짜: 2015. 6. 22.

75) 한-EU FTA 엔터테인먼트서비스 개방 분야는 CPC 9619로 여기에는 theatre, live bands, circus and discoteque가 포함됨.

76)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2015年修订)》”, http://www.sdpc.gov.cn/gzdt/201503/t20150313_667334.html, 검색날짜: 2015. 6. 27.

정도라도 우리나라에게 열어준 것은 의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엔터테인먼트서비스의 큰 축은 엔터테이너의 중국 내 활동이다. 연예인의 중국 내 주재와 관련하여 좀 더 개방이 필요하다. 연예인이 중국 내에서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데 있어서 규제완화와 중국으로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지 않는 한 본질적으로 그 내재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한-중 FTA 자연인의 이동 챕터에서 연예인의 이동과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

4.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의 외자 진입 규제 동향

중국은 콘텐츠산업 진흥정책과 함께 경쟁력이 취약한 장르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규제정책으로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중국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무분별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업종별로 투자분야를 규정한 <외상투산업지도목록>을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다. 도서 잡지 간행물의 출판업무, 방송 TV프로그램의 제작 경영회사, 영화제작회사 및 배급회사 원선회사, 인터넷문화경영 및 네트워크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등이 외국인 투자금지업종에 포함되어 있다.

2005년 문화부, 광전총국 등 5개 부문 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문화영역의 외국 자본 도입에 관한 약간의 의견”에는 외국자본의 진입을 허가분야와 금지분야로 나누고 외국자본의 심사비준과 투자자 자격조건에 대한 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2005년 문화부, 광전총국 등은 업종별 총량규제로서 “문화상품 수입관리 강화에 관한 방법”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문화산업 주관부문의 감독, 관리의 책임에 대한 내용과 업종별 총량통제를 위해 온라인 게임, 음반영상제품, 공연,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출판물 등 해외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수입관리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산

업 전반에 걸친 규제정책과 함께 외산 콘텐츠에 대해 장르별로도 차별적인 규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외국 자본이 진입되는 방식에는 크게 자본의 진입, 기술의 진입 그리고 인력의 진입 등이 포함된다. 현재 외국자본의 중국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에 진출한 형태는 중국 현지 기업과의 합자형태이다. 중국 정부입장에서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의 외국자본 진입은 일종의 위협을 끼칠 수 있는 분야로 여겨져 왔다. 따라서 중국 내부의 약점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외국자본이 끼칠 가능성 있는 외부적 위험요소를 피하는 문제가 중국정부가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에 제정한 각종 규제를 제정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콘텐츠산업에는 TV 방송, 인터넷, 영화, 신문, 광고 등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요도에 따라서 중국 정부는 분야별로 진입 및 내용에 관한 제한 규정을 달리하고 있다. 분야에 따라서는 지방행정부처의 규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TV 방송,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방송·영화

1) 법규체계 현황

중국의 TV 방송 관련 법체계는 <표-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송영화에 관한 상위 법률은 부재한 상황에서 여러 행정법규와 부문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법규와 부문규장의 일부 내용은 중복되고 서로 충돌되는 경우도 있어 국가광전총국은 법체계의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 2010년 국가광전총국은 《지속적으로 유효한 방송영화 부문규장 및 규범성문건 목록 공포에 관한 통지(廣電總局關於公布繼續有效的廣播影視部門規章和規範性文件目錄的通知)》를 공포하였는데, 이

에 따르면 2010년 11월 12일을 기준으로 약 39건의 부문규정과 약 301건의 규범성 문건이 유효하다.

<표 3-5-12> 방송영화 법규체계⁷⁷⁾

구분	행정법규	부문규장
드라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관리조례(广播电视管理条例) -케이블TV관리 잠정방법(有线电视管理暂行办法) -정보망 전파권 보호조례(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방송시설 보호조례(广播电视设施保护条例) -위성방송 지상수신시설 관리규정(卫星电视广播地面接收设施管理规定) -위성지상수신시설의 해외위성전송 TV프로그램 수신 관리방법(卫星地面接收设施接收外国卫星传送电视节目管理办法) -방송국 녹음제품 방영보수 지급 잠정방법(广播电台电视台播放录音制品支付报酬暂行办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TV 프로그램 수입과 방영 관리규정(境外电视节目引进播出管理规定) -중외합작제작 드라마 관리규정(中外合作制作电视剧管理规定) -‘중외합작제작 드라마 관리규정’ 보충규정(《中外合作制作电视剧管理规定》的补充规定) -해외위성TV채널 수신 관리방법(境外卫星电视频道落地管理办法) -해외기구 주중 방송사무기구 설립 관리규정(境外机构设立驻华广播电视办事机构管理规定)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관리규정(互联网视听节目服务管理规定) -인터넷 등 정보망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관리방법(互联网等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管理办法) -방송 VOD 서비스 관리방법(广播电视视频点播业务管理办法) -방송 프로그램 제작경영 관리규정(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管理规定) -방송 프로그램 전송서비스 관리방법(广播电视节目传送业务管理办法) -드라마 내용 관리규정(电视剧内容管理规定) -라디오TV광고방송관리방법(广播电视

구분	행정법규	부문규장
		视广告播出管理办法) -‘라디오TV광고방송관리’ 보충규정 (《广播电视广告播出管理办法》的补充规) -방송국 심사승인 관리방법(广播电台电视台审批管理办法) -방송소 심사승인 관리 잠정방법(广播电视站审批管理暂行规定) -지상파 방송 전송망 관리방법(广播电视无线传输覆盖网管理办法) 케이블TV 운영서비스 관리 잠정규정(有线广播电视运营服务管理暂行规定) -라디오TV 안전방송 관리규정(广播电视安全播出管理规定) -방송장비자재 형식승인 관리방법(广播电视设备器材入网认定管理办法) -도시 거주지역 케이블TV 체계 관리 잠정방법(城市社区有线电视系统管理暂行办法) -위성방송 지상수신시설 설치 서비스 잠정방법(卫星电视广播地面接收设施安装服务暂行办法) -‘위성방송 지상수신시설 관리규정’ 실시세칙(《卫星电视广播地面接收设施管理规定》实施细则) -해외 채널 임대·구매 및 방송소 설립 관리 잠정규정(赴国外租买频道和设台管理暂行规定) -국가광전총국 행정허가 실시 검사 감독 잠정방법(国家广播电影电视总局行政许可实施检查监督暂行办法) -방송 편집기자, 아나운서, MC 자격 관리 잠정규정(广播电视编辑记者, 播

구분	행정법규	부문규장
		音员主持人资格管理暂行规定) -방송 프로그램 프로듀서 자격증 잠정규정(广播电视节目出品人持证上岗暂行规定)
영화	-영화관리조례(电影管理条例) -수입영화 관리방법(进口影片管理办法)	-방송영화 입법절차 규정(广播电影电视立法程序规定) -방송영화 행정재심방법(广播电影电视行政复议办法) -방송영화제(전시회) 및 프로그램 교류행사 관리규정(广播影视节(展)及节目交流活动管理规定) -방송영화 산업통계 관리방법(广播电影电视行业统计管理办法) -방송영화계통 내부감사업무 규정(广播电影电视系统内部审计工作规定) -영화예술문서관리규정(电影艺术档案管理规定) -영화 대본(줄거리) 등록, 영화필름 관리규정(电影剧本(梗概)备案, 电影片管理规定) -영화기업 경영자격허가 잠정규정(电影企业经营资格准入暂行规定) -‘영화기업 경영자격허가 잠정규정’ 보충규정(《电影企业经营资格准入暂行规定》的补充规定) -중외공동촬영 영화필름 관리규정(中外合作摄制电影片管理规定) -수출입 영화필름 현상, 사후제작 심사승인 관리방법(电影片进出境洗印, 后期制作审批管理办法) -외국인투자 영화관 잠정규정(外商投资电影院暂行规定)

구분	행정법규	부문규장
		-‘외국인투자 영화관 잠정규정’ 보충 규정(《外商投资电影院暂行规定》的补充规定) -‘외국인투자 영화관 잠정규정’ 보충 규정 2(《外商投资电影院暂行规定》补充规定二) -영화심사규정(电影审查规定)

2) 방 송

① 진입 규제

중국은 방송 산업 분야의 외국자본 진입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외국자본의 규모 제한과 외국자본의 진입 형태에 대한 제한 등이 대표적인 규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외국자본이 중국에서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을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방송관리조례》에 따르면 현(縣) 및 시(市)급 이상의 정부 방송행정부처 만이 설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5년에 공포된 《문화영역에서의 외자 진입에 관한 약간의견(关于文化领域引进外资的若干意见)》에서도 외자의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회사 설립 및 경영을 금지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방송 프로그램 및 영화 제작 분야에서의 외자 제한과는 구분해야 한다. 즉 2015년 수정된 <외상투자지도목록>에서는 그 전 버전에서와 같이 광고·방송 프로그램 및 영화 제작 분야를 제한항목으로 편입하여, 외자 진출이 합자 또는 합작 형태로만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외자의 방송국 또는 방영회사 설립은 금지되어 있지만, 프로그램 및 영화 제작 분야는 제한되어 있음을 구분하여야

77) 윤석환, 전개보고서, p. 52 국가광전총국, 건홍리서치의 자료 정리 내용을 재인용.

한다. 2005년 2월 25일 국가광전총국이 공포한 《关于实施<中外合资、合作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管理暂行规定>有关事宜的通知》에서 정식으로 외자가 국내 국유 또는 민영방송국과 함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외자가 중국의 방송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중국기업과 합자 또는 합작형태로 투자가 가능하며, 투자규모도 49%로 제한하는 등 진입을 국내법상으로 규제하고 있다.

② 내용 규제

중국은 외자의 방송 프로그램 진입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한 규정으로는 크게 방송금지과 방송제한 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국가라디오영화방송총국(国家广播电影电视总局)이 공포한 《해외위성채널수신관리방법(境外卫星电视频道落地管理办法)》 제23조에 따르면 방송이 금지되는 경우는 국가안전 및 통일, 민족단결을 파괴하는 내용, 사회 안정을 위협, 중국 법률을 위반하는 내용, 중국 사회의 공공도덕을 훼손하는 내용 그리고 중화민족의 우수한 문화 전통의 내용을 저해하는 내용들이 포함될 경우이다.⁷⁸⁾

방송제한 규정으로는 범죄물, 광고,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의 방송제한 등을 꼽을 수 있다. 2004년 4월 19일 국가광전총국은 《범죄사건 관련 드라마 심사방송관리 강화에 관한 규정(关于加强涉案剧审查和播出管理的通知)》을 하달해 모든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과 모든 채널(위성채널과 지상파 채널 포함)에서 방송 중이거나 방송 예정인 범죄사건을 소재로 한 드라마, 영화, TV영화, 다큐멘터리는 전부 저녁 23:00시 이후에야 방송이 가능하며 특수한 상황일 경우 국가광전총국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8) 윤석환, 전계보고서, pp. 53-56.

한편 광고 방송제한과 관련하여서는, 국가광전총국은 《방송광고 방영관리 잠정방법(廣播電視廣告播放管理暫行辦法)》을 2003년 9월 공포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르면 라디오방송국과 TV방송국의 프로그램별 1일 공익광고 방송건수는 전체 광고 방송건수의 3%를 넘어야 하고 1일 광고 방송분량은 해당 프로그램의 1일 방송분량의 20%를 넘지 말아야 한다. 11:00-13:00 시간대에 라디오 방송국의 프로그램별 방송분량 대비 광고 방송비중은 15%(9분) 이내로 제한한다.

19:00-21:00 시간대에 TV방송국의 프로그램별 방송분량 대비 광고 방송비중은 15%(9분) 이내로 제한한다. 이에 이어 국가광전총국은 2011년 10월 《방송광고 방영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關於進壹步加強廣播電視廣告播出管理的通知)》를 공포하여 드라마, 영화, 뉴스 프로그램 방영 도중에 광고를 내보내는 것을 금지했다.

드라마의 경우, 다음과 같이 방송 제한 규정을 둔다. 2010년 3월 국가광전총국은 《위성TV 종합채널 드라마 편성방영관리 규범화에 관한 국가광전총국 드라마사의 통지(廣電總局電視劇司關於進壹步規範衛視綜合頻道電視劇編播管理的通知)》를 공포하여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했다. 이에 따라 위성TV 종합채널의 1일(24시간) 드라마 방영분량은 전체 프로그램 방영분량의 45%를 넘지 못한다. 평일에 동일 드라마를 1일 6회(회당 46분 미만) 이상 방영(재방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말에 동일 드라마를 1일 8회 이상 방영(재방 포함)하는 것을 금지한다. 19:00-24:00 시간대에 동일 드라마를 3회 이상 방영(재방 포함)할 수 없다.

오락프로그램 관련 규정으로, 2011년 10월에 국가광전총국은 《위성TV종합채널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關於進壹步加強電視上星綜合頻道節目管理的意見)》을 공포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34개 위성TV종합채널에서 뉴스 프로그램 방송편성비율을 높이고 짝짓기 프

로그램, 서바이벌, 버라이어티쇼 등 오락 프로그램의 방송편성비율을 통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전국의 34개 위성TV종합채널들이 시청률과 광고 확보를 위해 저속한 내용이 들어있고 서로 비슷한 소재의 오락성이 짙은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편성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이다. 이에 따라 매일 6:00-24:00 시간대에 뉴스 프로그램 방송시간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매일 18:00-23:30 시간대에 방송하는 자체제작 뉴스 프로그램은 2개 이상이어야 하며 뉴스 프로그램별 방송시간은 30분을 넘어야 한다. 또 도덕교육 프로그램을 1개 이상 편성해야 한다. 19:30-22:00 시간대에 위성TV종합채널에서 방영하는 짝짓기 프로그램, 서바이벌, 버라이어티쇼, 토크쇼 등 오락 프로그램은 총 9개 이내로 제한하며 위성TV종합채널 1채널당 매주 방영하는 오락 프로그램은 2개를 넘을 수 없다. 위성TV종합채널1채널당 19:30-22:00 시간대에 방영하는 오락 프로그램은 1일 90분 이내로 제한한다. 전국의 오디션 프로그램은 총 10개를 넘을 수 없고 유형 중복을 금지하고 있다.

③ 심사절차

심사규정의 경우, 중국의 방송 프로그램 심사제도는 크게 방송기관 심사와 정부부처 심사로 구분된다. 방송기구 심사는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이 프로그램을 방송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 심사를 하거나 재방송을 하기 전에 재심사를 하는 것과 유료채널을 개설한 방송기관이 유료채널의 프로그램을 방영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 심사를 하거나 재방송을 하기 전에 재심사를 하는 것’을 지칭한다. 방송기구는 일반적으로 편집위원회를 두고 프로그램을 심사하고 있다. 정부부처 심사란 ‘국무원 방송행정부처(국가광전총국)에서 라디오방송국, TV 방송국에서 방송하려는 해외영화, 드라마에 대해 심사승인을 하고, 국무원 방송행정부처 또는 국무원 방송행정부처의 위임기관에서 라디오

방송국, TV방송국에서 방송하려는 기타 해외 프로그램에 대해 심사승인을 하는 것'을 지칭한다.

(3) 영 화

① 진입 규제

현재 영화관 서비스는 합자 또는 합작 형태로만 외자 진출이 가능하며 외자의 투자 비율 49%로 제한하고 있다. 2003년 9월 광전총국은 《외자투자영화원잠정규정(外资投资电影院暂行规定)》, 《영화제작, 발생, 방영 경영자격진입잠정규정(电影制片、发行、放映经营资格准入暂行规定)》을 하달하여 외자가 중국 국내 국유 영화제작기업과 합자, 합작으로 참여하여 영화제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그 후 2004년에는 국가라디오영화방송총국에서도 《중외합작영화촬영관리규정(中外合作摄制电影片管理规定)》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15년 수정 <외상투자지도목록>에서는 여전히 영화 제작이 제한항목에 편입되어 있다.

② 내용 규제

폭력 및 노출에 대한 엄격한 심의기준으로 극장 상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③ 심사절차

영화제작 허가증을 보유한 중국제작사가 중외합작영화허가증을 확보한 후에만 영화 촬영이 가능하다.

(3) 엔터테인먼트(음악·공연)

① 진입 규제

중국은 국무원이 2005년에 제정한 <영업성공연관리조례>와 문화부가 제정한 <영업성공연관리조례시행세칙>을 근거로 외국인의 중국 내 공연 활동을 규제하는 법규를 별도로 제정하고 있다.⁷⁹⁾ 그리고 <중국 내 외국인 공연활동참가 관리판법>에서는 외국인의 영업성 공연과 비영업성 공연으로 구분하여 허가 절차를 구분하고 있으며,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규정을 두고 있다. 외국인의 중국 내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산업 규제 동향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중국은 엔터테인먼트서비스 분야에 외국 자본 비중과 투자형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영업성공연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외국투자자의 중국내 중외합자, 합작경영 공연매니지먼트사 및 공연장소 경영업체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단 중국의 투자비율 51% 이상이라는 전제하에서이다. 그리고 중국은 문화산업 영역에서의 외자투자형식방면에 있어서도 직접투자만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즉 외국자본이 간접투자⁸⁰⁾의 방식으로 중국 문화산업에 진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둘째, 엔터테인먼트서비스의 중국 시장진입에 대한 규정이 복잡하다. <지도목록>⁸¹⁾에 따르면 외국인의 공연장소경영은 장려항목으로 분류하고 있고, 공연 매니지먼트경영은 제한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도목록>에서는 공연 매니지먼트사의 경우에만 중국 측이 지배권

79) 우리나라는 「공연법」, 「공연법시행령」, 「공연법시행규칙」에서 외국인의 국내 공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80) 간접투자란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투자로서, 주식이나 채권 등을 매입하는 형태로서 간접투자의 목적은 가치상승의 이익 또는 수익률 채산에 있으므로 일종의 금리투자이며 기업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음.

81)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2015年修订)》”, http://www.sdpc.gov.cn/gzdt/201503/t20150313_667334.html, 검색날짜: 2015. 6. 27.

(control)을 보유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법률상 공연장소경영 및 공연매니지먼트사의 외국인의 경영에 대한 허가절차, 적용되는 법규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공연매니지먼트사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더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 공연장소경영은 이미 존재하는 공연장소에 외국 자본이 투자하여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장려할 항목이다. 그러나 공연매니지먼트사의 경우 중국 사회에 외국의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효과가 크므로 중국 정부가 외국 자본의 진입을 훨씬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③ 심사절차

첫째, 중국은 문화산업 방면의 외국 자본 진입 절차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특별허가제인 엄격한 허가 처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⁸²⁾ 외자 진입 전의 외상투자자의 최근 3년 간 정보기록, 외자사용범위 및 주주권 비례에 대하여 사전심사허가를 진행한다. 그리고 문화서비스 방면의 외자퇴출 메커니즘도 매우 엄격한 행정처벌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공연기재와 위법 소득은 몰수되며, 위법소득의 8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⁸³⁾ 뿐만 아니라 영업성 공연과 非 영업성 공연에 대한 심사허가절차가 달라 양국 간의 원활한 공연 교류를 지연시킬 수 있다. 영업성 공연기관과 중개기관의 초청으로 중국에서 공연에 참가 또는 영업성 가무오락장소에서 공연활동에 참가할 경우, 공연 30일 전에 문화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화부가 비준한 기한, 공연장소, 공연프로그램에 따라 연출해야 하며, 변경이 있을 시에는 별도로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둘째, 중국은 소속 연예인과 매니지먼트사의 간의 법적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률 제도가 미비하다.⁸⁴⁾ 중국 연예인들은 소속사와 갈등

82) <영업성공연관리조례> 제11조.

83) <영업성공연관리조례> 제14조.

84) 오일환, “중국에 있어서의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 법적 쟁점”, 문화미디어

이 생길 경우 대부분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선택한다.⁸⁵⁾ 중국의 현행법 규정에 따라 소속사와 연예인들 간에 체결하는 계약은 권한을 위탁하는 위임계약⁸⁶⁾이기 때문이다. 연예인과 매니지먼트사 간의 전속계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조항의 불명확성 및 편향성, 수익분배 조항의 불공정성, 전속기간의 지나친 장기화, 손해배상 및 위약금 조항의 반사회성, 전속계약의 해지의 문제 등이다.⁸⁷⁾ 이러한 연예인 전속계약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속계약을 새롭게 분류할 필요가 있고, 매니지먼트 관련 기본법을 제정하며,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을 통해 관련분쟁을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국은 공연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이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체계가 미비하다. 이는 향후 한국의 중국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산업 진출의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5. 후속 협상 대응방안

세계 경제에서 서비스의 비중이 증대되고 서비스의 발전 없이 경제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의 증대에 따라 FTA에서 서비스협상의 중요성 또한 증대하고 있다.⁸⁸⁾ 그 결과 지역무역협장에서는 대부분 서비스무역에 관한 장(章)을 포함시키고 있다.⁸⁹⁾ 현재 가서명된 한-중 FTA 제8장에서도 서비스 무역에 관한 합의사항을 두고 있지만, 후속 협상에서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분야에서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이

엔터테인먼트법, 제4권 제2호, 2010, pp. 325-326.

85) Ibid p. 315-316.

86) 위임계약은 위임인과 수임인 간에 수임인이 위임인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약정하는 계약을 말함.

87) 박태훈·박지수, “연예인 전속계약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콘텐츠재산연구, 제3권, 2012, p. 99.

88) 김명호·김환규, “WTO/GATS하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경영경제연구, 제30집 제2호, 2007, p. 150.

89) Bartels and Ortino,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the WTO Legal System”,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 175.

끌어내기 위하여 대응방향 수립이 시급하다.⁹⁰⁾ 그러나 중국이 WTO GATS 양허는 물론 기 체결 서비스 FTA에서도 엔터테인먼트서비스 분야에 대해 양허 약속을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후속협상 대응방향을 수립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 후속협상에서 고려되어야 할 대응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적으로 도출하고자 하는 기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상의 적용범위, 자유화 원칙 및 개방약속의 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하여야 한다.⁹¹⁾ 본 연구 제II장에서는 현재 한-중 FTA 엔터테인먼트서비스 분야에서 합의된 적용범위의 문제점과 그 범위의 확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제III장에서 파악한 중국의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는 향후 한-중 양국의 서비스 자유화와 개방속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아시아 지역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경쟁력이 있는 홍콩과 대만⁹²⁾이 체결한 FTA에 최혜국대우조항이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⁹³⁾ 비록 중국이 홍콩과 체결한 CEPA협정문에는 MFN 조항이 직접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그간 중국이 체결한 FTA에서 추가로 개방된 서비스 부문에 대해 중-홍콩 CEPA 추가협상에서도 동일하게 양허를 해주고 있다. 이로써 중-홍콩 CEPA의 서비스 협상에서는 실질적으로 MFN을 홍콩에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⁹⁴⁾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90) Inkyo Cheong,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China-Korea FTA with the Consideration of FTA Sequence and FTA Hub Gains", *Journal of Korea Trade*, Vol. 18, No. 1, 2014, pp. 79-80.

91) 김명호·김환규, 전제논문, p. 150.

92) Jong-Hwan Ko, "A Study on Economic Effects of the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between China and Taiwan: A CGE Approach",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Vol. 18, No. 1, 2014, pp. 23-24.

93) 서비스 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최혜국대우는 체결 양국이 향후에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에서 추가로 개방되는 조치들을 현재 체결하는 협정에도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임.

94) 여지나, 「중·홍콩 CEPA 서비스 양허안 분석을 통한 한-중 FTA 서비스협상전략

라는 홍콩, 대만과 중국의 엔터테인먼트서비스 시장을 두고 경쟁할 것에 대비하여 후속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1) 인쇄·출판서비스

1) mode 1

추가 개방 및 논의사항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mode 2

추가 개방 및 논의사항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mode 3

추가 개방 및 논의사항 없을 것으로 보인다.

4) mode 4

추가 개방 및 논의사항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시청각물서비스

1) mode 1

추가 개방 및 논의사항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mode 2

추가 개방 및 논의사항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mode 3

추가 개방 및 논의사항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Vol. 9 No. 28, 2009, p. 5.

4) mode 4

방송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재 약 2개월이 소요되는 한국 방송인력의 비자 발급 소요기간이 단축되어야 하고, 장기 복수비자(5~10년)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필요하다. CEPA 또는 ECFA 참고.

(3) 엔터테인먼트서비스

1) mode 1

모드 1은 한국의 엔터테인먼트서비스 공급자가 이동하지 않고 중국 내의 수요자에게 통신 등의 매개수단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이다. 모드 1 형태의 엔터테인먼트서비스 산업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한국의 매니지먼트사가 중국의 가수 지망생을 온라인을 통하여 원격으로 교육한다거나, SM엔터테인먼트가 중국 매니지먼트사에게 프랜차이징을 주는 것 또는 상표권과 같은 권리만을 부여하는 것 등이 포함될 것이다.

문제는 한-EU FTA에서 많은 선진국가들 조차도 모드 1의 개방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⁹⁵⁾ 그리고 중국은 <Catalogue for the Guidance of Foreign Investment Industries>에서 온라인을 통한 외국 문화의 진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에서 모드 1에 대한 개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진다. 최근 중국정부는 2015년 4월 1일부터 중국의 인터넷동영상사이트에서 내용 심의를 받지 않은 모든 해외 드라마 및 영화의 상영을 금지하였다.⁹⁶⁾ 중국정부의 모드 1 형태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중국 내 한류진출에

95) 한-EU FTA에서 유럽 국가들은 문화 관련 분야에서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방을 “지양”하고 문화의 다양성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의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96) 중국 정부가 작년 9월에 공포한 「인터넷해외영화·드라마관리규정통지」와 올해 1월에 공포한 「해외영화·드라마등록세칙」에 따른 것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⁹⁷⁾ 따라서 한-중 FTA 후속협상에서 모드 1 형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중국진출을 위한 법적·제도적 합의가 필요하다.

2) mode 2

모드 2 소비자이동은 연예인 등 엔터테인먼트서비스 공급자는 자국에 있고 소비자가 그 나라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이다.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공급은 한-중 FTA 엔터테인먼트서비스 개방과 관련하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중국 기업이나 국민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엔터테이너들로부터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받는 것은 중국의 엔터테인먼트서비스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더 언급하지 않도록 한다.

3) mode 3

① 내국민대우

중국은 외국의 엔터테인먼트서비스 산업에 대하여 더 엄격한 국내 절차와 허가 제도를 두고 있다. 중국의 일부 학자들은 이를 문화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한다.⁹⁸⁾ 그러나 서비스분야 후속협상에서 한-중 양국은 중국 정부의 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해서만 더 엄격하고 복잡한 허가 제도를 유보할 것이냐에 대해서 협의하여야 한다. WTO GATS협정 제17조⁹⁹⁾에 따르면 각 회원국의 양허표에 등재된

97) 최진웅, “중국의 해외인터넷동영상 규제에 합의와 대응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5.4, p. 20.

98) Guoyujun · Wangqing, *supra note* 10.

99) GATS XVI: In the sectors inscribed in its Schedule, and subject to any conditions and qualifications set out therein, each Member shall accord to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of any other Member, in respect of all measures affecting the supply of services,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it accords to its own like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서비스분야에 있어서는 동 양허표에 유보한 사항 이외의 어떠한 차별 조치도 금지된다. 여기서 차별조치라 함은 형식상의 차별조치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동일한 조치이지만 사실상 외국 서비스, 외국 서비스공급자에게 불리한 대우를 초래하는 조치도 포함된다.¹⁰⁰⁾ 따라서 우리정부는 중국의 제도와 규정을 파악하여 유보 사항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진입

WTO GATS협정 제16조 제2항¹⁰¹⁾은 네 개의 양적 제한조치 유형과 두 개의 질적 제한조치 유형을 명시하고 있다. 양적 제한조치란 수치로 표시된 제한과는 다르다. 즉 양적 제한은 수량쿼타로 표시될 수도 있고 독점이나 진입금지, 경제적 수요심사등과 같이 숫자로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숫자로 표시된 조치가 모두 양적인 제한조치는 아니다.¹⁰²⁾ 중국은 외국의 엔터테인먼트서비스 시장 진입에 대하여 양적 제한조치와 질적 제한조치를 두고 있다.

외국 엔터테인먼트서비스의 중국 시장 진입에 대한 중국의 양적 제한조치는 다음과 같다. <Catalogue for the Guidance of Foreign Investment Industries>에서는 외국인의 공연장소경영은 장려하고 있고, 공연 매니지먼트 경영은 제한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문화영역의 외국 자본진입에 관한 약간 의견>에서도 문화영역의 외자 진입과 관련 하여 허락과 금지영역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중국 측이 통제권을 갖는 지위에 있다는 조건하에 합자, 합작 방식의 설립으로 공연장소경영 및 공연매니지먼트사 운영을 허락하고 있다.

100) 한철수, 전계서, pp. 184-192.

101) GATS XVI: In sectors where market-access commitments are undertaken, the measures which a Member shall not maintain or adopt either on the basis of a regional subdivision or on the basis of its entire territory,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its Schedule, are defined as:

102) 박노형, 「국제경제법」, 박영사, 2013, pp. 445-494.

또한 중국은 외국 엔터테인먼트서비스의 중국 시장 진입에 대한 질적 제한조치를 두고 있다. <Catalogue for the Guidance of Foreign Investment Industries> 뿐만 아니라 <영업성공연관리조례>에서도 공연장소경영과 공연매니지먼트 모두 중국 측이 51%의 투자 지분을 가질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외상투자지도목록에서는 공연 매니지먼트의 경우에 반드시 중국 측이 지배권을 보유도록 하고 있다. <문화영역의 외국자본 도입에 관한 약간의견>에서도 문화영역의 외자 진입과 관련하여 허락과 금지영역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중국 측 지배권을 51% 이상 또는 중국 측이 주도 지위에 있다는 조건하에 합자, 합작 방식의 설립으로 공연장소경영 및 공연매니지먼트사 운영을 허락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 엔터테인먼트서비스 분야 후속협상에서는 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국 시장진입에 대한 규제를 어느 정도로 유보할 것이냐에 대해서 협의하여야 한다. 적어도 현행 규제를 보다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는 있으나, 일단 자유화된 내용을 뒤로 후퇴하는 방향으로서는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mode 4

우리나라 연예인은 한류의 영향으로 중국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가수의 경우 한국 매니지먼트사와 중국 측 매니지먼트사가 3자 계약을 체결하여 중국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¹⁰³⁾ 따라서 모드 4의 중국 진출도 모드 3처럼 한-중 FTA에서 정식으로 개방하여 우리나라 연예인의 중국 내 취업에 법적 안정성과 확실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중 FTA 엔터테인먼트서비스 분야에서는 모드 4에 대한 개방을 약속하지 않았고, 자연인의 이동 챕터에서도 연예인의 중국 진출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103) 뉴시스, “더원, 키이스트 손잡고 중국 진출”,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27_0013563445&cID=10601&pID=10600, 검색날짜: 2015. 8. 1.

모드 4의 개방이야 말로 진정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산업의 개방이라고 할 수 있으며, 후속협상에서는 우리나라 연예인의 중국진출에 대한 중국의 절차 간편화 및 중국 내 취업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종사자, 안무가, 가수 훈련 전문가들의 중국 진출을 도울 수 있는 개방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EU FTA에서 의정서를 통하여 협력 방안을 마련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한-EU FTA에서는 문화협력의정서를 한-EU FTA 일부로 채택하였다.¹⁰⁴⁾ 문화협력의정서가 채택된 목적은 한-EU간 문화 활동, 문화상품 및 서비스, 시청각 분야 협력의 틀을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통상위원회와는 별도로 특별위원회로서 문화협력위원회 설립하고 문화협력의정서 관련 전반을 감독하며 문화 및 시청각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내자문단그룹 설치하기로 하였다. 문화협력의정서에서는 예술가 및 문화전문가의 상호입국 및 일시 체류 및 공연예술 관련 전문가 교류 및 훈련, 공동제작 촉진에 대해서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참고문헌

- 김명호·김환규, “WTO/GATS하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경영경제연구, 제30집 제2호, 2007
- 김장훈, “폭발하는 중국 해외여행 시장과 한국의 대응”, 특별기고, 2014.10
- 김철원, “한미 FTA 협상과 관광서비스 분야의 영향과 대책”,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104) 문화체육관광부, “FTA 문화분야 주요 협상결과”, http://www.mcst.go.kr/web/s_policy/FTA/fta02.jsp, 검색날짜: 2015. 8. 1.

- 류병운, “WTO GATS 협정과 서비스 분쟁”, 무역상무연구, Vol. 53, No. 3, 2012
- 박노형, 「국제경제법」, 박영사, 2013
- 박태훈·박지수, “연예인 전속계약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콘텐츠 재산연구”, 제3권, 2012
- 박정수·이홍식·고준성·김홍석·박문수·김천곤·고대영·구진경·박지혜, 「한-중 FTA 서비스협상의 업종별 대응방향」, 산업연구원, 2014
- 법무부,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고찰」, 2003
- 법원행정처, 「WTO와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 1997
- 서용건, 「세계무역기구 (WTO) 서비스협상 관광분야 대응방안 연구」, 한국관광연구원, 2001
- 여지나, 「중·홍콩 CEPA 서비스 양허안 분석을 통한 한-중 FTA 서비스협상전략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Vol. 9 No. 28, 2009
- 여지나·박민숙, 「중·홍콩 CEPA 서비스 양허안 분석을 통한 한-중 FTA 서비스 협상전략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 오일환, “중국에 있어서의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 법적 쟁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4권 제2호, 2010
- 윤석환, “중국 방송통신 규제체계 분석 및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 이정미, 「한-중 FTA 교육서비스 분야 협상 및 대응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연구원, 2012

- 장은정, “한-중 FTA 관련 관광서비스 분야의 영향과 대응방안”, 법학논총, 제46집, 2014
- china inside 중국 내 주요연구 동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관광 산업”
- 최진웅, “중국의 해외인터넷동영상 규제의 함의와 대응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5.4
- 한국콘텐츠진흥원, “FTA가 국내 콘텐츠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향”, KOCCA Focus, Vol. 40, 2011
- 한국콘텐츠진흥원, “중국 문화산업 비즈니스 가이드”, 2012.
-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글로벌 한류 이슈”, Vol. 84, 2015.4
- 한철수, 「서비스산업개방과 WTO」, 다산출판사, 1994
- Bartels and Ortino,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the WTO Legal System*,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Chow and Schoenbaum, *International Trade Law: Problems, Cases, and Materials*,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08
- Guoyujun · Wangqing, “Legal Approach on Use of Foreign Capital in Domestic Cultural Industry”, *Journal of henan administrative institute of politics and law*, Vol. 127, 2011
- Inkyo Cheong,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China-Korea FTA with the Consideration of FTA Sequence and FTA Hub Gains”, *Journal of Korea Trade*, Vol. 18, No. 1, 2014
- Jong-Hwan Ko, “A Study on Economic Effects of the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between China and Taiwan: A CGE Approach”,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Vol. 18, No. 1, 2014

Liujiifa · hongji · Chenhuaiping(2005), “Cultural Industry Study”, Beijing-jingjiguanliChubanshe

Park, Ji-Yeon, “Service Sector Dispute Settlement in Free Trade Agreement: The Case of NAFTA Cross-Border Trucking Services”, *International Trade Law*, Vol. 107, 2012.

제 4 부 요약 및 결어

제 1 장 한-중 FTA 주요 챕터 분석 및 시사점 요약

제 1 절 상 품

제1장 원산지 제도와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챕터의 경우, 우선 우리나라와 교역량 기준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EU 및 ASEAN을 중심으로 상품분야의 협정을 비교·분석한 결과, 원산지 규정과 원산지 이행절차, 양허세율과 원산지 기준은 특징적인 부분이 다소 있으나 통관 및 무역원활화 규정은 국내 통관 제도와 이미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과 EU의 FTA와 같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재료에 대하여 해당 제품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중간재에 대한 원산지 재료 활용이 가능하게 하는 등 다른 기 체결 FTA에 비하여 원산지 규정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장 SPS 협정의 경우, 우선 한-중 FTA는 다른 FTA와 마찬가지로 WTO SPS협정과의 관련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FTA에 비해 논쟁의 여지가 적고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율하고 있다. 둘째, 한-중 FTA는 SPS 협정의 다양한 조문을 언급하여 SPS협정상 권리와 의무가 실효적으로 준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 FTA와 비교된다. 셋째, 기술협력 조항을 통해 한국과 중국 간의 위생검역조치에 관한 경험과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한-중 FTA 위생검역조치의 법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위생검역조치에 관한 분쟁은 한-중 FTA의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신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해결이 기대된다.

제3장 TBT 챕터의 경우, 양국의 기술규제가 갖는 무역장벽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적합성평가기관 간 평가결과 수용 촉진 협력, IECEE-CB 시험인정서 수용 촉진, 적합성평가 협력 후속 이행약정 체결 등에 대해 규정하고, 기술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신속 공표, 규정 제·개정 시 최소 60일의 의견제시 기간 부여 등을 규정하며, 이밖에 적합성평가절차 처리기간 및 비용 제한, 시험용 샘플의 통관, 표시 및 라벨링 요건의 최소화 등을 규정하는 등 포괄적인 기술장벽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규정 및 조치 등을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TBT분야의 성과 중 상당수가 연성법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이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양국 기술규제 당국 및 적합성평가기관 간에 협력과 TBT 위원회의 활용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며, 특히 적합성평가 관련 이행약정에 관한 후속 협상과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제4장 무역구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 FTA는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무역구제위원회 등의 3개의 절에서 공정무역규범의 실현을 위한 내용과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둘째,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경우 일부 차이가 있지만 적용요건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및 타 FTA 협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중 FTA가 주요 농산물이 양허품목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해 농산물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 조치가 도입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반덤핑 및 상계관세는 일반규정에서 각 당사국은 한-중 FTA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WTO 협정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이고 투명한 기준의 도입을 통해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위장된 무역제한조치로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다만, 타 FTA에서 규정되어 있는 낮은 관세적용(lesser duty rule) 원칙의 부재, 공공이익조항의 부재 등은 중국이 실질적으로 반덤핑 조치

와 상계관세 조치를 빈번하게 발동하는 국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응수단의 미흡이라는 우려도 있다.

제 2 절 서비스/투자

제5장 서비스 무역의 경우, 한-중 FTA 협정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장은 미완의 협정이다. 앞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으므로 한국 측에서 아쉬운 점 몇 가지만 재차 강조하자면 정부조달 규정의 부재는 경제적 이익의 측면과 규범의 포섭범위라는 측면에서 미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분쟁해결 규정의 부재는 양허의 유효성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미비점이라 할 것이다. 최혜국대우규정의 부재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따지면 한국 측에 유리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할 것이나 순수하게 규범적 측면에서는 양국관계의 고도화를 위해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그간 문제시되어온 중국규제의 불투명성에 대한 대응으로 한-중 FTA 제8.6조(투명성)를 적극 적용하여 중국 측에 투명성 제고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국내적 규제에 관한 한-중 FTA 제8.7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규제의 합리성, 불편부당성,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도 형식상 투명성 확보에서 나아가 내용상 공정성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제6장 금융서비스의 경우, 한-중 FTA의 금융서비스 관련 규정은 대체적으로 한-미 FTA, 한-캐나다 FTA, 한-EU FTA의 금융서비스 관련 규정과 유사하고, 의도한 개방 수준도 한-미 FTA 수준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중 FTA는 최혜국대우를 제외하고 있고,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조항이 없으며, 투명성 규정에서 규제 투명성을 증진하지만 신청 처리 기한을 180일로 설정해서 다른 FTA보다 상대적으로 긴 처리 기한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 약속과 관련해서 한-중 FTA는 국경간 서비스 개방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고, 정보 이전에 대한 규정

도 존재하지 않으며, 포트폴리오 운영 서비스에 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제7장 통신의 경우, 전체적인 개방 수준은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 규정에서는 양국의 현실을 감안하여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유연성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의 통신 챕터는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한-미 FTA와 유사한 내용의 규정을 담고 있지만, 각 조항을 상세히 살펴보면 한-미 FTA보다 규정이 단순화되어 있고, 재판매, (한-미 FTA 제 14.6조), 망요소 세분화 (한-미 FTA 제 14.7조), 규제적용 면제 (한-미 FTA 제 14.22조) 등의 규정은 한-중 FTA에는 빠져있다. 또한 업계와의 협의 (한-중 FTA 제 10.15조) 및 국제로밍 (한-중 FTA 제 10.16조) 관련 조항은 한-미, 한-캐나다, 한-EU FTA 어디에도 없는 한-중 FTA에 특유한 조항으로서, 이 조항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제8장 자연인의 이동의 경우, 자연인의 일시 입국과 관련된 규정은 한-중 간의 인적 교류 확대와 함께 불법 체류자를 방지하고자 하는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노력이 혼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법상 외국인의 입국 규제는 국가의 온전한 전속 관할권으로 인정되지만 한-중 간의 경제 관계가 긴밀해지고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는 현실에서 한국과 중국 양측은 경제 활동 및 투자 진흥에 도움이 되는 자연인의 일시 입국을 진흥하되, 노동 허가 부여 또는 기타 이민 관련 내용은 한-중 FTA의 규율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부속서를 검토한 결과 한-중 FTA에서 허용하는 자연인의 일시 입국 대상 폭은 한-캐나다 FTA보다 좁은데, 이는 한국, 캐나다, 중국 각국의 이민 정책의 차이와 국경 규제 수요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9장 투자 챕터의 경우, 우선 한중투자챕터는 중국이 시기별로 체결한 양자간투자협정 (BIT)과 그에 상응하는 특혜무역내의 투자협정 (PTIA)과의 관계에서 보면 기존 체결된 협정들과 같이 BIT 범위 내에서 타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국제공급선 (global value chain)의 반영이라는 특혜무역협정내의 투자챕터의 체계적 의의 맥락에서는 현재 한중간의 변화된 투자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향후 한-중 FTA 추가협상에서 다루기로 한 설립전 투자에 관한 내국민대우 인정은 단기간에는 어렵고 현재는 설립후 투자만을 보호하는 한중일 3국 투자협정 수준에서 타결되었다.

제10장 전자상거래의 경우, 한-중 FTA 전자상거래 챕터는 엄격한 의무부과보다는 전자상거래 촉진에 관한 양국의 관심을 반영한 상징적,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흠결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전자상거래 형태의 무역자유화를 확산하는 직접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양국 간 상호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 발전의 틀을 확보하였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제11장 경쟁 챕터의 경우, 한-중 FTA 경쟁챕터는 경쟁법 집행의 일반원칙, 공기업에 대한 경쟁법 적용, 경쟁당국간 협력 등을 개괄적으로 규정하면서 분쟁해결규정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는 연성법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명성, 비차별대우, 절차적 공정성을 경쟁법집행의 일반원칙으로 명시하였으며, 공기업에도 경쟁법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다. 중국의 기체결 FTA에 비하면 획기적인 발전이며 한국의 기체결 FTA와 비교해서도 역대 체결된 FTA중 체계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 가장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협정의 협상가들이 쏟은 건설적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하며 다소간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것도 양국 경쟁당국 간의 협력 강화와 peer review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

제 3 절 규범 및 경제협력

제12장 지식재산권의 경우, 첫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TRIPS 플러스 조항들을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도입하였다. 특히 기 체결된 타 FTA에서보다 유명 상표 제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중국 내에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우리나라 상표까지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다만 상표의 등록 및 출원과 관련한 의견제출 기회의 보장과 출원 중인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추후 협상 등을 통해 필요해 보인다. 둘째, 특허를 등록함에 있어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특허 등록 심사의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였다. 셋째, 실용신안권 평가 보고서 제도를 마련하여 실용신안 제도 남용을 방지하였고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유전자원 출처 공개 의무화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디자인 보호를 위한 충분한 제도와 장치가 마련되지 아니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양국의 역량차이를 인정하여 협력을 강조하고 이를 위하여 지식재산권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합의하였다.

제13장 환경의 경우, 첫째, 한-중 FTA는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다자환경협약의 준수,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을 강조하며, 환경 협력의 강화와 환경위원회 설립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둘째, 환경 챕터의 실효적 이행을 논의하거나 국내 환경법의 효과적 이행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참여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다. 셋째, 한-중 FTA의 환경 관련 법적 의무의 이행에 관한 적절한 메커니즘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환경 관련 문제에 관한 분쟁은 한-중 FTA의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다른 FTA에 규정된 협이나 환경협의회 절차 등이 존재하지 않아 환경보호 준수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제14장 경제협력과 관련, 우선 한-중 FTA 경제협력챕터의 협력과제와 관련하여 금번 한-중 FTA 경제협력 챕터는 모두 16건의 협력과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간 한국 및 중국의 기타결 FTA의 경제협력과제와 비교할 때 최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정부조달이나 한국 관광회사의 중국에서의 해외 관광사업과 관련한 중국의 협조 약속에 대해서는 후속 협상을 통해 조문화하는 작업이 남아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중 FTA 경제협력챕터에서의 협력과제의 이행을 위한 메커니즘과 관련하여 한중FTA에서는 다양한 접촉선 내지 채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협력사업의 재원 조달 및 협력 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제15장 투명성의 경우, 첫째, 한-중 FTA는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조치의 공표, 협정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의 통보 및 정보 제공, 행정절차 당사자의 권리 보호, 재심과 불복 기회의 보장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둘째, 공표의 대상에 관한 법률용어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비밀정보의 유출을 막는 예외조항을 두어 투명성 제고와 공익의 보호 간에 적절한 균형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불투명한 법제 실무로 인해 우리나라에 무역상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을 선진국으로 대우하고 높은 수준의 투명성조치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16장 분쟁해결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이 도출되었다. 우선 한-중 FTA는 WTO 협정 및 기타 FTA와 유사한 형태의 분쟁해결제도를 규정에 두고 있다.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와 위생검역(SPS), 기술무역장벽(TBT), 경쟁, 경제협력, 환경 관련 분쟁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분쟁해결 챕터가 적용된다. 둘째, 한-중 FTA는 화해지향적 분쟁해결제도의 도입, 분쟁해결 포럼의 중복 선택 금지, 시간구

제4부 요약 및 결어

속적 분쟁해결제도, 비관세조치 중개절차, 패널의 설치·구성·기능, 패널보고서의 채택 및 이행, 양허의 정지, 사적권리의 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협정비위반제소 규정의 미비, 분쟁해결절차의 적용 기준에서 협정의 무효화 또는 침해 요건의 미비, 정보 및 기술적 조언 요청권리의 적용 범위,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와 관련한 기한 등의 규정은 명확한 기준정립을 위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 2 장 서비스/투자분야 중국의 법제 및 시사점 요약

제 1 절 투자일반

제3부 제1장에서 다룬 중국의 투자일반에 관한 규제와 관련하여,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을 위한 중국의 투자일반 규제와 관련된 구체적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념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중국의 네거티브 리스트가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상하이 네거티브 리스트와 2015년 국무원 네거티브 리스트의 변화 폭을 보았을 때, 향후에도 상당부분 개방수준이 제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의 빠르게 제고되는 투자자유화 수준을 감안할 때, 기존의 등식 -한국은 투자자유화 수준이 높아서 중국과 FTA에서 기존 FTA 대비 추가개방이 없을 것이다-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부 산업에서라도 이 같은 구도가 무너질 경우 협상전략의 수립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같은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한국의 기체결 FTA에서 투자시장 개방수준과 중국의 네거티브 리스트 간 산업별 규제 및 개방수준 분석 작업이 추가로 진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중국의 서비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한국기업의 진출도 기존의 전통적 제조업 위주에서 첨단산업 및 서비스업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후속협상 개시 전부터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시장 진출 유망분야를 선정하여 해당분야에서 중국 내 개혁의 진행상황 및 산업발전 수준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협상전략 관련, 중국은 현재 진행 중인 중미 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ment) 협상이 타결될 경우, 해당 네거티브 리스트를 그대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도 관철시키려 할 것이다. 이 경우 해당 네거티브 리스트는 미국기업의 관심사가 주로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기업의 공략지점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강대국간 이해가 일치된 국제협정을 한국같은 중견국이 이를 바꾸기는 쉽지가 않다. 최근 타결된 WTO 정보기술협정(ITA) 협상 타결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잘 드러났다. 물론 FTA와 ITA는 양자와 다자간 통상협정이라는 차이점이 있으나, 한국과 중국 간 경제력 격차를 감안할 때 이러한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국의 국내 산업발전 및 개혁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한국기업의 수요가 큰 지점을 관철시키기 위한 치밀한 협상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지금부터 이에 대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제 2 절 법률과 금융서비스

제3부 제2장에서 다룬 법률 서비스 분야의 경우, 우선 법률시장 개방에 관한 중국의 국내 정책 및 법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중국의 법률시장 개방 관련 국내 법제 및 정책은 크게 3가지 차원, 즉 i) 전국적 차원, ii) 상하이, 광둥, 텐진 및 푸젠 등 4개 자유무역시험구 차원 및 iii) 광둥과 홍콩, 광둥과 마카오 차원에서 각기 다른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들 3가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률시장 개방 관련 법제와 정책을 각각 분석·비교한 후 이들 3가지 차원의 법제와 정책을 우리나라의 법률시장 개방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인「외국법자문사법」과 한-중 FTA상 법률시장 개방 관련 양허내용을 다시 비교분석하여 법률시장 개방의 관한 중국 국내 법제 및 정책의 주요 내용 및 특징, 한-중 FTA 법률시장 개방 수준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법률시장 개방에 관한 3가지 차원의 법제와 정책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전국적 차원, 자유무역시험구, 광둥-홍콩 및 광둥-마카오 간 법률시장 개방 순으로 개방 수준이 높았다. 특히 광둥-홍콩, 광둥-마카오 간 법률시장 개방 수준이 가장 높은 것은 중국 본토와 양 특별행정구 간 체결된 CEPA에 따른 단계적 개방 조치의 결과에 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한-중 FTA 법률시장 개방 수준은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 법률시장 개방 수준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한-중 FTA를 통해 우리나라에게 특혜적 개방을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현행 중국의 법률시장 개방 관련 주요 규제와 관하여, 한-중 FTA 법률시장 양허 협상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반적으로 볼 때 현행 한-중 FTA 법률시장 개방 수준은 중국의 전국단위 및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률시장 개방 수준과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역시 거의 유사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한-중 FTA 발효 후 추가적으로 진행될 한-중 FTA 법률시장 개방 협상이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협상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어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된 중국의 국내법제를 비롯하여 중국의 정책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보다 더 진일보한 시장개방을 실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와 광둥성에서의 법률시장 개방에 관한 정책과 법제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중국의 법률시장 개방에 관한 정책과 법제에 관한 이상의 전반적인 평가하에 한-중 FTA 협상에서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이슈 및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출형태와 관련하여 현행 중국 국내법에서 허용하는 대표처 형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에서만 허용되는 중

외변호사상호과건제도와 계약형연합경영제도를 넘어 광둥-홍콩마카오 로펌 간에 허용되는 파트너십형태의 연합경영제도를 우리나라 로펌도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률시장 개방 확대의 핵심 이슈인 외국로펌의 중국법률사무 취급 허용 여부에 있어서, 현재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방을 실험하고 있는 광둥-홍콩·마카오 파트너십연합경영에서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어, 이를 허용하는 것은 중국의 법률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운 요구사항일 수 있다. 다만, 광둥-홍콩마카오 파트너십연합경영제도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준에서 개방할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제3부 제3장 금융 서비스에서는 중국 주식시장 개혁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았다. 중국 주식시장은 한국과 같이 급진적 개방정책을 취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은 금융개방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어, 이는 한국기업과 정부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먼저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거대한 중국 금융자본이 한국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 거론될 수 있다. 최근 중국의 안방(安邦)보험은 한국의 동양생명을 1조 1,319억원에 인수하였다. 이처럼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중국자본이 미국, 유럽 자본에 이어 한국 시장 진출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국내 업체들은 더욱 긴장하고, 규모와 경쟁력을 강화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반면 중국자본의 한국진출 확대는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위협적일 수 있으나, 한국 전체적으로는 안정적 FDI 유입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를 거부감을 가지기 보다는 긍정적 계기로 활용하여, 금융업계의 토종기업들은 더욱 분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 기회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이웃나라 중국에서 세계적인 규모의 금융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기업에게 큰 기회임에 틀림없다. 특히 중국은 위안화를 달러, 유로화에 이은 세계 3대 기축 통화로 육성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는 한국에게도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이미 영국은 유럽의 위안화 허브가 되기 위하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선도적 가입에 이어 중국정부에 대해 적극적 공세를 펼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끝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중국 주식시장의 제도 위주로 살펴보았으나, 향후 채권시장 특히 외환시장과 연결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빠르게 진화하는 중국 금융개혁의 구체적 내용과 진행상황을 파악하여 한국의 대중국 금융시장 진출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2~3년뒤로 예상되는 한-중 FTA 후속협상은 이러한 한국기업과 정부의 대응전략이 국제조약의 형태로 제도화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한국 금융산업이 새롭게 도약하여 국가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얼마남지 않은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제 3 절 환경, 관광·여행 및 문화 서비스

제3부 제4장에서 다룬 환경 분야의 경우, 첫째, 중-홍콩 CEPA와 중-대만 ECFA를 포함하여 중-뉴질랜드 FTA에서는 CPC 9409(기타 환경보호서비스)에 대해서 외국인의 100% 지분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이들 FTA 보다도 후에 체결된 중-스위스 FTA, 한-중 FTA와 중-호주 FTA에서는 합작투자기업 형태로만 서비스공급을 허용하여 오히려 제한사항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중국이 체결한 FTA를 사례로 들어 한국기업도 CPC 9409에 대해서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도록 논의할 수 있다고 보인다. 둘째, 중-대만 ECFA 환경서비스 분야 mode 3에서는

대만서비스제공자가 대만과 대륙에서 환경오염처리시설운영에 종사하여 종사한 시간을 대륙에 환경오염처리시설운영 자질을 평가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만에서의 경력까지도 중국에서 인정해주고 이는 향후 중국이 관련 업체를 선정할 때에도 중요한 고려 인소가 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한-중 FTA 후속협상에서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3부 제5장에서 다른 관광·여행·문화 서비스 분야의 경우, 중국은 WTO GATS 양허한 바와 같이 그동안 FTA에서도 외상투자여행사의 업무 범위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하여 왔다. 그러나 현재 상해와 북경 등 일부지역에서는 외상투자여행사의 업무 확대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대만과의 ECFA와 홍콩과의 CEPA를 통하여 대만과 홍콩여행사에 대해서는 아웃바운드 업무를 인정해주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 서비스 분야 후속협상에서 우리나라 여행사의 아웃바운드 업무확대에 대하여 개방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분야는 중국이 우리나라에게만 FTA에서 처음으로 개방하였다. 그러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중에서도 기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만을 개방하여 그 개방의 진정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좀 더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개방이 필요하다. 시청각서비스의 경우 중-홍콩 CEPA와 비교하여 영화 및 드라마 제작에 대한 제한사항이 제거되어야 하며, 영화관 서비스의 개방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되어야 한다.

제3장 결 어

이상 한-중 FTA 주요 챕터에 대한 분석과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에 대비한 중국의 국내법제 연구를 요약하면서 다시 한번 한-중 FTA 협상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진행될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 시 고려해야 할 점 등을 강조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번 연구의 의의, 부족한 점, 그리고 한-중 FTA 발효 이후의 과제를 언급하면서 이번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의 의의와 관련하여, 첫 번째로 이번 연구는 몇 개의 챕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소개하는 수준에서 다루긴 하였지만 한-중 FTA 전체 챕터에 대한 첫 번째 종합연구라는 점에서 그 기본적인 의의가 있겠다. 더 나아가 이번 연구는 우리의 기체결 FTA 중 처음으로 특정 FTA 챕터 전체를 법제적 차원에서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의미도 있다. 주지하다시피 그 동안 우리나라는 다양한 국가와 지역을 상대로 다수의 FTA를 체결해 왔고 또 많은 건 수의 FTA 체결을 추진 중에 있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FTA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일부 산업분야 또는 FTA의 개별 챕터에 대한 연구는 있었지만 하나의 FTA 챕터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법제적 분석은 거의 없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한-중 FTA 전체 챕터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한중 양국이라는 특정 당사국 간 FTA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뿐만 아니라 진화하고 있는 FTA에서 다루고 있는 법제 이슈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1) 2015년 9월 말 현재 우리나라는 기 발효된 11 건과 기 타결된 4건(총 15건)의 FTA 외에, 협상중인 한중일, RCEP, 한-중미, 한-에콰도르 SECA 등 4건, 협상 재개 여건 조성 중인 FTA가 4건, 협상준비 공동연구 중인 FTA가 3건, 그 외 우리나라의 참여 여부가 곧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다자 간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향후에도 체결될 가능성이 있는 FTA가 최소 12건이나 된다. <http://fta.go.kr/main/situation/kfta/ov/>(최종검색일: 2015.09.25.)

이번 연구의 제2부에서 다룬 한-중 FTA 첩터 분석은 향후 법제적 차원에서 FTA 연구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 두 번째로 한-중 FTA 국회비준동의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구의 결과물이 나오게 되었는데, 한-중 FTA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당히 시의적절한 연구성과물로서 국회비준동의절차를 비롯하여 정식 발효 이전의 국내검토단계에서 이번 연구가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 타결된 11건의 FTA의 경우 국회비준 절차를 완료하기 이전에 이들 FTA에 대한 종합적인 법제적 분석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도 이번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FTA 협상과 국내발효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하나의 통상적 과정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²⁾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3부에서 다룬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 대비 중국 국내법제 연구는 그 동안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에 대비에 관한 선행연구가 다수 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는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첫째, 중국의 법

2) 참고로 2014년 8월에 한국법제연구원의 FTA법제지원연구사업팀은 한-호주 FTA 연구 차원에서 호주의 관련 기관을 방문하였다. 호주 방문 기간 중 FTA정책을 포함한 호주의 산업무역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호주정부에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호주정부 산하의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를 방문하였다. 동 기구에 의하면 호주정부는 FTA를 비롯한 무역투자협정을 체결하기 이전에 향후 체결될 무역투자협정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법제에 대한 사전평가를 통해 그 협정이 체결될 경우 호주의 경제, 사회, 문화, 법제도 등 각 분야별 영향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무역투자협정 체결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건의하고 있다고 한다. 더 나아가 동 기구는 무역투자협정이 타결된 이후 그 협정이 발효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일종의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연구성과물은 호주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비준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호주의 무역투자협정에 대한 사전, 사후평가 항목에 무역투자협정의 핵심 내용인 경제, 산업적 측면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법제도 영향 평가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호주의 FTA 체결 절차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무역투자협정에 대한 사전, 사후 평가를 보다 강화하고 정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호주의 생산성위원회에서 무역투자협정 체결 영향 평가 관련 자료에는 “Bilateral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등이 있으며, 보다 상세한 정보는 호주생산성위원회 홈페이지인 <http://www.pc.gov.au/> 참고할 것.

제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국내 법제 관련 연구의 경우 끊임없는 모니터링과 후속연구를 하지 않으면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고 경우 따라서는 잘못된 정보로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도 보듯이 법률 서비스 관련 법제의 경우 전국적 차원, 자유무역시험구, 그리고 CEPA에 기반한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광둥성만의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3차원의 서로 다른 법제가 복잡하게 시행되고 있고 또한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법제도 계속 발표되고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투자일반 관련 법제의 경우 기존 3자기업법을 통합한 외국투자법을 제정 중에 있는데, 올해 초에 공개된 법률초안에 대한 선행연구 역시 거의 없는 상태라는 점 등도 고려하면 중국 국내 법제에 대한 연구는 연구시기와 관계 없이 대부분 새로운 연구내용들이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이 발효 후 2년 내에 시작하고 2년 내에 완료하기로 계획된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관련 중국 국내법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연구는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국 국내법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정책과 법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건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이건 대다수가 공통으로 느끼는 것은 중국 국내법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부족이다. 이는 중국의 정책 및 법제에 관한 낮은 투명성과 중앙, 지방, 자유무역시험구 등 각 지역, 각 층차별 법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주로 기인한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포함하여 중국 국내법제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모두 이와 같은 정보의 정확성과 전면성과 관련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번 연구 또한 부족한 중국 국내법제 관련 정보를 보충하는 의미도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번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의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첫 번째로, 제2부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 여건의 제한으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순한 조문 소개 수준에서 그친 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문 자체에 법제적 쟁점이 별로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추가적인 심층 분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제3부의 경우 참여 연구진 수의 제한 등으로 몇 개 분야의 중국 서비스/투자 관련 국내 법제에 대한 연구만 수행할 수 있었다. 예컨대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업종으로 평가받고 있는 건축/엔지니어링, 건설, 유통, 운송 등의 분야 대한 법제분석을 다루지 못한 점이다. 또한 금융 서비스 분야의 경우에도 주식시장 관련 법제에 국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은행, 보험 등에 관한 법제분석도 이번 연구에서 다루지 못하였다. 이들 분야에 대한 중국 국내법제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와 같은 연구성과와 한계를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은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이번 한-중 FTA 전체 챕터에 관한 분석과 연구는 한-중 FTA에 대한 기초분석으로서 현재 강조되고 있는 한-중 FTA 활용도 제고에 기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별 챕터들에 대한 추가적인 심층분석이 요구된다. 향후 심층분석연구에서는 한-중 FTA 발효 후 한중 양국, 특히 중국에서 한-중 FTA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감독하기 위한 중국 국내법제 연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즉 한-중 FTA 각 챕터에서 도입된 법제와 중국 국내법제 간의 비교 연구 등을 통해 한-중 FTA 체결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후속협상과 관련해서는 앞서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이번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중국 국내법제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여,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의 기초가 될 중-미 투자협정, 중-EU 투자협정 협상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기대되는 중-미 투자협정상 서비스/투자 부분 양허 결과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에서 중국측 협상전략을 예측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므로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그 외에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를 필두로 한 4개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시행되는 법제개혁 내용과 중국-홍콩, 마카오 간 CEPA 및 중국-대만 간 ECFA 등 중국의 가장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이끌고 있는 중국의 국내법제와 FTA에 대한 동향과약도 간과할 수 없는 과제이다.